

#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백서



본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백서'는 향후 연관 방송정책의 수립·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5월 종합편성·보도전문PP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발표부터 2011년 12월 방송 개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간되었습니다.



▲ 2010. 5. 18, 추진일정 발표



▲ 2010. 7. 14, 의견수렴 라운드테이블(사업자)



▲ 2010. 9. 2, 기본계획 공청회(사업자)



▲ 2010. 9. 3, 기본계획 공청회(전문가)



▲ 2010. 11. 3, 세부심사기준 토론회(전문가)



▲ 2010. 12. 31, 승인 대상법인 선정 발표



▲ 2011. 12. 1, 종편PP 개국식



▲ 2011. 12. 19, 보도PP 개국식



## 목 차

I. 추진일정 .....	1
II. 기본계획 수립 .....	11
III. 신청 공고 및 접수 .....	439
IV. 심사 및 선정 .....	491
V. 선정 이후 .....	847



# I. 추진 일정



종편·보도PP 승인 주요 경과



## 종편·보도PP 승인 주요 경과

- '10.5.18, 「종편·보도PP 선정 추진일정」 위원회 보고
- '10.8.17, 「종편·보도PP 승인 기본계획(안)」 위원회 보고
- '10.9.17, 「종편·보도PP 승인 기본계획(안)」 위원회 의결
- '10.11.2, 「종편·보도PP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위원회 보고
- '10.11.10, 「종편·보도PP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종편·보도PP 선정 추진일정」 위원회 의결 및 신청공고
- '10.11.30~12.1, 종편·보도PP 승인 신청 접수
- '10.12.8, 「종편·보도PP 승인 심사계획(안)」 위원회 의결
- '10.12.23~12.31, 종편·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 '10.12.31, 「종편·보도PP 승인 대상법인 선정」 위원회 의결
- '11.3.30, 「종편·보도PP 승인(CSTV, 연합뉴스TV, JTBC)」 위원회 의결
- '11.4.20, 「종편PP 승인(채널A)」 위원회 의결
- '11.5.6, 「종편PP 승인(매일방송)」 위원회 의결
- '11.12.1, 종편·보도PP 개국 및 종편PP 개국식 개최
- '11.12.19, 보도PP 개국식 개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2010. 5. 18.(화),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1. 보고배경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준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일정을 제시하고자 함

## 2. 기본방향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이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을 마련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과정에 시청자·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 준비사업자에게 중요한 일정은 명확히 제시하여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 방지
-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구성하여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3. 추진일정

### □ 개요

- 전체 일정은 연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공식적인 일정은 8월초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개시
  - 시청점유율 산정 등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도 정비는 5월부터 진행
- 8월말에 「기본계획(안)」을 의결한 후, 이에 따라 심사절차 진행

## □ 세부일정

### ① 제도마련(5~9월)

-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을 위한 신문부수 확인·인증기관 지정(~6월)
  - ※ 구독률이 20% 이상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 금지(방송법 제8조제4항)
  - ※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전환(방송법 제69조의2제2항)
- 시청점유율 관련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포함한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9월)
  - ※ 특정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30% 초과 금지 및 방송사업의 허가·승인 시 시청점유율 반영 필요(방송법 제69조의2제1항 및 제4항)

### ② 의견수렴(6~8월)

- 방송·경영·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 업계와 학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등에서 제시되는 의견 수렴 병행

### ③ 정책수립(8월)

- TF 실무검토 내용, 업계·학계의 의견과 자문단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8월 초)
  - 정책목표, 선정방식, 심사방법, 심사기준 및 세부추진일정 등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포함
- 온라인·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 확정(8월 말)
  - ※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공고, 접수 및 승인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며, 세부일정은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예정. 끝.

## Ⅱ. 기본계획 수립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2010. 8. 17.(화),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1. 보고목적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내부 토론과 외부 의견수렴을 위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위함

## 2. 경과사항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위원회 보고('10.5.18)
- 관련 제도 마련
  -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시행령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보고('10.6.11)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6.17 ~ 7.7), 규제심사('10.7.22, 8.12)
      - ※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을 위한 신문부수 확인·인증기관으로 ABC협회 지정('10.7.15)
- 의견 수렴
  - 방송·경영·회계·법률 등 분야별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10.6월~)
  - 업계와 학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수렴
    - ※ 언론학회(6.17), 방송학회 1차(7.2), KISDI(7.14), 방송학회 2차(7.23)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관련 상임위원 워크숍 개최('10.8.11)

### 3.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 ①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정책목표)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 (추진방향)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

#### ②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

-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의 두 가지 방안 제시
- (사업자 수) 비교평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를 각각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현재 2개 사업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
- (사업자 군 구분 여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 군(언론사군/대기업군/기타기업군 등)을 구분하여 선정하는 방안과 별도 구분없이 선정하는 두 가지 방안 제시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시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 이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는 두 가지 방안 제시

### ③ 심사사항 구성 및 배점

- (심사사항 구성)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제1항을 토대로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구성

※ <심사기준 단계>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특정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업 허가·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하위 심사항목으로 통합

####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6호】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심사사항 구성(안)】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심사사항별 배점) 정책목표와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특성, 기존 허가·승인 심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사항별 배점 부여 방안을 제시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도 충분히 고려

- 배점 부여 방안은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방안(1안), 정책목표 중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배점 방안(2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편성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3안)의 세 가지로 제시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과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
- 배점 부여 방안은 정책목표를 고려한 방안(1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보도전문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2안)의 두 가지로 제시

**【심사사항 배점(단위 : %)】**

심사사항	종합편성			보도전문	
	1안	2안	3안	1안	2안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25	23	24	30	2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5	27	24	20	2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3	23	20	25	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	15	20	15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2	12	12	10	1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 (심사사항별 주요 내용)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등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는 등 총 19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방안 등을 심사
    - ※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 ④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등 4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우수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②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등 3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시장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사업추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재무, 인력 운영 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경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 ※ ① 사업추진계획, ②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③ 납입자본금 규모, ④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⑤ 사업성 분석, ⑥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등 6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신청법인(컨소시엄)의 재무적 안정성 등 재정적 능력과 방송 운영의 기반이 되는 기술적 능력을 심사
  - ※ ① 재정적 능력, ② 자금출자 능력, ③ 기술적 능력 등 3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방송 사업 또는 방송관련 사업 등을 통한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 ※ ① 방송발전 기여계획, ②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③ 출연금 등 3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 ④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

- (승인 최저점수 설정) ① 전체 총점, ② 심사사항별(대분류) 총점, ③ 심사항목별(중분류) 총점 등 세 단계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
  - 엄격한 심사를 위해 심사항목까지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되, 전체 총점은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은 70% 이상, 심사항목별 총점은 50% 이상으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
    - ※ 승인 심사시, '80% 이상'은 매우 우수, '60% 이상~80% 미만'은 우수, '40% 이상~60% 미만'은 보통 수준이라는 의미를 부여
- (납입자본금)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와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
  -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000억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400억원으로 제시

- (심사방안) 절대평가시에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방안을,
  - 비교평가시에는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 (출연금) 신규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최소 출연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
- (최소 출연금 규모)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 10% 이내에서 결정
  - (심사방안) 절대평가시에는 최소 출연금 기준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방안을,
  - 비교평가시에는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
-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소유) 방송의 다양성 등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
- ※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이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① 현재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해당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 교부
  - ② 동일한 신규 신청법인(컨소시엄)이 복수의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은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 신청 철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 교부

-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 또는 감점 처리하는 방안(1안)과,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허용(2안)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

- 1안으로 결정하는 경우,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감점 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

※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 5% 이내에서 결정

- 2안으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법인 간 주주구성의 차별성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안으로 추진

#### 4. 향후 일정

- 공청회 개최(9월초) 등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의결(9월 중순)
-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보고(9월 중) 및 의결(10월 중)
- 신청 공고(10월 ~ 11월 중) 및 신청 요령 설명회
- 「심사계획」 의결(11월 ~ 12월 중)
- 심사위원회 운영(12월 중) 종료 직후 선정 결과 의결

※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끝.



<붙임>

---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

2010. 8. 17





# 목 차

I. 개 요	27
1.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의미	27
2. 추진 경과	31
II.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33
III.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	34
1. 사업자 선정 방식	35
1-1. 종편PP 사업자 수	39
1-2. 보도PP 사업자 수	41
2. 종편PP 사업자 군 구분 여부	42
3. 보도PP 선정 시기	44
IV.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45
1. 심사사항 구성	46
2. 심사사항별 배점	48
3. 심사사항별 주요 내용	52
V.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	58
1. 승인 최저점수 설정	59
2. 납입자본금	63
3. 출연금	67
4.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72
5.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75
VI. 향후 계획	78



# I. 개요

## 1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의미

### □ 기본 개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채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 [방송법(이하 법) 제2조 제2·3호]
  -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주체인 동시에 SO·위성방송 등의 플랫폼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Program Provider, PP)로서 콘텐츠 시장의 수요자이자 공급자
- 종합편성 PP(이하 종편PP)는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 분야 상호 간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PP [법 제69조 제3항]
  -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80% 이상 편성해야 하는 등록PP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허용
    - ※ 방송 분야에 대한 규제는 오락프로그램 편성 규제(50%이하)만 적용[시행령 제50조 제1항]
    - ※ 등록PP는 등록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80% 이상 편성하여야 하고, 보도프로그램은 편성 금지[시행령 제50조 제4.5항]
  -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편성전략이 가능하고, 콘텐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큼

- **보도전문 PP**(이하 보도PP)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 보도 프로그램을 80%이상 편성하는 PP [시행령 제50조 제2항]

## □ **진입 제도**

- 종편·보도PP는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사업자 지위를 획득 [법 제9조 제5항]
- 종편·보도PP의 승인 여부는 방송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 [법 제10조 제1항]

###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호 >

-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⑦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에서 규정한 등록요건 [법 제9조의2 제1항] 을 충족하면 사업자로서 자격을 갖는 등록PP와 달리,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심사과정 없이 승인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기준이 필요하고, 심사기준에는 방송법에서 규정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정책목표가 반영

## □ **소유 제한**

- 종편·보도PP에 대해 1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와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제한 [법 제8조 제2·3항 및 제14조 제2항]

**【종편·보도PP의 소유 제한】**

구 분	1인 지분	일간신문·뉴스통신	대기업	외국인
종편PP	40%	30%	30%	20%
보도PP	40%	30%	30%	10%

※ 구독률 20% 이상 일간신문은 종편·보도PP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금지[법 제8조 제4항]

- 소유 제한에 따라, 승인 신청법인은 다양한 주주로 구성되고, 이러한 구성 주주에 대해 적법성(신청자격) 등을 심사

**□ 편성 제도**

- 종편PP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비해 완화된 국내제작·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규제가 적용 [법 제71·72조]

**【종편·보도PP의 편성 제도】**

구 분		지상파방송	종편PP	일반PP(보도PP 포함)
국내 제작	국내제작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중 80% 이상	40% 이상	40%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전체 애니메이션 중 45% 이상	35% 이상	35% 이상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전체 프로그램 중 1% 이상	-	-
외주 제작	외주제작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중 KBS1/2 : 24%/40% MBC,SBS : 35% 이상	-	-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주시청시간대 중 10% 이상	15% 이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전체 외주제작 중 21% 이내	-	-

\* 구체적인 비율은 고시로 정함

※ 국내제작 영화(20% 이상).대중음악(60% 이상) 및 1개 국가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대중음악(60% 이내) 편성규제는 지상파와 모든PP가 동일

- 유연한 편성 규제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편성·제작 가능

## □ 의무송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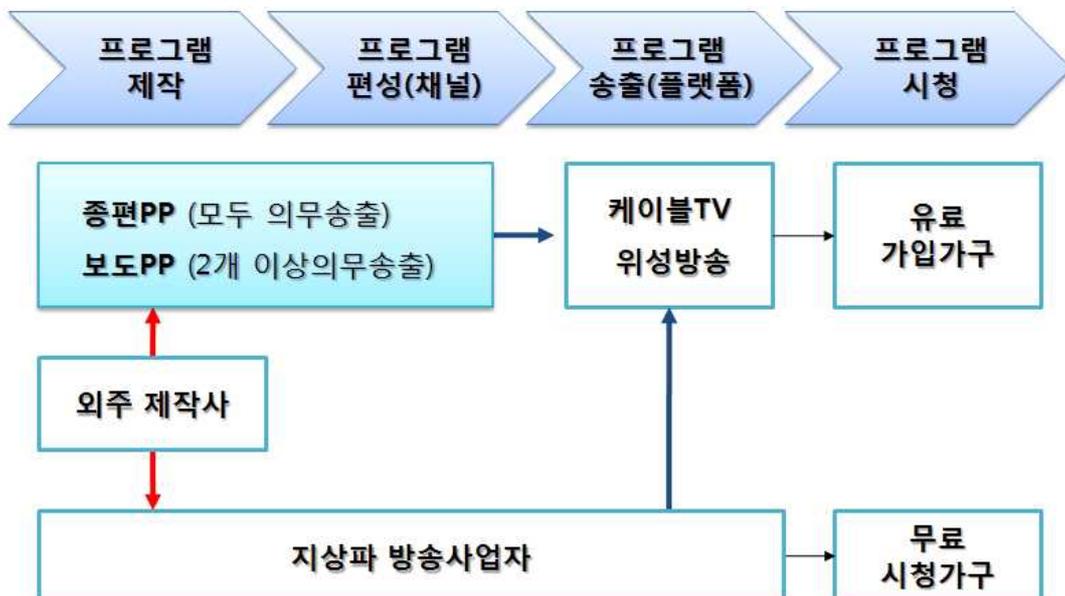
- SO·위성방송의 다양한 채널 구성 등을 위해 모든 종편PP와 2개 이상의 보도PP는 의무송출 대상에 포함 [시행령 제53조 제1항]

### 【SO.위성방송의 의무송출 제도】

지상파방송	종편PP	보도PP	등록PP
KBS1TV, EBS	모든 채널	2개 이상	공공3/공익3/종교3

- 모든 종편PP는 SO·위성방송의 의무송출 대상이므로, 방송망을 갖추지 않고도 전국 방송이 가능
- 보도PP는 2개 이상이 의무송출 대상이므로, 보도PP가 추가 도입되면 현실적으로 채널 확보를 위한 경쟁 불가피

### 【종편.보도PP의 방송시장에서의 의미】



- '08.12월, 방송사업 소유 제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발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나경원, 허원제 의원 발의)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08.12월, 신규 종편 PP 도입 추진 발표('09년 방통위 업무보고)

◇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한 미디어 융합 촉진**

-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고 방송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추진
- ※ 방송법 개정 등과 연계하여 도입시기 판단

- '09.7월, 방송법 개정

※ '09.3~6월 여.야 동수의 전문가 20인이 참여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운영

- '09.10월,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결정 선고

- '10.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 **방송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출 자료 및 공개 방법
-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 기준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추가직무, 구성 및 운영 등

- '10.3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 '10.5월, 종편·보도PP 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 발표
- '10.6월,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보고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는 고시 위임)
-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 마련 등

- '10.7월, 일간신문 부수 인증기관 지정(ABC협회)

## II.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 정책 목표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추진 방향

- ▶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
  - 정책목표를 고려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



- ▶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 추진
  -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선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Ⅲ.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

#### 1. 사업자 선정 방식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정해진 사업자 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 방식

#### 1-1. 종편PP 사업자 수 / 1-2. 보도PP 사업자 수

- 비교평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종편·보도PP 사업자 수를 각각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

#### 2. 종편PP 사업자 군 구분 여부

- 종편PP를 선정할 때, 사업자 군(언론사군/대기업군 등)을 구분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 3. 보도PP 선정 시기

- 종편·보도PP를 동시 또는 순차 선정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 1

## 사업자 선정 방식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1안】**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이하 '절대평가')

**【2안】**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정해진 사업자 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이하 '비교평가')

### 【1안】 절대평가 방식

#### □ 개요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

※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승인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음

#### □ 기존 사례

- IPTV 제공사업 허가 및 IPTV 콘텐츠제공 사업(보도PP) 승인, 현행 기간통신사업 허가(주파수 제약이 없는 경우) 등

※ IPTV 콘텐츠제공 사업(종편PP)도 절대평가를 통해 승인하도록 고시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사례】**

시기	허가.승인 대상	사업자 수		탈락 이유
		신청	허가.승인/탈락	
'08.9월	IPTV 제공사업 허가	4	3 / 1	재정적 능력 미달
'09.3월	IPTV 보도PP 승인	1	- / 1	모든 심사사항 점수 미달
'09.8월	기간통신사업 허가	4	2 / 2	재정적.기술적 능력 미달

□ **주요 논거**

- ①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결정
- ② 정부 개입의 최소화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정부는 방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사업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과 사업성을 확보
- ③ 시장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자 수를 제시하는 데 한계
  - 시장 확정 및 전망에는 관련 정책의 추진 여부 및 효과, 사업자 간 경쟁 상황 등 다양한 변수 존재
  - 종편·보도PP 사업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 적정 사업자 수 도출을 위한 시장 분석 등에 한계

## [2안] 비교평가 방식

### □ 개요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중 정해진 사업자 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기존 사례

-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경우, 주파수 제약(위성방송, 지상파 DMB 등)이 있거나, 비교적 시장 확정 및 전망이 용이한 경우 (홈쇼핑PP) 주로 채택
-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경우, 주파수 제약(IMT-2000, WiBro 등)이 있는 경우 주로 채택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한 사례】

시기	허가·승인 대상		사업자 수	사업자 수 결정 주요요인
'00	위성방송 허가		1개	위성 수 제약
'00	IMT-2000 허가		3개	주파수 제약
'01	홈쇼핑PP 승인		3개	시장 규모
'05	WiBro 허가		3개	주파수 제약
'05	위성DMB 허가		1개	위성 수 제약
'05	수도권 지상파 DMB 허가	지상파TV군	3개	주파수 제약
		비지상파TV군	3개	
'07	보도FM 허가		1개	주파수 제약

※ '00년 이후 방송·통신 심사 사례 위주로 분석

## □ 주요 논거

- ① 정부가 정교한 시장분석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방송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적정 사업자 수를 제시하여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리스크 부담이 경감되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
- ② 정책목표 및 경제적·사회적·기술적 분석 등을 토대로 적정 사업자 수를 도출하여 선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 ③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 않아 다수의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 방송시장의 사업성 악화,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 인건비 등 가격 상승 등으로 전체 방송시장 발전을 저해할 우려

## 1-1 종편PP 사업자 수

- ◇ 비교평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종편PP 사업자 수를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

**【1안】 2개 이하 사업자 선정**

**【2안】 3개 이상 다수 사업자 선정**

※ 최근 개최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2개 이하의 종편을 선정하자는 입장'과 '3개 이상의 종편을 선정하자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감안

### **【1안】 2개 이하 사업자 선정**

- ①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규 사업자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적절한 수준의 지원과 사업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목표를 달성
- ②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및 사업성 확보를 바탕으로 시장에 조기 안착하여, 방송시장 내 경쟁 구도 형성 가능
  -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시장 부담이 크고 사업자 간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 우려
- ③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송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2안] 3개 이상 다수 사업자 선정**

- ① 다수 사업자의 활발한 시장 경쟁을 통해 방송산업의 경쟁력 향상, 시청자 선택권 확대 등 정책목표를 달성
- ②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의 동태적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내 방송광고 시장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소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는 없음
  - 다양한 편성 형태, 부가 수익 등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방식을 통해 경쟁력 및 사업성 확보 가능
- ③ 방송사업에 대한 수요를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어, 공평한 방송사업 기회를 부여

※ 방송사업에 대한 수요와 정책목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3개, 4개, 5개 이상 등을 선정하는 방안 고려 가능

## 1-2 보도PP 사업자 수

- ◇ 비교평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보도PP 사업자 수를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

**【1안】 1개 사업자 선정**

**【2안】 2개 이상 다수 사업자 선정**

※ 종편PP와 달리, 이미 시장에 2개의 보도PP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

### 【1안】 1개 사업자 선정

- ① 이미 시장에 2개의 보도PP가 존재하고 있고, 종편PP가 추가로 도입될 것이므로 충분한 수준의 시청자 선택권 확대 가능
- ② 현재 보도PP 의무송출 채널이 2개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채널 확보 경쟁 완화 가능

### 【2안】 2개 이상 다수 사업자 선정

- ① 다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 및 시청자 선택권 확대 등 정책목표 달성에 유리
- ② 방송사업에 대한 수요를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어, 공평한 방송사업 기회를 부여

※ 방송사업에 대한 수요와 정책목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개, 3개, 4개 이상 등을 선정하는 방안 고려 가능

## 2

## 종편PP 사업자 군 구분 여부

- ◇ 종편PP를 선정할 때, 사업자 군을 구분하여 선정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1안】** 사업자 군을 구분하여 종편PP를 선정

**【2안】** 별도의 구분없이 종편PP를 선정

### 【1안】 사업자 군을 구분

#### □ 개요

- 사업자 군별로 마련된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는 비교평가 방식의 경우, 사업자 군별로 사업자 수를 결정
- 사업자 군은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기업군 등으로 구분 가능(예시)

#### □ 기존 사례

-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허가의 경우, 지상파TV 및 비지상파TV 사업자 군을 구분하고 각 군별로 3개 사업자 선정

## □ 주요 논거

- 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 ② 다른 특성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 **[2안] 별도의 구분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 개 요

- 사업자 군 등 별도의 구분기준 없이 사업자를 선정

## □ 기존 사례

- 위성방송·위성DMB 허가, 홈쇼핑PP 승인 등의 경우, 별도의 구분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 주요 논거

- 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업자 군 구분 등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② 경쟁이 치열한 사업자 군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간 균등한 사업 기회를 박탈
  - 특정 사업자 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사업 신청 단계가 아닌 심사단계에서 고려되는 것이 적절

### 3

## 보도PP 선정 시기

- ◇ 종편·보도PP를 동시 또는 순차 선정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1안】** 종편·보도PP를 동시에 선정

**【2안】** 종편PP 선정 이후 보도PP 선정

### **【1안】 종편·보도PP 동시 선정**

- ① 신규 사업자에게 시장 확보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
- ② 한 차례로 사업자 선정이 끝나 행정적·사회적 부담이 적음

### **【2안】 종편PP 선정 이후 보도PP 선정**

- ① 시장 상황을 고려한 사업 승인 정책 추진이 가능
- ②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

## IV.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 1. 심사사항 구성

- 방송법 제10조 제1항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구성

※ <심사기준 단계>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2. 심사사항별 배점

- 정책목표와 종편·보도PP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심사사항의 배점 부여 방안을 제시

### 3. 심사사항별 주요 내용

- 심사사항의 하위 심사기준으로, 중분류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제시

# 1

## 심사사항 구성

-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제1항을 토대로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구성

### □ 개 요

- 종편·보도PP 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방송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함

####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호 >

-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⑦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따라서, 방송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심사 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구성

※ <심사기준 단계>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 기존 사례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시, 법 제10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6개 사항 중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외한 5개 사항은 모두 심사사항으로 제시

○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의 경우,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기준에 반영

- 위성방송, 위성DMB 등 특정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지 않는 경우, ‘지역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하위 심사항목으로 통합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사항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음

## □ 심사사항 구성 방안

○ 중요한 심사 요소로 판단되어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사항은 심사기준 마련 시 충분히 반영할 필요

- 다만, 특정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업 허가·승인에 대한 이전 사례를 고려하여,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하위 심사항목으로 통합

☞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은 총 5개로 구성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 정책목표와 종편·보도PP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 부여 방안을 제시

## □ 기존 사례

- 허가·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업 특성과 허가·승인 당시의 정책목표 등에 따라 배점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배점이 높았고,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배점이 낮았음

※ 그 동안 주로 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므로, '기술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중시했던 것으로 판단

- IPTV 종편·보도PP 승인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이 높았음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배점이 낮지만 방송사업의 경우보다는 배점이 상향 조정

\* IPTV 종편·보도PP 승인 심사기준은 '08년 방통위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 IPTV 종편·보도PP 승인절차는 방송법상 종편·보도PP 승인절차를 준용(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심사사항별 배점 사례(단위 : %)】**

심사사항	위성 방송	지상파 DMB	위성 DMB	경인 민방	보도 FM	방송 평균	IPTV (종편보도)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0	25	20	32	30	25.4	2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15	20	20	22	20	19.4	2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5	15	20	20	15	19	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30	30	30	20	30	28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0	10	10	6	5	8.2	1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종편PP 배점 방안**

- 역량있는 종편PP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
- 방송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고 유료방송 및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종편PP의 콘텐츠 경쟁력, 자금 조달 등 경영계획이 중요하고,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종편PP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방안이 중요

- 따라서,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배점 비중을 강화
- 또한,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한 배점 비중도 기존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 종편PP에 대한 심사사항별 배점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

**【1안】**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배점 방안

**【2안】** 정책목표 중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배점 방안

**【3안】** IPTV 종편PP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

**【종편PP 배점 방안(단위 : %)】**

심사사항	【1안】	【2안】	【3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5	23	2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5	27	2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3	23	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	15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2	12	12
합 계	100	100	100

## □ 보도PP 배점 방안

- 역량있는 보도PP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보도PP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과 함께,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도 중요
- 따라서,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배점 비중을 강화

☞ 보도PP에 대한 심사사항별 배점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

**【1안】** 정책목표를 고려한 배점 방안

**【2안】** IPTV 보도PP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

**【보도PP 배점 방안(단위 : %)】**

심사사항	【1안】	【2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30	2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0	2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5	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0	12
합 계	100	100

- ◇ 심사사항의 하위 심사기준으로, 중분류에 해당하는 심사 항목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제시

## 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 심사항목 구성

- 사업계획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청법인(권소시엄)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사

-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 ④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등 4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③ 신청법인 및 구성주주의 건전성·적정성, ④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를 주된 심사항목으로 구성

### □ 심사항목 주요내용

-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방송법 규정 [법 제5조 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토대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방안 등을 평가

-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대표자·편성책임자·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의지, 재난 방송 편성계획, 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평가

②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규정의 이행 계획 등 시청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

- 자체심의기구 운영 [법 제86조],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87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법 제89조] 등을 평가
-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안, 노약자·장애인·국내 거주 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을 평가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 신청법인·주주구성의 적정성과 신청법인·구성주주의 건전성 등을 평가

-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이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신청법인·주주구성의 적정성을 평가
- 신청법인 및 구성주주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구성주주의 건전성을 평가

④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지역·사회·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실적 및 계획을 평가

- 공익사업, 지역·사회·문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역 관심사항 등 지역 밀착 프로그램 제작·편성·유통, 유·무형 문화의 보존·발전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을 평가

## 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 □ 심사항목 구성

-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편성·제작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우수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②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등 3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계획, ②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계획을 주된 심사항목으로 구성

- 플랫폼사업자인 위성방송·지상파DMB·위성DMB 허가 심사의 경우 채널 구성계획, 홈쇼핑PP·홈쇼핑DP(T-commerce) 승인의 경우 상품 구성계획을 포함

### □ 심사항목 주요내용

-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독창성·우수성, 편성의 자율성 확보 방안 등을 평가
- ②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 및 경영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평가
-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국내·외 다양한 제작주체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 심사항목 구성

- 시장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사업추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재무, 인력 운영 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경영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 ① 사업추진계획, ②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③ 납입자본금 규모, ④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⑤ 사업성 분석, ⑥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등 6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① 채널운용 및 마케팅계획(사업추진 계획), ②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 ③ 자금 조달·운영계획, ④ 사업성 분석, ⑤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을 심사항목으로 구성

### □ 심사항목 주요내용

- ① (사업추진계획) 시장 분석 및 경영전략, 국내·외 콘텐츠 유통, 해외 진출전략,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②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분야별·연도별 소요인력 산출 및 충원 계획, 우수 인력 확보 방안, 신규 인력 충원 및 교육 훈련 계획 등을 평가
- ③ (납입자본금 규모)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
- ④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차입 및 증자계획 등 자금 조달 계획과 시설투자, 경상운영비 등 자금 운영계획을 평가

- ⑤ (사업성 분석) 수익·비용분석의 타당성·구체성,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 전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등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등을 평가
- ⑥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대표자·임원의 전문성 등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경영 감시기구 등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

## 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 심사항목 구성

- 신청법인(컨소시엄)의 재무적 안정성 등 재정적 능력과 방송 운영의 기반이 되는 기술적 능력을 심사
- ① 재정적 능력, ② 자금출자 능력, ③ 기술적 능력 등 3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① 재정적 능력, ② 자금출자 능력(홈쇼핑PP 제외), ③ 기술적 능력(플랫폼사업자의 경우 세분화)을 심사항목으로 구성

### □ 심사항목 주요내용

- ① (재정적 능력) 신청법인·구성주주의 총자산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등의 재무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재정적 능력을 평가
- ② (자금출자 능력) 지속적인 자금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신청법인·구성주주의 신용등급 등 자금출자 능력을 평가

- ③ (기술적 능력) 방송 제작·송출을 위한 시설 설치·운용계획, 콘텐츠 제작·편집 기술 확보계획, 3D 등 첨단 방송 기술 활용 및 사업화 방안 등을 평가

## 마.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 심사항목 구성

- 방송 사업 또는 방송관련 사업 등을 통한 방송발전 지원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 ① 방송발전 기여계획, ②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③ 출연금 등 3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① 방송영상산업 지원계획, ② 방송발전 기여 의지(홈쇼핑PP는 유통산업 포함), ③ 방송발전기금 출연(홈쇼핑DP 제외),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을 주된 심사항목으로 구성

### □ 심사항목 주요내용

- ① (방송발전 기여계획) 방송산업 관련 인력 양성,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등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등을 평가
- ②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관행 정착 방안,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우수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③ (출연금)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 V.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

### 1. 승인 최저점수 설정

- 심사기준 단계에 따라 ① 전체 총점, ② 심사사항별(대분류) 총점, ③ 심사항목별(중분류) 총점 등 세 단계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

### 2. 납입자본금

- 종편·보도 PP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마련

### 3. 출연금

- 신규 승인을 받은 종편·보도PP가 납부하는 최소 출연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마련

### 4.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 동일인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중복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

### 5.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 동일인이 복수의 승인 신청법인(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

# 1

## 승인 최저점수 설정

- ◇ 심사기준 단계에 따라 ① 전체 총점, ② 심사사항별(대분류) 총점, ③ 심사항목별(중분류) 총점 등 세 단계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

※ <심사기준 단계>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가.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

#### □ 개요

-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총점이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종편·보도PP 사업 심사에서 탈락

#### □ 기존 사례

- IPTV 종편·보도PP 승인 및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경우,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를 모두 설정
- 위성DMB·지상파DMB·보도FM 허가 및 홈쇼핑DP(T-commerce) 승인의 경우, 전체 총점에 대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고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는 설정하지 않음
- 위성방송 허가 및 홈쇼핑PP 승인의 경우,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지 않음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 사례】**

구 분	전체 총점	심사사항별 총점
IPTV 종편.보도PP 승인	80% 이상	70% 이상
IPTV 제공사업 허가 기간통신사업 허가	70% 이상	60% 이상
위성DMB 허가 홈쇼핑DP 승인	70% 이상	-
지상파DMB 허가 보도FM 허가	65% 이상	-
위성방송 허가 홈쇼핑PP 승인	-	-

※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의 경우, 총점의 65% 이상(미만인 경우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심사사항별 40% 이상(미만인 경우 승인조건 부과 가능)으로 설정

**□ 승인 최저점수 설정 방안**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할 필요
- 각 심사사항에 대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함으로써,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사항별 사업계획의 우수성을 담보

☞ 전체 총점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의 70%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

※ 승인 심사시, 각 점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

80% 이상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20% 미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나. 심사항목별 총점

◇ 심사항목 단계에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1안】** 심사항목별 총점이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

**【2안】**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지 않음

### **【1안】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 제시**

#### □ 개 요

- 심사항목별 총점이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
- 승인 최저점수는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 보다 완화된 50% 이상으로 설정

※ '00년 이후의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경우,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를 적용한 사례는 없으나, 위성DMB 허가의 경우 '채널구성 계획의 우수성'이라는 특정 심사 항목에 대해 심사항목 총점(전체 중 8%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탈락하도록 함

#### □ 주요 논거

- ①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심사항목별 최저점수를 정함으로써, 각 심사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

- ② 최저 승인점수를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엄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2안】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지 않음**

### □ 개 요

-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총점까지만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고,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는 제시하지 않음

### □ 주요 논거

- ①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엄격한 심사가 가능
  - 모든 신청법인이 모든 심사항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음
- ② 특정 심사항목의 점수가 낮은 경우 승인조건 부과 등이 가능하므로,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 설정은 지나치게 엄격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별 총점이 해당 심사항목 총점의 50%에 미달하는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는 **【1안】** 으로 추진

- ◇ 종편·보도PP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

## 가.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 □ 개 요

- 납입자본금은 초기 시설투자 및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 적정 수준의 납입자본금 규모는 신청법인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어,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제시
- 시장 진입 초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할 필요
  - 따라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종편·보도PP의 예상 연간 영업비용을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설정

### □ 종편PP 영업비용

- 현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중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사업 초기 수준의 종편을 고려하는 경우, 연간 약 3,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초기 영업비용에 물가상승율을 감안

## □ 보도PP 영업비용

- 기존 보도PP 수준을 고려하는 경우, 연간 약 400억원~8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규모로 종편PP는 3,000억원, 보도PP는 400억원을 제시

## 나. 납입자본금 규모 심사방안

◇ 납입자본금 규모에 대해 두 가지 심사방안을 제시

**【1안】**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 (계량 절대평가)

**【2안】**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계량 상대평가)

※ 최근 개최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납입자본금 규모가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만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납입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감안

### **【1안】 계량 절대평가**

## □ 개 요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

## □ 주요 논거

- ① 납입자본금 규모는 각 사업자의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과도한 수준의 자본금은 오히려 사업 운영에 부담이 되고,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 시장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
- ② 최저 수준의 자본금 규모 충족 여부만을 평가함으로써 신청법인 간 자본금 확충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 **[2안] 계량 상대평가**

### □ 개 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심사항목 배점의 50%,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과 최고 금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 순으로 50%~100%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점 처리

## 【납입자본금 규모에 대한 계량 상대평가 방안】

<b>평가 점수</b>	심사항목 배점의 100% 부여	50% 초과 ~ 100 % 미만 부여	50% 부여	0점 처리
<b>납입자본금 규모</b>	최고 금액	금액 순으로 균등 배분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미달

※ 예를 들어, 종편PP 신청법인이 제시한 최고 납입자본금이 5,000억원이고, 정부가 제시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이 3,000억원인 경우, 4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배점의 1% 가산

### □ 주요 논거

- ①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평가 점수를 차등함으로써 심사의 변별력 확보 가능
- ② 납입자본금 규모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병행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자본금 확충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 가능

☞ **(절대평가)**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1안】** 계량 절대평가로 추진

**(비교평가)** 신청법인 간 순위 산정을 위한 변별력이 중요하므로,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2안】** 계량 상대평가로 추진

- ◇ 신규 승인을 받은 종편·보도PP가 납부하는 최소 출연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

※ '00년 이후 홈쇼핑DP('05년)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출연금 납부를 심사기준에 포함

### 가. 최소 출연금 규모

- ◇ 신규 승인을 받은 종편·보도PP가 납부하는 최소 출연금 규모를 설정

**【1안】**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신청법인의 최소 출연금 규모로 설정

**【2안】** 특정 금액을 지정하여 최소 출연금 규모로 설정

#### **【1안】 납입자본금의 일정 비율**

#### □ 개 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신청법인의 최소 출연금 규모로 설정

※ 신규로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3.11)

## □ 기존 사례

- 위성DMB(10%, 137억원 납부), 경인방송(5%, 70억원 납부) 허가의 경우, 납입자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최소 규모 설정

## □ 주요 논거

- 각 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한 출연금 부과가 가능하고, 출연금 규모를 산출하는 근거가 명확

## [2안] 특정 금액을 지정

## □ 개요

- 특정 금액을 지정하여 최소 출연금 규모로 설정

## □ 기존 사례

- 위성방송(300억원) · 지상파DMB(10억원) · 보도FM(5억원) 허가 및 홈쇼핑PP(50억원) 승인의 경우, 특정 금액을 지정

## □ 주요 논거

- 모든 신청법인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최소 출연금 규모가 설정되므로 형평성 제고

☞ 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정 금액을 지정하되, 산출 근거가 자의적이지 않도록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최소 출연금 기준 규모로 설정

※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 10% 이내에서 결정

## 나. 출연금 규모 심사방안

◇ 출연금 규모에 대해 두 가지 심사방안을 제시

**【1안】**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 (계량 절대평가)

**【2안】**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계량 상대평가)

### **【1안】 계량 절대평가**

#### □ 개 요

-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

#### □ 기존 사례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는 계량 절대평가 실시

※ 다만, 경인방송 및 보도FM 허가 심사의 경우,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했으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하지 않고 감점 처리

## □ 주요 논거

- ① 최저 수준의 출연금 규모 충족 여부만을 평가함으로써 신청법인 간 출연금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 ②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심사의 객관성·명확성 제고

## **[2안] 계량 상대평가**

## □ 개 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
  - 최소 출연금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50%,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
  - 최소 출연금 기준과 최고 금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 순으로 50%~100%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
  - 최소 출연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점 처리

### **【출연금 규모에 대한 계량 상대평가 방안】**

<b>평가 점수</b>	심사항목 배점의 100% 부여	50% 초과 ~ 100% 미만 부여	50% 부여	0점 처리
<b>출연금 규모</b>	최고 금액	금액 순으로 균등 배분	최소 출연금 기준	최소 출연금 기준 미달

## □ 주요 논거

- ①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규모에 따라 평가 점수를 차등함으로써 심사의 변별력 확보 가능
- ② 방송 발전에 대한 기여가 큰 사업자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 **(절대평가)**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 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1안】** 계량 절대평가로 추진

**(비교평가)** 신청법인 간 순위 산정을 위한 변별력이 중요하므로,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2안】** 계량 상대평가로 추진

## 4

#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 ◇ 동일인\*이 종편·보도PP로 선정되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중복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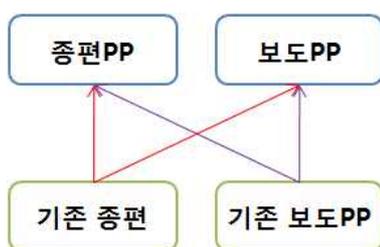
※ 동일인 : 계열회사, 30% 이상 출자한 자 등 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

## 가. 기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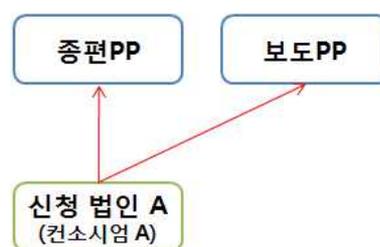
### □ 개요

- 동일인이 종편·보도PP로 선정되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중복하여 소유하게 되는 상황
  - 구체적으로 ① 현재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TV방송사업자 또는 보도PP가 신규 종편·보도PP 승인을 신청하여 소유하는 경우(기존 사업자의 승인 신청)와,
  - ② 동일한 신규 신청법인(컨소시엄)이 복수의 종편·보도PP에 승인을 신청하여 소유하는 경우(신규 사업자의 복수 신청)로 구분

#### 【 ① 기존 사업자의 승인 신청 】



#### 【 ② 신규 사업자의 복수 신청 】



## □ 검토 의견

- 동일인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의 다양성 등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보도프로그램 편성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 또는 보도PP에 대해서만 허용 [시행령 제50조 제5항]
- 따라서, 동일인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중복하여 소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반영

## 나. 심사 방안

### ① 기존 사업자가 승인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단계) 승인 신청시,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채널에 대한 '처분계획(양도·폐업 등)'을 제출
  - (심사 단계) 심사위원회가 청문 등을 병행하여 신청법인이 제출한 처분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
    -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채널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심사항목은 과락 처리
- ※ 방송의 다양성의 실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

- (승인 단계) 해당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 방송 사업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 교부

## 2 신규 사업자가 복수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단계)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 신청 철회계획'을 제출
- (심사 단계) 심사위원회가 청문 등을 병행하여 신청법인이 제출한 철회계획을 심사
  - 승인 신청에 대한 철회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심사항목은 과락 처리

※ 방송의 다양성의 실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

- (승인 단계) 해당 법인이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한 개에 대한 승인 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 교부

5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권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

※ 동일인 : 계열회사, 30% 이상 출자한 자 등 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

**【1안】**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 또는 감점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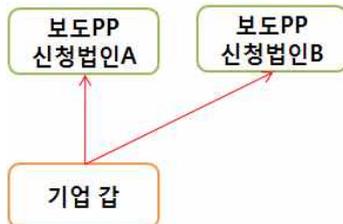
**【2안】**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허용

※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① 다수의 종편PP 신청법인, ② 다수의 보도PP 신청 법인, ③ 종편.보도PP 신청법인에 구성 주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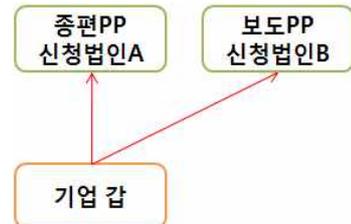
**【①종편PP 중복 참여】**



**【②보도PP 중복 참여】**



**【③종편.보도PP 중복 참여】**



**【1안】 중복 참여 금지 또는 감점 처리**

□ 개 요

-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 또는 감점 처리

## □ 기존 사례

- 홈쇼핑PP 및 홈쇼핑DP(T-commerce) 승인의 경우, 복수의 신청법인에 속한 주요 주주가 있는 경우, 감점 처리
-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 허가의 경우, 사업자 군을 구분(지상파/비지상파TV군)하여, 어느 한 사업자군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사업자군 신청법인에 참여 금지
  - 지역 지상파DMB 사업 허가의 경우, 방송권역별로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신청법인에 참여 금지
  - 경인민방 사업 허가의 경우,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신청법인에 참여 금지

※ IMT-2000 사업 허가시에도 특정 법인이 복수의 허가 신청법인 참여 금지

## □ 주요 논거

- ① 신청법인 간 차별성을 강화하여 방송의 다양성 제고
- ② 다양한 주체의 방송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

### **[2안] 중복 참여 허용**

## □ 개 요

-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허용

## □ 기존 사례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중 위성방송·위성DMB·보도FM 허가 심사의 경우, 중복 참여를 제한없이 허용

## □ 주요 논거

- ① 신청법인이 사업자 선정 이후 상장될 경우 주식의 매매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의 실익이 없음
- ② 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지분 제한을 신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법적 근거 없이 종편·보도PP 사업 참여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 발생 우려

☞ 심사의 합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되, 방송의 다양성 제고 등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

- **【1안】** 으로 결정하는 경우,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감점 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

※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 5% 이내에서 결정

- **【2안】** 으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법인 간 주주구성의 차별성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안으로 추진

## VI. 향후 계획

### 가.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의결

- 의견수렴 : 공청회 개최(9월초) 등 온·오프라인 병행
- 의결 일시 : 9월 중순

### 나.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의결

- 보고 일시 : 「기본계획」 의결 이후(9월 중)
- 주요 내용 :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평가방법, 승인 신청 요령 등
- 의결 일시 : 10월중

### 다. 신청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공고 기간 : 10월 ~ 11월 중

※ 공고 기간은 1개월 이내로 고려

- 설명회 일시 :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의결 직후
  - 주요 내용 : 「기본계획」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 응답 등

## 라. 시청자 의견 수렴

- 제출 기간 : 11월 ~ 12월 중(신청서 접수 이후)
-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판

※ < 방송법 제10조 제2항 > 방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함

## 마.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 의결

- 의결 일시 : 11월 ~ 12월 중
- 주요 내용
  - 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승인 결격사유 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 실무에 관한 사항 등

## 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의결

- 의결 일시 :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직후

※ '승인 심사위원회'는 12월 중 구성·운영

- 주요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대상
  - 승인조건 부과 및 승인장 교부 계획 등

※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공고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0 - 72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을 담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취 지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을 담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에 대해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별첨 참조

3. 의견 제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2010년 9월 6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110-777)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 담당자

4.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 (☎ 02-750-1254)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 속기록

- 9.2 (목) 14: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 -



---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

---

### ○ 사회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방송학회장 김현주 교수님의 사회로 본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외람되게도 사회를 맡았다는 이유로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송학회 회장을 하고 있고 광운대학교 교수 김현주입니다. 애매한 시기에 방송학회장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무거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소임으로 알고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이니만큼 오늘 공청회가 굉장히 우아하고 합리적인 공론장이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방청객들도 여러 순서에 참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부디 토론의 규칙과 예의를 갖춰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은 2시 45분에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의 발제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소개해 드릴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물론 여기 올라와 계시는 패널리스트 열한 분을 포함해서 순서상, 아까 사실 이 앞자리에 쪽 앉도록 안내를 해 드렸는데 방청객들과 스킨십을 더 가까이하기 위해서 자리를 뒤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 다섯 분이 모두 와 계십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참여하실 각 사업승인 신청 예상자이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종합편성채널에서 다섯 분 와 계시고, 보도전문채널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을 앞으신 순서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다른 순서는 아니고 방금 저희들이 여기 내려오기 전에 2층 회의실에서 성함 가나다순으로 해야 될지, 회사명 가나다순으로 해야 될지 너무 애매해서 그냥 추첨으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토론자 소개 ) 이렇게 열한 분이 오늘 공청회 순서에 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시간이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총 시간은 발제시간이 35분이 주어졌고, 열한 분이 참여하는 토론시간이 패널토론 70분 그리고 방청인 질의응답 20분 하면 저녁 5시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방송의 날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날 행사도 많이 있고 거기에 참석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오다 보니까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장 정도를 능가하는 열기가 느껴지는데 보신 분은 보셨지만 지금 4대 포털 미디어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고 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앱을 통해 중계하는 최초의 세미나라고 들었습니다. 진귀한 기록을 갖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김준상 국장의 발제가 35분 정도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패널들이 토론, 의견발표에 들어가는데 의견발표의 기회가 각 패널당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견발표는 5분 이내에서 하게 되는데 그 5분 동안에는 발

제내용의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각자 자기의 입장을 발표하면 됩니다. 2분 이내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두 번째 흐름은 각 중점 이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야를 넓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두 번째 발언에 가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질의응답이 있는데, 방청인 질의응답은 여기 계신 열한 분이 그 질의응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발제하신 분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발제하시는 분이 방송정책국장인데, 국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에 따라서는 만약 국장이 답변하더라도 그 답변 내용에 한계가 있겠지요. 향후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의사, 위원회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가끔 느끼는 것은 주로 질의응답으로 가야 되는데 가끔씩 정견발표식의 그런 기분으로 질의응답에 응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가끔씩 많은 분이 질의응답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견발표식, 정견발표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의견표명식 질의응답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열한 분이면 토론자가 참 많은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처음 순서가 종편과 보도채널이 섞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면 헛갈릴 것 같고, 사회 보는 저도 헛갈릴 것 같아서 좀 불편하지만 이쪽으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신청 예정자, 이쪽으로 보도채널 이렇게 그루핑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렇게 편의상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흐름은 종합편성 패널 토론자들이 먼저 그 순서로 하시고, 두 번째는 보도채널에서 하시고 종합편성채널이 이어서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공평이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서 방금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앞부분을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8월 17일에 위원회 보고한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입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계획(안)이 발표되고 위원회 내에서도 코멘트가 있었을 것이고, 위원들의 의견이 첨가됐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조금은 더 보태져서 오늘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발제를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 말은 마무리하고, 바로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의 발제 혹은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35분 쓰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방금 소개받은 발제자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내용을 발표해 드려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35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가능하면 저는 조금 짧게 해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지난번 8월 17일 발표한 승인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첫 번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안)은 활발한 논의를 위해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복수안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각 쟁점별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안)의 보고과정에서 우리 방통위 내부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안)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부터는 배포한 자료 가운데 앞부분에 보시면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의 주요 경과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향후 계획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8월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계획기본(안)을 마련한다는 보고 내용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관련 제도도 함께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에는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을 위한 신문부수 확인 인증기관으로 ABC협회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사업자 선정의 정책목표로는 모두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둘째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 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셋째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넷째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등 이러한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심사기준 등에 충실히 반영했고,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하게 승인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으로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과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 수를 정해야 되는데 종편PP의 경우에는 2개 이하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의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보도PP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 수에 대한 최근 논의를 반영해서 소수사업자 선정과 다수사업자 선정의 장·단점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차원에서 분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자 수를 정하게 되면 1개 사업자, 2개 사업자, 3개 사업자 등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편성PP를 선정할 때 사업자군을 구분할지에 대해서도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 기업군 등으로 사업자군을 구분하는 방안과 사업자군의 별도 구분 없이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도전문PP의 선정 시기와 관련하여 종편PP와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과 종편PP를 선정한 이후 보도PP를 선정하는 2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 구성 및 배점을 말씀드리면 준비 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준이 되고, 심사위원회에게는 평가의 지침이 되는 이 심사기준은 먼저 대분류에 해당되는 심사사항, 중분류에 해당되는 심사항목, 소분류에 해당되는 세부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 가운데 기본계획(안)에는 심사사항에 대한 구성과 배점 그리고 심사항목의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심사항목의 배점과 세부심사항목의 구성 및 배점 등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이 확

정된 후 별도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송사업을 허가 승인할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6개 사항, 첫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둘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셋째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넷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다섯째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여섯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이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승인 심사에서는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하위 심사항목으로 통합해서 모두 5개의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심사사항 구성(안)에 대해서는 4페이지 우측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배점은 정책목표와의 관련성, 종합편성·보도전문PP의 특성과 기존 허가·승인 심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종합편성PP 승인심사의 배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금조달 등 경영계획과 방송발전의 지원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배점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방안, 둘째 정책목표 가운데 콘텐츠 경쟁력을 특별히 강조해서 배점하는 방안, 셋째 인터넷멀티미디어 종합편성 콘텐츠 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전문PP 승인심사 배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방안과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배점 방안으로는 크게 2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방안, 둘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승인심사 기준을 적용한 2가지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배점방안은 <표>로 보시는 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사항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표>에 보시는 대로 심사사항의 하위 심사 기준인 심사항목은 이전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되, 정책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19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과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납입자본금 규모와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체 총점 그리고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별 총점, 중분류에 해당되는 심사항목별 총점 등 3단계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한 승인 최저점수는 전체 총점의 경우에는 80% 이상, 대분류에 해당되는 심사사항별 총점은 70% 이상, 중분류의 심사항목별 총점은 5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 시 적용되는 평가척도가 80% 이상은 매우 우수, 60~80% 미만은 우수, 40~60% 미만은 보통 수준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총점의 기준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업자를 선정하되, 어느 한 분야에서도 보통의 평균수준 밑으로 평가받은 사업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내부 위원님 중에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항목별 중요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각각의 심사항목별로 승인점수, 승인 최저점수를 차등적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초기 시설투자과 사업운영비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납입자본금의 최소규모와 심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납입자본금의 적정 수준은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승인 계획기본(안)에서는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시하였습니다.

시장 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운동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해서 종합PP는 3,000억원, 보도전문PP는 400억원을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님들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한 3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년도는 3,000억원, 2차년도는 2,000억원, 3차년도는 1,000원으로 해서 최소 6,000억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셨고, 또 한편 회사 운영의 효율성과 기업가치의 평가측면에서 3,000억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 방송사와 같은 수준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00억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소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며, 그렇지만 승인 신청법인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최소 납입자본금의 기준 금액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심사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안했는데, 먼저 절대평가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충족하면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이에 미달하면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교평가를 채택하는 경우 심사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의 금액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기준금액이 3,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3,000억원을 제시한 준비사업자에게는 해당 항목의 배점의 50%를 부여하고, 승인신청법인들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중 최고액이 4,000억원이라고 한다면 기준금액에서 2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가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시한 3,000억원, 4,000억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의미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납입자본금에 대한 평가방식은 최근 개최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납입자본금 규모가 일정금액을 충족하면 만점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납입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규모와 심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보도전문PP가 납부하는 최소 출연금 규모와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출연금 납부는 2000년 이후 홈쇼핑 데이터 PP 승인을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 허가 승인 시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이번 신규 종편·보도PP 승인심사에서는 출연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최소 납입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서 10% 이내에 설정하도록 그러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심사와 마찬가지로 출연금에 대한 심사도 사업자 선정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절대평가를 채택하는 경우 최소 출연금 금액을 충족하면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미달하면 해당 심사항목을 0점 처리하는 방안과 비교평가를 채택하는 경우 심사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종합편성·보도전문PP 선정 시에는 방송을 다양성 제고 등 정책목표를 고려해서 특정 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 편성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TV방송사업자 또는 보도PP가 신규의 종편·보도PP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계획을 심사하고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동일한 신규 신청법인이 복수의 종편·보도PP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 신청 철회 계획을 심사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1개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한 신청법인의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면 감점 처리하는 방안과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되, 신청법인 간 구성주주의 차별성을 비교해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만 구성주주의 지분변동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위원회 보고 시에서 이러한 문제도 공청회에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된 공청회를 포함하여 온라인 의견제시, 전자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9월 중순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승인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 및 배점, 평가방법과 승인 신청요령 등이 포함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 기준을 10월 중에 의결한 후 승인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승인 신청공고는 10월에서 11월 중에 거쳐 할 예정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 승인심사계획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승인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PP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섯 분 위원 가운데 두 분 위원님께서서는 현재에 계류되어 있는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현재 결정을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PP 도입에 대한 주요 경과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승인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인쇄된 내용에 담겨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새로운 쟁점 이슈들도 몇 개 더 등장한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간혹 다니기도 했을 텐데 그동안 토론회, 학계, 시민단체, 이익단체, 정치권 심지어는 사업 신청예정자 그들 스스로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세미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열릴 때마다 관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여론지형 변화 측면에서, 어떨 때에는 미디어 산업 지형 재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떨 때에는 콘텐츠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어떨 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자 수, 적정사업 기준, 초기 투자자본금 규모 등등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졌는데, 논의는 제 기억으로는 다양해서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나름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담으려고 고민한 흔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더웠는데 방송정책팀에서 휴가도 반납하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를 8분 정도 일찍 끝내 주셔서 지금부터는 아주 온전히 토론자들한테 2분에서 7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 행사의 제목이 토론회가 아니고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도 보셨지만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꾸준히 위원회에서 여론수렴을 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공청회는 아마 오늘과 내일 이 자리에서 열리는 것이 전

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학회가 대응하기에는 10월 중순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2학기 개학해서 조직이 organize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자리일 수도 있고, 마침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다 여기 모여 계시니까 부담은 되겠지만 부담 느끼시지 말고 기탄없이 솔직히 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7분 동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마음 편하게 그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한국경제신문 이희주 실장께서 먼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하게 5분 드리겠습니다.

○ 이희주 한국경제 실장

- 한국경제신문 이희주입니다. 추천해서 제가 1번을 뽑았습니다. 우선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편 선정방식 및 사업자 개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종편채널의 정책적 목표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콘텐츠 시장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디어 영업환경의 적용 등등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제작사들과의 생산을 통해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충분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충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재무구조와 수익 모델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콘텐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종편 자본금으로 3,00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김 국장께서 오늘은 말씀안 하셨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면 왜 3,000억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상파의 초기 사업연도 영업비용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3,000억원이더라, 그 정도는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상파는 SBS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SBS '92년 영업비용은 제작비, 인건비, 일반경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영업비용을 현가로 환산하면 3,000억원이 나옵니다. 저는 SBS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종합편성 사업자 몇 개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초기 사업연도부터 5년간 '92년~'96년까지 SBS 영업비용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2조원쯤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SBS가 설비에 투자한 돈을 현재 가격으로 역시 환산하면 3,000억원 정도 됩니다. SBS는 초기 5년간 현재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2조 3,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종편도 SBS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야 종편사업자 선정에 의의가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규모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여건입니다. SBS는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큰 무리 없이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 이익을 냈습니다. SBS가 초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데는 시장여건이 대단히 우호적이었던 점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광고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때입니다. '90년~'95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광고시장의 규모가 한 2조원쯤 됐습니다. 그것이 '95년에는 4조 9,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5년간 2.4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의 우호적인 광고시장 여건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물론 SBS가 콘텐츠를 잘 만들었겠지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지금의 시장 여건은 어떠한? 2000년대 이후에 국내 광고시장은 사실상 정체기입니다. 2000년~2005년까지 광고시장 규모가 1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또 2005년부터 작년까지는 불과 3% 늘었습니다. 광고시장 여건이 그때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여기에 종편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KBS 수신료를 올려 주어서 KBS 광고물량이 시장에 흘러나오게 하고, 이 규모는 대략 2,400억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또 간접광고, 가상광고를 허용해서 민영미디어랩을 허용해서 신규 광고수입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KBS 물량 중에서 케이블시장으로 흘러들어온 물량은 60%밖에 안 된다는 것이 CJ미디어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2조 3,000억원 정도 돈이 투자되는데, PP수신료 수입 또는 콘텐츠 판매수입 등등 이야기하지만 콘텐츠 판매수입은 초기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실적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PP수신료 수입도 잘해야 연간 500억원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SO들의 설명입니다. 과연 이러한 구조에서 종합편성 TV가 2개, 3개 나와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수입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양질의 콘텐츠에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2개, 3개 선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상파와의 경쟁이 아니라 종합편성끼리 마이너리그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적은 돈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막장 류의 저질 콘텐츠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목표는 완전히 일그러지고 거꾸로 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지금 중요한 것은 김준상 국장의 발표 내용 중에 복수안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복수안에 대한 의견도 위원회에서 꽤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편성 채널사업 예정자 중에 두 번째 패널리스트 고종원 조선일보 기획팀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고종원 조선일보 팀장

- 고종원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안)의 주요쟁점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나눠서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자 수와 선정방식은 정부의 정책목표와 시장이 갖는 한계 상황들, 제약조건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쪽에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광고시장의 GDP 대비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자 수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배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편이 성공하는 문제에는 자본금의 과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종편을 운영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유연성 있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요주주들의 과거 영업실적이 될지 아니면 재무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계량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본금을 얼마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로 볼 때 재무능력 그다음에 재정 및 기술능력 자체가 15점, 20점 이런 안이 나왔는데 과거의 사례로 볼 때 30점 정도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주들의 안정적인 자금공급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재무능력 부분이 최소한 25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납입자본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납입자본금 문제는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정

부에서 판단해서 점수를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매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절대금액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적정한 자본금이 투여되느냐, 그리고 그런 자본금을 가지고 충분히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출범한 SBS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 납입자본금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다양한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납입자본금이 과연 적절한지, 절대금액의 과다가 아니라 납입자본금의 적정성 문제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판단으로서 10% 이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유료시장에 플레이어인 종편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10%까지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금액을 정하고 그 절대금액을 가지고 지금의 10%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낮게 가지고 가면서 절대금액을 충족시키면 점수를 충분히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편이 돈 싸움이 안 되고 무조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놓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5% 이상 주주들이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컨소시엄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컨소시엄 구성주주들이 타 컨소시엄에 예를 들어 4%, 5%, 1%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한 주주들은 타 컨소시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도록 출자를 금지하는 방식의 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진흥계획이 될지 아니면 투자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말의 잔치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MOU라든지 아니면 사업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명확하게 백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사실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영업권 양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어떤 회사에 출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컨소시엄 대표자가 단독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배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방통위에서 엄밀하게 따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류호길 매일경제TV 종편추진본부 사무국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 류호길 매일경제TV 국장

- 우선 쟁점 중에 복수안으로 제시한 사업안 선정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절대평가 준칙주의라야 경쟁력 있는 종편이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사업자 수를 1~2개로 한정해서 하는 비교심사, 상대평가 방식의 심사를 가리켜서 분장을 잘한 미인을 뽑는 대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인을 뽑아 놓으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정말 심장에 무엇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체력은 되는지 확인하기가 짧은 기간 동안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아놓고도 사업을 잘할지 사실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숫자도 제한하고, 시장도 조성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이런 판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자칫하면 선정되어서 절대평가기준을 혹시 통과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수를 제한하지 않겠느냐, 사업자 수는 시장에 맡기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시장을 정말 늘려 놓으면 사업을 할 만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만약에 절대평가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사업자의 역량을 미리 사전에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 수는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 19개 심사항목에 대해서 과락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방통위의 상임위원 분께서 지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고, 좀 덜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성적인 평가가 많은 부분이 있고, 정량적인 평가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과락을 50% 적용해서 그 하나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도 탈락하는 상황이 생기면 나중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부항목 중에서도 과락제도를 할 것은 신중하게 항목을 정해서 발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것은 매일경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짧은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채널 처분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처분이라는 모호한 그런 의미 때문에 매경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상당 기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매경이 종편을 포기했다, 심지어 기자들이 짐 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서 방통위에서 매경한테 '사실 그러냐?' 이런 확인까지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또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 명확한 수준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산이라고 하면 라이선스자산이 있고 채널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기타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 중에서 아마 방통위에서는 라이선스자산에 대해서 처분계획을 세우라고 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종편이 온에어될 시점에 현재의 채널은 그것은 보도가 아닌 다른 방송의 콘텐츠로 장르 전환을 아마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방송사업에 신규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은 방송법 제69조의 신문구독률과 방송 시청률의 합산점유율이 30%를 넘으면 자연스럽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이것은 역차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해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글로벌 미디어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글로벌 미디어육성이 이번에 하나의 중요한 것인데 좀 지나친 제한이지 않느냐, 그래서 법조계 쪽에서도 예를 들어 법률 유보의 원칙이 위배된다, 전문용어지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도 매일경제는 그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서 계획을 세우려면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반드시 종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존 법인을 증자하는 종편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서에는 자본금 3,000억원 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노하우와 또 채널, 기타 인력, 자산 이것이 종편 선정을 위해서 제대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서상에 조금 더 저희들을 위한 구체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편의 성공은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화려하게 썼느냐, 얼마나 돈을 잘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방송사업의 수행능력 또 검증된 경영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데, 종편의 수련장이 곧 지금까지의 플랫폼사업자들이 해 온 케이블이나 아니면 스카이라이프의 채널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기본계획서상에 이런 경험들이 잘 반영될 수 있고 이런 노하우들이 종편의 성공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김차수 동아일보 방송사업본부장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 김차수 동아일보 본부장

- 동아일보 김차수입니다. 우선 복수안을 제시한 항목별로 저희 입장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방식과 사업자 수와 관련해서 절대평가와 비교평가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앞서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결정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광고시장 규모 등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너무 많은 사업자를 승인할 경우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적격 예비사업자를 걸러내 적정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 절대평가와 비교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안)을 보면 과락기준인 최저점수를 상당히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비교평가를 선택하더라도 절대평가의 장점을 일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본금 규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종편채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 수의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군 구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기업군으로 묶는 것부터가 자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종편사업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사업자군을 나누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 컨소시엄이라고 해도 그 안에 이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방통위가 제시한 대로 사업자군을 구분할 경우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군별로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일부 사업자군은 경쟁이 적은 데 비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불리 일으키고 있는 언론사군은 역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산업이 다른 산업과 융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칸막이를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복투자 규제문제입니다. 특정 컨소시엄에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그 컨소시엄의 사업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가겠다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 기업이 경쟁하는 2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중복투자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주주 구성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한 기업이 여러 방송사의 주요주주가 될 경우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 없이 중복투자를 제한할 경우 논란이 일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 컨소시엄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과 차별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을 추가로 허용하

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여론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한 사업자가 보도채널과 종편채널을 동시에 참여해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자 선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편과 보도채널을 선정을 동시에 하느냐, 순차로 하느냐 복수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편채널사업자보다는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종편PP를 선정한 다음에 다시 보도PP를 선정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연내 선정이라는 방통위의 방침 내지 계획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측면에서 별 무리가 없다면 동시에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2분 발언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김수길 중앙일보 방송본부장이십니다.

○ 김수길 중앙일보 본부장

- 김수길입니다. 저희도 기본계획(안) 순서대로 저희 쪽 입장을 차례차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방식에 대해서 <제1안> 절대평가 방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누차 이야기가 됐지만 2개나 3개 이렇게 미리 숫자를 정하면 어떻게든 이권을 따겠다는 이권심리가 작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처럼 나오는 엄정한 종편 허가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를 없애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절대평가의 장점은 뭐냐 하면 느슨한 절대평가가 아니라 엄정한 준칙주의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정 과정에서 종편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업체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꼭 종편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참여자만 들어오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절대평가 방식을 지지합니다. 사업자 수에서는 앞에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엄격한 절대평가를 제대로 적용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3개, 4개, 5개 이렇게 개수가 많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사업자군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군 구분이 없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역시 칸막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특혜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칸을 나누면 그에 따라서 개수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 없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안에서 <제1안>의 사례로 제시한 지상파 DMB 허가 때의 예는 바로 비지상파 계열사업자를 의도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번 종편 선정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또 사족 같은 말씀입니다만 대기업이 언론사 컨소시엄에 주요주주로 참여한다면 그것을 대기업군으로 봐야 될지, 언론사군으로 봐야 될지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배점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편을 왜 우리가 허가하게 되느냐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한마디로 유료방송 콘텐츠산업을 이번에는야말로 제대로 키워서 그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송사업자가 나와야 되겠다는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것은 마침 저희 중앙일보가 지난 10년 이상 동안 이미 글로벌 종합미디어그룹을 목표로 해서 하나하나 투자를 해 왔는데, 이번에 종편에 진출함으로써 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한걸음 더 가겠다는 초심과도 마침 똑같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안>을 지지합니다. 재정적 능력 항목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2가지 주장을 드립니다. 하나는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가능한 한 주주 모두를 대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거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재정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새로 출범하는 종편이 신문과는 재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방 겸영이라는 것은 신문사가 방송사를 꼭 지배주주로 경영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 사의 입장에 따른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신방 겸영이라는 것은 신문사가 꼭 방송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울타리 안에서 신문사도 하고, 방송사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종편 때문에 신문사가 또 거꾸로 신문사 때문에 종편이 영향을 받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락제도는 저희는 방통위 심사기준이 결국 잘 짜여질 것이기 때문에 대분류에 대한 과락만으로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중분류에 대한 과락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 납입자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한국경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논리입니다. 저희도 그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 주장은 3,000억원 자본금이 아무래도 2~3년 내에 4~5% 시총률을 달성하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자본금이 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제1안>으로 가되 최소자본금을 상향 조정하든가, 그것이 안 된다면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은 당연히 방송발전을 위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 저희는 신규 종편으로 열심히 방송을 잘하면 대신 기금 지원도 많이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희망자를 대표해서 다섯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희망자 여섯 분의 의견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들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김필수 헤럴드미디어 방송추진위원회 기획실장입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 김필수 헤럴드미디어 실장

-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저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 자본금 문제입니다. 기업을 세울 때 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은 먼저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거기에 맞게 자본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도채널의 경우 장비, 인건비, 제작비 등이 주요 비용 항목인데 이것을 자기네들 계획 세우는 데 따라서 어느 정도 들어갈지 산출하고 이것에 맞게 자본금이 나오는 것이지, 사전에 미리 400억원이다, 3,000억원이라고 정해 놓으면 이것에 맞춰서 A라는 방송, A-1라는 방송, A-2라는 방송, 결국 비슷한 방송사들만 계속 나오게 된다는 논리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문제는 사전에 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이것은 나중에 실적이나 또 배당 같은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경TV가 '99년도에 자본금 50억원으로 출발했고, MBN이 100억원으로 출발했고, YTN이 150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업체들 실적 추이를 보면 흑자 전환이 자금 순서대로 흑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한경와우가 3년차, MBN이 5년차, YTN이 7년차에, 그리고 흑자금이 쌓여서 이익금이 되어서 그것이 배당할 수 있는 연도도 똑같습니다.

흑자 전환 난 다음에 3년차에 한경TV 그다음에 MBN이 6년차에, 다음에 YTN이 7년차에  
 났습니다. 결국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가게 되면 흑자 전환이나 배당 시점이 지연되고, 그  
 만큼 그것은 주주들한테 부담을 주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영업비용을 다 들고  
 가서 그것을 자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업을 하게 되면 매출도  
 할 수 있고 또 추가 증자도 할 수 있고 영업활동을 통해서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굳  
 이 그 3년치를 다 처음부터 가지고 가라는 것은 불합리한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근  
 한 예를 보면 한경TV의 경우 이후 7차례 증자해서 115억원으로 자본금을 늘렸고, MBN이 4  
 차례, YTN이 4차례 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다 증자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한데, 처음부터 너무 높은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안에 보면 400억 기준 세운 것이 MBN의 영업비 기준으로 해서  
 60%로 했습니다. 작년 MBN 영업비가 455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을 60%로 하면 270억원입니  
 다. 저희가 내는 출연금 40억원을 계산해도 아무리 공격적으로 잡아도 저희는 300억원이 타  
 당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순차선정과 중복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은 앞서 종편 후보자들에게도 불합리한 규정이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  
 에 당연히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순차선정을 굳이 해야 된  
 다면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보도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지  
 원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은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 선수와 같이 싸우라고 하면 누가 들  
 어오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시중 위원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예전에 말씀하실 때 새로 들어  
 가는 채널에 대해서 나 몰라라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규 채  
 널의 조기 정착과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생각하셨다면 만약에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하게 되면 아까 앞서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 광고시장  
 을 볼 때 다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능력에 의해서 알아서 안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  
 하신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누  
 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어쨌든 후보로서 들어오겠지요. 그렇게 되면 기존 업체들까지 공  
 멸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수는 1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보도채널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  
 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방송법 규정상에는 의무송신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  
 준 보도채널 2개는 의무송신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기존 보도채널과의 형평성이나 또 만약  
 이렇게 승인을 받고 들어가는 보도채널과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유사 보  
 도채널들이 있습니다. 여기와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의무송신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형평성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채널에 대한 의무송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앞서 출연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출연금 역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YTN  
 의 경우 매출액의 6%, 10%면 그 해 난 당기순이익을 전부 출연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 해  
 돈 벌어서 다 출연금으로 내면, 분담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게 내면 운영할 능력이 없어  
 지는데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도영봉 머니투데이 경영기획실장님이십니다.

○ 도영봉 머니투데이 실장

- 안녕하십니까. 자료 발표해 주신 김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부터 머니투데이 회사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절대평가와 비교평가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비교평가에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책목표에 제시하셨다시피 시청자 선택권 확대 그다음에 콘텐츠 시장 활성화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작지만 강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독립PP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감안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평가는 비교평가는 복수로 선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도PP 선정시기, 이 부분은 종편 예정사에서 대부분 다 같은 시기에 하자고 이야기했으니까 저희들은 보도채널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심사사항 6개 대분류를 5개로 하는데 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사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보다시피 1번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2번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상당히 내용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번, 4번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번, 2번은 잣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을 평점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도PP 심사 <제2안>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3번, 4번을 더 높은 수치로 고려해야 될 것이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은 복수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고 크게 과락제만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본금 규모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아까 발표하실 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과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 그대로 비즈니스모델에 따라서 시설, 장비 들어가는 최소액과 운영, 경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은 처음에 시장에 진입하면서 안착하는 단계까지는 최소 출연금을 정하고 그 안착하는 기간 동안에는 유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수의 신청사업 중복참여는 저희들 입장이 앞에 전임자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중복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상혁 서울신문STV 대표이사입니다.

○ 김상혁 서울신문STV 대표

-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STV 김상혁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자격증 열풍이 더 거세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취업하는데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방송허가도 하나의 자격증으로 본다면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종편·보도 방송의 자격증이야말로 정말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정부 당국이 앞으로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준비된 안을 보면 그동안 정책 당국에서 매우 고심한 흔적이 아주 역력하고, 합리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심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것이

라면 진입단계는 물론 그다음에 사업 후에도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보도방송이라는 것은 공익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콘텐츠 논리로 보도방송을 바라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 논리로 보면 결국 시청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선정적이고 또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내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청률 곡선 <표>를 보니까 일반 채널들은 보통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2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시청자 숫자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나 보도채널은 거의 밤이나 낮이나 플랫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핫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즉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쪽으로 가면 시청률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보도채널도 너무 시청률과 경쟁 쪽으로 몰면 공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평가로 가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심사는 <제1안>을 지지합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의무송출이라든지 또 낮은 번호 배정, 광고제도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먼저 선행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진입단계에서도 사업자들이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제3항> 대분류심사 사항 3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통해서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1번, 2번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그런 잣대를 적용해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정시기는 당연히 동시를 선호합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우리나라 방송발전을 위해서 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이 과연 얼마나 크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홈쇼핑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에 방송사업자 중에서 성공한 사업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과감하게 면제하는 쪽으로 가고, 대신에 사업을 통해서 방송발전을 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병일 CBS매체 정책부장이십니다.

○ 정병일 CBS 부장

- CBS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수와 선정방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PP 사업자는 비교평가 방식으로 해서 1개 이렇게 해서 최소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정한 사업자의 수를 최소로 결정해서 비교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사업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자 선정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평가로 다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당경쟁, 상업화 또 그 비용 상승 등으로 해서 방송시장의 발전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PP의 기본계획에서 밝히신 배점 방안에서도 보면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교평가 방식의 최소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도PP의 선정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역시 종편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순차 선정이 진행된다면 보도PP와 종편 탈락사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활용된다는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종편 탈락자가 보도PP에 선정될 경우에 일간신문 사업자 중심으로 여론독과점이 심화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의 목표와 의미가 심각하게 퇴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차 선정이 진행된다면 또 보도PP를 준비해 왔던 예비사업자들에게 시장진출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눠서 두 차례 진행하면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겠지요. 그리고 보도PP 예비사업자를 나눠서 하면 시장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순차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정부 당국에서 적정한 사업자 수를 제시해야 시장 예측을 할 수 있고, 자체 매출 추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수를 제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종편사업자 몇 명, 보도사업자 몇 명 이렇게 개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시장 설정을 할 수 없어서 사업성 자체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매출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업계획서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사항별로 주요내용에 대해 2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PP 선정 목적에 비추어 봐서 종편과 차별화된 심사항목 그리고 세부심사항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의 차별화, 방통융합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제작방식 또 경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2가지 방향에 대해서 5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도PP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요 검토, 그리고 신규 보도채널의 필요성과 타당성, 이 항목이 지역·사회적·문화적 기여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청사업자들 스스로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신규보도PP의 선정 목적이 여론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에 있기 때문에 다양성 제고 또는 기존 보도PP와의 차별화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안에 차별화 프로그램, 제작 편성 계획의 우수성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도채널의 특성상 자체 제작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수급계획(안)에 자체 제작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우수성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보도채널의 특성상 웹이나 모바일 등 방통융합을 선도하는 뉴스 운영방식이나 혁신적 제작 방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술항목에 대한 배점이 너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융합 등 뉴스 소개에 대한 반영 그리고 새로운 보도채널 등장을 위해서 이 부분은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무적인 안정성보다는 자본금 등 자본조달 능력과 효율적 경영 그리고 운영에 대한 미래형 배점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보도채널의 당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인 최저점수 설정에 대해서는 보도와 종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경우에는 종편보다는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출연금 역시 종편의 성격과 보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보도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소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니까 신청 자체도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의 신청법인들이 여러 군데 참여할 수 있는 문제도 여론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서 금지되거나 감점 처리되는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희용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장입니다.

○ 이희용 연합뉴스 팀장

- 사업자 수는 1개가 적정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서 선정방식도 절대평가가 아닌 비교평가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채널이 기존에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추가로 늘어나면 사업성 악화뿐만 아니라 결국 저널리즘 질 저하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시기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동시에 선정하는 것이 맞고, 방통위는 순차적으로 선정하면 시장상황을 고려한 정책추진이나 사업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종편채널이 시장에 안착하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 2년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대로 하더라도 연내 사업자 선정이 빠듯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편사업자를 결정하고 나서 보도채널사업자를 선정한다면 내년 3월 1기 방통위 임기 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기로 넘어가면 업무 파악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지금 4가지 정책목표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다양성 제고입니다. 그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일각에서는 지금 일부 언론사가 종편에 진출하면 여론 독과점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라도 다양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도채널사업자 선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종편 탈락자를 배려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 번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자의 복수신청 문제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 부분은 어떤 지배주주가 별도의 컨소시엄을 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신청법인이 양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예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목적이나 자본금 규모나 주주 구성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 컨소시엄이 양쪽에 신청할 수 있을까, 지분율을 그대로 하고 액수만 줄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드라마 제작사가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는데 그 컨소시엄이 보도도 같이 신청을 하자,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컨소시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도 5% 이상 주요주주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개 사업자만 종편에서 선정할 경우에는 복수를 하더라도 선정된 곳에만 출자를 할 수 있겠지만 2~3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에 동시에 출자하는 경우가 되는데, 기존 방송사업자에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경쟁구조가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심사사항인데, 거기에서 변별력을 찾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편 하나, 보도 하나 이렇게 출자하는 경우에는 경쟁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심사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채널이 공적책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재정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나쁘다거나 출자능력이 부족하다면 결국 그것이 보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배점은 <제1안>에 30%를 택하되, 재정 및 기술능력은 <제2안>에 20%, 아니면 그 이상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재정·기술능력은 유일한 계량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 부분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실현하

기 위해서 특정 정과, 계층, 세력, 집단 등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특히 이번 방송법 개정의 취지 중에 하나인 글로벌 방송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승인 최저점수 부분은 이것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높은 점수를 얻고도 이런 부분 때문에 탈락한다든지 그 해당 조항을 악용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사사항별 최저점수 기준을 60% 정도로 완화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승인조건을 부과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금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예시한 400억원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평가를 하지 않고 비교평가를 할 경우에는 자본금 과당경쟁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비교평가하게 되면 많이 써내기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열한 번째 마지막 토론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광섭 이토마토 산업부장의 견해를 들겠습니다.

○ 정광섭 이토마토 부장

- 이토마토의 산업부장 정광섭입니다. 저희가 보도채널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 좀 늦어져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2008년 IPTV 출범 당시에 보도채널을 신청했었고 방통위가 심사를 다해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재수를 하는 입장인데,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다 비슷해서 저희가 다르게 생각하는 대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수와 선정방식에 있어서 좀 발상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의 경우에는 종편처럼 큰 규모사업도 아니고, 오히려 정책목표 중에서 다양성에 관점이 찍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파들이나 케이블의 보도PP들이나 뉴스 형식이나 내용이나 관점도 사실 다 흡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 부분에서는 이런 면에서 다양하게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절대평가로 가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충족되는 사업자들은 다 승인을 해서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보도PP가 2개나 있어서 다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시장상황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콘텐츠 질 저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장에서 다 걸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2개 있는 상황에서도 포화상태인데 과연 그런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특혜 이런 것들을 사업자들이 기대하지 않게 하고 또 정부로서도 그런 논란들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다 풀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채널을 종편사업자 선정 뒤에 할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할 것이냐 이것은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 근거가 보도와 종편이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종편사업자 숫자가 정해져야 보도 숫자를 적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자본금 규모도 그렇게 방송 형태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이 다들 주장하듯이 저 역시 동시에 선정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정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는 것

이 400억원 수준인데, 그리고 그 근거가 1년간의 영업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도채널 중의 하나인 MBN의 영업비용은 한 450억원 가량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본금과 영업비를 등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낡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자본금이라는 것은 방송을 하기 위한 시설, 장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주가 될 텐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TN이나 MBN이나 초기에 보도채널로 시작하면서 조금 고비용구조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설이나 장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한다면 비용 효율성을 높여서 거품들을 걷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400억원까지는 과하다고 보고, 저희는 한 200억원 내지 300억원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규모를 가지고 심사 때 규모 차이에 따라서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규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봐서 이 사업계획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저는 필드를 잘 몰라서 생각에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방통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 이슈가 똑 떨어지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단순하게 접근했던 문제가 의외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향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거나 제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여러 페이지를 적고 계셨는데 1분 정도 계획(안)에 대해 오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덜 나왔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 걱정했던 것이 초기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내놓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준비하는 사업자 분들 의견을 접하면서 저희들 기본계획(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사사항에 저러한 부분들이 동일한 항목으로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하는 이야기인가라는 정도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쪽 토론하시는 것을 보니까 충분한 이해가 그동안 깊어져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기본계획(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이기 때문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로 듣는 자리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조금 이해가 부족했거나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부분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관련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부에서 절대금액 제시가 부적합하고 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대치 제시가 상당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청법인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따서 자본금 규모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표현을 잘 보시면 그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납입자본금 규모는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납입자본금은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에 영업비용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는데, 납입자본금의 성격이 초기 시설투자와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이 단순히 사업 운영비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설투자비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계산도 되지만 감각상각을 통해서 분산해서 영업비용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비용 자체가 시설투자비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존 보도채널을 가진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분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에 보시면 예를 들어 양도와 폐업 등이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처분이 지금 이 기본계획(안)의 내용으로만 보면 지적하신 대로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구체적인 처분으로 결정이 난다면 이러한 세분적인 내용은 하부 세부 심사기준이나 구체적인 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입 제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러한 안이 여러 가지 법률 자문결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제한은 가능하다는 자문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안했습니다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한적 조치라는 사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토론자께서 지원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사업자 수 선정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쪼여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께서 과거 신규 채널 조기 정착이 필요하고 방관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선정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안)입니다. 기본계획(안)은 사업자 선정과 직접적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채널배치라든가 이런 기본적 부분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 관련해서 기존 보도채널에 의무재송신되고 있는데 보도채널이 추가될 경우에 의무송신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보도채널 의무송신 2개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들어오는 채널이 반드시 의무송신에서 빠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SO와 계약에 따라서 기존에 2개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신규채널이 선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SO와 계약을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고, 다만 법적으로 2개 이상 의무송신 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된 부분이 일부 토론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마치 다수사업자 선정으로 오해하시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준칙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쓰는 이유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평가 방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사업자 수가 제로가 될 수 있고, 무수한 사업자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평가가 다수라는 등식은 반드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일부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마련될 세부심사 기준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두 번째 흐름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각 채널당 2분씩 드리는데,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끝나면 4시 40분입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20분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을 하면 딱 5시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자가 가진 쿠션 타임이 있지만 그 쿠션 타임을 희생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2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번에는 보도전문채널 패널 여섯 분 먼저 하시고, 종합편성채널 다섯 분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순서는 김필수 헤럴드미디어 기획실장입니다. 2분 꼭 지켜주십시오.

○ 김필수 헤럴드미디어 실장

-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아까 자본금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 김 국장님께서 적정자본금을 말씀드렸는데, 최저자본금으로 잡으신 금액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사업자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정해 놓고 나면 A, A-1, A-2 비슷한 방송만 나올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최시중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이번 종편·보도채널 선정은 글로벌 미디어그룹 탄생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NHK, BBC, CNN 등 언급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기준이면 제 생각에는 별도의 기준 심사항목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문의한 바에 따르면 각 항목에 녹여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항목이면 오히려 별도로 더 해 놓아야지 녹여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지만 보도채널의 경우 정책목표상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정성·공익성 이런 항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여론독과점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론편향 우려가 있는 데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인데 유사 보도채널에 대해서는 저희는 승인받은 업체와 등록업체와는 분명히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기능을 제한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송신을 적용해 주셔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도영봉 머니투데이 기획실장이십니다.

○ 도영봉 머니투데이 실장

- 시장상황을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아까 절대평가든 비교평가든 저는 복수로 선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상황, 시장상황이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광고상황이겠지요. 그것을 놓고 파이가 현재 적기 때문에 숫자를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장원리로 가야 되고, 적자생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부터 진입장벽을 그렇게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본금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400억원이 어떤 기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년간 영업비용 그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는데, 해 보니까 예를 들어 알뜰하게 할 때에는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규모를 크게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MTN을 만들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설투자를 물론 HD장비로 하긴 했습니다만 초기에 그 비용은 아까 말씀을 다시 부연하자면 비즈니스모델이나 지향점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시를 하게 된다면 자본금 규모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제시해 주는 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김상혁 서울신문STV 대표이사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혁 서울신문STV 대표

- 추가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병일 CBS 정책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병일 CBS 부장

- 김준상 국장님께는 죄송한데 의무송신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아닙니다만 이쪽에 의무전송에 관한 소개도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시장에서 채널 런칭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SO와의 계약에 따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지요. 못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영업비용이 발생되어야 하고, 신규사업자로서는 대단히 부담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도PP의 경우에 2개 이상의 의무송출로 되어 있는데, 종편은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그대로 시행되면 신규 종편은 100% 의무전송, 기존 2개 보도PP 의무전송 그 기득권은 유지되고, 다만 신규 보도PP사업자만 채널 확보가 제한이 된다는 비대칭규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의 환경 풍토를 토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하겠다, 방송법 시행령이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의무전송채널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겠습니다. SO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그냥 초기에만 허용해 주고 나중에는 일몰제 형식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도채널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역시 뉴스 소비자들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여론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한가,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선택과 평가,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기존에 보도의 채널들과는 매우 다른 콘텐츠의 차별성 이것이 굉장히 강조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해 왔던 구태연한 방식 말고 매우 혁신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시청자 복지에도 결국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여론 다양성의 제고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심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희용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장이십니다.

○ 이희용 연합뉴스 팀장

-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도채널, 종합편성도 마찬가지로이고 현재 예비사업자들이 모두 언론사들인데 개정 미디어법이 신문과 방송과 뉴스통신의 칸막이를 없애서 이것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정책목표가 디지털 기술에 따른 멀티미디어 시

대 융합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 수급계획, 제작 이런 부분을 신설법인의 독립성이 물론 강조가 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모회사와 콘텐츠 제작, 취재 이런 능력들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심사항목들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방통위가 제시한 심사항목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런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CBS 정병일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무재송신 문제인데,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다른 채널들, 보통 기존 SO에 런칭되어 있는 채널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방송을 하지요. 등록제에서 얼마든지 누구나 방송PP를 등록해서 만들면 할 수 있는데 왜 기존 채널을 사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기존의 SO 관계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채널이 생겨서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 여러 가지 내실을 키워서 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초기에 너무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보도채널 시장 안착은 물론이고 결국 또 저널리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도채널 2개 중에 하나를 빼고 들어가려면 기존 채널들은 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여기에서 소모적인 경쟁을 하다 보면 폐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발전기금 부분도 지금 보도채널은 어떤 면에서 물론 저희가 잘 해서 수익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홈쇼핑 업체나 아니면 플랫폼사업자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초 출연금 부분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매년 내게 되는 것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정에서 바뀌었는데 그 부분도 유예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타임 체크를 잘못해서 30초를 더 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광섭 이토마토 산업부장님이십니다.

○ 정광섭 이토마토 부장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심사사항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편과 보도PP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 방송시장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똑같은 채널들이 2개, 3개 이렇게 더 생기면 우리 방송산업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는 방송기술 부분에서 연구개발이나 아까 CBS 정병일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융합시대에 걸맞은 방송 시스템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심사에서 평가가 잘 주의 깊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측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뉴스가 심하게 말하면 천편일률적입니다. 보도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다 거기에서 거기이고, 그래서 관점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에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구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예정자 다섯 분의 견해를 들겠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인데 2분밖에 못 드리면서 자유롭게 하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하튼 의견을 주십시오

오. 아까처럼 첫 번째 순서는 한국경제 이희주 기획실장이십니다.

○ 이희주 한국경제 실장

-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종편채널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내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편성채널이 어느 정도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수는 어느 정도가 자명하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혹여 정부가 정부산하기관의 예측 자료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한 결과가 왕왕 있는데 정부산하기관 예측자들이 시장을 과대하게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장 전반에 대한 비관적 수치를 가지고 숫자를 정하는 것이 정책실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도 쪽에 한국경제TV와 MBN, YTN 비교를 했는데, 한국경제TV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왕왕 승인채널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승인채널이 아니고 등록채널입니다. 단지 영업을 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고정원 조선일보 기획팀장님이십니다.

○ 고정원 조선일보 팀장

- 심사사항과 그다음에 심사항목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말했고, 향후에 있을 세부심사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미래 가치의 변동성이 큼니다. 그래서 현물출자 하는 데를 똑같이 현금출자하는 데와 똑같은 방식으로 평점을 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출자하는 데는 상당한 감점요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물출자가 법원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라이선스를 홀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펀드를 통한 출자의 경우에도 펀드의 구성 조합원이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출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방통위가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출자 부분에서도 그냥 막연한 출자가 아니라 위약벌이 포함된 출자를 하기로 했다가 철회했을 때 패널티가 붙는 그런 명확한 출자확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리몽실하게 출자하겠다고 해서 그냥 받아 놓은 그런 방식의 출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성평가 부분들이 사실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규정을 해서 정성평가에서 황당하게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줄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부분들이 이번에 공적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실 때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딱 2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류호길 매일경제TV 종편추진본부사무국장이십니다.

○ 류호길 매일경제TV 국장

- 우선 처분계획 관련해서 정부가 충분히 그동안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고 보고,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의견을 한번 물어본 것도 있으니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꼭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분과 관련해서 종편의 영업시작이 본격적으로 채널로 시작할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본금 3,000억원 규모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금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가 없고, 조달방식에 따라서 가용 자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을 키우기 위해서 점수 배점을 늘리기 위해서 기술적인 배점을 줄이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전체적인 배점을 늘리는 방안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융합하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설할 때부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한 사업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영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처음부터 방통위에서 많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간접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책목표를 감안할 때 글로벌 부분에 대한 별도의 심사항목을 두고, 또 국내 유통의 콘텐츠 유통이라든지, 해외 진출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등 종합적인 면,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사업자 간에 상당한 비용도 지출되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지역, 사회,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실적이라든지 계획을 상당히 비중 있게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좀 더 문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가적인 중요한 아젠다와 정책방향 또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활동, 그래서 여기에 국가적인 개념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개념 이런 것도 공적 기여도에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비언론사군을 분리하는 것은 지금 언론사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이 역차별받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김차수 동아일보 방송사업본부장이십니다.

○ 김차수 동아일보 본부장

- 아까 심사항목 구성과 배점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언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편은 공익성·공정성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능력, 경영계획, 재정부담 능력 등 여러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사업자의 능력과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배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항목을 간단히 보면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항목이 방송법에는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부분의 하부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공익성·공정성 부분의 비중이 과

거에 비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종편은 전국 채널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평가방식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가점을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가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에 단순비례해서 점수를 주는 방식은 과도한 자본금 유치 경쟁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규모에 맞는 적정 자본금이 필요하지, 무조건 자본금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종편 관련 세미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 대로 자본금이 늘어날수록 가점을 주되, 단순 사례 방식이 아니라 초과액이 늘어날수록 가중치를 줄여서 사실상 일정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본금을 많이 제시하는 예비사업자에게 가점을 주면서도 과도한 자본금 규모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리스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수길 중앙일보 방송본부장의 견해를 들겠습니다.

○ 김수길 중앙일보 본부장

- 제가 마지막인데, 오늘 토론회 공청회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늘이 마침 방송의 날인데 오늘 이런 날 하필이면 이런 공청회가 있다는 것이 참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간다면 최종 선정까지 한 녀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 선의의 경쟁을 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모처럼의 종편심사가 최선의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몇 가지 말씀을 미진하게 드린 것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복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참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쪽 입장도 언론의 다양성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1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각 사의 컨소시엄 구성의 현실을 이리저리 듣고 살펴보면 <제2안>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역시 자본금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아까 미진하게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최소 자본금을 제시한 <제1안>이 엄격한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000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 쪽 판단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접근법을 취해 봤습니다만 한 지상파방송사가 2009년에 영업비용을 5,400억원 썼고, 제작비만 한 4,000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출범하는 종편이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제작방식 또 경영조직을 짜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계산해도 그런 영업비용의 60% 내지 70% 이하를 구현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매출 측면에서 보면 그 방송사가 출범할 때에는 예를 들면 다들 기억나시지요? 코바코가 다른 지상파 기존 방송사의 광고매출의 80%를 지원해 줬고, 또 매체 수도 훨씬 적었습니다. 올해 라이선스를 받는 종편이 내년에 출범할 때에는 그런 환경을 기대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영업비용과 매출을 갖다 놓고 저희가 아무리 효율적인 계획을 짜고 돌려 봐도 첫 해, 두 번째 해에 적자가 상당히 불가피합니다. 상당한 액수를 저희가 여기에서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안에 평균 시청률 4

~5% 달성해야 되는데 투자비용 훨씬 나오고, 그리고 첫 해, 두 번째 해에 이리이러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텐데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 투자해 가면서 신규 종편이 안착하려면 3,000억원의 최소 납입자본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적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납입자본금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증자도 하고 차입도 하지만 2~3년 안에 신규 출범하는 종편이 또 다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1안>으로 가되, 최소 자본금을 더 올리든가, 그것이 어렵다면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가점을 주는 방안이 확실한 종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이제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가기 직전에 주제 발표자가 1분 동안 발언 기회를 요청해서 드렸습니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가장 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큰 특징은 복수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복수안 제시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오픈된 계획기본(안)이라는 것입니다. 오픈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논의 자체의 출발부터 논의를 오픈하겠다는 의미 한 가지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오픈입니다. 대안을 폐쇄된 측면에서 논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모든 대안들을 나열하고 예시로 제시해 주고 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안을 오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의미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오픈된 기본계획(안)이고 그런 측면에서 복수의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이번 종편이나 보도PP 선정이 너무나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원칙을 합리·합법, 공정·공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칙으로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오픈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보도채널 쪽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순차선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의견수렴이나 토론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분 종편의 순차 선정 이야기도 있었고, 종편 순차 선정 이후에도 또 전문가 일부에서는 종편과 보도PP의 순차적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를 모아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지, 어떠한 의미도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그런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픈된 계획(안)에서 비롯된 것이고, 오픈된 계획(안)이 가진 의미가 바로 말씀드린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상당 부분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의견은 플로어에서 또 의견을 주시겠지만 주신 의견들은 저희들이 소중하게 제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2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참 정성스럽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플로어한테 기회를 드릴 순서인데, 학회 같은 데서 종편 토론할 때는 플로어에 기회를 드려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5시를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3분 정도씩 1인당 기회를 드리면 여섯 분 정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으면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하셔도 됩니다. 그것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응답의 대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발제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열한 분 중에 어느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실 때 관등성명 꼭 밝혀 주십시오.

○ 서양원 매일경제TV 부장

- 매일경제 서양원 부장입니다. 사실 종편과 보도가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특혜다, 일부에서는 잘했다, 그런데 이런 특혜와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정량평가, 계량평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안)을 쪽 보면 일부는 계량 항목이고, 일부는 정성평가 항목입니다. 지금 계량과 정성평가의 항목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그 방향을 어떻게 조정해 가실 것인지, 특히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계량화, 극대화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다 모아서 답을 듣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공청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조금 전에 서양원 기자의 질문은 아무래도 김준상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말씀하신 계량화, 극대화 방안, 공정성·객관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복안이 무엇이나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사항목의 계량화, 극대화 글썄요, 계량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지금 이 기본계획(안) 단계에서 심사항목까지 저희들이 제시하는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계량, 비계량 부분이 명확히 잘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계획이 의결되고 나면 구체적인 심사항목에 대해서 배점, 또 심사항목의 세부내용과 그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제시하고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 단계에서 아마 지금 주신 고언을 잘 반영해서, 반드시 모르겠습니다. 객관화가 계량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객관화이고 공정화를 꾀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객관화하고 공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심사기준은 그러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때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제가 계량화에 대한 복안이라는 것을 말씀 못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사회자가 제일 잘하는 사회자이고, 시간보다 일찍 끝내는

사회자는 더 잘하는 사회자입니다. 돌려서 또 기회를 드려도 되지만 아마 머릿속의 시나리오가 영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담도 많이 됐고, 성실하게 또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해 주신 열한 분 패널과 발제자님 그리고 또 방금 떠나셨는데 방통위원회 위원장 이하 다섯 분 모두 다 잘 듣고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성실하게 반영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권고성인데 내일도 이 자리에서 토론회가 열리는데 내일은 출연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일 출연자는 학계, 연구계,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아홉 분 토론자가 와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일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하고 진지하게 저희 토론회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제일 큰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방금 떠나셨는데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 속기록

- 9.3 (금) 15: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 -



---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

---

### ○ 사회

-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방송학회 김현주 회장의 사회로 오늘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방송학회장 광운대학교 교수 김현주입니다. 외람되게 제가 먼저 이렇게 말문을 열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많이 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어제 뵈었던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또 어제 거의 끝까지 함께 계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이 아니라 이 자리에 방청객의 자격으로 아마 와 계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 모두 와 계십니다. 또 어제 제가 깜빡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 행사의 여러 가지 성가신 뒤통사꺼리를 도와서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석호 원장님도 여기에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눈에 띄는데 제가 일일이 소개해 드릴 계재는 아닌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는 잘 아시다시피 종합편성채널을 준비하는 5개 사업자를 대표하는 토론자 다섯 분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을 준비하시는 6개 사업자의 대표자 여섯 분, 그래서 열한 분의 패널들이 여기에 딱 앉았는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 자리도 조금 풍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첫 공청회라서 긴장도 많이 됐는데 오늘은 또 나름대로 다른 국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국가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공청회를 연 이들 사회를 맡게 되어서 큰 영광이지만 여전히 어깨는 무겁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가지고 계신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왔던 불만이든 보완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부담 느끼지 않고 마음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열어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공평하고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공청회에 이어서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두 번째 공청회이자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종결판 마지막 공청회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이 문제가 우리 시민의 손을 떠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넘어가는 시점이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만큼 저희들의 의견을 오늘 겸허히 수용해서 그 의견이 때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덜 맞더라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판단하시면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공식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공청회 이외에 다른 채널로 시민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시겠지만 최소한 이런 공식적인 공청회가 같은 자리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기회만큼 토론자의 의견 발표에 이어서 오늘 공청회 후반부에는 방청객에게도 질문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위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공청회를 진행하는 순서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그 첫 번째 순서인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발표로

들어갈 것입니다.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단상에 계신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안한 순서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학계 그리고 시민계, 관련 산업계를 대표하신 분들이 모두 아홉 분이 와 계십니다. 이 명단을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름대로 어떤 학계, 어떤 직능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패널을 구성할까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론자 소개) 이렇게 아홉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할 것이고, 진행방식은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의 발표가 35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 해 보니까 35분을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자한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론자들과 플로어한테 더 많은 기회를 드릴 것이니까요. 그래서 김준상 국장의 발표가 있고 그에 대해서 아홉 분의 토론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각 토론자마다 모두 공히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 5분 동안에는 가급적 김준상 국장의 발표 내용에 초점에 맞춰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내용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수안이 있고, 결정해야 할 논의를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첫 번째 흐름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발표자의 견해를 들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 흐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흐름은 각 토론자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 2분은 첫 번째 흐름의 그 주제와 관련이 있어도 좋고, 그것을 떠나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지나면 한 25분이나 30분쯤 시간이 남습니다. 그 남는 시간은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플로어에 제가 질의응답 혹은 견해 발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마음속에 준비해 두셨다가 그 기회가 오면 마음껏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발표문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고 이 내용은 이미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이고, 매체에도 잘 전달되었고, 어제 또 제1차 공청회에 따른 매체 보도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지신 발제 내용 이외에도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이후에 방송통신위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지만 김준상 국장의 발표내용에 다소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발제를 맡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김준상입니다. 어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제2차 공청회입니다. 제2차 공청회는 방통위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이후에 방통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두 번째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제 제1차 공청회에서는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준비사업자들 또는 준비 희망사업자들 분께서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시청자, 소비자단체에서 오신 전문가들, 그리고 방송사에서 오신 전문가들, 그리고 독립제작사에서 오신 전문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하고 깊은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쟁점별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보다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본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면 방통위 내부 보고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공청회 등의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도 함께 토론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중간중간 가운데 위원님들 의견도 함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설명은 배포한 자료 가운데서 요약본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요경과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향후 계획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연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8월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관련 제도 마련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5일에는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을 위한 신문부수 확인 인증기관으로 ABC협회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의 정책목표로는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둘째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셋째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넷째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등 모두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심사기준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승인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과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사업자 수를 정하는 비교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종편PP는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의 다수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도PP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 수에 대한 최근 논의를 반영해서 소수사업자 선정과 다수사업자 선정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구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사업자 수를 정하게 되면 1개 사업자, 2개 사업자, 3개 사업자 등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편성PP를 선정할 때 사업자군의 구분 여부에 대해서도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 기업군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별도의 구분 없이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도전문PP의 선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종편PP와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과 종편PP를 먼저 선정한 이후 보도PP를 선정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사항 구성 및 배점입니다. 심사기준은 대분류에 해당되는 심사사항, 중분류에 해당되는 심사항목, 소분류에 해당되는 세부심사항목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업을 허가·승인할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6개 사항을 심사하여야 됩니다. 6개 심사사항은 왼쪽 박스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입니다. 이번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심사에서는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부분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하위 심사항목으로 통합함으로써 모두 5개의 심사사항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본계획(안)에는 이러한 심사사항의 구성과 배점 그리고 중분류에 해당되는 심사사항의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보다 더 자세한 심사항목의 배점과 세부심사항목의 구성 및 배점 등 세부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별도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배점은 정책목표와의 관련성 종합편성·보도전문PP의 특성과 기존 허가·승인 심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제시했습니다. 종합편성PP 승인심사 배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과 콘텐츠 경쟁력, 자금조달 등 경영계획과 방송발전의 지원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배점방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안으로는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방안과 두 번째 정책목표 중 콘텐츠 경쟁력을 특별히 강조하는 방안, 세 번째로 인터넷멀티미디어 종합편성 콘텐츠 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보도전문PP 승인심사 배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방안과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구체적 배점방안으로는 2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방안, 둘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방안입니다. 각각의 배점방안은 <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편PP의 경우에는 <표>로 보신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제가 취지를 설명드린 대로 <제1안>, <제2안>, <제3안> 공히 <표>에 보시는 심사사항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기획 등에 관한 사항, 조직 인력운영과 같이 경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의 배점이 높게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보도PP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안을 보실 수 있는데, 취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과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 그리고 경영계획의 적정성 부분이 배점이 높게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사항별 주요내용입니다. 심사사항별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제시된 바를 보시면 5개의 심사사항 아래 모두 19개의 심사항목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사사항의 하위 심사 기준인 심사항목은 이전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되, 정책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표>에 보시는 19개의 심사항목 가운데 특히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과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과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입니다.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체 총점,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별 총점, 중분류에 해당되는 심사항목별 총점 등 모두 3단계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승인 최저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총점은 80% 이상, 대분류에 해당되는 심사사항별 총점은 70% 이상, 중분류에 해당되는 심사항목별 총점은 50%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시 적용되는 평가척도가 80% 이상은 매우 우수, 60~80% 미만은 우수, 40~60% 미만은 보통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승인 최저 점수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업자를 선정하되, 어느 한 분야라도 보통의 평균 수준 밑으로 평가받은 사업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승인 최저점수와 관련하여 방통위 위원님 가까운 한 분의 의견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따르면 심사항목별 중요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각각의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를 차등적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초기 시설투자과 사업운영비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납입자본금의 최소 규모와 심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납입자본금의 적정 수준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인 계획기본(안)에서는 적정수준의 최소 납입자본금이 아닌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진입 초기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종합편성PP의 경우에는 3,000억원, 보도전문PP의 경우에는 400억원을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종합편성PP의 자본금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사업초기 1개년도 영업비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서 산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도전문PP는 기존 보도전문PP 수준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님들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최소한 3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년도는 3,000억원, 2차년도는 2,000억원, 3차년도는 1,000억원으로 해서 최소 6,000억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회사 운영의 효율성과 기업가치의 평가 측면에서 3,000억원이 다소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기존 방송사와 같은 수준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00억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최소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승인 신청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의 납입자본금과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최소 납입자본금의 기준금액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납입자본금에 대한 심사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따라 다르게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절대평가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충족하게 되면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이에 미달하면 해당 심사항목을 0점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교평가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의 금액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기준금액이 만약에 3,000억원이라면 3,000억원을 제시한 준비사업자에게는 해당 항목 배점의 50%가 부여되고, 신청법인들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중 최고액이 만약 4,000억원이었다면 기준금액에서 2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가 가산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제시한 수치 금액은 단순한 예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자본금 규모에 대한 평가방식은 최근 개최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납입자본금 규모가 일정금액을 충족하면 만점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납입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규모와 심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규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보도전문PP가 납부하는 최소 출연금 규모와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출연금 납부는 2000년 이후 홈쇼핑 데이터 PP 승인을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 허가 승인 시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이번 신규 종편·보도PP 승인심사에서는 출연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최소 납입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서 1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심사와 마찬가지로 출연금에 대한 심사도 사업자

선정방식에 따라서 다른 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최소 출연금 금액을 충족하면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미달하게 되면 해당 심사항목을 0점 처리하는 방안과 비교평가를 채택하는 경우 심사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종합편성·보도전문PP 선정 시에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 등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특정 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 편성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경우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TV방송사업자나 또는 보도PP가 신규 종편·보도PP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이 완료된 이후에 승인장을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로 동일한 신규 신청법인이 복수의 종편·보도PP에 동시에 승인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승인 신청 철회 계획에 대해서 심사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1개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도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느 한 신청법인의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면 감점 처리하는 방안과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되, 신청법인 간 주주 구성의 차별성을 비교해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 기본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성주주의 지분변동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공청회에서 논의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위원회 보고 시 위원님의 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개최된 공청회를 포함하여 온라인 의견제시, 전자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9월 중순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 및 배점, 평가방법과 승인 신청요령 등이 포함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 기준을 10월 중에 의결한 후 승인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승인 신청공고는 10월에서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 승인심사계획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승인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PP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 다섯 분 위원 가운데 방통위 두 분 위원님께서는 현재에 계류되어 있는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현재 결정을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PP 도입에 대한 주요 경과와 기본계획(안)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35분 발표 예정인데 20분 남짓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됐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오늘 공청회 이전에 그리고 이 기본계획(안)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기 훨씬 전부터 지난 1년 넘게 곳곳에서 수많은 토론회, 공청회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들이 종편 관련 혹은 보도전문채널 관련해서 열렸던 것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은 그 많은 자리에 가 보셨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계에서 시민단체에서 이익단체에서 어떤 때에는 국회 정치권에서 그리고 심지어 사업 신청 예상사업자 본인 스스로 수많은 토론회와 세미나가 있었고, 그 세미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여론 지형 변

화 측면에서, 어떨 때에는 미디어 산업 재편 측면에서 또 콘텐츠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자 수 선정기준 측면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접근과 주체와 관점이 다양했던 만큼 오히려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론화가 그런 과정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방통위원회를 비롯해서 정책 당국 사람들의 얼굴도 제가 간혹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분 동안 짧은 발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접했지만 지난 더웠던 여름을 비롯해서 많은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과 인풋이 들어가서 이 기본계획(안)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복수안들이 있습니다. 쟁점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수안의 키 이슈들이 무엇인지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사업자들이 종편사업자 다섯 분, 보도전문 여섯 분해서 두 사업 영역에 대한 균형이 있었는데, 오늘 이 토론도 가급적 종편·보도 2개 다 균등하게 공평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토론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에 5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발표자가 세이브해 주셔서 5분 30초 드리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에는 2분 30초 그렇게 해도 시간 조절이 될 것은 판단이어서 5분 30초 각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부터 모시겠습니다. 김대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 김대호 인하대 교수

- 저는 아까 소개 받은 대로 미디어 학자로서 종편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편PP와 보도PP 승인은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정책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화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매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TV수상기마저도 스마트TV라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디어로부터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미디어로 변화시키는 시점에 마침 타이밍 있게 이런 승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지금 종편이나 보도PP 승인사업자들이라든지 주변에서 20년 전에 사업자로 있었던 주로 SBS와 많이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체의 환경에서 케이블TV라든지 위성을 비롯해서 인터넷 모바일 이런 다양한 매체, 정보기술이 대단히 발달해 있다는 것, 그밖에 콘텐츠 쪽에서도 콘텐츠 독립프로덕션이라든지 제작 리소스 시장이 또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아웃소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심지어 미디어 이용과 생산에서도 1인 방송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지금 출범하는 종편과 보도PP라는 것은 기존에 지상파방송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미디어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상파방송의 제작이나 콘텐츠를 완전히 다르게 해야 거기에서 새로운 혁신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혁신을 항상 창조적인 파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바로 종편PP와 보도PP에 이번에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과거 지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종편은 절대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와 미래라는 환경 속에서 이런 승인을 바라보고 또 사업 준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볼 때 이러한 흐름들의 정책목표가 나름대로 이번 승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로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예컨대 디지털시대라든지 융합시대를 맞아서 경쟁

활성화와 미디어 경쟁 강화라든지 콘텐츠 활성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신청 승인이 이루어지면 된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목표에 맞는 승인절차, 기준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종편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미디어의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경쟁에 이러한 것들이 방송정책에 도입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나라 방송정책에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송정책은 아무래도 규제정책의 성격이 강하고, 이런 자유 시장이라든지 자유경쟁원리가 비교적 미흡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우리가 이런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아서 변화를 준다면 결국 이런 자유경쟁원리를 이번에 종편·보도PP 승인에 우리가 적용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사업자 수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기존에 사업자들을 정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주파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가의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매체가 시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 수를 제한해 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편은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다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사업자 수에 있어서도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방송정책의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수와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평가를 해서 자격을 갖추고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목표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격과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시다만 이것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고, 그 밖에 이러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미디어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것도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이것이 미끼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비록 지금 언론사들이 신문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해서 군을 나누는 제안, 여러 가지 복수안이 나왔습시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원칙에서 모든 준비사업자들이 동등하게 자격을 가지고 방송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심사기준에서 세 번째는 저로서는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 콘텐츠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나 하면 그동안에는 플랫폼 중심이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의 의미가 지금 무한대로 된 상황에서는 결국 콘텐츠 중심이고, 그 콘텐츠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창조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 융합서비스, 콘텐츠를 녹여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열려 있는 구조를 주되, 경쟁을 증진한다고 해서 아무나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나름대로 부실할 수 있는 위험을 덜기 위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그 완충장치는 결국 자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본금은 지금 최소 납입자본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3,000억원과 400억원이 적절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 중에 예컨대 재정과 기술적 능력 비중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적 능력의 경우에는 실제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

첫 번째로는 종편과 보도의 순차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보니까 어제도 5개 종편 희망사업자, 6개 보도 희망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각각 분야마다 집중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것을 같이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번째 흐름에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흠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 황승흠 국민대 교수

- 안녕하십니까. 황승흠입니다. 저는 법학적 측면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기본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 쟁점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보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행정 재량권 행사에 합리적 기준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틀이 대부분 법적 틀 안에 들어와 있어서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의 문제나, 재량권 행사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나, 아니냐 정도만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판단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문제가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이야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에 관한 문제인데, 이 승인의 성격이 무엇이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허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대개 허가라는 행위는 법적으로 봤을 때 행정청에게 상당히 많은 재량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귀속 행위, 법에 틀에 매여 있는 행위라기보다는 일탈 남용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반 다른 기관과 달리 독립 임제 기관이 아니라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한 사람의 기관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법이 설계하고 있는데, 대개 합의제 기관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고도의 재량성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2가지 전제를 놓고 보면 넓은 재량이 사실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논의가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재량권의 범주를 벗어난 일탈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 몇 가지를 본다면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선정시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실제로 선정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시에 선정하든 순차적으로 선정하든 신청하는 사람, 사업자이지요. 즉, 국민의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폭넓은 참가가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선정시기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기존에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가, 또는 이것이 보도와 종편 2가지가 다 나가니까 둘 다 신청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방통위의 재량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고,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자격을 다 제한해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합리적 차별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넓게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신청자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 자체는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청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

나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가지고 있는 제1조의 목적 조항이나 제5조·제6조의 공공성 조항들을 봤을 때 한 사업자가 여러 채널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서 그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업자가 여러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의사결정에 영향을 어떤 한 동일인이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이고, 이 문제는 방송법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있고, 물론 40%, 30% 이런 제한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한 취지로 봤을 때는 한 동일인이 여러 채널에 참여하는 것들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이하의 범주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앞으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일정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중복참여는 투자 입장에서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감점처리하든 금지하든 어떤 방향을 택해도 좋은데, 다만 감점 처리방안으로 갔을 때 내가 2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면 2개 다 감점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 참여대상을 정하고 거기에서는 감점을 안 주고 주 참여대상이 아닌 곳에만 감점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구분해서 문제를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김용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김용규 한양대 교수

- 종편PP 사업자 선정은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 산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편사업자는 재무적 능력,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종편PP는 지상파에 버금가는 그런 여론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정과정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여론 독과점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가 모두 적절하게 조화되어야만 진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 선정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입니다.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계획서 평가는 흔히 뷰티 콘테스트라고 해서 그 사업계획만을 보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오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무선사업자를 선정할 때 주파수 경매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평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절대평가를 통과한 사업자가 만일 복수일 경우 다시 한번 그 사업자 간에 엄정한 마켓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의 경우 첫 번째 산업적 목표를 감안할 때 심사기준 중에서 경영계획, 재무적 능력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방송의 공정성을 감안할 때 민주적인 기업지배 구조, 편성의 독립성, 보도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군 구분 여부입니다. 이것은 별도 구분 없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보도PP 선정시기와 관련하여 종편과 보도PP가 동시에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심사사항 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이런 요소들이 방송법에도 명시되고 있는데,

특히 현재 신청 예정사업자와 주요주주들이 보수 언론 그리고 대기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합니다. 따라서 <1>번의 심사사항 중 심사 항목 비중에 있어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배점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착안사항이 아마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고 또 편성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그런 서술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 등을 세밀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공적 지배구조를 가져갈 경우 이에 대한 가점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공적인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것은 KBS 수신료 인상 시 종편PP 등이 수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KBS 수신료 인상은 별개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종편PP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공적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편성의 독립성 등을 통해 일부 달성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승인 최저점수 관련 심사 사항별 총점 70점, 항목별 총점 50점 적절하지만 주요 항목인 공적책임·공정성은 적어도 60점 또 재정적 능력도 적어도 60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납입자본금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입자본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편PP와 보도PP에 대해서 자본금 관련 정책이 다소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편PP에 대해서 3,000억원은 제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걱정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바로 이익이 나서 3,000억원의 자본금도 적절할 수 있지만 방송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종편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이 없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승인 신청 시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자본금 규모를 좀 올리고, 자본금 규모가 클 경우에 수행계획서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가산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보도PP의 경우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소규모 언론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자본금 규모에 따른 가산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 논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초성운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 초성운 KISDI 실장

- 이틀 동안 사회 보시느라고 진짜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자리에서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쪽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기본계획(안)이 나오니까 그야말로 각자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자들 간에 어떤 합치된 의견,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관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좀 불식시켜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럴 때일수록 어떤 큰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구원에 쪽 근무하면서 통신관련 허가를 저희 실에서 지원도 많이 해서 경험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방송 부분의 허가와 통

신 부분의 허가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선정기준에 대해서 절대방식  
 이냐, 비교방식이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사업자 수를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  
 위원회가 정해야 된다 내지는 정할 수 있다라는 너무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우에는 대개 통신에서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에 많이 적용됩니다. 할당  
 할 수 있는 주파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각 서비스별로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이 있고 그렇  
 다 보면 맥시멈 나올 수 있는 사업자가 어차피 정해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업자 수가  
 명확하게 최대 몇 개까지다라고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종편이나 보도PP가 그 경  
 우에 해당하느냐, 즉 물리적 제약이 근본적으로 존재 하느냐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입  
 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 부문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출연시킨다면 그야말로 창의적이  
 고 건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아주 과열찬 경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  
 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시장 기능이 작동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  
 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채널 매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매체들 간에 진정한  
 경쟁이 되어야 하고, 경쟁을 통해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한번 출연할 수 있는 것을 기대  
 한다면 사업자 수를 딱 못 박는데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방송  
 의 시장원리의 작동이라는 큰 원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불  
 식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침언드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수사업  
 자가 나오겠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랬을 때 흔히 제기되는 반론이 방송에 사업자가 많  
 아지면 선정성, 폭력성이 증가한다는 논리인데, 제가 전에 보고서에도 그런 것에 대해 반대  
 논리를 쓴 적도 있고, 실증사례도 있고, 아주 작게 예를 든다면 성기현 사무총장이 와 계시  
 지만 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이라면 일부 케이블이기는 하지만 거의 같 때까지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시청률 자료를 보면 0.1%가 안 나오는 경  
 우도 허다합니다. 1%가 안 나오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업자 수의 증  
 가가 방송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로 간다라는 명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선정기준이고 그다음에 자본금과 동시 선정과 순차 선  
 정인데 시간되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아  
 마 이 자리에도 희망사업자 분들께서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이  
 해가 안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왜 자본금이 제작비로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  
 게 따진다면 저는 김용규 교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3,000억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자본금 3,000억원을 가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자본조달 방안도 많이 있고 여기 심사기준에도 자본조달 운영  
 계획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사례로  
 드러나지만 소위 엄청난 대작들이 시장에서 시청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경우는 방  
 통위에서도 충분히 이력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작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예산으로 소위  
 말해서 대박을 터트리는데 프로그램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지요. 돈의 경쟁이 아니라 방송을 사랑하고 진정한 종편이나 보도 부분을 잘 만들겠다는 열  
 정이 더 반영된다면 자본금에 대해서 너무 액수가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더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일정 자본금 외에 자본금이 더 모여지면 가점을 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얼마를 주느냐, 거기서부  
 터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사업 심사가 부문별 몇 점 만점으로 가는 것

인데 가점을 주기 시작하면 그 만점이라는 의미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주 이론적으로만 하면 다 100점 받았는데 10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심사방식이 되기 때문에 가점을 굳이 일정액을 그것이 3,0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까만 정한 다음에 그것이 충족되면 더 이상의 가점 유무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차 선정과 동시 선정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음 토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번에 YMCA 한석현 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 한석현 YMCA 팀장

- 서울YMCA 한석현입니다. 공청회 초청을 받고 저희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글로 적어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이 되고 있는 것들이 시기 절차상 문제라든가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요경과에는 빠져 있지만 경과사항으로 추진방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타 시민단체라든가 언론단체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중에도 의견을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여당이 강행처리한 방송법 등 언론법에 대해서 현재가 같은 해 10월 29일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국회의 자율적 시정 노력을 당부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입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역시 지난해 10월 18일 현재의 부작위 권한쟁의를 청구해 놓은 상태로 이에 대한 심판결과가 오는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다시 공청회 나오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지금까지 진행된 종편 관련 모든 절차들이 무효화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이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방통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내용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서 굳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몇 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시장논리와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모두 허용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은 경제학자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법학하신 모든 학자 분들에서도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허용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방송 매체가 늘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 매체가 그만큼 늘어난 반면에 소비자 후생과 소비자 선택권이 그만큼 확대되거나 신장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우리 방송 현실에는 지금까지 소비자인 시청자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자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활성화되거나 시청자 이익이라든가 선택권들이 향상됐다는 측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망하는 방송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 DMB, IPTV 등 다양한 방송 매체들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시청자들은 집에서 TV를 보려면 지역 케이블 등 유료방송 위주

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상파 수신 문제만 보더라도 시청자 편익은 별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상파 쪽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방송시장은 아직도 시청자 우위의 시장이라기보다는 공급자끼리 싸우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종편을 도입해야 한다면 테스트베드 개념 정도로 해서 1개 사업자 정도를 해보고 추후 시장 상황을 보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생겨났지만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번 문제도 공급자 위주로 어제 사업자 공청회도 했지만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인 시청자 우위의 시장 환경을 어떻게 하면 방송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를 2개, 3개, 4개 선정한다고 해서 매체 다양성이 반드시 생겨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이야기 드릴 부분은 의무송출제도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 제 35조제1항에 보면 SO, 위성방송의 다양한 채널 구성 등을 위해 모든 종편PP와 2개 이상 보도PP는 의무송출 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사업자 몫인데 법적으로 유료방송에 의무전송해야 하는 지상파 채널은 KBS-1TV와 EBS뿐입니다. 나머지 KBS-2TV, MBC, SBS의 경우에는 재전송 여부를 유료방송들이 경제성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지상파들이 대부분 유료방송에서 재송신되고 있는 것은 지상파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가 그만큼 높기 때문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편에 대한 법적 의무전송은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재전송 관련해서도 케이블 쪽과 지상파 쪽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80% 이상의 가구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하나의 PP에 불과한 종편을 지상파보다 공적 규제는 훨씬 덜 받게 하면서 의무재송출하기로 한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 개정 없이 종편을 의무 재송출하겠다고 지상파에 준하는 중간광고 금지라든가 국내제작,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향조정, 그다음에 공익광고방송 등 공익의무 증대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정시기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시기에 관해서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과 종편채널 선정 후 보도채널을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첫 번째 방안보다는 두 번째 방안을 보면 종편채널 신청 사업자 중 탈락한 곳에 보도채널 지원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종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급별 경기를 갑자기 무제한급 경기로 일순간 바꾸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계획(안) 자체가 아무래도 종편채널 중심으로 설계되어서 보도채널 선정은 종편채널 선정과 관련해 매우 불공정한 게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큼니다. 중복소유 금지원칙이라면 애초에 신청한 채널 안에서만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동시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선정방식으로 시간적, 사회적 낭비를 없애고 또 다른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신청은 천천히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앞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계획(안) 내용 위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이 사업자 수를 정하는 것이 사실은 시청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선정된 사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나 시장의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고 선정하는 방식보다는 절대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군 구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사업계획이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어느 군에서 어느 사업자가 하나씩 나와야 된다는 미리 정하는 그런 방식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업자 선정이 절대평가로 들어가게 되면 평가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나와 있는 심사사항 구성이나 배점에 있어서 5개 항목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배점 부여방안 중의 하나가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하는 배점 방안이 있는데,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배점을 줄이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산업에서든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방송은 그 특성상 공익성이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소홀히 되는 면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방송의 사회적 책임 면에는 이번에 종편이 지상파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종편은 지상파 못지 않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소 납입자본금 비중은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의견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제안한 사업계획과 납입자본금 규모가 정말 적합한지에 대한 그 적합성 평가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방송에 있어서 굉장히 공적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투명성 또 편성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평가의 중점이 주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종편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종편사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특혜성 시책들이 나올 우려가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편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특혜성 정책보다는 그 종편사업자들이 정말 정책목표에 맞게 소비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질 높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준비되고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성희용 SBS정책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성희용 SBS 팀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SBS에서 정책팀장을 맡고 있지만 한국방송협회 지상파방송사업자 단체의 대표로 종편사업자 선정 문제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KISDI에서 열렸던 종편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제각각 자기가 희망하는 마음속의 코끼리를 놓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다르고, 여기 앉아 계신 주요 언론사 기자 분들, 희망 사업자 분들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업모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종합편성을 하는 사업자가 누구냐, 방송법상에 종합편성을 하는 사업자는 현재로서는 지상파사업자밖에 없습니다. 지상파사업자가 행하는 편성이 바로 종합편성입니다. 보도·교양·오락, 드라마는 오락 장르입니다. 편성하는 사업자들의 편성과 사업 행태를 방통위에서 오랜 기간 분석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 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라든가 숫자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기준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시장 자체가 이미 SBS가 1990년 처음 허가를 받아서 '91년 11월 9일에 TV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희 자본금이 1,000억원이어서 그것을 금리로 계산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방송환경은 아날로그 사업자였고, 지금은 시장에 들어올 때 모든 콘텐츠를 디지털이라는 단어도 부족해서 HD콘텐츠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울트라 데피니션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단어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아날로그, 디지털에서도 SD, HD, UDTV 이렇게 갈 때마다 제작비가 4배씩 뛩니다. 그런 급변하는 환경을 감당하려면 결국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90년대 초반에 지상파, 케이블 구분 없이 지상파만 5개 있던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 있는 사업자 숫자가 PP까지 하면 IPTV, 케이블 합해서 한 250개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폭증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리고 수입을 내는 사업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장이 폭증했기 때문에, 특히 종편편성PP와 일반PP의 기준을 짓는 보도프로그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왜 기준이 되느냐 하면 2003년도에 MBC 계열사인 지방사들이 종합편성PP를 하겠다고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MBC연합이 좌절했던 이유가 너희는 이미 보도를 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편성PP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보도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벌어서 보도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SBS도 마찬가지로 MBC도 마찬가지이고 KBS는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목표 2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도가 필수인데, 이 보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벌어들여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시장에 한정된 재원을 놓고 매체가 들어와서 싸우게 되면 케이블TV나 위성TV, IPTV는 플랫폼사업자들입니다. 그 플랫폼사업자들은 시장을 운영하는 업자이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나 PP들은 시장에서 매장을 열어놓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입니다. 그 상인들이 시장에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지원,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자기가 어떤 콘텐츠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만의 채널 정책 사례가 예로부터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90년도 초에 종합편성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열어줬더니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경쟁하느라고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미국 콘텐츠 그중에는 한국 콘텐츠도 포함됩니다. 미국 콘텐츠를 대거 수입해서 결국에는 기존에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던 큰 사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 대만 가서 종합편성사업자들을 보시면 계속 미국, 일본, 한국드라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종편 숫자는 절대평가든 비교평가를 하든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개수도 최소화되는 개수는 1개부터 출발하는데,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일단 1개 사업

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시장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오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종편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지상파 입장에서는 규제기관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편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반대할 명분도 없고 시장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고, 시장이 발전하는데 지상파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규제의 무대, 동일한 역무를 하는 사업자한테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망하는 사업자도 불만 없이 나가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업자가 그 사업자 자리를 채워서 계속해서 채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규제들이 차이가 있는지는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광고 편성 규제에서 종편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사업자는 공중파로 이것을 케리어하는 그런 사업자라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심한 차별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편PP의 도입이 다양성 제고와 경쟁 활성화를 통해서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서 진정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편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면 어떤 분이 종편사업자로 선정되시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기자 분들 소속사든 다른 관계자들 와 계시지만 지금의 외주제작제도와 협찬금지제도 이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것은 해 본 저희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개수나 자본금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게 이러이러한 제도 정비도 동시에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목소리를 지금 예비사업자일 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토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괜찮습니다. 제가 토론자의 소속과 직책에서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물론 추상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의 토론이 있습니다.

○ 성기현 KCTA 사무총장

- 안녕하세요. 케이블협회의 성기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의 의견보다는 150개 협회 회원사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원사 입장에서는 공청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 유료방송에 대한 그리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김 국장께서 여기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기본계획(안)에 대해 듣는 자리라고 했는데 양해를 구하고 제가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정책 관련한 사항과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아시다시피 유료방송의 저가시장, 이 유료방송의 정상화 없이 종편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와 유료방송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오프컴에서 나온 커뮤니케이션 마켓 리포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영

국시장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BBC를 위한 퍼블릭 펀드가 전체 방송시장 매출의 25%입니다. 그리고 광고가 28%입니다. 그다음에 유료방송이 걸어 들이는 수신료가 41%입니다. 2004년 35%에서 2009년 41%까지 유료방송 시장의 수신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8월 10일 LA 타임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ABC 디즈니 2/4분기 매출이 얼마나 하면 100억불입니다. 그중에 케이블 PP가 벌어들인 돈이 32억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수신료와 광고의 비율이 거의 50:50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없이는 사실 종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광고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광고시장은 다 잘 알다시피 GDP와 연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은 가상광고, 중간광고, 간접광고들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현상을 보면 지상파에게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도 이것은 매체 간의 공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편은 지상파와 광고를 경쟁해야 된다는 생각을 회원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편은 시장이나 규제 측면에서 보면 거의 지상파와 똑같은데 시장과 규제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기존 PP의 광고시장 파이를 나눠먹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이 기존 PP들 시장의 생각입니다. 기존 PP 광고시장이 약 7,700억원입니다. 이것을 179개 PP가 지금 나눠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자들의 이기주의로 비취질 수 있지만 기존에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책상에서 채널 연번제나 로우채널 같은 것을 강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종편사업자들의 이야기들로 들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SO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먼저 로우채널이나 더 좋은 채널번호 통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설득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상파를 따라 잡기 위해서 지상파를 흉내 내기 위한 종편이 나온다면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아까 김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미디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선정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수는 현재 구도 하에서는 사실 저희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최소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SO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날로그 채널이 60개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확산으로 인해서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의무전송채널이 거의 22개, 3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의무재송신 문제가 나오기는 했는데, 방송법상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과연 의무재송신 채널들에게 수신료를 지급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의무재송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수신료까지 줘야 되느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정시기에 대해서는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군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자 군을 구별해서, 비록 지금 타 사업자 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목적에서는 타 사업자 군을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항목과 배점에 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PP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많이 투자를 해 왔던 기존 PP들의 노하우들을 살려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사항목은 정책 목표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표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콘텐츠 활성화와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심사항목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분류와 중분류에 의하면 아마 생각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서 기술적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애플TV가 나오고 오픈TV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의 플랫폼 사업자와의 연동, 연계, N스크린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과 이해가 사실 계획선에 녹아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점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사항목들을 보면 그것의 과거에 대한 심사항목들이었지, 지금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반영되어야 할 심사항목들이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 그리고 독립제작사협회 이사의 자격으로 토론하시겠습니다.

○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

- 저도 1년전에 성 팀장님과 같이 도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도입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립제작사를 올해 만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종편이 되면 독립제작사들 기회가 많아져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좀 만 되돌아보면 '91년도에 외주 제작 관련된 의무비율 고시가 시작이 되고 나서 케이블TV도 개국했고, 지역민방들이 개국했고, 스카이라이프 개국했고, 또 최근 IPTV까지 상당히 많은 매체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제작사는 양적 팽창은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팽창을 하지 못했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독립제작사는 지상파와 계속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하청을 맡고 외주를 맡고 하는데 그 자체가 불공정거래가 많이 있었고, 드라마와는 달리 교양 쪽은 방송사에 의해서 제작비가 들어오고 제작비를 축소하면 축소하는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제작사는 계속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비용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가장 콘텐츠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을 따지는 그런 혼란으로 저희가 다져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 팀장님께서도 새로운 종편사업자들이 성공하려면 외주제작제도 개선과 협찬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나마 독립제작사협회와 지상파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2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바라보는 점은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의거해서 협찬제도가 개선되면, 그동안 독립제작사가 협찬해서 유치해서 만들었던 그 자체 시장도 없어질

것입니다. 외주 의무비율을 높여 달라, 저는 그것도 독립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같고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상파들도 마찬가지로 의무비율을 내린다고 해서 과연 그만큼 내릴까, 이미 독립제작사가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는 최소한 방송사 경쟁력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만드는 비용보다 독립제작사가 만든 비용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시청률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기 때문에 바로 의무비율고시에 따라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일종에 서로 자기들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편에도 마찬가지로 외주제작비율에 대한 고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 종편을 준비하는 곳들이 프로그램 제작을 외주에 맡긴다는 제작 운영 방침을 세워서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항목에 있어서 분명히 콘텐츠 관련된 심사항목 비율이 정해져 있고 상당히 높게 배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업 준비하신 분들이 일부 독립제작사, 일부 외주제작사들 숫자만 늘려서 협력관계를 만들고, MOU를 맺고, 그것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기회에 심사기준에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이미 5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사장되어 있는, 舊 방송위원회 시절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지켜 나갔더라는 것들이 이번 기회에 심사기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단지 숫자상으로, 여기에 분명히 국내외 다양한 제작 주체와 협력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대다수 준비하는 데에서는 아마 지금도 외주제작사들 중에 요청받고 있는 데가 꽤 될 것입니다. 우리 협력관계 맺자고 해서 MOU 맺고 그래서 숫자 늘리고, 그런데 외주제작사가 그만큼 역량이 있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그동안 지상파와 케이블TV와의 어떤 외주제작사의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에 의한 수직구조 개선이 이번 기회에 제발 좀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편채널은 지금 다들 몇 개 선정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콘텐츠입니다. 여전히 케이블TV 상위 10개 안에 케이블TV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지상파 관련 케이블사들입니다. 결국은 지상파 콘텐츠가 여전히 케이블 시장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새로 나온 종편채널들이 얼마만큼 콘텐츠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콘텐츠를 대다수 외주로 하겠다면 결국 외주제작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은 그동안 끝없이, 명분은 계속 있었습니다. 케이블TV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위성 스카이라이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외주제작 등, 프로그램 공급의 다양성, 다양화 그런데 결국 양적 팽창만 이루어졌지 질적인 성장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글로벌 미디어그룹이라는 것에 글로벌 콘텐츠가 자꾸 묻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주체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광고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는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글로벌 콘텐츠라는 것은 결국 자금력과 돈입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평가가 이루어져서 몇 개가 나오느냐, 절대평가를 하려면 그만큼 자본금도 많아야 되고 제작비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자본금이 시설비, 장비비, 인력운영비 이런 것으로 빠지고 나면 콘텐츠 제작비용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콘텐츠는 맨 마지막으로 갈 것이고 결국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주제작으로 또 똑같이 그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는가, 저비용으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콘텐츠, 그러다 보면 나쁜 콘텐츠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 책임은 또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한테 맡겼더니 프로그램 엉망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이번에 저는

테스트베드로 하나 정도 만들어서 한번 해 본다는 그 자체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과연 외주를 통해서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그동안의 잘못된 제도를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바로 동시에 서너 개가 같이 시작한다고 과연 얼마나 빨라질까, 1~2년 후에 또 하나 늘고 또 하나 는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2차 발언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진행을 했고 지금도 하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는 여기 패널 구성의 특성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물론 전혀 다른 적과의 동침에 가까운 수준의 사업자들이 모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의 목표가 뚜렷하고 지향점이 뚜렷해서 이야기의 포커스가 모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보시다시피 교수님이 세 분 오셨지만 전공이 다 다르고, 또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분도 간혹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이해가 관계가 없어서 논의의 포커스가 넓다는 특징이 발견됩니다. 또 논의의 시점이 어제는 몇 가지 쟁점이슈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논의의 시점도 Before, After를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는, 과거와 현재를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진행자로서 느끼기에는 좋습니다. 지금부터 2차 흐름에 들어갈 것이고, 다만 아쉬웠던 것들은 아까 토론 시작하기 전에 보도 관련해서 듣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1차 토론에 제가 시간 독촉해서 놓쳤던 부분도 포함해서 2분 30초 마무리하는 토론으로 흘러가겠습니다. 김대호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김대호 인하대 교수

- 제가 1차에서 말을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계속 이어진다면 여섯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 일곱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채널의 경우에, 사실 보도가 종편도 그렇고 이 보도 채널이 핵심이 아납니까? 그래서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상황이 됐고, 지금 보도채널의 경우에 현재 보도채널이나 보도 유사채널의 경쟁 상황을 볼 때 일단 사업자 쪽 부분에 있어서는 1개 채널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아까 콘텐츠 경쟁력을 이야기하려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제2안>에서 27%로 가장 높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상황이 지금도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끝이 아납니다.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방송 전환이 2012년에 곧 되면서 지상파방송 쪽도 멀티플렉스와 MMS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케이블도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더 본격화되고 등등해서 앞으로 줄줄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종편PP와 보도PP 승인이 우리 방송정책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면서 향후에 가서는 이것이 앞으로는 이러한 승인절차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게 될 상황으로 되어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점점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생산을 준비하는 시대에 지금 아마도 어쩌면 종편PP와 보도PP에 대한 승인이 이번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아마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 역사를 보면 이러한 시장이 들어올 때 초기에는 진입 규제를 이렇게 해 왔지만 이제는 미디어

어가 다양해지면서 시장에서 그러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점점 풀어졌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고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런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1995년에 케이블PP 사업자 선정 때에도 아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 PP를 지상파방송과 규모가 작은 방송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도 굉장히 강한 허가를 했었고, 지상파방송에 거의 준하는 허가를 했고, 준비하는 사업자들도 거의 지상파방송 인력들이 와서 PP 준비를 했지요. 심지어 사업까지 준비하고 이러느라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고, 결국 이번에 승인하는 종합과 보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등록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남은 종합과 보도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분명히 미디어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첨언드린다면 이러한 승인절차가 바로 우리 방송정책에서도 그러한 과도기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종편PP나 보도PP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 절대로 마지막이 아니고 얼마든지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고, 아마 오히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황승흠 교수님!

○ 황승흠 국민대 교수

- 끝으로 몇 가지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한하는 규정이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전체 기준안에서 문제가 되는데, 크게 보면 신청단계에서 어떤 제한을 둘 것이냐, 그다음에 심사단계에서 그것을 반영할 것이냐라는 두 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면 신청단계에서는 제한을 두지 말고 신청은 넓게 하되, 그런 제한 규정들은 심사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분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방송법에서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전통적으로 자원의 희소성에서 따져 왔습니다. 물론 그것과 공정성·공익성 2가지를 가지고 주로 규율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디어가 아니라 조금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뉴미디어이지요. 특히 전통적인 원리 중에서 자원의 희소성 부분이 많이 완화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업자 수를 선정하는 원리가 아마 전통적인 원리와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여전히 있어서 완전히 일반적인 시장과 동일하게 보고 다 열어놓을 수 있는냐는 것은 여전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려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계획(안)도 그렇고, 다들 이것저것 계량화하고, 점수화 하고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조금 뜬금없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이 방향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점수로 산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일까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려면 왜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을 만들었고 이것이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들을 법적으로 선정했을까, 이렇게 하려면 그냥 독임제로 해도 됩니다. 아주

수치적인 계량을 써서 주면 되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너무 계량화하고 숫자로 다 해 놓으면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될 사항들 심사단계에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것을 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김용규 교수님!

○ 김용규 한양대 교수

- 아까 논의하던 것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부분입니다. 출연금은 정부가 최소한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기간 중에는 출연금을 받지 않는 등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출연금을 받는 근거가 정부의 진입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렌트가 크게 발생할 때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 소유는 여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서 중복 소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복수법인 중복 참여 부분은 일정 퍼센트 이상의 주주는 타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철학이 다 다른데 여기에도 참여하고 저기에도 참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지분율이 2~3% 정도 되는 소수 주주는 재무적인 목적이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텐데 중복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자본금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관심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가 조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허가한 다음에 이행계획에 대해서 초기 5년 정도는 매년 검토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방안이 매우 상세하게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의 경우 망 투자계획, 망 투자 이행계획 등은 모든 나라가 부과하는 허가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산업적인 목표를 추구하시되,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목표도 놓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초성운 실장님!

○ 초성운 KISDI 실장

-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것은 선정기준과 자본금과 선정 순서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까 그 2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동시 선정, 순차 선정 문제와 제가 다른 분들 토론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 2가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동시 선정과 순차 선정의 경우인데 대부분의 의견이 많이 겹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순차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를 따로 나눠서 메이저리그에서 방출되면 마이너리그 가서 뛰게 해 주는 경우는 아니니까 우선 작계는 행정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할까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또 크게는 금년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를 하시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 지금 남은 기간을 따져보면 아마 순차 선정보다는 동시 선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2가지가 되는데 조금 전에 김용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고 했는데 뽑고 나서 보면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치르는 학생이었구나, 그런 경우는 다반사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방송 개시 이전에 허가 조건 이행여부를 한번 정도 점검하는 절차는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심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허가취소가 되겠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 사업자 분들이 나오니까 그런 멘트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것이 사업성의 보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사업자들은 사업권 줬으면 돈까지 벌게 해 달라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방송 부분에서 그동안 공익성만 너무 강조되다 공익성과 시장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시장성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정부는 사업 허가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자의 몫이지요. 이것을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되니까 얼마를 해서 결국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야말로 특혜의 시비가 있는 것이고, 정부는 공정한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허가하는 데까지가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한석현 팀장님!

○ 한석현 YMCA 팀장

- 이야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래도 발언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토론회 가면 대부분 시민단체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서 발언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곳저곳에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의견개진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사업자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많이 줄인 부분도 있고,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도 원론적인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되어서 지켜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판결 이후에 이 모든 사항이 누가 보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시작된 사업이 특혜만 준다고 해서 자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진행과정이라도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종편채널이라든가 보도채널 선정 관련 논의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편사업자 선정과정만 해도 시청자 입장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저희가 시청자 시민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야기드리는 것이지만 저도 얼마 전에 이사 했는데 아파트에서 살 때에는 그냥 공시청 안테나, 벽에 연결선 꽂으면 지상파는 나옵니다. 케이블은 굳이 볼 필요 없다고 해서 지상파 채널이 나와서 그것만 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시청자 시민운동하니까 케이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갔더니 빌라이기는 한데 이것도 공시청 안테나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벽에 꽂았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텔레비전은 HDTV 등 좋은 텔레비전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야 봐야 전혀 수신이 안 됩니다. 아마 '8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텔레비전 사오면 안에 부속품으로 안테나도 들어 있었습니다. V자 형태로 된 것을 돌려서 어떻게든 안 나오더라도 전파를 대충 잡아서 흐리더라도 볼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을 봐야 됩니다. 케이블TV라든가 IPTV라든가 이런 선택권이 있는 것이지, 아파트에 살아도 공시청 안테나들이 훼손되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케이블TV와 연계해서 케이블TV를 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재송출 관련한 문제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치 않아서 내가 전파상 가서 3m짜리, 5m짜리 안테나를 사서 비도 오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달고, 또 안에서 그 연결할 선 달아서 솔직히 볼 분들 별로 없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80% 이상이 유료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유료방송 채널의 의무재송출로 종편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 선택권 입장에서는 이 종편을 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유료방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기본채널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왔다갔다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맞는 실질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파 채널에 대한 직접 수신이 현저히 낮은 지금의 방송환경에서 종편 몇 개 만든다고 해서 매체 다양성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체 다양성과 시청자 선택을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전에 홈쇼핑 채널 저희가 선정할 때에도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농수산 지금은 대부분 케이블이 대기업 소유로 넘어갔지만 채널 배정에 있어서 이런 고려가 있었는데, 지금 선정에서는 그런 고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종편도 주요 언론, 대기업을 포함한 아마 경쟁력이 비슷한 쪽과 그다음에 마이너언론이라든가 시민참여형 등을 별도로 분리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강정화 사무총장님!

○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세부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지나간 내용 중에 보도PP 선정시기는 종편이 안 되면 보도PP되고 이런 방식보다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동시에 선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항목별 최저점수를 제안하셨는데 지금 사실 50점이 무엇이 될지, 60점이 무엇이 될지, 세부기준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선정 방송사를 정하지 않고 평가하게 된다면 평가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최저점수를 50점 수준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심사 항목별 최저점수에서 조금 더 상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 중에 출연금 경우에 어떤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00% 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이런 것은 사실상 심사항목에서 차별화를 이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을 안다면 누구나 배점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종편채널이 나오므로써 어떤 방송환경의 변화를 볼 때 조금 전에 케이블TV협회에서도 유료방송요금의 현실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소비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종편 방송채널 선정이 오히려 더 소비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료 문제도 그렇고 또 유료방송 요금도 그렇고, 광고시장에 있어서도 중간광고라든가 또 간접광고 허용으로 인해서 소비

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금액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중간중간 광고를 봐야 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요금이라는 것이 유료방송에 있어서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돈 내고 보고 싶어서 그 유료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상파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유료방송을 억지로 보게 경우도 상당한 경우이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요금을 내는 그런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요금 수준이 소비자가 제안한 수준도 아니고 방송사업자들이 소비자를 가입시키기 위해서 제안한 어떻게 보면 가격인데, 그 가격이 마치 시청자가 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이 시기에 가능한 한 시청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제안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이번에는 성희용 팀장님!

○ 성희용 SBS 팀장

-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 지상파들의 모임인 방송협회에 속한 회원사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업자 숫자는 적을수록 좋다, 그리고 자본금 규모는 되도록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유는 콘텐츠 시장의 비용 자체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초기에 저희와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심사할 때 콘텐츠 제작능력의 적정성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부분에 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일부 말씀도 나오셨지만 사실 기술적 요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술 만능주의에 새로운 플랫폼 도입정책은 과거 때도 여러 차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술을 쫓아가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콘텐츠를 먼저 시장에 던진다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선정,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고 또 논의가 많으셨던 선정방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종편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선정하면 지금 방통위가 밝힌 계획대로 하면 보도채널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아마 사업계획서를 종편사업자들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12월까지 사업계획서 받으시고 내년엔 받으시려면 전년도 회계서류를 내려면, 올해 사업계획서 받으시면 2009년 것으로 내면 되지만 2011년에 들어가서 사업계획을 받으시면 2010년도 것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나오려면 또 몇 달이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논의가 계속 장기화될 수 있어서 그것은 한꺼번에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석현 팀장님 말씀에 덧붙이면 연립주택에 TV 안 나오신다는 분, 저희가 엔지니어들 보내 보면 다 전파 수준 환경이 되는데 실내 안테나도 요즘 잘 나옵니다. 5m짜리는 안 다셔도 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손바닥만한 안테나 하나 다시면 다 잘 나옵니다. 웬만한 연립주택 다 나오고 동네 자체가...

○ 한석현 YMCA 팀장

- 저희 동네가 빌딩들이 많이 있어서요.

○ 성희용 SBS팀장

- 그 빌딩 난시청은 디지털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인데, 빌딩 사이의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저희 방송협회나 DTV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사람을 보내서 최대한 친절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콘텐츠라는 것이 폐쇄와 보호 속에서는 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저희가 똑같은 규제환경, 과거에 통신사업자들 후발사업자들 진입시킬 때처럼 그것은 주파수의 특성도 다르고 사업모델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종합편성PP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규제가 더 완화된 환경에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무거워서 걱정했는데 오랜만에 유쾌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현 KCTA 사무총장님!

○ 성기현 KCTA 사무총장

- 제가 기본계획(안)을 바라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사실 정책목표 4가지였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방송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급해서 심사항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심사항목과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다시 한번 고민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책목표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보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특히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과 제작계획의 적절성, 그다음에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성 수급 계획, 협력 계획이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SBS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SBS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냥 플랫폼에 던지면 됩니다. 지금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플랫폼과 디바이스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초기부터 기획 단계부터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PP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이해, 특히 기술적 진보, 기술적 진화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번 항목에 있어서 배점 비율이 25%부터 27%인데, 저는 27%도 좋고 그것보다 더 높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클래식한 항목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이 더 배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정적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에 있어서 이것이 플랫폼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 종합편성채널은 플랫폼을 플랫폼 사업자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방송사업하면서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능력에 대한 평가는 더 높아져도, 사실은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료방송 정상화를 말씀드릴 때 좋은 기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기회를 놓쳤고, 지금은 이 종편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편을 통해서 유료방송 시장이 그리고 아까 강정화 사무총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가 짜서 유료방송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해서, 진짜 그런 미디어를 선택해서 유료방송 시장이 정상화되는 기회가 이번 종편 선정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이창수 대표님!

○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

- 오늘 방통위에서 공청회에 독립제작사를 배려해서 한 자리 내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아마 새로 종편 채널들은 외주제작 비율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편채널의 콘텐츠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인데, 여전히 지상파 콘텐츠가 케이블을 비롯해서 현재 많은 매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편의 콘텐츠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 몇 개가 선정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선정기준에 미치다 보면 예전의 케이블TV나 IPTV나 케이블TV 이후에 신규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앞에 나왔던 아주 명분 있는 정책목표들도 있었는데 그런 정책목표들이 과연 얼마만큼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나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편채널이 시작된다면 대다수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될 독립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기존 20년 동안 관행처럼 길들여져 왔던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좀 더 글로벌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국 이야기를 잠시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공청회에 자주 나오면서 영국 2000년도 방송법 이후에 슈퍼인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콘텐츠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아니라 영국의 초대형 독립제작사들 슈퍼인디라는 것을 통해서 초대형 독립제작사들이 생기고, 그 초대형 독립제작사들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콘텐츠는 계속 여전히 드라마나 예능 쪽에 얽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혹시 종편채널의 콘텐츠는 오히려 더 예능, 드라마 쪽에 수준 떨어지고 저급한 그런 콘텐츠 양산 쪽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외주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함께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제와 진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경쟁력 강조한 배점 방안이 좀 더 강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콘텐츠로 승부할 수 있는 종편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방청인 질의응답인데 그 순서에 넘어 가기에 앞서서 브릿지로 다 들으셨으니까 발표자인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께서 혹시 토론자들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시면 자유롭게 코멘트 해 주십시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좋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제는 관련된 예비사업자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어떤 합의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제가 공청회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공청회가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에서 가능하면 이 기본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만 YMCA에서 한 팀장님이 나오셔서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기에 정부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부분은 법안의 가결선포행위,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7:2로 개정 방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자체 효력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결정한 이상 정부가 그 유효한 방송법에 따라서 일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시한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하다라는 그런 절차가 이러한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하고 적합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에 제기된 현재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국회의장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 구하는 청구로서 방송법의 효력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의 결정 여부와 청구에 대한 결정과 방송법의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만약 하나 이 청구에 대해서 인용결정이 내려진다고 했을 경우에도 방송법에 따라서 행해진 행정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용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현재의 판결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는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방송법의 효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인용결정에 따라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송법에 따라서 행해진 행정상 여러 가지 행위는 법집행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유효하게 결정되고 유효하게 확인된 방송법에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따라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어제도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종편과 보도PP의 순차 선정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부 토론하신 분 가운데 종편에 포커싱된 특혜가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기본계획의 특징, 이번 기본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복수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수안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이 기본계획(안)이 오픈된 기본계획(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픈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논의가 오픈되어 있다, 논의의 장을 오픈된 곳에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의 오픈된 기본계획(안)이라고 했고, 두 번째 오픈의 개념은 대안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복수안을 제시하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제시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된 부분을 제시했고, 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 대안에 대해 오픈해서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는 안을 함께 토론하고자 했던 것이 금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주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편과 보도PP의 순차 선정 문제가 또는 순차의 대안이 여기에서 제시된 이유는 그동안 토론과정에서 종편의 선정 부분에 대

해서도 순차적으로 선정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고, 또 종편과 보도PP 부분에 대해서도 이에 비추어서 해석할 경우 또는 이와 관련되어서 해석할 경우, 또는 이와 관련되어서 설명할 경우 순차적인 선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시되었던 모든 의견들을 열어놓고 토론하자는 의미에서 동시 선정과 순차 선정을 제안해 드렸던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보도PP, 종편PP 선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게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하실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SBS 성희용 팀장님과 성기현 박사님이 토론 중에서 공정한 경쟁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정부 당국자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공정한 경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페어를 두고 해석하신 부분이 두 분이 정반대의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비대칭 규제를 폐지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분은 비대칭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페어한 경쟁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페어가 가지는 정확한 개념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 경쟁 룰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방향이고 바람직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가운데 시청자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소비자 선택권과 시청자 부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러한 신규 사업 또는 신규 서비스 정책을 하면서 정부 당국이 시청자 선택이나 소비자 편익을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의무재전송과 같은 부분이 시청자의 선택권을 과하게 제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는 대안들 중에서 지상파 수신료를 확대해 나가고 정상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만 시청자 선택권 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가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체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지상파의 수신료를 확대해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현재 우리가 실제로 즐기고 있는 다양한 유료방송의 프로그램이나 채널 구성들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려하신 대로 시청자 선택권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편의 정책목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 목표들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에 비추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고맙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16분 남았습니다. 기사 선고시간은 지났지요. 초조하실 텐데 방청석에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드리면 질의응답은 발표자 혹은 저는 빼고 아홉 분 토론자 어느 누구에게도 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발제자가 정책 담당 실행자의 실무자이지 정책결정자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가급적 질의응답으로 끌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청회니

까 어떤 주장 발표보다는 이런 것보다 사회자로서 기대입니다. 한 15분이 남았으니까 3분씩 드린다면 여섯 분이나 다섯 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나면 공히 우리 손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해 주십시오. 관등성명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권 철 MBC

- 저는 MBC 정책기획부의 권 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협회를 대신해서 성희용 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중복된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김준상 국장님께 질문드릴 것 하나와 그리고 실제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직까지 지적되지 않은 부분 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안)에 보면 방송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항>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부분을 이번 기본(안)에서는 1번 항목으로 합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보면 종합편성PP가 특정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토론하신 여러분들 중에 일단 시청자들의 선택권과 그리고 다양성을 지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종합편성PP라는 것은 지금의 의무채송신이나 이런 것을 특혜받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성DMB도 그렇고, 위성방송도 그렇고, 그런 지역성 구현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을 통해 실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버린 배경에 있어서 결국은 다양성을 구현함에 있어서 서울과 중앙과 지역의 다양성 구현은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방송협회 성희용 팀장님도 지적하셨고,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분들도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지상파방송이 정책목표에서 보면 지금 4가지 항목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존 지상파방송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인 독과점 지위를 어떻게든지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목표에 녹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방송시장을 큰 틀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규제정책 또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방송시장에 있어서 지상파 그리고 유료방송, 종합편성PP의 역할을 제대로 규정하고 그리고 시장을 제대로 확정하는 다음에 그 시장에 맞는 규제정책을 다시 한번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종편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과정에서 로드맵상 보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쪽 과정에 넣어서 논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두 분 계시는데 뒤에 계신 분 먼저 손 드셨습니다.

○ 서준석 한국지역방송협회 팀장

-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방송협회 서준석 팀장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안)을 보면 지역성에 관한 특히 종편PP가 지상파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지역성 구현 부분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한 줄 딱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역성이 구현될 수 있을지, 100% 서울 중앙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지역으로 바로 흘러내려 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담론의 장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지상파와 똑같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입장에서 아무래도 종편 1개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완전경쟁을 통해서 여러 개의 종편이 나와서 서로 똑같이 지역 권역에 대한 의무, 또 실현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대한민국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성 구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셨습니다.

○ OBS 직원

- OBS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지역방송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편의 지역방송들과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민영방송인 OBS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법적인 논란이 한참 있지만 의무재송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법적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KBS와 EBS만 법적으로 의무재송신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인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종편은 의무재송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파괴력 때문에 지역방송사들은 긴장하고 있는 것이고, OBS의 경우에는 설립조건인 운영 규정에도 나와 있는 역외 재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편의 계속 의무재송신과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안) 공청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이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발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규제나 기준 같은 것이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시간상 한 분이나 많아야 두 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그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세 질문이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3가지를 함께 묶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어쨌거나 잘 답변해 주십시오. 주로 그 세 질문은 다 방송정책국장께 가는 질문이었지요? 일단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제 답변이 부족하면 토론자 분들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부분 우리 규제 정책 당국에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주의에서 먼저 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 심사내용에 관련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사항 가운데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부분이 방송의 공적책임 사항의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지역성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우려인데, 처음에 MBC 정책센터기획팀에서 오신 분과 지역방송협회에서 오신 분의 염려는 아마 비슷한 염려를 하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방송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6가지 사항 중에서 지역적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사항은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사업을 허가할 때 지역을 베이스로 하지 않은 경우, 이런 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대체로 공적책임·공익성이라는 이런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지역성이 삭

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회·문화적 필요성, 타당성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이 별도의 항목으로 살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종편처럼, 종편이 물론 지역과 밀접하고 지역성과 협력계획이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 자체의 베이스가 전국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그동안에 두지 않았고, 보통의 경우에는 표현 자체도 삭제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방송과의 관계 또는 프로그램의 지역성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별도의 항목으로는 저희들이 제시하지 않았지만 방송의 공적책임 사항의 하위 항목으로 가면서 지역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 항목을 항목으로 살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줄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떻게 이 지역성을 구현하는 정책 또는 방안들을 심사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도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심사사항과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사항과 그 배점 그리고 심사항목의 명칭까지 정도 들어가는 수준으로 일단 그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심사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적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그 지역적인 또는 지역성을 어떻게 기여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의결되는 세부심사 기준 등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방법과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은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기본계획(안)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신 지역성 구현 부분, 지역성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 표현을 물론 심사사항으로는 제안하지 않았지만 하부 심사항목으로 분명히 기본계획(안)은 제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종합편성채널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상파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방송구도를 바꾼다는 효과를 가져올 텐데 이렇게 방송구조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짜는 그런 구상은 혹시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제안이고 정책적인 고민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너무 큰 정책의 틀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종편 선정이 여러 가지 방송정책의 화두를 던지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재 주어진 방송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의 한 부분으로서 종합편성PP를 선정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저희들이 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OBS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OBS에서 말씀하시면서 KBS든 EBS든 의무재송신하면서 또 종합편성 머스트캐리하면서 OBS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느냐 이런 말씀 취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BS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끝도 없을 것 같고 정책적으로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OBS 재송신 부분은 지난 회의에 아마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시장상황 분석이 나오면 그 시장상황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의무재송신 문제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부분은 종편의 의무재송신 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 통합방송법 이후에 방송법 시행령에서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을 현행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편을 선정하면서 특별하게 새롭게 제도적으로 가지고 온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시고 제기하신 문제가 중요하고 현장에서 답변을 들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하고 방송정책국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이번 기본계획(안)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클로징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간단치 않은 두 번의 토론회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또 규칙과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 공청회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공론장이 되었다고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청석 여러분께 큰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제 공은 우리 손을 떠나서 정책당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부디 이틀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수렴하셔서 부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격이 넘치는 사업자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업자도 성공하고, 콘텐츠 산업도 활성화되고, 시장도 넘쳐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콘텐츠시장이 글로벌 경쟁력도 생기는 그런 밝은 미래, 그래서 시청자가 더 행복해지는 미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말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끝)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2010. 9. 17.(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1. 의결주문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방송법 제9조 (허가·승인·등록 등) 제5항에 의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위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3. 경과사항

- 위원회 논의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위원회 보고('10.5.18)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관련 워크숍 개최('10.8.11)
  - 「기본계획(안)」 위원회 보고('10.8.17)
  - 「기본계획(안)」 관련 워크숍 4회 개최('10.8.31, 9.8, 9.10, 9.15)
- 관련 제도 마련
  -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10.6월~)
  -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을 위한 신문부수 확인·인증기관 지정('10.7.15)

○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 방송·경영·회계·법률 등 분야별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10.6월~)

- 학계 주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수렴

※ 언론학회(6.17), 방송학회(7.2, 7.23), KISDI(7.14), 언론정보학회(8.16) 등

- 공청회(9.2, 9.3), 전자공청회·행정예고·온라인 공식의견게시(8.18~9.6)에서  
제시된 의견수렴

※ 의견수렴 내용은 별도 자료를 통해 기 보고

#### 4. 기본계획(안)

##### ①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정책목표)

-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

##### ②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

○ (사업자 선정방식)

- (1안)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 (절대평가)

- (2안)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정해진 사업자 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비교평가)

※ 2안을 채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자 수를 확정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군 구분 여부)

- (1안) 사업자 군을 구분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
- (2안) 별도의 사업자 군 구분없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시기)

- (1안)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동시에 선정
- (2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 후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를 선정

③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 (심사사항 구성)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제1항을 토대로 5개 사항으로 구성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심사항목 구성) 심사기준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은 19개 항목으로 구성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 ④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②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추진계획, ②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③ 납입자본금 규모, ④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⑤ 사업성 분석, ⑥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① 재정적 능력, ② 자금출자 능력, ③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① 방송발전 기여계획, ②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③ 출연금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별 배점)

- (1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본 조달 등 경영계획과 함께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 등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배점 방안
- (1-1안) 1안을 기준으로 하되, 경영계획을 강조한 배점방안
- (2안) 정책목표 중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배점 방안
- (3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편성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
- (3-1안) 3안을 기준으로 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보다 강조한 배점 방안
- (4안) 계량 평가가 가능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강조한 배점 방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 배점(단위 : %)】**

심사사항	1안	1-1안	2안	3안	3-1안	4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25	24	23	24	25	2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	24	27	24	25	20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3	25	23	20	20	2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	15	15	20	20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2	12	12	12	10	1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별 배점)

- (1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과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 등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배점 방안
- (2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보도전문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 배점(단위 : %)】**

심사사항	1안	2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30	2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0	2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5	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0	12
합 계	100	100

#### ④ 승인 최저점수 설정

- (전체 및 심사사항별 총점) 전체 총점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의 70%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
  - (심사항목별 총점)
    - (1안) 모든 심사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점수를 50% 이상으로 설정
    - (2안) 심사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지 않음
    - (3안) 특정 심사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점수를 60% 이상으로 설정
- ※ 3안을 채택하는 경우 '특정 심사항목'은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의결 시 결정

#### ⑤ 납입자본금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규모 및 심사방안)
  - (1안)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3,000억원을 설정
    -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2안) 최소한 3~5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6,000억원을 설정
    -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3안)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3,000억원을 설정

-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인 3,000억원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 5,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 3,000억원 초과 5,000억원 미만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금액 순으로 관련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와 배점의 100%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규모 및 심사방안)

- (1안)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400억원을 설정

-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2안) 최소한 3~5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600억원을 설정

-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3안)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400억원을 설정

-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인 400억원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 6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 400억원 초과 600억원 미만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금액 순으로 관련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와 배점의 100%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

## ⑥ 출연금

### ○ (최소 출연금 규모)

- (1안)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모두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규모에 5%를 곱한 금액으로 설정
- (2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00억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5억원으로 설정

### ○ (심사방안)

- (1안)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
- (2안)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

- ▶ 최소 출연금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 최소 출연금 기준과 최고 금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해당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와 배점의 100%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

## ⑦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 (기본 원칙)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

※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 종합편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

- (기존 사업자 승인 신청)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신규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 (신청 단계) 승인 신청시,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에 대한 '처분계획'을 제출
- ▶ (심사 단계) 신청법인이 제출한 '처분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심사항목을 과락 처리
- ▶ (승인 단계) 해당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 교부

○ (신규 사업자의 승인 신청) 동일한 신청법인이 복수의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1안) 복수의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을 금지
- (2안) 복수의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은 허용하되, 보도 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중복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반영

- ▶ (신청 단계)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을 제출
- ▶ (심사 단계) 신청법인이 제출한 '철회계획'을 심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심사항목을 과락 처리
- ▶ (승인 단계) 해당 신청법인이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 교부

## ⑧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 (기본 원칙)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방송 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이 다른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

- (1안) 다른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하는 신청법인에 대해 부적격 처리
- (2안) 다른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하는 신청법인에 대해 관련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시 불이익 부여

※ 1.2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의결시 결정

## 5. 향후 일정

-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보고 및 의결(10월 중)
  - 주요 내용 :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평가방법, 승인신청 요령 등
- 신청 공고(10월~11월 중) 및 신청 요령 설명회
  - ※ 공고 기간은 1개월 이내로 고려
- 「심사계획」 의결(11월~12월 중)
  - 주요 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실무에 관한 사항 등
- 심사위원회 운영(12월 중) 종료 직후 선정 결과 의결.
  - ※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끝.

<붙임>

---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

2010. 9. 17





## 목 차

1.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	169
2.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 .....	169
3.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	170
4. 승인 최저점수 설정 .....	172
5. 납입자본금 .....	172
6. 출연금 .....	173
7.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	174
8.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	175
9. 향후 일정 .....	176



## 1

###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 □ 정책목표

-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추진방향

-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

## 2

###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

---

#### □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절대평가)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군 구분 여부

- 별도의 사업자 군 구분 없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

####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시기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동시에 선정

### □ 심사사항 구성

-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 (심사기준·절차) 제1항을 토대로 5개 사항으로 구성
  -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 심사항목 구성

- 심사기준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은 19개 항목으로 구성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 ④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②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추진계획, ②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③ 납입자본금 규모, ④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⑤ 사업성 분석, ⑥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① 재정적 능력, ② 자금출자 능력, ③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① 방송발전 기여계획, ②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③ 출연금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별 배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편성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보다 강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 배점(단위 : %)】**

심사사항	배 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2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0
합 계	100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별 배점**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과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 등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 배점(단위 : %)】**

심사사항	배 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30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0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0
합 계	100

## 4 승인 최저점수 설정

### □ 전체 및 심사사항별 총점

- 전체 총점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의 70%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

### □ 심사항목별 총점

- 특정 심사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점수를 60% 이상으로 설정

※ '특정 심사항목'은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의결 시 결정

## 5 납입자본금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규모 및 심사방안

-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3,000억원 설정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인 3,000억원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 5,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3,000억원 초과 5,000억원 미만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금액 순으로 관련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와 배점의 100%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

####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규모 및 심사방안

-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400억원 설정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인 400억원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 6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400억원 초과 600억원 미만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금액 순으로 관련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와 배점의 100%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

## 6

### 출연금

#### □ 최소 출연금 규모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00억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5억원으로 설정

## □ 심사방안

-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

## 7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 □ 기본원칙

-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반영

※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 종합편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

### □ 기존 사업자의 승인 신청

-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신규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단계) 승인 신청시,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에 대한 「처분계획」을 제출
- (심사 단계) 신청법인이 제출한 「처분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심사 항목을 과락 처리

※ 해당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특정 심사항목'으로 설정

- (승인 단계) 해당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 교부

## □ 신규 사업자의 승인 신청

- 동일한 신청법인이 복수의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단계)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전에 지정한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을 제출

- (심사단계) 신청법인이 제출한 「철회계획」을 심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심사항목을 과락 처리

※ 해당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특정 심사항목'으로 설정

- (승인단계) 해당 신청법인이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 교부

## 8

###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 어느 한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이 다른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구성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

※ 5%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안은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의결 시 결정

-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보고 및 의결(10월 중)
  - 주요 내용 :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평가방법, 승인신청 요령 등
  
- 신청 공고(10월~11월 중) 및 신청 요령 설명회
  - ※ 공고 기간은 1개월 이내로 고려
  
- 「심사계획」 의결(11월~12월 중)
  -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실무에 관한 사항 등
  
- 심사위원회 운영(12월 중) 종료 직후 선정 결과 의결
  - ※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2010. 11. 2.(화),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1. 보고 목적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등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위함

## 2. 경과사항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위원회 의결 ('10.9.17)
- 관련 제도 마련
  -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10.10.1)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10.10.20)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관련 상임위원 워크숍 개최 ('10.10.26, 10.28, 11.1, 총 3회)

## 3. 세부심사기준(안) 주요 내용

### ① 기본 방향

-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 진행)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평가방법(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으로 구성

- (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항목의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 평가방법을 마련
-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

【 계량평가 비중 】

구분 (연도)	위성방송 ('00)	위성DMB ('05)	지상파DMB ('05)	보도FM ('07)	경인만방 ('07)	IPTV 제공 ('08)	종편PP ('10)	보도PP ('10)
비중	28%	19%	18.5%	17%	10%	10%	<b>24.5%</b>	<b>20.0%</b>

②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 기본계획에서 정한 심사사항 별 배점과 19개 심사항목을 근거로 심사항목의 배점을 부여하고,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여 배점을 부여
  - 정책목표, 기존 사례, 세부심사항목 간 형평성 및 종편과 보도PP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종편 250점, 보도 3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종편 70, 보도 90)	1-1-1.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30	30
	1-1-2.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35
	1-1-3.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25
1-2.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종편 70, 보도 80)	1-2-1.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30	30
	1-2-2.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25
	1-2-3.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25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종편 60, 보도 70)	1-3-1.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25	30
	1-3-2.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20	25
	1-3-3. 구성주주 중복참여(계량)	15	15
1-4.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종편 50, 보도 60)	1-4-1.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	20	25
	1-4-2.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	15	20
	1-4-3.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15	15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총편 250점, 보도 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2-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총편 90, 보도 80)	2-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35	25
	2-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독창성	25	25
	2-1-3.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30	30
2-2.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총편 80, 보도 60)	2-2-1.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적절성	35	25
	2-2-2.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	30	20
	2-2-3. 방송프로그램 구매 계획의 적절성	15	15
2-3.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총편 80, 보도 60)	2-3-1.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35	25
	2-3-2. 전략적 협력계획의 우수성	25	20
	2-3-3.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	20	15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총편 200점, 보도 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3-1. 사업추진계획 (총편 30, 보도 40)	3-1-1.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15	25
	3-1-2.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	15	15
3-2.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총편 30, 보도 40)	3-2-1.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15	20
	3-2-2.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15	20
3-3. 납입자본금 규모 (총편 60, 보도 60)	3-3-1.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60	60
3-4.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총편 35, 보도 45)	3-4-1.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20	25
	3-4-2.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15	20
3-5. 사업성 분석 (총편 15, 보도 25)	3-5-1. 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15	25
3-6.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총편 30, 보도 40)	3-6-1.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15	20
	3-6-2.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15	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총편 200점, 보도 1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4-1. 재정적 능력 (총편 90, 보도 60)	4-1-1. 자기자본 순이익률(계량)	30	20
	4-1-2. 부채비율(계량)	30	20
	4-1-3. 총자산 증가율(계량)	30	20
4-2. 자금출자 능력 (총편 60, 보도 45)	4-2-1.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5	10
	4-2-2. 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5	10
	4-2-3.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계량)	30	25
4-3. 기술적 능력 (총편 50, 보도 45)	4-3-1.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30	25
	4-3-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20	2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총편 · 보도 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5-1. 방송발전 기여계획 (총편 40, 보도 40)	5-1-1.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	25	25
	5-1-2.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의 우수성	15	15
5-2.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총편 40, 보도 40)	5-2-1.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우수성	20	20
	5-2-2. 콘텐츠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	20	20
5-3. 출연금 (총편 20, 보도 20)	5-3-1.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20	20

③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 심사항목을 정책목표를 고려, 4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원칙적으로 범주 별로 1개 씩 선정
- '납입 자본금 규모', '신청법인의 적정성'은 기본계획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기 확정

-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신청법인의 적정성(공익성 관련), ③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글로벌 경쟁력 관련), ④ 납입 자본금 규모(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 관련), ⑤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등 5개 심사항목을 선정

#### ④ 평가방법 관련 주요 사항

- **(주요주주의 범위)**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제시
- **(주주구성 변경금지 방안)**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구성의 변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
  -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 주주구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
  - **(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을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
    - ※ 상속, 법원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
  - **(승인장 교부 후 일정 기간)**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승인조건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
    - ※ 신청법인은 신청서류 제출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분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을 심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심사 시 평가방안)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능력'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 부여,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 감점처리\*, 비계량 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 배점에서 감점처리
  
- (승인 의결 후 처리방안) 신청법인이 주주 중복참여로 인해 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도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중복참여 주주를 대체한 주주가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장을 교부
  
-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법) 기본계획 의결 시 논의된 지분 5%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감점방안을 마련
  - ※ 상법상 이사에 대해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 가능한 기준인 지분 1%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함
  
-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 배점에서 감점처리
  
-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 최초 납입자본금의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을 설립예정법인과 기존법인으로 나누어 제시
  - (설립예정법인)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으로 자본금(법정자본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합한 금액
  - (기존법인)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 및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을 합한 금액
    - ※ 실질자본금이란 방송법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에 따른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을 의미
  
-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심사항목인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세부심사항목)에서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실현가능성 평가방법) 자본금 납입 담보를 위해 모든 구성주주(기존 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의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추가),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비계량으로 평가

※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현가능성의 기속력을 평가

- (건전성 평가방법)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주요주주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평가방안)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는 펀드 등의 경우 심사 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하고,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판단 시에도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

-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

#### 4. 승인신청요령(안) 주요 내용

①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②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5. 향후 일정

-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1월 초)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 의결 (11월 중)
- 신청 공고 및 신청 요령 설명회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 의결 직후)
- 신청서류 접수 (신청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
- 「승인 심사계획」 의결 (11월 ~ 12월 중)
-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12월 중) 직후 선정 결과 의결

※ 향후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2.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안). 끝.

<붙임1>

---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

2010. 11. 2





# 목 차

I. 승인심사 개요 .....	191
1. 승인 대상 및 승인신청 자격 .....	191
2. 승인 심사 주요 절차 .....	191
3.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 .....	192
4. 기타 사항 .....	193
II. 기본 방향 .....	194
III.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	195
1.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원칙 .....	196
2. 심사사항별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	197
3.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	202
IV. 평가방법 .....	203
1. 주요주주의 범위 .....	204
2.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	206
3.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 .....	207
4.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법 .....	209
5.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범위 .....	210
6.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	211
7. 기타 평가방법 .....	212
8.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	213
< 첨부 >	
1.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	214



# I. 승인심사 개요

## 1 승인 대상 및 승인신청 자격

### □ 승인 대상 방송사업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 □ 승인신청 자격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하 신청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2 승인심사 주요 절차

- 의견수렴 :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접수
- 세부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사항 의결 : 11월 중
- 신청공고 : 세부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사항 의결 직후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일간신문 공고 등
- 신청요령 설명회 : 11월 중
  -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실시
- 신청서류 접수 : 신청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

- 관계 기관 의견 조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경찰청 등에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
- 시청자 의견청취 : 신청서류 접수 마감 익일로부터 심사위원회 운영 전일까지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일간신문 광고 등
- 「승인심사계획」 의결 : 11월 ~ 12월 중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실무에 관한 사항 등
- 심사위원회 운영(12월 중) 종료 직후 선정 결과 의결
  - ※ 심사과정 및 이후 세부 절차는 별도 의결 예정인 승인심사계획에 포함

### **3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

#### **□ 승인 조건**

- 위원회는 승인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 승인 조건 예시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이행, 주요주주의 지분 처분 금지 등을 들 수 있음

#### **□ 승인장 교부**

- 선정된 신청법인이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 등본, 승인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원회가 정한 기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까지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함

## 4

## 기타 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신청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예를 들어, 날짜·단위·성명 등 오기·누락의 수정, 서명·날인의 보완 등)에 한하여 보정자료 제출 가능
  -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를 들어, 주주구성의 변경, 부속서류의 추가제출 등)은 보정 불가
  - 제출서류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법인이 보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
- 위 보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각 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승인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법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 심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II. 기본 방향

### □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 진행

-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
  - 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결정

-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평가방법으로 구성
  - 평가방법은 '평가요소'(세부심사항목을 세분화), '평가지표'(계량/비계량), '세부평가방법'(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평점 및 과락기준 등)으로 구성

### □ 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

-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항목의 배점, 세부 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 평가방법을 마련

※ 심사사항의 구성 및 배점, 심사항목의 구성은 기본계획에서 정하였음

#### 【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 】

- ◇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 ◇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 ◇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

-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

#### 【 계량평가 비중 】

구 분 (연도)	위성방송 ('00)	위성DMB ('05)	지상파DMB ('05)	보도FM ('07)	경인만방 ('07)	IPTV 제공 ('08)	종편PP ('10)	보도PP ('10)
비 중	28%	19%	18.5%	17%	10%	10%	<b>24.5%</b>	<b>20.0%</b>

### Ⅲ.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 1.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원칙

-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심사항목에 배점을 부여하고,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여 배점을 부여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

#### 2. 심사사항별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 각 심사사항 별로 심사항목의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을 제시

#### 3.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 19개 심사항목 중 승인 최저점수를 적용할 심사항목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

### □ 심사항목 배점

- 기본계획에서 정한 심사사항별 배점 및 19개 심사항목을 근거로 배점을 부여
- 심사사항 배점을 하위 심사항목 간 정책목표 관련성, 주요 내용 등을 비교하여 차등적으로 배분

### □ 세부심사항목 구성

- 기존 방송사업자 선정 시의 심사기준을 고려
- 심사항목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에 대한 기여도가 큰 항목으로 세부심사항목을 구성
- 세부심사항목 배점 간 편차를 일정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항목을 분할 또는 통합

### □ 세부심사항목 배점

- 심사항목 배점을 하위 세부심사항목 간 정책목표 관련성, 주요 내용 등을 비교하여 차등적으로 배분
- 정책목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심사항목에 속하는 세부심사항목과의 형평성을 확보
- 종편PP와 보도PP의 정책목표 차이, 사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배점을 조정

## 2

## 심사사항별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 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총편 250점, 보도 3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총 70, 보 90)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30	30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35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25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총 70, 보 80)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30	30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25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25
신청법인의 적정성 (총 60, 보 70)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25	30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20	25
	구성주주 중복참여(계량)	15	15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총 50, 보 60)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	20	25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	15	20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15	15

**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총편 250점 보도 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총 90, 보 8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35	25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독창성	25	25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30	30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총 80, 보 60)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적절성	35	25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	30	20
	방송프로그램 구매 계획의 적절성	15	15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 계획(총 80, 보 60)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35	25
	전략적 협력계획의 우수성	25	20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	20	15

**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총편 200점, 보도 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사업추진계획 (총 30, 보 40)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15	25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	15	15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총 30, 보 40)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15	20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15	20
납입자본금 규모 (총 60, 보 60)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60	60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총 35, 보 45)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20	25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15	20
사업성 분석 (총 15, 보 25)	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15	25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총 30, 보 40)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15	20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15	20

**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총편 200점, 보도 1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재정적 능력 (총 90, 보 60)	자기자본 순이익률(계량)	30	20
	부채비율(계량)	30	20
	총자산 증가율(계량)	30	20
자금출자 능력 (총 60, 보 45)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5	10
	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5	10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계량)	30	25
기술적 능력 (총 50, 보 45)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30	25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20	20

**마.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종편·보도 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방송발전 기여계획 (종 40, 보 40)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	25	25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의 우수성	15	15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종 40, 보 40)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우수성	20	20
	콘텐츠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	20	20
출연금(종 20, 보 20)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20	20

◇ 19개 심사항목 중 승인 최저점수를 적용할 심사항목을 선정

### □ 선정 원칙

- 심사항목을 정책목표를 고려, 4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원칙적으로 범주별로 1개 씩 선정
- '납입 자본금 규모', '신청법인의 적정성\*'은 기본계획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기 확정

※ "해당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특정 심사항목'으로 설정"

### □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 ⇒ 총 5개 심사항목

- 공익성 관련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 ※ 관련 항목 :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 ④ 시청자 권익실현 방안, ⑤ 출연금
- 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 ※ 관련 항목 : ①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②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③ 기술적 능력, ④ 방송발전 기여계획, ⑤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 글로벌 경쟁력 관련 ⇒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 관련 항목 :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②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③ 사업추진계획, ④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⑤ 사업성 분석, ⑥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 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 관련 ⇒ '납입 자본금 규모'
  - ※ 관련 항목 : ① 납입 자본금 규모, ②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③ 재정적 능력, ④ 자금출자 능력

## IV. 평가방법

### 1. 주요주주의 범위

-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

### 2.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구성의 변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

### 3.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

-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분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시, 배제 방안을 심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4.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법

- 기본계획 의결 시 논의된 지분 5%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감점방안을 마련

### 5.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

-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을 설립예정법인과 기존법인으로 나누어 제시

### 6.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초 납입자본금의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

### 7. 기타 평가방법

- 계량 및 비계량평가 시 평점방법, 출연금 평가방법 등을 제시

# 1

## 주요주주의 범위

- ◇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

### □ 주요주주의 적용 영역

- 주요주주를 평가하는 심사항목은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신청법인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능력'임

※ 단, 주요주주 이외의 구성주주를 평가하는 심사항목은 '신청법인의 적정성'임

- 주요주주는 주금 납입계약서, 인감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현황, 최근 3년간의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최근 4년간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결산서, 신용등급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주요주주 이외의 구성주주는 주금납입 계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현황만 제출

- 승인장 교부 전 주주구성의 변경을 금지하고 승인장 교부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할 수 있음

### □ 주요주주의 범위

-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와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에서 다량 보유자순 합계가 51%까지인 주주

-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모두 주요주주에 해당함

-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의 지분을 합이 51% 미만일 경우, 지분 1% 이상 지분 5% 미만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지분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를 추가

※ 단, 합계가 51%까지인 주주가 복수인 경우,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1인의 주주로 하며,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의 합이 51% 미만인 경우에도 지분 1% 미만 주주는 포함하지 않음

## 2

##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구성의 변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

승인신청 → 승인심사 → 승인의결 → 승인장교부 →



### 가.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 주주구성 변경

- 승인 신청서류 제출 이후 주주구성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나. 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 주주구성 변경

-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을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
  - ※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

### 다. 승인장 교부 후 일정 기간 주주구성 변경

-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승인조건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
  - 신청법인은 신청서류 제출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3

##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

◇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분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시 배제 방안을 심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어느 한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방송법 상 특수관계자를 포함)이 다른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구성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

### 【 해당 사례 】



▶ 모든 신청법인에 5% 이상 중복참여

▶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다른 신청법인에 5% 미만 중복참여

## 가. 심사 시 평가방안

### □ 개요

- 지분 5% 이상 주주가 중복참여한 경우, 해당 주주의 출자예정 금액은 신청법인의 자본금으로 인정하되, 일부 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에 불이익을 부여

### □ 평가방법

-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능력'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의 주요주주 평가 시,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 부여
-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해 감점 처리

※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 배점에서 감점처리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안과 동일)

- 비계량 세부심사항목 심사의 경우, 중복참여 주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나. 승인 의결 후 처리방안**

- 신청법인이 지분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로 인해 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도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중복참여 주주를 대체한 주주가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음

## 4

###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안

◇ 기본계획 의결 시 논의\*된 지분 5% 미만 중복참여 주주(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감점방안을 마련

- 상법상 이사에 대해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한 기준인 지분 1%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함

※ "5%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안은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의결 시 결정"



#### □ 평가방법

-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 배점에서 감점처리

※ 예를 들어, 세부심사항목 배점이 15점이고 중복참여한 甲 주주의 A 신청법인 지분율이 3%인 경우, A 법인은 0.45점(15점×3%) 감점

## 5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

◇ 최초 납입자본금의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

### 가.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 최초 납입자본금이란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으로 자본금(법정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합한 금액임

### 나. 기존법인의 경우

-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범위는 기존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설립 예정법인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함

- 기존법인이 겸업을 하는 경우 신규 방송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은 전체 자본에서 겸업자본 등을 제외한 것임

※ 실질자본금이란 방송법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에 따른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을 의미

- 기존 법인의 최초 납입자본금은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 및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을 합한 금액임

※ 실질자본금 계산의 근거로 사용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 기존법인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제 1항을 준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에 규정된 실질자본금을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심사항목인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세부심사항목)에서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 최초 납입자본금의 실현가능성 평가방법

- 모든 구성주주(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의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을 통해 자본금 납입 담보 방안을 비계량으로 평가
  - ※ 단,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통해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을 평가

### □ 최초 납입자본금의 건전성 평가방법

-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
  -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란 일정 기간 후에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바이백(buy-back)옵션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순수한 출자행위로 보기 어려움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 계량평가 평점방법

- 자료를 미제출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산출불능인 경우 최저점수로 처리

※ 법인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점의 80%를 미제출 연도분에 적용

- 세부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 비계량평가 평점방법

-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평점 부여

등 급	의 미	평 점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우	우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미	보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양	미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세부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균 산정 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 출연금 평가방법

-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 □ 주주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평가방법

- 법인격 없는 조합 또는 펀드 등의 경우 심사 시 단체 자체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함
  -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
-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신청법인의 구성주주로 간주함

## 8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

### ○ 첨부 참조

- ※ 비계량평가 항목의 경우, 예시로 기술된 세부평가방법은 반드시 적용되며, 그 외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세부평가방법이 추가될 수 있음

【첨부】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1. 방송의 공적 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가능성(종편 250점, 보도 3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1.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 (70점/90점)	1-1-1.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30점/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li> <li>▪ 방송법 제5조(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구체성</li> <li>▪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편성책임자.최대주주의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현의지 등을 평가</li> </ul>
	1-1-2.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점/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방안의 적정성</li> <li>▪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li> <li>▪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내용의 객관성 유지 및 보편적 가치 지향, 뉴스원 다원화 등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li> <li>○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li> <li>※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및 일간신문 구독률(시청점유율로 환산)을 대상으로 산정</li> </ul>
	1-1-3.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 캠페인 포함) 편성계획의 구체성.타당성</li> <li>▪ 재난방송 편성계획의 구체성.타당성</li> <li>▪ 방송언어 순화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li> <li>▪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과 연계하여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2.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70점/80점)	1-2-1.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30점/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문화적 기여계획의 비전 및 목표 등의 타당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간(2007년, 2008년, 2009년)의 사회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li> <li>국제표준화기구의 ISO26000* 실천방안 등을 평가 ※ 기업 등 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윤리적 행동.법치주의 존중 등 7개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제시</li> <li>일자리 창출 계획, 고용규모(직접 고용) 및 그 산정 근거 등을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공익.자선 사업 등 사회적 기여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의 우수성.구체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계획의 구체성.타당성</li> </ul>		
	1-2-2.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지역적 기여실적</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간(2007년, 2008년, 2009년)의 지역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li> <li>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 지역적 기여계획의 우수성.구체성</li> </ul>		
1-2-3.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문화 보존.발전 등에 대한 기여실적</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간(2007년, 2008년, 2009년)의 문화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의 문화적 기여계획의 우수성.구체성</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60점/70점)	1-3-1.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25점/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구성의 다양성 등 정책목표 부합 여부</li> <li>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여부</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구성의 다양성, 구성주주의 정책목표 실현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li> <li>기존 보도 편성채널 처분계획 또는 사전 지정한 1개 사업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미흡 시 감점 ※ 계획 미제출시 해당 세부심사항목 0점 처리</li> </ul>
	1-3-2.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2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대표자.편성책임자 포함) 및 주요주주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기관 의견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관련(방송, 통신, 신문, 商事, 금융, 조세, 노무, 공정거래 등) 법령 준수여부를 사안의 경중. 빈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대상 기간은 최근 3년으로 함</li> </ul>
	1-3-3. 구성주주 중복참여 (15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을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해당 여부</li> <li>지분을 1% 이상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해당 여부</li> </ul>	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해당 세부심사항목 배점 만큼 감점 ※ 감점의 합이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0점 처리</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4.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50점/60점)	1-4-1.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 (2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 권익실현 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의 충분성을 평가</li> <li>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li> <li>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편성의 충분성을 평가</li> <li>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시청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방안 등을 평가</li> <li>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전체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과 연계하여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지원방안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의 구체성</li> </ul>		
	1-4-2.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적정성 (방송법 제87조)</li> <li>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적정성 (방송법 제89조)</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구성방안, 회의 개최 주기, 위원회 결정사항의 처리계획 등을 평가</li> <li>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시간 및 내용, 시청자 평가원의 역할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적정성 (방송법 제86조)</li> <li>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li> </ul>		
1-4-3.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15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적정성 (방송법 제86조)</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심의기구 설치·운영계획, 자체심의 절차의 효율성 등을 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평가</li> <li>시청자 불만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li> </ul>			

##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중편 250점, 보도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1.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90점/80점)	2-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3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의 타당성.우수성.실현가능성</li> <li>■ 방송분야별, 장르별 편성계획의 우수성.적절성.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계획의 방송법령 부합여부, 방송분야별.장르별 방송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확보여부, 재방송 비율, HD프로그램 편성계획, 방송광고 운용계획, 주간편성기본표 등을 평가</li> <li>○ 연도별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장르, 방송내용, 제작원, 장르, 시청대상, 연간 편성편수 및 시간, 편당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 등을 평가</li> </ul>
	2-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독창성 (2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편성의 독창성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참신성</li> <li>■ 기존 종합편성(보도) 방송과의 차별성 확보방안의 구체성</li> </ul>		비계량
	2-1-3.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30점/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규약(방송법 제4조제4항) 등을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2. 방송 프로그램 수급계획 (80점/60점)	2-2-1.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적절성 (3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구체성 및 전체 편성계획과의 정합성</li> <li>■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우수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물과 국외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li> <li>○ 자체제작 계획의 전체 편성계획, 소요비용 및 제작 인력 등 경영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ul>
	2-2-2.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 (3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li> </ul>		비계량
	2-2-3. 방송프로그램 구매계획의 적절성 (15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구매계획의 적절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구매계획의 전체 편성계획, 소요비용 등 경영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3.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80점/60점)	2-3-1.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3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계획의 우수성.구체성</li> <li>▪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li> <li>▪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의 적정성.구체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제작사, 지역방송국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및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프로그램 공동제작 (제작지원), 콘텐츠 공동 활용 등의 협력계획을 평가</li> <li>○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을 평가</li> </ul>
	2-3-2. 전략적 협력계획의 우수성 (2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플랫폼 진출계획의 구체성.우수성</li> <li>▪ 국내·외 콘텐츠 유통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2-3-3.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 (20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방송산업 선순환 및 글로벌 경쟁력 기여 가능성</li> </ul>	비계량	

###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종편 200점, 보도 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1. 사업 추진계획 (30점/40점)	3-1-1.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1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li> <li>▪ 시장전망의 합리성 및 목표점유율 설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li>▪ 기업 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의 적정성</li> <li>▪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li>▪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계획의 구체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시장 등의 분석 및 예측방법, 추정재무제표(매출액 등)와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ul>
	3-1-2.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 (15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2.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30점/40점)	3-2-1.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구조의 구체성 및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구성과 사업추진계획 등의 적합성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구성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소요인력 산정, 배치방안(직급별, 정규직·비정규직구분) 등을 평가</li> <li>추정재무제표(인건비 등)와의 적합성을 평가</li> </ul>
	3-2-2.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인력충원 계획,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투자규모 및 교육의 종류, 방법 등을 평가</li> <li>추정재무제표(교육훈련비 등)와의 적합성 등을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3-3. 납입자본금 규모 (60점/60점)	3-3-1.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 (60점/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li> </ul>	최초 납입 자본금 금액 (계량)	<p>□ 평가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법인이 기존법인 경우 :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 실질자본금 및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 발행초과금의 합계)</li> <li>○ 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 경우 :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li> </ul>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는 평가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li> </ul> <p>&lt;종편PP&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0억원 이상일 경우, 배점의 100%</li> <li>○ 3,000억원 초과 5,000억원 미만일 경우, 배점의 A%</li> <li>※ <math>A=60+(\text{평가대상 금액}-3,000\text{억원})/50\text{억원} \times 1</math></li> <li>○ 3,000억원일 경우 배점의 60%</li> <li>○ 3,000억원 미만의 경우, 0점</li> </ul> <p>&lt;보도PP&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억원 이상 일 경우, 배점의 100%</li> <li>○ 400억원 초과 600억원 미만일 경우, 배점의 A%</li> <li>※ <math>A=60+(\text{평가대상 금액}-400\text{억원})/5\text{억원} \times 1</math></li> <li>○ 400억원 일 경우 배점의 60%</li> <li>○ 400억원 미만의 경우, 0점</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4.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35점/45점)	3-4-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납입자본금 구성의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신청법인(기존법인에 한함) 및 주요주주의 이사회 결의서,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통해 출자(증자)예정금액의 실현가능성을 평가</li> <li>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현가능성의 지속력을 평가</li> <li>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li> <li>신청법인의 자금조달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조달원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조달계획을 평가하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li> <li>영업활동을 통한 조달금액의 실현가능성은 수익 추정방법의 적정성, 시장전망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li>재무활동을 통한 조달금액의 실현가능성은 차입 약정서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조달규모의 충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운영금액 규모와 비교 평가</li> </ul>
	3-4-2.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투자자금의 산출의 적정성</li> <li>제작비 등 경상운영자금 산출의 적정성</li> <li>기타자금 산출의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추진계획과의 정합성을 평가</li> <li>자금운영계획의 산출 가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5. 사업성 분석 (15점/25점)	3-5-1. 추정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1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광고, 협찬, PP 수신료 수입 등) 구성 내역 등을 평가</li> <li>추정재무제표는 1차년도는 분기별로, 2차년도 이후는 연도별로 평가</li> <li>추정재무제표 금액 추정근거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CF 방법(NPV, IRR 등)에 의한 재무적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을 등을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6.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30점/40점)	3-6-1.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감시기구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방안의 실효성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경영투명성 확보계획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액주주 보호 계획, 회계부분의 투명성 확보방안,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간의 부당거래방지 방안 등을 평가</li> </ul>
	3-6-2.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효율화에 대한 전략 및 비전 등의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진의 관련업계 경력, 전문성, 주요 공헌 정도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등 임원, 편성책임자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의 적정성</li> </ul>				

####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종편 200점, 보도 1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1. 재정적 능력 (90점/60점)	4-1-1. 자기자본 순이익률 (3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li> <li>※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li> </ul>	자기자본 순이익률 (계량)	<p>□ 평가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대분류 기준 14개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의 평균(X) 및 표준편차(<math>\sigma</math>)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법인의 지난 3개년 간 지표값(A)에 대해 평가</li> <li>○ 평가기간 : 최근 3년(2009년, 2008년, 2007년)</li> <li>○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설립예정법인일 경우 주요주주만 평가)</li> </ul> </li> </ul> <p>□ 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으로 환산</li> <li>○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회사의 지표 값 : A</li> <li>- <math>A &gt; X + 2\sigma</math> : 최저점(40점)</li> <li>- <math>A &lt; X - 2\sigma</math> : 최고점(100점)</li> <li>- 평균(X)로부터 <math>2\sigma</math> 범위 내 : 취득점수(Y) = <math>70 + 60 \times (X-A)/4\sigma</math></li> </ul> </li> </ul>
	4-1-2. 부채비율 (3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li> <li>※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잔액</li> </ul>	부채비율 (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회사의 지표 값 : A</li> <li>- <math>A &lt; X - 2\sigma</math> : 최저점(40점)</li> <li>- <math>A &gt; X + 2\sigma</math> : 최고점(100점)</li> <li>- 평균(X)로부터 <math>2\sigma</math> 범위 내 기업의 취득점수(Y) = <math>70 + 60 \times (A-X)/4\sigma</math></li> </ul> </li> </ul>

(다음 페이지 계속)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1. 재정적 능력	4-1-3. 총자산 증가율 (3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자산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x 100] - 100</li> </ul>	총자산 증가율 (계량)	<p>※ 3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연도의 평가지표에 대하여는 최저점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평균치의 80%를 미제출 연도의 평가지표에 적용</li> </ul> <p>※ 총자산증가율에 한하여, 4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연도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대하여는 최저점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설립 후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 평균치의 80%를 미제출 연도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적용</li> </ul> <p>※ 신청법인이 산출불능으로 제시한 자료는 최저점수 평가</p> <p>※ 5% 이상 중복참여 주주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평가</p> <p>□ 가중치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 연도부터 5 : 3 : 2</li> <li>○ 설립예정법인의 주요주주 간 가중치 :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li> <li>○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 : 기존법인의 자본금(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자본금)과 유상증자 이후의 주요주주의 출자금액(기존 출자금도 포함, 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 비율로 가중환산</li> </ul> <p>□ 점수계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예정법인 : 연도별로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주주별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li> <li>○ 기존법인 : 연도별로 기존법인 및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존법인과 주주별 점수를 계산한 후,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2. 자금출자 능력 (60점/45점)	4-2-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금융 상품) 對 투자(출자) 금액의 적정성 (15점/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금융상품) / 투자(출자)금액</li> </ul>	<p><b>(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금융 상품) / 투자(출자) 금액 (계량)</b></p>	<p>□ 평가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설립예정법인일 경우 주요주주만 평가)</li> </ul> </li> <li>○ 평가기간 : 신청공고일 직전 회계연도말</li> <li>○ 투자(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법인의 투자금액 : 내부유보금을 통한 2011년도 투자예정금액</li> <li>- 주요주주의 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출자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li> <li>· 기존법인의 경우, 증자 참여 주주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li> </ul> </li> </ul> </li> </ul> <p>□ 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으로 환산</li> <li>○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금융상품) / 투자(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미만 : 최저점(40점)</li> <li>- 50% 이상 ~ 60% 미만 : 50점</li> <li>- 60% 이상 ~ 70% 미만 : 60점</li> <li>- 70% 이상 ~ 80% 미만 : 70점</li> <li>- 80% 이상 ~ 90% 미만 : 80점</li> <li>- 90% 이상 ~ 100% 미만 : 90점</li> <li>- 100% 이상 : 최고점(100점)</li> </ul> </li> <li>○ 자기자본 / 투자(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미만 : 최저점(40점)</li> <li>- 100% 이상 ~ 150% 미만 : 50점</li> <li>- 150% 이상 ~ 200% 미만 : 60점</li> <li>- 200% 이상 ~ 250% 미만 : 70점</li> <li>- 250% 이상 ~ 300% 미만 : 80점</li> <li>- 300% 이상 ~ 350% 미만 : 90점</li> <li>- 350% 이상 : 최고점(100점)</li> </ul> </li> </ul>

(다음 페이지 계속)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2. 자금출자 능력	4-2-2. 자기자본 對 투자(출자) 금액의 적정성 (15점/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 / 투자 (출자)금액</li> <li>※ 자기자본 = 자산 - 부채</li> </ul>	<b>자기자본/ 투자(출자) 금액 (계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는 최저점수 평가</li> <li>※ 제출한 자료로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저점수 평가</li> <li>※ 5% 이상 중복참여 주주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평가</li> <li>□ <b>가중치 배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예정법인의 주요주주 간 가중치 :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li> <li>○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 : 기존법인의 자본금(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자본금)과 유상증자 이후의 주요주주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 비율로 가중환산</li> </ul> </li> <li>□ <b>점수계산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예정법인 :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li> <li>○ 기존법인 : 기존법인 및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li> </ul> </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2. 자금출자 능력	4-2-3.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3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li> </ul>	<b>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계량)</b>	<p><input type="checkbox"/> 평가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설립예정법인일 경우 주요주주만 평가)</li> </ul> </li> <li>평가기준 : 신청접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 평가</li> </ul> <p><input type="checkbox"/> 배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신용등급</th> <th>배점비중</th> <th>신용등급</th> <th>배점비중</th> </tr> </thead> <tbody> <tr> <td>AAA</td> <td>100%</td> <td>BB+</td> <td>68.42%</td> </tr> <tr> <td>AA+</td> <td>96.84%</td> <td>BB</td> <td>65.26%</td> </tr> <tr> <td>AA</td> <td>93.68%</td> <td>BB-</td> <td>62.11%</td> </tr> <tr> <td>AA-</td> <td>90.53%</td> <td>B+</td> <td>58.95%</td> </tr> <tr> <td>A+</td> <td>87.37%</td> <td>B</td> <td>55.79%</td> </tr> <tr> <td>A</td> <td>84.21%</td> <td>B-</td> <td>52.63%</td> </tr> <tr> <td>A-</td> <td>81.05%</td> <td>CCC+, CCC, CCC-</td> <td>49.47%</td> </tr> <tr> <td>BBB+</td> <td>77.89%</td> <td>CC</td> <td>46.32%</td> </tr> <tr> <td>BBB</td> <td>74.74%</td> <td>C</td> <td>43.16%</td> </tr> <tr> <td>BBB-</td> <td>71.58%</td> <td>D</td> <td>40.00%</td> </tr> </tbody> </table> <p>※ 신용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최저점수 평가            ※ 5% 이상 중복참여 주주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평가</p> <p><input type="checkbox"/> 가중치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예정법인의 주요주주 간 가중치 :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li> <li>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 : 기존법인의 자본금(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자본금)과 유상증자 이후의 주요주주의 출자금액(기존 출자금도 포함, 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 비율로 가중환산</li> </ul> <p><input type="checkbox"/> 점수계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예정법인 :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li> <li>기존법인 : 기존법인 및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li> </ul>	신용등급	배점비중	신용등급	배점비중	AAA	100%	BB+	68.42%	AA+	96.84%	BB	65.26%	AA	93.68%	BB-	62.11%	AA-	90.53%	B+	58.95%	A+	87.37%	B	55.79%	A	84.21%	B-	52.63%	A-	81.05%	CCC+, CCC, CCC-	49.47%	BBB+	77.89%	CC	46.32%	BBB	74.74%	C	43.16%	BBB-	71.58%	D	40.00%
신용등급	배점비중	신용등급	배점비중																																													
AAA	100%	BB+	68.42%																																													
AA+	96.84%	BB	65.26%																																													
AA	93.68%	BB-	62.11%																																													
AA-	90.53%	B+	58.95%																																													
A+	87.37%	B	55.79%																																													
A	84.21%	B-	52.63%																																													
A-	81.05%	CCC+, CCC, CCC-	49.47%																																													
BBB+	77.89%	CC	46.32%																																													
BBB	74.74%	C	43.16%																																													
BBB-	71.58%	D	40.00%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4-3. 기술적 능력 (50점/45점)	4-3-1.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3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널 운영에 적합한 방송제작 및 편집 관련 시설설치계획의 적정성</li> <li>▪ 시설 운용 계획의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증빙서류(설비투자계약서 등)를 통해 설비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li> <li>○ 편성 및 제작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li>○ 자금운영계획(시설투자계획 등)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ul>
	4-3-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2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계획의 적정성</li> <li>▪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종편 100점, 보도 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5-1. 방송발전 기여계획 (40점/40점)	5-1-1. 방송산업 발전 기여 계획의 우수성 (2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li> <li>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amp;D)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li>방송인력 양성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 방송기기산업 육성·지원계획, 방송 관련 교육·연수 기관과의 협력계획 등을 평가
	5-1-2.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우수성 (15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 유료방송 플랫폼(위성방송, SO, 위성DMB, IPTV 등)과의 협력방안 및 PP와의 상생 협력방안의 우수성 등을 평가
5-2. 콘텐츠 산업육성·지원계획 (40점/40점)	5-2-1.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우수성 (2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5-2-2. 콘텐츠 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 (2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계획 등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 콘텐츠 관련 단체 지원 및 협력계획 등을 평가
5-3. 출연금 (20점/20점)	5-3-1.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2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금 규모의 적정성</li> </ul>	출연금 규모 (계량)	<p>&lt;종편PP&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억원 이상 인 경우 배점의 100%</li> <li>○ 100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의 0%</li> </ul> <p>&lt;보도PP&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억원 이상 인 경우 배점의 100%</li> <li>○ 15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의 0%</li> </ul> <p>※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p>



<붙임2>

---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안)

---

2010. 11. 2





## 목 차

I.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	239
1. 신청서류 구성 .....	239
2. 작성 및 제출요령 .....	240
II.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242
1. 종합편성(또는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	242
2. 서약서 .....	242
3. 사업계획서 .....	242
< 첨부 >	
1. 각종 양식 .....	254



# I.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 1 신청서류 구성

- 승인 신청서류는 “종합편성(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으로 본문(목차 포함)과 본문의 요약문,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부속서류, 조건표 등 5종으로 구성
  - 본문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순으로 작성하되, 300쪽 이내로 하여야 함
  - 본문의 요약문은 본문과 별도로 30쪽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하여야 함
  -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은 <양식 19>에 따라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부속서류는 본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승인 신청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
  - 조건표는 사업계획서 본문과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간 관련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

### 【 조건표 작성 예시 】

####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본문 페이지	본문 제목	부속서류
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1-1-1.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p.2 ~ p.5	제2장 가.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	제1장 1-1.

## 2

## 작성 및 제출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술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함
- 승인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다만, 외부자문자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자·자문기관 등을 밝혀야 함
- 승인 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함
  - 계약서나 증빙서류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
  - ※ 금액 표기를 천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하는 경우, 각각 백원 또는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처리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가정 및 전제조건은 아래 사항에 따르되 이를 별도로 적용한 때에는 그 구체적 근거를 밝혀야 함
  - 물가 : 신청공고일 현재의 불변가액
  - 환율 : 신청공고일 현재 최초로 고시된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
  - 차입금이자율 : 대출확약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하되,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른 현행 이자율을 하한으로 함
  - 예금이자율 : 사업자 평균 수입이자율로 하되,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정기예금금리를 상한으로 함
  - 감가상각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신규 투자시설에 대해 신청공고일 현재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하고, 그 산정근거(잔존가액,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제세공과금 : 신청공고일 현재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적용하되, 향후 적용할 세율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미래 세율 등을 적용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위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 일람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한글문서(HWP)로(단, <양식 3>, <양식 4>, <양식 6>, <양식 11>, <양식 13~15>, <양식 17>은 MS-excel로 각각 작성), A4용지(210mmx297mm)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는 쪽수를 표시하고 목차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A4 규격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다음 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예정)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기명(서명)날인하여야 함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예 : 1/20)
- 신청 서류의 모든 날인은 인감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 외국인 등 인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 받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신청서류는 본문, 본문의 요약문, 부속서류, 조건표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20부(단, 부속서류는 5부)와 CD 2장을 제출하고, 시청자의견청취용 요약문은 원본 1부만 제출하되, 파일을 CD에 담아 제출하여야 함

## II.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1 종합편성(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

- 승인 신청서는 <양식 1>에 의하여 작성함

### 2 서약서

- 서약서는 <양식 2>에 의하여 작성하며, 대표자 및 모든 구성주주가 기명(서명)날인하여야 함
  - 서약서가 1장을 초과할 경우 서약내용을 각 쪽 상단에 재기술 후 기명(서명)날인하여야 함

### 3 사업계획서

####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가. 명 세

- 신청법인의 명칭,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양식 3>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공증된 법인정관(변경예정정관 포함),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법인설립 전인 경우 발기예정인 포함)이 기명(서명)날인한 정관(안), 법인설립계획서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편성책임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계획서 등에 이를 명기하여야 함)의 성명, 생년월일, 주요 이력을 기술하고 이력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임원의 경우 상임, 비상임,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함

## 나. 구성주주에 관한 사항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양식 3>에 기술된 출자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구성주주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계약서(인감증명서 첨부)

※ 주주의 권리·의무관계, 경영 협력계획 등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기존법인의 경우 <양식 3>에 기술된 출자금액 중 유상증자 예정금액(1주당 액면금액 및 1주당 발행예정금액, 발행예정 주식수)을 별도로 기술하여야 함

- 위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기존법인과 각 유상증자 참여주주 간)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인감증명서 첨부)

○ 모든 구성주주 중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주주(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만 해당)의 경우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비법인 사단 및 비법인 재단의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서)를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구성주주와 특수관계(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명칭을 <양식 4>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 구성주주 중 주요주주(법인이나 단체에 한함)의 경우 <양식 5>를 작성하여야 함
- 구성주주 가운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신청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일간신문 구독률 등에 대해서는 <양식 6>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자료

: ABC협회의 인증을 받은 신청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 판매부수로 구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 이사회 구성·운영현황

## 제2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 가.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

-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 방송법 제5조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양식 7>에 기술하여야 함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비상업적 공익광고·캠페인 등을 포함)을 기술하여야 함
- 재난방송 편성계획, 방송언어 순화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다.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기여계획**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에 대한 총괄적 사항(목표 및 비전 등)을 기술하여야 함
- 2007년 ~ 2009년의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이 있는 경우 각각 <양식 8>, <양식 9>, <양식 10>에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법인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특히, 사회적 기여계획은 신청법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또한,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라.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주주구성의 다양성, 구성주주의 의지와 역량 등을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 중복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의 처분계획 또는 종편과 보도 중 사전 지정한 1개 사업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마.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총괄적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및 장애인 지원방안, 노약자·다문화 가정·외국인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
-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방송법 제87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계획(방송법 제89조) 등 시청자 참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자체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계획(방송법 제86조) 및 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 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기본 방향 및 전략, 목표와 비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방송분야별·장르별 편성 방향을 기술하고, 분야별·장르별 구체적 편성계획은 <양식 11>에 기술하여야 함
  - 편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주간 기본 편성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획의도, 장르, 제작원, 주 시청대상, 주요 내용, 연간 편성 편수·시간, 편당 시간·소요비용 등을 <양식 12>에 기술하여야 함

- HD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방송광고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편성규약에 관한 주요사항 등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고, 편성규약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나.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 방송프로그램 수급에 관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기술하고, 구체적 편성계획은 전체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고려하여 제작원별로 <양식 13>와 <양식 14>에 기술하여야 함
-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기술하고, 제작비 산정 근거, 제작 인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제작비 : 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에 관한 계획을 기술하고, 제작비 책정 근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방송프로그램 구매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구매비용 산정 근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 외주제작사, 지역방송국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및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콘텐츠를 공동 활용할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 협력계획을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특히,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신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활용계획, 해외진출 및 국내·외 콘텐츠 판권 판매계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전략적 협력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

### 가. 사업추진계획 및 경영전략

- 단기 및 중장기 광고운영방안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향후 5년간 방송시장 등을 전망하고 신청법인 목표 시장점유율 등을 적시하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신청법인 내·외부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신청법인의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을 기술하여야 함
  -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관계 구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사업운영계획을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나.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인력소요 규모를 직급별 및 직능별로 기술(인력소요 산출 근거 명시)하여야 함
- 신규인력 충원계획,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구체적인 인력확보 방안(경력/신입, 자체/외부 등으로 구분)을 기술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및 예상 효과 등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투자액을 명시하여야 함

## 다. 납입자본금 규모

- 납입자본금 규모를 <양식 15>에 기술하여야 함
  - 기존법인의 경우 <양식 16>에 따른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와 실질자본금 계산의 근거로 사용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기존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동 증자분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설립계획 및 유상증자 계획에서 현물출자 사항이 있을 경우 현물출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물출자와 관련한 계약서, 현물출자 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등 구체적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라.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 자금조달계획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구분하여 추정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조달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타인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입약정서 등 근거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향후 5년 이내 자본금 증자를 계획한 경우 이에 관한 주요주주의 출자확약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주주가 개인 등인 경우, 신청공고일 현재 자금조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소득원, 보유재산현황 및 납세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방송사옥 및 방송설비 구매·설치, 프로그램 제작비, 구매비 등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의 자금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마. 사업성 분석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법인설립 등기시점(기존법인의 경우 변경등기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표 등 각각의 재무제표를 연도별(최초연도는 분기별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그 추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신청법인이 기존법인인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와 신규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모두 제시하여야 함
- 추정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DCF방법에 의한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고, 할인율 등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DCF방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현금흐름할인방법)

## 바.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책임경영에 관한 사항 및 경영 투명성 확보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주주총회,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및 기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기관(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경영효율화 증대를 위한 전략 및 비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제5장 재정적 능력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무비율 등을 <양식 17>, <양식 18>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최근 4년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단,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법인은 위의 <양식 17>, <양식 18>이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최근 4년 이내에 합병(분할)한 법인의 경우 합병회사(분할회사)와 피합병회사(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실적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며,

합병(분할)계약서, 합병(분할)신고서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는 신청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용등급(회사채 발행기준)을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중 1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

### 가.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 방송 사옥을 포함한 방송제작·송출 등 방송시설의 구체적 구축 계획 및 시설 구성도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계약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연도별 방송시설 구축 및 투자계획을 제작, 송출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세부설비목록,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방송시설 운영계획, 그에 따른 조직 구성 등을 기술하여야 함

### 나.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 방송콘텐츠 제작 및 편집기술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첨단 방송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방안과 향후 이에 대한 연구 및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가. 방송산업 발전 및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

-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계획, 방송인력 양성 계획 등 방송발전 기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유료방송 플랫폼과의 협력방안, PP와의 상생 협력방안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나.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산업 관련 사회 환원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다. 출연금**

- 출연규모, 출연시기, 출연방안, 출연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양식 2]

## 서 약 서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는 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서약하며,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약합니다.

1.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각인은 방송법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서 정한 신청 자격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이면계약 등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참여하는 구성주주가 일체 없습니다.
2.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각인은 승인 신청서류에 첨부한 계약서 이외에 이면계약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3. 본 신청법인은 승인 신청서류를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4. 본 신청법인은 승인 신청서류의 심사에 소요되는 전문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 하겠습니다.
5. 본 신청법인의 각 주요주주는 상속·법원판결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본 신청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승인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7. 본 신청법인은 승인 신청서류에 첨부한 사업계획이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신청법인명 : \_\_\_\_\_

대표자명 : \_\_\_\_\_ (인)

구성주주명 : \_\_\_\_\_ (인)

※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모든 구성주주가 기명(서명)날인함

### [양식 3] 신청법인의 명세 [엑셀]

□ 신청법인의 명칭 :

구성주주의 법인명 또는 성명 1)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유형 2)	출자액 <sup>3)</sup>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주요 업종 <sup>4)</sup>	주소 <sup>5)</sup>	특수 관계 여부 등 <sup>6)</sup>	중복 참여 여부 <sup>7)</sup>	비고 8)
			금액 (단위: 백만원)	비율 (%)	법인명 또는 성명 (특수관 계자 포함 지분율)	주소(법 인등록 번호 또는 주민등 록번호)					
합 계			총계 (외국인 지분을 합)	100% ( %							

- 1)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펀드 등)의 경우 그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하여 기재하고, 단체명을 병기할 것
- 2) 유형 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소유비율)·정부출자기관(정부소유비율)·외국인·외국법인·비영리법인,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 3) 출자액은 법인 설립 시(기존법인일 경우 유상증자 후) 법정자본금(액면금액 기준)으로 함
- 4) 주요 업종 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 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를 병기할 것
- 5) 주소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할 것
- 6) 구성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특수관계(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의 내용(예, (주)000의 임원)을 표기하고, 특히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기업집단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칭을 기재할 것
- 7) 지분율 1% 이상 구성주주(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가 다른 신청법인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기재하고, 중복참여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법인 명과 지분율을 기재할 것
- 8) 비고란에는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양식 4]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 [엑셀]**

□ 법인 또는 개인의 명칭 :

방송법 시행령 조항		해당 특수관계자 명 <sup>1)</sup>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구성주주가 개인인 경우	제3조제1항 제1호가목		
	제3조제1항 제1호나목		
	제3조제1항 제1호다목		
구성주주가 법인인 경우	제3조제1항 제2호가목		
	제3조제1항 제2호나목		
	제3조제1항 제2호다목		
	제3조제1항 제2호라목		

1) 특수관계자 별로 작성

**[양식 5]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b>법인(단체)명</b>						
<b>대표자</b>	○ 성명 ○ 생년월일 : ○ 주요이력 : (학력, 경력 등)					
<b>이사회 구성</b>	※ 상임, 비상임,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성명, 생년월일 및 주요이력을 기술					
<b>연혁</b>	※ 사업내용과 관련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기술					
<b>사업목적</b>	※ 정관상의 사업목적과 주요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기술					
<b>주요주주</b>	<b>법인명/성명</b>	<b>지분율</b>	<b>주요 업종</b>	<b>대표자</b>	<b>최다주주</b>	<b>주소</b>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주요조직 내지 회원 현황 등을 단체 성격에 부합하게 기술

## [양식 6] 구독률 및 시청점유율 환산 (엑셀)

□ 신청법인 명칭 :

구성주주 명칭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수	총 가구수	구독률	매체 교환율	환산 시청률	시청률의 합	환산 시청점 유율
	①	②	③ = ① ÷ ②	④	⑤ = ③ × ④	⑥	⑦ = ⑤ ÷ ⑥
		16,916,966		0.49		34.927 %	
<b>계</b>							

※ 구성주주 중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에 한함

※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는 제출한 2009년도의 유가판매부수 중 가구대상 판매부수로 계산함

※ 구독률과 환산 시청점유율 계산은 소수점 네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세 자리 까지 산정

## [양식 7] 시청점유율 합산 대상

### 7-1. 신청법인 본인

신청법인 명 <sup>1)</sup>	운영 채널(TV) <sup>2)</sup>

- 1) 기존법인의 경우만 해당
- 2) 신청법인이 복수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

### 7-2. 신청법인의 특수관계자

신청법인 명 <sup>1)</sup>	특수관계자 명 <sup>2)</sup>	운영 채널(TV) <sup>3)</sup>	특수 관계 내용 <sup>4)</sup>

- 1) 기존법인 이외에 설립예정법인도 포함
- 2)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만 해당(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하여 특수관계 파악)
- 3) 특수관계자가 복수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
- 4)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의 특수 관계 내용 기재(방송법 시행령 제3조 중 해당 조문 명시)

### 7-3. 신청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타 방송사업자

신청법인 명 <sup>1)</sup>	타 방송사업자 명 <sup>2)</sup>	운영 채널(TV) <sup>3)</sup>	소유 지분율 <sup>4)</sup>

- 1) 기존법인의 경우만 해당
- 2)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만 해당
- 3) 타 방송사업자가 복수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
- 4)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 방송사업자의 지분율을 기재

### 7-4. 신청법인의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신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일간신문 경영법인

신청법인 명 <sup>1)</sup>	일간신문 경영법인 명 <sup>2)</sup>	특수관계자 명 <sup>3)</sup>	특수 관계 내용 <sup>4)</sup>	소유 지분율 <sup>5)</sup>

- 1) 기존법인 이외에 설립예정법인도 포함
- 2)~4) ① 일간신문 경영법인만 신청법인에 참여하는 경우는 2) 항목만 기재, ② 일간신문 경영법인의 특수관계자만 신청법인에 참여하는 경우는 2)~4) 항목을 기재  
 ※ 일간신문 경영법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모두 신청법인에 참여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위의 ①, ②와 같이 작성
- 4) 일간신문 경영법인과 특수관계자의 특수 관계 내용 기재(방송법 시행령 제3조 중 해당 조문 명시)
- 5) 일간신문 경영법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예정인) 신청법인의 지분율을 기재

**[양식 8]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지역적 기여실적**

법인 명 <sup>1)</sup>	일 자 <sup>2)</sup> (기간)	지 역 <sup>3)</sup>	유 형 <sup>4)</sup>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 액 <sup>5)</sup> (백만원)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 1) 신청법인 또는 주요주주별로 작성(개인주주의 경우 성명을 기재)
- 2)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 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기재
- 3) 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 4)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5)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9]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사회적 기여실적**

법인명 <sup>1)</sup>	일 자 <sup>2)</sup> (기간)	유 형 <sup>3)</sup>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 액 <sup>4)</sup> (백만원)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 1) 신청법인 또는 주요주주별로 작성(개인주주의 경우 성명을 기재)
- 2)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 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10]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문화적 기여실적**

법인명 <sup>1)</sup>	일 자 <sup>2)</sup> (기간)	유 형 <sup>3)</sup>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 액 <sup>4)</sup> (백만원)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 1) 신청법인 또는 주요주주별로 작성(개인주주의 경우 성명을 기재)
- 2)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 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11] 방송분야별·장르별 편성계획 [엑셀]**

(단위 : 분)

분 야	장 르 <sup>1)</sup>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간 <sup>2)</sup>	비율 <sup>3)</sup>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보 도	뉴스										
	기획 보도										
	소계										
교 양	다큐										
	문화										
	시청자 참여										
	소계										
오 락	드라마										
	스포츠										
	영화										
	소계										
총 계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 양식에 기재된 장르는 예시임

2)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3)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양식 12] 주요 프로그램 명세 (가로표로 작성)

(단위 : 분 / 천원 / 편)

연도 <sup>1)</sup>	프로그램 명	장르	기획 의도	주요 내용	제작원 <sup>2)</sup>	주 시청대상	편당 시간	편당 소요 비용 <sup>3)</sup>	연간 편성 편수 및 시간
2011									
소계									
2012									
소계									
2015									
소계									
합계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작성

2) 제작원은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로 구분하여 기재

3) 소요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양식 13] 제작원별 편성계획(1) [엑셀]**

(단위 : 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 간 <sup>1)</sup>	비 율	비 용 <sup>2)</sup>	시 간	비 율	비 용									
자 체 제 작	순수 자체 제작 <sup>3)</sup>														
	공동 제작 <sup>4)</sup>														
	소 계														
외주제작 <sup>5)</sup>															
특수 관계자 외주 제작															
구 매	국내물 구매 <sup>6)</sup>														
	국외물 구매 <sup>7)</sup>														
	소 계														
총 계		100 %			100 %			100 %			100 %			100 %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시간 및 비용의 합은 연간 시간 및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업자가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 (공동기획, 공동 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1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양식 14] 제작원별 편성계획(2) [엑셀]**

(단위 : 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간 <sup>1)</sup>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 계			100%		100%		100%		100%		100%

※ <양식 11>, <양식 13>와 일치하게 작성

1) 제작원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양식 15]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 규모 [엑셀]

□ 신청법인 명칭 :

1. 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

구분			금액 또는 주식수
납입 자본금	①	주당 발행예정금액(원)	
	②	설립 시 발행예정 주식(주)	
	① x ②	<b>납입 자본금 총계(백만원)</b>	

2. 신청법인이 기존법인의 경우 :

구분			금액 또는 주식수
실질 자본금	①	실질자본금(백만원)	
유상증자	②	주당 발행예정금액(원)	
	③	유상증자 시 발행예정 주식 수(주)	
	④ = ② x ③	유상증자 예정금액 총계(백만원)	
총계	① + ④	<b>납입 자본금 총계(백만원)</b>	

※ 실질자본금(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 기준)은 방송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를 준용하여 계산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함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 [양식 16] 신청법인의 기업진단보고서

진 단 구 분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승 인 구 분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신청자 제시 자본금액(a-b)		자산총액(a) :	부채총액(b) :

진단결과 내역 (진단기준일 : )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진 단 의 건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자 산		고 정 부 채		
자산총계(I)		부채총계(II)		
부실자산(IV)		자 본 금		
실질자산(V) ( I - IV)		자본잉여금		
비업무용자산(VI)		이익잉여금·결손금		
실질자본(VII) ( V - VI - II)		자 본 조 정		
		자본총계(III)		
겸업자본(VIII) (c-d)		겸업자산(c) :		
		겸업부채(d) :		
방송채널사용사업실질자본 (VII-VIII)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에 의거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 단 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 기업진단내역서

신청법인 명 :

(단위 : 원)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① 현금및현금등가물 ② 단기금융상품 ③ 유가증권 ④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⑤ 단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⑥ 미 수 금 - 대손충당금 ⑦ 미수수익 - 대손충당금 ⑧ 선 급 금 ⑨ 선급비용 ⑩ 이연법인세차 ⑩ 기타의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① 상 품 ② 제 품 ③ 반제품 ④ 재공품 ⑤ 원재료 ⑥ 저장품 ⑦ 기타의 재고자산 (겸업유동자산) 2. 고정자산 (1) 투자자산 ① 장기금융상품 ② 투자유가증권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③ 보증금 ④ 장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⑤ 장기성매출채권 -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손충당금 ⑥ 투자부동산 ⑦ 기타의 투자자산 - 평가충당금  (2) 유형자산 ① 토 지 ② 건 물 - 감가상각누계액 ③ 구축물 - 감가상각누계액 ④ 기계장치 - 감가상각누계액 ⑤ 방송설비 - 감가상각누계액 ⑥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⑦ 건설중인 자산 ⑧ 기타의 유형자산 (3) 무형자산 ① 영 업 권 ② 공업소유권 ③ 광 업 권 ④ 어 업 권 ⑤ 방송프로그램 ⑥ 기타의 무형자산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겸업고정자산)					
자 산 총 계 (겸 업 자 산)					
1. 유동부채 ① 매입채무 ② 단기차입금 ③ 미지급금 ④ 선 수 금 ⑤ 예 수 금 ⑥ 미지급비용 ⑦ 미지급법인세 ⑧ 미지급배당금 ⑨ 유동성장기부채 ⑩ 선수수익 ⑪ 부채성충당금 ⑫ 이연법인세대 ⑬ 기타의 유동부채 (겸업유동부채)  2. 고정부채 ① 사 채 - 사채발행차금 ② 장기차입금 ③ 장기성매입채무 -현재가치할인차금 ④ 부채성충당금 ⑤ 기타의 고정부채 (겸업고정부채)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부 채 총 계 (검 업 부 채)					
1. 자 본 금 ① 보통주자본금 ② 우선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1) 자본준비금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합병차익 ④ 기타 자본잉여금 (2) 재평가적립금  3.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① 사업확장적립금 ② 감채적립금 ③ 배당평균적립금 ④ 결손보전적립금 ⑤ 기술개발적립금 ⑥ 기타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4. 자본조정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② 배당건설이자 ③ 자기주식 ④ 전환권대가 ⑤ 신주인수권대가 ⑥ 미교부주식배당금 ⑦ 투자주식평가이익 (또는 투자주식평가손실) ⑧ 해외사업환산차  (겸 업 자 본)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산정내역

--

**[양식 17]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3년간 주요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엑셀]**

구 분		( ) 회사	( ) 회사	( ) 회사
(1)자기자본순이익률	2007년			
	2008년			
	2009년			
(2)부채비율	2007년			
	2008년			
	2009년			
(3)총자산증가율	2007년			
	2008년			
	2009년			
(4)(현금,현금등가물,단기금융상품) 對 투자(출자)금액				
(5)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				
(6)신용평가등급				

- 1) 재무비율 계산식
  -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x 100(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임)
  -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x 100(부채, 자본의 금액은 기말잔액)
  - 총자산증가율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x 100] - 100(자산의 금액은 기말잔액)
- 2)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및 자기자본은 신청공고일 직전 회계연도 말 금액으로 하며, 투자(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기존법인의 투자금액 : 내부유보금을 통한 2011년도 투자예정금액(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적시할 것)
  - 주요주주의 출자금액 :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출자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
    - 기존법인의 경우, 증자 참여 주주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
  -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對 출자금액 비율 =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투자(출자)금액] x 100
  - 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 비율 = (자기자본/투자(출자)금액) x 100
- 3) 합병법인의 합병을 전후한 총자산증가율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자산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포함함
- 4) 분할법인의 분할을 전후한 총자산증가율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 후 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포함함
- 5) 신용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양식 18]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최근 4년간 재무제표 주요 항목 [엑셀]**

□ 법인 명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재무상태표 항목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자산				
	부채				
	자기자본 <sup>1)</sup>				
손익계산서 항목	당기순이익				

1)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를 의미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OO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 [양식 19] 시청자의견청취용 요약문

신청법인명 :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실현계획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	
제5장. 재정적 능력	
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	
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전문가토론회 속기록

- 11.3 (수) 15: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 -



---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전문가토론회

---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류춘렬 교수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맨 처음 일어나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두 번에 걸친 공청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희망자와 사업자 분들께 여러 의견을 들은 다음에 오늘 비로소 세부심사기준(안)이 나와서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자 소개 ) 지금 소개해 드린 주제발표하시는 분과 패널 분들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난번 공청회와 동일한 분들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상 국장님께서 주제발표를 30분 정도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이 잘 아시겠지만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가 되고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간략하게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 17일에 기본계획을 위원회에 의결했습니다. 그런 다음 기본계획에 따라 10월 1일~20일 정도에 걸쳐서 관련제도를 마련해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이 있었고, 또한 이와 관련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10월 20일에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마련과 함께 이번 심사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상임위원 워크숍을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는 10월 26일, 10월 28일, 11월 1일 총 3회입니다. 기본계획이 의결된 이후에 모든 상임위원 분들이 참석하셔서 활발하게 의견개진을 하였고, 그러한 의견토론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좀 더 발전되기도 했고 또 서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심사기준(안) 주요내용 속에 이러한 토론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에 따라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반영되신 분도 있고 또는 더 많이 반영되신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심사기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통위원회에서 종편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밝힌 4대의 심사 기조가 있습니다. 합법, 합리, 공정, 공명이라는 심사기준과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이러한 4대 기조의 정책방향은 이번 세부심사기준(안) 마련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저희들은 심사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 원칙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세부심사기준(안)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본방향으로 저희들이 주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정책

목표를 고려해서 이러한 정책목표가 심사기준 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4가지 정책목표를 심사항목의 배점이라든가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 평가방법의 마련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고 고려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본방향으로서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기본계획 과정이나 상임위원 워크숍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제시된 의견을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고, 그 의견과정 속에서 가능한 객관성과 관련해서는 계량평가의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심사기준(안) 마련에서 이러한 객관성의 제고를 위해서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계량평가의 비중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금번 종편PP에서는 평균적으로 24.5%, 보도PP에는 20% 정도가 계량평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는 심사항목의 배점과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심사사항별로 배점을 결정해 왔고, 19개의 심사항목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세부심사기준(안) 마련에는 19개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을 부여하고 새롭게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고 그 세부심사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에는 정책목표를 중요하게 고려했고, 아울러 기존 사례라든가 세부심사항목 간의 형평성과 종편과 보도PP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가지 심사사항별 심사항목과 배점 그리고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사사항에 해당되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의 심사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을 1,000점 만점에서 종편 250점, 보도 300점의 배점을 이미 부여한 바가 있고, 이 심사사항을 구성하는 심사항목으로서는 크게 4가지를 기본적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첫째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두 번째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세 번째 신청법인의 적정성, 네 번째가 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입니다. 이 4가지 심사항목의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이미 결정한 바가 있고, 금번 세부심사(안)에는 각각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으로 첫 번째 공적책임 관련 부분에 종편 70점, 보도 90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에서는 종편 70점, 보도 80점의 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신청법인의 적정성에서는 종편 60점, 보도 70점,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에서는 종편 50점, 보도 60점의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4개의 심사항목 하위로서 세부심사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부분은 참조를 해 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 첫 번째 심사항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이라는 심사항목의 세부심사항목으로서는 크게 3가지로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이라는 3가지 세부심사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배점에 관해서 종편의 경우 30점, 20점, 20점, 보도의 경우에는 30점, 25점, 25점 등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나머지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과 배점 부분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배점은 기본계획 시 종편에서는 250점, 보도에서는 200점의 배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 심사사항을 구성하는 심사항목으로는 첫 번째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은 종편 90점, 보도 80점, 두 번째 심사항목으로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종편 80점, 보도 60점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에서는 종편 80점, 보도 60점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니다. 이러한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각각의 배점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관련된 심사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배점은 기본계획 의결시 종편 200점, 보도 250점의 배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성하는 심사항목은 모두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사업추진 계획 심사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배점은 종편 30점, 보도 40점의 배점을 부여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심사항목인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에서는 종편 30점, 보도 40점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심사항목으로 납입자본금 규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배점에는 종편 60점, 보도 60점의 배점을 부여했고,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의 심사항목에서는 종편 35점, 보도 45점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분석 심사항목에서는 종편 15점, 보도 25점의 배점을 부여했고, 경영의 투명성·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종편 30점, 보도 40점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6개 심사항목단의 하부세부심사항목과 각각의 배점 부분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 의결 시 종편은 200점, 보도에는 150점의 배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성하는 심사항목은 모두 3가지의 심사항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재정적 능력입니다. 재정적 능력의 배점은 종편 90점, 보도 60점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심사항목으로 자금출자 능력이 있습니다. 자금출자 능력에서는 종편 60점, 보도 45점의 배점을 부여했고, 마지막 기술적 능력 심사항목에서는 종편 50점, 보도 45점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3개의 심사항목에 따르는 세부심사항목과 배점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 구성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 의결 시에 종편·보도 모두 1,000점 만점에 100점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심사항목도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가 방송발전 기여계획입니다. 이 부분의 배점은 종편 40점, 보도 40점으로 배점을 부여했고, 두 번째 심사항목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종편 40점, 보도 40점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과 관련된 심사항목은 종편 20점, 보도 20점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각 심사사항과 그 심사사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심사항목 배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의결시에 심사항목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특정 심사항목을 두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결정에 따라 금번 세부심사기준(안) 마련에서는 심사항목의 정책목표를 고려해서 모두 4가지 범주로 범주 구분을 한 다음에 각 범주별로 원칙적으로 1개의 항목을 승인 최저점수가 설정되는 심사항목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이미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납입자본금 규모와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기본계획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그런 특정심사항목으로 이미 확정하였기 때문에 이 2가지 심사항목은 기본적으로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심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 범주인데, 먼저 첫 번째 범주가 방송의 공익성 관련된 범주입니다. 이 범주와 관련해서는 2개의 항목을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하였습니다. 첫째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두 번째가 신청법인의 적정성과 관련된 심사항목입니다. 다

음 두 번째 범주로 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 관련된 심사항목에서는 조직 및 인력운
 영계획을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심사항목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업의 기
 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납입자본금 규모를 승인 최저점수가 적
 용되는 심사항목으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콘텐츠산
 업 육성지원 계획을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모두 5개
 의 심사항목이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특정 심사항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개
 의 범주에서 원칙적으로 1개의 심사항목을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심사항목으로 결정할 원칙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4개가 나와야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내부 토론과정에
 서 첫 번째 부분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이라는 심사항목은 방송과 관련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상징적인 심사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범주와 관계없이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일치를 보셔서 모두 5개의 심사항목을 최저점수가 설정되는
 심사항목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평가방법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주주의 범위입니다. 주요주주의 범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도 상
 당한 토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고 대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토론회에 제시하는 안은 먼저 주요주주의 범주를 지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순으로 합계가 51%까지인 주주로 이렇게 주요주주를 설
 정하기로 결정하셨고,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4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도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를 주요주주로 보는 안, 두 번째 안은 지분 5% 이상 보유 주
 주 및 다량 보유자순 합계가 51%까지 주주로 보는 안, 세 번째 안은 지분 5% 이상 보유 주
 주 및 일정금액 이상 출자주주를 주요주주로 보는 안, 여기에서 일정 금액은 종편의 경우에
 는 150억원, 보도의 경우에는 20억원이 됩니다. 그 기준은 최저 납입자본금 3,000억원과 보
 도의 경우 400억원의 5%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네 번째 안이 지분 5% 이상 보유주주 및
 지분 3%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순 합계가 51%까지인 주주를 주요주주로 보는 안
 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안도 함께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토론과정에서도 함께 토
 론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주구성의 변경금지 방안입니다. 이번 세부심사
 기준(안) 마련에서는 최초 납입자본금 출자약속의 불이행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
 주구성의 변경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
 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 단계가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까지 단계입니다. 이 단계
 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구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승인 의
 결 후 승인장 교부 전까지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승인장 교부 시 지분율을 포함한 주요
 주주의 구성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
 다. 다만, 상속, 법원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서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했습니다.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승인장 교부
 후 일정 기간입니다.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에는 주요주주 지분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그 승인조건 위반 시에는 방송법령에 따라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다
 음 사항은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의결할 때
 지분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를 배제한다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제방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사단계별로 이번 세부심사기준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사 시 평가하는 방안에서는 먼저 재정적 능력과 자금출자능력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에 대해서 최저점수를 부여하고, 구성주주 중복참여라는 세부심사항목에서는 신청법인을 감점처리하게 되며, 비계량 세부심사항목에서는 중복참여 주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법인의 감점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중복참여하는 주주의 지분율만큼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에서 감점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승인 의결 후에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중복참여한 신청법인이 불이익을 받고도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복참여 주주를 대체한 주주가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에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서 승인장을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미만 중복참여 주주에 대한 평가방법입니다. 기본계획 의결 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5%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해서는 감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감점방안이 이번 세부심사기준(안)에서 마련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최저로 보는 지분 1%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하고, 1% 이상 주주, 5% 미만의 주주가 중복참여한 경우에는 그 중복참여한 주주의 지분율만큼 구성주주 중복참여의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분율만큼 감점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초 납입자본금 인정 범위입니다. 최초 납입자본금의 규모 산정을 위해서 2가지로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먼저 설립예정법인과 기존법인 2가지로 나누었는데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법정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존법인에 대해서는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주식발행초과금 포함)과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을 합한 금액을 기존법인의 최초 납입자본금으로 인정토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초 납입자본금의 실현가능성과 건전성의 평가방법도 마련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심사항목의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중에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라는 세부심사항목에서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담보를 위해서 모든 구성주주의 주금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제출해서 평가토록 하고, 주요주주의 경우 이러한 계약서와 함께 이사회 결의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주주의 경우 자금출자능력을 비계량으로 평가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금납입 관련 계약서와 이사회 결의서 세부사항을 고려해서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의 지속력을 평가토록 했습니다. 마지막 건전성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건전성 평가방법에서는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계량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주주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나 펀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사 시에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심사기준(안)을 오늘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고, 11월 초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과 그 신청요령을 11월 중에 의결토록 하고, 이것이 의결되면 신청공고와 신청요령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 신청서류를 접수토록 하고, 승인 심사계획 의결을 11월~12월에 걸쳐서 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을 12월 중에 종료토록 해서 종료 직후 선정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세부심사기준(안)을 말씀드렸

습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감사드립니다. 김 국장님께서 그동안의 경과와 심사기준의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항목 구성과 배점, 주의 및 주요사항, 그다음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국장님 발표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또 토론 패널들의 토론이 끝난 후에 방청객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정화 사무총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10분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입니다. 먼저 발표를 하고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료를 한번 보는 정도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단편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기준(안)이 나왔는데 각 부분별로 점수 배정이나 중요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분류별로는 이미 몇 번의 토론을 통해서 공익성 부분에 얼마, 이렇게 점수가 크게 배정되었고 또 각 부분별로 세부 평가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량평가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고, 또 많은 의견이 반영된 것이어서 비중 높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계량평가가 대부분의 경우 자본금이나 재정 관련 항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동안의 많은 토론회나 이런 부분에서 자본금 규모라든지 또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또 이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들도 충분히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에 관련된 비중이 평가점수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계량평가나 아니면 비중으로 봤을 때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많은 부분 점수를 이미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편채널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어떤 지상파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유료방송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래서 방송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또 경쟁력 있는 방송사를 만들겠다, 또 글로벌 방송환경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방송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능력이나 콘텐츠의 공급능력 또 방송기술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방송사업자들이 충분히 준비했었을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점수를 주게 되면 어떤 변별력이나 차별성이 가능해서 우수한 정말 앞으로 경쟁력 있는 방송사를 선정하는데 좋은 평가기준이 될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과락 항목을 5개 선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해 주셨는데, 또 앞의 것과 연결해서 과락을 정한 항목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고려할 때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방송사가 정말 능력이 있을 것인지를 평가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공익성이나 방송사가 유료방송사로서 사업자들이 있지만 방송으로서의 공익적인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방송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성이나, 그러니까 경영 투명성 확보는 결국 편성에 있어서의 투명성·공정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성 투명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자권

익 실현방안에서 보면 종편이 50점이고, 보도가 60점인데 종편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루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청자에게 주는 영향력도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청자권의 분야가 보도보다 조금 낮은 점은 왜 그렇게 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이나 경영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면 어떤 해당기구를 만들고 또 해당기구의 운영계획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해당기구를 만들고 운영계획을 짜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송사라면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기구들이 정말 방송사에서 시청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외 이사회를 구성해서 정말 사외이사가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중점을 두어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발전지원계획 분야에 있어서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점수를 배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출연금에 20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20점, 아니면 0점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사 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비중이 좀 더 낮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항목에 있는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계획에 오히려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두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종편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에도 조금 더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익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실적을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수 배정도 있겠지만 나중에 평가할 때 사실 과거의 실적보다는 지금 사업자들이 거의 언론이나 여러 가지 방송과 관련된 사업자들로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앞으로 계획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감사드립니다. 우선 패널 토론자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발표자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대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 김대호 인하대 교수

- 먼저 세부심사기준이 나오고 향후 일정까지 제시된 것은 우리 종편이 최종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기준을 보면 지금까지 이런 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중 가장 세부적인 기준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기준과 그다음에 평가방법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계량평가점수가 이렇게 높은 것도 처음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도 역력하거나와 저로서는 이러한 사업자 선정이 우리 미디어 정책 중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일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정부와 민간 부분이 모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목표와 사업자 선정이 이번만큼 그렇게 잘 매치가 된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승인기준과 절차가 아주 엄격해진 만큼 준비하는 측면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주주의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예컨대 각 기업이 참여할 경우 이사회가 개최될 것이고 또 결정되는데 시간이 걸릴 텐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나 준비 등에서 방통위의 배려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세부적인 기준과 평가방법 이런 것들이 제시된 만큼 그에 관련된 준비를 보다 더 사업자 측에서 철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업자 승인기준이 정책목표와 맞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2가지다, 첫째가 제대로 된 방송서비스를 과연 잘 할 수 있느냐, 둘째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경영 능력이 과연 잘 갖추어져 있는가, 이 2가지를 가지고 보겠다는 점에서 잘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1,000점 중에 방송서비스 분야가 520점 정도 배정되고, 재정경영 분야에 480점, 여러 가지를 분류한다면 이렇게 해서 재무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여러 장치로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 역시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 미디어시장에도 다양한 재원이 들어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Profit equity라든지 이런 다양한 재원이 들어오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일부 미디어시장에도 이런 Profit equity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더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산업이 글로벌한 환경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을 예전처럼 막기보다는 오히려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잘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심사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을 5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과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글로벌 경쟁력 관련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관련 부분을 심사하는 항목을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조금 의아해 보입니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은 이런 조직과 인력운영 계획이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핵심이라는 것은 콘텐츠에 있는 것이지요. 콘텐츠를 가지지 않고는 아무도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반도체나 휴대폰, 디지털TV, 디스플레이 등 생산품이 있듯이 미디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결국 콘텐츠라는 생산품을 어떻게 여하히 잘 수급해서 제공하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조직과 인력운영 계획보다는 오히려 콘텐츠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조직과 인력운영 계획의 하위항목을 보니까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그다음에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인데, 사실 이 항목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어차피 글로벌 경쟁 의지는 기획·편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시된 것 중에서는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재정능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정능력에 대한 계량평가를 높인 것은 역시 또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종편·보도 승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컨소시엄이라든지 또 신문사가 주도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주요주주의 범위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잘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량과 비계량을 함께 보는 이런 이중장치를 통해서 확실한 경영, 재정능력을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컨소시엄이 중요하고, 주요주주의 범위에 대해서도 향후 각 신청사업자들이 그런 것을 준비하게 될 텐데, 이번 종편·보도 승인 특성 중의 하나가 희망사업자들이 신문사가 많지 않습니까? 신문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문사가 희망사업자라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 신문사가 보도를 하

기 때문에 이 신문이 유리하고 저 신문이 유리하다, 이런 식의 난맥상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컨소시엄 구성, 주주구성에 있어서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보도를 하더라도, 물론 신문의 역할이 보도에 있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이 컨소시엄, 저 컨소시엄 이러한 식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사에 대한 공정성 그다음에 공정한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방통위에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김용규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규 한양대 교수

- 저는 심사 관련해서 재정, 경영 측면 그리고 기타 측면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 관련 주요사항과 관련해서 자료 4~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라든지 또 주요주주 변경금지 방안,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 방안 그리고 최초 납입자본금 인정범위 또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등은 대체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많은 고심 끝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는 다 동의하는데, 다만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법 관련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주 중에서는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주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 미만 참여주주는 그렇게 실제로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재무적 이익이라든지 사업상의 제휴 등 어떤 목적이 있는 주주들일 텐데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 감점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시장참여를 조금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특정 컨소시엄에만 참여하게 한다면 그 기업들이 리스크가 있고 또 시장참여를 제한받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정 측면에서 배점을 계산해 보니까 <다>의 경영계획 항목에서 95점 정도가 재정 관련된 점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 재정기술능력 항목에서 90점과 60점이 배정되는 등 재정 관련 항목을 다 합쳐 보니까 1,000만점에 245점 정도가 배정된 것은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납입자본금 규모인데, 이 부분도 지난 9월 공청회 이후 방통위가 여러 가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5,000억원일 경우 만점을 준다는 지침에 대해서 5,000억원도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만 초안 3,000억원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부항목 중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중에서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크게 수익성과 안정성과 성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가지표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성장성 부분은 지표가 총자산증가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산이 부채를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간통신사업 허가 등에서 흔히 저희가 성장성 지표로서 매출액 증가율 같은 지표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자산증가율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과 같은 지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면서 아까 국

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합법, 합리, 공정, 공명한 심사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심사기준의 정교함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 김대호 교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편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시청자가 종편사업자에게 가장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종편사업자에 보수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도패턴이라든지 보도의 공정성 같은 것을 우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 많은 평가항목 중에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한 가지 승인 최저점수를 좀 높게 잡아서 진짜 공정한 방송을 하겠다는 컨소시엄에 대해서 컨소시엄만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락점수를 다른 항목은 60점 정도라 하더라도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항목은 과락점수가 70~80점 정도로 상당히 높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해서 심사 세부평가방법에 보면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또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계획서에 쓰라고 하면 우리 컨소시엄은 어느 기업보다도 다 공정성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텐데 그것을 실행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부 평가방법 컨소시엄이 준비하셔야 될 그런 보고서에 착안사항으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업의 대표자는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또 편성위원회는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기업지배구조 중에서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세부 평가항목에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이것이 사업계획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승인조건이 부과되어야 준비하시는 컨소시엄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진정한 계획만을 포함시킬 텐데, 예를 들어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검사하겠다, 또는 3년간 투자금액의 이행률에 대해서는 3년 후에 검사를 하겠고 이러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엄격한 승인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승인신청자의 의무로서 승인 신청법인의 대주주가 될 언론기관들이 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인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사를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이런 승인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과도하게 게재하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감점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기업들이 매매가 되고, 기업이 인수되고 합병되고 또 휴업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시장에서 신생 종편이나 보도PP 법인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김용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성기현 사무총장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 성기현 KCTA 사무총장

- 방금 소개받은 성기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것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고민과 생각들이 많이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토론회에서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사업자라면 이것을 딱 받아온 순간 으악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주 안에 이것을 다하라,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토론 나오신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사업자들이 왜 이런 말을 안 하냐고 했더니 사업자들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를 생각하면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보면서 저는 2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업자 입장에서, 하나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것은 아까 강정화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방송사업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항목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점수의 배점이 꽤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은 배점이 높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최저점수를 도입한 것처럼 그런 최저점수를 도입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 대신에 차별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책목표가 무엇이나, 자료에 적어놓은 것 중에 4가지지만 제가 꼽고 싶은 것은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콘텐츠 활성화, 유료방송의 선순환 구조, 경쟁 활성화, 이 정책목표에 맞는 차별화된 제안서를 내고 그 제안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점수를 주어야지 사실은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사업계획서에 녹아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을 넣으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 30점 만점이면 30점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향 속에서 제가 따져 보니까 10가지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방송의 공적책임 중에서 보면 <1-4>에 소수 시청자 그룹과 시청자 참여방안,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에 20점, 15점, 15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청자 참여방안, 시청자 불만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방안, 회의 개최주기, 편성시간 및 내용, 자체심의 설치 운영계획 이것은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 만점받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차별화가 되겠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 항목을 고칠 수 없다면 그중에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에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참여방안 10점, 불만처리가 10점이고, 나머지 20점을 위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2-1>에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기획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수성 35점, 독창성 25점, 자율성 30점입니다. 자율성이 30점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것은 다 30점 받을 것입니다. 편성 규약에 따라 모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다 쓸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쓴 것이 평가요소 중에 기존 종합편성·보도방송과 차별성 확보방안의 구체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2-2-1> 우수성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우수성은 좀 적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수성의 세부 평가방법을 보면 HD 편성프로그램 계획, 주간편성 기본표,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깔릴 것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1>로 갔을 때 시장전망과 경영전략의 적정성,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서 항을 보면 <3번>의 총점이 200점인데, 자본금 경영 관련 계획 140점이고 나머지가 60점입니다. 물론 자본금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중편이 아까 <2-1>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방송과의 차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시장전망과 경영 전략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5점이 너무 적다, 이것이 제대로 나오면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비전과 전략의 우수성은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굳이 15점, 15점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업성 분석 적정성에 가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회원사들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서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하면 광고료, 협찬 이런 PP수신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머스트캐리가 종편은 되는데 과연 PP수신료를 받아야 될지, 굉장히 저희 회원사들 SO와 기존 PP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쓰실 때에는 그것도 고려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4번>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제가 제일 불만스러운 항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능력이 150점이고 기술적 능력이 50점입니다. 아까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자금출자 능력의 경우는 자본금하면서 조달과 운용계획도 있어서 이런 것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굳이 60점씩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기술적 능력 중에서 특히 방송기술 확보를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첨단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여기에서는 이렇게 썼겠지만 3D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업자와의 첨단기술, 플랫폼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과연 그 좋은 기술들을 확보해서 많은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낼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금출자 능력은 한번 밸런스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 교수님과 다른 의견인데 재정적 능력 중에 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증가율에 대해서는 사실 총자산증가율은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부채비율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비스 쪽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증가율보다는 훨씬 나은 계량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5번>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보면 제가 지난 기본계획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것인데, 이것도 좀 접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5-1-2>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과 <5-1-1>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료방송 활성화 기여계획에서 유료방송 활성화 기여방안에 플랫폼과의 협력방안과 PP와의 상생협력,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종편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방송의 선순환구조, 콘텐츠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15점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점수가 높으면 예를 들어 <5-1-1> 산업발전 계획은 그 안에 포함되어 서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발전 밑에 유료방송이 서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콘텐츠산업 육성계획 부분인데, 콘텐츠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을 보면 세부 평가방법 예시에, 물론 예시겠지만 콘텐츠 관련 단체지원 및 협력계획 등 평가가 20점이고,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이 20점입니다. 이것이 이퀄로 들어간 것은 밸런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 지원하는 것이 진짜 이런 것이 예시로 만약에 해서 들어와서 20점을 받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콘텐츠의 육성계획, 진짜 콘텐츠의 활성화가 진짜 중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5번> 항목이 종편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된 것은 약간의 밸런스가 안 맞다고 보이고, 정책목표에도 좀 안 맞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 그 총점이 바뀔 수 없다면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굳이 항목 따로 20점·20점, 25점·25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40점, 10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종편사업자들이 진짜 고민하고 내가 종편을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리고 과연 정책목표를 이루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녹아 스며들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또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심사계획이 나오고 사업승인을 할 것이고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텐데, 심사할 때 물론 많은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실 텐데 하나 고려될 사항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심사에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의 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봐서, 비록 사업계획서일지라도 비록 인쇄물일지라도 그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의지 이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감사합니다. 성기현 총장님의 토론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재형 그룹장님의 토론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그룹장

- KISDI의 이재영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중복해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견 일 수도 있고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부 심사기준들을 큰 그룹으로 5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서 배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배점을 설정하시면서 어떤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번 공적책임의 경우에 종편이 50점이 더 낮고 그다음에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종편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도와 종편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서 쉽게 수공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3>번, <4>번 조직 경영 쪽은 보도가 250점, 재정은 종편이 50점 더 높은 200점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그룹은 동일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종편과 보도의 배점 간에 차별화할 수 있었던 관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약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면 5% 중복주주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중복주주에 대한 부분이 별 것은 아닐 수 있기는 한데 5% 이상의 경우에는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감점도 하고 최저점수를 주는 항목들도 있고 비계량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 미만 주주에 대해서는 단순히 구성주주 중복참여라는 항목에 대해서만 주주 지분을 만큼 감점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간단한 우려가 생기는 것이 작은 우려일 수도 있고 사실은 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1% 미만 주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제한사항이 아무도 없고, 만약의 경우 극단적으로 0.9%의 주주들이 다수, 그것도 중복해서 상당수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 0.9% 중복주주가 다수 나타났다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분명히 이런 차원일 것입니다. 원래 중복주주를 제한한 이유가 방송서비스 간의 차별성 확보 또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차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서 만약 0.9% 중복주주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앞에 질문과 별개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심사항목과 세부 심사항목을 정해서 꼭 평가하게 될 텐데 일정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만들어진 최종적인 세부심사항목들이 과연 최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 0.9% 소액주주들, 소액 지분율을 가진 주주들이 다소 중복으로 존재하는 상황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항목들이 과연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앞에서 김용규 교수님이나 성기현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총자산증가율에 대해 언급들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반대를 하였고, 한 분은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교수님께서서는 총자산증가율보다는 매출액 증가율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성기현 사무총장님께서서는 그것보다 총자산증가율도 나쁘지 않다, 그것이 나올 수 있다, 부채비율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이라는 부분 안에 자본과 부채가 동시에 들어있다, 그래서 총자산증가율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부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라는 항목과는 오히려 밸런스라기 보다는 상충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보시면 대표적인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매출액 증가율이 있고, 총자산 증가율이 있고, 고정자산, 유형자산 증가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자산증가율의 경우도 이런 대표적인 성장성 지표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라 하더라도 자기자본으로 자금을 동원하든지, 부채를 동원하든지, 사실은 부채를 동원하는 능력 자체도 금융시장이나 신용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 능력이나 경영능력을 시사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부채가 들어 있다고 해서 크게 이슈는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이 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증가율 자체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출증가율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요,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감사합니다. 이재영 그룹장님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창수 대표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

- 지난 9월 초 공청회에 와서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독립제작사협회 입장에서 특히 외주 부분과 관련된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세부심사항목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제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생들

은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 케이블TV나 지역민방 허가받을 때 참여했던 경험으로서는 쉽습니다. 이러한 항목으로 해서 만들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성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 제가 여기 와서 토론 시작되기 전에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것이 차별성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심사항목에 들어가서 내용을 쪽 보면 70%, 80% 이상이 콘텐츠 이야기입니다. 결국 콘텐츠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주 내용은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겠다, 그런데 최근 종편채널에 거는 기대가 지상파와 다른 다양한 콘텐츠, 콘텐츠 이야기로 많이 가는데 하다못해 승인 최저점수 항목에 있어서 콘텐츠 제작계획에 대한 승인 최저점수 항목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콘텐츠라고 이야기하면서 콘텐츠를 심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계량평가가 높아져서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보면 이것은 전부 계량평가하는 부분은 납입금 재정적인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은 신청법인 신용등급과 구성주주 중복참여, 과거 것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 계량평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비계량평가입니다. 외주제작 관련해서 아까 점수채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상파와 다르게 케이블 쪽은 자체제작 의무비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수의 경우 <2-3>을 보면 자체제작이 더 높고, 외주가 좀 낮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체제작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외주제작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팩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보는 것이 협력계획은 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지금 드라마 제작사들은 엇그저께 뉴스에 주식이 오르고 있다고 나왔는데 종편채널들에서 같이 협력계획 MOU 맺어서 제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반면 일반 교양, 다큐 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예능, 드라마가 쪽 나오다가 한 번씩 뉴스 나오는 것이 종편채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다양성, 콘텐츠의 다양성 부분을 과연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쪽 보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 평가를 읽어보면서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마 이 심사도 포괄적으로 심사위원이 위촉되면 심사항목 <1>번부터 끝까지 점수를 다 매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송프로그램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량평가기준은 못할 것이니까 계량평가의 경우에는 특히 전문가와 회계사들이 많이 투입되겠지요. 과연 그분들이 프로그램 콘텐츠의 실현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을까,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제가 건의드리면 항목별로 이번만큼 과거처럼 포괄적인 심사가 아니라 심사항목별로 심사위원들 구성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요즘 전문가라고 심사하는 기준이 전문가는 전문분야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글, 좋은 내용 보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독창성이나 차별성은 없고, 만약 종편에 대한 기대감을 한다면 우려와 기대가 있는데 우려 부분은 보도나 이런 부분이겠습니까만 반면에 또 기대하는 부분은 콘텐츠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가 차별성이 있고 독창성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생들 하셔서 했는데, 아마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짧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경험상으로 봐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띄게 있는 것은 아니고, 계량평가에 있어서 구체성 항목에 점수를 받기 위한 부분이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으나 우수성, 독창성, 적정성, 적절성 이런 것을 그럴싸하게 써내면 되니까, 그러면 그럴싸하게 써낸 것을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위원 기준에 대한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콘텐츠 부분에 대한 평가방법이 아까 앞에서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뒤에 가서 세부심사항목을 보면 콘텐츠 이야기입니다. 예시에 보면 다 프로그램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승인 최저점수에는 콘텐츠의 차별성을 가지고 승인 최저점수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다고 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감사드립니다. 이창수 대표 토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한석현 팀장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 한석현 YMCA팀장

- 10분이 저한테는 되게 긴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시니까 제 이야기를 잠식하셔서 제가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통된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오기는 했지만 토론문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토론 발제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종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사업인데, 물론 보도PP도 빠뜨리면 안 되겠지만 너무 속도전으로 가고 있다, 속도전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방통위 내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들과 배치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의견일치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이런 부분도 연일 보도되니까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도대체 종편이 뭔데, 이런 식으로 파장을 일으키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종편이나 보도PP에 대부분 참여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걱정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언론사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언론사든 참여를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종편채널을 가져 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언론사들이 있고, 그 언론사들이 어떤 방송을 할까 하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는 것이지요. 기대 반, 걱정 반인데, 제가 좀 재미있는 생각도 해 본 것 같습니다. 앞서 쪽 지루한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드리면 요즘 때 아니게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이 걸그룹들에 대한 복장규제, 저도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그 인터뷰 요청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걸그룹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뭔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 내부적으로 자아도 약간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서, 만약에 보수언론이 종편채널을 운영하면 거기에서 음악방송을 할 때에는 도대체 어떤 규제를 할 것인가, 그런데 시청률은 또 나와야 되니까 엠넷이나 케이블에 있는 음악방송들처럼 지상파보다 과도하게 좀 더 섹시한 콘셉트로 더 많이 방송을 할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갈등을 일으켜서 KBS처럼 갑자기 스타킹 신이라는 규제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기대 반, 걱정 반, 우려 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하게 되는 종편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케이블TV가 3년 약정이라서 아직 보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케이블TV를 본 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

시켰지만 직접수신환경을 제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SBS에서 말씀하시기를 25,000원짜리나 30,000원짜리 실내안테나 달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 집에 오늘 당장 사서 달아보고 안 나오면 전화드리려고 합니다. 또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발제문을 너무 늦게 받아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완벽히 만들어서 늦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완벽히 만들려고 하시다가 늦게 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토론회 일정도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안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한테 기대하신 것은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이나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배점이 너무 낮습니다. 배점이 왜 낮은지는 기존에 항상 배점이 낮았습니다. 객관성 제고라든가 계량평가 비중이 종편PP나 보도PP가 위성방송, 지상파, IPTV 이런 것보다는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런 기준이라는 것이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에서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물론 중요해서 두 번째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문제가 항상 점수 배점은 낮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상파라든가 케이블, 하다못해 홈쇼핑에서 음브즈맨이라든가 시청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시청자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방송들을 하고 있어서. 왜 그런 방송들을 하고 있느냐, 시청자 권익을 실현해야 되고, 특히 공중파 공익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취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런 형식적으로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데서 배점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 배점이 낮기 때문에 정작 방송을 시행하고 나서도 그 배점이 낮은 부분에서는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대충 이 항목에 있어서 점수를 받는 정도에, 그리고 이런 항목들은 비계량평가들을 하니까 화려한 수사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작성해서 내면 대부분 통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청자 권익이라는 것이 실현이 되지 않고 시청자들도 보지 않는 시청자 프로그램들을 지상파방송들이 특히 KBS라든가 이런 쪽은 토요일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방송사업자들을 허가하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부분에 있어서 배점을 훨씬 대폭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싶고, 얼마까지 줘야 된다, 제가 그것까지는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공성·공익성 실현가능성에서는 가장 큰 배점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편은 250점이고 보도는 300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도전문채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자들의 패턴이라는 것이 저도 케이블TV를 보고 있어 보도채널PP 방송을 보고 있지만 솔직히 지상파 뉴스 위주로 시청자들은 시청하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도전문채널을 보시거나 아니면 채널을 돌리시거나 이러시다가 많이 보게 되는데, 채널 돌리시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가 나오면 보는 솔직히 그런 시청률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종편이 250점이고 보도가 300점이나, 물론 보도전문채널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시청자들의 시청패턴들, 그리고 시청자들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이라는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리고 지금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간에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보도채널이라고 해서 300점을 주고 종편이라고 250점을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종편의 배점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부분은 <1-1-2>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좀 더 구체화할 수 없는가 그런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상파 MBC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도·교양프로그램들, 시사·교양 프로그램들, 시사프로그램들, 보도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드라마로 채워지거나 오락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사들은 정해진 프로그램 비율만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없어진다고 해서 비율을 깨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청자들은 지금까지 잘 보고 있는데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꼭 폐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거나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보도·시사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고 있는 판국에 종합편성채널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평가요소를 해 놓는다면 처음에는 많이 만들어 놓겠지요. 그랬다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공정성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쪽을 보시면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세부평가 방법은 예시이기는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사회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한다, 종합편성채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해 냈으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더 과거까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든가 고용규모 및 산정근거 등을 인력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평가한다는 부분인데, 일단 종합편성채널 여러 가지 사회적 소수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해서 내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고용촉진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보다 더 강화된 고용계획을 내놓는 것을 심사항목에 넣는 것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프로그램이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서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장애인이란가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을 진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더 평가항목에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자불만처리 부분이기도 한데, '신속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평가한다' 이것이 다 추상적입니다. 예시이기는 하지만 세부평가방법도 추상적이다 보니까 평가요소도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평가요소나 평가방법들에 맞는 맞춤형 제안들을 지금 종편이라든가 보도PP를 준비하시는 사업자들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존 것을 답습해서, 기존의 평가항목들이 그대로 대부분 들어가 있고, 배점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을 뿐이지, 기존에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종편에서도 그대로 답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카피해서 사업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추후 방송 환경변화라든가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쪽 있을 텐데 종편사업은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보도PP채널도 늘리기 때문에 지금의 내용이라든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정하게 되는 기준들이 다음에 있어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못 했던 것들, 지금까지 추

상화 되고 그다음에 쉽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평가요소라든가 평가항목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들의 권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배점기준을 높인다면 방송을 포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기준들이 제시되고 그런 기준들을 만족하는 사업자들이 허가를 받아야 지금과는 좀 더 다른 방송환경이라든가 경쟁력을 가진 방송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린 황승흠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 황승흠 국민대 교수

- 방금 소개받은 황승흠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하니까 다 말씀하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대학에 근무하다 보면 이런 식의 한국연구재단 등등해서 대학이 평가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평가서를 내는 기회가 대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비슷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청서를 써 본 관점과 아무래도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심사할 때 심사자로 많이 가게 되는데 심사를 해 본 경험인데 2가지 관점을 가지고 깊이 본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제가 심사기준과 세부표를 언뜻 봤고 한 300페이지 분량이라고 가이드라인 봤는데 이 정도면 대개 준비해 본 경험으로는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두 달 정도가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두 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기준받고 두 달이지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스타트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앞으로 변화해 봐야 틀이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나름대로 만족하시는 보고서를 끝내시려면 실제 일을 해 보면 12월 넷째 주 정도 되어야 거의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제시한 스케줄을 보면 확실히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대략 12월 초에는 끝내야 되는, 지금부터 길게 잡아야 5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또는 6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모으고 정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기간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신청서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일정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배려는 기간이 짧을수록 강한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빅마우스라고 이야기하는 신청자들이 유리합니다. 약간 기한을 길게 줄수록 후발주자들이 페어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간을 한 2~3주만 늘려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후발주자들, 여기에서 늦게 시작하거나 회사의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일주일만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보고서를 쓰고 우리 회사가 될 수 있었는데라는 그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사실 어느 시점까지 내고 그 시점까지 낸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들이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나타난 요강에 보면 2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신청서 자체를 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부속서류를 갖춰야 됩니다. 이 심사 요강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누가 할 것이냐와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이번에 방통위에서 발표된 핵심은 누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는 대체적으로 비계량이고 미래 계약이니까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계량이 주로 되어 있는 누가 쪽에서 거의 평가

름이 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누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도 있어야 되고, 이사회 결의만 하나 예를 들어도 좋은 제대로 된 법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평판도 있고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법인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법인이 이 프로세스 내에서 기간에 맞춰서 이사회 결의가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아주 평판 있고 괜찮은 법인일수록 사외이사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사외이사들이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사업계획서나 보고 의결합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나와 있나요? 사업계획서는 대략 신청일 접수 마감일 하루 전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결의는 언제쯤 나와야 됩니까? 그것보다 훨씬 전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에 부딪칠 상황들입니다. 여기 보면 보정서류 중에 특히 부속서류 추가제출은 보정이 불가하다고 3페이지에 명시해 놨습니다. 이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실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닥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속서류들은 기본적으로 보정이 가능한 서류로 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신청서 내고 보면 보정서류는 1~2주일, 여기에는 1주일 정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기간을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실무 준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부심사항목 쪽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요주주 범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신청 핵심의 누가 쪽에 있기 때문에 누가를 구성하는데 이제까지 신청법인만 생각했다면 새로 들어온 것 중에서는 주주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주주에 대한 많은 평가요소들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무 쪽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51%라는 기준을 정해서 거기까지인데, 왜 51%이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갖는 최대 지분율이 40%니까 40%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의결권까지 생각해서 51%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줄여주느냐, 늘려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40%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최대주주 한도가 40%로 잡혀있으니까 그것까지 되는 최대주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51%로 굳이 가졌다면 1%보다 그냥 50.1%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1%짜리 1명 빠지는데 1명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일을 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복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중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뒤에 심사항목을 보시면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주요주주의 각종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준 가지고 신청서를 쓴다면 중복주주의 참여라는 15점짜리 감점을 감수하고라도 저는 중복주주를 끌어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주주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표에 많습니다.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8개, 9개 정도의 지표가 되고, 전체적으로 계량의 핵심 지표의 거의 대부분은 주요주주가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15점 마이너스를 받더라도 다양하게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와 안 맞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려면 참여는 시키되, 중복참여의 가능성은 열어놓되 누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점 폭을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하면 중복도 줄게 되어서 신청법인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15점 마이너스 그다음에 재정투자 능력 쪽에서의 감점비율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건전성 항목이 있습니다. 종편은 20점이고, 보

도 쪽은 25점인데, 이 지표를 실제로 심사해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요주주까지 포함이 되고, 주요주주 숫자가 51%까지 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런 다음에 그 주주까지 다 포함해서 방송, 통신, 신문, 상사, 금융, 조세, 노무, 공정거래의 위반사항을 다 마이너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폭이 큼니다. 이 폭을 어디까지 잡아줄 것이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처벌받은 것만 위반으로 볼 것인지, 시정명령, 과태료까지 볼 것인지, 사실 법인의 규모가 좀 크고 사업을 크게 하는 법인의 경우, 특히 그것이 주요주주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이의를 신청해 놓거나 아직 법원에 계류 중으로 확정판결이 안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감점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은 아닌데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형사 소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은 물론 아닙니다. 구성원이 소추를 받았는데 이 경우도 여기에 감점 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범죄야 포함되지 않겠지만요. 이런 등등해서 이 부분의 감점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잣대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툼이 있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은 일단 확정시킨 다음에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추는 진행 중이니까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으면 진행 중으로 봐서 포함시키기 어렵고, 개인적인 소추는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쓴다면 굉장히 막힐 부분이 지역적 기여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하셨는데, 우리 방송법에 지역이라는 개념이 2007년 개정 때 들어갔는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도 있고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역방송을 우리가 허가해 줄 때는 이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송법에서 지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된 이후에 거의 최초로 제대로 된 규모의 전국단위의 방송을 승인해 주는 내지 허가해 주는 그러한 행태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를 들어 신청법인 주요주주의 이제까지 지역사회의 기여 정도가 일단 먼저 평가요소가 되는데, 특히 서울 지역에 근거를 맺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뭘 써야 되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회적 기여 그 밑에 항목인 문화적 기여와 다른 뭘 써야지, 서울시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을 써야 되지, 이것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마찬가지로 대개의 법인이 서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사회발전 계획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등등 지역이라는 개념이 특히 전국방송의 경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물론 편성할 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편성, 이런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방송을 우리가 허가해 주는 것과 다른 맥락에서 지역이라는 평가요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누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것이냐, 또 보도의 공정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저는 회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회사가 얼마나 전횡되지 않는 민주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이면 결국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경영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하라고, 아예 사외이사 비율이 얼마고 이렇게 부칙으로 주는 것이 더 적절한 평가요소가 되지 않는가, 감사위원회를 만들 것, 감사위원회의 어떤 요소로 구성될 것 이렇게 부칙으로 주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기준으로 되어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인데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최저 승인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부칙으로 이것만 봐서는 사업자가 어떻게 이 항목을 채워야 될지, 방향이나 지침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투자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열심히 투자하라는 이야기인지, 그런데 콘텐츠산업 육성하는 것이 종편이나 보도PP가 열심히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잘 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종편이나 혹은 보도PP가 콘텐츠산업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가야 되느냐라는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청사진이 평가요소에 들어가 있어야만 이 부분이 반드시 필수적인 최소기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감사합니다. 지금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토론하실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김 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내용은 주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자리이니까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고귀하게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쪽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분부분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꼭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언급 안 한 부분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중하게 다루어서 향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부득이 못 반영할 것도 있겠지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분부분 제가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소비자연맹에서 나오신 강 사무총장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 계량 비중 높여서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엄격한 심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차별성이 없다,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안한 계량 부분의 재정적 부분 평가하는 부분은 주로 과거의 주요주주가 주로 해당되겠지만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실적의 평가는 3년을 평가하는 것이고, 기간과 관련된 평가는 향후 계획에서는 5년을 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평가방법이나 세부심사항목 등이 제시된다고 해서 하루 이틀 또는 20일, 한 달 이렇게 준비해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3년에 걸친 부채의 증가율이 지금 당장 준비한다고 해서 3년 이전의 부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과락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위원님들 간에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부분과 뒷부분에서도 김대호 교수님께서 글로벌 경쟁력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공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 끝에 글로벌 부분의 조직 인력운영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역량을 보는 부분을 결정하셨는데,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러한 좋은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배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도 있지만 또는 시청자 관점에서 보느냐, 공급자 관점에서 보느냐, 또는 공급자 중에서도 프로그램 제작의 관점에서 보느냐, 여기에 따라 배점의 비중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끌어낸다고 한 것이 지금 배점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은 또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절충한 믹스한 식으로 해서 또 어정쩡한 안을 낼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충돌되거나 또는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의견도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공적책임의 배점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그런 의견이 여러 가지 대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능력 관련해서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매출액 증가율이 좋은가, 아니면 자산증가율을 보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경우라도 한 쪽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다른 쪽이 절대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산증가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채택한 배경에는 보다 방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재정적 역량을 보다 전반적인 성장률을 측정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그리고 이번 종편 선정의 목표 또는 종편·보도PP 선정의 목표라는 것이 글로벌과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본다면 과연 어떤 것을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좀 더 과감한 투자나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단기 변동적인 가능성이 높은 매출액 증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자산의 증가율을 보는 것이 보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보다 도전적이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자산의 증가율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수를 제가 매출액 증가율이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중요하고 대표할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변수를 다 넣어서 믹스시킨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목표와 추진하는 비전에 가장 적합한 것이 있다면 가장 적합한 대표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의 증가율을 채택했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찬반이나 논거 부분은 충분히 여기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변수 하나만이 절대적 우위에 있고 다른 것은 이상하다, 이런 판단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대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김대호 교수님과 김용규 교수님이 공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듣고 조금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사업자 대부분이 중요한 언론기관들인데 향후에 중요하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도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주셨습니다. 한 팀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종편에 대한 사회적 시청자의 우려와 함께 기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맥락과도 상통해서 이제부터 나오는 이 심사기준은 어쩌면 준비하는 사업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는 참여자 간에 패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규제당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

고 참여되는 모든 사업자라든가 관련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노력해 줄 때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인 정당성과 또 우려를 기대로 바꾸는 길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끝까지 종편과 보도PP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용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과 자산 부분 말씀드렸고, 5% 이상 중복참여 제한 관련해서 감점하는 것이 결정은 되어 있지만 시장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종편을 또는 보도PP의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의 경쟁력의 근간은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절대평가라는 기준도 채택했고, 이런 취지를 본다면 시장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견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정성에 관한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지적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또는 이 세부내용 속에 녹아들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라든가 이사회 구성 같은 부분은 공정성 항목에는 없습니다만 경영의 투명·효율성 항목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기현 사무총장님께서 10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많이 주셔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자율성과 차별성의 문제, 이것은 보는 철학에 따라서는 편성의 자율성이나, 편성의 독자성과 독립성과 차별성이나, 가치와 관련된 문제여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정도의 결정을 내린 것이고 또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PP수신료 지급 문제는 준비하는 사업자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현실적인 이슈일 것 같은데, 케이블업계에서 좋은 의견과 또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부문에는 지난번 나오셨을 때에도 누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편PP, 보도PP가 프로그램 프로마이더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고, 신기술을 활용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과거 플랫폼 사업에 비해서는 물리적·기술적 중요성에서 다소 적은 포션을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런 정도의 배점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영 그룹장께서 말씀하신 1% 미만의 참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졌기에 이렇게 했느냐, 1%라는 의미를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평가가 대상이 되는 주주는 기본적으로 컨소시엄이나 사업의 추진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관계되는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범주와 또 하나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5%, 3%, 1%라는 것이 아마 상법에서 중요하게 차별적으로 제시된 기준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 낮춰서 1%라는 기준을 안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잠정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수 대표님께서 콘텐츠를 70%, 80% 정도 구성하고 있고 그것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인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또 황 교수께서도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상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심사기준인데 이 부분이 쓰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드리면 굉장히 편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 심사기준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는 범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미처 아이디어가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했고 고민이 덜 되어서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가의 결정적인 정답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화가 아니고 구체적인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구체화와 추상화의 범주에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창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 구성 운영방안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스케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결이 끝나면 그다음에 심사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의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비공개 의결하는 것이 주였는데, 심사위원의 구성이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사실 어디까지 오픈해서 방안을 받는 것도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구성방안 자체가 굉장히 일반론적인 이야기도 될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해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해관계를 한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향후 심사운영 계획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심사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청자 기대 우려는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한 팀장님께서 지나친 추진과정의 속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공개 보고되기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위원님 간에 무려 세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워크숍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토론과 찬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안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다, 실제로 오픈해서 전문가토론을 하는 것은 어제 보고하고 오늘이지만 기본계획이 9월 중순에 의결되고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을 가지면서 위원님들 간에 내부 워크숍을 이례적으로 세 차례 가졌다, 기본계획을 보고할 때에는 아마 직전에 한번 정도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공개되지 않는 내부토론을 상당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일부 토론자께서도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이야기들, 준비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고 서류도 굉장히 준비하는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의견수렴 과정이 오늘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해서 향후 의결될 때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문서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사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앞으로 의견제시할 때 정말 실무적으로 작성이 힘들거나 기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고 고민하고, 꼭 반영은 안 되더라도 또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감사합니다. 김 국장님께서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인 만큼 토론내용들을 돌아가서 중요하게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제기된 토론사항 관련해서 지금까지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노력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랫동안 기다리신 방청석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종편과 보도채널을 준비해 오신 실무진께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 이쪽에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 이한빛 헤럴드경제신문 기자

-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경제신문의 이한빛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준상 국장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저 승인항목, 이른바 과락항목이라는 항목에 정성평가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정성평가 항목인데, 이렇게 정성평가 항목들을 설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혹시 그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심사항목 중에서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자금출자 능력에 관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것이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39페이지 평가지표 <4-2-1>입니다. 평가지표에 보시면 현금 및 현금등가물,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들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단기금융상품까지 더해 이것을 투자금액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준은 매년 말, 그러니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기업에 마음만 먹는다면 이 기준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대금을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고, 투자해야 할 부분을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놓고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부분들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임의적으로 이것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다면 과연 이것이 자금출자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되느냐, 제 소견으로는 오히려 영업활동 현금흐름,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보는 것이 오히려 원래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지 질문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헤럴드경제 이 기자님,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승인 최저점수 항목의 정성적 평가의 항목이 설정된 배경이 있는가라는 말씀이지요. 설명자료 때 말씀드렸습시다만 저희들이 크게 설정하고 있는 정책목표가 4가지입니다. 그 4가지 목표별로 고르게 하나의 승인 최저점수 항목을 설정하자는 것이 기본합의내용이었습니다. 그 4가지 목표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융합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공익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가 산업과 콘텐츠 활성화와 관련된 유료방송 선순환 관련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융합과 관련된 부분은 포괄적으로 모든 목표에 상위 내지는 기반이 되는 개념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3가지 항목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항목은 역시 이 3가지 모든 기반이 되는 융합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만 재무적 역량, 그러니까 재정적, 재무적 역량이 되는 부분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결정하다 보면 각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19

개 심사항목을 나누었습니다. 나눠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뽑아서 1개, 결국 4개의 심사항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공익성 관련 부분은 <1-1-1>인데 그 부분의 대표적인 심사항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5개 항목 이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특별히 그 내용이 정성적이다, 정량적이다 이런 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정책목표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보시기에 정성적인 것이 많이 보이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출발이 이래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계량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이고 워낙 심사평가 계량의 항목 자체가 20%를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체 계량의 포션을 봤을 때 최저 항목의 포션도 역시 그 정도 선에서 예를 들면 4개면 1개, 5개면 1개 정도니까 20% 내외의 항목이니까 유난히 정성이 많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의 배점비율이 그 대로 투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출 적시하는 근거는 그렇게 목표별로 카테고리 라이즈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세부심사평가방법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팩트는 정확히 맞습니다. 직전년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다해서 또는 포장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의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틀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이야 끝이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교수께서 우려하셨습니까만 반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많은 감사보고서나 이사회 결의서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빙서류를 통해서 아마 심사단들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어떻게 방법을 동원해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시하신 세부심사항목 현금성 부분과 투자금액의 비율 부분은 우리가 자금출자 능력을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준렬 국민대 교수

-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 박은용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진회계법인의 박은용 회계사라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이 세부적으로 잘 디파인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계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인사고과를 할 때 나타나지만 비계량 지표에서는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량지표에서는 점수가 0.1점 단위로까지 썩 벌어지기 때문에 우열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재무 관련한 것들은 계량평가 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기준에 대해 굉장히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재정적 능력에 총자산 증가가 맞느냐, 매출액 증가가 맞느냐 이런 관점도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부터 2008년, 2009년 사이에 회사의 매출액들이 굉장히 많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총자산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도 있었고, 두 번째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산 재평가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회사는 허용한 것으로 들어가고 어떤 회사는 안 한 것으로 들어가고 또는 어떤 회사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들어가고 어떤 회사는 국제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들어갈 경우에 비교가능성 쪽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 0.1점, 1점, 2점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것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자산 재평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든가 또는 빼 것으로 한다든가,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우리나라 것으로 한다든가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주시면 심사과정에서 훨씬 더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항목 중의 하나인데, 아까 질문해 주시면 <4-2-1>에 보면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단기금융상품을 투자금액에 대비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자금조달 능력이 좋은 평가기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단기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통상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은행에 이런 예금을 들어주고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 질권 설정된 것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조달능력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이것이 숫자로만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 질권이나 또는 사용이 제한된 것들은 어떻게 별도로 구분해서 제외시켜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시간이 짧으셔서 질문이나 지적할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보시기에 우려되거나 또는 좀 더 발전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결까지 계속 의견 듣는 기간을 열어놓고 있으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대로 된 평가를 타당성 있고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그 취지가 십분 살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계량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하셨는데 계량 부분의 기준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가능한 범위까지는 계량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명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공개된 부분의 명확화 정도를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아마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는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심사하는 단계까지는 또는 심사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명확화할 수 있도록 계량 부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화해서 그 점수에 대한 분명한 차별성과 타당성이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류춘렬 국민대 교수

-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질의하실 분도 없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계획한 시간도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신 김준상 국장님과 그리고 패널 토론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2010. 11. 10.(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1. 의결주문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위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3. 경과사항

- 위원회 논의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의결 ('10.9.17)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워크숍 개최 ('10.10.26, 10.28, 11.1)
  - 「세부심사기준(안)」 등 보고 ('10.11.2)
  - 「세부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워크숍 개최 ('10.11.8)
- 관련 제도 마련
  -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10.10.1)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및 시행 ('10.10.20)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전문가 토론회('10.11.3), 온라인 공식의견게시·서면('10.11.2~11.8)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의견수렴 내용은 상임위원 워크숍(11.8)에서 기 보고

4. 세부심사기준(안) 주요 내용

① 기본 방향

-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 진행)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평가방법(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으로 구성

- (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항목의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 평가방법을 마련

-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

【 계량평가 비중 】

구분 (연도)	위성방송 (‘00)	위성DMB (‘05)	지상파DMB (‘05)	보도FM (‘07)	경인만방 (‘07)	IPTV 제공 (‘08)	종편PP (‘10)	보도PP (‘10)
비중	28%	19%	18.5%	17%	10%	10%	<b>24.5%</b>	<b>20.0%</b>

②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 기본계획에서 정한 심사사항 별 배점과 19개 심사항목을 근거로 심사항목의 배점을 부여하고,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여 배점을 부여
- 정책목표, 기존 사례, 세부심사항목 간 형평성 및 종편과 보도PP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종편 250점, 보도 3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종편 70, 보도 90)	1-1-1.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30	30
	1-1-2.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35
	1-1-3.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25
1-2.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종편 70, 보도 80)	1-2-1.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30	30
	1-2-2.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25
	1-2-3.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25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종편 60, 보도 70)	1-3-1.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25	30
	1-3-2.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20	25
	1-3-3. 구성주주 중복참여(계량)	15	15
1-4.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종편 50, 보도 60)	1-4-1.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	20	25
	1-4-2.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	15	20
	1-4-3.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15	15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종편 250점, 보도 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2-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종편 90, 보도 80)	2-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35	25
	2-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독창성	25	25
	2-1-3.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30	30
2-2.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종편 80, 보도 60)	2-2-1.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적절성	35	25
	2-2-2.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	30	20
	2-2-3. 방송프로그램 구매 계획의 적절성	15	15
2-3.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종편 80, 보도 60)	2-3-1.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35	25
	2-3-2. 전략적 협력계획의 우수성	25	20
	2-3-3.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	20	15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종편 200점, 보도 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3-1. 사업추진계획 (종편 30, 보도 40)	3-1-1.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15	25
	3-1-2.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	15	15
3-2.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종편 30, 보도 40)	3-2-1.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15	20
	3-2-2.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15	20
3-3. 납입자본금 규모 (종편 60, 보도 60)	3-3-1.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60	60
3-4.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종편 35, 보도 45)	3-4-1.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20	25
	3-4-2.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15	20
3-5. 사업성 분석 (종편 15, 보도 25)	3-5-1. 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15	25
3-6.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종편 30, 보도 40)	3-6-1.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15	20
	3-6-2.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15	20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종편 200점, 보도 1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4-1. 재정적 능력 (종편 90, 보도 60)	4-1-1. 자기자본 순이익률(계량)	30	20
	4-1-2. 부채비율(계량)	30	20
	4-1-3. 총자산 증가율(계량)	30	20
4-2. 자금출자 능력 (종편 60, 보도 45)	4-2-1.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5	10
	4-2-2. 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5	10
	4-2-3.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계량)	30	25
4-3. 기술적 능력 (종편 50, 보도 45)	4-3-1.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30	25
	4-3-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20	20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종편·보도 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5-1. 방송발전 기여계획 (종편 40, 보도 40)	5-1-1.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	25	25
	5-1-2.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의 우수성	15	15
5-2.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종편 40, 보도 40)	5-2-1.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우수성	20	20
	5-2-2. 콘텐츠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	20	20
5-3. 출연금 (종편 20, 보도 20)	5-3-1.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20	20

### ③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 정책목표를 고려, 심사항목을 4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선정
  - ‘납입 자본금 규모’, ‘신청법인의 적정성’은 기본계획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기 확정
-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신청법인의 적정성(이상 공익성 관련), ③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④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이상 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 기반 관련),
  - ⑤ 납입 자본금 규모(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 관련), ⑥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등 총 6개 심사항목을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선정

### ④ 평가방법 관련 주요 사항

- (주요주주의 범위)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제시
- (주주구성 변경금지 방안)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구성의 변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

-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 주주구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
- (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
  - ※ 상속, 법원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
- (승인장 교부 후 일정 기간)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승인조건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
  - ※ 신청법인은 신청서류 제출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분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을 심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심사 시 평가방안)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능력'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 부여,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 감점처리\*, 비계량 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 배점에서 감점처리
  - (승인 의결 후 처리방안) 신청법인이 주주 중복참여로 인해 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도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중복참여 주주를 대체한 주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 주주가 주금 납입을 완료한 후 승인장을 교부
-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법) 기본계획 의결 시 논의된 지분 5%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감점방안을 마련
  - ※ 상법상 이사에 대해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 가능한 기준인 지분 1%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함

-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 배점에서 감점처리
-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 최초 납입자본금의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을 설립예정법인과 기존법인으로 나누어 제시
  - **(설립예정법인)**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으로 자본금(법정자본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합한 금액
  - **(기존법인)**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 및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을 합한 금액
    - ※ 실질자본금이란 방송법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에 따른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을 의미
-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심사항목인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세부심사항목)에서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실현가능성 평가방법)** 자본금 납입 담보를 위해 모든 구성주주(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의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추가),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비계량으로 평가
    - ※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현가능성의 지속력을 평가
  - **(건전성 평가방법)**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
    -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주요주주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평가방안)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는 펀드 등의 경우 심사 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하고,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판단 시에도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

-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

## 5. 승인신청요령(안)

### ①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 ②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붙임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2.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안). 끝.

<붙임1>

---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

2010. 11. 10





# 목 차

I. 승인심사 개요 .....	323
1. 승인 대상 및 승인신청 자격 .....	323
2.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 .....	323
3. 기타 사항 .....	324
II. 기본 방향 .....	325
III.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	326
1.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원칙 .....	327
2. 심사사항별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	328
3.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	333
IV. 평가방법 .....	334
1. 주요주주의 범위 .....	335
2.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	337
3.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 .....	338
4.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법 .....	340
5.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범위 .....	341
6.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	343
7. 기타 평가방법 .....	343
8.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	344
< 첨 부 >	
1.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	345



# I. 승인심사 개요

## 1 승인 대상 및 승인신청 자격

### □ 승인 대상 방송사업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 □ 승인신청 자격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하 신청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2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

### □ 승인 조건

- 위원회는 승인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승인 조건 예시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이행, 주요주주의 지분 처분 금지 등을 들 수 있음

### □ 승인장 교부

- 선정된 신청법인이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 등본, 승인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까지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신청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실제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예를 들어, 부속서류 추가 제출, 날짜·단위·성명 등 오기·누락의 수정, 서명·날인의 보완 등)에 한하여 보정자료 제출 가능
- ※ 단, 추가 제출할 수 있는 부속서류는 승인 신청서류 접수 시 조건표에 명시된 부속서류에 한함
  - 사업계획서의 실제적 내용을 변경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를 들어, 주주구성의 변경 등)은 보정 불가
  - 제출서류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승인 신청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법인이 보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
- 위 보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각 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승인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법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 심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관계 기관 의견 조회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중소기업청, 경찰청 등에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

## II. 기본 방향

### □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 진행

-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
  - 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결정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평가방법으로 구성

- 평가방법은 '평가요소'(세부심사항목을 세분화), '평가지표'(계량/비계량), '세부평가방법'(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평점 및 과락기준 등)으로 구성

### □ 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

-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항목의 배점, 세부 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 평가방법을 마련

※ 심사사항의 구성 및 배점, 심사항목의 구성은 기본계획에서 정하였음

#### 【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 】

- ◇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 ◇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 ◇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

-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

#### 【 계량평가 비중 】

구 분 (연도)	위성방송 ('00)	위성DMB ( '05)	지상파DMB ( '05)	보도FM ( '07)	경인만방 ( '07)	IPTV 제공 ( '08)	종편PP ( '10)	보도PP ( '10)
비 중	28%	19%	18.5%	17%	10%	10%	<b>24.5%</b>	<b>20.0%</b>

### Ⅲ.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 1.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원칙

-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심사항목에 배점을 부여하고,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여 배점을 부여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

#### 2. 심사사항별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 각 심사사항 별로 심사항목의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을 제시

#### 3.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 19개 심사항목 중 승인 최저점수를 적용할 심사항목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

## □ 심사항목 배점

- 기본계획에서 정한 심사사항별 배점 및 19개 심사항목을 근거로 배점을 부여
- 심사사항 배점을 하위 심사항목 간 정책목표 관련성, 주요 내용 등을 비교하여 차등적으로 배분

## □ 세부심사항목 구성

- 기존 방송사업자 선정 시의 심사기준을 고려
- 심사항목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에 대한 기여도가 큰 항목으로 세부심사항목을 구성
- 세부심사항목 배점 간 편차를 일정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항목을 분할 또는 통합

## □ 세부심사항목 배점

- 심사항목 배점을 하위 세부심사항목 간 정책목표 관련성, 주요 내용 등을 비교하여 차등적으로 배분
- 정책목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심사항목에 속하는 세부심사항목과의 형평성을 확보
- 종편PP와 보도PP의 정책목표 차이, 사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배점을 조정

## 2

## 심사사항별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1,000점 만점)

## 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총편 250점, 보도 3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총 70, 보 90)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30	30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35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25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총 70, 보 80)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30	30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25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25
신청법인의 적정성 (총 60, 보 70)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25	30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20	25
	구성주주 중복참여(계량)	15	15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총 50, 보 60)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	20	25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	15	20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15	15

**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총편 250점 보도 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총 90, 보 8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35	25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독창성	25	25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30	30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총 80, 보 60)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적절성	35	25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	30	20
	방송프로그램 구매 계획의 적절성	15	15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 계획(총 80, 보 60)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35	25
	전략적 협력계획의 우수성	25	20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	20	15

**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총편 200점, 보도 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사업추진계획 (총 30, 보 40)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15	25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	15	15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총 30, 보 40)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15	20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15	20
납입자본금 규모 (총 60, 보 60)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60	60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총 35, 보 45)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20	25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15	20
사업성 분석 (총 15, 보 25)	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15	25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총 30, 보 40)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15	20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15	20

**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총편 200점, 보도 1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총편	보도
재정적 능력 (총 90, 보 60)	자기자본 순이익률(계량)	30	20
	부채비율(계량)	30	20
	총자산 증가율(계량)	30	20
자금출자 능력 (총 60, 보 45)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5	10
	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5	10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계량)	30	25
기술적 능력 (총 50, 보 45)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30	25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20	20

**마.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종편·보도 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종편	보도
방송발전 기여계획 (종 40, 보 40)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	25	25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의 우수성	15	15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종 40, 보 40)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우수성	20	20
	콘텐츠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	20	20
출연금(종 20, 보 20)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20	20

### 3

##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 19개 심사항목 중 승인 최저점수(배점의 60%)를 적용할 심사항목을 선정

### □ 선정 원칙

- 정책목표를 고려, 심사항목을 4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선정
- '납입 자본금 규모', '신청법인의 적정성\*'은 기본계획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기 확정

※ "해당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특정 심사항목'으로 설정"

### □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 ⇒ 총 6개 심사항목

- 공익성 관련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 ※ 관련 항목 :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 ④ 시청자 권익실현 방안, ⑤ 출연금
- 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 ※ 관련 항목 : ①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②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③ 기술적 능력, ④ 방송발전 기여계획, ⑤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 산업 경쟁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관련 ⇒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 관련 항목 :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② 사업추진계획, ③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④ 사업성 분석, ⑤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 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 관련 ⇒ '납입 자본금 규모'
  - ※ 관련 항목 : ① 납입 자본금 규모, ②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③ 재정적 능력, ④ 자금출자 능력

## IV. 평가방법

### 1. 주요주주의 범위

-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

### 2.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구성의 변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

### 3.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

-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분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시, 배제 방안을 심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4.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법

- 기본계획 의결 시 논의된 지분 5%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감점방안을 마련

### 5.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

-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을 설립예정법인과 기존법인으로 나누어 제시

### 6.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초 납입자본금의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

### 7. 기타 평가방법

- 계량 및 비계량평가 시 평점방법, 출연금 평가방법 등을 제시

# 1

## 주요주주의 범위

- ◇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

### □ 주요주주의 적용 영역

- 주요주주를 평가하는 심사항목은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신청법인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능력'임

※ 단, 주요주주 이외의 구성주주를 평가하는 심사항목은 '신청법인의 적정성'임

- 주요주주는 주금 납입계약서, 인감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의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최근 4년간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결산서, 신용등급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주요주주 이외의 구성주주는 주금납입 계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

- 주요주주는 승인장 교부 후 일정기간 동안 지분 매각 등 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 □ 주요주주의 범위

-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와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에서 다량 보유자순 합계가 51%까지인 주주

-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모두 주요주주에 해당함

-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의 지분을 합이 51% 미만일 경우, 지분 1% 이상 지분 5% 미만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지분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를 추가

※ 단, 합계가 51%까지인 주주가 복수인 경우,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1인의 주주로 하며,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의 합이 51% 미만인 경우에도 지분 1% 미만 주주는 포함하지 않음

## 2

##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구성의 변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

승인신청 → 승인심사 → 승인의결 → 승인장교부 →

가 나 다

### 가.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 주주구성 변경

- 승인 신청서류 제출 이후 주주구성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나. 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 주주구성 변경

-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
  - ※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

### 다. 승인장 교부 후 일정 기간 주주구성 변경

-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승인조건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
  - 신청법인은 신청서류 제출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3

##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

◇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분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시 배제 방안을 심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어느 한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방송법 상 특수관계자를 포함)이 다른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구성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

### 【 해당 사례 】



▶ 모든 신청법인에 5% 이상 중복참여

▶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다른 신청법인에 5% 미만 중복참여

## 가. 심사 시 평가방안

### □ 개요

- 지분 5% 이상 주주가 중복참여한 경우, 해당 주주의 출자예정 금액은 신청법인의 자본금으로 인정하되, 일부 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에 불이익을 부여

### □ 평가방법

-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능력'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의 주요주주 평가 시,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 부여
-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해 감점 처리

※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 배점에서 감점처리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안과 동일)

- 비계량 세부심사항목 심사의 경우, 중복참여 주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나. 승인 의결 후 처리방안**

- 신청법인이 지분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로 인해 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도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중복참여 주주를 대체한 주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 주주가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음

## 4

##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안

◇ 기본계획 의결 시 논의\*된 지분 5% 미만 중복참여 주주(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감점방안을 마련

- 상법상 이사에 대해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한 기준인 지분 1%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함

※ "5%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안은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의결 시 결정"



## □ 평가방법

-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구성주주 중복참여'(세부심사항목) 배점에서 감점처리

※ 예를 들어, 세부심사항목 배점이 15점이고 중복참여한 甲 주주의 A 신청법인 지분율이 3%인 경우, A 법인은 0.45점(15점×3%) 감점

◇ 최초 납입자본금의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

### 가.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 최초 납입자본금이란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으로서, 자본금(법정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합한 금액임

### 나. 기존법인의 경우

-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범위는 기존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설립 예정법인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함

- 기존법인이 겸업을 하는 경우 신규 방송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은 전체 자본에서 겸업자본 등을 제외한 것임

※ 실질자본금이란 방송법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에 따른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을 의미

- 기존 법인의 최초 납입자본금은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 및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을 합한 금액임

※ 실질자본금 계산의 근거로 사용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 기존법인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제 1항을 준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에 규정된 실질자본금을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심사항목인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세부심사항목)에서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 최초 납입자본금의 실현가능성 평가방법

- 모든 구성주주(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의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을 통해 자본금 납입 담보 방안을 비계량으로 평가
  - ※ 단,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통해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을 평가

#### □ 최초 납입자본금의 건전성 평가방법

-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
  -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란 일정 기간 후에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바이백(buy-back)옵션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순수한 출자행위로 보기 어려움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 계량평가 평점방법

- 자료를 미제출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산출불능인 경우 최저점수로 처리

※ 법인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점의 80%를 미제출 연도분에 적용

- 세부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 비계량평가 평점방법

-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평점 부여

등 급	의 미	평 점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우	우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미	보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양	미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세부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균 산정 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 의견청취

-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실현의지 판단,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예정자 포함),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 출연금 평가방법

-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 □ 주주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평가방법

- 법인격 없는 조합 또는 펀드 등의 경우 심사 시 단체 자체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함
  -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
-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신청법인의 구성주주로 간주함

## 8

##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

- 첨부 참조

※ 비계량평가 항목의 경우, 예시로 기술된 세부평가방법은 반드시 적용되며, 그 외 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세부평가방법이 추가될 수 있음

【첨부】

##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 1. 방송의 공적 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가능성(종편 250점, 보도 3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b>1-1.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 (70점/90점)</b>	<b>1-1-1.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30점/30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li> <li>▪ 방송법 제5조(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구체성</li> <li>▪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li> </ul>	<b>비계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편성책임자.최대주주의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현의지 등을 평가</li> </ul>
	<b>1-1-2.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점/35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방안의 적정성</li> <li>▪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방안의 적정성</li> <li>▪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li> </ul>	<b>비계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내용의 객관성 유지 및 보편적 가치 지향, 뉴스원 다원화 등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li> <li>○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li> <li>※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및 일간신문 구독률(시청점유율로 환산)을 대상으로 산정</li> </ul>
	<b>1-1-3.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점/25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 캠페인 포함) 편성계획의 구체성.타당성</li> <li>▪ 재난방송 편성계획의 구체성.타당성</li> <li>▪ 방송언어 순화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li> <li>▪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li> </ul>	<b>비계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과 연계하여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2.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70점/80점)	1-2-1.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30점/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문화적 기여계획의 비전 및 목표 등의 타당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간(2007년, 2008년, 2009년)의 사회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li> <li>국제표준화기구의 ISO26000* 실천방안 등을 평가 ※ 기업 등 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윤리적 행동.법치주의 존중 등 7개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제시</li> <li>일자리 창출 계획, 고용규모(직접 고용) 및 그 산정 근거 등을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공익.자선 사업 등 사회적 기여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의 우수성.구체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계획의 구체성.타당성</li> </ul>		
	1-2-2.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지역적 기여 실적</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간(2007년, 2008년, 2009년)의 지역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li> <li>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 지역적 기여계획의 우수성.구체성</li> </ul>		
1-2-3.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문화 보존.발전 등에 대한 기여실적</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간(2007년, 2008년, 2009년)의 문화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의 문화적 기여계획의 우수성.구체성</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60점/70점)	1-3-1.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25점/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구성의 다양성 등 정책목표 부합 여부</li> <li>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여부</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구성의 다양성, 구성주주의 정책목표 실현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li> <li>기존 보도 편성채널 처분계획 또는 사전 지정한 1개 사업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미흡 시 감점 ※ 계획 미제출시 해당 세부심사항목 0점 처리</li> </ul>
	1-3-2.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2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대표자.편성책임자 포함) 및 주요주주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li> </ul>		비계량
	1-3-3. 구성주주 중복참여 (15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을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해당 여부</li> <li>지분을 1% 이상 5% 미만 중복참여 주주 해당 여부</li> </ul>	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해당 세부심사항목 배점 만큼 감점 ※ 감점의 합이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0점 처리</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1-4.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50점/60점)	1-4-1.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 (2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 권익실현 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의 충분성을 평가</li> <li>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li> <li>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편성의 충분성을 평가</li> <li>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시청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방안 등을 평가</li> <li>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전체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과 연계하여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지원방안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의 구체성</li> </ul>					
	1-4-2.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구성방안, 회의 개최 주기, 위원회 결정사항의 처리계획 등을 평가</li> <li>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시간 및 내용, 시청자 평가원의 역할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적정성 (방송법 제8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적정성 (방송법 제89조)</li> </ul>						
1-4-3.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15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적정성 (방송법 제86조)</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심의기구 설치·운영계획, 자체심의 절차의 효율성 등을 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평가</li> <li>시청자 불만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li> </ul>					

##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중편 250점, 보도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1.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90점/80점)	2-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3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의 타당성.우수성.실현가능성</li> <li>■ 방송분야별, 장르별 편성계획의 우수성.적절성.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계획의 방송법령 부합여부, 방송분야별.장르별 방송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재방송 비율, HD프로그램 편성계획, 방송광고 운용계획, 주간편성기본표 등을 평가</li> <li>○ 연도별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장르, 방송내용, 제작원, 장르, 시청대상, 연간 편성편수 및 시간, 편당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 등을 평가</li> </ul>
	2-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독창성 (2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편성의 독창성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참신성</li> <li>■ 기존 종합편성(보도) 방송과의 차별성 확보방안의 구체성</li> </ul>		비계량
	2-1-3.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30점/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규약(방송법 제4조제4항) 등을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2. 방송 프로그램 수급계획 (80점/60점)	2-2-1.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적절성 (3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구체성 및 전체 편성계획과의 정합성</li> <li>■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우수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물과 국외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li> <li>○ 자체제작 계획의 전체 편성계획, 소요비용 및 제작 인력 등 경영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ul>
	2-2-2.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 (3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li> </ul>		비계량
	2-2-3. 방송프로그램 구매계획의 적절성 (15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구매계획의 적절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구매계획의 전체 편성계획, 소요비용 등 경영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2-3.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80점/60점)	2-3-1.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3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우수성.구체성</li> <li>▪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li> <li>▪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의 적정성.구체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제작사, 지역방송국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및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프로그램 공동제작(제작지원), 콘텐츠 공동 활용 등의 협력계획을 평가</li> <li>○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을 평가</li> </ul>
	2-3-2. 전략적 협력계획의 우수성 (2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플랫폼 진출계획의 구체성.우수성</li> <li>▪ 국내·외 콘텐츠 유통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2-3-3.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 (20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방송산업 선순환 및 글로벌 경쟁력 기여 가능성</li> </ul>	비계량	

###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종편 200점, 보도 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1. 사업 추진계획 (30점/40점)	3-1-1.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1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li> <li>▪ 시장전망의 합리성 및 목표점유율 설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li>▪ 기업 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의 적정성</li> <li>▪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li>▪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계획의 구체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시장 등의 분석 및 예측방법, 추정재무제표(매출액 등)와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ul>
	3-1-2.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 (15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2.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30점/40점)	3-2-1.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구조의 구체성 및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구성과 사업추진계획 등의 적합성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구성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소요인력 산정, 배치방안(직급별, 정규직·비정규직구분) 등을 평가</li> <li>추정재무제표(인건비 등)와의 적합성을 평가</li> </ul>
	3-2-2.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인력충원 계획,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투자규모 및 교육의 종류, 방법 등을 평가</li> <li>추정재무제표(교육훈련비 등)와의 적합성 등을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3-3. 납입자본금 규모 (60점/60점)	3-3-1.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 (60점/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li> </ul>	최초 납입 자본금 금액 (계량)	<p>□ 평가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li> <li>○ 신청법인이 기존법인인 경우 :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 실질자본금 및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li> </ul>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는 평가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li> </ul> <p>&lt;종편PP&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0억원 이상일 경우, 배점의 100%</li> <li>○ 3,000억원 초과 5,000억원 미만일 경우, 배점의 A%</li> <li>※ <math>A=60+(\text{평가대상 금액}-3,000\text{억원})/50\text{억원} \times 1</math></li> <li>○ 3,000억원일 경우 배점의 60%</li> <li>○ 3,000억원 미만의 경우, 0점</li> </ul> <p>&lt;보도PP&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억원 이상 일 경우, 배점의 100%</li> <li>○ 400억원 초과 600억원 미만일 경우, 배점의 A%</li> <li>※ <math>A=60+(\text{평가대상 금액}-400\text{억원})/5\text{억원} \times 1</math></li> <li>○ 400억원 일 경우 배점의 60%</li> <li>○ 400억원 미만의 경우, 0점</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4.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35점/45점)	3-4-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납입자본금 구성의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신청법인(기존법인에 한함) 및 주요주주의 이사회 결의서,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통해 출자(증자)예정금액의 실현가능성을 평가</li> <li>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현가능성의 지속력을 평가</li> <li>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li> <li>신청법인의 자금조달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조달원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조달계획을 평가하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li> <li>영업활동을 통한 조달금액의 실현가능성은 수익 추정방법의 적정성, 시장전망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li>재무활동을 통한 조달금액의 실현가능성은 차입 약정서 등을 평가</li> </ul>
	3-4-2.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조달규모의 충분성</li> <li>시설투자자금의 산출의 적정성</li> <li>제작비 등 경상운영자금 산출의 적정성</li> <li>기타자금 산출의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운영금액 규모와 비교 평가</li> <li>사업추진계획과의 정합성을 평가</li> <li>자금운영계획의 산출 가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5. 사업성 분석 (15점/25점)	3-5-1. 추정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1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광고, 협찬, PP 수신료 수입 등) 구성 내역 등을 평가</li> <li>○ 추정재무제표는 1차년도는 분기별로, 2차년도 이후는 연도별로 평가</li> <li>○ 추정재무제표 금액 추정근거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CF 방법(NPV, IRR 등)에 의한 재무적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을 등을 평가</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3-6.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30점/40점)	3-6-1.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감시기구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방안의 실효성 등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경영투명성 확보계획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주주 보호 계획, 회계부분의 투명성 확보방안,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간의 부당거래방지 방안 등을 평가</li> </ul>
	3-6-2.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15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효율화에 대한 전략 및 비전 등의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등 임원, 편성책임자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의 적정성</li> </ul>				

####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종편 200점, 보도 1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1. 재정적 능력 (90점/60점)	4-1-1. 자기자본 순이익률 (3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li> <li>※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li> </ul>	자기자본 순이익률 (계량)	<p>□ 평가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9년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대분류 기준 14개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의 연도별 평균(X) 및 표준편차(<math>\sigma</math>)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법인의 지난 3개년도의 지표값(A)에 대해 평가</li> <li>○ 평가기간 : 최근 3년(2009년, 2008년, 2007년)</li> <li>○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설립예정법인일 경우 주요주주만 평가)</li> </ul> </li> </ul> <p>□ 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으로 환산</li> <li>○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회사의 지표 값 : A</li> <li>- <math>A &gt; X + 2\sigma</math> : 최저점(40점)</li> <li>- <math>A &lt; X - 2\sigma</math> : 최고점(100점)</li> <li>- 평균(X)로부터 <math>2\sigma</math> 범위 내 : 취득점수(Y) = <math>70 + 60 \times (X-A)/4\sigma</math></li> </ul> </li> <li>○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회사의 지표 값 : A</li> <li>- <math>A &lt; X - 2\sigma</math> : 최저점(40점)</li> <li>- <math>A &gt; X + 2\sigma</math> : 최고점(100점)</li> <li>- 평균(X)로부터 <math>2\sigma</math> 범위 내 기업의 취득점수(Y) = <math>70 + 60 \times (A-X)/4\sigma</math></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 계속)</p>
	4-1-2. 부채비율 (3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li> <li>※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잔액</li> </ul>	부채비율 (계량)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1. 재정적 능력	4-1-3. 총자산 증가율 (3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자산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x 100] - 100</li> </ul>	총자산 증가율 (계량)	<p>※ 3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연도의 평가지표에 대하여는 최저점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평균치의 80%를 미제출 연도의 평가지표에 적용</li> </ul> <p>※ 총자산증가율에 한하여, 4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 연도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대하여는 최저점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설립 후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 평균치의 80%를 미제출 연도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적용</li> </ul> <p>※ 신청법인이 산출불능으로 제시한 자료는 최저점수 평가</p> <p>※ 5% 이상 중복참여 주주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평가</p> <p>□ 가중치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 연도부터 5 : 3 : 2</li> <li>○ 설립예정법인의 주요주주 간 가중치 :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li> <li>○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 : 기존법인의 자본금(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자본금)과 유상증자 이후의 주요주주의 출자금액(기존 출자금도 포함, 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 비율로 가중환산</li> </ul> <p>□ 점수계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예정법인 : 연도별로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주주별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li> <li>○ 기존법인 : 연도별로 기존법인 및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존법인과 주주별 점수를 계산한 후,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2. 자금출자 능력 (60점/45점)	4-2-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 상품) 對 투자(출자) 금액의 적정성 (15점/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투자(출자)금액</li> </ul>	<p><b>(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 상품) / 투자(출자) 금액 (계량)</b></p>	<p>□ 평가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설립예정법인일 경우 주요주주만 평가)</li> </ul> </li> <li>○ 평가기간 : 신청공고일 직전 회계연도말</li> <li>○ 투자(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법인의 투자금액 : 내부잉여현금을 통한 2011년도 투자예정금액</li> <li>- 주요주주의 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출자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li> <li>· 기존법인의 경우, 증자 참여 주주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li> </ul> </li> </ul> </li> </ul> <p>□ 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으로 환산</li> <li>○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투자(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미만 : 최저점(40점)</li> <li>- 50% 이상 ~ 60% 미만 : 50점</li> <li>- 60% 이상 ~ 70% 미만 : 60점</li> <li>- 70% 이상 ~ 80% 미만 : 70점</li> <li>- 80% 이상 ~ 90% 미만 : 80점</li> <li>- 90% 이상 ~ 100% 미만 : 90점</li> <li>- 100% 이상 : 최고점(100점)</li> </ul> </li> <li>○ 자기자본 / 투자(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미만 : 최저점(40점)</li> <li>- 100% 이상 ~ 150% 미만 : 50점</li> <li>- 150% 이상 ~ 200% 미만 : 60점</li> <li>- 200% 이상 ~ 250% 미만 : 70점</li> <li>- 250% 이상 ~ 300% 미만 : 80점</li> <li>- 300% 이상 ~ 350% 미만 : 90점</li> <li>- 350% 이상 : 최고점(100점)</li> </ul> </li> </ul>

(다음 페이지 계속)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2. 자금출자 능력	4-2-2. 자기자본 對 투자(출자) 금액의 적정성 (15점/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 / 투자 (출자)금액</li> <li>※ 자기자본 = 자산 - 부채</li> </ul>	<b>자기자본/ 투자(출자) 금액 (계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는 최저점수 평가</li> <li>※ 제출한 자료로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저점수 평가</li> <li>※ 5% 이상 중복참여 주주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평가</li> <li>□ <b>가중치 배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예정법인의 주요주주 간 가중치 :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li> <li>○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 : 기존법인의 자본금(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자본금)과 유상증자 이후의 주요주주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 비율로 가중환산</li> </ul> </li> <li>□ <b>점수계산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예정법인 :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li> <li>○ 기존법인 : 기존법인 및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li> </ul> </li> </ul>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4-2. 자금출자 능력	4-2-3.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3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li> </ul>	<b>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계량)</b>	<input type="checkbox"/> <b>평가개요</b>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설립예정법인일 경우 주요주주만 평가) <input type="checkbox"/> 평가기준 : 신청접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 평가  <input type="checkbox"/> <b>배점</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신용등급</th> <th>배점비중</th> <th>신용등급</th> <th>배점비중</th> </tr> </thead> <tbody> <tr> <td>AAA</td> <td>100%</td> <td>BB+</td> <td>68.42%</td> </tr> <tr> <td>AA+</td> <td>96.84%</td> <td>BB</td> <td>65.26%</td> </tr> <tr> <td>AA</td> <td>93.68%</td> <td>BB-</td> <td>62.11%</td> </tr> <tr> <td>AA-</td> <td>90.53%</td> <td>B+</td> <td>58.95%</td> </tr> <tr> <td>A+</td> <td>87.37%</td> <td>B</td> <td>55.79%</td> </tr> <tr> <td>A</td> <td>84.21%</td> <td>B-</td> <td>52.63%</td> </tr> <tr> <td>A-</td> <td>81.05%</td> <td>CCC+, CCC, CCC-</td> <td>49.47%</td> </tr> <tr> <td>BBB+</td> <td>77.89%</td> <td>CC</td> <td>46.32%</td> </tr> <tr> <td>BBB</td> <td>74.74%</td> <td>C</td> <td>43.16%</td> </tr> <tr> <td>BBB-</td> <td>71.58%</td> <td>D</td> <td>40.00%</td> </tr> </tbody> </table> <p>※ 신용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최저점수 평가            ※ 5% 이상 중복참여 주주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평가</p> <input type="checkbox"/> <b>가중치 배분</b> <input type="checkbox"/> 설립예정법인의 주요주주 간 가중치 :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 <input type="checkbox"/>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 : 기존법인의 자본금(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자본금)과 유상증자 이후의 주요주주의 출자금액(기존 출자금도 포함, 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 비율로 가중환산  <input type="checkbox"/> <b>점수계산 방법</b> <input type="checkbox"/> 설립예정법인 :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 <input type="checkbox"/> 기존법인 : 기존법인 및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	신용등급	배점비중	신용등급	배점비중	AAA	100%	BB+	68.42%	AA+	96.84%	BB	65.26%	AA	93.68%	BB-	62.11%	AA-	90.53%	B+	58.95%	A+	87.37%	B	55.79%	A	84.21%	B-	52.63%	A-	81.05%	CCC+, CCC, CCC-	49.47%	BBB+	77.89%	CC	46.32%	BBB	74.74%	C	43.16%	BBB-	71.58%	D	40.00%
				신용등급	배점비중	신용등급	배점비중																																									
AAA	100%	BB+	68.42%																																													
AA+	96.84%	BB	65.26%																																													
AA	93.68%	BB-	62.11%																																													
AA-	90.53%	B+	58.95%																																													
A+	87.37%	B	55.79%																																													
A	84.21%	B-	52.63%																																													
A-	81.05%	CCC+, CCC, CCC-	49.47%																																													
BBB+	77.89%	CC	46.32%																																													
BBB	74.74%	C	43.16%																																													
BBB-	71.58%	D	40.00%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4-3. 기술적 능력 (50점/45점)	4-3-1.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30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널 운영에 적합한 방송제작 및 편집 관련 시설설치계획의 적정성</li> <li>▪ 시설 운용 계획의 적정성</li> </ul>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증빙서류(설비투자계약서 등)를 통해 설비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li> <li>○ 편성 및 제작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li>○ 자금운영계획(시설투자계획 등)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li> </ul>
	4-3-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2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계획의 적정성</li> <li>▪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종편 100점, 보도 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평가요소(내용)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예시)
5-1. 방송발전 기여계획 (40점/40점)	5-1-1. 방송산업 발전 기여 계획의 우수성 (25점/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li> <li>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amp;D)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li>방송인력 양성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 방송기기산업 육성·지원계획, 방송 관련 교육·연수 기관과의 협력계획 등을 평가
	5-1-2.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우수성 (15점/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 유료방송 플랫폼(위성방송, SO, 위성DMB, IPTV 등)과의 협력방안 및 PP와의 상생 협력방안의 우수성 등을 평가
5-2. 콘텐츠 산업육성·지원계획 (40점/40점)	5-2-1.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우수성 (2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5-2-2. 콘텐츠 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 (2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계획 등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ul>	비계량	○ 콘텐츠 관련 단체 지원 및 협력계획 등을 평가
5-3. 출연금 (20점/20점)	5-3-1.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20점/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금 규모의 적정성</li> </ul>	출연금 규모 (계량)	<p>&lt;종편PP&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억원 이상 인 경우 배점의 100%</li> <li>○ 100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의 0%</li> </ul> <p>&lt;보도PP&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억원 이상 인 경우 배점의 100%</li> <li>○ 15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의 0%</li> </ul> <p>※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p>

<붙임2>

---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안)

---

2010. 11. 10





## 목 차

I.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	369
1. 신청서류 구성 .....	369
2. 작성 및 제출요령 .....	370
II.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372
1. 종합편성(또는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	372
2. 서약서 .....	372
3. 사업계획서 .....	372
< 첨 부 >	
1. 각종 양식 .....	384



# I.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 1 신청서류 구성

- 승인 신청서류는 “종합편성(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으로 본문(목차 포함)과 본문의 요약문,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부속서류, 조건표 등 5종으로 구성
  - 본문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본문의 별첨’ 순으로 작성하되, 300쪽(본문의 별첨은 제외) 이내로 하여야 함
  - 본문의 요약문은 본문과 별도로 30쪽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하여야 함
  -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은 <양식 19>에 따라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부속서류는 본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승인 신청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
  - 조건표는 사업계획서 본문과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간 관련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

### 【 조건표 작성 예시 】

####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본문 페이지	본문 제목	부속서류
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1-1-1.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p.2 ~ p.5	제2장 가.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	제1장 1-1-1. (제목)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술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함
- 승인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다만, 외부자문자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자·자문기관 등을 밝혀야 함
- 승인 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함
  - 계약서나 증빙서류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
  - ※ 금액 표기를 천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하는 경우, 각각 백원 또는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처리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가정 및 전제조건은 아래 사항에 따르되 이를 별도로 적용한 때에는 그 구체적 근거를 밝혀야 함
  - 물가 : 신청공고일 현재의 불변가액
  - 환율 : 신청공고일 현재 최초로 고시된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
  - 차입금이자율 : 대출확약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하되,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른 현행 이자율을 하한으로 함
  - 예금이자율 : 사업자 평균 수입이자율로 하되,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정기예금금리를 상한으로 함
  - 감가상각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한 신규 투자시설에 대해 신청공고일 현재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하고, 그 산정 근거(잔존가액,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제세공과금 : 신청공고일 현재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적용하되, 향후 적용할 세율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미래 세율 등을 적용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위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 일람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한글문서(HWP)로(단, <양식 3>, <양식 4>, <양식 6>, <양식 11>, <양식 13~15>, <양식 17>은 MS-excel로 각각 작성), A4용지(210mmx297mm)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는 쪽수를 표시하고 목차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A4 규격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다음 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예정)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함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예 : 1/20)
- 신청 서류의 모든 날인은 인감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 다만, 타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외국인 등 인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 받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신청서류는 본문, 본문의 요약문, 부속서류, 조건표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20부(단, 부속서류는 5부)와 CD 2세트를 제출하고, 시청자의견청취용 요약문은 원본 1부만 제출하되, 파일을 CD에 담아 제출하여야 함

## II.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1 종합편성(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

- 승인 신청서는 <양식 1>에 의하여 작성함

### 2 서약서

- 서약서는 <양식 2>에 의하여 작성하며, 대표자 및 모든 구성주주가 기명날인하여야 함
  - ※ 단, 기존법인의 경우, 대표자, 유상증자 이후의 주요주주 및 유상증자에 참여한 모든 주주가 기명날인하여야 함
- 서약서가 1장을 초과할 경우 서약내용을 각 쪽 상단에 재기술 후 기명날인하여야 함
  - ※ <양식 2>는 사업계획서 본문의 별첨으로 함

### 3 사업계획서

####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가. 명 세

- 신청법인의 명칭, 구성주주의 소유 주식 수 등을 <양식 3>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 <양식 3>은 사업계획서 본문의 별첨으로 함
-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공증된 법인정관(변경예정정관 포함),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법인설립 전인

경우 발기예정인 포함)이 기명날인한 정관(안), 법인설립계획서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편성책임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계획서 등에 이를 명기하여야 함)의 성명, 생년월일, 주요 이력을 기술 하고 이력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부속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임원의 경우 상임, 비상임,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함

## 나. 구성주주에 관한 사항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양식 3>에 기술된 출자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구성주주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계약서(인감증명서 첨부)
  - ※ 주주의 권리·의무관계, 경영 협력계획 등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기존법인의 경우 <양식 3>에 기술된 출자금액 중 유상증자 예정 금액(1주당 액면금액 및 1주당 발행예정금액, 발행예정 주식수)을 별도로 기술하여야 함
  - 위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기존법인과 각 유상증자 참여주주 간)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인감증명서 첨부)
- 모든 구성주주 중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단,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회사설립을 적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가능)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주주(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만 해당)의 경우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비법인 사단 및 비법인 재단의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결

의서)를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구성주주(최대주주, 대기업(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인 주주,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인 주주, 외국인(외국법인)인 주주에 한함)와 특수관계(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명칭을 <양식 4>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 <양식 4>는 사업계획서 본문의 별첨으로 함

- 구성주주 중 주요주주(법인이나 단체에 한함)의 경우 주주별로 <양식 5>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구성주주 가운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신청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일간신문 구독률 등에 대해서는 <양식 6>을 작성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자료

: ABC협회의 인증을 받은 신청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 판매부수로 구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 이사회 구성·운영현황

## 제2장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 가.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

-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 방송법 제5조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방안을 구체적

으로 기술하여야 함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양식 7>에 기술하여야 함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비상업적 공익광고·캠페인 등을 포함)을 기술하여야 함
- 재난방송 편성계획, 방송언어 순화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다.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기여계획**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에 대한 총괄적 사항(목표 및 비전 등)을 기술하여야 함
- 2007년 ~ 2009년의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이 있는 경우 각각 <양식 8>, <양식 9>, <양식 10>에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법인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특히, 사회적 기여계획은 신청법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또한,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라.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주주구성의 다양성, 구성주주의 의지와 역량 등을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보도프로그램 편성채널 중복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보도프로

그램 편성채널의 처분계획 또는 종편과 보도 중 사전 지정한 1개 사업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마.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총괄적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및 장애인 지원방안, 노약자·다문화 가정·외국인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
-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방송법 제87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계획(방송법 제89조) 등을 포함한 시청자 참여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자체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계획(방송법 제86조) 및 시청자 불만 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 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의 기본 방향 및 전략, 목표와 비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방송분야별·장르별 편성 방향을 기술하고, 분야별·장르별 구체적 편성계획은 <양식 11>에 기술하여야 함
  - 편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주간 기본 편성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획의도, 장르, 제작원, 주 시청대상, 주요 내용, 연간 편성 편수·시간, 편당 시간·소요비용 등을 <양식

12>에 기술하여야 함

- HD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방송광고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편성규약에 관한 주요사항 등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고, 편성규약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나.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 방송프로그램 수급에 관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기술하고, 구체적 편성계획은 전체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고려하여 제작원별로 <양식 13>와 <양식 14>에 기술하여야 함
-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기술하고, 제작비 산정 근거, 제작 인력 등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 제작비 : 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에 관한 계획을 기술하고, 제작비 책정 근거 등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방송프로그램 구매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구매비용 산정 근거 등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 외주제작사, 지역방송국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및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콘텐츠를 공동 활용할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 협력계획을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특히,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신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활용계획, 해외진출 및 국내·외 콘텐츠 판권 판매계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전략적 협력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

### 가. 사업추진계획 및 경영전략

-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향후 5년간 방송시장 등을 전망하고 신청법인 목표 시장점유율 등을 적시하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신청법인 내·외부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신청법인의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을 기술하여야 함
  -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관계 구축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사업운영계획을 기술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나.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규정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인력소요 규모를 직급별 및 직능별로 기술(인력소요 산출 근거 명시) 하여야 함
- 신규인력 충원계획,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구체적인 인력확보 방안 (경력/신입, 자체/외부 등으로 구분)을 기술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및 예상 효과 등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투자액을 명시 하여야 함

## 다. 납입자본금 규모

- 납입자본금 규모를 <양식 15>에 기술하여야 함
  - 기존법인의 경우 <양식 16>에 따른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와 실질자본금 계산의 근거로 사용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기존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동 증자분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를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설립계획 및 유상증자 계획에서 현물출자 사항이 있을 경우

현물출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물출자와 관련한 계약서, 현물출자 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등 구체적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라.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 자금조달계획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구분하여 추정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조달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타인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입약정서 등 근거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향후 5년 이내 자본금 증자를 계획한 경우 이에 관한 주요주주의 출자확약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주주가 개인 등인 경우, 신청공고일 현재 자금조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소득원, 보유재산현황 및 납세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방송사옥 및 방송설비 구매·설치, 프로그램 제작비, 구매비 등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의 자금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마. 사업성 분석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법인설립 등기시점(기존법인의 경우 변경등기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표 등 각각의 재무제표를 연도별(최초연도는 분기별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그 추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신청법인이 기존법인인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와 신규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모두 제시하여야 함

- 추정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DCF방법에 의한 순현재가치(NPV), 내부 수익률(IRR),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고, 할인율 등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DCF방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현금흐름할인방법)

## 바.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책임경영에 관한 사항 및 경영 투명성 확보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주주총회,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및 기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기관(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경영효율화 증대를 위한 전략 및 비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제5장 재정적 능력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무비율 등을 <양식 17>, <양식 18>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최근 4년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단,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부속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위의 <양식 17>, <양식 18>이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최근 4년 이내에 합병(분할)한 법인의 경우 합병회사(분할회사)와 피합병회사(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을 모두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합병(분할)계약서, 합병(분할)신고서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는 신청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용등급\* (회사채 발행기준)을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중 1개의 평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단, 주요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신용등급 자료를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환산 받아 제출할 수 있음

## 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

### 가.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 방송 사옥을 포함한 방송제작·송출 등 방송시설의 구체적 구축 계획 및 시설 구성도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계약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연도별 방송시설 구축 및 투자계획을 제작, 송출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세부설비목록, 관련 계약서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방송시설 운영계획, 그에 따른 조직 구성 등을 기술하여야 함

## 나.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 방송콘텐츠 제작 및 편집기술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첨단 방송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방안과 향후 이에 대한 연구 및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가. 방송산업 발전 및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

-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계획, 방송인력 양성 계획 등 방송발전 기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유료방송 플랫폼과의 협력방안, PP와의 상생 협력방안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나.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산업 관련 사회 환원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다. 출연금

- 출연규모, 출연시기, 출연방안, 출연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양식 2]

## 서 약 서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는 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서약하며,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약합니다.

1.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각인은 방송법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서 정한 신청 자격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이면계약 등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참여하는 구성주주가 일체 없습니다.
2. 본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각인은 승인 신청서류에 첨부한 계약서 이외에 이면계약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3. 본 신청법인은 승인 신청서류를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4. 본 신청법인은 승인 신청서류의 심사에 소요되는 전문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 하겠습니다.
5. 본 신청법인의 각 주요주주는 상속·법원판결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본 신청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승인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7. 본 신청법인은 승인 신청서류에 첨부한 사업계획이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신청법인명 : \_\_\_\_\_

대표자명 : \_\_\_\_\_ (인)

구성주주명 : \_\_\_\_\_ (인)

### [양식 3] 신청법인의 명세 [엑셀]

□ 신청법인의 명칭 :

구성주주의 법인명 또는 성명 1)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유형 2)	출자액 <sup>3)</sup>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주요 업종 <sup>4)</sup>	주소 <sup>5)</sup>	특수 관계 여부 등 <sup>6)</sup>	중복 참여 여부 <sup>7)</sup>	비고 <sup>8)</sup>
			금액 (단위: 백만원)	주식 수	법인명 또는 성명 (특수 관계자 포함 지분율)	주소 (법인등 록번호 또는 주민등 록번호)					
합 계											

- 1)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펀드 등)의 경우 그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하여 기재하고, 단체명을 병기할 것
-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소유비율)·정부출자기관(정부소유비율)·외국인·외국법인·비영리법인,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 3) 출자액은 법인 설립 시(기존법인일 경우 유상증자 후) 법정자본금(액면금액 기준)으로 할 것
- 4) 주요 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 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를 병기할 것
- 5) 주소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할 것
- 6) 구성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특수관계(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의 내용(예, (주)000의 임원)을 표기하고, 특히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업집단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칭을 기재할 것
- 7) 구성주주(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가 다른 신청법인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기재하고, 중복참여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법인 명과 지분율을 기재할 것(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중복참여한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 명을 포함하여 기재)
- 8) 비고란에는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 [양식 4]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 [엑셀]

□ 구성주주의 명칭 :

방송법 시행령 조항		해당 특수관계자 명 <sup>1)</sup>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구성주주가 개인인 경우	제3조제1항 제1호가목		
	제3조제1항 제1호나목		
	제3조제1항 제1호다목		
구성주주가 법인인 경우	제3조제1항 제2호가목		
	제3조제1항 제2호나목		
	제3조제1항 제2호다목		
	제3조제1항 제2호라목		

1) 특수관계자 별로 작성

**[양식 5]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b>법인(단체)명</b>						
<b>대표자</b>	○ 성명 ○ 생년월일 : ○ 주요이력 : (학력, 경력 등)					
<b>이사회 구성</b>	※ 상임, 비상임,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성명, 생년월일 및 주요이력을 기술					
<b>연혁</b>	※ 사업내용과 관련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기술					
<b>사업목적</b>	※ 정관상의 사업목적과 주요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기술					
<b>주요주주</b>	<b>법인명/성명</b>	<b>지분율</b>	<b>주요 업종</b>	<b>대표자</b>	<b>최다주주</b>	<b>주소</b>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주요조직 내지 회원 현황 등을 단체 성격에 부합하게 기술

## [양식 6] 구독률 및 시청점유율 환산 [엑셀]

□ 신청법인 명칭 :

구성주주 명칭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수	총 가구수	구독률	매체 교환율	환산 시청률	시청률의 합	환산 시청점 유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16,916,966		0.49		34.927 %	
<b>계</b>							

※ 구성주주 중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에 한함

※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는 제출한 2009년도의 유가판매부수 중 가구대상 판매부수로 계산함

※ 구독률과 환산 시청점유율 계산은 소수점 네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세 자리 까지 산정

## [양식 7] 시청점유율 합산 대상

### 7-1. 신청법인 본인

신청법인 명 <sup>1)</sup>	운영 채널(TV) <sup>2)</sup>

- 1) 기존법인의 경우만 해당
- 2) 신청법인이 복수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

### 7-2. 신청법인의 특수관계자

신청법인 명 <sup>1)</sup>	특수관계자 명 <sup>2)</sup>	운영 채널(TV) <sup>3)</sup>	특수 관계 내용 <sup>4)</sup>

- 1) 기존법인 이외에 설립예정법인도 포함
- 2)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만 해당(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하여 특수관계 파악)
- 3) 특수관계자가 복수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
- 4)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의 특수 관계 내용 기재(방송법 시행령 제3조 중 해당 조문 명시)

### 7-3. 신청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타 방송사업자

신청법인 명 <sup>1)</sup>	타 방송사업자 명 <sup>2)</sup>	운영 채널(TV) <sup>3)</sup>	소유 지분율 <sup>4)</sup>

- 1) 기존법인의 경우만 해당
- 2)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만 해당
- 3) 타 방송사업자가 복수의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
- 4)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 방송사업자의 지분율을 기재

### 7-4. 신청법인의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신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일간신문 경영법인

신청법인 명 <sup>1)</sup>	일간신문 경영법인 명 <sup>2)</sup>	특수관계자 명 <sup>3)</sup>	특수 관계 내용 <sup>4)</sup>	소유 지분율 <sup>5)</sup>

- 1) 기존법인 이외에 설립예정법인도 포함
- 2)~4) ① 일간신문 경영법인만 신청법인에 참여하는 경우는 2) 항목만 기재, ② 일간신문 경영법인의 특수관계자만 신청법인에 참여하는 경우는 2)~4) 항목을 기재  
 ※ 일간신문 경영법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모두 신청법인에 참여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위의 ①, ②와 같이 작성
- 4) 일간신문 경영법인과 특수관계자의 특수 관계 내용 기재(방송법 시행령 제3조 중 해당 조문 명시)
- 5) 일간신문 경영법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예정인) 신청법인의 지분율을 기재

**[양식 8]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지역적 기여실적**

법인 명 <sup>1)</sup>	일 자 <sup>2)</sup> (기간)	지 역 <sup>3)</sup>	유 형 <sup>4)</sup>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 액 <sup>5)</sup> (백만원)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 1) 신청법인 또는 주요주주별로 작성(개인주주의 경우 성명을 기재)
- 2)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 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기재
- 3) 시·도(서울특별시는 제외)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 4)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5)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9]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사회적 기여실적**

법인명 <sup>1)</sup>	일 자 <sup>2)</sup> (기간)	유 형 <sup>3)</sup>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 액 <sup>4)</sup> (백만원)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 1) 신청법인 또는 주요주주별로 작성(개인주주의 경우 성명을 기재)
- 2)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 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10]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문화적 기여실적**

법인명 <sup>1)</sup>	일 자 <sup>2)</sup> (기간)	유 형 <sup>3)</sup>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 액 <sup>4)</sup> (백만원)	비 고
소 계						
소 계						
합 계						

- 1) 신청법인 또는 주요주주별로 작성(개인주주의 경우 성명을 기재)
- 2)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 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11] 방송분야별·장르별 편성계획 [엑셀]**

(단위 : 분)

분 야	장 르 <sup>1)</sup>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간 <sup>2)</sup>	비율 <sup>3)</sup>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시간	비율 (재방송)
보 도	뉴스										
	기획 보도										
	소계										
교 양	다큐										
	문화										
	시청자 참여										
	소계										
오 락	드라마										
	스포츠										
	영화										
	소계										
총 계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 양식에 기재된 장르는 예시임

2)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3)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양식 12] 주요 프로그램 명세 (가로표로 작성)

(단위 : 분 / 천원 / 편)

연도 <sup>1)</sup>	프로그램 명	장르	기획 의도	주요 내용	제작원 <sup>2)</sup>	주 시청대상	편당 시간	편당 소요 비용 <sup>3)</sup>	연간 편성 편수 및 시간
2011									
소계									
2012									
소계									
2015									
소계									
합계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작성

2) 제작원은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로 구분하여 기재

3) 소요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양식 13] 제작원별 편성계획(1) [엑셀]**

(단위 : 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 간 <sup>1)</sup>	비 율	비 용 <sup>2)</sup>	시 간	비 율	비 용									
자 체 제 작	순수 자체 제작 <sup>3)</sup>														
	공동 제작 <sup>4)</sup>														
	소 계														
외주제작 <sup>5)</sup>															
	특수 관계자 외주 제작														
구 매	국내물 구매 <sup>6)</sup>														
	국외물 구매 <sup>7)</sup>														
	소 계														
총 계			100 %			100 %			100 %			100 %			100 %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시간 및 비용의 합은 연간 시간 및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업자가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 (공동기획, 공동 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1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양식 14] 제작원별 편성계획(2) [엑셀]**

(단위 : 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간 <sup>1)</sup>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 계			100%		100%		100%		100%		100%

※ <양식 11>, <양식 13>와 일치하게 작성

1) 제작원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양식 15]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 규모 [엑셀]

□ 신청법인 명칭 :

1. 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

구분			금액 또는 주식수
납입 자본금	①	주당 발행예정금액(원)	
	②	설립 시 발행예정 주식 수(주)	
	① x ②	납입 자본금 총계(백만원)	

2. 신청법인이 기존법인의 경우 :

구분			금액 또는 주식수
실질 자본금	①	실질자본금(백만원)	
유상증자	②	주당 발행예정금액(원)	
	③	유상증자 시 발행예정 주식 수(주)	
	④ = ② x ③	유상증자 예정금액 총계(백만원)	
총계	① + ④	납입 자본금 총계(백만원)	

※ 실질자본금(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 기준)은 방송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를 준용하여 계산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함

상기 사항은 관련 부속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 [양식 16] 신청법인의 기업진단보고서

진 단 구 분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승 인 구 분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신청자 제시 자본금액(a-b)		자산총액(a) :	부채총액(b) :

진단결과 내역 (진단기준일 : )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진 단 의 건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자 산		고 정 부 채		
자산총계(I)		부채총계(II)		
부실자산(IV)		자 본 금		
실질자산(V) ( I - IV)		자본잉여금		
비업무용자산(VI)		이익잉여금·결손금		
실질자본(VII) ( V - VI - II)		자 본 조 정		
		자본총계(III)		
겸업자본(VIII) (c-d)		겸업자산(c) :		
		겸업부채(d) :		
방송채널사용사업실질자본 (VII-VIII)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에 의거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 단 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 기업진단내역서

신청법인 명 :

(단위 : 원)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② 단기금융상품 ③ 유가증권 ④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⑤ 단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⑥ 미 수 금 - 대손충당금 ⑦ 미수수익 - 대손충당금 ⑧ 선 급 금 ⑨ 선급비용 ⑩ 이연법인세차 ⑩ 기타의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① 상 품 ② 제 품 ③ 반제품 ④ 재공품 ⑤ 원재료 ⑥ 저장품 ⑦ 기타의 재고자산 (겸업유동자산) 2. 고정자산 (1) 투자자산 ① 장기금융상품 ② 투자유가증권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③ 보증금 ④ 장기대여금 - 대손충당금 ⑤ 장기성매출채권 -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손충당금 ⑥ 투자부동산 ⑦ 기타의 투자자산 - 평가충당금  (2) 유형자산 ① 토 지 ② 건 물 - 감가상각누계액 ③ 구축물 - 감가상각누계액 ④ 기계장치 - 감가상각누계액 ⑤ 방송설비 - 감가상각누계액 ⑥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⑦ 건설중인 자산 ⑧ 기타의 유형자산 (3) 무형자산 ① 영 업 권 ② 공업소유권 ③ 광 업 권 ④ 어 업 권 ⑤ 방송프로그램 ⑥ 기타의 무형자산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겸업고정자산)					
자 산 총 계 (겸 업 자 산)					
1. 유동부채 ① 매입채무 ② 단기차입금 ③ 미지급금 ④ 선 수 금 ⑤ 예 수 금 ⑥ 미지급비용 ⑦ 미지급법인세 ⑧ 미지급배당금 ⑨ 유동성장기부채 ⑩ 선수수익 ⑪ 부채성충당금 ⑫ 이연법인세대 ⑬ 기타의 유동부채 (겸업유동부채)  2. 고정부채 ① 사 채 - 사채발행차금 ② 장기차입금 ③ 장기성매입채무 -현재가치할인차금 ④ 부채성충당금 ⑤ 기타의 고정부채 (겸업고정부채)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부 채 총 계 (검 업 부 채)					
1. 자 본 금 ① 보통주자본금 ② 우선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1) 자본준비금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합병차익 ④ 기타 자본잉여금 (2) 재평가적립금  3.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① 사업확장적립금 ② 감채적립금 ③ 배당평균적립금 ④ 결손보전적립금 ⑤ 기술개발적립금 ⑥ 기타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4. 자본조정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② 배당건설이자 ③ 자기주식 ④ 전환권대가 ⑤ 신주인수권대가 ⑥ 미교부주식배당금 ⑦ 투자주식평가이익 (또는 투자주식평가손실) ⑧ 해외사업환산차  (겸 업 자 본)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산정내역

**[양식 17]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3년간 주요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엑셀]**

구 분		( ) 회사	( ) 회사	( ) 회사
(1)자기자본순이익률	2007년			
	2008년			
	2009년			
(2)부채비율	2007년			
	2008년			
	2009년			
(3)총자산증가율	2007년			
	2008년			
	2009년			
(4)(현금,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對 투자(출자)금액				
(5)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				
(6)신용평가등급				

- 1) 재무비율 계산식
  -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x 100(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임)
  -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x 100(부채, 자본의 금액은 기말잔액)
  - 총자산증가율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x 100] - 100(자산의 금액은 기말잔액)
-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자기자본은 신청공고일 직전 회계연도 말 금액으로 하며, 투자(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기존법인의 투자금액 : 내부잉여현금을 통한 2011년도 투자예정금액(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적시할 것)
  - 주요주주의 출자금액 :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출자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
    - 기존법인의 경우, 증자 참여 주주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對 투자(출자)금액 비율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투자(출자)금액] x 100
  - 자기자본 對 투자(출자)금액 비율 = (자기자본/투자(출자)금액) x 100
- 3) 합병법인의 합병을 전후한 총자산증가율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자산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포함함
- 4) 분할법인의 분할을 전후한 총자산증가율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 후 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포함함
- 5) 신용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별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상기 사항은 관련 부속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양식 18]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최근 4년간 재무제표 주요 항목 [엑셀]**

□ 법인 명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재무상태표 항목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자산				
	부채				
	자기자본 <sup>1)</sup>				
손익계산서 항목	당기순이익				

1)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를 의미

상기 사항은 관련 부속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 [양식 19] 시청자의견청취용 요약문

신청법인명 :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실현계획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	
제5장. 재정적 능력	
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	
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

<2010. 11. 10.(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1. 의결주문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승인 신청 공고' 등의 추진 일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3. 추진 일정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 ('10.11.10)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 설명회 개최 ('10.11.12)
- 승인 신청서류 접수 ('10.11.30. 09:00 ~ 12.1. 18:00)
- 「승인 심사계획」 의결 (11월 ~ 12월 중)
-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12월 중) 직후 선정 결과 의결

※ 향후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문. 끝.

<붙임>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문

### 1. 승인 대상 방송사업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 2. 승인 신청 자격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3. 승인심사 전 주요 절차

- 승인 신청요령 설명회 : 2010년 11월 12일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5층 대강당

- 승인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년 11월 30일 09:00 ~ 2010년 12월 1일 18:00

- 접 수 처 : 방송통신위원회 신규방송사업정책TFT

※ 승인 신청서류 및 보정서류는 방문접수만 허용

- 승인 신청서류 보정

- 보정서류 제출기한 : 2010년 12월 8일 18:00까지

- 보정 대상 : 부속서류 추가 제출, 날짜·단위·성명 등 오기·누락의 수정, 서명·날인의 보완 등 사업계획서의 실제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사업계획서의 실제적 내용을 변경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를 들어, 주주구성의 변경 등)은 보정 불가

- 신청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

#### 4. 향후 추진일정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결과 확정·공표  
- 2010년 12월 중 (예정)

※ 법정 심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방송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5.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선정된 신청법인이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 등본, 승인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까지 제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장을 교부함

#### 6. 유의사항 및 기타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각 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상기 일정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 승인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본 공고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안)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안)

<2010. 12. 8.(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1. 의결주문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위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3. 경과사항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의결('10.9.17)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10.11.10)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의결('10.11.10)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공고('10.11.10) 및 설명회('10.11.12)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접수('10.11.30~'10.12.1)

※ 승인 신청법인(채널명) 현황(접수順)

종편PP	매일경제TV(MBS), 채널A(채널A), HUB(HUB), 케이블연합종합편성채널(CUN), CSTV(CSTV), JTBC(JTBC) 등 6개
보도PP	굿뉴스(뉴스온), 머니투데이 보도채널(MTNews), 서울뉴스(SNN), 연합뉴스TV(연합뉴스TV), HTV(HTV) 등 5개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심사계획(안)」 관련 워크숍('10.12.2, '10.12.3)

## 4. 심사계획(안) 주요 내용

### ① 기본원칙

- (기본계획 및 세부심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선정) 전체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총점의 100분의 60 이상 획득한 경우 승인대상법인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
  -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
- (심사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신청법인 의견청취 등 모든 심사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영향력을 차단
  - 심사지원반을 구성하여 적격여부 검토, 계량평가 자료검토 등 사전 심사준비를 실시
  -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사항별 또는 심사항목별 평가사유를 작성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

### ② 심사위원회 구성방안

- (종편·보도PP 구분여부) 「기본계획」에서 종편·보도PP를 동시 선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한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편·보도PP 모두 심사
- (분야별 구성인원) 각 심사위원이 심사항목 전 분야를 평가하는 점과 기존 방송·통신 심사사례를 참조하여 7개 분야, 총 14명으로 구성
  - ※ 위원장(1), 방송(2), 회계(2), 경제·경영(3), 법률(2), 기술(1), 시민(1), 기타(2)
  - ※ 기타분야는 방송, 회계, 경제·경영, 법률, 기술, 시민분야 및 그 외 분야를 포괄

○ (구성절차)

- (심사위원 후보군) 외부기관·단체(해당 분야 구성인원의 5배수 이내) 및 상임위원(위원별 각 분야 구성인원의 2배수 이내)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

**【분야별 추천기관·단체】**

방송	회계	법률	경제·경영	기술	시민
방송학회 언론학회 미디어경영학회	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	대한변호사협회 공법학회	경제학회 경영학회	ETRI 방송공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 기타 분야 심사위원 후보군은 상임위원이 기타 분야로 추천한 후보와 방송, 회계, 경제·경영, 법률, 기술, 시민분야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합하여 구성

- (심사위원 최종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심사위원 후보군 중 심사위원수의 5배수 이내로 순위를 정하여 최종 후보자를 구성
- (심사위원 확정) 방송통신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포함) 12월 특정 일시에 최종 후보자 중 순위별로 통화하여 본인 의사를 문의한 후 확정

※ 5배수 이내 최종 후보자 중 확정하지 못한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기타 후보군 중에서 통화 후 확정하고, 심사위원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보충을 위한 심사위원 추가선정은 하지 않음

-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1명을 위촉

③ 심사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b>자격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li> <li>② 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li> <li>③ 전문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취득 후 해당 분야 직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④ 해당 분야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li> </ul>
-------------	--

<b>결격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000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에 근무 (임·직원 및 사외이사 포함)한 사실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li> </ul> </li> <li>② 2008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0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li> <li>③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의 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li> <li>④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li> <li>⑤ 승인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li> <li>⑥ 2008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li> </ul>
-------------	--

※ 결격사유 중 ③, ④, ⑤ 항목에 대해서는 승인신청 사업자로부터 결격자 명단을 제출받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도 결격자 명단을 가능한한 제출받아 활용

#### 4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 (심사위원회 주요직무) 심사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수립, 제출된 보정자료 채택여부 결정, 신청법인 의견청취, 적격심사 및 계량·비계량평가, 승인 조건 등 정책건의,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 (심사위원회 운영방법 및 절차)
  - 적격심사, 계량·비계량 평가, 신청법인 의견청취 등 평가 시 심사위원 전원이 참가하되, 심사위원장은 점수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회의 속기록 및 심사의결서 작성 보관
  - 심사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의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적격심사, 계량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운영일정) 1일차에는 심사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의결 및 보정자료 채택, 2~4일차에는 보도PP, 5~8일차에는 종편PP에 대해 사업계획서 검토, 신청법인 의견청취 후 심사결과 의결

※ 심사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일정을 1일 연장할 수 있음

- (승인대상법인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인대상법인 선정을 의결

## 5. 심사위원회 운영장소 및 보안대책

- (운영장소) 심사위원회 운영 장소는 서울 인근, 신청법인 의견청취 장소는 심사위원회 운영 장소 또는 시내호텔

### ○ (보안대책)

- 심사위원 및 심사지원반 직원 등 서약서 징구, 외부 보안업체 등을 통해 관계자 외 출입 통제, 공용전화 외 개별 통신 수단 사용 금지
- 심사와 관련된 논의 및 검토는 반드시 심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하며 심사장 밖으로 자료 반출 금지
- 심사기간 중 심사지원반 직원은 심사위원들과 개별 접촉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등

## 5. 추진일정

- 승인 신청서류 보정 : '10. 12. 2 ~ '10. 12. 8

- 사전 심사준비 : '10. 12. 2 ~ '10. 12. 20

※ 관계기관 의견조회 : 12.2 ~ 12.15, 시청자 의견청취 : 12.3 ~ 12.16

- 심사위원회 운영 : '10. 12. 23 ~ '10. 12. 30

- 승인대상법인 선정 : 심사위원회 운영 직후 (끝)

※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안)

---

2010. 12. 8





# 목 차

I. 기본 원칙 .....	427
II. 사전 심사준비 .....	428
III.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429
1. 심사위원회 구성방안 .....	429
2. 심사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432
3.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	434
IV. 심사위원회 운영장소 및 보안대책 .....	436
V. 추진 일정 .....	437



# I. 기본 원칙

## □ 기본계획 및 세부심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가 총점으로 100분의 80 이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로 100분의 60 이상을 획득한 경우 승인대상법인으로 선정

※ 승인 최저점수 적용 6개 심사항목

-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신청법인의 적정성, ③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④ 납입 자본금 규모, ⑤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⑥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
  -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심사위원을 인선
  -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심사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신청법인 의견청취 등 모든 심사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보안 대책을 강화하여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영향력을 차단
- 심사지원반을 구성하여 적격여부 검토, 계량평가 자료검토 등 사전 심사준비를 실시
-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사항별 또는 심사항목별 평가사유를 작성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

## II. 사전 심사준비

### □ 승인적격 여부 검토

#### ○ 주요 검토사항

- 승인신청법인이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규정된 승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승인 적격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

### □ 계량평가 항목 검토

#### ○ 주요 검토사항

- 승인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 규모',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 능력', '출연금' 평가지표 계산 및 점수 산정
- 승인신청법인 구성주주의 중복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구성주주 중복 참여' 항목의 감점 계산

#### ○ 계량평가 점수는 심사위원회가 확정

### □ 비계량평가 준비

#### ○ 주요 준비사항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정리
- 신청법인별 시청점유율 산정 및 관련자료 정리
- 각종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유무 확인 등

### III.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1. 심사위원회 구성방안

##### □ 종합편성 및 보도 PP 구분여부

- 기본계획에서 종편과 보도PP를 동시 선정하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한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편 및 보도PP를 모두 심사
  - 종편·보도PP 심사위원을 구분하는 경우, 심사의 일관성 보장이 곤란

##### □ 분야별 구성인원

- 기존 방송·통신 심사사례를 참조하여 7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심사위원이 심사항목 전 분야를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총 14명으로 구성하는 방안
  - 위원장(1), 방송(2), 회계(2), 경제·경영(3), 법률(2), 기술(1), 시민(1), 기타(2)

※ 기타 분야는 방송, 회계, 경제·경영, 법률, 기술, 시민분야 및 그 외 분야를 포괄

※ '00년 이후 방송·통신 심사위원회 구성분야 및 구성인원

구분	위성방송('00)	출시광파('01)	위성DMB('05)	지상파DMB('05)	경인민방('06)	IPTV('08)
분야	위원장(1), 법률(1), 경영·회계(3), 방송(5), 기술(2), 시민(2)	위원장(1), 방송(2), 경영(3), 회계(2), 법률(1), 기술(1), 소비자(2), 시청자(2)	위원장(1), 법률(1), 경영(1), 회계(2), 방송(3), 기술(2), 시민(1), 통신(1)	위원장(1), 방송(4), 회계(3), 경영(1), 법률(1), 기술(2), 시민(2)	위원장(1), 법률(2), 경영·회계(4), 방송(4), 기술(3), 시민(2)	방송통신미디어(7), 법률(1), 경영·회계(3), 기술(2)
인원	14인	14인	12인	14인	16인	13인

□ 구성절차

○ (심사위원 후보군)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심사위원 후보군을 구성

- 외부기관·단체는 해당분야 심사위원 구성인원의 5배수 이내를 추천하고, 각 상임위원은 전 분야 구성인원의 2배수 이내를 추천

※ 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시 대부분 단체 추천과 위원회 추천방식을 병행하였음

< 분야별 추천기관 및 추천의뢰 인원 >

분야(구성인원)	추천기관	추천의뢰 인원	추천인원 합계
방송(2)	한국방송학회	10인	50인
	한국언론학회	10인	
	한국미디어경영학회	10인	
	상임위원	20인	
회계(2)	한국공인회계사회	10인	40인
	한국회계학회	10인	
	상임위원	20인	
경제·경영(3)	한국경제학회	15인	60인
	한국경영학회	15인	
	상임위원	30인	
법률(2)	대한변호사협회	10인	40인
	한국공법학회	10인	
	상임위원	20인	
기술(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인	20인
	한국방송공학회	5인	
	상임위원	10인	
시민(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인	20인
	소비자시민모임	5인	
	상임위원	10인	
기타(2)	상임위원	20인	20인

※ 기타 분야 심사위원 후보군은 상임위원이 기타분야로 추천한 후보(20인)와 방송, 회계, 경제·경영, 법률, 기술, 시민분야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합하여 구성

- **(심사위원 최종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심사위원 후보군 중에서 심사위원수의 5배수 이내로 순위를 정하여 최종 후보자를 구성
- ※ 홈쇼핑PP('01), 지상파 DMB('05), 경인민방('06) 심사 : 인선소위원회에 선정을 위임  
IPTV('08) 심사: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를 통해 선정
- **(심사위원 확정)** 방송통신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포함) 12월의 특정일시에 최종 후보자 중에서 순위별로 통화하여 본인의사를 문의한 후 확정
  - 5배수 이내 후보자 중에서 심사위원 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기타 후보군 중에서 통화 후 확정
- ※ 심사위원 확정시 적용할 통화규칙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 심사위원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보충을 위한 심사위원 추가선정은 하지 않음
-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1명을 위촉

□ **자격기준: 아래 위촉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

- ①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② 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 ③ 전문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취득 후 해당 분야 직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④ 해당 분야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위성방송('00), 위성DMB('05), 경남 민방 광역화('05), 경인민방('06) 심사 시 자격기준

- ①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관련 연구기관 3년 이상 근무자)
- ② 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 ③ 전문자격증 소지자
- ④ 해당 분야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IPTV('08), IMT-2000('00) 허가심사시 자격기준: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등 방송통신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2000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에 근무(임·직원 및 사외이사 포함)한 사실이 있는 자
  - 2008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

- ※ 위성방송('00), 위성DMB('05), 경남 민방 광역화('05), 경인민방('06) 심사시 결격사유:
  -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구성주주사의 임원(비영리법인의 비상임 감사는 제외)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2년(위성방송은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② 본인이 신청법인 또는 구성주주사의 사용인이거나 과거 2년(위성방송은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 ※ 위성방송('00), 위성DMB('05), 경남 민방 광역화('05), 경인민방('06) 심사시 결격사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구성주주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 ③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 경남 민방 광역화('05) 심사시 결격사유: 신청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간, 신청법인의 시청자위원 또는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자
- ※ 위성방송('00), 위성DMB('05), 경남 민방 광역화('05), 경인민방('06) 심사시 결격사유: 신청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위성방송은 3년) 간, 본인이 신청법인 또는 구성주주사와 뚜렷한 이해관계(사외이사, 자문역 또는 용역 수행 등)가 있는 자
- ※ IPTV('08) 허가심사시 결격사유: 최근 2년 이내 허가 신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수행하거나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④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 ⑤ 승인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 ⑥ 2008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결격사유 중 ③, ④, ⑤ 항목에 대해서는 승인신청 사업자로부터 결격자 명단을 제출받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도 결격자 명단을 가능한한 제출받아 활용

### □ 심사위원회 주요직무

- 심사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수립
- 제출된 보정자료 채택여부 결정
- 신청법인 의견청취 실시
- 적격심사,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 승인 조건 등 정책건의
-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 □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 운영방법 및 절차
  - 적격심사, 계량·비계량 평가, 신청법인 의견청취 등 평가 시 심사위원 전원이 참가하되, 심사위원장은 점수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회의 속기록 및 심사의결서 작성 보관
  - 심사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의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적격심사, 계량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운영일정

일자별	주요 내용
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의결</li> <li>- 보정자료 채택</li> </ul>
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PP 신청법인 사업계획서 검토</li> </ul>
3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PP 신청법인 사업계획서 검토</li> </ul>
4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PP 신청법인 의견청취</li> <li>- 보도PP 심사결과 의결</li> </ul>
5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편PP 신청법인 사업계획서 검토</li> </ul>
6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편PP 신청법인 사업계획서 검토</li> </ul>
7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편PP 신청법인 의견청취</li> </ul>
8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편PP 심사결과 의결</li> </ul>

※ 심사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일정을 1일 연장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예정자 포함)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인대상법인 선정을 의결

## IV. 심사위원회 운영장소 및 보안대책

### □ 운영 장소

- 심사위원회 운영 장소 : 서울 인근
- 신청법인 의견청취 장소 : 심사위원회 운영 장소 또는 시내호텔
- ※ 과거 방송사업 허가 심사의 경우 심사운영 장소 보안을 위해 신청법인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 운영 장소와 별도로 제3의 장소에서 개최

### □ 보안 대책

- 심사위원, 심사지원반 직원 등에 대하여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받고 필요교육을 실시
  - 외부 보안업체에 의뢰하여 심사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 장소에 대한 관계자 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 ※ 심사장의 출입구는 08:00 - 22:00 사이 심사 지원요원이 상시 근무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완전 폐쇄
  - 심사와 관련된 논의 및 검토는 반드시 심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하며 모든 자료는 심사장 밖으로 반출 금지
  - 개별 방에서 전화 및 인터넷 사용 등 개별 통신 수단의 사용은 전면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심사장내 공용전화만 사용을 허용
- 심사기간 중 심사지원반 직원은 심사위원들과 개별 접촉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 사업계획서 등 심사 관련 서류는 접수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내의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심사위원회 운영 개시 직전에 심사장으로 이송하고 심사 종료 후 방송통신위원회로 재 이송
  - 총 20부 중 5부(원본 포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파기 조치

## V. 추진 일정

---

- 승인신청 접수 : '10. 11. 30 ~ '10. 12. 1
- 승인 신청서류 보정 : '10. 12. 2 ~ '10. 12. 8
- 사전 심사준비 : '10. 12. 2 ~ '10. 12. 20
  - 관계기관 의견조회 : '10. 12. 2 ~ '10. 12. 15
  - 시청자 의견청취 : '10. 12. 3 ~ '10. 12. 16
- 심사위원회 운영 : '10. 12. 23 ~ '10. 12. 30
- 승인대상법인 선정 : 심사위원회 운영 직후

※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Ⅲ. 신청 공고 및 접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

방송법 제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 1. 승인 대상 방송사업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 2. 승인 신청 자격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3. 승인심사 전 주요 절차

- 승인 신청요령 설명회 : 2010년 11월 12일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5층 대강당

- 승인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년 11월 30일 09:00부터 2010년 12월 1일 18:00까지

- 접 수 처 : 방송통신위원회 신규방송사업정책TFT

※ 승인 신청서류 및 보정서류는 방문접수만 허용

○ 승인 신청서류 보정

- 보정서류 제출기한 : 2010년 12월 8일 18:00까지

- 보정 대상 : 부속서류 추가 제출, 날짜·단위·성명 등 오기·누락의 수정, 서명·날인의 보완 등 사업계획서의 실제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사업계획서의 실제적 내용을 변경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를 들어, 주주구성의 변경 등)은 보정 불가

- 신청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

**4. 향후 추진일정**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결과 확정·공표

- 2010년 12월 중 (예정)

※ 법정 심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방송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5.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선정된 신청법인이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 등본, 승인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까지 제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장을 교부함

**6. 유의사항 및 기타**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각 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상기 일정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 승인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본 공고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    끝.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 현황



## 종편 · 보도PP 승인 신청법인 현황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최대주주
(주)매일경제티브이	MBS	윤승진	매일경제신문
(주)채널에이(가칭)	채널에이	안국정	동아일보사
(주)에이치유비(가칭)	HUB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주)케이블연합 종합편성채널(가칭)	CUN	강대인 장근복	태광산업
(주)씨에스티비이(가칭)	CSTV	오지철	조선일보사
(주)제이티비씨(가칭)	jTBC	남선현	중앙미디어네트웍

※ 승인신청 접수順

###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최대주주
(주)굿 뉴스(가칭)	뉴스온	김관상	(재)씨비에스
(주)머니투데이 보도채널(가칭)	MTNews	최남수	머니투데이
(주)서울뉴스(가칭)	서울뉴스(SNN)	이동화	서울신문
(주)연합뉴스TV(가칭)	연합뉴스TV	박정찬	연합뉴스
(주)HTV(가칭)	HTV	유병창 백세빈	헤럴드미디어

※ 승인신청 접수順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 1. 의견 접수 대상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법인(11개)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최대주주
(주)매일경제티브이	MBS	윤승진	매일경제신문
(주)채널에이(가칭)	채널에이	안국정	동아일보사
(주)에이치유비(가칭)	HUB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주)케이블연합 종합편성채널(가칭)	CUN	강대인 장근복	태광산업
(주)씨에스티브이(가칭)	CSTV	오지철	조선일보사
(주)제이티비씨(가칭)	JTBC	남선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 승인신청 접수順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최대주주
(주)굿 뉴스(가칭)	뉴스온	김관상	(재)씨비에스
(주)머니투데이 보도채널(가칭)	MTNews	최남수	머니투데이
(주)서울뉴스(가칭)	서울뉴스(SNN)	이동화	서울신문
(주)연합뉴스TV(가칭)	연합뉴스TV	박정찬	연합뉴스
(주)HTV(가칭)	HTV	유병창 백세빈	헤럴드미디어

※ 승인신청 접수順

2. 의견제출 기간

○ 2010. 12. 3(금) ~ 12.16(목)

3. 의견제출 내용

○ 승인신청법인의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대한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http://www.kcc.go.kr)) 게시판에 게재된 승인신청 법인의 요약 사업계획서 참고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2010.12.16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750-2489

○ 전자우편 : new\_channel@kcc.go.kr

5. 유의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 신청법인명 : 매일경제티브이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법인: 매일경제티브이</li> <li>•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명칭: 한국매일방송(MBS)</li> <li>• 최대주주: 매일경제신문사</li> <li>• 주요 경영진: 대표이사 윤 승 진, 편성책임자 장 태 연</li> </ul>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공정성 실현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S는 '국민에게 기쁨, 국가에 힘이 되는 방송'을 목표로 방송강령을 실천하고 장애인 등 시청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li> <li>• 각종 출연금과 방송발전기금의 납부는 물론 그와는 별도로 사회 공헌센터를 설립하여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li> </ul> </li> <li>2. <b>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념과 정치색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사실 확인시스템'과 자체 심의, 시청자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li> <li>• 편성위원회를 통해 경영과 제작의 분리를 실천하고, 공정방송 위원회로 보도의 객관성을 감시하는 견제장치를 두겠습니다.</li> </ul> </li> <li>3. <b>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20편 이상의 공익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며 신속한 재난방송과 뉴스특보 그리고 방송언어 순화에 앞장서겠습니다.</li> </ul> </li> <li>4. <b>지역, 사회, 문화적 기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만들며 ISO가 권고하는 사회적 책임기업의 모범이 되겠습니다.</li> <li>• 문화 전문 프로그램, 지역 방송국과 연계한 공모전, 동포기업인과 광역시를 연결하는 포럼으로 지역발전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li> <li>• 예술인과 기업, 소외계층을 연계하는 재능기부 활동으로 문화 예술을 나누고 한국 사회의 문화가치를 높이겠습니다.</li> </ul> </li> <li>5. <b>신청법인의 적정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인 미디어그룹들과 글로벌 진출을 도울 한상기업인, 스마트TV 시대를 대비하는 첨단 기술업체 등이 MBS의 핵심 주주입니다.</li> <li>• 지역대표 기업 등 다양한 주주를 위해 공시를 강화하고 소액 주주 보호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방송사가 되겠습니다.</li> </ul> </li> <li>6. <b>시청자 보호와 권익 실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과 노약자, 다문화 가정 등 소수자 보호프로그램을 만들고 신속한 시청자 고충처리제도와 강화된 시청자위원회, 자체 심의로 시청자 주권을 높이겠습니다.</li> </u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b> <b>방송프로그램</b> <b>기획·편성 및</b> <b>제작계획</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시청자 선택권 확대와 해외 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S는 &lt;Smart Joy&gt; 유익한 즐거움, &lt;Vision Korea&gt; 통합과 국익, &lt;One Asia&gt; 하나된 아시아라는 3대 편성이념으로 방송을 만들고 '아시아 최고의 미디어 허브' 비전을 이루겠습니다.</li> <li>• 모든 장르에서 시청자가 참여하는 형식과 코너를 개발하겠습니다.</li> <li>• 독립제작사와 동반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멀티콘텐츠 스튜디오'와 '드라마펀드'를 운영하고, 아시아 채널 진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li> </ul> </li> <li><b>2. 차별화한 편성과 편성의 독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물을 30%이상 편성하고, 오락물 비중은 지상파보다 낮추면서, 아시아의 시각으로 만드는 뉴스를 선보이겠습니다.</li> <li>• 시청대상과 주제에 따른 블록편성 등으로 차별화하고 편성위원회 운영으로 편성의 독립성을 높이겠습니다.</li> </ul> </li> <li><b>3. 표준제작비와 합리적 저작권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지급을 현실화하고, 저작권 소유 정도에 따라 제작비 지급을 달리하는 합리적 관행을 만들겠습니다.</li> <li>• 특정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제작사, 스토리텔링 업체 등과 함께 하는 방안으로 멀티콘텐츠 스튜디오를 선보이겠습니다.</li> </ul> </li> <li><b>4. 양방향, 3D, 스마트TV 등 신규 플랫폼 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은 물론 스마트TV 등 새로운 플랫폼에 진출하겠습니다.</li> <li>• 양방향 서비스와 3D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가 첨단 방송 기술이 주는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li> </u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b> <b>경영계획 및</b> <b>전략</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강소 글로벌 콘텐츠 채널로 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 8천8백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합니다. 4년차 손익분기점을 목표로 과감히 투자해 방송 성장에 견인차가 되겠습니다.</li> <li>• 보장판매제 도입으로 광고주 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li> </ul> </li> <li><b>2. 양질의 일자리 창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S 개국 준비시점에 5백여 명의 인력으로 출발하고, 5년 내 800명이 넘는 조직으로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li> <li>• 관행적인 선발 방식을 탈피해 공모전과 방송인 선발대회를 통해 끼 있는 인재를 공개적으로 발굴해 방송인재로 키우겠습니다.</li> </ul> </li> <li><b>3.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보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가 위원장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li> <li>• 사장 공모 추천제와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더욱 높이며, 엄격한 윤리강령을 운영해 맑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li> </ul> </li> </ol>

<p><b>제5장 재정적 능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인 매일경제티브이는 BBB+, 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은 A-의 우량한 신용등급을 받았습니다.</li> <li>• 매일경제신문과 국내 우량기업 외에 해외미디어, 해외 한상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합니다.</li> </ul>
<p><b>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시스템 투자와 일산미디어센터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방송경험으로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시스템, 저전력 그린 방송사를 만들겠습니다.</li> <li>• 총무로 본사를 조기에 확장하고, 일산에 드라마와 오락물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만듭니다.</li> </ul> </li> <li><b>2. 3D 중계차 구축 등 고품질 제작시스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업체와 3D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연구소에서는 첨단 기술을 방송에 접목하는 방안과 기술표준화에 참여하겠습니다.</li> <li>• 숙달된 방송 인력과 다양한 시설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잇는 미디어가 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li> </ul> </li> </ol>
<p><b>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방송 발전을 위한 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산 방송장비 사용을 늘리고, 기술연구소를 만들어 방송기술 표준화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우선 과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li> <li>• 현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방송아카데미, 3D 교육센터 등에 투자하겠습니다.</li> </ul> </li> <li><b>2. 유료방송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고 광고 이외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면서 유료방송 활성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li> <li>• 제작능력이 있는 방송국과 독립제작사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을 구매해 방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li> <li>• 다양한 단말기에 최적화된 방송서비스를 위해 원소스 멀티유즈를 위한 재 제작,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이겠습니다.</li> </ul> </li> <li><b>3. 콘텐츠산업 육성 위해 5년 간 500억 원 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드라마펀드, 아시아 문화펀드, 멀티콘텐츠 스튜디오 등 콘텐츠산업 발전에 5년 간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li> </ul> </li> <li><b>4. 출연금 등 사회 환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장 교부 3개월 안에 100억 원 출연금을 납부하겠습니다.</li> <li>• 방송법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중소기업 미디어센터와 체험관 운영으로 시청자와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li> </ul> </li> </ol>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 신청법인명 : (가칭) 주식회사 채널에이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p>(가칭)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채널A)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참여해 우리나라 콘텐츠시장을 활성화하고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킬러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미디어서비스 구현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적정 자본금을 확보했습니다.</p> <p>채널A에 업종, 규모, 지역별로 골고루 구성된 법인과 개인이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90년 동안 언론·교육·문화 사업에 전념해온 동아일보가 최대 주주로 참여해 90년간의 신문 제작 경험과 17년간의 동아방송(1980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강제 폐방됨) 운영 경험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되살려 나갈 예정입니다.</p> <p>채널A는 KBS 편성운영본부장, SBS 부회장 등을 역임한 안국정 동아일보 방송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대표자로 임명해 전문성 있는 경영을 할 계획입니다.</p>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실현계획	<p>채널A는 한국 콘텐츠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고품격 콘텐츠와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파트너와의 상생 협력으로 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송·통신 융합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디지털 미디어산업 선도 △국내 중심의 기존 방송사업 영역을 뛰어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p> <p>국내 최초로 미디어 기업 사회책임(CSR)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p> <p>방송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방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정보도 에디터 및 시청자 모니터단, 프로그램 상시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공정선거TF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밀착형 콘텐츠를 생산하겠습니다.</p> <p>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방송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의 온라인 시스템과 연동해 방송, 인터넷, 전광판, 모바일 등 다양한 윈도를 통해 신속한 재난방송을 하겠습니다. 또 방송언어 순화를 위해 ‘방송언어 순화 지침서’ 발간, 언어 순화 전담자 배치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p> <p>채널A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방송정책 및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채널A 관련 기구 및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양방향 프로그램, 시청자 VJ 등 시청자 참여·직접제작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동아미디어아카데미 및 전국 미디어센터와의 협력한 시청자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를 통해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실버계층, 재외동포 등 소수 시청자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편성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p>	<p>채널A는 외부 제작주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시청자에게 고품격 방송을 제공할 것입니다.</p> <p>새로운 시청 시간대 개척으로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혀줍니다. 특히 황금시간대에는 기존 ‘뉴스시간대’, ‘드라마시간대’라는 공식을 과감하게 깨겠습니다. 재미있는 가족 프로그램과 알찬 생활 정보가 넘치는 오전 시간대, 생방송 구인-구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낮 시간대를 만들겠습니다</p> <p>방송 분야별 균형 편성을 통해 방송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보도 분야는 ‘신뢰’를 핵심가치로 삼고, 다양한 뉴스 포트폴리오를 선보이겠습니다.</p> <p>교양 분야는 공익적 소재에 재미를 더한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프로그램과 동아일보의 자원을 활용한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락 분야는 시청자 참여 양방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3D 미니시리즈, 뮤지컬 드라마, 청소년 시트콤, 시즌제 드라마 등 소재와 형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p> <p>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경영진과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p> <p>채널A는 직접제작비의 84.8%(2012년 기준)를 외주제작에 투입해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르별 우수 외주제작사와 장기 협력 파트너 협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p> <p>방송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해 외주제작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한 콘텐츠 제작사 선정 절차를 마련해 연고에 의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겠습니다. ‘표준제작비’를 설정해 합리적인 제작비를 산정하고, 창작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저작권 및 수익 배분으로 방송산업의 선순환을 통한 시청자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겠습니다.</p> <p>시청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유통 모델을 다원화하겠습니다. IPTV, 디지털케이블TV, 웹하드, 모바일,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멀티플랫폼을 통해 ‘미리보기’ ‘다시보기’ ‘필요한 만큼만 보기’ 등 다양한 VOD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p> <p>한국 콘텐츠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채널A는 미국의 최대 케이블사업자인 컴캐스트를 비롯해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글로벌미디어기업들과 다양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으며 이들과 콘텐츠에 대한 공동투자 및 공동제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 글로벌미디어 기업의 방대한 유통망을 활용,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p>	<p>채널A는 콘텐츠 경쟁력 및 공고한 글로벌 파트너십, 뉴미디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콘텐츠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아시아의 콘텐츠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p> <p>진입기(2011~2013년)부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편성·수급함으</p>

	<p>로써 채널 인지도를 조기 확보하고, 광고수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콘텐츠 기획·편성·마케팅 및 보도 분야의 핵심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제작은 외부 제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창조적 아웃소싱’ 하는 개방적 조직 운용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p> <p>도약기(2014~2015년)에는 광고수익을 재원으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지상파 방송사와 대등한 채널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콘텐츠 유통 및 광고 판매의 신규 영역을 개척해 콘텐츠 부가가치와 수익을 극대화하고, 방송 재원을 다원화하겠습니다. 또 방송·통신 융합 인프라를 활용한 뉴미디어 사업모델로 글로벌 방송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자 합니다.</p> <p>안정성장기(2016년 이후)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압도하는 콘텐츠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와의 제작 및 유통 협력을 통해 국내 방송시장에서 프리미엄 사업자의 위상을 확보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방송 콘텐츠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p> <p>채널A는 이러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투명성의 기반 위에서 구현하겠습니다. 경영 감시 기능 강화, 소액주주 등 주주의 권익 보호, 전문경영인의 책임 경영 실현을 경영조직 구성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이사회, 주주총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등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제5장 재정적 능력</p>	<p>채널A에는 신용평가 등급, 재무구조 등이 매우 우수한 기업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우수한 재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신생 방송사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p>
<p>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p>	<p>채널A는 한국의 IT(정보기술), CT(통신기술) 분야 우수 기술력을 방송 기술에 접목해 한국형 첨단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편성 및 경영계획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송시설·시스템을 운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언제 어디서나 채널A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간단한 방식으로 채널A 방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p> <p>채널A는 미디어기술연구소를 설립해 국내 방송 기술회사, 연구기관들과 IT 기반의 방송 장비를 적극 개발하고 이를 채널A에 적용해 국산 방송장비의 고도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p>
<p>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p>	<p>채널A는 동아미디어아카데미 운영 및 전국 제휴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고급 방송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고품격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방송시장을 활성화해, ‘채널A-플랫폼 사업자-시청자’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p> <p>콘텐츠 펀드 조성, 콘텐츠 유통 전문회사 및 제작사 투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스토리·포맷마켓 구축, 우수 기획안 제작비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p> <p>채널A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비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일시 출연금 100억 원을 승인장 교부 후 3개월 이내 납부하겠습니다.</p>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 신청법인명 : (가칭) 주식회사 에이치유비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 김기웅</li> <li>• 편성책임자 : 차성모</li> <li>• 최대주주 : (주)한국경제신문</li> </ul>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목표 및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사업 비전으로 채택</li> <li>- ‘시청자 복지 구현’‘균형 잡힌 공론 형성’‘창조적 콘텐츠 양산’‘TIME융합 선도’‘글로벌 경쟁력 향상’등 5대 사업목표 설정</li> <li>- ‘새로운 시대, 새로운 중심 HUB’를 방송 슬로건으로 제정</li> </ul> </li> <li>•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확대 위해 연간 3만~5만명의 저소득계층 지원</li> <li>- 장애인의 방송매체 접근권 강화 위해 개국 초기부터 100% 자막방송 실시</li> <li>- 정치.사회 분야 뉴스 줄이고, 경제.글로벌 뉴스 확대해 시청자의 다양한 니즈 충족</li> <li>-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제작 지침 담은 가이드라인 작성해 준수</li> <li>- 비상업적 공익광고 비중을 방통위 고시 기준보다 확대 편성</li> <li>- 다문화 가정 및 이주 근로자 참여하는 ‘레인보우 페스티벌’ 매년 10월 개최</li> <li>- 한국경제신문의 고교생 경제.논술신문인 ‘생글생글’ 지도교사 20명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해 HUB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언어 순화교육 실시</li> <li>- 장애인 대상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정규 편성</li> </ul> </li> <li>•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외주제작과 시설.기술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1만6000개 창출</li> <li>- 전국 지역 대학 방송 관련 학과와 ‘미디어 아카데미 벨트’ 구축해 지역콘텐츠 활성화 도모</li> <li>-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제작해 세계 시장에 유통하는 ‘지역 브랜드 한류화 프로젝트’ 추진</li> <li>- 연간 예산 30억원 규모로 세계 최초의 ‘서울 3D 콘텐츠 페어’ 개최</li> <li>- 신입 채용 인원의 30%를 지방 출신 인력으로 뽑는 ‘인재 지역 할당제’ 도입</li> </ul> </li> <li>• 신청법인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주로 구성</li> </ul> </li> <li>• 시청자 권익 실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청자 담당 기구인 시청자본부 설치</li> <li>- 시청자본부에 시청자국뿐 아니라 편성.제작국, 보도국까지 지휘하는 편성권.심의권 부여해 실질적인 시청자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li> <li>- 평일 저녁 8~9시를 ‘시청자 참여존’으로 설정,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집중 배치</li> </ul> </li> </ul>

구분	주요 내용
<p>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편성비중은 보도 19.4%, 교양 41.6%, 오락 39.0%로 설정하고 개국 5년차 까지 유지</li> <li>- 메인뉴스를 오후 11시대에 배치, 지상파와 차별화하고 시청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li> <li>- 방송프로그램의 브랜드화를 통해 채널 인지도 제고</li> <li>- 모바일 기기 이용자들을 위해 10분짜리 짧은 분량의 ‘포켓 시리즈’ 개발·편성</li> <li>- 교양에 오락을 더한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평일 오후 5시대에 띠 편성</li> <li>- 한국경제신문의 인기 연재 시리즈인 ‘김과장 이대리’를 시트콤으로 제작하는 등 크로스오버 프로그램 다수 기획해 정규 편성</li> <li>- 주말 프라임 타임대에 오락물 대신 대형 다큐멘터리 배치하고, 드라마 1,2부를 두 시간 연속 편성하는 등 실험적 프로그램 배열 시도</li> </ul> </li> <li>•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규약의 제정 및 준수, 편성위원회 결정과정에 시청자위원회 의견 적극 반영, 무리한 사전심의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li> </ul> </li> <li>•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급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li> <li>- 신진 창작 인력에게 무료로 작업공간 제공하는 ‘콘텐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도입해 국내 창작 기반 확대에 기여</li> <li>- PD 기능을 ‘기획 PD’와 ‘제작 PD’로 분리해 전문성 및 역량 극대화</li> <li>-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적극 설립해 공동 투자 및 제작 활성화 도모</li> <li>- 글로벌 미디어그룹과의 전략적 제휴 통해 해외 수출 시장 확대</li> </ul> </li> <li>•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제작사 등과 공동으로 원소스멀티유즈(OSMU) 사업 위한 협력 모델 개발</li> <li>- 지역방송국 등 다양한 지역 제작주체들과 다큐멘터리 등 공동 제작 및 유통</li> <li>-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관리·유통하는 자회사 ‘HUB월드와이드’ 설립</li> <li>- 국제 공동제작 적극 추진해 리스크 최소화와 콘텐츠 대형화 추진</li> <li>- 자체적으로 3D 제작설비 구축해 외부 제작사에 임대 형식으로 개방</li> <li>- 1000억원대 콘텐츠투자조합 조성해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li> </ul> </li> </ul>
<p>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채널번호 확보 및 채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li> <li>- 광고수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및 글로벌 시장 적극 개척</li> <li>- 2020년 아시아 유료방송시장 톱5 달성(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li> <li>- 2020년 글로벌 시장에서 방송 및 뉴미디어 콘텐츠 사업으로 2000억원 매출 달성</li> </ul> </li> <li>•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 중심, 기획 중심, 글로벌 시장 지향, 미디어 융합 선도를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li> <li>- 시청자본부와 경영본부를 두 축으로 2본부, 1연구소, 7국, 3실, 38팀 체제 구축</li> <li>- 전체 정규직 소요인력은 개국 1차 연도인 2011년 378명에서 5차 연도인 2015년 560명으로 확대</li> </ul> </li> <li>•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방안</li> </ul>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사주(社主) 없이 소유와 경영 분리된 한국경제신문이 최대주주로 참여, 방송의 사유화 및 권력화 우려 차단</li> <li>- 한국경제미디어그룹 통합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구축해 업무 효율성 제고</li> </ul>
제5장. 재정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평가등급, 출자능력 등 재무구조가 우수한 기업들로 주요주주 구성</li> </ul>
제6장. 방송시설 설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시설 설치·운영</li> <li>- 프로그램 기획부터 모니터링까지 모든 제작과정을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올인원(All in One) 시스템’ 구축</li> <li>- 시청자본부 산하 디지털국 43명이 7개 스튜디오 및 방송시설을 운영하고 디지털국의 필요인력은 HK미디어텍 등 전문 외주업체 활용</li> <li>•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li> <li>-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경력자를 채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은 직업교육 전문 업체를 활용해 구성원의 기술 습득 조기 달성</li> <li>•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방안</li> <li>- 3DTV와 스마트 디바이스 등 첨단 방송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역량 강화</li> </ul>
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산업 발전 및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li> <li>- 미디어 융합 연구기관인 글로벌BCT(Broadcasting &amp; Culture Technology)연구소와 시청자본부 디지털국 산하 방송기술연구팀을 기반으로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li> <li>- 플랫폼 사업자 및 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다양한 협력 모델을 통해 무료방송보다 우월한 콘텐츠와 서비스 지속적 제공</li> <li>•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li> <li>- 5년간 총 1조318억원을 콘텐츠산업에 투자해 시장 활성화하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대</li> <li>- 콘텐츠 관련 단체 및 각종 행사에 5년간 1248억원 지원</li> <li>- 영세 PP와 외주 제작사뿐 아니라 지역 대학 및 콘텐츠 관련 단체도 지원해 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li> <li>• 출연금 납부 계획</li> <li>- 승인장 교부 후 3개월 내 출연금 100억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현금으로 일시 납부</li> </ul>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 신청법인명 : (가칭) 주식회사 케이블연합종합편성채널(CUN)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향적 투자로 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li> <li>• CUN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기업군과 지역 방송사업자 연합체</li> <li>&gt; 안정적인 재정능력과 강력한 투자의지</li> <li>&gt; 다양한 콘텐츠 공급능력</li> </ul> </li> </ul>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공정성 실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이념 : 열린방송, 공정방송, 글로벌방송(글로벌+로컬), 녹색방송</li> <li>• 공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 제공, 사회통합 위한 민주적 소통</li> <li>&gt; 방송시장 선순환구조 확립,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li> <li>&gt;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li> </ul> </li> <li>•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보도·편성의 공정성·독립성</li> <li>&gt;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li> <li>&gt;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li> <li>&gt; 경영 투명성 제고</li> <li>&gt; 시사·보도·선거방송 및 편성의 공정성</li> </ul> </li> <li>• 공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시청자 요구를 반영한 편성</li> <li>&gt; 어린이·청소년·소수계층 보호</li> <li>&gt; 문화생활 향상 및 언어순화</li> <li>&gt; 시청자 주권 실현</li> </ul> </li> <li>•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li> <li>• 외주제작육성펀드 조성 및 개방형 스튜디오 구축</li> <li>• SO 수익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여 방송시장 활성화 유도</li> <li>• 시사·보도, 선거방송의 공정성 위해 보도국장 기자 추천제 도입</li> <li>• 소외·소수계층 접근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 VOD 서비스의 무료 제공</li> <li>•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VOD를 유치원과 학교에 무료 제공</li> <li>• 어린이·청소년 시청시간에 고열량·고당분·고염분 음식 광고 금지</li> <li>• 장애 유형별로 프로그램 기술지원(화면해설, 자막, 수화 등)</li> <li>• 공익성 프로그램의 주시청시간대 주간 띠 편성</li> <li>• 공개적 시청자 평가시스템 구축 및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li> </ul>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 부문 46.4% 편성으로 공익성 지역성 강화 (보도부문 20.8%, 오락부문 32.8%)</li> <li>• 24시간 방송 및 본방 100% (재방비율 0%)</li> <li>• 100% Full HD 고화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li> <li>• 기존 지상파 대비 독창적인 편성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오전시간대 어린이 프로그램 부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생방송 형식의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강화 (오전 9 ~ 12시)</li> <li>• 소수·소외계층 등 공익성 프로그램 강화 (오후 12 ~ 16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메인뉴스 8시, 대표드라마 9시 전진편성</li> <li>&gt; 밤 10시 고품질 프리미엄 다큐멘터리 편성</li> <li>&gt; SO, PP, 독립제작사 제작 프로그램 구매 및 편성 (새벽 2 ~ 4시)</li> <li>&gt; 시청자 참여 및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구매 및 편성 강화 (새벽 5시)</li> </ul> </li> <li>• 외주제작 전과정의 100% 외주실현으로 방송산업 발전 기여 (시장확대, 고용창출)</li> <li>•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편성 및 해당프로그램 광고 수익을 기부</li> <li>• 외주제작 육성펀드 운용 및 글로벌 콘텐츠 제작투자펀드 운용으로 글로벌 콘텐츠경쟁력 확대 기여</li> <li>• 지역미디어창작센터를 전국 9개지역에 운영하여 지역의 방송영상산업 발전 지원</li> </ul>
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방송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콘텐츠 투자 부족으로 국민이 즐길만한 신규 콘텐츠 미흡</li> <li>&gt; 막강한 콘텐츠와 자본력 갖춘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 불가피</li> </ul> </li> <li>• CUN은 적극적인 콘텐츠 제작 투자 및 글로벌 유통의 선순환 확립 통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는 비전을 수립 → 협력 SO . PP 의 역량 활용, 풍부한 자금력 및 투자 의지 기반</li> <li>• CUN은 적극적인 콘텐츠 제작 투자 및 글로벌 유통의 선순환 확립 통해 아시아 No.1 및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는 비전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초기 과감한 제작비와 기술 투자로 시장 활성화 선도</li> <li>&gt; 혁신적인 내부 제작시스템, PP 및 외주제작사와 Win-Win 체계구축</li> <li>&gt; 국내외 외주제작펀드 투자 및 글로벌 허브 구축 통해 글로벌 진출</li> <li>&gt; 우수 인력의 적극 육성 통해 전문성 갖춘 글로벌 인재 확보</li> <li>&gt; 지역미디어창작센터를 설립, 로컬 콘텐츠의 유통 지원</li> </ul> </li> <li>• 과감한 투자 및 도전 창조 의 기업 문화 통해 글로벌 비전 달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제휴 및 현지화 통한 글로벌 콘텐츠 네트워크 구축</li> <li>&gt; 공동 제작 등 독창적 글로벌 콘텐츠의 확보</li> <li>&gt; 잠재력과 역량 갖춘 글로벌 인재의 적극 영입 및 육성</li> </ul> </li> <li>• 적극적인 투자 및 상생 도전 창조 의 기업 문화를 구현하고자 함</li> <li>• 광고수익 이외 콘텐츠 유통, 부가사업 등 신규 사업모델 개발 주력하여 개국 5년차인 2015년에 영업이익 흑자전환 시현(435억)</li> <li>• 방송의 공정성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등을 운영</li> <li>• CUN의 책임자 및 편성책임자는 비전 및 목표 달성에 적합한 철학과 역량을 갖고 있음</li> </ul>

제5장. 재정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다주주로 참여하는 태광산업주식회사는 최근 3개년 부채비율 평균이 16.4%로써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li> <li>• 또한, 태광산업은 2009년 약 3,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말 기준 1,350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종편사업진출과 관련 충분한 출자여력을 보유하고 있음</li> </ul>
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시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2011년 10월 시험방송, 12월 5일 본방송을 목표로 시설 구축</li> <li>&gt; 2015년까지의 방송시설 총 투자금액 : 163,564,280 천원</li> <li>&gt; 방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로 본사 (사무, 보도제작)</li> <li>- 파주센터 (교양·오락·드라마)</li> <li>- 천호센터 (공개홀)</li> </ul> </li> </ul> </li> <li>• 방송시설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t; 지역미디어창작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민들의 콘텐츠 창작 지원</li> <li>&gt; 최신방송기술을 적용한 33.3%의 국산 장비를 활용 시설 설계, 구축</li> <li>&gt; Full HD 방송 및 환경친화적인 시스템 구축</li> <li>&gt; 3D TV 등 실감형 영상 개발을 위한 교육·제작 시설 구축</li> </ul> </li> </ul>
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p>&lt;방송발전 출연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억원의 방송발전기금 일시 출현</li> <li>• 사회공헌위원회의 구성 및 CUN방송문화예술재단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문화행사 및 학술연구에 매년 20억 원 지원</li> </ul> <p>&lt;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N은 1,312억원을 방송시설 구축에 투자, 그 중 국산 방송장비 및 시설 사용률은 33.3% 로서 국내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에 기여</li> <li>• 3D 제작·교육에 77억원의 투자 및 N-스크린, 4세대방송, 데이터 방송에 5년간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기여</li> <li>• 방송개국시점에 875명의 인력을 고용, 비정규직 비율을 2011년 20.5%에서 2015년에 6.4%까지 낮춤</li> <li>•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추구</li> <li>• PP사업자와 공동의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프로그램 유통지원</li> </ul> <p>&lt;콘텐츠 산업육성 지원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N은 외주제작육성펀드를 통해 외주제작비 100% 및 방송시설 개방·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총 300억원의 펀드 투자)</li> <li>• 공정한 저작권 배분,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유지, 중소 PP의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스튜디오 및 방송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해 투자 부담 경감 및 콘텐츠 품질 향상에 지원</li> </ul>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 신청법인명 : (가칭) 주식회사 씨에스티브이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p>1. 대표자 성 명 : 오지철 (1949.12.30) 학력·경력 :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 박사,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문화관광부 차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별보좌관, 한국관광공사 사장</p> <p>2. 편성책임자 성 명 : 장유태 (1949.4.20) 학력·경력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KBS 뉴스기획부장, KBS 일요스페셜 CP KBS TV 1국 국장,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life) 방송운용본부장,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추진위원, KBS 제작본부장, KBS 편성본부장</p> <p>3. 최대주주 : (주)조선일보사</p>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 공정성 실현계획	<p>1.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시청자에게 유익한 개방형 편성</li> <li>• 공익 프로그램벨트 고정 편성 및 정기적인 공익 캠페인</li> <li>•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전국 문화센터와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li> <li>• 차상위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면제해 방송의 보편성 실현</li> <li>• 양방향 미디어의 활용,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방송본부 구축</li> <li>• 시청자 양방향 참여를 위한 웹과 애플리케이션인 'CSTVme' 제작</li> <li>• 수화방송, 화면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방송 시스템 마련</li> </ul> <p>2. 방송의 공익성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 시간 및 대상의 차별화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li> <li>• 유네스코와의 세계 유무형문화 디지털 복원 사업, 명장전, 문화재 복원 인력 양성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li> <li>• 세계적 스타들과 함께 남북 화합을 기원하는 'DMZ 평화콘서트' 개최</li> <li>• 찾아가는 미디어버스 운영 및 소수계층 전문 저널리스트제 도입, 소수 시청자가 방송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li> </ul> <p>3. 방송의 공정성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된 전문경영인 체제, 편성 규약 제정,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도입 등 방송의 독립성·보도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 마련</li> <li>• 외부 독립제작사와 대등한 관계 구축을 통한 상생 시스템</li> <li>• 외부의 중견 언론인을 '오디언스 에디터'로 선임해, 뉴스센터 내부에서 공정보도 지원 활동을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팩트체커(Fact Checker)제와 공정보도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방송의 진정성 회복</li> <li>• 국내외 100명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소셜 미디어 에디터를 신설해 공급자 위주의 일방향 여론이 아닌 양방향 여론수렴 시스템 마련</li> <li>•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는 해당 프로그램 사퇴 후 3년간 정치활동 금지</li> </ul>
<p>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 프로그램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공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②시청자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li> <li>• ③미디어와 콘텐츠의 융합 프로그램            ④아시아적 가치 공유 프로그램</li> </ul> </li> <li>2. 방송 프로그램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와 조화 : 종합편성 채널의 다양성과 보편성 구현</li> <li>• 최고의 시청자 :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최고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방송</li> </ul> </li> <li>3.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 새벽 5시, 국제뉴스로 시작으로 하는 줌인 뉴스 &lt;굿모닝 월드, 굿모닝 코리아, 굿모닝 광화문&gt;, 저녁 8시엔 혁신적 포맷의 메인뉴스, 열린 토론 프로 &lt;시사배틀 진보의 눈, 보수의 눈&gt; 등 다양한 시각의 보도 프로그램</li> <li>• 교양 : '재미있는 교양 &amp; 품격있는 문화'를 지향하며 한국의 수준을 끌어올릴 프로그램. 장애인과 새터민, 다문화 가정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li> <li>• 오락 : 신 한류(韓流) 붐을 일으킬 대형 드라마, 첨단 융합형 기술을 활용해 아시아의 국경을 넘나들 신개념 오락 프로그램</li> </ul> </li> <li>4. 시청자를 깜짝 놀라게 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의 마술사' 김수현 작가의 36부작 개국 특집 홈드라마</li> <li>• 아이리스를 능가하는 초대형 가상 통일드라마 &lt;한반도&gt;</li> <li>• 방송뉴스의 혁신 &lt;더 뉴스 8(The News 8)&gt;, &lt;더 인터뷰 10 (The Interview 10)&gt;</li> <li>• 여성 토크쇼... 따스한 카리스마 '박칼린의 헤라'</li> <li>• 100만명 참여 블록버스터 퀴즈 프로그램 '백만대군 퀴즈 7'</li> <li>• 아시아 7개국 공동 스타 발굴 프로그램 '수퍼 아시안(Super Asian)'</li> </ul> </li> <li>5. 국내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만듭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빵왕 김탁구'를 만든 삼화네트웍스, 윤스칼라·래몽래인 등 50개 프로덕션</li> <li>•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을 공동개최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li> <li>• 국회방송·CU미디어·리얼TV·KTV 등 31개 PP</li> <li>• 이화여대·KAIST 문화기술대학원 등 특성화 콘텐츠를 가진 15개 대학</li> <li>• 민음사·문학동네·열린책들 등 8개 출판사</li> </ul> </li> <li>6. 세계 25개국 54개 미디어사, 유네스코와 전략적 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0여개 국가 5억6천만 시청 가구를 보유한 MTV</li> </ul> </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3대 지상파 방송사인 ABC 방송</li> <li>• 年매출 4조5천억 원인 중남미 최대 방송사 Televisa</li> <li>• 중국 최고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SMG(상하이미디어그룹)</li> <li>• 그레이 아나토미·프렌즈 등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제작 총괄한 ICM</li> <li>• 자국내 최대 방송사인 MediaCorp(싱가포르), MNC(인도네시아)</li> </ul>
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열한 방송 경쟁시대를 대비한 경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의 차별화, 개방형 제작 시스템 구축</li> <li>• 국내 방송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 적극 진출</li> <li>• 국내외 자원의 유기적 결합으로 '상생 네트워크'</li> </ul> </li> <li>2.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송 경영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기준 매출 약 2천433억 원, 2013년 기준 영업이익 258억 원 달성</li> <li>• 6센터 2실 34팀, 총 367명의 조직 편제</li> <li>• 기획과 제작, 유통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오픈 제작시스템 구축</li> <li>•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한 경영 투명성 강화</li> </ul> </li> <li>3. 글로벌 미디어 기업 발전 비전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Imagica, 싱가포르의 MediaCorp와 '아워 아시아' 채널 출범</li> <li>• 아시아 6개국과 프로그램 교환 편성 추진</li> <li>• Dori Media, iTV 등 세계적 미디어사와 포맷 개발 협력</li> <li>• MTV 등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 통해 콘텐츠 유통</li> </ul> </li> </ol>
제5장 재정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주주인 (주)조선일보사의 신용평가 등급은 'AA'로 신문업계 최고</li> <li>• 지속력 있는 주주 간 계약으로 방송사업 의지 결집</li> </ul>
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평동과 광화문에 방송센터 설립</li> <li>• HD 시설/장비, 3D 전용 스튜디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li> <li>• 방송 시설/장비 초기 투자 금액 617억 원</li> </ul>
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6,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li> <li>• 5년간 외주업체에 5,347억 원을 투자해 콘텐츠 업체와 상생</li> <li>• 1000억원 규모의 보스톤 뉴젠 콘텐츠투자조합 구성해 콘텐츠 산업 지원</li> <li>• 콘텐츠진흥재단을 설립해 영업이익의 3%를 출연</li> <li>• 첨단융합기술 전문회사 CSi와 방송기술 지원 전문회사 'CS AnT' 설립</li> <li>• 101억 원을 투자, 원천기술을 보유한 20개 업체와 융합형 기술 등 개발</li> <li>• '디지털 다빈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인력 양성</li> <li>• 종편 허가시 방송발전기금 100억 원 출연, 고시비율에 따라 성실한 정기 출연</li> </ul>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 신청법인명: (가칭)주식회사 제이티비씨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p>가. 대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남선현(1948년 11월 8일 생)</li> <li>• 주요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BC(동양방송) 보도국</li> <li>-KBS 워싱턴특파원, 뉴욕특파원, 글로벌센터장, KBS미디어사장</li> <li>-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상임부회장, 한국언론학회 부회장</li> </ul> </li> </ul> <p>나. 편성책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김영신(1955년 3월 25일 생)</li> <li>• 주요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BS 편성기획 부주간, 편성기획팀장, 대전방송총국장, 정책기획센터장</li> </ul> </li> </ul> <p>다. 주주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중앙미디어네트워크 등 111개사</li> </ul>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	<p>가. 방송사업의 비전 및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 : 아시아를 대표하는 방송</li> <li>• 10대 목표 : 조화로운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 증진 및 보호, 방송산업 활성화, 디지털 융합방송 선도, 녹색성장 기여, 통일 및 평화공존, 공정방송 구현, 시청자 권익 증대, 지역 및 문화 발전, 글로벌화 및 국격 향상</li> </ul> <p>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책임 : 개국 시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방송 100% 실시. 디지털 전환 시청자지원센터 설치, 재외국민 참정권 강화 등</li> <li>• 공정성 : 국내 최대(266쪽) 방송 매뉴얼북 제작. 변호인자문단·의료단 운영,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프로그램 편성, 팩트체커를 통한 사전 공정성 확보 등</li> <li>• 공익성 : 막말 방송인 3진 아웃제, 장애인 고용 쿼터제, 융합미디어를 활용한 재난방송, 지역미디어 지원을 위한 '지역 르네상스 계획' 수립 등</li> </ul> <p>다.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 기여: 최근 3년간 465건, 233억7300만원</li> <li>• 방송사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통합사회공헌센터 설립</li> <li>•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국제기구(UNGC) 가입, 사회공헌백서 발간, 2020년까지 총 1만6300명 고용 효과 창출</li> <li>• 지역제작사의 콘텐츠 적극 발굴 및 유통 활성화, 지역미디어 종사자 교육과 인재채용 지역 배려제</li> <li>• 백상예술대상 등으로 한류 문화 진흥. 유네스코와 함께 '1지자체 1문화재 운동'</li> </ul>

구분	주요 내용
제3장.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p>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목표 : 시청자 중심의 글로벌 스마트 미디어</li> <li>• 폭스TV와 드라마 ‘사이퍼(Cipher)’, BBC와 드라마 ‘화성에서 생긴 일(Life on Mars)’ 공동제작 등으로 글로벌 역량 축적</li> <li>• 보도 23.7%, 교양 44.7%, 오락 31.5%로 균형 잡힌 편성</li> <li>• 메인 뉴스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통해 오류 발생 시 즉각 정정</li> <li>•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등 교양과 오락의 벽을 허무는 공익적 예능 집중 배치</li> <li>•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120분 메가시리즈, 밤 10시에 시작하는 메인 뉴스</li> </ul> <p>나.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Mnet의 교양 및 오락 분야의 다양한 전문채널(Q채널, J골프, 카툰네트워크)과 드라마 제작사(드라마하우스 ‘공부의 신’ ‘바람의 화원’ 등) 운영 실적</li> <li>• 높은 외주제작 비율(2012년 60%), 국내 최대의 연간 외주제작비(1564억원)</li> <li>• 독립제작사, 케이블PP 등의 우수 콘텐츠 구매를 통한 동반성장 추구</li> <li>• 신인작가 등의 아이디어를 킬러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창의성 발현 시스템 ‘콜럼버스 플랜’ 시행</li> </ul> <p>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외주제작 비율, 블록 단위의 외주 발주, 다년 계약제, 협력제작사 4단계 육성 모델 등으로 방송산업 선순환 기여</li> <li>• 제작비 투자 지분에 따라 저작권 분배, 외주제작사 선정 과정의 투명화 강화</li> <li>• CNN, 텔레비아사히, BBC와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 아시아 최고 뉴스(보도)와 해외채널 진출(콘텐츠) 협력 진행</li> <li>• 3분 요약드라마, 90초 뉴스 등 뉴디바이스 유통에 적합한 ‘마이크로 콘텐츠’ 개발</li> </ul>
제4장. 경영계획	<p>가. 사업 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까지 가구시청률 3.9% 실현</li> <li>• 광고상품 차별화와 단가 합리화로 2015년까지 광고매출 4000억원 달성, 2012년까지 PP·IPTV·SO 등 폐쇄형 플랫폼 유통망 구축 후 개방형 플랫폼 진출</li> <li>•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계열인 설&amp;컴퍼니(뮤지컬), 씨너스(극장), 중앙m&amp;b(잡지), joinsMSN.com(인터넷) 등을 통한 킬러 콘텐츠 상품화 사업 전개</li> <li>• 해외 채널 진출과 현지 제작 활성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해외 매출 1150억원 (총매출 15%) 달성</li> </ul> <p>나.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및 방통융합을 전담할 ‘방통융합실 및 글로벌 전략실’을 CEO 직속으로 운영</li> <li>• 4본부·3실·1센터·8국·4부문·42개 팀으로 사업모델 구현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li> <li>• 인력 구성은 외부 총원 60%, 자체 인력 30%, 신입 채용(인턴십 활용 등) 10%</li> </ul> <p>다. 자본 조달 및 운영 계획 : 초기에 충분한 납입자본금 투입 등</p> <p>라. 사업성 분석 :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 발생</p> <p>마. 경영의 투명성·효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선진 지주회사 체제 구축</li> <li>• 사외이사로 이사회 과반수 구성,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3 이상</li> <li>• 소액주주 권리 보장, 경영정보 신속·정확 공시, 법인과 이해관계자의 신용거래 제한</li> <li>• 콘텐츠 생산과 자본 운영의 균형관리로 경영 효율화 추구</li> </ul>

구분	주요 내용
제5장. 재정적 능력	<p>가. 주요 주주의 재정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TBC의 주요주주는 재무적으로 건실해 과거 4년간 우수한 경영성과를 낸 기업임</li> <li>• 주요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른 주요 재무지표(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가중평균 수치는, 2009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의 14개 대표 업종 평균보다 높음</li> </ul> <p>나. 주요 주주의 출자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주주들의 자기자본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 JTBC의 초기 자본금 납부에 충분한 수준임</li> </ul> <p>다. 주요 주주의 신용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주주 중 6개 기업이 A-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보유</li> </ul>
제6장. 방송시설 설치 계획	<p>가. 방송시설 설치·운용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전략 : 4세대 방송시설 구현과 방통융합 기술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기 : 기존 중앙일보 사옥 및 외부 스튜디오 활용 제작(2011~2012년)</li> <li>- 성장기 : 상암 제작센터 완공 및 입주. 제작시설 최적화(2013~2015년)</li> <li>- 도약기 : 제작시설 고도화(2015~2020년)</li> </ul> </li> <li>• 방송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계획 : 2015년까지 845억원(방송시설 612억원, 방송기술 233억원) 투입</li> <li>- 방송사옥 : 중앙일보 사옥(총 8개 층) 및 상암 제작센터(상암동 DMC) 활용</li> <li>- 제작시설 : Full HD 방송 및 3D 방송시설 설치</li> <li>- 송출시설 : 기존 중앙방송 채널과 통합 시스템 구현,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구현</li> </ul> </li> </ul> <p>나.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Gbps급인 안정적 네트워크로 테이프 없는 녹색방송 지향</li> <li>• 국책연구기관의 미디어서비스 플랫폼 도입으로 한국형 융합 인프라 구축</li> <li>• 2015년까지 4G방송, 융합기술에 총투자의 28%(233억원) 선제적 투자</li> </ul>
제7장.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p>가. 방송 발전 기여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시설 국산화율 31% 달성, 국산 방송시설에 5년간 197억원 투자</li> <li>• 2020년까지 100억원 투자 (2015년까지 스마트TV, 양방향 인터페이스 등 핵심 과제에 50억원 우선 지원) 등 방송기술 발전에 적극 지원</li> <li>• 국내 최대 방송인력 사관학교 ‘중앙 융합미디어 아카데미Net’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까지 총 100억원 투자해 5년간 6050명의 방송 전문인력 육성</li> <li>- 전국 대학,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등과 연계한 협력식 교육</li> </ul> </li> <li>• SO·지역독립제작사와 협력해 지역 콘텐츠 발굴, 지역제작사 참여 극대화</li> <li>• 케이블PP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작 역량이 부족한 PP 지원</li> </ul> <p>나.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일반 제작사 등에 연간 60억원 규모의 제작비 지원</li> <li>• 600억원 규모의 4대 콘텐츠펀드 운용, 외주제작사의 안정적 재원 확보 지원</li> <li>• JTBC문화재단 설립, 매년 영업이익의 3%씩 사회 환원</li> </ul> <p>다. 출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내 100억원 출연</li> </ul>

# 시청자의견청취용 요약문

□ 신청법인명 : (가칭) 주식회사 굿 뉴스

**제 1 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 (주) 굿 뉴스는 '시청자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뉴스 채널'을 만듭니다
  - 뉴스·시사 방송(CBS), 모바일 방통융합형기업(옵니텔), 지역 및 해외 기반 기업들이 대한민국 뉴스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주) 굿 뉴스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 (주) 굿 뉴스는 대표이사(김관상(59):동양방송, KBS 기자, YTN 보도국장(02~03), 現평택대 교수)와 편성책임자(박용수(54) :대전CBS 보도국장, CBS TV본부장, 現CBS상무)를 뉴스제작 방송전문인으로 구성했습니다.
- ▶ 준비된 뉴스 사업자 CBS가 참여합니다
  - (주) 굿 뉴스의 최대주주는 56년의 방송역사를 가진 CBS입니다. CBS는 전국 14개 네트워크 2백명의 기자가 공정보도의 기치 아래 라디오, 케이블, 위성,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일일 7백건의 기사와 동영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방송의 공적책임 · 공익성 · 공정성 실현계획**

- ▶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뉴스 채널이 되겠습니다
  - 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수화통역, 자막, 화면 해설 방송 강화
  - 장애인, 이주민 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비중을 10.9%(2011)에서 15.8%(2015)로 확대
- ▶ 어린이 청소년도 함께 즐기는 클린 뉴스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시사 뉴스 프로그램을 전체 대비 4% 이상 편성
  - 유해정보 사전경고제를 통해 뉴스의 내용이 청소년 시청에 부적절할 경우엔 미리 고지
-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10% 이상 편성합니다
- ▶ 시청자위원회를 획기적으로 강화 합니다
  - 방송 공정성 판단, 불만 처리, 평가 프로그램 제작을 시청자 위원회가 일원화해 최종 관리
  - 시청자국 조직을 독자적으로 뒤서 시청자 권익 보호, 시청자 참여지원 업무를 특화
- ▶ 시청자의 불만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365일 24시간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newsON 365> 시스템의 구축
  - <newsON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접수, 심의, 결과 확정 등 중요시기별로 당사자에게 통보
- ▶ 시청자와의 약속은 수치로 만들어 이행 여부를 평가 받겠습니다
  - 심층뉴스 25% 소외계층 대상 뉴스 10% 이상 편성, 수익의 사회 환원은 매출액의 5% 등
- ▶ 채널의 공익성을 고려해 무료시청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VOD 무료 서비스 및 위성, IPTV, DMB, 모바일 등 다양한 시청 기회 제공
- ▶ 프라임타임 뉴스 후 공익광고, 캠페인을 편성해, 수익금을 공익 목적에 쓰겠습니다
- ▶ 불편부당한 보도로 얻어지는 시청자의 신뢰가 newsON의 자부심입니다
  -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통한 내외부 감시 체계 구축
  -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모니터
  - 공정성 특위 논의 결과 공정성 침해로 판정되면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 보도 시행
- ▶ newsON 프로그램의 91.7%를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겠습니다
  - 소수자 배려, 저출산 고통해 해결, 과학 및 문화 진흥, 사회적 의제 설정 프로그램 편성
- ▶ 재난방송을 차별화해 '안전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 일기예보 시간을 활용한 생활 안전 정보 편성 •방재 관련 프로그램 편성
  - 인터넷 재난, 신종 전염병까지 대비한 세밀한 매뉴얼 구축으로 재난 대응체제 구축
- ▶ 뉴스 언어를 순화해 우리말 바로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조어에 대한 '우리말 제안 운동' 실시 •우리말 바로쓰기 독자 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에 출연하는 제작진과 출연진에 대한 우리말 교육 강화



- ▶ 방송 제작의 경험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시청자의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는 '시민학교' 개설
  - 뉴스 포맷 개발 및 인력 육성을 위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
  - 직·간접 고용과 연관산업 발전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 지역 균형 발전과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별 현안을 살피는 기획 취재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지역에 특화된 관광(축제), 교육, 경제, 의료 정보 전달
- ▶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문광부 선정 <한국의 상징 100>에 스토리를 보강해 영상물 제작, 자료화 • 시청자와 공유
  - 한국예술단체총연합과 함께 2011년부터 순수예술 10대 분야 신인을 선정하는 행사 개최

### 제 3 장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

- ▶ 시청자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 정시뉴스 매시 30분대 「뉴스룸브리핑」 편성, 속보 처리 • 편성 정시성 준수 • 현장 중심 보도
- ▶ 삶과 밀착된 생활 속의 뉴스를 전합니다
  - 건강, 교육, 문화, 등의 특화뉴스 • 지역 밀착형 네트워크 뉴스 • 재테크 경제 정보, 생활경제뉴스
  - 과학 IT 관련 뉴스 • 여행 레저 문화 정보 • 생활정보를 총괄한 주말 뉴스 편성
- ▶ 알고 싶은 뉴스를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주요뉴스는 발생 속보 외에도 배경, 전망 등 다양한 내용을 보강 취재해서 전달
  - 전문가 참여 시사 토론 프로그램으로 이슈 이해도 제고
  - 시청자의 관심과 문제제기에 바탕을 둔 의제 설정 보도
- ▶ 시청자 참여 뉴스를 전면화 하겠습니다
  - 영상교육을 이수한 시민기자(N포터) 직접 제작물, UCC를 활용한 프로그램 편성
  - 모든 뉴스와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의견 실시간 반영
  - 제보, 출연, 의견, 여론조사 참여, 평가 참여 등 시청자 참여 방식 다양화
- ▶ newsON에서만 볼 수 있는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 플래시,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뉴스 편성
  - 보도국 소셜네트워크팀을 통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 편성
  -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제안을 프로그램 편성에 반영하는 프리 존(Free zone) 설정
- ▶ newsON이 만드는 뉴스는 다릅니다
  - 매 시간 단위로 같은 뉴스를 반복해 편성하는 휠뉴스 편성 지양
  - 전체 발생 뉴스 20% 정도의 주요 이슈에 방송 시간의 80% 할애 방식으로 심층성 강화
- ▶ 속보와 특보는 탄력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 주요 사건 발생시 속보와 특보 편성을 통한 뉴스 전달
- ▶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 방송하겠습니다
  - 자체제작에 주력하되 외부 제작사나 국제 협력을 통해 확보한 HD급 시사 다큐멘터리도 방송
- ▶ newsON 광고 편성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 시청흐름 존중 • 대부업 광고 편성 자율적 금지 • 어린이 청소년 시간대 패스트푸드 광고 금지
- ▶ newsON이 전하면 국제뉴스도 달라집니다
  - 글로벌한 인물과의 인터뷰 프로그램 편성으로 국제뉴스의 다양성 제고
  - 아시아권 공영방송 보도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품격 높은 공동기획물 제작 협력
  -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힘을 세계에 알리는 보도 채널의 역할 강화
- ▶ 글로벌 비전을 갖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제협력사 특파원 대형 체제 및 오지 파송 NGO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 영미권 방송사 외에도 유럽 중동 아시아 뉴스 협력 채널과의 협력 관계 구축, 다양성 제고



## 제 4 장 경영계획 및 전략

- ▶ 사업성을 높여 뉴스의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 CBS의 인력, 시설,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정적 출범으로 보도의 품질 확보
  - 사업개시 4년차인 2014년 당기순이익 실현, 안정적 기반을 통해 더 질 높은 보도 강화
- ▶ 아시아 No 1 뉴스 채널이 되겠습니다
  - 국제한인방송망, 아리랑TV위성 협력, 위성 임대로 해외에서도 newsON 시청 기회 제공
  -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해외 방송사와의 공동기획, 공동제작 활성화
    - 유로뉴스, 링크TV, 알자지라, 채널뉴스아시아, 로이터, 신화통신, APTN, 도이체벨레, VOA



- Google YouTube 독자 채널 구축으로 newsON의 우수 콘텐츠를 국내외에 보급
- 전문PP별 킬러콘텐츠를 모은 슈퍼스테이션 채널로 외국에 본격적 채널 런칭
- ▶ 아시아의 눈으로 세계를! 한국의 눈으로 아시아를!
  - 아시아 각국의 협력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뉴스를 한국어로 시청
  - newsON 뉴스의 아시아 각국 전파 • 아시아 협력 제작사간 공동기획, 제작 강화
- ▶ 글로벌 수준의 보도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 방송직군에 대한 전문교육의 획기적 강화 (1인당 교육투자비 YTN의 190배)
  - 관리자 승진 대신 전문기자로 일할 수 있도록 방송 직군 내 전문가 트랙 마련
  - 시청자 서비스 강화, 고품격 뉴스 제작, 유통 다각화를 염두에 둔 전문 조직 운영

## 제 5 장 재정적 능력

- ▶ 최적의 투자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 2015년까지 연평균 85억 제작비 투자로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에 주력
- ▶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이사회의 1/3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경영 투명성 제고
  - 주주와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신속, 정확, 투명한 공시로 신뢰 확보

## 제 6 장 방송시설 설치계획

- ▶ 질 높은 방송을 위한 최적의 기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파일 기반 디지털 체제를 통한 제작 송출 시스템으로 HD 화질의 시청자 서비스 강화
  -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도록 자동 송출 시스템 구축
    - TV, 위성, DMB, IPTV,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신문, 라디오
  - 뉴스의 현장에 접근해 최적의 뉴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기술 완비
  -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첨단방송 기술 개발 연구로 질 높은 뉴스 생산 보장

## 제 7 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 방송 발전에 기여하는 newsON이 되겠습니다
  - 산학협력, 시민 참여를 통해 기획력을 갖춘 인재의 조기 육성 및 선발 시스템 가동
  - 지역언론, 전문PP, 독립제작사와의 공동제작 활성화, 협력 모델 구축으로 콘텐츠 다양성 강화
- ▶ 콘텐츠는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 영상 콘텐츠를 일반인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 아카이브 구축
  -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등 콘텐츠 가치 제고 사업에 우선 투자
  - 어린이, 해외 파견 NGO 자원봉사자 대상 미디어, 영상 취재 교육 후 뉴스원으로 활용

##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

□ 신청법인명 : (가칭)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보도채널(MTNews)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p>MTNews의 최대주주인 머니투데이는 1999년 국내 최초로 온라인 실시간 뉴스서비스를 시작한 뉴미디어 1호 기업입니다. 2001년 경제신문 '머니투데이'를 창간함으로써 '온→오프 통합 미디어'라는 새로운 뉴스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시켜 국내는 물론 세계 언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p> <p>2004년엔 국내 첫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인 '스타뉴스'를, 2007년엔 신개념의 프로페셔널 기업금융 정보서비스인 '더벨'을, 2008년엔 케이블 경제채널인 머니투데이방송(MTN)을 각각 선보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해왔습니다. 머니투데이 관계사 구성원은 MTNews 자본금 600억원중 지분 2.01% 규모에 해당되는 자금(12억500만원)을 자발적으로 출자할 정도로 참여 및 주인 의식이 높습니다.</p>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 정성 실현계획	<p>MTNews는 '사실 앞에 겸손한 방송 실현'을 보도채널의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정확한 보도를 하고 시청자와 취재원에 균립하지 않는 보도전문방송사업자로 새로운 미디어문화를 가꿔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을 생각하는 방송 △더불어 함께 하는 방송 △유익한 방송 등을 3대 이념으로, △시청자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 △국민경제 및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 등을 2대 목적으로 설정했습니다.</p> <p>MTNews는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이 언론의 가장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해마다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편성불간섭 원칙'을 직접 공표하는 등 세부적인 제도들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막 사과방송'과 같은 징계를 받을 경우, 단순한 지막처리를 넘어 대표이사나 편성책임자가 직접 방송에 나와 사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방송편성규약에 명문화했습니다.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프로그램 진행자나 통신원의 역할을 맡기는 등 사회적 소수자 계층에게 다양한 방송제작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마다 지방대학생 '멀티 저널리스트(MT)'를 최소 5명씩 채용해 비수도권 젊은이들에게 작은 규모지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p> <p>공익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최소한의 비중'보다 2배 높게 배정하는 등 방송사업의 공적 책임이 갖는 무게를 깊이 명심하겠습니다.</p> <p>MTNews는 법정단체인 시청자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공모절차를 통해 위원들을 선정하는 등 시청자들의 반론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p> <p>총선과 대선 등 커다란 선거를 치를 때에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거방송을 기획하겠습니다.</p> <p>MTNews의 최대주주인 머니투데이는 울릉도에서 열린 첫 오케스트라 공연인 '울릉도 음악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지역적·사회적·문화적으로 다양한 기여활동을 거듭대로 전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독창이면서도 다양한 기여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p> <p>창의적인 대학생들이 나서서 중소기업의 광고를 제작해주면 이를 방송에서 무상으로 방영해주는 광고기부, 주식 기부 장학사업인 행복한주주 장학회, 시청자 참여 기부 프로그램인 금요일의 점심을 생방송으로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사회기여활동을 펼칠 것입니다.</p>

구 분	주요 내용
<p>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p>	<p>MTNews는 온 가족이 시청 가능한 보도방송을 지향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보도내용이 유사범죄를 유발시키거나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엄격한 편성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도채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사저널리즘에 입각해 심층취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생 보도채널 이미지에 맞게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한국 시리즈'같은 기획다큐와 경제뉴스와 각종 투자 정보를 담은 '투데이 이코노미', 국내 최초 휴먼뉴스를 표방하는 '휴먼뉴스36.5', 지역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도전 슈퍼스타V', 꿈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적원정대와 시청자가 함께 7일간 하루 한 끼를 굶고 그 시간동안 특별한 봉사의 시간을 갖는 '이로운TV 기적' 등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p> <p>△사회 통합 지향의 따뜻한 방송, △참여·개방·공유의 융합 콘텐츠, △생활밀착형 유익한 뉴스가 MTNews 프로그램 편성의 3대 기본 전략입니다.</p> <p>특히 사람에 초점을 맞춘 따뜻한 뉴스와 생활밀착형 경제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MTNews는 41개 법인 주주 중 1개 기업만을 제외한 모든 주주가 중소·중견기업일 정도로 중소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컨소시엄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p> <p>또 기존 보도채널의 단편적이고 정치 중심적인 뉴스에서 벗어나 심층취재를 강화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사회적·시대적 주제를 다루겠습니다.</p> <p>MTNews는 아울러 경영과 편성을 분리해,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자율편성심의중재위원회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보, 과장보도, 인격침해 논란 등 분쟁이 발생할 때는 사전 중재를 통해 반론 보도 등의 해결책을 스스로 마련하겠습니다.</p>
<p>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p>	<p>MTNews는 보도전문 채널로서 공적 책임은 물론, 효율적 경영을 통해 세계를 향하는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탄탄하게 갖추겠습니다.</p> <p>MTNews의 이 같은 경영목표는 기존 MIN의 이용자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MTNews는 1,233만 시청가구(2010년 9월말 기준 케이블TV 965만, 위성방송 268만)와 1440만 지상파 DMB 이용자 기반을 확보한 경제방송 MTN의 자산을 인수해 보도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IPTV와 위성DMB 등 다른 유료방송플랫폼으로 가입자 기반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각종 콘텐츠를 생산함에 있어서도 '웹+신문+방송+매거진'으로 이뤄진 머니투데이 미디어 간 융합으로 멀티 플랫폼을 위한 미래형 콘텐츠를 선보일 것입니다.</p> <p>MTNews는 보도채널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 발전 전략을 꾀할 것입니다. 1단계로 아시아 미디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 위해 AP, 블룸버그, 로이터 등 대표적 언론뿐만 아니라 아시아 현지 언론과 다양한 제휴를 체결했습니다.</p> <p>MTNews는 또 미래형 미디어 융합 기자들을 길러내겠습니다. 기자들이 '사실 앞에 겸손한 방송 실현'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멀티융합 보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진행합니다.</p>

구 분	주요 내용
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	<p>MINews는 신규 고용창출로 일자리창출에 동참하면서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조직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2010년에는 140명으로 출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채용 등을 통해 매년 20~30명의 인력을 증원할 것입니다. 2015년 연간 고용인력은 40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p> <p>MINews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적 책임 경영을 시행할 예정이며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소액주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액주주협의회' 구성을 지원하며, 신청법인과 구성주주간 부당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p>
제5장. 재정적 능력	<p>MINews 주요주주의 특징은 재무구조가 건실하다는 점입니다. 적잖은 언론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빚을 얻어 쓰며 생존해가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MINews의 최대주주인 머니투데이는 언론계에서 드물게 8년째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말 기준 부채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이밖에 다른 주요주주들의 재무구조도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p> <p>특히 공정성과 공익성을 갖춘 언론기관으로서 MINews가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주요주주의 재정적 안정성은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p> <p>MINews의 주요주주들은 사업자 승인 후 3년 내 재무적 수요가 발생하면 지분 비율에 맞춰 증자를 하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했습니다.</p>
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	<p>MINews는 MIN의 HD와 SD 설비를 인수하기 때문에 모든 방송시설을 풀 HD화하는 데도 투자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p> <p>향후 5년 동안 HD설비의 추가 구축 등에 17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MINews는 국내 방송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산 장비를 우선 구매할 계획이며 특히 산학 협력의 방송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방송 시스템의 경우 전 과정을 자동화해 방송 제작을 효율화하겠습니다. MIN에 구축된 오픈 스튜디오를 활용해 시청자들에게 방송 제작 현장을 공개함은 물론 오피스 스튜디오도 도입해 사무실에서 바로 방송이 이뤄지는 '열린 방송제작'을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기술변화에 대응해 스마트폰과 와이브로 등을 이용한 생중계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볍고 경제한 방송제작'의 새 지평도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자막과 수화 방송 등 소외계층을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p>
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p>MINews는 스마트TV 등 연구개발에 9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방송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기존 방송아카데미보다 문턱을 확 낮춘 'MINews 뉴미디어 아카데미'를 세워 방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p> <p>특히 비수도권 인력 양성을 위해 '지방순회 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p> <p>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까지 45억원을 투자하고(MINews 미래콘텐츠펀드), 장비 및 제작비 지원, 학술사업지원 등에 3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운영 원칙에 따라 그 절반을 콘텐츠산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 첫해 4% 정도로 예상되는 외주제작비율을 2015년 8%까지 끌어올려 외주제작사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p>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 신청법인명 : (가칭) 주식회사 서울뉴스

구분	주요내용																																																				
<b>제1장</b> 신청인에 관한 사항	1. 법인 개요 ■법인명: 주식회사 서울뉴스(The Seoul News Network-SNN) ■자본금: 551억원 ■주주 구성: 서울신문(주요주주, 지분 29.9%), 구성주주 74개 중소기업 (지분 70.1%) ■주요 주주 <table border="1" data-bbox="352 607 1406 696"> <thead> <tr> <th colspan="4">주요주주</th> <th>대표이사</th> </tr> </thead> <tbody> <tr> <td>회사명</td> <td>참여지분</td> <td>주요업종</td> <td>자산(2009)</td> <td rowspan="2">이동화</td> </tr> <tr> <td>(주)서울신문사</td> <td>29.9%</td> <td>신문·출판</td> <td>2077억원</td> </tr> </tbody> </table> 2. 대표자·편성책임자 <table border="1" data-bbox="352 757 1406 864"> <thead> <tr> <th>구분</th> <th>대표이사</th> <th>상임이사 겸 편성책임자</th> </tr> </thead> <tbody> <tr> <td>성명</td> <td>이동화</td> <td>송석형</td> </tr> <tr> <td>주요경력</td> <td>서울신문사 사장(現) 서울신문사 상무이사(96)</td> <td>SBS 보도본부장(이사, 94) 가천의과대학 영상정보대학원장(06)</td> </tr> </tbody> </table>	주요주주				대표이사	회사명	참여지분	주요업종	자산(2009)	이동화	(주)서울신문사	29.9%	신문·출판	2077억원	구분	대표이사	상임이사 겸 편성책임자	성명	이동화	송석형	주요경력	서울신문사 사장(現) 서울신문사 상무이사(96)	SBS 보도본부장(이사, 94) 가천의과대학 영상정보대학원장(06)																													
주요주주				대표이사																																																	
회사명	참여지분	주요업종	자산(2009)	이동화																																																	
(주)서울신문사	29.9%	신문·출판	2077억원																																																		
구분	대표이사	상임이사 겸 편성책임자																																																			
성명	이동화	송석형																																																			
주요경력	서울신문사 사장(現) 서울신문사 상무이사(96)	SBS 보도본부장(이사, 94) 가천의과대학 영상정보대학원장(06)																																																			
<b>제2장</b>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 공정성 실현계획	<table border="1" data-bbox="352 936 1422 1294"> <thead> <tr> <th colspan="2">실현방안</th> </tr> </thead> <tbody> <tr> <td>방송의 공적 책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소의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li> <li>'정책뉴스' 등 국가 정책 프로그램을 전진 배치,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li> <li>'지자체 뉴스정보' 등 서울신문의 강점인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주요 시간대에 배치</li> </ul> </td> </tr> <tr> <td>방송의 공정성 실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소액주주 보호 강화</li> <li>편성규약 제정, 편성 규약에 따라 방송편성위원회 운영</li> <li>'서울뉴스 외주제작 시행강령' 제정과 '외주조정위원회' 설치</li> </ul> </td> </tr> <tr> <td>방송의 공익성 실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편성</li> <li>효율적인 지역 프로그램, 고효율 고수익 프로그램 제작, 공공투자 공동 제작 활성화, 우수한 외주업체 프로그램 확대</li> <li>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자막 방송, 수화방송, 화면 해설방송 실시</li> </ul> </td> </tr> </tbody> </table>	실현방안		방송의 공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소의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li> <li>'정책뉴스' 등 국가 정책 프로그램을 전진 배치,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li> <li>'지자체 뉴스정보' 등 서울신문의 강점인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주요 시간대에 배치</li> </ul>	방송의 공정성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소액주주 보호 강화</li> <li>편성규약 제정, 편성 규약에 따라 방송편성위원회 운영</li> <li>'서울뉴스 외주제작 시행강령' 제정과 '외주조정위원회' 설치</li> </ul>	방송의 공익성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편성</li> <li>효율적인 지역 프로그램, 고효율 고수익 프로그램 제작, 공공투자 공동 제작 활성화, 우수한 외주업체 프로그램 확대</li> <li>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자막 방송, 수화방송, 화면 해설방송 실시</li> </ul>																																												
실현방안																																																					
방송의 공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소의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li> <li>'정책뉴스' 등 국가 정책 프로그램을 전진 배치,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li> <li>'지자체 뉴스정보' 등 서울신문의 강점인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주요 시간대에 배치</li> </ul>																																																				
방송의 공정성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소액주주 보호 강화</li> <li>편성규약 제정, 편성 규약에 따라 방송편성위원회 운영</li> <li>'서울뉴스 외주제작 시행강령' 제정과 '외주조정위원회' 설치</li> </ul>																																																				
방송의 공익성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편성</li> <li>효율적인 지역 프로그램, 고효율 고수익 프로그램 제작, 공공투자 공동 제작 활성화, 우수한 외주업체 프로그램 확대</li> <li>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자막 방송, 수화방송, 화면 해설방송 실시</li> </ul>																																																				
<b>제3장</b>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table border="1" data-bbox="352 1352 1422 2047"> <thead> <tr> <th colspan="2">가.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기본 편성 방향</td> </tr> <tr>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뉴스는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편성·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li> <li>서울뉴스는 프로그램을 통한 방송 이념의 실현과 보도에 대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 목표를 설정</li> </ul> </td> </tr> <tr> <th>장르별 편성계획</th> <th>편성 목표·핵심전략</th> </tr> <tr> <td> <table border="1" data-bbox="395 1637 804 2024"> <thead> <tr> <th>분야</th> <th>장르</th> <th>편성비율</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보도</td> <td>뉴스</td> <td>62.0</td> <td rowspan="4">81.5%</td> </tr> <tr> <td>시사</td> <td>4.1</td> </tr> <tr> <td>기획보도</td> <td>10.7</td> </tr> <tr> <td>스포츠뉴스</td> <td>4.7</td> </tr> <tr> <td rowspan="5">교양</td> <td>공공정보</td> <td>8.3</td> <td rowspan="5">18.5%</td> </tr> <tr> <td>경제교육</td> <td>1.8</td> </tr> <tr> <td>어린이·청소년</td> <td>2.4</td> </tr> <tr> <td>소수·소의계층</td> <td>3.0</td> </tr> <tr> <td>시청자참여</td> <td>3.0</td> </tr> <tr> <td colspan="2">총계</td> <td colspan="2">100</td> </tr> </tbody> </table> </td> <td> <table border="1" data-bbox="879 1637 1378 2024"> <thead> <tr> <th>핵심전략</th> <th>세부전략</th> </tr> </thead> <tbody> <tr> <td>국격을 높이는 프로그램</td> <td>국격을 상승시키는 인적, 사회적 자원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형 프로그램 개발·편성</td> </tr> <tr> <td>지자체를 위한 프로그램</td> <td>각 지자체별 현안·문제점을 알기 쉽게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문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td> </tr> <tr> <td>소수·소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td> <td>소수·소의계층(장애인·빈곤층·다문화 등)을 위한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의 지속적 편성</td> </tr> <tr> <td>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td> <td>중소기업에 유익한 정보제공과 함께 우수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다양한 장치마련</td> </tr> <tr> <td>미디어 융합형 프로그램</td> <td>변화하는 미디어 기술에 대응한 인터랙티브형 쌍방향 프로그램 개발</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가.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 기본 편성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뉴스는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편성·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li> <li>서울뉴스는 프로그램을 통한 방송 이념의 실현과 보도에 대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 목표를 설정</li> </ul>		장르별 편성계획	편성 목표·핵심전략	<table border="1" data-bbox="395 1637 804 2024"> <thead> <tr> <th>분야</th> <th>장르</th> <th>편성비율</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보도</td> <td>뉴스</td> <td>62.0</td> <td rowspan="4">81.5%</td> </tr> <tr> <td>시사</td> <td>4.1</td> </tr> <tr> <td>기획보도</td> <td>10.7</td> </tr> <tr> <td>스포츠뉴스</td> <td>4.7</td> </tr> <tr> <td rowspan="5">교양</td> <td>공공정보</td> <td>8.3</td> <td rowspan="5">18.5%</td> </tr> <tr> <td>경제교육</td> <td>1.8</td> </tr> <tr> <td>어린이·청소년</td> <td>2.4</td> </tr> <tr> <td>소수·소의계층</td> <td>3.0</td> </tr> <tr> <td>시청자참여</td> <td>3.0</td> </tr> <tr> <td colspan="2">총계</td> <td colspan="2">100</td> </tr> </tbody> </table>	분야	장르	편성비율		보도	뉴스	62.0	81.5%	시사	4.1	기획보도	10.7	스포츠뉴스	4.7	교양	공공정보	8.3	18.5%	경제교육	1.8	어린이·청소년	2.4	소수·소의계층	3.0	시청자참여	3.0	총계		100		<table border="1" data-bbox="879 1637 1378 2024"> <thead> <tr> <th>핵심전략</th> <th>세부전략</th> </tr> </thead> <tbody> <tr> <td>국격을 높이는 프로그램</td> <td>국격을 상승시키는 인적, 사회적 자원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형 프로그램 개발·편성</td> </tr> <tr> <td>지자체를 위한 프로그램</td> <td>각 지자체별 현안·문제점을 알기 쉽게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문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td> </tr> <tr> <td>소수·소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td> <td>소수·소의계층(장애인·빈곤층·다문화 등)을 위한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의 지속적 편성</td> </tr> <tr> <td>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td> <td>중소기업에 유익한 정보제공과 함께 우수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다양한 장치마련</td> </tr> <tr> <td>미디어 융합형 프로그램</td> <td>변화하는 미디어 기술에 대응한 인터랙티브형 쌍방향 프로그램 개발</td> </tr> </tbody> </table>	핵심전략	세부전략	국격을 높이는 프로그램	국격을 상승시키는 인적, 사회적 자원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형 프로그램 개발·편성	지자체를 위한 프로그램	각 지자체별 현안·문제점을 알기 쉽게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문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소수·소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소수·소의계층(장애인·빈곤층·다문화 등)을 위한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의 지속적 편성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중소기업에 유익한 정보제공과 함께 우수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다양한 장치마련	미디어 융합형 프로그램	변화하는 미디어 기술에 대응한 인터랙티브형 쌍방향 프로그램 개발
가.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 기본 편성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뉴스는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편성·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li> <li>서울뉴스는 프로그램을 통한 방송 이념의 실현과 보도에 대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 목표를 설정</li> </ul>																																																					
장르별 편성계획	편성 목표·핵심전략																																																				
<table border="1" data-bbox="395 1637 804 2024"> <thead> <tr> <th>분야</th> <th>장르</th> <th>편성비율</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보도</td> <td>뉴스</td> <td>62.0</td> <td rowspan="4">81.5%</td> </tr> <tr> <td>시사</td> <td>4.1</td> </tr> <tr> <td>기획보도</td> <td>10.7</td> </tr> <tr> <td>스포츠뉴스</td> <td>4.7</td> </tr> <tr> <td rowspan="5">교양</td> <td>공공정보</td> <td>8.3</td> <td rowspan="5">18.5%</td> </tr> <tr> <td>경제교육</td> <td>1.8</td> </tr> <tr> <td>어린이·청소년</td> <td>2.4</td> </tr> <tr> <td>소수·소의계층</td> <td>3.0</td> </tr> <tr> <td>시청자참여</td> <td>3.0</td> </tr> <tr> <td colspan="2">총계</td> <td colspan="2">100</td> </tr> </tbody> </table>	분야	장르	편성비율		보도	뉴스	62.0	81.5%	시사	4.1	기획보도	10.7	스포츠뉴스	4.7	교양	공공정보	8.3	18.5%	경제교육	1.8	어린이·청소년	2.4	소수·소의계층	3.0	시청자참여	3.0	총계		100		<table border="1" data-bbox="879 1637 1378 2024"> <thead> <tr> <th>핵심전략</th> <th>세부전략</th> </tr> </thead> <tbody> <tr> <td>국격을 높이는 프로그램</td> <td>국격을 상승시키는 인적, 사회적 자원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형 프로그램 개발·편성</td> </tr> <tr> <td>지자체를 위한 프로그램</td> <td>각 지자체별 현안·문제점을 알기 쉽게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문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td> </tr> <tr> <td>소수·소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td> <td>소수·소의계층(장애인·빈곤층·다문화 등)을 위한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의 지속적 편성</td> </tr> <tr> <td>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td> <td>중소기업에 유익한 정보제공과 함께 우수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다양한 장치마련</td> </tr> <tr> <td>미디어 융합형 프로그램</td> <td>변화하는 미디어 기술에 대응한 인터랙티브형 쌍방향 프로그램 개발</td> </tr> </tbody> </table>	핵심전략	세부전략	국격을 높이는 프로그램	국격을 상승시키는 인적, 사회적 자원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형 프로그램 개발·편성	지자체를 위한 프로그램	각 지자체별 현안·문제점을 알기 쉽게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문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소수·소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소수·소의계층(장애인·빈곤층·다문화 등)을 위한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의 지속적 편성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중소기업에 유익한 정보제공과 함께 우수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다양한 장치마련	미디어 융합형 프로그램	변화하는 미디어 기술에 대응한 인터랙티브형 쌍방향 프로그램 개발										
분야	장르	편성비율																																																			
보도	뉴스	62.0	81.5%																																																		
	시사	4.1																																																			
	기획보도	10.7																																																			
	스포츠뉴스	4.7																																																			
교양	공공정보	8.3	18.5%																																																		
	경제교육	1.8																																																			
	어린이·청소년	2.4																																																			
	소수·소의계층	3.0																																																			
	시청자참여	3.0																																																			
총계		100																																																			
핵심전략	세부전략																																																				
국격을 높이는 프로그램	국격을 상승시키는 인적, 사회적 자원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형 프로그램 개발·편성																																																				
지자체를 위한 프로그램	각 지자체별 현안·문제점을 알기 쉽게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문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소수·소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소수·소의계층(장애인·빈곤층·다문화 등)을 위한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의 지속적 편성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중소기업에 유익한 정보제공과 함께 우수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다양한 장치마련																																																				
미디어 융합형 프로그램	변화하는 미디어 기술에 대응한 인터랙티브형 쌍방향 프로그램 개발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소수·소외계층 프로그램 편성 계획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평가·직접참여·뉴스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인 방송 접근을 위한 자막방송, 화면해설 방송, 수화 방송 등 실시</li> <li>▶ 시민단체, 복지 단체, 자치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교육 대중화로 시청자 주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 마련</li> <li>▶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에 활용</li> <li>▶ 서울뉴스에서 촬영·편집장비 지원</li> </ul>												
공익 캠페인 편성 계획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편성 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11</td> <td>테마 '품격 높은 사회, 품격 높은 나라 [국격상승]'</td> </tr> <tr> <td>2012</td> <td>테마 '사랑의 울타리 [소수·소외계층]'</td> </tr> <tr> <td>2013</td> <td>테마 '지역 통합 대륙제 [지자체]'</td> </tr> <tr> <td>2014</td> <td>테마 '뛰어라 청년아 [청년실업]'</td> </tr> <tr> <td>2015</td> <td>테마 '오늘의 일터, 내일의 희망 [중소기업육성]'</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2011	테마 '품격 높은 사회, 품격 높은 나라 [국격상승]'	2012	테마 '사랑의 울타리 [소수·소외계층]'	2013	테마 '지역 통합 대륙제 [지자체]'	2014	테마 '뛰어라 청년아 [청년실업]'	2015	테마 '오늘의 일터, 내일의 희망 [중소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시청층의 채널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직접참여·현장취재형식 적극 활용</li> <li>▶ 청소년층에게 미디어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은 물론 실업극복이라는 주제를 국가정책과 연동하여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li> </ul>
구분	세부내용													
2011	테마 '품격 높은 사회, 품격 높은 나라 [국격상승]'													
2012	테마 '사랑의 울타리 [소수·소외계층]'													
2013	테마 '지역 통합 대륙제 [지자체]'													
2014	테마 '뛰어라 청년아 [청년실업]'													
2015	테마 '오늘의 일터, 내일의 희망 [중소기업육성]'													

◆ **편성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방안**

- ▶ 방송편성·제작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편성 규약 등 제도적 장치 마련(자체 편성강령·편성규약 마련)
- ▶ 내·외부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제작의 자율권과 권리 보장
- ▶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및 시청자 주권 실현을 지향

**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수급 계획**

- ▶ 서울뉴스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수급', '고효율 프로그램 제작', '공동투자·공동제작 활성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확대'를 방송 프로그램 수급의 4대 전략으로 설정함

제작원별 연간 수급비율 및 비용분석						방송제작 차별화 방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동력을 확보한 1인 생방송 시스템 도입으로 보도의 신속성 확보</li> <li>▶ 미디어 융합형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구매</li> <li>▶ 소수·소외계층, 지자체, 중소기업, 시청자 참여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li> <li>▶ 프로그램 다양성 및 경영 유연성 증대를 위한 외주제작비율의 점진적 확대</li> <li>▶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외주제작 시스템 구축</li> </ul>
자체제작비율 (%)	86.9	85.1	83.9	83.3	82.7	
외주제작비율 (%)	8.9	10.7	12.5	13.7	15.5	
구매제작비율 (%)	4.2	4.2	3.6	3	1.8	
연간제작비용 (억원)	24	103	104	115	122	

**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 **뉴미디어 플랫폼과 프로그램 제작·유통 협력 방안**

- ▶ 독립제작사, 비경쟁적 방송 플랫폼, 민간 자본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은 물론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미디어 융합형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시스템을 구축
- ▶ 공동 투자와 제작 능력을 갖춘 프로젝트 단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품질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제작시스템 구축

**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

**1. 목표 시청률 및 점유율**

2011년 개국 시 750만 가입가구를 확보, 0.13%의 시청률을 달성하고 2014년 전국 전체가입가구(CATV 1500만가구) 확보하여 0.3%에 근접 예상

**2. 핵심 경영전략**

- 1) 목표 :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
  - ① 가장 "빠른 방송" 도약으로 시청자 확보(▶CNN보다"단 1분"이라도 빠른 뉴스 전달)
  - ② 제작인력의 "1인 다역" 체제 확립(▶기자가 취재+편집+리포팅을 모두 수행)
  - ③ 퇴직한 방송전문 인력과 퇴직한 신문기자인력을 재교육 인력충원
  - ④ 전국 방송가입자 가시청 체제 확립(유료방송 플랫폼과 WIN-WIN전략으로 채널확보)
  - ⑤ 서울뉴스의 참여 주주사를 광고주로 적극 유치해 광고수익 극대화

제5장 재정적 능력	1. 신용평가 등급 ; BBB+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추이 (단위: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2009년</th> <th>2008년</th> <th>2007년</th> </tr> </thead> <tbody> <tr> <td>자산</td> <td>207,741</td> <td>209,240</td> <td>171,008</td> </tr> <tr> <td>부채</td> <td>144,690</td> <td>145,821</td> <td>155,797</td> </tr> <tr> <td>자기자본</td> <td>63,051</td> <td>63,419</td> <td>15,211</td> </tr> <tr> <td>당기순이익</td> <td>111</td> <td>(3,372)</td> <td>9,907</td> </tr> <tr> <td>자기자본비율순이익률</td> <td>0.17</td> <td>8.58</td> <td>119.23</td> </tr> <tr> <td>부채비율</td> <td>229.48</td> <td>229.93</td> <td>1024.25</td> </tr> <tr> <td>총자산증가율</td> <td>(0.72)</td> <td>22.36</td> <td>9.90</td> </tr> </tbody> </table>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자산	207,741	209,240	171,008	부채	144,690	145,821	155,797	자기자본	63,051	63,419	15,211	당기순이익	111	(3,372)	9,907	자기자본비율순이익률	0.17	8.58	119.23	부채비율	229.48	229.93	1024.25	총자산증가율	(0.72)	22.36	9.90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자산	207,741	209,240	171,008																													
	부채	144,690	145,821	155,797																													
	자기자본	63,051	63,419	15,211																													
	당기순이익	111	(3,372)	9,907																													
자기자본비율순이익률	0.17	8.58	119.23																														
부채비율	229.48	229.93	1024.25																														
총자산증가율	(0.72)	22.36	9.90																														
제6장 방송시설설 치계획	<b>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b>																																
	<p>◆ 방송시설 설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방송의 신속성 및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Network) 제작시스템 구축</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소재지</th> <td colspan="4">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3층</td> </tr> <tr> <th rowspan="2">내역 및 면적</th> <th>대지</th> <th>연 면 적</th> <th>준 공</th> <th>임차공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6728.6㎡</td> <td>59,240㎡</td> <td>1985년</td> <td>202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제작시설 구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 및 제작스튜디오, 주조정실, 편집시스템, 더빙실, 컨버팅실, 인제스트실, 중계차, CG실</li> </ul> </li> <li>▶ 방송제작시설 투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년도 (약 175억) : 방송제작시설(약 160억), 환경시설 (약 15억)</li> <li>- 년차별 투자 (4개년 약 14억) : 야외촬영장비, 편집설비, 1인생방송시스템(MLBS) 등</li> </ul> </li> </ul> <p>◆ 방송기술 활용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융합형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술적 연구 및 개발</li> <li>▶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 (스마트폰, 스마트TV, 1인생방송중계시스템, 3D, 울트라HD 등)</li> </ul>	소재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3층				내역 및 면적	대지	연 면 적	준 공	임차공간		6728.6㎡	59,240㎡	1985년	2023㎡																	
소재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3층																																
내역 및 면적	대지	연 면 적	준 공	임차공간																													
		6728.6㎡	59,240㎡	1985년	2023㎡																												
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b>1. 방송발전 기여방안</b>																																
	<table border="1"> <tr> <td>장비&amp;콘텐츠측면 미디어융합방송시대 선도</td> <td>- 시설·장비 국산화 비율 약20%,미디어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 사업 초기 HD콘텐츠 편성 및 100% HD장비로 세팅 - 1인 생방송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MLBS를 구축</td> </tr> <tr> <td>방송산업 발전 적극동참</td> <td>- 방송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 유료방송 플랫폼과 협력 세부계획수립 및 실천</td> </tr> <tr> <td>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td> <td>- 시청자가 만든 제보영상 편성 - 시청자 참여 "방송시설 구축 및 개방"</td> </tr> <tr> <td>방송수익의 사회환원</td> <td>- 사회공헌위원회 구성하여 통합관리 - 승인시 출연금 납부 (15억원) - 프라임 타임 공익광고 유치 수익 전액 사회 환원 - 자막·수화·화면해설프로그램 제작으로 - 서울미디어문화센터 설립 및 활용 등</td> </tr> </table>	장비&콘텐츠측면 미디어융합방송시대 선도	- 시설·장비 국산화 비율 약20%,미디어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 사업 초기 HD콘텐츠 편성 및 100% HD장비로 세팅 - 1인 생방송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MLBS를 구축	방송산업 발전 적극동참	- 방송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 유료방송 플랫폼과 협력 세부계획수립 및 실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 시청자가 만든 제보영상 편성 - 시청자 참여 "방송시설 구축 및 개방"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 사회공헌위원회 구성하여 통합관리 - 승인시 출연금 납부 (15억원) - 프라임 타임 공익광고 유치 수익 전액 사회 환원 - 자막·수화·화면해설프로그램 제작으로 - 서울미디어문화센터 설립 및 활용 등																								
	장비&콘텐츠측면 미디어융합방송시대 선도	- 시설·장비 국산화 비율 약20%,미디어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 사업 초기 HD콘텐츠 편성 및 100% HD장비로 세팅 - 1인 생방송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MLBS를 구축																															
	방송산업 발전 적극동참	- 방송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 유료방송 플랫폼과 협력 세부계획수립 및 실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 시청자가 만든 제보영상 편성 - 시청자 참여 "방송시설 구축 및 개방"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 사회공헌위원회 구성하여 통합관리 - 승인시 출연금 납부 (15억원) - 프라임 타임 공익광고 유치 수익 전액 사회 환원 - 자막·수화·화면해설프로그램 제작으로 - 서울미디어문화센터 설립 및 활용 등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 신청법인명 : (주)연합뉴스TV(가칭)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p>신청법인의 명칭은 (주)연합뉴스TV(가칭), 자본금 규모는 605억원. 대표이사는 박정찬, 편성책임자는 이기창.</p>
제2장.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공정성 실현계획	<p>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연합뉴스TV는 기존 뉴스채널과의 차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뉴스채널을 지향. '세계를 보는 창, 한국을 만나는 창'연합뉴스TV는 총 62명 해외 특파원과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취재망을 연합뉴스와 함께 가동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실현해 나갈 계획.</p> <p>아울러 연합뉴스와 연합인포맥스 등과 연계한 디지털 통합뉴스룸을 구축해 명실상부한 영상뉴스 아카이브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p> <p>연합뉴스TV는 폭넓은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글로벌 시민기자를 활용하는 한편, 아태 뉴스통신사기구(OANA) 41개 회원사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아시아 뉴스의 허브로 도약을 준비 중.</p> <p>연합뉴스TV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에 투철한 연합뉴스를 최대주주로 삼고 있으며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에 적극 참여할 예정.</p> <p>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자체 심의를 강화하는 등 소수 계층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사소한 시청자의 불만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시청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p>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p>연합뉴스TV는 ▲글로벌 뉴스채널을 지향하는 편성 ▲공익·공정한 보도채널로 신뢰받는 편성 ▲새로운 보도채널에 걸맞은 차별화된 편성 ▲개방과 참여로 시청자와 함께하는 편성을 기본방향으로 한국 중심의 아시아 대표 뉴스채널을 지향.</p> <p>연합뉴스TV는 국내 최대 해외 취재망을 바탕으로 2015년 이후 글로벌 채널 진출을 위한 '채널 플러스 전략'을 실시해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p> <p>연합뉴스TV의 편성은 보도 비율 평균 83%, 시사·교양 비율 평균 17%로 구성해 뉴스 외 다양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p> <p>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위원회·심의위원회·공정 보도위원회를 설치.</p> <p>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연합인포맥스와 함께 통합뉴스룸을 구축해 기사의 원소스 멀티유스를 구현하고 재외동포 언론과 지역언론, 아시아 각국의 제휴 언론사와 협조해 취재 범위를 넓힘.</p>

	<p>또한 분야별 전문기자를 확보해 기존 제작 관행을 탈피한 심층·전문 기사를 강화하고 국제와 지역뉴스, 북한뉴스를 차별화해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틈새를 노림.</p> <p>연합뉴스TV 기자는 현장 위주의 살아있는 영상과 주요 이슈의 배경과 전망을 분석하는 스토리텔링 기사로 기존 보도채널과 차별화된 뉴스를 시청자에게 전달.</p> <p>연합뉴스TV는 미디어 프런티어와 글로벌 시민기자 1,000명을 육성해 시청자 참여를 극대화한 뉴스와 프로그램 고정 편성.</p> <p>연합뉴스TV는 개국부터 TV와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N스크린 전략을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영상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p>
<p>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p>	<p>연합뉴스TV는 임원(3명)을 포함, 총 215명의 보도·제작·기술·경영인력으로 운영될 예정.</p> <p>62명의 특파원·통신원망과 국내 최대 550여 명의 취재진, 90여 개 해외 방송·뉴스통신사와의 제휴망을 보유한 연합뉴스와 통합뉴스룸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국내 최대 방송 취재망을 형성함으로써 전략적 비용 우위와 효율 우위를 선점한다는 계획.</p> <p>경영은 사외이사가 과반수인 이사회(7명)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p> <p>이사회 내부에는 감사·사외이사추천·내부거래 등을 감시할 사외이사 주도의 위원회를 두고 주주총회에는 집중·서면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소액주주권이 보호받는 모범적 투명 경영체제를 확립할 계획.</p> <p>연합뉴스와의 통합뉴스룸 운용과 함께 매년 경영진의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와 임직원 대상 성과연동형 연봉제 도입, 연구·개발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효율성 극대화도 달성할 방침.</p> <p>연합뉴스TV는 ▲타깃형 광고전략과 광고주 네트워크 확대 ▲2013년까지 전 유료TV 플랫폼 가입자의 가시청권 편입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제작·공급 등으로 시장에 조기 안착하는 경영전략을 준비하고 있음.</p> <p>이 같은 전략으로 2011년 10월 개국 뒤 2014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고 2015년에는 광고와 수신료 수입, 콘텐츠 판매 등으로 432억원의 매출과 5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p>
<p>제5장. 재정적 능력</p>	<p>최대주주 (주)연합뉴스의 2009년 기준 ①자기자본순이익률은 23.1% ②부채비율은 78.8% ③총자산증가율은 9.7%.</p> <p>최대주주 (주)연합뉴스의 신용등급은 AA-</p>

<p>제6장. 방송시설 설치계획</p>	<p>방송시설은 융합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최적의 시스템과 신속한 보도와 안정적 방송수행으로 녹색방송을 지향.</p> <p>주요시설로는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3실 외 종합편집실·NLE편집실·음향편집실·주조정실과 중계차를 보유할 계획.</p> <p>방송장비의 국산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초기 보도채널 설비의 국산화 비율은 21%에 달함.</p> <p>생방송 뉴스제작 경험이 풍부한 연합뉴스 인력과 다양한 모바일디바이스를 뉴스제작에 적극 활용.</p> <p>연합뉴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생중계 뉴스룸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에 있으며 양방향 다중포맷 데이터 디스플레이 시스템(DID), KTX·공항철도 객차방송 중계시스템, C&amp;M 송출용 양방향 데이터방송 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 중.</p> <p>오픈베이스 전략으로 연합뉴스 미디어랩, 디지털 미디어 R&amp;D포럼(가칭), 대학연구소, 국내 방송장비업체 등 다양한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방송문화 고도화와 방송장비 국산화 등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p>
<p>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p>	<p>'미디어 프런티어'(시민 기자.PD.VJ) 제도와 비영리 순수교육 프로그램 '방송아카데미' 운영으로 시청자 방송 참여 촉진 및 인력 육성.</p> <p>플랫폼.PP.IT업계.학계 등과 함께 '디지털미디어R&amp;D포럼'을 결성, 융합미디어시대 신(新) 방송기술 및 광고기법.수익모델 공동 연구.개발. 침체된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TV와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콘텐츠와 장비.인력을 교류하고, 디지털 케이블TV 전환에 적극 협력(2012~2013년 연 수신료 수입 8% 전환 자원 지원).</p> <p>IPTV 업계와는 양방향.N스크린.모바일 방송 등 뉴미디어 분야에서 공조. 위성방송.DMB 등 이외 플랫폼과도 이동방송.해외 송출.콘텐츠 분야에서 협력.</p> <p>콘텐츠 산업 육성 차원에서 타 보도채널에 비해 높은 콘텐츠 구매와 외주제작 비중을 유지하고, 지역신문.방송사를 포함한 타 매체 콘텐츠와 시청자 제작 콘텐츠를 적극 활용. 표준계약서 도입 등으로 투명한 외주제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개국 2년 후까지 '영상창고'(개방형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브)와 '영상장터'(개방형 디지털 콘텐츠 유통망) 시스템 구축.</p> <p>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방통위가 주도하는 방송콘텐츠 전문투자조합에 2012년 5억원을 출연하고, 연합미디어그룹의 해외특파원.제휴매체.동포네트워크를 활용, 해외 콘텐츠 판로를 알선. 재외동포 미디어.커뮤니티와 적극 콘텐츠를 교류하고 이를 활용한 재외동포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한민족 뉴스 허브'를 지향. 사업자 선정 시 15억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출연.</p>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 신청법인명 : (가칭) (주)HTV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 HTV(Herald TV)</li> <li>• 주주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영어미디어 헤럴드미디어(최대주주)</li> <li>- 20여개 중소기업, 해외한상 등 다양한 중소기업군</li> </ul> </li> <li>• 주주구성 원칙 : 공공성, 글로벌 경쟁력, 재무적 건전성</li> </ul>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 익성 실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실용 이념 견지를 통해 건전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의 조화 유도</li> <li>- 100만 주한외국인 통합 기여</li> <li>- 코리아헤럴드와 연계해 국내 뉴스를 정확하게 해외에 전달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li> </ul> </li> <li>•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와 경영 분리</li> <li>- 방송의 '책임성(accountability)' 추구</li> <li>- '3+1 시스템' : 법적 필수조직인 방송심의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이외에 공정보도 담당기구인 헤럴드트러스트와 미디어 교육기관인 헤럴드저널리즘스쿨 설치</li> </ul> </li> <li>• 공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탈북자 등 정착 이주민 지원</li> <li>- 해외자원봉사 등 청년 해외진출 도모</li> <li>- 매년 영업이익의 2% 기부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ISO 26000 준수</li> </ul> </li> </ul>

구분	주요 내용
<p>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개념 : 'News is Entertainment' &amp; 'Korea is World'</li> <li>• 목표 시청자 : 청년, 여성, 다문화가정</li> <li>• 실현 방안 : 소프트한 뉴스, 파격적 포맷, 다국어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차에 다국어 등 글로벌 프로그램 비율 26%, 5년차에 38%</li> <li>- 스탠딩 앵커제, 대표리포터제 등 다양한 뉴스포맷 시도</li> <li>- 시사, 대담, 교육, 다큐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목표 시청자층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다수의 연성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li> </ul> </li> </ul>
<p>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개념 : 'Media is Business'</li> <li>• 이사회 : 특정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이사회 결의는 특별결의로 하고,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해 투명경영 기반 마련</li> <li>• 경영 : 기업-미디어 컨소시엄(대기업 자본력 &amp; 언론사 콘텐츠)을 통해 대기업과 미디어의 1:1 융합이라는 미디어법 취지를 준수하고, 사업개시 4년차 흑자전환 등 글로벌미디어그룹으로의 빠른 도약을 도모</li> <li>•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 : 글로벌마케팅 능력과 재무지식을 갖춘 인사들을 공동대표이사에, 지상파 보도채널 지역민방 등을 두루 거친 방송전문가를 편성책임자에 선임</li> <li>- 기자직군 : 전체인력의 50% 이상을 글로벌 인재로 구성</li> <li>- 업계 최고의 교육투자 비율과 미디어 교육기관인 헤럴드저널리즘칼리지 설립</li> </ul> </li> </ul>

구분	주요 내용
<p>제5장. 재정적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조원대 우량자산의 주요주주와 5년 연속 흑자 헤럴드 미디어의 시너지</li> <li>• 헤럴드미디어(최대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기준 6년 연속 매출 성장,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기록</li> <li>- 컨소시엄 구성에서 지분 30%를 현금출자</li> </ul> </li> </ul>
<p>제6장. 방송시설 설치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출범 : 2011년 4월1일 시범방송, 2011년 7월1일 본방송 목표</li> <li>• 견실한 투자 : 2011년 140억원, 2012년 43억원, 2013년 15억원 등 3년 간 총 198억원</li> <li>• 특화 아이템 : 보도채널 최초로 터치스크린 부가정보시스템인 '싱키(Synki)' 서비스 구현</li> </ul>
<p>제7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발전기금 15억원 출연, 헤럴드저널리즘칼리지 설립을 통한 방송지식 나눔 등 실행</li> <li>• 독립기획사, 플랫폼 사업자, 일반투자자들이 공동출자하는 콘텐츠펀드 설립해 방송산업 구성원들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li> <li>• 산학협력 인턴 매년 80명 채용, 대학생 방송전문가 양성 등 콘텐츠 산업의 인재 양성에 기여</li> </ul>



## IV. 심사 및 선정



종편·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 총편 · 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 ① 총편 · 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 1.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 □ 심사위원회 주요 직무

-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적격심사, 신청법인 의견청취, 승인 조건 등 정책건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 심사위원회 회의

-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 안건은 심사위원장(심사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음

#### □ 적격심사 및 계량평가 소위원회

- 적격심사 및 계량평가 소위원회는 승인 적격여부 및 계량평가를 논의하고 의결안건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

### 2. 심사평가 방법

#### □ 공통사항

- (평가자료) 승인신청법인이 제출한 승인신청서류,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승인신청에 대한 시청자 의견 청취자료, 관계기관 의견 조희 자료, 신청법인 대상 의견청취 결과

- **(평가기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기본계획 및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한 세부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방법을 의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보도PP 심사 후, 종편PP 심사를 추진하고, 적격심사, 계량·비계량 평가, 신청법인 의견청취 등 평가 시 심사위원 전원이 참가하되, 심사위원장은 점수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 신청법인 의견청취

- **(일시 및 순서)** 보도PP '10.12.26(일) 09:00, 종편PP '10.12.29(수) 09:00에 실시하며, 보도 및 종편 분야로 나누어 추첨방식으로 결정
- **(신청법인 참석대상)** 대표자, 편성책임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또는 실사주) 참석, 관련 임원 및 실무자 등 배석 가능
- **(의견청취 방법)** 신청법인 모두발언, 질의·답변, 신청법인 마무리 발언 등 신청법인별로 1시간씩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신청법인에게 직접 질의하되 비대면 방식으로 함
- **(의견청취 주요 내용)** 사업목적 및 사업의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유기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관련된 기타 의문사항 등

## ② 종편·보도PP 보정신청서류 채택

- **(보도PP 보정 신청서류)** 보정 신청사항은 총 100건이며, 이중 68건은 기존 제출 서류의 수정사항, 32건은 부속서류 추가제출에 해당
  - 68건의 기존 제출 서류의 수정사항 중 7건은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심사자료로 채택하지 않음
  - 32건의 부속서류 추가제출은 모두 승인신청서류 접수 시 조건표에 명시된 것으로서, 심사자료로 모두 채택

- (종편PP 보정 신청서류) 보정 신청사항은 총 379건이며, 이중 169건은 기존 제출 서류의 수정사항, 210건은 부속서류 추가제출에 해당
- 169건의 기존 제출서류의 수정사항 중 32건은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심사자료로 채택하지 않음
- 210건의 부속서류 추가제출 중 1건은 승인신청서류 접수 시 조건 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사자료로 채택하지 않음

### ③ 종편·보도PP 승인 관련 관계기관 및 시청자 의견 채택

- (시청자 의견청취) 법인·단체 3건 및 자연인 29건 등 총 3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 1건,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의견 1건을 제외한 30건을 채택
- (관계기관 의견조회) 신청법인의 대표자·편성책임자에 대해 기초 자치단체 등 결격사유 여부 의견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
- 방송, 통신, 신문, 상사, 금융, 노무, 공정거래 등 분야별 법령위반 내역 의견조회 결과, 총 30건 반영

### ④ 종편·보도PP 승인 신청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 종편·보도PP 승인 신청법인에 대해 '09.1.1~12.31, 국내 조사기관인 TNmS와 AGB닐슨의 2009년 연간 시청점유율 자료를 산술평균

※ 시청점유율 자료는 제19차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심의(2010.12.9)

### ⑤ 종편·보도PP 승인 신청사업자의 계량평가

- (보도PP 계량평가 관련 세부평가방법)
- 법인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 평균치의 80%를 미제출연도의 평가지표로 적용

- 신설법인의 경우, 1기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순이익률 계산 시 1기 사업연도 말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포함)을 기초자기자본으로 적용
- 평가대상 재무제표가 다음연도에 재작성 된 경우, 재작성 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 분할법인의 재무제표의 경우, 법적 실체를 기준으로 전기 재무제표를 인정
- 재무제표 확인을 받은 합산재무제표에 포함된 개별재무제표상 수치와 감사보고서상 개별재무제표의 수치가 상이한 경우, 감사보고서상 수치를 적용

○ (종편PP 계량평가 관련 세부평가방법)

- 외국인 주요주주 재무제표에 표시된 외화표시 금액을 원화표시 금액으로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각 사업연도말 매매기준율로 적용
- 모회사 재무제표 및 신용등급만 제출한 경우,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세부심사항목을 최저점수로 평가
-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계산시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평가
- 외국인 주주가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주된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 경우 주된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로 평가
- 외국인 주주가 감사보고서 없이 재무제표만 제출한 경우, 재무제표를 그대로 평가
- 2006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7년도 총자산증가율은 2007년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된 전기재무제표 금액으로 평가

- 2009년 합병법인 총자산증가율 계산시, 2009년 총자산증가율에 한하여 2008년 자산총계에 피합법인의 자산총계를 포함하여 계산

※ 법인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설법인의 경우, 평가대상 재무제표가 다음연도에 재작성 된 경우는 보도PP 계량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6 [주]굿뉴스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 (주)굿뉴스에 출자한 구성주주 (주)OOOOOOOOOOO 제출자료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의견청취 실시

## 7 종편 · 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일정 연장

-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로 예정되어 있던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을 12월 31일까지 1일 연장

## 8 종편 · 보도PP 승인 신청법인 적격심사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 중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적격 신청법인은 없음

## 9 종편 · 보도PP 승인 심사 결과

- (종편PP 심사결과) 전체 6개 신청법인 중 (주)매일경제TV, (가칭) (주)채널A, (가칭) (주)CSTV, (가칭) (주)JTBC 등 4개 신청법인이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100분의 70 이상,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100분의 60 이상을 획득하여 승인대상 법인으로 선정
- (보도PP 심사결과) 전체 5개 신청법인 중 (가칭) (주)연합뉴스 TV 1개 신청법인이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100분의 70 이상,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100분의 60 이상을 획득하여 승인대상 법인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 정책건의)

- 금번 사업자 선정이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인 점을 고려하여 첫 승인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중에서 「기본계획」 의결시 마련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을 부과할 필요

※ 세부 내용은 '종편·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회의 속기록' 참고

종편·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회의 속기록



---

## 종편·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12.23)

---

○ 심사지원반

- 위원장님 이하 14분 심사위원님께서 전원 참석하셨음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결안건 '종편·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회의 의결안건입니다. 검토해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안 3쪽 참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안건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안입니다. 첫째, 심사위원회 운영방안입니다. 1. 주요직무는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제출된 보정자료 채택여부 결정, 신청법인 의견청취 실시, 적격심사,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승인 조건 등 정책건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삼분의 이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참고로 심사위원회가 다르게 정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의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개요 및 주요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출석 심사위원이 확인 서명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내용은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토록합니다. 속기록 작성시, 심사위원별 확인을 거쳐야 하며, 속기록 공개시 심사위원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검토해주신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회의안건은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 소위원회는 법률분야 3명, 여기에는 기타 1명 포함입니다. 그리고 시민분야 1명 및 방송분야 2명 등 총 6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심사지원반이 작성한 승인적격 여부 검토 자료를 논의하고 승인적격 여부 의결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합니다.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계량 및 비계량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계량평가 소위원회는 회계분야 2명, 기술분야 1명 및 경제·경영분야 3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심사지원반이 작성한 계량평가항목 검토 자료를 논의하고 계량평가 의결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심사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승인신청법인이 제출한 승인신청서류 본문, 부속서류,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보정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지원반에서 신청법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 의결로써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둘째로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승인신청법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 청취자료가 포함됩니다. 셋째로 승인신청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주요 주주 등에 대한 관계기관 의

건조회 자료가 포함됩니다. 네번째로 신청법인 대상 의견청취 결과를 평가자료에 넣었습니다. 다음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편 및 보도PP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기본계획 및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한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에 근거하여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한 세부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방법을 의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평가 방법과 관련된 회의는 정보 공유 또는 심사와 관련된 원칙·기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제한하며, 신청법인 간 구체적 순위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절차를 말씀드리면 보도PP 심사 후에 종편PP 심사를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각 분야별 심사는 적격심사, 비계량평가, 계량평가, 선정결과 의결 등으로 구분합니다. 적격심사, 계량·비계량 평가, 신청법인 의견청취 등의 평가 시에 심사위원 전원이 참가하되 심사위원장은 점수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각 심사위원은 개별적으로 모든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평가표와 심사소견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토록 하였습니다. 계량평가 항목은 별도 안건으로 작성하여 의결된 점수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심사평가표와 심사소견서 공개시, 심사위원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신청법인 의견청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시는 보도PP 신청법인은 12월 26일 09시부터, 종편PP 신청법인은 2010년 12월 29일 09시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소는 본관 104호 강의실로 정했습니다. 참석대상 및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석대상으로 신청법인의 대표자, 공동대표인 경우 전원 참석하고, 편성책임자 그리고 최대주주의 대표자 또는 실사주가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임원 및 실무자 등의 배석이 가능하며 배석자를 포함한 참석 전체 인원은 8인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견청취 순서에 대해서 보도 및 종편 분야로 나누어 추천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순서 추천은 12월 24일 방통위에서 승인신청법인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의견청취 방법을 말씀드리면 의견청취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며, 질의순서·질의내용 등 구체적인 질의방법은 의견청취 전 심사위원회 토론을 거쳐 결정합니다. 신청법인별로 1시간씩 실시하고, 진행안내, 신청법인 모두발언, 질의·답변, 신청법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합니다. 심사위원은 신청법인 참석자에게 직접 질의하되 비대면 방식으로 합니다. 신청법인 참석자는 발언 및 답변시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사용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청법인 참석자는 예정된 시작시간 전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견청취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합니다. 의견청취 주요내용은 사업목적 및 사업의지에 관한 사항, 콘텐츠시장 활성화 및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유기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관련된 기타 의문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8페이지 심사위원회 운영일정입니다. 일자별로 주요 일정과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에 심사위원회 운영 세부 계획 의결이 주요 일정입니다. 세부 일정을 보시면 보도·종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고, 보도PP에 관한 보정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보도PP와 관련된 적격심사와 계량평가 소위를 구성하여 검토를 합니다. 2일차에는 보정자료를 채택하고 보도PP 신청법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게 주요 일정입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보도PP에 대한 보정자료 채택을 의결하고 보도·종편 관련된 심사자료, 예를 들어 시청자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에 관한 자료를 의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보도PP 신청법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3일차에 보도PP 신청법인 사업계획서 검토가 있고, 신청법인 의견청취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확

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편 관련해서 보정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일부 있게 되겠습니다. 4일차에 보도PP 신청법인 의견 청취가 있고, 적격심사와 계량평가에 대한 의결, 그리고 심사평가표를 작성하고 정책 건의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일차에 보도PP 선정결과를 의결합니다. 그리고 종편 관련해서 적격심사와 계량평가에 관련된 검토가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실에서 종편 신청법인 사업계획서 검토가 있고, 종편 보정자료 채택을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6일차에 종편 신청법인 사업계획서 검토가 있고, 신청법인 의견청취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확정을 하겠습니다. 7일차에 종편PP 신청법인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적격심사 및 계량평가에 대한 의결과 심사평가표 작성, 그리고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8일차에 종편PP 선정 결과를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심사진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운영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붙임1과 2는 각각 종편과 보도 PP에 대한 승인 심사평가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후 평가를 하실 때에 심사평가표를 참조 하시면서 점수를 기록하시고 심사평을 밑에 네모 칸에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심사소견서가 붙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이상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5쪽 심사평가방법의 평가자료 부분에서 “심사위원회가 채택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식해주는 것이 시청자 의견 청취 자료인데, 심사위원회가 시청자 의견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다 보고 저희가 접근하면... 심사위원회가 시청자 의견을 가져다가 채택한다는 자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심사지원반

- 시청자 의견을 저희가 사전에 받아서 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나중에 배포해드리고 설명을 드릴텐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심사에 반영할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채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일정 부분의 자료를 채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심사위원회가 채택하는 것 하고, 방통위에서 정리해주는 걸 채택하는 것 하고 바뀌는 것들이 무언지 알 수가 있어야죠.

○ 심사지원반

- 시청자 의견청취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한 것은 아니고, 의견청취를 받은 전체 원본을 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만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심사위원
  - 6쪽 네 번째에 보면 계량평가 항목은 별도 안건으로 작성하여 의결된 점수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기록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결된 점수를 모든 심사위원이 공히 똑같은 결과를 평가표에 기록한다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8페이지 세부일정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4일차에 보도 부문 의결시 적격심사와 계량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에 대한 안건을 작성해서 심사위원회 전체 회의 때 의결을 하고, 의결을 하면 그 점수가 배점이 됩니다. 저희가 그 배점을 기재 하는게 아니고 그 배점된 점수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본인의 심사평가표에다가 기재를 하고 전체 비계량 평가 점수와 같이 기재를 해서 심사평가표랑 심사의견을 같이 서명을 날 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결된 점수를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선출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할까요? 운영계획에 어떻게 되어있죠?
  
- 심사지원반
  - 여기 위원회 운영계획에 보시면 4페이지에 적격심사 소위원회와 계량평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위원장님께서 지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럼 한 번 성함을 잠깐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적격심사 소위에 어느 분이 들어가시게 되나요? 법률에 2분이시면 000 위원님, 000 위원님
  
- 심사위원
  - 시민분야에 저 인 것 같은데요.
  
- 심사위원장
  - 시민분야 000 의원님, 000 위원님도 적격, 두 분이 000, 000 위원이신가요? 그러면 계량평가 소위는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000 위원님이 간사 맡아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심사위원장
  - 그럼 이상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

## 종편 · 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12.24)

---

○ 심사위원장

- 제2차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모든 위원께서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전문성 있고 공정성 있는 심사를 위해 한 가지 운영방침을 확인할까 합니다. 여기 오신 13분의 심사위원들은 방송, 경영, 회계, 법률, 기술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모셨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날에도 잘해주셨습니다만 보다 공정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질의응답에 대한 기본 원칙을 추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 간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심사지원반에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심사지원반은 법령이나 통계 등 사실관계와 관련한 질문에 한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질의응답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사위원장

- 없으시면 그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안건으로 들어가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보정신청 채택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보정신청 채택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자료 3쪽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보정신청 서류 채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에 따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의 실제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예를 들어 부속서류 추가 제출, 날짜·단위·성명 등 오기 누락의 수정, 서명 날인의 보완 등에 한하여 보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제출할 수 있는 부속서류는 승인 신청서류 접수 시 조건표에 명시된 부속서류에 한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실제적 내용을 변경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예를 들어 주주구성의 변경 등은 보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최종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과

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보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4개 승인 신청법인이 신청한 보정 사항은 총 100건이며, 이중 68건은 기존 제출 서류의 수정사항이고, 32건은 부속서류 추가 제출에 해당합니다. 68건 기존 제출 서류의 수정사항 중 7건은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심사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32건의 부속서류 추가제출은 승인신청서류 접수 시 조건표에 명시된 것으로서 심사자료로 모두 채택하는 것을 의결 안건으로 올립니다. 불임에 보정서류 채택 표가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네, 토론해주십시오. 지금 불임자료 설명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정신청 서류 중에서 7건에 관해서는 기존에 정했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거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안건 두 번째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관련 관계기관 의견 및 시청자 의견의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관련 관계기관 의견 및 시청자 의견의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에 대한 법률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의견 채택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 심사기준·절차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관련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관련된 법률조항입니다. 방송법 제13조 결격사유 제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입니다. 다음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중 신청법인의 적정성(1-3) 중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1-3-2)의 세부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관

런 법령 준수여부를 사안의 경중, 빈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최근 3년, 다시 말해 2007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조 회내용은 확정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받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조회는 2010년 12 월 2일부터 2010년 12월 15일까지 방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기초 자치단체 및 경찰청에,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29개 기관에 의견조회하였으며, 23일까지 접수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청자 의견청취는 법인, 단체 3건 및 자연인 29건 등 총 32건이 접 수 되었습니다. 이 중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 1건과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의견 1건을 제외한 30건을 시청자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때 법인 단체는 위 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검토하신 바와 같이 OOOOOOOO, OOO, OOOO 이 세 가지 단체 가 되겠습니다. 이 중 OOOOOOOO 및 OOO은 시청자 단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접수 하도록 하고 OOOO의 경우에는 시청자 의견이라기 보다는 명칭과 관련된 민원 성격이 강 하므로 시청자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상정합니다.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승인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및 경찰청 의견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법인, 주요 주주의 건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방송분야 3건, 신문분야 17건, 공정거래 분야 8건 및 노동 분야 2건 등 총 30건의 법령위반 내역을 조회하였습니다. 통신, 상사, 금융, 관세 분야의 법 령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세청 소관 법령 위반 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 조의13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붙임자료를 보시면 모든 붙임자료를 설명하는 대신 17페이지 붙임1에 있어서 전체 현황표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의 경우 법령위반결과가 하나도 없었고, B는 2건의 법령위반결과가 있었습니다. C 역 시 2건의 법령위반결과가 조회되었으며, D와 E는 법령위반결과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회결과와 시청자의견 자료를 이미 검토 하고 의견을 제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OOO 위원님!

○ 심사위원

- 이 질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OOO 간사님께서 이 내용을 심사위원이자 간사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 면 보고서에 있는 많은 내용이 위원 중 한 분이신 간사께서 심사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접 수를 받거나 처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이 심사위원회가 이것을 접수하고 처리한 것처럼 오인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심사지원반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진행 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에 관해서 의견을 주시죠.
  
- 심사위원
  - 저도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 심사지원반
  - 000 위원님께서 오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간사께서 보고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심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게 아니라 미리 심사위원님들께 초안을 나누어 드리고 검토를 하고 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 간사께 의견을 제시해 수정하여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정리된 것을 위원회에 올린다는 의미로 간사께서 보고를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초안을 잡았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심사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시라면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 사람의 위원처럼 회의에 참여하여 보고를 드리는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간사께서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심사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고 보고하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조직이 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통위원회는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조직이 있고, 사무국 설치에 관한 의견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 심사위원회는 단독·비상설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사무국도 없고,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시는 심사지원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건은 사무국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사무국에서 가져와서 발표를 하고 우리보고 채택 할거냐 말거냐 하게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무국은 바로 위원회 밑에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일텐데요, 지금의 심사지원반은 제 생각에는 조직도로 보자고 한다면 서로 옆에 있는 조직인거죠. 지원반에서 접수한 자료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심사위원회라고 앞에 나와있는게 그런 필요성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 말씀을 요약을 드리자면, 접수는 심사지원반에서 했지만 검토는 우리가 해야되는 사항이고, 자료의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도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간사가 보고를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간사는 심사지원반에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완전히 소화가 된 상태에서 보고를 한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네,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장

-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 같았는데 000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고, 지금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000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사위원

- 제 이야기는 여기 내용을 보면 마치 심사위원회가 이 서류를 접수를 받고 그 자료를 요약한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서류를 제출받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은 서류 결과를 심사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임시기구로서 조직되어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는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러한 접수된 현황이 심사위원회가 직접 제출받거나 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사께서 보고를 하시니까 우리 심사위원회가 이 모든 서류를 접수를 받고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요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서 내용 전체로 보면 결코 우리 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행위나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사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만은 앞서의 회의 진행방식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전번에는 지원반에서 보고를 했었죠?

○ 심사지원반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날에는 전체적인 우리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000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모든 자료는 일단 작성은 저희 지원반에서 하는 것이고, 지원반에서 작성한 초안을 충분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하시고,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간사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여기까지는 지원반이 작성을 했지만, 앞으로 소위원회 논의결과가 나오고 하면 그것을 지원반에서 정리해서 올리는 것을 도와주기는 하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심사위원회 내부에서 처리하는 일이고 그런 모든 것을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간사가 보고한 형식으로 해도 좋지않나 싶습니다. 다만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사지원반이 작성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원반에서 올린 서류를 간사가 보고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만 명확하게 남기는 방향으로 하면, 000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저도 000 위원님과 똑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게 있었는데요. 시청자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원반에서 필터링을 해서 올릴거냐 아니면 우리가 전부 다보고 우리 나름대로 필터링할거냐 여쭙봤을 때, 우리에게 모두 올린 다음에 필터링을 하시라 그런 입장이셨습니다. 지원반에서 시청자 의견을 필터링을 해서 일부만 우리에게 올렸다면 감사께서 말씀 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의견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지원반에서 필터링한 것은 없는 것이죠. 다만 보정서류에 대한 수용 여부는 우리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여기까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 중에 법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 안건으로 들어가서 토론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잘 좀 살펴보셨습니까? 채택하는 것과 활용 시에 있어서의 활용방법은 위원님들께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청자가 보내신 의견을 존중해서 문서로서 채택을 한다하는 거기까지가 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택한다는 것만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사위원장

-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채택하는 것을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안건 세 번째 보도전문 PP 승인 신청 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보도전문 PP 승인 신청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점유율 제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 등의 방송사업 진출과 관련한 여론 독과점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청점유율 제도를 2009년 7월 31일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 도입되게 됩니다. 시청점유율이라는 것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20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대상은 방송사업자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정기간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년도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1페이지 산정방법은 방송사업자 본인, 특수관계자, 주식·지분 소유 방송사업자, 일간신문의 시청점유율 이 네 가지를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은 그대로 합산하고, 주식·지분 소유시에는 소유비율을 곱해서 합산 가중치를 매기게 됩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는 21페이지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시청점유율 산정관련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69조의2 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라 보도전문PP 승인 신청 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하고 승인심사

에 반영한다 입니다. 관련된 심사기준은 심사항목 1-1-2 방송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입니다. 산정대상은 보도전문PP 승인 신청사업자 5개가 되겠고, 산정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청점유율 조사 자료는 국내 조사기관인 TNmS와 AGB닐슨의 2009년 연간 시청점유율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나왔습니다. 22페이지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기준입니다. 먼저 유료가구 부수는 한국 ABC협회의 유료가구 부수 인증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구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장래가구 추계통계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소유구조는 신청인이 제출한 본인 소유 방송사업 허가 현황, 특수관계자 현황, 타 방송사업자 지분현황을 기준으로 하되, 방송통신위원회 허가현황, 방송산업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시청점유율의 경우에는 2009년 연평균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했으며, 아까 말씀드린대로 TNmS와 AGB 평균이 되겠습니다. 신청인 사업계획서 검토결과는 22페이지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유료구독가구수라든지 구독률 시청점유율 환산에 있어서 계산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와 관련해서도 누락이 있었습니다. 먼저 A와 B 같은 경우, 유료구독가구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한국ABC협회의 인증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였으며, C, D, E 같은 경우, 구독률 및 시청점유율 환산은 시청점유율 산정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F의 경우 소유구조 검증결과, 특수관계자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확인 하였습니다. 23페이지 표를 보시면 이와 같은 재산정·재확인 결과, G의 경우 전체 0.219%, H의 경우 0.144%, I 0.549%, J 0%, K 0.112%의 시청점유율 환산 현황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23페이지 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산정방식 및 과정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점유율 산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단순한 계산 실수 정도로 보는 것입니까? 그것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죠?

○ 심사위원

- 시청점유율은 원래 방송법상 기준이 30%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자가 시청점유율 환산 결과 1% 미만이었기 때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의결 안건 중 오타가 좀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쪽 개요 밑에 보시면 심사기준 1-1-2의 방송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심사기준 1-1-2하는 항목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오던 말은 세부심사항목으로 들었었거든요. 세부심사항목 1-1-2로 하구요. 항목 이름도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장

- 네, 자료 수정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뒤에 목표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평가나 사업전망들을 3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체크는 못했는데, 신청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목표 시청점유율과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시청점유율이라는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가 2011년, 12년, 13년, 15년까지 자기들이 점유율을 나름대로 추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평가라든지 인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시청점유율이 같은 시청점유율이 맞는지요? 아까 다 체크는 못했는데 한 두 개 정도를 보다가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 심사지원반

- 목표 시청점유율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서 산정된 시청점유율에는 보도PP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아직 사업자가 있어서 방송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시청점유율은 빠진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문사의 구독률과 특수관계자나 본인 소유의 다른 채널을 갖고 있는 그 채널의 시청점유율을 산정을 했더니 총 합이 1% 미만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 만약 목표 시청점유율을 제시했다면 그건 앞으로 방송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 방송했을 때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겠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아주 갭이 크다고 한다면 추정치의 근거가 대단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체크해보니 어떤 사업자는, mbn의 2009년도 점유율을 본인들이 사업을 개시했을 때 그 근거 점유율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업자의 수치는 여기 있는 숫자랑 다르거든요. 말하자면 제 질문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시청점유율과 여기서 말하는 시청점유율이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인지요?

○ 심사지원반

- 네, 같은 개념입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도전문 PP 승인 신청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종편 · 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12.26)

---

○ 심사위원장

- 제3차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모든 위원께서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청문과 관련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와 저녁에 걸쳐서 의견청취 질의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의견청취 과정까지 모든 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좋은 질문을 많이 만들 수 있었고, 오늘도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000 간사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 먼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3일 심사위원회 운영을 시작한지 오늘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코바코 연수원에 입소한 직후에 짐도 풀기 전에 바로 일정을 시작했는데 오늘 보도PP 승인 신청법인의 의견청취까지 연일 강행군을 했습니다. 일부 심사위원님들과 심사지원반이 코피를 흘리고 입술이 부르트는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날 우리가 함께 의결한 운영일정에 따르면 오늘 신청법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비계량항목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작성·제출하시고 내일 보도전문 PP 승인대상 법인을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일정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첫째, 위원님들 간에 비계량평가에 대해 진도차이가 있으신 점, 둘째, 종편PP의 경우 보도PP에 비해 편성 내용이 많고, 또 심사자료도 많기 때문에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 셋째, 오늘 청문 결과 가칭 주식회사 굿뉴스의 적격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은 예정대로 보도PP의 계량평가 결과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오늘 밤까지 제출하기로 하셨던 보도PP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내일 오후 6시까지 작성 완료해서 간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모레 오전에는 비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종편PP 사업계획서 검토도 계속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첫날 의결한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도 세부 일정은 심사진행 여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일정을 약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심사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도전문 PP 신청사업자의 계량평가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량평가 소위원장께서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계량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계량평가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과 배점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중에서는 1-3-3 구성주주 중복참여에 대한 배점이 15점 입니다. 두 번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에서는 3-3-1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이 60점 입니다. 세 번째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서는 4-1 재정적 능력에서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세 개의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이 60점입니다. 4-2 자금출자 능력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대 투자금액의 적정성, 자기자본 대 투자(출자)금액의 적정성, 신용등급 세 개의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이 45점 입니다. 네 번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에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이 20점 입니다. 그래서 계량평가 점수 총 합계는 200점입니다. 4쪽 보시면 됩니다. 세부평가방법 주요 결정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조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법인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 산출방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밑에 별표를 보시면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 평균치의 80%를 미제출 연도의 평가지표로 적용하는 방법하고,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점의 80%를 미제출 연도의 평가점수로 계산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는 큰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합니다만 1안이 좀더 신청법인에 유리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공히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 평균치의 80%를 미제출연도의 평가지표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80%는 당초부터 배포된 세부심사기준에 나와있는 수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만 계량소위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기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1기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순이익률 계산할 때 기초 자기자본을 무엇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있어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개시 재무제표의 자기자본으로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기 사업연도말 자본금으로 계산하는 방안, 또는 제출했느냐 안했느냐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1기 사업연도말 자본금으로 계산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개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와 않은 경우로 구분하는 것도 곤란하고, 검증도 곤란하여 일률적으로 1기 사업연도말 자본금을 기초 자기자본으로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평가대상 재무제표가 다음연도에 제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당초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인데, 제작성된 경우는 전기 오류 수정 등 수정 전 재무제표보다 발전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다음 법인이 분할을 한 경우, 전기 이전 재무제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실체를 기준으로 분할 전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를 모두 인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경제적 실체에 따라서 분할전 법인의 재무제표의 일부만 인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고, 얼마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실체를 기준으로 전기 재무제표를 인정할 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쪽을 보시면 합산재무제표의 경우에 재무제표 확인원을 받은 합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상의 개별 재무제표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OOOO의 경우 어제 저희가 신청법인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 재무제표가 제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성된 후의 숫자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6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지난 번에는 계량소위에서 큰 세부항목별 점수를 가안으로 말

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세부 심사항목별로 점수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지난 번 보고한 바와 숫자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A의 경우, 어제까지는 중복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오늘 의견청취 결과 중복참여가 확정되었으므로 중복투자를 반영하여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최종 점수만 다시 말씀드리면 계량평가 합계 총 200점 만점에서 B의 경우 156.06, C의 경우 177.38, D의 경우 154.98, E의 경우 181.73, F의 경우는 120.38입니다. 각 신청법인에 대해 주요주주 개별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회사별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G를 한 번 보시면 000와 000000, 0000000000가 있고, 각 개별제 무제표 항목을 가지고 각각의 비율을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하단에 주주비율에 따라서 산출한 자료를 표로 추가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량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계량평가 점수는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쪽에 있는 4가지, 5쪽까지 5가지에 대해서 적용 기준을 말씀 하셨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다음에 관례에 따라서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고 감사보고서상 수치를 적용한다, 그런 것들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해줬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따뜻한 숨결이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할까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량소위원회 000 위원장님과 다섯 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 번 쳐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하였으나 비계량평가서를 작성할 때 계량평가 결과가 비계량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종편 · 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12.26)

---

○ 심사위원

- 모든 위원께서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제4차 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결안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적격심사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주)굿뉴스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에 관한 건'으로 주식회사 굿뉴스가 오늘 의견청취 후에 제출한 문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그 제안내용을 000 적격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먼저 안건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었던 의견청취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셨던 것처럼 굿뉴스의 구성주주사인 주식회사 0000000000에 00% 참여한 것으로 사업계획서 상 명시되어있는 미국법인인 0000000000의 국적이 문제가 된 건입니다. 의견청취가 끝나고 난 후 가칭 굿뉴스의 대표 김관상이 답변서라고 하며 손으로 쓰고 지장을 날인한 문서를 남겨놓고 갔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요지는 9월말경 구성주주인 0000000000의 지분이 국내 100% 기업인 00000000로 넘어갔다, 그런데 본사가 사업계획서에 실수로 지분 구성을 수정하지 못한 채 즉, 구성주주 (주)0000000000의 00% 주주가 미국의 0000000000인 것으로 적어냈었다, 그래서 관련된 입증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굿뉴스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해외 지분 문제 때문에 (주)0000000000사가 미국법인 0000000000에서 00000000로 넘어간 것이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식회사 굿뉴스에 대해 저희가 수차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요청에 응신하는 태도로 봤을 때 이번에도 부적절하고 소홀히 답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열렸던 의견청취와 유사하게 의견청취를 할 기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주)굿뉴스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정성에 대해서 (주)굿뉴스의 대표, (주)0000000000의 대표, (주)0000000000의 최대액출자자인 미국법인 0000000000의 대표, (주)굿뉴스에서 제출한 서류상에 나타나있는 00000000의 대표 4인에게 (주)0000000000 인수합병 내지는 지분변동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진정성을 한 번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일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그 자료를 참조해서 (주)굿뉴스의 적격 부적격에 대한 적격심사 소위원회의 의견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제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확인하는, 입증 변경 내용을 확인하는, 적격심사 소위원회가 아직까지 담당해오던 업무에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심사위원이 모여서 하는 의견청취보다는 적격 소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의견청취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심사위원
  - 적격심사 소위원회 차원에서 개최되는 의견청취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OO 위원장님도 소위원장으로서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격심사 소위원회 위원들과 OO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장도 참석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그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OO 소위원장님과 그다음 적격심사 소위원회 위원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은 몇 시가 좋겠습니까.
  
- 심사위원
  - 두 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네, 두 시. 자료를 오전까지 보낸다고 했으니까 검토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두 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이것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 쪽 일정이 안 맞으면 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지 모르겠네요.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두 시로 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되 그쪽의 형편을 봐서 일시를 조금 유동적으로 옮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어떨까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두 소위원장님과 간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위원님들 전체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굿뉴스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불성실했던 점을 생각할 때에 내일 보내는 자료가 적합한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 의견청취 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OO 위원장

님이 잘 아실텐데 혹시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오늘 같이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어떤게 있는지요?

○ 심사위원

- 일단은 우리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저쪽에서 주식 양수도일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주식 양도의 당사자가 미국법인이기 때문에 외환 송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9월말에 주식대금 송금에 대한 외환송금 영수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격한 거래라면 증권거래세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해서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영수증, 그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 되고, 또 OOOOOOOOOO 한국법인의 자본금 규모나 순자산 규모로 볼 때에 구매한 당사자, 주식을 양수한 당사자의 이사회 결의서가 있으면 좋고, 또 주식변동 상황을 받아야 됩니다. OOOOOOOOOO가 2009년말 주주명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변경해서 12월 1일 현재 주식현황이 어떻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리고 의견청취에 어느 분을 꼭 참석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아까 제가 안건 발의할 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굿뉴스 대표, 한국 OOOOOOOOOO의 대표, 미국 OOOOOOOOOO의 대표, OOOOOOO 대표 이 4명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 외에 오늘 또 논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질의사항인데요, OOOOOOO가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답변서 상에서 OOOOOOO는 외국 자본이 참여하지 않은 100% 국내기업이라고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나 그것도 증빙해야 되지 않나요?

○ 심사위원

- OOOOOOO 대표가 오면 일단 물어보고, 서류는 일단 나중에 보완해서 내라고 하려고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결정은 굿뉴스에 대해서 추가 의견청취를 한다는 내용이고 일시에 대해서는 내일로 정했습니다만 형편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참석대상도 우리는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뭐 누가 출장갔다던가 그 형편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서류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해서 확인한 후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제안된 안건, 굿뉴스 추가 의견청취권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종편 · 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12.27)

---

○ 심사위원

- 모든 위원께서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심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2시에 가칭 굿뉴스의 외국인 지분 확인을 위한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주)A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보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시는데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편성PP 승인 신청사업자의 보정신청 서류 채택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안건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먼저 안건을 보고하기 전에 동 안건은 심사지원반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심사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드리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보고하겠습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보정신청서류 채택에 관한 건입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근거는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잠시 보시면 사업계획서의 실제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보정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추가 제출할 수 있는 부속서류는 승인 신청 서류 접수 시 조건표에 명시된 부속서류에 한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의 실제적 내용을 변경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보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오늘 의결하는 이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종합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보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서 접수 받았고, 사업을 승인 신청한 6개의 법인 모두 보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6개 신청법인이 신청한 보정사항은 총 379건이며, 이 중 169건은 기존 제출 서류의 수정 사항이고, 210건은 부속서류 추가제출에 해당합니다. 169건 중 32건은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심사 자료에 채택하지 않고, 210건의 부속서류 추가제출 중 1건은 승인신청서류 접수시 조건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사자료로 채택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붙임에 보정서류 채택 여부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사지원반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일일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이상 보고내용에 대해서 토론해주십시오.

○ 심사위원장

- 보도P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6개 사업자가 보정 신청한 내용들을 집계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고, 거기에 기본 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 변경에 상응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수용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안건 종합편성PP 승인 신청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안건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이 안건 역시 심사지원반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심사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을 반영한 의결안을 상정드립니다. 그러면 종합편성PP 승인 신청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 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라 종합편성PP 승인 신청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하고, 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심사에 반영되는 항목은 심사기준 1-1-2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입니다. 두 번째 산정대상 및 기간입니다. 산정대상은 종합편성PP 승인신청 사업자 6개사 모두이고, 산정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청점유율 조사 자료는 국내 조사기관인 TNmS와 AGB닐슨의 2009년 연간 시청점유율 자료를 산술 평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시청점유율 자료는 제19차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기준입니다. 유료가구부수는 한국 ABC협회의 유료가구 부수 인증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수는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장래가구추계 통계를 이용하였습니다.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본인 소유 방송사업 허가 현황, 특수관계자 현황, 타 방송사업자 지분 현황을 기준으로 하되,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현황, 방송산업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검증되었습니다. 시청점유율은 2009년 연평균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하여 TNmS와 AGB를 평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자료 42페이지입니다. 신청인 사업계획서 검토결과를 봤을 때 지금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때 유료구독가구수, 그리고 구독률시청점유율 환산, 특수관계자 지분소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B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누락되어 있음이 밝혀져서 이것을 수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C의 경우에는 시청점유율 환산에 오류가 있어 역시 재확인하고 재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5번, 종합편성PP 승인신청 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현황입니다. D의 경우에는 2.9%, E 6.1%, F 1.9%, G 2.5%, H 10.5%, I 9.0%가 되겠습니다. 이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는 붙임 1, 2에 나와있는 일간신문 구독률 및 시청점유율 환산 현황, 그리고 신청사업자별 시청점유율 산정 현황 등의 과정을 통하여 환산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는거죠, 다만 한군데 J에서 누락한 것이 있어서 보완을 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

## 종편·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제6차 회의(12.28)

---

○ 심사위원

- 모든 위원께서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심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종편PP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의견청취 준비로 수고가 많으셔서 위원장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안건 보도전문 PP 승인 신청사업자의 비계량평가 결과를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네, 그러면 간사의 입회하에 심사지원반에서 집계하고 심사위원들이 확인한 보도전문 PP 승인 신청사업자에 대한 비계량평가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첫째, 개요입니다. 심사위원별 보도전문 PP 신청사업자에 대한 비계량평가 결과와 12월 26일 의결된 계량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사업자별로 승인 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가 전체 총점 100분의 80 이상 다시 말해서 800점 이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로 100분의 60 이상을 획득한 경우 승인대상 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승인최저점수 적용 6개 심사항목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입니다. 셋째, 계량·비계량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개 보도전문 PP 신청사업자 중 가칭 연합뉴스 TV 1개 사업자가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100분의 70이상,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100분의 60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신청 사업자는 모두 총점의 100분의 80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가칭 HTV 및 서울뉴스의 경우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관련 심사사항에서 최저승인 점수인 100분의 70에 미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량·비계량평가 결과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칭 굿 뉴스의 경우는 총점 1000점 만점에 774.96점으로 전체 총점 미달입니다. 가칭 머니투데이 보도채널은 총점 798.38점으로 전체 총점 미달입니다. 가칭 서울뉴스는 759.80점인데, 4번 심사사항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서 심사사항 과락이 되었습니다. 가칭 연합뉴스TV는 829.71점으로 승인대상 입니다. 가칭 HTV는 총점 737.01점이며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서 89.79점을 획득하여 심사사항 과락에 해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계량·비계량 평가 결과표에서 서울뉴스 같은 경우 심사사항 과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심사사항 과락하고 전체 총점 미달 두 가지에 다 해당하니까, 두 가지를 다 적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서울뉴스와 HTV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다들 개별 점수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가는 개별적으로 다 검토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심사위원장

- 그럼,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

## 종편·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제7차 회의(12.29)

---

○ 심사위원

- 모든 위원께서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심사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종합편성 PP 청문과 관련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도전문 PP 때와 마찬가지로 어제 질문 준비에서부터 오늘 현장 질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사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진행이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자정까지 질문 준비를 완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3일에 의결한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 연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날 의결한 일정에 따르면 오늘 종합편성PP 신청법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바로 비계량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내일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선정결과를 의결하고 위원회 운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많은 심사위원님들께서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일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에 대해 함께 논의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쁜 연말 일정을 포기하시고 금번 심사에 들어오신 것도 매우 감사한데 하루를 더 연장한다는 것은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만, 하루를 연장해서라도 보다 심도있고 완성도 높게 심사를 마무리 짓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발전의 장래에 이정표가 될 중대한 사안만큼 잘 숙고하셔서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안건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 연장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안건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 연장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안에 따르면 심사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일정을 1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안에도 역시 세부일정은 심사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일정을 1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일정 변경안은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안에서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로 의결한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을 12월 31일까지 1일 연장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주십시오. 혹시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계획 때문에 어려우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 심사위원장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

## 종편 · 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제8차 회의(12.30)

---

○ 심사위원

- 모든 위원께서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심사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심사 마지막 날이었지만 어제 심사위원회 운영일정 연장안 의결로 심사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 더 연장된 시간은 우리 심사위원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심사위원별 평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의결안건 종합편성PP 승인 신청법인의 계량평가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량평가 소위원장은 안건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계량평가 소위원회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을 보시면 종합편성PP 승인 신청법인의 계량평가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계량평가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성주주 중복참여 15점입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에서는 납입자본금 규모 60점입니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4-1 재정적 능력,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각각 30점, 합계 90점입니다. 4-2 자금출자 능력은 4-2-1 현금자산 대 투자금액의 적정성, 자기자본대 투자금액의 적정성, 신용등급 합계 60점입니다. 그리고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서 출연금이 20점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계량평가지 적용한 세부평가방법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요주주의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 기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 사업연도말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승인신청 공고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의 외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승인신청 공고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각 사업연도 각각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말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1안을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모회사의 재무제표 및 신용등급만 제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만 제출한 경우가 있고, 자회사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회사 연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고, 미제출한 것으로 봐서 평가시 최저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모회사 연결재무제표에는 주요주주인 자회사의 재무제표 항목 외에 모회사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제출한 것으로 봐서 최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2안을 채택했습니다. 세 번째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범위에 관한 겁니다.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후에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과 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회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특정 용도에 지정되

어 있다는 이유를 고려해서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1안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주가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나라의 주된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 경우에는 주된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로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주가 감사보고서 없이 재무제표만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무제표 숫자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있긴 있지만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한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7년도 총자산증가율은 2007년도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 금액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경우 2006년도 재무제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점수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고, 또는 2007년도에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 수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2007년도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어 있는 전기, 즉 2안으로 채택했습니다.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합병한 법인이 있을 경우에 총자산증가율 계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로는 2009년도에 합병했을 때에 2008년말 총자산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총계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합병전인 2007년도, 2008년도의 총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는 합병 전이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총계는 포함하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안을 채택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설법인의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재무제표가 다음연도에 재작성 된 경우는 보도PP 평가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 말씀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쪽을 보시면 계량평가 점수 집계표가 있습니다. 최종 합계만 말씀드리면 A의 경우 186.54점, B의 경우에는 190.51점, C 같은 경우에는 183.28점, D 205.74점, E 184.20점, F 200.60점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뒤쪽에 간단하게 신청법인이 제출한 것과 계량소위에서 검증한 차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 같은 경우는 2008년, 2007년 총자산증가율 계산할 때 2009년에 합병한 OOOO의 총자산을 2008년, 2007에도 적용하여, 그것을 제외하고 평가했습니다. H와 I 같은 경우는 중복참여 주주가 발견되어서 재검증하였습니다. J 같은 경우 중복참여주주로 인한 재검증이 있었고, 2009년, 2008년 제출자료가 감사보고서상 수치와 다르기 때문에 정정하였습니다. K 같은 경우는 중복주주 참여를 추가 발견해서 정정하였구요, OOOO의 경우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을 정정하였습니다. L를 보시면 1.18%인 주주 한 명이 처음부터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 우리가 51%까지 주요주주 재무제표를 합산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1.18%를 누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제출 감점처리하였고, 주요주주인 OOOO 같은 경우에 출자한 주주의 재무제표를 내지 않고, 모기업인 OOOO의 전체 재무제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제출로 처리하고, 감점했습니다. OOOOO의 경우에 2007년도 재무제표가 재작성됐는데 재작성 전으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재작성 후로 적용한 결과 검증점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복참여 주주가 발견되어서 검증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계량평가소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시죠.

○ 심사위원

- 잘모르는 것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M 마지막에 4가지가 나와있는데요. 처음에 3가지 항목이 결국에는 4-2-3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까?

- 심사위원
  -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OOOO가 그 안에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인은 OOOO의 재무제표를 제출했는데, 그 회사의 신용등급이 몹시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함에 따라서 하락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종편PP의 계량평가에 적용한 기준이 보도PP에 적용했던 것과 혹시 상이한 점은 있습니까
  
- 심사위원
  - 보도PP 할 때에는 이슈가 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 계량평가 소위원회 OOO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보도PP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계량평가의 결과가 비계량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의결안건,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신청법인의 적격여부 검증결과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적격심사 소위원장은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안건 2로 상정되어 있는 페이지 8, 종합편성·보도전문PP 승인 신청법인의 적격여부 검증결과 안입니다. 적격여부 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는 방송법 제8조, 제13조 및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적격여부 검증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지분 제한은 40%입니다. 두 번째 대기업,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 지분 제한은 30%입니다. 세 번째 일간신문 구독률 제한은 20%입니다. 네 번째 지상파방송사업자 경영 제한입니다. 전체 텔레비전PP 수의 3% 초과 금지입니다. 다섯 번째 SO 및 유선방송사업자 경영 제한입니다. 전체 텔레비전PP 수의 20% 제한입니다. 여섯 번째 PP 겸영·지분 소유 제한입니다. 전체 PP 매출 총액의 33%입니다. 일곱 번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결격입니다. 여덟 번째 외국자본 지분 제한입니다. 종편PP는 20%, 보도PP는 10% 제한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번호 2010-65-169로 2010년 11월 10일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신청 자격,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 지분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경과사항입니다. 경과사항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1일 사이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류가 방송통신위에 접수되었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의 양식3을 통해서 각 신청법인이 구성주주 중복참여 현황, 양식4를 통해서 각 신청법인이 구성주주 특수관계자 현황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 접수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1일에서 12월 24일까지 모든 신청법인에 대해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 및 중복참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추가 접수를 받았습니  
다. 2010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지원반의 지원을 받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  
업 승인 신청법인의 일간신문 구독률에 대한 조사를 하여, 검증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2차 회의였습니다. 12월 24일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심사지원반을 통해 실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12월 24일 외국자본 지분 제한 관  
련 구성주주의 국적 확인을 위해서 가칭 (주)굿뉴스에 대한 관련 증빙 자료를 접수하고, 관  
련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12월 26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  
에 대해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27일 외국자본 지분제한 관련 가  
칭 (주)굿뉴스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및 국적 증빙 자료를 추가 접수해서 문제가 없음을 발  
견하였습니다. 12월 27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의 일간신문 구독률 검  
증 결과를 마치고 의결했습니다. 12월 28일 1인 지분 제한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가칭 케  
이블연합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접수 받았습니다. 아울러 12월 29  
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 의견청취 과정에서 가칭 케이블연합 종합편  
성채널의 O대주주인 OOOO에 대한 특수관계자 여부를 의견청취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3번 적격여부 검증결과안입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 중  
부적격 신청법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심사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보고된 안전에 대해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장

- 안전은 간단한 것이죠. 부적격자는 없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  
다. 그동안 적격심사 소위원회 OOO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럼 이상으로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

## 종합 · 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제9차 회의(12.31)

---

○ 심사위원

- 모든 위원께서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은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심사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의로서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선정 결과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결안건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심사 결과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네, 안건보고 하겠습니다.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심사 결과안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신청법인에 대한 적격여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계량·비계량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승인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회 운영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안 의결을 1차 회의에서 12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보도전문 PP 보정신청서류 채택, 종합편성·보도전문 PP 관계기관 의견 및 시청자 의견 채택, 보도전문 PP 신청법인 시청점유율 산정건 의결을 12월 24일 있었던 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12월 26일에는 보도전문 PP 신청법인 의견청취가 있었구요, 동일 3차 회의에서 보도전문 PP 신청법인 계량평가 결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같은날 12월 26일 4차 회의에서 보도전문 PP 신청법인 굿뉴스의 추가 의견청취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12월 27일 보도전문 PP 신청법인 굿뉴스의 추가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27일 있었던 5차 회의에서는 종합편성 PP 보정신청 서류를 채택하고, 종합편성 PP 신청법인의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12월 28일 6차 회의에서는 보도전문 PP 신청법인의 비계량평가 결과안을 의결하였으며, 다음날 12월 29일 종합편성 PP 신청법인의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동일 12월 29일 제7차 회의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일정 연장안을 의결하였으며, 12월 30일 8차 회의에서는 종합편성 PP 신청법인의 계량평가 결과,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신청법인의 적격심사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적격 여부의 검증결과입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 승인 신청법인 중 방송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적격 신청법인은 없었습니다. 나. 보도전문 PP 심사결과입니다. 전체 5개 신청법인 중 가칭 (주)연합뉴스TV 1개 신청법인이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100분의 70 이상, 승인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100분의 60 이상을 획득하여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칭 굿뉴스, 가칭 머니투데이 보도채널, 가칭 서울뉴스, 가칭 HTV 등 4개 신청법인은 전체 총점에서 승인최저점수에 미달하였습니다. 가칭 서울뉴스와 가칭 HTV 등 2개 신청법인은 심사사항에서 승인최저점수에 미달하였습니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등 6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한 신청법인은 없었습니다. 다. 종합편성 PP 심사결과입니다. 전체 6개 신

청법인 중 가칭 매일경제TV, 가칭 채널에이, 가칭 씨에스티브이, 가칭 제이티비씨 등 4개 신청법인이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100분의 70 이상, 승인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100분의 60 이상을 획득하여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칭 케이블연합 종합편성채널, 가칭 에이치유비 등 2개 신청법인은 전체 총점에서 승인최저점수에 미달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사사항 및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등 6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한 신청법인은 없었습니다. 평가결과를 회사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보도전문 PP 승인 신청법인 평가결과입니다. 굿뉴스의 경우 774.96점을 획득함으로써 승인최저점수 미달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채널의 경우에는 798.38점으로서 승인최저점수 미달입니다. 서울뉴스의 경우에는 759.80점으로서 승인최저점수 미달 및 심사사항 점수 미달입니다.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829.71점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HTV의 경우에는 737.01점으로 심사사항별 최저점수 미달입니다. 그리고 종합편성 PP 승인 신청법인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로 말씀드리자면 매일경제TV의 경우에는 808.07점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채널에이의 경우에는 832.53점으로 역시 승인대상이며, 에이치유비 같은 경우에는 770.18점으로서 승인최저점수 미달입니다. 케이블연합종합편성채널의 경우에는 753.11점으로서 승인최저점수 미달이며, 씨에스티브이의 경우에는 834.93점으로서 승인 대상입니다. 제이티비씨의 경우에도 850.79점으로서 승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자 선정이 신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인 점을 고려하여 처음 승인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며, 두 번째 건의사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의결시 마련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 두 개의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네, 보고된 안전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하신 내용과 기록 내용을 확인·대조하시고 서명·날인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심사위원장

-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혹시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심사위원

- 건의사항이 있는건 아니고,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중에 두 번째 제시된 승인조건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의결시 마련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무엇을 부과하는 것인지 분명히 나온거 같지가 않아서 한 번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 심사위원

- 아마도 제가 건의한 내용이 다른 분 것과와 통합되어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는 각 사업자별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자기들의 여러가지 계획, 예를 들어 편성비율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밝혔는데 이런 것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승인조건에 부과해서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챙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였습니다.
- 심사위원
  - 이해는 되는데 문장 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돼서 문장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 심사위원장
  - 그럼 지금 000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고, 000 위원님과 000 위원님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의견 말씀해주시죠. ○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000 위원님!
-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5년을 기초로 작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예를 들어서 4년으로 한다 이러면 사업계획의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체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저도 마찬가지로 의견입니다. 처음에 승인 신청을 받을 때는 5년 후에 재검토한다 이런 조건으로 심사계획을 내놓고 신청을 허가할 때는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한다든지 하시면 법규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 승인 신청할 때에 처음에 발표한 계획하고 달리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장
  - 방송법 규정 같은 거에 의거해서 지원반에서 한 번 말씀을 하시죠.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사업신청 공고를 할 때 승인 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통상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분명히 방송법 시행령에 보면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심사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사항하고 관련있는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심사위원장

- 000 위원님 말씀하시죠.

○ 심사위원

- 두 가지 건의사항이 아마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사업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진행을 안 할 때는 승인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까? 중간에 혹시? 아니면 승인할 때 정해야 하나요? 만약에 두 번째 조건에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서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했는데 실행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이해하기에는 허가도 마찬가지로, 승인도 마찬가지로, 재허가·재승인의 경우에 허가조건·승인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잘 못된 경우에는 조건부 재허가, 조건부 재승인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승인·재허가가 안 되는 그런 패널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000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 심사위원

-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낸 것이 약속이라서, 그 약속을 믿고 평가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뒤집어질 수 있다, 약속을 안 지켜도 제재방안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당혹스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업계획하고 실제 이행이 꼭 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쿨을 예를 들어보자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계획서에 나온 사항을 그대로 다 이행하는지 여부를 교육과학부가 감독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한 번 해보겠다는 계획이었고, 그 이행여부에 대해 어차피 계획서상 페이지 바이 페이지, 패러그래프 바이 패러그래프로 검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재승인 과정에서 한 번 보게 되는데 재승인 과정도 어차피 승인조건, 재승인 심사 모두 따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일 수 밖에 없구요. 그래서 제 생각엔 두 번째 내용은 승인조건의 경우에 사업계획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장이 사업계획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범위가 다소 넓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사업 그대로 하는 것을 검토할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조건이나 재승인 심사사항은 따로 있게 되고, 사업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통제가 필요하다, 이정도가 실현가능한 방안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승인 유효기간은 최근까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올초입니까? 법 개정이 되면서 그것을 5년으로 하되 그 다음에 3년까지, 3년 또는 4년을 승인하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이 법으로 유동성 있게 규정되었는데, 이것은 5년 승인이 되는 것은 대개 아직까지 방송을 해오던 데 KBS, MBC, SBS라든가 그래서 이미 안정되게 방송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그렇고. 처음 시작해서

안착할 때까지는 아직 변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번에 아까 발표 됐 습니다만 합격점 이상 되는 사업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에 따 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에서는 중간점검의 차원에서라도 중간 심사를 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식으로 비취집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000 위원!

○ 심사위원

- 보도전문 PP의 연합뉴스TV와 관련해서 승인조건으로 한 두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뉴스TV의 대주주가 연합뉴스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뉴스 도매시장에서 연합뉴스TV, 연합뉴스는 수직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띄게 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연합뉴스가 제 공한 뉴스를 연합뉴스TV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사, 신문사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소비 자들한테 제공하게 되는 상류와 하류의 관계를 띄게 되고, 여기서 다른 모든 기업들은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사서 쓰게 되는데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같기 때 문에, 대주주가 같다고 보다는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의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구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뉴스를 도매로 공급하는 시장이 뉴스 스라고 하는 조그만 통신사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로 하여금 연합뉴스TV에게 비차별적으로 뉴스를 공급 하라하는 그러한 조건을 다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비차별 적인 조건이라 하면은 뉴스 공급에 대한 대가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뉴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종의 경우 먼저 발표하는게 굉장히 중요하 기 때문에 연합뉴스가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시기를 동등하게 하는 비차별적 공급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간에 회계 분 리를 명확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회사가 독립된 회사이긴 합니다만 연합뉴스의 뉴 스룸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공통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또한 연합뉴스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연합뉴스TV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뉴스룸을 공동 사용한다든지 공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계 분리를 반드시 엄격하게 해라하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

-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거 수직결합, 그것을 아마 방통위가 당연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이미 그러한 것이 규정으로 돼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그 부 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새롭게 그러한 규정을 추가해서 수직 결합이 가져 오는 경쟁제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조건으로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기 방송법이나 현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팀

장이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OOO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좋은 방안이시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러한 내용을 의결하기에는 과도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승인조건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정책 연구사항으로서 하는 정도가 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지원반

- O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속기록에 남을 것이고, 저희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승인조건을 구체적으로 방통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합니다.

○ 심사위원장

- 네, 어떻게 OOO 위원님 어떠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네, 동의합니다.

○ 심사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요약한 한 번 해봤는데 이를테면 연합뉴스 보도PP의 경우 뉴스 공급에 있어서 여타 종편 및 보도PP와 모든 언론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존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승인조건으로 하는 그런 것을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드는 그런 것을 방통위가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어디까지나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검토함에 있어서 예를들어 공급시점이라든가 가격, 회계분리 이런 등등을 함께 검토해달라 이런 정도의 건의가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 회의록에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유효한 것으로서 방통위가 같이 검토를 해달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의사항,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까합니다. 이번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심사는 우리나라 방송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될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또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심사위원들을 모시려고 방통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은 그 무거운 부탁을 받아들여 연말의 소중한 시간을 모두 희생하면서 우리 심사위원회 참여를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KOBACO 남한강연수원에 자리를 잡고 심사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오늘이 9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9차 회의를 끝으로 우리 심사위원회의 업무가 모두 완수됩니다. 지난 9일간의 어려운 심사 일정을 충실히 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침 7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매우 고된 강행군이었는데 단 하나의 차질도 없이 단 한분의 낙오도 없이 매우 원만하게 잘 소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심사위원 한분 한분이 성숙한 인격과 우리나라 방송발전을 위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결의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심사위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

게 된 것을 커다란 복이요 영광으로 생각하며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느라 불철주야로 일해온 심사지원반 반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9일간 보안 업무로 수고하신 보안요원들과 식사 제공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주방팀에게도 감사위원 전원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9일간의 일정을 되돌아보면 우리 심사위원회는 근면성실하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규정에 맞춰 정식으로 의결 처리하고 실행해 옮겼으며, 특히 심사평가에 있어서 위원 한분 한분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전문성과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심사하는 정도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와 의견청취를 통해 파악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엄정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한편 적격심사 소위원회와 계량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에 의해 심사평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두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000, 000 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위원회의 잔일을 도맡아 하시고, 의견청취 질의서를 종합 정리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신 000 간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도 평가, 엄정한 평가, 완성도 높은 평가는 이를 통해 선정·승인될 새로운 종편·보도PP들의 성공적인 활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방송을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9일간의 희생적인 노고는 이러한 방송과 사회의 발전을 통해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올해의 마지막 날과 내일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상 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 보도PP 신청법인 의견청취 속기록

- 12.26 (일) 09:10,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 -



---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 관련 의견청취 속기록

---

### 【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사업자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2월 24일 추첨결과에 따라 의견청취는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가칭) HTV, (가칭) 연합뉴스TV, (가칭) 굿뉴스, (가칭) 서울뉴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견청취 대상사업자부터 들어오시도록 하시지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정상 불가피하게 주말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칭) 머니투데이 보도채널의 보도전문PP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칭) 머니투데이 보도채널 대표자이신 최남수님 맞습니까?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예, 안녕하십니까. 최남수입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정미경님 맞습니까?

○ 정미경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 대표자이신 홍선근님 맞습니까?

○ 홍선근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최대주주

- 예, 홍선근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보도전문PP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는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신청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과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참석자 분들께서는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의견청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3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의견청취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께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하지 않는 한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 중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배석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허락을 얻은 후 기립하여 답변하실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이신 최남수님께서 3분 이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안녕하십니까.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의 대표로 내정된 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보도, 다른 방송을 지향하는 저희 MT뉴스를 어떤 모습으로 가꿔나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MT뉴스의 좌표 설정을 방송의 고객인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보도채널이 그동안 정보제공과 여론형성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지만 시청자들은 사회갈등의 조장, 정치 사건사고 소식의 과잉, 선정성, 단편성, 정보의 부족 등 적지 않은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MT뉴스는 시청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속보가 느리더라도 집요하게 사실을 추적해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를 하고 반론권을 철저히 보장해서 균형감각을 갖춘 신뢰받는 보도를 하겠습니다. 둘째,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사회통합의 여건을 조성하는 따뜻한 보도채널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저널리즘의 원칙 아래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방송과 신문, 온라인 등 머니투데이의 멀티플랫폼을 활용해서 미디어 융합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디어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와 시청자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혁신과 창의, 도전정신으로 가득찬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MT뉴스는 2008년 10월에 개국한 머니투데이방송을 인수해서 출범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개국 3년차만에 흑자를 달성하고 시청률도 크게 오르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픈스튜디오와 HD, SD방송시설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으며, 케이블TV와 위성TV시청 1,233만 가구 그리고 1,400만 DMB 가입자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가지고 있는 매출과 방송 송출망, 시청률 이 3가지의 기반 위에서 출발하는 MT뉴스는 개국 0년차인 2000년에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밖으로 나가는 콘텐츠의 글로벌화는 물론 방송 콘텐츠시장의 활성화 등 정책목표에도 최선을 다하여 부응하겠습니다. 저희의 비전과 열정에 긍정적 배려를 해 주셔서 MT뉴스가 한국의 보도채널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대주주 대표자이신 홍선근님의 발표를 3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선근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최대주주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과 열세 분의 심사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머니투데이의 대표이사 발행인 홍선근입니다. 머니투데이는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MT뉴스의 지분율 30% 최대주주입니다. 지금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연말인데 저희 때문에 이렇게 외진 곳에 갇혀 계셔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아침 심사위원님들 앞에 선 바로 이 자리에서 추위와 긴장감보다는 설렘과 열정이 저희 몸과 마음을 더 채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는 등 미디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환경이 급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운 도전, 또 다른 기회 앞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는 2000년 1월 1일 국내 첫 인터넷미디어로서 뉴스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의 일입니다.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민주화, 따뜻한 시장주의를 초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겸손을 화두로 삼아 국내의 언론문화에 나름대로 새바람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시장은 저희의 이런 시도를 외면하지 않았고 결국 신문과 일반PP로서의 방송, 새로운 브랜드인 스타뉴스 등을 세상에 선보이면서 미디어로서의 틀을 차곡차곡 다져 왔습니다. 이제 방송시장과 경제뉴스라는 특정 영역에서 펼치던 저희의 열정과 꿈을 사회 전반을 커버하는 보도채널의 영역에서 새롭게 시도하고자 합니다. 머니투데이미디어는 4개의 개별 미디어들이 올해의 경우 모두 흑자를 기록하는 등 브랜드나 재무적인 면에서 안정된 상태라고 말씀드릴만합니다. 450여명의 직원이 올해 620억원 남짓한 매출에 50억원선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니투데이의 DNA가 되어 버린 지난 10여년간의 새로운 도전, 혁신, 변화의 문화가 저희를 지금의 이 자리에 안주하게 허용치 않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보도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의 막중함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실 앞에서 진실로 겸손할 수 있는 보도채널을 만드는 것이 더 건강하고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꼭 성취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확인에 철저하고 주장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보도방송의 가능성에 공감하는 000명 주주들이 모여 600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상태는 미흡한 면, 보완해야 할 점도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끝없는 도전과 열정, 의지가 결국 일을 해낸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서 바탕에 깔린 저희의 진정성을 살피주셔서 MT뉴스가 사실 앞에 겸손한 방송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새롭고 험난한 도전의 길을 곧 떠날 수 있기를 그런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의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귀사가 보도PP를 승인받을 경우 지역적·사회적·문화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장

- 3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적 기여입니다. 저희는 사업계획서상에서 밝혀드린 대로 지방대, 특히 지방에 방송제작 역량이 있는 방송동아리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점 대학들과 이미 제휴를 체결했고, 앞으로도 제휴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방대에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지방의 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영세제작사에 무상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교류도 확보 차원에서 지역의 SO들과 콘텐츠 교류 또는 서로 보도제작에서의 협력, 또 인력교육 이런 협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여방안입니다. 사회적 기여방안은 크게 말씀드려서 인력을 양성하고 또 외주제작사를 지원하고 또 이익의 환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재양성을 위한 재단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OO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고, 이 재단의 특징은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자기 재능이라든가 그 사람이 자금을 다시 환원해서 또 다른 인재들을 지원하는 식으로 할까 합니다. 외주제작사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지역적 기여부분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또 콘텐츠산업의 육성펀드를 해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기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기부는 저희 머니투데이 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신문, 방송의 광고를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저희 시간이라든가 지면 또는 온라인의 면을 활용해서 무상으로 광고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5개년에 걸쳐서 총 000억원 정도 규모에 그런 광고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대학에 있는 대학들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또 학교와 학술단체에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적 기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사 차원에서 인터넷의 클리너를 위한 뉴클린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사회야구를 지원하기 위한 MT뉴스 야구대회, 그리고 직장인들의 여가활용이라든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요제,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이미 YTN이나 MBN과 같은 기존의 보도PP가 있고 지상파방송사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편PP도 승인되면 보도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귀 신청법인이 기존 보도PP 또는 신규 종편PP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편성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미경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편성책임자

- MT뉴스의 편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T뉴스는 기존 보도PP들도 있고 중편이 되지만 저희가 편성의 큰 방향은 4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에 특화된 뉴스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보도PP들이 대개의 경우 정치나 사회 과잉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요구는 정치나 사회 과잉보도, 또 지상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보도들이 과잉되고 있는데 실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뉴스나 보도는 부족하고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도채널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특화뉴스를 저희의 기본적인 편성의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인 머니투데이가 경제뉴스에 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뉴스의 비중을 OO%에서 OO% 사이 정도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NS 등 시청자의 참여가 요즘 너무나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한 미래형 융합뉴스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 편성표상에 특징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SNS 파워뉴스라든지 이슈 트래픽 같은 그런 것이 있고 또 뉴스의 중간중간에도 SNS를 활용한 다양한 미래융합형 콘텐츠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개의 보도채널이 토막뉴스 중심으로 30초에서 1분 30초에 이르는 뉴스의 나열식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지양하고 심층뉴스를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저널리즘에 입각한 심층뉴스를 편성의 가장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뉴스, 그래서 장애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동반과 상생을 위한 뉴스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편성에 특화된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 방송의 비전인 사실 앞에 겸손한 방송 실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겸손한 방송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확인 우선주의가 이 모든 4가지 편성방향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혹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지금 전체적인 편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만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뉴스를 한 OO~OO%를 늘려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심층뉴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제뉴스도 이미 기존에 다른 보도PP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의 지상파 보도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경제뉴스만 해서 후발주자가 안착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층뉴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시청자조사를 하면 단편적인 뉴스보다는 심층뉴스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심층뉴스를 실제로 시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칭) 머니투데이가 재정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그 시청자를 끌어 모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청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 이런 상황으로 그 계획대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대표이사 최남수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뉴스와 심층뉴스 이

2가지 전략을 가지고 기존 보도채널 시장을 파고들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마음에 깊게 담아두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보도채널이나 지상파의 경우를 보면 경제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율을 측정해 보면 저도 YTN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경제뉴스가 일반 정치와 사건사고뉴스가 많지 않을 때 공백을 메우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경제뉴스에 투자되는 리소스의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뉴스의 아웃풋이 나오는 비율을 봐도 한 10% 안팎해서 큰 뉴스가 있을 때 많이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머니투데이 멀티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경제와 증권 그다음에 글로벌 이런 것 등을 포함한 기업, 산업 이런 다양한 깊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적인 콘텐츠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경제를 다루는 관점, 시각을 차별화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공급하면, 경제정보 자체가 시청자를 유인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단편적이고 또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의 소구력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융합시키면 시청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심층정보의 경우에도 사실 많은 방송인들이 우려하듯이 모두가 심층, 심층을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시청자들이 많이 봐주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의 방송제작이라든가 보도 경험에서 보면 심층의 경우에도 사실은 제작자, 공급자가 심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심층 쪽의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지 않고 실제 제작에 있어서도 당일당일 발생하는 데일리의 단편적 보도에 많은 리소스를 투자했기 때문에 실제 말로 하는 심층과 실제 실행단에서 이루어지는 심층은 좀 달랐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저희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편적인 보도를 최대한 억제한다기보다는 단편적인 보도를 최소화하면서 명백하게 사실확인 근거해서 속보에서 다소 뒤처지더라도 정확한 보도를 한다는 원칙을 저희 보도채널의 기업문화로 만들어서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그런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귀사가 제시한 사업수익성에 대한 전망치가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를 자금조달 및 자금운영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 홍선근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최대주주

- 현재 자본 향후 현금 흐름이나 재무상황, 매출상황은 저희 나름대로는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원래 최소자본금이 400억원이었지만 안정적인 출발과 중기적으로 좀 더 자금 문제를 잠시 잊고 일에 매진하자는 맥락에서 600억원의 자본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면 2000년에 바닥을 치면서 다시 호전이 되는데, 경쟁자 수라든가 시장환경의 변화 등등에 따라서 혹시라도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저

회가 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차입이나, 아니면 증자냐 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심각하지 않다면 지금까지 머니투데이는 무차입경영을 해 왔습니다. 무차입경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 차입의 규모가 자금의 수요가 크지 않는 한 차입으로 우선적으로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 증자도 해야 되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주요주주들이 다행스럽게도 모두 다 흑자기업이고 자금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롭고 정말 제대로 된 보도채널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그런 증자 문제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의 자금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답변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보면 보도PP 승인 후에 MTN을 00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머니투데이방송의 2009년 말 순자산 가치를 보면 00억원 수준입니다. 이것을 000억원으로 인수하려는 것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셨습니까?

○ 홍선근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최대주주

- 순자산만 보면 00억원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자산 평가만이 아니고 거기에 달린 영업권이라든가 SO의 가입자 수 등등이 전혀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양도가치, 매각가치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잠정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봤더니 그 가격이 대략 000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고 또 올 연말에 흑자를 내면서 내년에도 그 흑자 기준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객관적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에 따라 상호 합의가 되어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순자산가치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족 같지만 말씀드리면 머니투데이방송이 이제 시작한지 3년이 채 안되어서 대체로 기업을 시작하면 3년 정도까지는 많은 것이 투입되면서 산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감각상각을 쭉 해 나가야 되는 특이한 그리고 일반적인 곡선 형태를 그린다고 봅니다. 그중에 바닥 선에 있는 상태라서 현재 피 튀기는 유형으로 비치는 것은 순자산 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과정에서의 무형에 이미 쌓아놓은 가치 그리고 벌써 작지만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런 수치로 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저희는 여러 사람들에게 합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2가지 질문을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대표님께서 (가칭) 머니투데이진실만 다룬다고 하시면서 MTN이 흑자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입수한 MTN의 2008년, 2009년 재무제표를 보면 양개 연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머니투데이가 시작하면 과거의 MTN 영업권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00억원이라든지 그 수준에

불과한 것을 000억원에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설립하자마자 외부에 유출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말씀드리겠습니다. MTN은 지난해에는 15억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주 적자폭을 줄여서 흑자까지는 출발할 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한 6억원 남짓한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이러저러하게 한 노력들이 시청률 등등이 조금 반전하면서 반기상으로 9억원의 적자를, 그것은 저희의 예상치를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이미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138억원 남짓, 그다음에 흑자가 3억원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T뉴스 입장에서 볼 때 머니투데이방송인 MTN을 너무 비싸게 인수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머니투데이방송을 운영하는 주주들은 이미 이것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달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도채널이 갖는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뜻 깊은 의미와 또 성취 그런 등등의 유형·무형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의 양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이 이미 흑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순자산가치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164페이지를 보면 영업활동 개시 후 00년까지 본 사업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또 영업활동 개시 후 00년까지도 내부 수익률이 자기자본 비용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평가 시 귀사가 가정하고 있는 성장률이 0%보다 낮다면 영구 영업 시의 순현재가치도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주 작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석에 기초할 때 본 사업이 과연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현재가치 NPV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먼저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 성장률 0%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밑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미디어의 여러 가지 환경변화 그다음에 새로운 유통채널이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해 보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다음에 태블릿PC, 스마트TV 이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유통채널들이 성장하고 있고 또 IPTV라든가 다른 채널들도 시장에서 파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할 수 있다면 룬테일 구조의 비즈니스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사더라도 많은 사람이 사게 됨으로써 사업규모가 커지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술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0% 정도의 영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NPV가 00년, 00년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보도채널의 특성상 종합편성이라든가 이런 다른 채널에 비해서 매출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매출에 있어서 소위 미디어들이 의존하는 광고협찬 수입과 수신료 수입 외에 저희가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공익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수익을 보다 더 발굴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염려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회사의 가치도 더욱 올려나가고 실제 또 주주들에게도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모델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앞 질문과도 다소 관련성이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계획서 제4장 경영계획 및 전략에서는 국내 방송환경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전망하면서 이 사항에서 신규 보도PP가 광고매출만으로는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서 수익모델 다양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수익모델을 다양화할지는 구체적으로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시작을 저희 머니투데이방송의 수익모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보도채널의 경우를 보면 광고협찬에 대한 수익의존도가 80%, 심할 경우에는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경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경제정보사업,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보시면 정보를 많이 가진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가, 큰손으로 통칭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로 통칭되는 그런 개인투자자들이 많지요.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저희가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공급하고 그분들의 투자적인 판단을 돕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정보를 공급하는 전문가라고 그럼니다만 그분들의 자질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품질관리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교육관련사업, 저희가 MBA 케이스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주로 국내 MBA 육성을 위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비롯한 방송사로서 공익성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광고수익의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변동에도 덜 흔들리는 그런 안정적인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선근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최대주주

- 짧게 보완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 홍선근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최대주주

- 지금 신설되는 법인 MT뉴스는 현재 머니투데이방송이 하고 있는 법인의 일체 인원과 사업 까지도 함께 다 인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아까 질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까지 저희가 광고협찬이나 사업 그 밖의 항목에 있어서의 수치가 광고협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만들면서 저희가 굉장히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했고, 특히 사업 등 그런 면에서의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금까지 머니투데이를 할 때나 또 머니투데이방송을 할 때까지도 사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꾸준히 그 콘텐츠를 오히려 좀 더 강화시키는 맥락에서 사업을 융합하면 개발의 여지는 그때그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보도국 내에 시청자부를 설치한다는데 이 조직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미경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편성책임자

- 시청자부는 말씀하셨듯이 시청자의 참여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조직 내에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부는 보도국 내에 수석부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부가 대개의 경우에 그냥 직원들을 배치해서 시청자의 불만이 나오면 그냥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고 접수하는 그런 일들만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명실상부하게 부로 만들어서 부서장이 있고 기자와 PD 그리고 직원을 함께 배치해서 시청자부가 시청자들의 불만처리를 하는 일 외에 시청자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서포트하면서 시청자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시청자부가 특징적으로 하는 것은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직접 기자와 PD가 함께 만드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의 불만처리사항으로 접수된 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중심으로 프로그램으로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 시청자부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와 PD를 다른 데와 다르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이 있으십니까?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간단하게 보완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저희 조직 편제 특징은 시청자부를 수석부서로 뒀던 의미는 시청자위원회라든가 자율편성 중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보도국 내에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해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부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의 대주주인 머니투데이사는 2000년 법령위반으로 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아직까지 미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선근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최대주주

-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정간물로서나 인터넷미디어로서, 또 방송으로서 이것저것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세금 문제라든가 그 밖의 다른 법령도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못 채우고 있는 것이 장애인 고용문제라서 그것에 대해서 큰 부담만, 저희 안에서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완전치 않은 상태라서 그 부담이 큰 상태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당장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 자체도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있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혹시 배석자 중에서도 답변하실 분 없으십니까?

○ 홍선근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최대주주

- 배석자 분들도 기억을 못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귀사는 공정방송과 관련해서 자율편성심의중재위원회를 통하여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사업계획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니 위원 모두가 귀사의 간부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론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적절하게 실행될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계획서를 짜는 과정에서 자율편성심의중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킬지 또는 내부위원으로만 갈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시청자위원회는 외부인사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견제를 받는 그런 기구를 두고 자율편성심의중재위원회는 어떤 사안을 숨기거나 왜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런 자율조정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자율조정 기능을 갖는, 외부 인사가 일단 원칙적으로는 배제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부 조율을 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부조직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제 구성을 보게 되면 자율편성심의중재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방송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측과 그다음에 직원들 대표로 동수로 구성되는 것인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반론권 문제라든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은 직원 측 공정방송위원이 자율편성심의중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마음에 넣고, 내부적으로 이런 반론권 보장을 내부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기구를 운영할 생각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인사도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미경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편성책임자

-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자율편성심의중재위원회가 내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재원의 반론권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가 어려울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조정결과에 대해서 취재원이나 이쪽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문제를 제기한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전문가를 우리가 같이 배석을 시켜서 중재를 하거나 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그 사안을 놓고 논의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사실 자율편성심의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먼저 시청자의 권익을 고려해서 문제가 생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와 중재를 거치는 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스스로 중재위원회에 가기 전에 그것을 고지하고 인터넷과 방송에 알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또는 시청자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심사항목과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들은 이미 다 공개가 된 사항이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미 숙지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심사항목 중에 어린이·청소년보호 방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55페이지 보시면 <마 2.2>항에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를 위한 배려방안이 기술되어 있는데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상에 여러 가지 방안도 있고 계획내용도 있는데, 어떤 방안들은 어떤 심사기준에 특화되어 있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방안을 가지고 여러 심사항목에서 골고루 쓰일 수 있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하는 것이나 기술 의도를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를 위한 배려방안으로서 모든 프로그램, 부편성 포함하여 시청연령제한이 없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도프로그램에 있어서 시청연령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사실상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도프로그램은 시청연령제한이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자체를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를 위한 특정한 배려방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는 이것이 약간의 건강부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미경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편성책임자

-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도채널의 경우에 시청자연령제한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써놓은 이유는 저희가 뉴스를 제작함에 있어서 요즘 보도채널이 특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 이슈의 보도에 있어서 요즘 너무나 흉악한 범죄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도할 때 경마식 보도로 너무 선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청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령이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고 한 의도는 바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보도를 할 때 어떤 모방범죄가 가능하게끔 범죄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또는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또 어린이·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도준칙을 마련해서 맨 처음 보도준칙에서부터 그 부분을 기자들과 PD들이 제작단계부터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심사위원님 지적대로 약간의 건강부회라고는 할 수 있으나 저희의 의지와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뉴스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것 외에 사실 보도프로그램이 모든 시청층이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경제에 특화된 뉴스를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경제뉴스를 하는 경우에는 요즘 어린이 경제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린이들한테 특화해서 저희가 밑에 '달려라 경제버스'라는 것을 해 놓기도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뉴스를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청층을 확대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그와 비슷한 시청자 참여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가 작성하신 분의 의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71페이지 <표 3-2>를 보시면 장르별 프로그램 편성방향이 나와 있고, 방통위에서 심사항목 중 세부항목에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청자참여와 <표 3-2>의 교양 부분에 시청자참여가 있는데, 이 개념이 맞는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표 3-2>의 시청자 참여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대학생들이 참가해서 벌이는 재능콘테스트프로그램을 시청자참여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세부 심사항목을 해석할 때 시청자참여의 개념에 맞춰서 한다면 대학생들이 참가해보는 재능콘테스트는 저는 이것을 시청자출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시청자참여의 개념을 제 것을 고집하는 것은 남용인 것 같고, 시청자참여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판단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출연도 시청자참여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과연 그것이 이 세부 심사항목을 봤을 때 일반적인 해석과 합치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미경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편성책임자

- 저희가 생각한 시청자참여는 아까 심사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청자참여,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지금 대학생들이 참가해서 벌이는 재능콘테스트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인재펀드라는 것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 인재펀드가 일종의 장학재단인데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또는 내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내가 커서 이런 것이 되고 싶다는 자기의 미래 플랜을 저희한테 써서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이 친구들이 방송에 나와서 요즘 인기 있었던 슈퍼스타K처럼 자신들의 재능과 향후의 미래 플랜이나 또는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일종의 심사를 거치고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AR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만 어쨌거나 평가해서 단계를 거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재능프로그램이 단지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출연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하는데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배치했습니다.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중요한 대목이라서 보완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간단하게 보완해 주십시오.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교양프로그램의 시청자참여 분류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보도에 있어서 시청자참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분류를 못해 놓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균형이 보였습니다. 뉴스 부분에서 보면 소셜미디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그다음에 블로그를 활용한 실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또 보도프로그램의 큐시티를 보면 매시간마다 거의 '이 시각 SNS'해서 그런 시청자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보도 제작에 있어서도 시청자가 참여하는 토론프로그램, 그러니까 보도 부분의 시청자참여는 곳곳에 녹아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분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보도PP의 경우 방송법시행령 제53조의2에 의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2개까지만 의무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 보도PP는 플랫폼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보도PP의 경우에는 의무채널이 2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빈자리가 없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데 SO 부분의 내용을 쪽 들여다보면 저희가 이미 케이블TV의 경우에는 965만가구를 2년만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SO 채널 마케팅 부분에서 나름대로 밀접한 관계구축을 해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카이라이프 쪽에는 260만 정도 전체적으로는 1,233만가구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채널 영업 마케팅력 그다음에 서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의무채널에는 전송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경제채널의 가구 수를 늘려왔듯이 꾸준히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영업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확인에 근거한 콘텐츠 그다음에 경제뉴스 중심의 생활정보 제공 또 쌍방향의 콘텐츠의 힘을 가지고 나간다면 결국 SO라든가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의 경우는 들어가게 되면 전 가구를 확보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케이블TV의 경우 가구 수를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홍선근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최대주주

- 저는 홍선근입니다. 제가 크게 추가로 드릴 말씀은 아니고, 다만 심사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짤막한 답변이라면 의무전송채널은 두 군데만 되는데 저희는 이미 1,233만가구에 DMB에도 이미 나가고 있는 채널을 인수해서 시작하는 것이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대략 4분쯤 남았는데 간단한 질문, 간단한 답변이라면 하나쯤 더 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보도PP로서 글로벌미디어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전략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사가 글로벌미디어기업이 되기 위한 전략을 귀사의 핵심 역량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히 평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장

-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는데 답변은 1분 정도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 일단 경제콘텐츠라고 강조해 왔습니다만 국내 글로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글로벌기업의 CEO 인터뷰라든가 이런 외국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경제산업 콘텐츠를 수출용으로 제작할 생각이요, 이번 제휴서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아시아 쪽 미디어기업들과 콘텐츠 제작 제휴를 강화해서 공동제작이라든가 인력파견 등 교류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콘텐츠를 밖으로 내보내고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홍콩 소재에 있는 방송사를 인수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남수 대표자께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수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 대표자

-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후한의 날씨에 저희 머니투데이보도채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저희의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미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업계획서상의 2가지 실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진신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247페이지 <표 7-10>에서 외주제작비 합계를 다른 곳에서는 000억원으로 제대로 기입했는데 여기에서는 00억원으로 '0'을 뺀 오자를 냈습니다. 또 72페이지 있는 <별첨 11>에 장르별 편성비율을 누락하고 요약물 11페이지에만 실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심사위원들께서는 저희의 장점과 단점을 많이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멀티미디어인 신문과 온라인 방송을 융합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또 MT뉴스가 인수할 머니투데이방송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1,233만 시청가구, 1,400만 DMB가입자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경영면에서도 대주주인 머니투데이는 9년째 무차입 흑자 행진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경제위기 와중에 개국한 머니투데이방송은 개국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물론 일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강점과 새로운 보도채널을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980년 6월 세계적인 24시간 보도채널인 CNN이 세워졌을 때만 해도 기존 방송사들은 치킨채널, 풋내기채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CNN은 이제는 글로벌뉴스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NN의 예가 말해 주듯이 제대로 된 비전과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면 신뢰받는 보도채널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T뉴스는

기존 채널을 흉내 내는 방송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방송을 하겠습니다. 편을 가르기보다는 한데 모으고 그리고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경영적으로도 안정된 믿음직한 통합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과 열세 분의 심사위원님! 젊은 열정과 혁신 그리고 창의의 의지를 저희 방송에 담겠습니다. 공익성과 공정성·공적책임이라는 무거운 짐도 잊지 않고 지고 가겠습니다. 사실 앞에 겸손한 방송 실현이라는 저희 비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따뜻한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에 성실히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또 같이 참석하신 배석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칭) 머니투데이보도채널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칭) HTV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정상 불가피하게 주말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칭)HTV 보도전문PP 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칭) HTV 대표자이신 유병창님 맞습니까?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가칭) HTV 대표자이신 백세빈님 맞습니까?

○ 백세빈 (가칭) HTV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김종욱님 맞습니까?

○ 김종욱 (가칭) HTV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 대표자이신 박행환님 맞습니까?

○ 박행환 (가칭) HTV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보도전문PP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는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황 등에 대해 신청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참석자 분들께서는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것이며,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의견청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하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3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의견청취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질의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하지 않는 한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 중에서 누구든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배석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기립하여 답변하실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견청취에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 중 한 분께서 3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HTV 공동대표를 맡은 유병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은 방통융합의 빅뱅과 방송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등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디어법을 개정할 취지도 바로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한 강한 방송을 만들어 글로벌 방송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기존의 MBN과 YTN은 똑같은 뉴스 포맷으로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120만명이 넘는 주한외국인들의 뉴스 요구 등 급변하고 있는 세대상에도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헤럴드미디어-OO 컨소시엄인 HTV는 후발주자이지만 남다른 리스크를 감행하여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통하는 글로벌 뉴스채널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HTV는 3가지 관점에서 정보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뉴스방송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첫째는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영어 등 외국어로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글로벌 방송을 만들 것입니다. 한국적 관점을 전 세계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관계사인 동아TV를 종합 교양 성격의 영어채널로 제2채널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

다. 둘째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컨소시엄입니다. 우량기업인 OO의 자본과 영어미디어그룹인 헤럴드콘텐츠가 결합하여 글로벌미디어그룹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공동대표 이사로 영입한 것도 기업형 미디어그룹이 모델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 젊은층을 아우르고 기존 방송과 다른 뉴스 포맷 등 새로운 시청자 취향에 부응하는 방송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HTV 차별화는 기존 방송과의 단순한 경쟁논리가 아닌 방통융합 등 미래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소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HTV 모든 임직원들은 이러한 한국방송의 시대적 사명을 잊지 않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대주주 대표자이신 박행환님께서 3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행환 (가칭) HTV 최대주주

- 감사합니다. 최대주주 대표 자격으로 나온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박행환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님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헤럴드미디어가 방송사업을 시작한 즈음에 붙여서 헤럴드미디어의 역량, 그리고 과연 방송을 시작할 만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부가 현재의 방송사업을 승인할 시점에서 정부는 4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첫째가 미디어변화와 대응, 두 번째가 방송 다양성 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콘텐츠 활성화, 네 번째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 4가지 문제를 정책적 목표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우리 헤럴드미디어는 HTV가 앞으로 이런 정부 4가지 정책목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과 의지를 아끼지 않고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주주인 헤럴드미디어의 역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체의 다양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증된 경영능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된 글로벌 콘텐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매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헤럴드미디어는 조간에 코리아헤럴드를 발간하고 석간에 헤럴드경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인 동아TV를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 헤럴드미디어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이미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방송 등 뉴미디어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HTV가 보도전문채널로서 선정이 된다면 이제 방송과 통신융합시대에 정말 선두주자로서 일을 해 볼 그런 각오로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헤럴드미디어는 검증된 경영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년 연속 흑자, 6년 연속 성장에 5년 연속 흑자의 그런 기록을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우리 HTV 컨소시엄을 구성함에 있어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되는 OO를 우리 공동경영의 파트너로 초대해서 모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럴드미디어의 콘텐츠 그리고 OO의 자본, 이것은 글로벌미디어를 육성시키기 위한 안성맞춤의 차별화된 구도라고 정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콘텐츠입니다. 특히 헤럴드미디어 콘텐츠는 정말 다양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코리아헤럴

드의 영어, 헤럴드경제의 경제, 그리고 동아TV의 여성, 이런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헤럴드의 영어 뉴스를 양산하는 콘텐츠, 그리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정말 가치 독보적인 그런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년 전통의 코리아헤럴드, HTV를 만들거나 지금 대주주인 헤럴드미디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그리고 다문화 시대, 영어를 비롯해서 다국어 방송이 꼭 있어야 된다, 등장해야 된다는 사회적 소명이 절박한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헤럴드미디어는 HTV가 그러한 절박한 사회적 요구와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시간이 4분 이상 경과했습니다. 오늘 1시간,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응답시간에는 시간을 3분 이내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가칭) HTV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사가 보도PP를 승인받을 경우 지역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저희가 보도채널이 될 경우 지역적·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에도 명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첫째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글로벌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많은 요구가 있고 더군다나 지역을 글로벌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지역의 뉴스 이런 등등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이 한국 방송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글로벌화를 저희가 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층간·세대간 또 남녀 성별 간의 갈등이 많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데 저희 방송이 기여하는 것을 저희의 계획의 특화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미디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과도 관련되겠습니다만 한류콘텐츠를 세계에 전파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문화를 존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서 저희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

- 감사합니다. 이미 YTN이나 MBN과 같은 기존 보도PP가 있고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편PP도 승인되면 보도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귀 신청법인이 기존 보도PP 또는 신규 종편·보도PP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편성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욱 (가칭) HTV 편성책임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MBN이나 또 YTN 보도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방송들

이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편성의 차별성을 저희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장점이 영어가 장점입니다. 또 저희의 관계사인 동아여성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깃층으로 잡고 있는 것이 외국인과 또 20·30대의 젊은층, 그리고 여성들을 저희가 새로운 타깃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차별성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HTV는 기존의 보도채널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의 뉴스를 단순하게 외국에 소개하는데 치우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맛과 멋과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에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국가 브랜드를 높여서 국격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HTV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보도채널의 그런 천편일률적인 뉴스의 행태를, 저희들은 좀 뉴스는 보통 보면 재미없고 딱딱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뉴스의 길이라든지 소재, 포맷 이런 것들도 차별화해서 재미있는 뉴스, 파격적인 뉴스 이런 것을 통해서 HTV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

- 귀사가 제시한 사업수익성에 대한 전망치가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를 자금조달 및 자금운영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 김종욱 (가칭) HTV 편성책임자

-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초 예상보다는 이번에 경쟁이 더 심화되는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초자금 불입자본금을 000억원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첫째는 이 자본금이 000억원 규모이지만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본금 한도를 발표하기 이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MBN을 모델로 해서 거기다가 상세하게 비용항목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 나왔던 필요 소요자금이 얼마였었나 하면 000억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가지고서도 우수한 방송을 만드는데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수익계획을 잡을 때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료도 현재 MBN이 받고 있는 것의 00%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좀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수적으로 잡은 것,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0억원대 초반의 불입자본금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그러한 판단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경쟁이 다소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으로도 모자라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2가지 측면에서 타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첫째는 저희가 차별화된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방송을 해서 외국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영어방송을 선호하는 인구가 20만명 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수익 증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외국에다 송출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그것이 하나의 차별화된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성 젊은층들, 현재는 뉴스에 약간 소외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새로운 시청자층

으로 더 끌어들이는 다음 전체적인 파이프도,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자본의 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저희 헤럴드미디어도 흑자를 내는 미디어그룹이고, 특히 저희의 공동파트너인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OO도 아시다시피 자산규모가 5조원에다가 신용등급이 A를 가지고 있는 우량 대기업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는 충분히 증자를 통해서 그러한 재무적인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조금 전에 두 분 대표와 편성책임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타깃 시청자층과 관련해서 여성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포함을 시켰는데, 제가 읽어본 기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본문 92페이지를 보면 주 시청대상을 20대~60대 청장년층,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여성, 어린이, 청소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이 드는데 후발주자가 기존 사업영역에 진입할 때는 타깃이 분명해야 하고 또 틈새시장을 노려 점진적으로 타깃층을 넓혀 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귀 신청법인이 제시한 편성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욱 (가칭) HTV 편성책임자

- 저희들이 어차피 후발 보도채널로서 여러 각계각층의 그러한 시청자를 물론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들 주 타깃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과 외국인과 그리고 청장년층입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에 새로운 시청층을 저희들이 창출해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층의 그런 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지금 첫째에 한 26.5%의 그러한 다국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국어 프로그램 중에는 저희들이 9시에 프리미엄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말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영어 자막을 넣는 방송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어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중국어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6.5%의 다국어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저희 HTV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뉴스에 대해서 재미없어 하고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여성들의 취향을 파악해서 여성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헤라뉴스라든지 헤라바자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을 겨냥해서 청년층들이 뉴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물론 청년층들이 주로 인터넷이라든지 요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층 등을 우리 뉴스로 끌어들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네티즌들 맞춤형 토론이라든지 뉴스 DIY라든지 뉴스온 캠퍼스라든지 이러한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특화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보도채널이 0개가 승인될 경우를 가정해서 0년 후에 예상시청률이라든지 점유율을 적시하셨는데 목표점유율이 MBN과 동일한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채널이 케이블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2개인데 그런 SO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기반도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점 등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MBN의 시청률에 대한 점유율도 YTN에 비해서 아마 0:0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0년 내에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겠는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데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명창 (가칭) HTV 대표자

- 저와 편성책임자 둘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이 더 심화되고 또 기존에 보도채널이 2개가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나서서 얼마나 빨리 어떤 방법으로 캐치업을 하겠는가 그런 질문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의 차별화, 특히 글로벌 미디어가 된다는 것이 하나의 저희가 새로운 시장진출에서 장점으로 작용해서 시청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국어방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리랑TV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양 측면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뉴스전문채널은 아닙니다. 해외에도 국내에도 많은 한국과 관련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한국에 대한 뉴스를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국내에서 근무하시는 외국인들이 외국어방송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90%가 나왔다는 그런 자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 중에 특히 영어방송이 하나의 저희가 남들보다 빨리 기존 방송채널에 빨리 쫓아갈 수 있는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방송통신융합 시대에서는 저희가 보기에 현재의 케이블TV나 스카이라이프 같은 그런 캐리어에서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의 전달방법, 수단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IPTV도 있고 DMB도 있습니다만 조만간 모바일 IPTV 서비스도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와이브로가 많이 확산이 된다면 기존 SO가 하고 있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의 시청자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그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이 되고 지금은 카운트하지 않은 그러한 시청률도 새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뉴미디어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 김종욱 (가칭) HTV 편성책임자

- 물론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보도채널로 기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추가로 보도채널이 추가된다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0년 이내에 MBN 수준의 시청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MBN 수준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특화되어 있는 3개 시청층에 대해서 저희들만의 새로운 시청층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기존의 뉴스 시청자 플러스 저희들이 틈새시장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외국인과 여성과 젊은 층에 대한 시청률을 끌어들이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되면서 채널수도 많아지다 보면 성격이 비슷한 방송채널끼리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머스트캐

리보다도 방송의 질이 얼마나 좋냐, 또 얼마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청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SO들이 선호하는 방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SO들이 좋은 채널에 저희들을 해 준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O년 이후에는 MBN을 넘어서는 그러한 방송으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주주 또는 주주 특수관계자의 중복 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다른 보도, 또는 종편PP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았고 그 기준은 바로 심사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중복참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방송 특히 보도PP의 공정성과 공익성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어느 법인이 보도PP에 참여할 것인가, 즉 자본의 액수만이 아니라 자본의 관리, 특히 주주의 관리는 그 신청법인의 사업참여 의지와도 관련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신청법인의 대표자에게 여쭙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라는 사항이고, 대표자께서 현재 참가하고 계신 주주,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다른 보도, 또는 종편PP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여쭙 보는 것입니다.

○ 유명창 (가칭) HTV 대표자

- 질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된 바, 그 내용대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여러 군데 참여를 했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저희한테 출자한 주주 중에서 저희가 아는 바로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서도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백세빈 (가칭) HTV 대표자

- 저희 OO에서도 그외 특수관계인들이 참여를 했는지 여부는 주주명단이 발표가 되지도 않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OO이 OOO 명예회장이 타계하신 이후로 3분할되어서 경영이 되기 때문에 연락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질문사항으로 봐서는 OOOOOO나 OOOOOO에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OO과는 2000년 명예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유효지분의 회수 또 주식 추가 취득금지, 또 경영 불간섭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OOO 씨 측이 합의를 지키지 못하고 OOOO의 주식을 O% 이상 보유하면서 3개사가 형식적인 계열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OOO 씨 측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OOOO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더욱이 3개사는 실질적인 별개 회사로 서로의 경쟁

에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있고 대다수 언론도 이들 3개사가 계열 분리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OOOO는 OOO 씨 측이 OOOOO와 OOOO 두 상호를 놓고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등 완전 독립된 관계입니다. 나아가 OOOO는 계열관계 청산을 위해 법률자문을 받는 등 지속 노력 중이지만 OOO 씨 측의 비협조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OOOO의 의지와는 무관하며 전적으로 OOO 씨 측의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답변이 충분합니까?

○ 심사위원

- 예.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파악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답변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귀사의 사업계획서 39쪽을 보면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매년 영업이익의 2%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동안에는 회사가 반, 직원이 반해서 O억원씩 이렇게 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헤럴드미디어는 6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이고 또 OO 쪽은 자산 규모가 5조, 또는 6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건실한 자산회사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과거 사회기여실적 이렇게 구분을 사업계획서에 나온 35쪽부터 37쪽까지 보면 헤럴드미디어는 금전적으로 3년간 약 OOOO만원 정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행사는 굉장히 많이 적으셨지만 금전적인 지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OO 쪽은 3년에 약 OO억 정도 기여하신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OO억 중에 반 정도 이상, OO억 OOOO만원이 OOO 쪽으로 집중되어서 균형성은 상실되지 않았나 보여줍니다. 지금 앞서 밝혔듯이 영업이익의 2%를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의 기여분이 헤럴드미디어나 OO 쪽은 영업이익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행환 (가칭) HTV 최대주주

-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난데 보면 사회적 기여 부분에 보면 전반적으로 OO억원이 좀 넘는 규모, 이것은 헤럴드미디어와 OO이 합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것은 각각 O억이 좀 넘어 보이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가서 제가 헤럴드 대표이기 때문에 계획을 보면 저희들 원래 계획은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번 O%를 한다고 상정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사규를 통해서 몇 퍼센트 이상을 한다는 그러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물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건물을 쓰기 때문에 아이티 성금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선덕원에 그리고 복지원에 성금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의를

사회 소외층 계층에 장애우라든지 이런 데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론매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자지 또는 경제지를 통해서 많은 나눔의 캠페인, 나눔은 희망이다, 일자리는 희망나눔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캠페인을 광범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성을 많이 했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추가 답변이 있으십니까?

○ 백세빈 (가칭) HTV 대표자

- OO의 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여나 지역적 또 문화적으로 기여를 매년 대략 OO억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OOO 발전을 위해서 MBA 과정에 대해서 장학금 기금을 출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는 문화적·지역적·사회적으로 기여활동을 매년 영업이익의 O% 정도는 항상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사회 기여에 대해서는 꾸준히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

- 지금 OO 쪽은 과거 3년 실적이 OO억 정도, 이것이 각 회사의 영업이익의 O%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백세빈 (가칭) HTV 대표자

- OOOO의 영업이익의 O%를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HTV의 출자자를 보면 OOOO하고 OOOOOO의 지분율이 OO.OO%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시점부터 오늘 나오셨지만 OOOO 전무이신 백세빈 대표께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신데 이는 HTV를 설립시점부터 대기업인 OOOO의 지배 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지배구조 하에서 보도전문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안전장치를 두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공정성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미국 등 외국의 사례들도 잘 알고 있고 또 반면에 저널리즘의 근본적 가치를 잘 지켜 온 그런 언론매체만이 성공했다, 생존했다, 영속적인 매체가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 오너기업인 MS가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먼저 MS NBC가 보도한 사실도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지향해야 될 우수한 사례가 되겠지요. 그다음 오너인 카타르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알자지라방송

의 예를 보더라도 왕족들이 투자를 했지만 편성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해서 굉장히 시청자로 부터 공정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어떠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주주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영분리는 또 보도 분리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주하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경영과 편성도 분리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저희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방송심의 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 이외에도 영국의 BBC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정징계기구인 우리만의 명칭입니다만 헤럴드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방송심의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이 과연 저희가 그대로 지켜서 시정하고 있는가를 공개되도록 하고 만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적인 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헤럴드트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정성이 얼마나 보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교육기구를 만들 구상입니다. 헤럴드저널리즘칼리지입니다. 이런 것을 운영해서 저희가 공정성 측면에서 그러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정성을 보정할 수 있도록 또 시행할 수 있도록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됐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추가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OOOO의 전무이시고 백세빈 예정 대표이사께서 공동대표이사인데, 그러면 두 분의 역할분담에서 백 대표님께서는 언론보도와 무관한 일을 맡으시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세빈 (가칭) HTV 대표자

- 제 역할은 공동대표지만 저는 CFO로서 방송발전의 재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사업성 분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인데 서로 연관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사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0.0%로 이렇게 추정 계산이 되었고, 내부수익률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세 번째 질문에서 답변은 나름대로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상 자료를 비교해 보면 신청한 5개 법인 가운데에는 가장 낙관적으로 추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의미하는 귀사의 유불리점은 사업성과 관련해서 과연 타당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제약 때문에 자세하게 보수적인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사업계획서 부속서류나 이런 등등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분석을 할 때도 아주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차량 1대, 임원 차량, 보도기자차량 등등해서 자세하게 책상, 걸상, 해외출장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자세하게 분석을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낙관적으로 혹시 보일 수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아마도 혹시 수익적인 측면에서 과연 HTV가 빠른 시일 내에 그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의문을 두신 것이 혹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것이라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차별화를 가지고서 또 새로운 파이를 늘려서 그것을 또 저희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방통 융합시대에 새로운 미디어의 영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관적인 판단,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

-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답변을 통해 보면 대단히 낙관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입자본금 000억원은 현실적으로 신청법인 가운데 가장 낮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충분히 자본의 질이 높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자료상에 나타난 유불리점과 본사가 생각하시는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유불리점에 서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러니까 추정된 자료와 실제로 생각하고 계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직관적인 상황, 이런 것과 서로 매치가 될 수 있는 계산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앞서서 답변한 내용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나 하면 앞으로 경쟁이 당초 예상보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과연 괜찮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000억원을 가지고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아주 자세한 비용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해서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익적인 측면 등등은 MBN의 광고수익의 00%든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000억원대 초반이면 충분히 훌륭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000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다소 경쟁이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실적으로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본의 건전성 문제는 보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보다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HTV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1년 4월 1일에 시험방송을 수행하고 7월 1일에 본방송을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험방송이라는 것이 단순한 장비테스트가 아니고 본방송에 준하는 설비들을 다 갖추고서 실제로 본방송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본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방송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 구매라든가 설치 이런 등등을 고려하면 4월 1일 시험방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7월 1일 본방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종욱 (가칭) HTV 편성책임자

- 보도채널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는다면 어떤 종편이나 보도채널을 합해서 봤을 때도 먼저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과연 4월에 시험방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준비를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스튜디오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기술자문업체한테 자문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일이 끝나고 나면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정말 허가받자마자 서둘러서 모든 일을 동시에 서둘러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께서 작성해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2000년도까지는 영업손실이 발생되지만 2000년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이것은 실무적으로 작성한 분한테 도움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좋습니다.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주신 외부 CPA께서 담당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 백세빈 (가칭) HTV 대표자

- 법인세 계산은 결손분에 대해서는 10년간 결손금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계산은 사업계획서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단순히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월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 안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설립 이후 10년간 이익이 안 난다는 전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재무제표 작성하실 때 한쪽에서는 2000년부터 이익이 난다면 내포된 자료를 가만히 읽어보면 향후 10년간 이익이 안 난다라는 상호 모순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쭙 보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관계상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그 부분은 상세하게...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회계전문가가 아니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것이 빠진 것인지 현재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2000년에 설립한지 0년차에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 설비투자,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부분, 그리고 흑자가 됐다는 것은 현금흐름화해서 현금흐름이 순환이 가능한 정도이고, 정확히 BEP가 맞춰지고 손익계산이 맞춰진 해는 2000년으로 론칭한지 0년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연법인세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속 내부 어떤 계획 따로 있고 겉으로 계획 따로 있는 것은 천만에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2000년에 현금흐름을 여유있게 가져가고 정작 BEP를 맞춘 손익분기점의 시점은 2000년으로 맞춰 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대표자 분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창 (가칭) HTV 대표자

- 제가 뒤에서 배석한 직원이 답을 준비해 주고 있는 듯한데 시간관계상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서투른 면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답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사위원장님과 다른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HTV는 새로운 방송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와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아 글로벌방송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HTV는 기존 방송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방송을 당장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HTV 대표 경영자들은 방송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기업경영 및 글로벌 경험과 능력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탄한 자금력과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가장 빠른 흑자경영을 경험한 헤럴드미디어와 OO이 양대 주주입니다. 이처럼 탄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우리 컨소시엄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점들은 정부가 새로이 마련한 방송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최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HTV는 글로벌 능력까지 갖춘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송 매체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HTV는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적의 비용으로 최고의 방송을 그리고 최고의 창의력으로 최상의 방송을 만들 것입니다. 방송 O년차인 2000년에는 그때부터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또 2000년에는 누적 흑자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방송 역사상 가장 빠른 경영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HTV는 명실상부하게 공정한 방송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기여하고 미디어 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HTV를 새로운 보도채널로 선정하는 것은 결코 후회 없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심사위원 여러분은 한국에서도 미국의 CNN과 같은 글로벌미디어 탄생을 곧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그 방송은 HTV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2년간 외국 근무를 포함해서 글로벌 마케팅 경험과 대기업의 CEO, 언론 홍보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을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생각하고 혼신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약간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에 관해서 실무자가 답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1분만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일어서서...

○ 김필수 헤럴드미디어 방송추진위원회 기획실장

-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럴드미디어 방송추진위원회 기획실장 김필수입니다. 아까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 사업계획서 본문 197페이지에 손익계산서 주요 과정상에 보면 과거 10년간의 이월결손금을 반영해서 법인세 비용을 산출했다고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에 성실히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또 배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칭) HTV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가칭) 연합뉴스TV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주말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칭) 연합뉴스TV의 보도전문PP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이신 박정찬님 맞습니까?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이기창님 맞습니까?
- 이기창 (가칭) 연합뉴스TV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 대표자이신 박정찬님 맞습니까?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보도전문PP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검토만으로는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분들께서는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것이며,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의견청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3분 이내에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의견청취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께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하지 않는 한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 중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배석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기립하여 답변하실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

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이신 박정찬님께서 3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를 대표해서 나온 박정찬입니다. 기록적인 폭한 속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는 양평에서 새해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방통위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발전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자리에 사업 신청법인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연합뉴스TV가 이제까지의 보도채널과 확실히 다른 보도채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고 전 세계가 소프트파워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도채널을 만드는 것은 시대의 요구인 동시에 연합뉴스TV 주주들의 공통된 열망입니다. 연합뉴스TV 주주들은 아시아의 CNN, 한반도의 알자지라 같은 역량 있는 글로벌 뉴스채널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로 뚝뚝 뭉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저는 또한 연합뉴스TV가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보도채널의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분 30초짜리 똑같은 뉴스가 반복되는 채널이 아닌 생생한 뉴스가 흘러넘치는 채널,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채널,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채널,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을 이루는 채널이 바로 연합뉴스TV의 지향점입니다. 물론 누구나 차별화된 보도채널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 청사진을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미 다른 보도채널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반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TV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와 국내 최대 규모의 취재망을 보유하고 있는 연합뉴스와 공조 그 자체는 보도채널로서의 역량을 높여 줄 것을 확신합니다. 현재 전 세계 35개국 62명에 이르는 연합뉴스 특파원망이나 13개 지방취재본부 또 6개 국어로 송출되는 다국어서비스, 한민족센터 등은 연합뉴스TV의 글로벌 인프라로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또 공익적 지배구조를 갖춘 연합뉴스가 최대주주로 참여함으로써 높은 공적책임의식이 요구되는 보도채널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겨낼 경영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높은 공적책임의식과 우수한 사업역량을 갖춘 연합뉴스TV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뉴스채널로 발전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인 연합뉴스 대표 자격으로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뉴스통신사이자 뉴스통신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1980년 창립 당시부터 국제무대에서 국가를 대표해 왔으며,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이후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안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밖으로 정보주권수호라는 공적책무를 국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채널사업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려는 것은 이 같은 공적책무를 영상멀티미디어서비스로 확대해야 하는 엄중한 시대적 사명 때문입니다. 과거 뉴스통신은 텍스트와 사진 중심의 기사를 고객사에게 제공했지만 방통융합 및 미디어 규명 환경으로 이러한 구분이 이제는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문, 뉴스통신,

방송 간의 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CNN이나 유료뉴스 같은 외국 뉴스채널들은 이미 뉴스통신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고, 뉴스통신인 블룸버그는 블룸버그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이나 베트남 통신 같은 아시아지역 비영어권 뉴스통신사의 뉴스채널 진출을 보더라도 국익을 대변하는 뉴스통신사의 보도채널 진출은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연합뉴스로서는 광범위한 특파원망과 13개 지역 취재본부, 북한 및 다문화가정을 다루는 한민족센터, 6개 국어로 만들어지는 해외의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국내외 시청자에게 공급하는 일야말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책무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특파원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국제뉴스, 국제경제뉴스, 아시아뉴스 및 다문화 뉴스 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중앙통신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방송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또 현장뉴스 중심의 뉴스채널 운영을 통해서 낡은 관행 타파에 앞장서겠습니다. 1분 30초짜리 뉴스틀을 깨고 리얼타임 방송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심층분석과 해설이 있는 스토리텔링 뉴스를 통해 콘텐츠를 혁신하겠습니다. 150명에 달하는 지역취재본부 및 지역언론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방 소식이 골고루 전국에 전해지도록 지방과 중앙의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연합뉴스는 보도채널 참여를 통해 방송산업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이러한 진심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박정찬님께서도 신청법인의 대표자이시면서 또 최대주주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양쪽 대표로서 모두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가칭) 연합뉴스TV의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사가 보도PP를 승인받을 경우 지역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까지 텍스트와 사진으로 하던 그러한 미디어 활동을 비주얼 영상 쪽으로 보도방송에 나설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개념, 다시 말해서 밖으로 우리나라에서 또는 한반도에서 또는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우리의 시각으로 밖으로 전하는데 주력하고, 전 세계 특파원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안방의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제 현상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지금 기존 보도채널들이 하고 있는 것에 덧붙여 보완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국가기간통신 또 나아가서는 방송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전국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취재 맨파워였던 한계라든가 또 시간의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과연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 중앙에 전해짐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반성에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게 되면 지역균형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이미 YTN이나 MBN과 같은 기존 보도PP가 있고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PP도 승인되면 또한 보도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귀 신청법인이 기존 보도PP 또는 신규 종편보도PP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편성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창 (가칭) 연합뉴스TV 편성책임자

- 저희는 제2의 공중파나 YTN 같은 방송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의 공중파나 YTN도 방송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송은 기존 공중파나 YTN과는 콘텐츠나 형식면에서 크게 다른 방송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기존 방송은 국내 중심,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 중심으로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비해서 저희는 글로벌한 국제뉴스라든가 북한뉴스, 한민족 뉴스 또 다문화가정, 지방뉴스 이런 글로벌한 개념의 뉴스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시대 그리고 저희가 G20의 회원국으로서 의장국을 한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에서 국내 뉴스만 하는 보도채널이 아니라, 아시아의 CNN라고 할까, 중동에서도 이미 알자지라라는 그런 글로벌한 뉴스채널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뉴스채널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그런 글로벌한 뉴스채널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식면에서 보면 기존 공중파나 YTN, 저도 YTN에 있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중파의 9시 뉴스, 하루 동안 일어난 뉴스를 모았다가 1분 30초씩의 리포트로 계속 가공해서 보도하는 것이 지금 국내 TV뉴스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 9시 뉴스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뉴스를 하나의 거대한 생중계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도하려다 보니까 나온 개념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콘텐츠와 형식으로 뉴스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연합뉴스TV가 제시한 사업수익성에 대한 전망치가 있습니다. 이 전망치가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를 자금조달 및 자금운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저희들은 방송 시장이 상당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희 사업계획을

잘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짚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존 2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사업계획을 짚습니다. 하나는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 보도PP가 차지하는 또 보도PP 중에서 저희들이 만드는 방송이 차지하는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을 했고, 전체 GDP 대비 방송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2000년에 매출이나 수익 부분이 2009년 YTN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쪽으로 짚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재송신이라든가 또는 보도채널이 몇 개가 추가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짚 것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브레이크이븐포인트를 맞추고 2015년에는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000억원 넘는 여유자금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증자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전문 회계법인과 같이 협력해서 계획한 바로는 저희들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의 방송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뉴스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뉴스통합룸에서 활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고 또 새로운 방송장비도 비용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질문하십시오.

○ 심사위원

-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은 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얼마만큼 잘 짜여져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어떤 continuance plan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저희들이 28% 1대 주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72% 주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51%에 해당하는 4대 주주 외에 나머지 주주들 중에서 상당히 자금여력이 좋고 IT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한다든가 새로운 펀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연합뉴스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답변을 적절하게 하실 수 있을지 염려가 됩시다만 대표 분들이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주요주주인 0000이 0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출자재원은 0000의 학교, 병원, 일반 혹은 수익사업 중 어떤 회계에서 마련하실 계획으로 있으신지,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0000의 재무제표를 보면 학교의 경우에 특정목적 적립금과 선수금을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이 충분치 않아 보이고 또 법인이라든지 수익사업 회계도 그리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이 부분은 그동안 실무를 맡아서 해 온 분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수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

-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에 있는 김종수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말씀하시지요.

○ 김종수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

- 좀 전에 염려해 주신대로 OOOO이라는 법인이 저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완전한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OOOO이 단일 재단법인이지만 4개의 회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의 회계에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출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답변이 됐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은 법인과 학교의 채무와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을 해 주셨듯이 보도PP사업에 대한 수익성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라는 것이 언론사업과는 관련이 대단히 적은 분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사업과 관련이 적은 학원이나 병원 등이 수익성 전망이 낮은 보도PP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수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

- 좀 전에 답변드린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 김종수 기자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출해 드린 사업 전망에 근거해서 보듯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비용 우위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도채널사업이 현재와 같이 수익 전망이 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재단이 그렇게 수익 전망이 낮다면 거액의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당한 수익 전망을 생각하고 있고 또 OOOO 자체에서도 각종 공익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여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출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OOOO은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에도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OOOO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사회공익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여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요주주를 제외한 출자 예정 기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출자 예정 기업 중에 OOOOOOO이 있습니다. 전체 O.O% 정도를 차지하는 OO억원을 출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자 예정 기업 중에 OOOOOO, OOOOOO가 또 있습니다. O개 OOOOOOO 등이 약 O.OO억원을 출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납입계약서에 공증을 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이들을 다 합하면 약 OO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전체 605억원 납입자본금 수준의 약 O% 정도 수준입니다. 이들의 출자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회용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장

- 배석한 경영실 미디어전략팀장 이회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잠깐만요. 대표자께서 '누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해 주신 후에...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예, 알겠습니다.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경영실 전략기획팀장 이회용 씨가 답변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좋습니다. 신원을 먼저 밝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이회용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장

- 연합뉴스 경영실의 이회용 미디어전략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주주들에 관한 사항이어서 정확한 상황을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OOOOOOOOO의 경우 OOOOOOO이 시기에 따라서 자금 여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지금 저희에게 출자약속을 했던 시점도 그렇고 이후로도 좋아진다는 전망이 있고 또 OOOOOOOOO의 투자의지가 확고하고 저희와 경영목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나머지 OOOOOO나 OOO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에서 출자한 규정상 문제 때문에 공증하는 절차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OOOOOOO의 경우에는 O억 OOOOO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역협회 회비가 열렸을 때 저희가 출자약속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방향서를 받은 상태였었는데 이분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고 출자금이 OOO만원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통위가 요구하는 대로 공증과 그런 것들을 다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보도채널의 목표, 특히 글로벌 채널이라는 부분 또 한민족 뉴스채널이라는 목표 때문에 이분들을 주주로 꼭 모시고 싶다는 의지로 이분들을 주주로 포함시켰는데, 방통위에서 요구하는 서류절차를 다 갖추기가 쉽

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600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늘려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분들 외에는 00000000이나 나머지 분도 방통위가 요구한 자본금 목표에는 특별히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서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귀사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 본문2 58페이지 이하에서 주요주주인 0000의 지역적 기여 실적이라고 제시한 0000억원의 대부분이 학교병원의 이전 내지 개원 비용이고 또 주요주주인 0000에 지역적 기여실적으로 제시한 0000억원 중에서 0000억원이 병원 이전 및 신설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즉 0000이라든가 병원 자체로 들어간 돈인데 이러한 것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요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차감하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내용들도 제가 자의적으로 가감해서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역시 이 문제도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김종수 씨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좋습니다.

○ 김종수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

-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에 있는 김종수 기자입니다. 저희도 0000 측과 사회적·지역적 기여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0000과 0000의 경우에 대학병원을 현재 대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대규모 병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지역에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거액을 들여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지역적 기여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기업의 경우도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병원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병원들을 상당 부분 3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적·사회적 기여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사

업계획서를 보니까 반론권에 대해서 적극 보장한다는 내용만 있고,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공정보도위원회 구성이라는 항목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반론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한, 대변한다고 하면 말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발성 프로그램의 경우에 어떤 반론권과 관련한 그런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외주제작의 경우 제작사 측과 협의를 해서 기획의 주체나 투자의 정도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저작권을 배분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2차 제작물이라든지 재가공의 경우에 제작사의 권리를 최소한 몇 퍼센트 정도 인정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기창 (가칭) 연합뉴스TV 편성책임자

- 우선 반론권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보도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정보도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심의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여러 가지 기구들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외모니터링 요원도 한 50명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뉴스방송에 있어서 공정성은 거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공정보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고, 시청자위원회 산하에 3국 기능이 심의실의 시청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청자센터에서 인터넷이나 ARS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방송에 관한 불편, 불만, 오보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계속 접수하려고 합니다. 접수해서 만약에 오보가 나갔든가 그다음에 시청자에 대한 권익을 침해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사내 심의실에서 회의도 해서 시정할 부분은 즉각 시정하고, 정정보도할 부분은 즉각 정정보도를 하고 만약에 보도책임자가 사과를 할 사항이면 보도책임자가 사과를 하도록 이런 부분은 정말로 기존 방송, 어느 방송보다도 더 확실하게 저희가 공정성을 지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주제작과 관련한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자인 한경훈 영상뉴스부 기자가 대답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제약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 한경훈 연합뉴스 영상뉴스부

- 영상뉴스부 한경훈 기자입니다. 외주제작과 관련된 2차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투자 주체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작비를 저희가 전액 대고 제작을 했다면 2차 제작물의 경우에는 추후 협의를 통해서 일부분을 넘겨주는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외주제작사가 같이 제작비의 어느 정도 부분을 세어하게 되면 그 세어한 부분에 대해서 제작비에 따른 퍼센티지로 저희가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만든 제작물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작권에서 일부 외주제작사가 허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내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다음 질문입니다. 귀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23페이지에 의하면 명예훼손 등 시청자권익침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외부 법률자문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것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검토와 법률자문을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창 (가칭) 연합뉴스TV 편성책임자

- 저희는 보도채널인데 뉴스보도를 83% 가량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보도와 관련해서는 방송법상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뉴스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사전심의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기획제작물, 시사·교양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사업계획서 277페이지에 보면 양방향 방송, N스크린 구현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저작 및 유통시스템, 뉴스제작 자동화 등을 위해서 2011년~2013년까지는 매년 0억원, 2014년도에는 0억원, 2015년도에는 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페이지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이런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적 중요성도 있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추정 손익계산서의 신뢰성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차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그 질문에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 정보통신국의 임채영 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좋습니다.

○ 임채영 연합뉴스 정보통신국 기술기획팀

- 정보통신국 기술기획팀 임채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좋습니다.

○ 임채영 연합뉴스 정보통신국 기술기획팀

-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11년부터 총 OO억원에 대해서 연구개발투자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부분, 특히 방송통신융합이라든가 첨단방송기술개발을 위해서 회사가 방송을 개시하는 첫 해부터 연구개발투자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 경영기획팀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종수 기자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하십시오.

○ 김종수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

-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 김종수 기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분야와 같은 양방향 기술이라든가 뉴스 자동화 제작시스템 같은데 R&D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의 직접적인 무형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희 자문 회계법인과 상의결과 그렇다면 그것을 연구개발투자에 대해서 투자비로 자산화하는 투자로 하고 그것을 무형자산 상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자문결과를 받아서 무형자산 상각 등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보면 그런 항목들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개발비만 현재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0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김종수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

- 개발비가 첫 해에 약 O억원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에 O억 OOOO만원 등등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아까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 김종수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

- 예.

○ 심사위원

- 그런데 지금 무형자산에 보면 개발비만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R&D 비용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종수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

- 이 개발비가 R&D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은 기술 분야의

OO억원 투자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개발비로 계상된 것이 맞습니까?

○ 김종수 연합뉴스 경영실 미디어전략팀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저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의 주요주주들 중에 KBS나 MBC와 같은 지상파방송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도채널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관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주요주주와의 이해 상충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조정이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대표자인 박정찬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는 뉴스통신진흥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S가 2대 주주, MBC가 3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론칭하려고 하는 보도채널과 KBS, MBC 때로는 아마 상충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연합뉴스가 각 미디어에 기사를 공급하면서 각 미디어가 일일이 다 처리하지 못하고 또 인력의 제한적성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에 보완적 역할을 해 왔고, 또 KBS, MBC를 비롯한 지상파든 공중파든 저희들이 보도채널을 론칭하게 되면 아마 때로는 경쟁의 관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이라든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이든가 보도채널이 더 생기고 앞으로 더 시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방송을 경영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까지 연합뉴스가 텍스트와 사진, 이 방면에서 다른 미디어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듯이 때로는 경쟁이 되겠지만 아마 많은 부분을 또 KBS, MBC 또는 다른 보도채널들도 저희들과 서로 보완적으로, 때로는 저희들이 공급을 받으면서 방송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자께서는 몇 차례 향후 4년에 연합뉴스TV를 흑자 전환시키는 목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 137쪽에서 제시하셨듯이 지난 10년간 유료방송의 보도PP의 점유율이 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도PP와 함께 종합편성PP도 함께 허가가 되면 더욱 방송에서 보도와 관련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년 내 흑자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4년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기창 (가칭) 연합뉴스TV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시장이 어려워지고 특히 그중에서 보도분야의 수익 비중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익 전망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잡은 것으로 하면 2000년의 광고 비중을 YTN의 2009년 기준으로 해서 00% 정도를 잡았습니다. 2011년부터 해서 방송을 하고 나서도 작년 YTN의 00%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광고액수가 000억원이 넘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000 몇 십억원 되는 그런 수준의 광고입니다. 그런데 그 0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광고라는 것은 연합뉴스가 KTX의 이동방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KTX의 이동방송사업의 광고규모가 지금 한 000억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잡은 목표가 KTX 기내방송, 그야말로 고속철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내방송 수준, 3년 뒤에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았다는 것은 연합뉴스라는 미디어가 설립하는 보도채널의 광고로서는 우리가 24시간하는 뉴스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 그런 것들이 사내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곁들여 말씀드리면 아직 연합뉴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9시간 생방송을 이미 하고 있고 거기에 60명의 인원이 영상취재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아까 편성책임자가 말씀드린 KTX 영상사업 말고는 아직 광고를 담을 그릇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보도채널이 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뿌려온 콘텐츠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광고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물론 각박해지는 광고시장에서 우수한 능력을 스카우트해서 광고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한 번도 광고시장에 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께서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귀사의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귀사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뉴스채널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모두가 CNN이라든가 BBC 뉴스와 같은 굴지의 세계적인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글로벌 뉴스채널이 탄생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연합뉴스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예를 들어 외국어로, 영어로 방송을 한다든가 그러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뉴스 허브 구축을 하겠다,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전략 수단으로 적혀 있습니다만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뉴스채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기창 (가칭) 연합뉴스TV 편성책임자

-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뉴스채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착안하는 것은 일단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한국어로 하는 국제뉴스를 강화하고 북한뉴스, 한민족뉴스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는 한국어 뉴스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우선 한국어로 하면서 매일 30분 영어뉴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3시간 동안은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음성다중시스템으로 3시간 30분 가량 영어뉴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는 것이 저희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2차로 2000년부터 아시아를 상대로 한 연합뉴스TV아시아, 그다음에 2000년부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연합뉴스TV인터내셔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아시아뉴스허브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글로벌한 뉴스채널을 할 때 CNN도 있고 BBC도 있지만 사실 국제TV뉴스에서 아시아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CNN을 봐도 팔레스타인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뉴스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시아 시대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시아뉴스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아시아뉴스를 우리가 직접 중점을 두어서 제작해 보고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 주안점인데, 그러면 어떻게 아시아뉴스를 만들 것인가, 우선 연합뉴스가 아시아지역에 20명의 특파원과 통신원이 있습니다. 그 20명의 특파원과 통신원이 자체적으로 아시아뉴스를 만들고 또 중국의 텔레비전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방콕 등 아시아 각국에 많은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1개 통신사들이 있는데 그 통신사들과는 이미 교류협력 체제를 갖춰서 영상 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CNN도 저희가 듣기에는 자체제작영상은 40%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AP나 로이터나 세계 각국의 방송들과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저희 취재망과 아시아 각국에 있는 방송통신사들과 영상교류협력을 통해서 아시아뉴스를 우리가 다 수집하고 그 수집한 뉴스를 또 아시아 각국에 방송을 통해 배포하는, 아직까지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자, 이것이 아시아뉴스 허브 구상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다소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과거에 연합뉴스가 보도채널 YTN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매각을 하고 다시 보도채널을 신청하셔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그 당시 상황과 또 지금 다시 보도채널을 신청하신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고

또 다시 신청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신청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연합뉴스가 YTN을 만들었다가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 측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실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도한 투자를 함으로써 IMF를 맞아서 견딜 수 없어 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당시 같은 회사였던 두 회사를 나누려는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소위 과거의 문제일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그 과거를 던지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도사업을 하겠습니까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남을 편취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 YTN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지금은 누구나 알아주는 보도채널이 되었습니다만, 또 MBN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과원 5~6명이 전 세계를 커버하고 지방에 몇 십명이 되지 않는, 또 MBN의 경우에는 사실 매일경제특과원 4명이 전체를 커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일 만들고 있는 이 인터넷방송에서 특과원들이 전해오는 외국 소식, 지방에서 나오는 소식, 이 소식을 국민들이 정말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방송보다는 한 차원 높여서 보도채널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보도채널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분명히 이것은 더욱 더 여러 경로로, 여러 디바이스로 아웃바운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당시에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YTN이 24시간 뉴스 체제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그 24시간 뉴스 체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글로벌한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각축을 벌여서 중국이 CCTV라는 큰 방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NC를 왜 론칭했겠습니까? 베트남 뉴스도 왜 베트남방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Vnews를 했겠습니까? 이제는 세계가 총성 없는 소프트파워의 싸움입니다. 저희는 그 침병에 설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가 받은 느낌은, 물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제목을 표시하셨지만 구체성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해 드리는 것은 시간관계상 그렇고, 지금 글로벌 뉴스로서 말씀하셨고 또 스토리텔링 등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상비의 비중을 2012년 이후 보게 되면 제작비의 증가율보다 인건비의 증가율이 현저히 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종사자를 위한 방송이지, 콘텐츠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영상뉴스부 한정훈 기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좋습니다.

○ 한경훈 연합뉴스 영상뉴스부

- 영상뉴스부의 한경훈 기자입니다. 보도채널 특성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종편이나 지상파의 경우에는 제작비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쨌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 하면 기자들의 채용이 늘어나고 제작인력들의 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도제작의 특성상 제작비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계차를 운영하는 비용이나 기본적으로 제작에 쓰이는 기본비용들이 나가는 것이고 일단 뉴스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외주제작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조금 있는데, 저희가 외주제작비율은 점점 늘어나서 2015년에 OO%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작비 자체도 EBS나 같은 PP 중에서 최상급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제작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제작비 외에는 굉장히 상승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관계상 꼭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셔도 좋고, 시간관계상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찬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을 시간이 2분 남은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찬 (가칭) 연합뉴스TV 대표자 / 최대주주

-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연합뉴스TV의 사업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을 보충설명드리면 과연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겠느냐, 수익이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통합뉴스룸 운영, 다시 말해서 연합뉴스의 밖에 나가 있는 인원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인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지금도 60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15명을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리를 정리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연합뉴스TV가 기존 뉴스채널과는 차별화된 보도채널을 운영할 역량을 갖춘 최적의 사업주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연합뉴스TV에 사업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까지 보도채널과는 다른 제대로 된 보도채널을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구호에만 머무는 차별화가 아니라 실질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뉴스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뉴스채널,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대변하는 아시아뉴스채널, 영상뉴스의 허브로서 기능할 뉴스채널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심사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연합뉴스TV의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낱낱이 보고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한된 시간 많은 답변을 드리다 보니 혹시 의욕만 앞서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설명드리는 데 있어 혹시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 종편과 보도채널을 신청하는 회사가 많아 사실 저희들도 편당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충분

히 제가 왜 물어봤는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17일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날 저는 사장으로서는 기념사에서 전 세계가 소프트웨어 각축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거기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연합뉴스가 그 선봉에 설 것을 내외 다짐했습니다. 또 연합뉴스는 앞으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언론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민에 봉사하는 언론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방통융합의 새로운 세대를 맞아서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에 성실히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 같이 참석하신 배석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연합뉴스TV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가칭) 굿뉴스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정상 불가피하게 주말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가칭) 굿뉴스의 보도전문PP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칭) 굿뉴스 대표자이신 김관상님 맞습니까?

○ 김관상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박용수님 맞습니까?

○ 박용수 (가칭) 굿뉴스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 대표자이신 이재천님 맞습니까?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보도전문편성PP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는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

원회의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을 통해 기록되며,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의견청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3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의견청취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께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하지 않는 한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 중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배석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기립하여 답변하실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이신 김관상님께서 3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뉴스온 대표 김관상입니다. 저는 동양방송과 KBS, YTN 세 군데에서 거의 30년 동안 일선 기자와 또 사회부장, 경제부장, 보도국장, 광고국장, 또 SO를 담당하는 미디어국장 등을 거쳤습니다. 또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대학에서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해부터는 CBS TF팀과 함께 오늘을 준비해 왔습니다. 30년 전 CNN이 온 지구촌 뉴스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뉴스채널이 생겨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 오늘입니다. 텔레비전 뉴스 산업은 혁명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온드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넘어 웹과 모바일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스마트 미디어 열풍이 온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상파TV, 보도전문채널 또 경제전문채널 이렇게 방송뉴스가 홍수를 이루지만 방송통신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이끌기에는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저희 회사 뉴스온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조사한 내용을 보면 텔레비전 뉴스채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2.4%, 또 뉴스채널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83.4%나 나왔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에 대한 요구도 70%가 넘게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 뉴스온은 시청자 선택권을 넓히고 융합미디어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뉴스 채널 설립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청자가 참여하고 시청자와 함께 제작하는 시청자 중심의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쌍방향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15명의 시청자국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에 맞춰서 방송은 물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텔레비전까지 모든 미디어로 뉴스온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크로스 미디어 체제를 론칭 시점부터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주 소비층인 40~50대 남성층은 물론이고 20~30대 젊은층 그리고 여성 시청자들을 새로운 소비층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고수익과 수익모델도 새롭게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킬러콘텐츠를 개발해서 보도채널은 물론 공중과 텔레비전 뉴스와도 경쟁하겠습니다. 감동이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뉴스와 노코멘트 뉴스 또 쌍방향 소셜미디어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각의 국제 뉴스 등으로 뉴스 콘텐츠 시장의 새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저희 회사 뉴스온은 이 같은 사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 인력과 방송시설 그리고 경영모델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뉴스 사업자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공정방송의 이념으로 수많은 특종상을 받아온 CBS의 젊은 기자들과 PD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3군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생생한 지역뉴스도 방송할 계획입니다. 또 신문사의 온오프라인 통합을 넘어서서 언론사 최초로 방송 중심의 통합뉴스룸을 운영해 온 CBS와 협력해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인터넷, 모바일을 아우르는 크로스미디어 통합뉴스룸을 구축하겠습니다. 알자지라방송 또 유로뉴스, 채널뉴스아시아 등 외국뉴스채널은 물론 우리 회사 자체 특파원 5명을 제외하고도 대규모의 통신원, 주문형 취재 또 글로벌 공동기획 등 혁신적인 협력 제작 모델을 수립해서 글로벌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뉴스온은 무엇보다도 뉴스의 공정성을 최상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시청자 산하에 공정성특별위원회를 두겠습니다. 또 공정보도자문단, 보도국장 후보 추천제, 공정방송협의회 그리고 크로스체크팀을 운영해서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으로부터는 편집권 독립을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도하는 온전한 뉴스채널, 시청자와 24시간 소통하는 온에어뉴스채널, 정의와 사랑이 꽃피는 따뜻한 뉴스채널 뉴스온이야말로 뉴스산업의 새로운 도약길을 선도할 최적의 사업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2분 초과하셨습니다. 시간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발언하실 때에는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대주주 대표이신 이재천님께서 3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채널의 최대주주인 CBS 사장 이재천입니다. 요즘 미디어 환경을 보면 격변기라는 말이 꼭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섰고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혁명,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를 보면서 CBS의 경험과 역량이 보도채널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BS는 그동안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케이블, 위성, DMB, 인터넷뉴스 등 새로운 미디어 진출을 통해서 크로스 미디어나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뉴스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도국장이었던 2005년도에 CBS는 웹기반의 통합뉴스룸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신문기자는 신문기사만 쓰고 방송기자는 방송리포트만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CBS는 라디오 기자들에게 500만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을 지급했고, 이 휴대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이나 동영상 기사를 덧붙여서 포털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라디오방송사업자인 CBS가 박근혜 前 대표의 피습 동영상과 화왕산 산불 현장 영상 등으로 한국기자협회, 삼성언론재단 등에서 사진영상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CBS의 미디어 역량이 새로운 보도채널인 뉴스온의 성공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CBS 기자들은 모두 TV뉴스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뉴스온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면 CBS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CBS가 보유한 방송 서버와 취재망, SO 론칭 경험 등은 뉴스온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유·무형의 자산들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되지 않는 않았습시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수백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뉴스온이 가진 자본금은 000억원입니다만 사실은 다른 사업자의 000억원, 000억원 규모의 자본금과 맞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교재단인 CBS가 왜 보도채널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CBS 역사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바꿔보면 기독교재단이 운영하는 연세대학교에서 신학대학만 두지 않고 왜 법대, 의대, 상대, 공대, 인문대를 두느냐 하는 질문과 같다고 봅니다. CBS는 '54년도 개국 당시부터 뉴스, 음악, 오락 등을 할 수 있는 통합방송사로 허가받았고 또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에 신군부로부터 광고와 보도 기능을 빼앗겼고 전문방송사업자로 묶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19 당시 역사 현장을 누비며 생생한 소식을 전한 곳은 CBS뿐이었고, 독재정권에 당당히 맞서서 민주화를 앞당긴 언론도 CBS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과 능력을 갖춘 CBS가 보도채널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온의 방송경력이나 편성은 여기에 계신 대표와 편성책임자에게 있습니다. CBS는 CBS이고 뉴스온은 뉴스온입니다. CBS는, 다만 뉴스온이 안정적으로 방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투자할 것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CBS와 뉴스온 채널은 상호 발전을 위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2분 초과하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에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가칭) 굿뉴스의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보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가 보도PP를 승인받을 경우 지역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뉴스온이 생기면 지역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뉴스온은 공적책임, 사회적 책임에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역적으로는 13군데 지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생한 지역뉴스뿐만 아니라 지역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를 포함해서 지역뉴스, 기획뉴스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문화PD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PD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취재에도 나서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국 OO개 대학을 MOU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생들 OO군데 대학에 OO명씩 OOO명을 한 달 반 동안 교육시켜서 대학생 캠페인 기사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교육강사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또 아파트방송도 MOU를 체결해서 자회사인 뉴스온허브가 몇 군데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적인 부분은 편성 쪽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편성책임자께서 문화 부분,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나머지 시간 1분 남짓입니다.

○ 박용수 (가칭) 굿뉴스 편성책임자

- 문화적인 부분은 역시 저희들이 문화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뉴스온의 핵심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뉴스 외에도 저희들이 지역적인 문화를 직접 발굴해서 뉴스화하고 이것을 전 세계로 한국적인 특성, 지역적 특성을 잘 포착해서 재구성해서 콘텐츠를 뉴스온의 전 세계 공급망에 실어 나른다면 지역문화가 곧 한국문화요, 한국문화가 세계문화로서 글로벌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이미 YTN이나 MBN과 같은 기존 보도PP가 있고 지상파방송사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PP도 승인되면 또 보도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귀 시청법인이 기존 보도PP 또는 신규 종편보도PP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편성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존 보도채널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0% 정도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특정한 보도채널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신뢰도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뉴스가 그 뉴스라고 하는 것이 시청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뉴스온은 기존 뉴스와 전혀 다른 차별화된 뉴스콘텐츠, 이것이 뉴스온의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로스 미디어 시대에 저희들이 웹과 모바일 등이 통할 수 있는 크로스 미디어형 뉴스와 시청자참여뉴스 그리고 감동적이고 따뜻한 뉴스, 1초라도 빠르고 한 줄이라도 다른 뉴스로 승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스온의 경쟁력의 핵심이고 미래전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춰서 수요자 중심의 크로스 미디어형 뉴스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스마트패드가 내년 정도에는 1,5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 미디어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온은 시작 때부터 아예 크로스 미디어형 뉴스, 수요자 중심으로 뉴스 체제를 갖춘 것이 뉴스온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뉴스온은 케이블과 위성TV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뉴스 미디어에 맞춤형 뉴스를 공급하겠습니다. 가령 스마트 미래에 맞게 뉴스 한 꼭지 한 꼭지가 완성구조를 갖는 모듈형 뉴스를 만든다든지 트위터를 이용해서 SNS 소셜 뉴스를 데일리로 편성하고 스토리텔링형 뉴스 포맷을 개발해서 뉴스로부터 떠나간 10대와 20~30대를 뉴스온의 시청자로 확보하고 새로운 뉴스 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의 전면 참여를 저희들은 특화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이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온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10% 이상 편성할 계획입니다. 영상교육을 이수한 시민기자를 연간 150명 이상 양성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이 엔포터, 네트워크 리포터가 되겠습니다. 엔포터가 직접 만든 뉴스 콘텐츠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뉴스 레인보라든지 또는 인터넷상의 주요뉴스를 소개하는 이마이뉴스, 소셜뉴스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뉴스 편성도 역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시간마다 10분짜리 정시뉴스, 뉴스온24와 30분대 3분 뉴스를 편성해서 편성의 정시성을 중시하지만 긴급뉴스, 중요한 뉴스가 발생할 때에는 곧바로 특보를 전송해서 즉시즉시 대응할 계획입니다. 1초라도 빠른 뉴스와 단 한 줄이라도 다른 뉴스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CBS 사회부장 시절에 기자들과 함께 5개월 연속 기자상을 수상한 경험도 있고 또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력들이 아마 이런 뉴스의 신속성을 생산해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소재 발굴에 있어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뉴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 계층의 뉴스는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방송 코너에 방송하고, 그리고 편성비율을 15.9%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뉴스온에 독자적인 기구인 시청자국을 신설해서 시청자참여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 현재 CBS의 로컬뉴스에 인턴기자 150명 정도가 이미 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이런 차별화 편성전략으로 간다면 뉴스온의 브랜드 이미지가 글로벌 스마트 뉴스채널로 구축이 되어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조기에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제가 짧게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킬러 뉴스 상품으로는 드라마 관련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또 인터넷 상위 랭크 관련 뉴스, 이런 부분도 집중 취재하려고 합니다. 또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YTN이나 MBN, KBS 다 공백상태입니다. 그래서 밤이 없는 뉴스, 새벽 5시까지 생방송 체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핫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론조사 내용들을 중심으로 뉴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주말에 풀뉴스로 특집하려고 합니다. 지금 YTN이나 MBN 스크롤을 보면 한 2분 반, 3분입니다. 우리는 뉴스 스크롤 시간도 10분까지 늘려서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혼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뉴스를 하루에 5건 이상씩 시스템화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런데 시간이 결국 3분 정도 초과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굿뉴스는 시장 전망을 토대로 사업수익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굿뉴스가 제시한 사업수익성에 대한 전망치가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를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관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최대주주 대표입니다. 저희들은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하면서 경영전문가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정을 해서 수입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반면에 지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 비용을 다 포함해서 지출 부분, 비용 부분은 좀 더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본금 규모가 000억원입니다. 이 000억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소자본금 400억원을 제시하기 훨씬 전에 저희들은 적정 자본금 규모가 000억원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은 결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자금의 사장현상이 일어나서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치게 적으면 또 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서 보셨듯이 최악으로 떨어졌을 경우 기말자본금이 00억원 정도의 여유자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000억원짜리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자금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 자본금이 바닥이 나서 사업이 어렵다면 CBS가 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설득시켜서 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귀사가 지난 24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0 000 0000000000, 000는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00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귀사의 주식 00%를 소유한 구성주주인 0000000000의 지분 00%를 미국법인인 00 000 0000000000, 000가 소유하고 있어 구성주주인 0000000000는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0000000000 지분 00%와 외국인 00의 지분 0.0%를 합한 00.0%를 외국인 등이 소유하게 돼서 신청법인은 결국 방송법 제14조제2항, 제4항에 정해져 있는 10%를 초과하는 외국 자본의 출자 및 출연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청법인께서는 승인신청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최대주주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OOOO은 원래 모기업이 미국에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삼성전자 해외 수출의 모든 부품을 전량 항공, 해상 수송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주 건설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소재하는 OOOO은 일부 자본주가 중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한국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한국법인에서 출자한 것은 해외 투자 자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국 소재 OOOOOOOOOO는 한국법인으로 또 한국에서 기업을 등록하고 한국에서 세무를 처리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OO 씨는 중국 사람입니다. O.O%를 투자하는 중국 분인데, 따라서 외국인 투자금액은 O.O%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이재천 최대주주 대표자께서 OOOOOOOOOO를 한국법인으로 보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한국법인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송법과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서 50%를 초과하는 그런 주식을 외국인 등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법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회사 등등이 다 합쳐져서 10% 지분을 초과하게 되면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신청 심사기준의 승인신청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한 가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즉 OOOOOOOOOO를 외국 간주 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혹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그런 것을 여쭙보는 것입니다.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OOOO은 OOO라는 분이 대표로 있고 그분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한 OOOO은 OOO 씨라고 그분이 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OOOO은 OOO라는 분이 대표이고 그분이 투자한 것이고, 우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에 있는 OOOO은 OOO이라는 분이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국법인, 즉 신청법인 귀사의 구성주주인 OOOOOOOOOO의 지분 OO%를 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국 0000은 미국 0000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는 000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고 이쪽에는 000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데 관련 산업을 연관해서 추진한다, 사업을 같이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0000 수주품을 비롯해서 다른 대기업들의 해외 수출품을 미국까지 운송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귀사는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사업계획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44쪽을 보니까 사회적 기여산업에 연도별 예산을 매년 0억 0000만원에서 점차적으로 증진시켜서 0억원까지 편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별도로 영업이익의 0% 정도 범위 내에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나온 과거 3년간 사회기여실적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0000000000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동 회사의 사업매출, 사업 실적 매출로 보입니다만 한 000억원을 사회적 기여다, 또 인천에 대한 사무소와 관련됩니다만 인건비 지출한 000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적 기여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과연 사회적이거나 또 지역적 기여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 0%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약속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라든지 또는 인건비, 이런 식으로 지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크게 2가지로 들었습니다. 앞부분은 주주들이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한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대표로서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정자료에 냈습니다만 여기에는 0%가 아니고 1년에 0억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공적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정자료에 보면 영업이익이 나면 0%, 그래서 해마다 0억원씩 하고 또 영업이익이 나면 0%로 하는 것으로 보정자료에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회적책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2015년까지 0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고, ISO 26000 6가지 조항을 계속 수치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시아 국가들의 기자들 0명씩 우리나라에 와서 초기에는 0000만원, 2015년에는 0000만원으로 0명씩 확대하려고 합니다. 앞부분 주주들의 사회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주주들 사회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주주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주주인 CBS는 심사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사업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매주 고정프로그램으로 방송되는 '수호천사'는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제작하고 방송하고 또 시청자들로부터 전화ARS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그대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통해서'라는 프로그램 공연명입니다. 그런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 이 '통해서'를 개최할 때에는 이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법적 지위문제, 불법체류 문제 이러한 법률문제, 건강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는 충남에 있는 건설한 기업체로 민간사업보다는 사회간접시설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회기여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도채널사업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OOOOOOOOOO과 질문에 관해서 답변이 됐습니까?

○ 심사위원

- 일단 보정자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정자료는 기여가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러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답변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OOOO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이라든지 인건비 지출을 가지고 사회 또는 지역에 대한 실적으로 부풀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OOOO은 설립된 지 2년이 됐는데 아주 역사가 일천한 그런 회사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질문은 사회적 기여실적 관련해서 매출액을 기여라고 볼 수 있는냐는 그런 문제였고, 제가 드릴 질문은 지역적 기여실적으로 OOOOOO이 지방도에서 발주받은 매출액 OOO억원을 지역적 기여실적으로 보고서 34페이지에 기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적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과연 실질적인 지역 기여를 어느 정도 하실 의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최대주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을 사회적 기여로 그대로 표현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하려면 비용이 들고 비용을 드러낸 순이익의 일정 부분이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시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OOOOOO도 지방도로 등 SOC사업을 수주받아서 공사한 것을 사회적 기여금액으로 쓴 것은 그것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OOOOOO이 여기에서 자기들이 낸 수익 중에서 일부가 사회에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 그 금액을 사회적 기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모두발언에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지만 현재 CBS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는 (가칭) 굿뉴스 보도채널에 대해서 일부에서 종교적 편향성이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7대 종단 추천으로 화합과 소통 모니터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방지 방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굿뉴스 컨소시엄 뉴스온 채널의 최대주주가 CBS가 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편향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CBS는 라디오방송을 56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보도를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종교적인 편파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님들도 우리의 여러 가지 제재사항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셔도 한 번도 방송통신위원회나 관계기관 또 관련 단체로부터 종교적인 시비, 편파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재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7대 종단협의회의 책임자들로 화합과 소통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고 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공정성특별위원회, 보도준칙하는 이런 부분들도 편향을 방지하겠다는 장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박용수 (가칭) 굿뉴스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가 한 말씀 덧붙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1분 내에서 하십시오.

○ 박용수 (가칭) 굿뉴스 편성책임자

- 뉴스온의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은 사실 사후에 조

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공정성을 담보해내는 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견기자 7~8명으로 데스크 밑에 체크인팀을 구성해서 중복 데스크킹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준칙이 있습니다.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심각한 오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보도 건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까지 얻어서 사전에 철저하게 필터링을 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저는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제출하신 계획서 274~277쪽에 연구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UHD카메라 개발, 3D 실감방송 연구개발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R&D 쪽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7쪽의 예산 쪽을 보면 2011년에는 0000만원, 2012년에는 0.0억원, 2013년에는 0억원 그리고 그 이외에는 0억원, 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으로 계획하신 그 많은 연구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YTN에도 있었습니다만 YTN이나 MBN 다 연구개발 쪽은 상당히 약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온은 전문가 2명 플러스알파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3D나 울트라HD, UHD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4~5년 내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77쪽에 나온 그 예산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0억원, 0억원, 0억원씩 이렇게 투입하고 또 우리가 영업이익이 난다면 추가로 좀 더 집중 투자해서 앞으로 3D시대와 울트라HD 시대를 대비해서 연구개발을 좀 더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사업성 분석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3페이지에 추정결과를 보면 다른 회사에 비해서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금조달비용이 되겠지요. 이 자금조달비용이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불리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과연 그 열세를 어떻게 많이 극복할 수 있겠는지, 그 극복방안을 구체적으로 자료의 결과 산정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내부수익률은 00.00%로 추정결과만 보고서에 간략하게 되어 있고 부속서류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추정근거를 현실성 있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지금 238쪽에 있는데 어쨌든 자본조달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대주주 00%는 CBS 자금력으로 충분합니다. 관련 재무제표들을 여러 번 보셨겠습니까?

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투자평가손을 반영해서 당기순이익이 00억원 정도 적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평가손, 경인방송 평가손, 데일리로컬신문 평가손이 각각 00억원씩 00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 경영상황은 모든 언론, 신문, 방송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CBS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액 자체가 0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도 올해 들어서 00억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부채 상환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뉴스온 사업투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본조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은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사항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00% 책정한 것이 적정하느냐,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수익률은 2000년까지 00%로 잡았습니다. 방송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공익성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투자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리만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다르다, 또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투자수익률을 00%로 잡고 그런 계획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두 번째 질문은 그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자본조달을 아까 0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그렇습니다. 자본금 금액은 전체 000억원입니다.

○ 심사위원

- 000억원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소위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에 입각해서 자금조달비용,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계산이 지금 신청한 5개 회사 가운데 가장 불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자금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리한 자금조달 구조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다른 신청회사가 만약 선정이 되고 지금 귀사가 선정이 된다면 그런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뉴스온 채널의 자금조달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주로 참여한 분들은 각 주주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으로 투자금을 내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각각 이사회 결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아직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은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구성주주의 00% 주주인 0000000000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2월 23일자로 지금 말씀드렸던 구성주주 0000000000의 00% 주주인 0000000000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굿뉴스사가 2010년 12월 24일자로 0000000000의 법인 국적 증빙자료라고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인이 등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드리자면 저희가 구성주주 0000000000의 70% 주주인 0000000000의 한국 국적의 법인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신 사실이 맞습니까?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여건이 되면 뒤에 실무선에서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김상철 (가칭) 굿뉴스 재무회계팀장

- 뉴스온 재무회계팀장 김상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후속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후속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성주주인 0000000000의 70% 주식을 가지고 있는 0000000000의 캘리포니아 등기부를 보내셨지만 한국 법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못 보내신 이유는 또는 안 보내신 이유를 지금 알 수가 있을까요?

○ 김상철 (가칭) 굿뉴스 재무회계팀장

-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사위원

-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등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시는

데 서류를 못 떼었기 때문에 안 보내신 것입니까?

○ 김상철 (가칭) 굿뉴스 재무회계팀장

- 등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구성주주 OOOOOOOOOO의 OO% 주주인 OOOOOOOOOO가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최대주주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이번 사업자 신청과 관련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그쪽에 요구받은 서류는 충실히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 안 해도 되는 자료가 아니었나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라도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답변이 됐습니까?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월요일 오전까지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월요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이재천 (가칭) 굿뉴스 최대주주

- 알겠습니다. 요청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질의 한 가지 정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본문 65페이지~67페이지 또 요약문 7페이지에 보면 시청자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2011년에 장애인, 노인,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10.9%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을 보면 장애인 관련 0%, 노인 관련 0.0%, 이주민 관련이 0.0%로 이주민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형평성에 맞는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가칭) 굿뉴스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은 보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0.0%가 아니라 00.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0%, 노인 0.0%, 이주민 0.0%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0%, 기타 해서 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주민 0.0%는 저희들이 데일리프로그램으로 매일 오후 2시 반에 뉴스 레인보우 프로그램을 데일리프로그램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이주민이나 탈북자, 소수,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 UGC 등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편성비율이 0.0%까지 데일리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고, 이주민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다면 0.0% 정도 비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2분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감안하셔서 김관상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고맙습니다. 뉴스온의 사업자 적격 여부를 위해서 심사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들의 성실한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뉴스채널 뉴스온의 핵심 가치는 정의와 사랑입니다. 뉴스온의 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온누리, 온지구촌, 온정성, 온마음, 또 온에어, 따뜻하다, 진실된 온전한 뉴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의성과 흥미, 정보욕구가 뉴스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이 없는 방송, 영혼을 울리는 뉴스들, 여론 등 흐름을 알 수 있는 방송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끔은 사장이 직접 취재하는 방송 또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방송, 온 국민이 방송기자가 되는 이제는 실질적인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온의 브랜드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관리팀 텔레비전 뉴스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시청자 욕구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도 해 보고, IMC와 MPR 전략으로 뉴스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정말 다양한 생활 캠페인 또 공모전이나 시상시스템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좋은 내용을 방송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감동적으로 제작해서 영혼을 울리는 뉴스, 시청자들이 제작하는 감동 있는 뉴스 또 네이버나 다음에 나오는 검색 상위권 아이템을 텔레비전 뉴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뉴스온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조직 문화가 기초라고 판단됩니다. 직원들이 기분 좋게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극락이나 천국 같은 회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온 기대하셔도 되는 괜찮은 텔레비전 뉴스 방송국으로 15년 뒤에 우뚝 서고, 1년 뒤에도 우뚝 서는 기초를 확실히 잡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에 성실히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또 같이 참석하신 배석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굿뉴스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가칭) 서울뉴스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정상 불가피하게 주말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칭) 서울뉴스의 보도전문PP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까.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이신 이동화님 맞습니까?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송석형님 맞습니까?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 대표자이신 이동화님 맞습니까?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보도전문PP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평가하기가 곤란한 사항 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신청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과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참석자 분들께서는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것이며,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의견청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3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하지 않는 한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 중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외 배석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기립하여 답변하실 수 있음을 유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이신 이동화님께서서는 3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안녕하십니까. 서울뉴스 대표 이동화입니다. 서울뉴스는 서울신문을 대주주로 하고 74개의 중소기업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주주인 서울신문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국내 신문 중 최고인 106주년을 넘겼습니다. 1세기가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격변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울신문은 굳건히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이신문 전체가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은 종이신문의 뉴스콘텐츠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를 강화하고 영상콘텐츠사업을 진흥하는 등 신문, 온라인 모바일 그리고 영상 이 3대 축으로 복합미디어 기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보도사업신청자 중에서 유일한 종합일간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콘텐츠 제작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종합일간지라는 전통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도 중앙관사를 포함해서 수도권, 지방 그다음에 해외 특파원 등 많은 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경제지나 라디오 등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뉴스룸의 설치 그리고 2013년에 상암동에 준공이 되는 디지털미디어센터, 이것은 방송과 융합하려는 우리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 자회사인 STV를 통한 기자의 방송훈련 등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보도채널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보도사업신청자 중 유일하게 사원 주주들로 구성된 사주조합이 제1대 주주인 독립언론입니다. 바로 정부, 대기업, 특정 종교, 특정 사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뉴스 컨소시엄 역시 서울신문을 대주주로 74개 소액 중소기업 주주들로만 꾸렸습니다. 이는 공정한 보도채널 방송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신문은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첨병이 바로 보도채널입니다. 서울신문의 뉴스제작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뉴스 콘텐츠는 케이블을 통해, 위성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모바일을 통해 태블릿PC 등 뉴디바이스를 통해 널리 유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이어서 최대주주 대표자이신 이동화님께서 또 다시 3분 범위 내에 발표하실 수 있는데 발표하시겠습니까? 발표하십시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그러면 서울뉴스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주주의 성격과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구조로 볼 때 공정성의 핵심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목

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공적책임 부분에서도 다른 신청자에 비해서 확실합니다. 서울뉴스는 국민 소통, 국격 향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 글로벌미디어 지향이라는 4가지 방송이념을 설정했습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으로 서울뉴스가 국가 이익과 사회 화합 그리고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뉴스의 자본금은 551억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00억원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여유자금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000억원 매출로서 이븐포인트를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설령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또 구성하는 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요주주인 서울신문의 여력이 그때쯤에는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암DMC의 준공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뉴스의 목표는 더 좋은 방송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쌍방향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방송사보다 많이 만듭니다. 트위터 등 SNS의 장점을 방송에 도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시청자가 가상목표를 꾸미고 고정프로그램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사이버 정책토론은 주요쟁점을 미리 상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 1인 다역을 통해 경상비를 절감하되, 교육훈련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할 것입니다. 전체 편성 가운데 많은 부분을 서울신문과 제휴해 훈련된 서울신문 기자들을 적극 활용해 심층적으로 보도프로그램을 생산하고 STV 등 자회사 등을 통해 유통망을 적극 확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영어방송을 정례화 하는 등 전 세계에 정착한 교포는 물론 뺏어나가는 국력에 걸맞게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민 통신원의 확대, 다민족 가정의 확대에 따른 소통도 필요합니다. 주요 선진국과의 FTA 확대가 가져올 방송시장 개방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서울신문이 주요주주인 서울뉴스는 공정성과 공익성 및 사업성에서 어떤 다른 신청자보다도 확실한 비전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가칭) 서울뉴스의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사가 보도PP를 승인받을 경우 지역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서울신문은 그동안 사실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군 모범용사 초대행사, 교통문화발전대회, 교정대상 등 다른 회사들이 주로 수익적 목적의 행사를 벌여왔지만 저희 서울신문은 수익과는 무관한 사회적 행사들을 많이 벌여왔습니다. 서울뉴스 역시 서울신문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 받아서 사내·외 인사 5명 정도로 구성된 사회공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서울뉴스의 사회공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최근 가장 큰 사회적 공헌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뉴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창사 첫 해에 00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해마다 0~0%씩 추가 채용을 할 것입니다. 이 인원 채용은 동종업계 경력자를 빼오는 채용방식에서 벗어나서 신규인력은 대학 관련 학과에서, 고급인력은 방송분야 퇴직자와 신문기자의 재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이미 YTN이나 MBN과 같은 기존 보도PP가 있고 지상파 방송사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PP도 승인되면 보도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귀 신청법인이 기존 보도PP 또는 신규 종편·보도PP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편성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송석형 (가칭) 서울뉴스 편성책임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본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후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강점이 될 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모두에 말씀 올렸지만 종합일간지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면서 소위 기사취재 네트워크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포츠서울 인력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V, CATV를 인수해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교육도 시켰지만 거기에서 노하우를 계속 쌓아왔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경제뉴스 그리고 사회뉴스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청취뉴스는 상당히 뒷자리이고 그리고 의외로 스포츠뉴스가 많았습니다. 스포츠뉴스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이런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적합한 전달력 또는 취재능력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작하는 능력만 기른다면 대체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종합일간지와 같이 서로 협력할 때에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아사히신문, 아사이TV 그다음에 마이니찌 신문과 니혼텔레비전 협력을 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존 선발매체와 선의의 경쟁을 충분히 벌일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러면 귀사가 제시한 사업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한 사업수익성에 대한 전망치가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를 자금조달 및 자금운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지금 551억원을 자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해인 2011년에 방송장비 구입으로 약 000억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000억원 이상의 유보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00억원 정도가 없었는데 이것은 기여금이라든가 그 밖의 이유로 우선 쓰여지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약 000억원 정도의 유보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보금은 2000년까지 누적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영안정성 확보에 어떤 불모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다 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저희로서는 우선 차입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울뉴스는 좋은 뉴스를 제작해서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증자라든가 그것은 그다음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암 DMC라는 아주 중요한 자산을 방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2013년에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신청하신 보도PP명이 (가칭) 서울뉴스인데 보도 대상은 전국에 있는 전 국민입니다. 귀사의 사업계획서 첫머리에 보면 서울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방송이기에 이름을 서울뉴스로 정했다라고 해 놨는데 이는 지역갈등의 해소라는 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그 이야기는 아마 주 시청자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력하겠다, 그런 의미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방발전에 대해서는 이름 가지고 좌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 서울신문의 경우도 서울에서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국 종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뉴스도 서울 쪽을 주력해서 그쪽에 말하자면 시청자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된 것이지, 이것이 지방발전을 편파적인 지방발전에 요소가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거울삼아서 더욱 지방 상생발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지금 생각은 나지 않지만 사업계획서에 기자들을 선발해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방의 주재 기자를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현재 서울신문은 각 도나 물론 시 단위는 많지만 도 단위는 2명 정도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것보다 2~3배를 더 확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방발전이라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떻게 인력 수급을 하느냐, 그 문제는 역

시 방송을 해 가면서 그 숫자는 늘어날 것이고 초기단계에는 서울신문 쪽을 상당히 활용하고 1~2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시작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인원을 늘려서 그쪽만 별도로 서울뉴스만의 별도 조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 송석형 (가칭) 서울뉴스 편성책임자

-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신문의 전국 지사와 지방주재 기자는 영상뉴스까지도 생산을 해 내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케이블TV와도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서 전국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가칭) 서울뉴스의 대표주자인 서울신문의 출자능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사가 설립자본금 총액 551억원의 29.9%인 165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의 2009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가용현금자산도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에서 현금흐름도 마이너스이고, 또 신용평가등급도 BBB+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과연 이 165억원이라고 하는 출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상당히 의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이신문이 위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취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신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사옥이 감정가 기준으로 0000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활용하면 용자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용자이겠습니다. 저희가 상암DMC로 가게 되면 다른 사옥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용자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BBB+라는 것은 신문사 사정으로 봐서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흑자이고 아마 금년에도 흑자가 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551억원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30% 수준인 165억원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담보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해서 출자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현재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 00억원 정도이고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00여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통한 수익을 하느냐, 아니면 서울뉴스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금출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를 통해서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000억원 전체 이자비용이 연간 00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 3분의 1을 받는다면 약 0억원 남짓한 이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출자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뉴스의 주주구성을 보면 서울신문사가 29.9% 지분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0.1%는 다수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출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주 구성이 다양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액주주 중 일부가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자 서약서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를 약속한 주주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물론 출자 서약서들을 다 받았습시다. 그러나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많으면 10% 정도까지 구멍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 사실은 사원 중에서도 그렇고 개인이 주주가 되겠다는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신청요건상 개인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멍 난 부분을 메우는 데는 개인 주주라든가 지금 희망하는 또 다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답변이 되셨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귀사는 사업계획서의 구성주주인 중소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습니다. 일정 규모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구성

주주 모집 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또한 사회적 문제의 범인은 배제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밝혔는데 법인 자체 또 대표자 실사주, 이 셋 중에 어느 누구라도 문제가 된다면 구성주주에서 배제했다는 그런 뜻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74개 주주를 3으로 곱하면 220명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작업을 거치셨는지, 거쳤다면 어떤 내용으로 거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저희가 74개 유망 중소기업으로 구성했다고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공정성이라든가 외부로부터의 압력 배제 이런 장점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만 그 외에도 주주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조업, 유통업, IT기업, 친환경기업들이 많이 있고 특히 전국에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주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뉴스에 치중한다는 부분도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주주로만 구성해서 정부, 대기업, 특정 종교 이런 데 휘둘리지 않는다는 장점 외에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 답변이 미진했습니다만 지방상생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자본을 배제하고 지역 연고의 우수한 중소기업만 주주로 참석해서 자본의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내 TF에서 신청법인을 검증했습니다. 기준은 대표의 불법성 여부와 과거의 부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답변이 충분합니까?

○ 심사위원

- 지금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다,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 일정 규모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하다는 취지입니다. 검증작업을 부도 여부라든지 비리 여부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한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그것은 실무를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좋습니다.

○ 김상혁 서울신문 보도PP 추진단 국장

- 의견청취 참석자 4번 김상혁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라고 한 부분은 일단 중소기업중앙회 쪽에서 추천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증시스템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TF팀에서 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또 환경기업의 경우에는 재 활용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 심사위원

-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 질문에는 조금 미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중소기업단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환경단체, 이런 단체 추천이 있으면 다른 검증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주주로 채택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상혁 서울신문 보도PP 추진단 국장

- 그런 뜻은 아니고 건전성과 그다음에 사회의 불건전한 업종 등 그런 부분들은 다 배제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서울뉴스는 방송기술개발에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190페이지를 보면 서울뉴스는 자체로 기술연구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구성인원이 OO명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방송작가 O명, 영상촬영 O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술연구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인력 중에서 방송작가라든가 영상촬영 O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송석형 (가칭) 서울뉴스 편성책임자

- 방송기술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계획안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원래 초기 단계라 테스트포스팀의 성격이 강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처음 저희들 회사가 태동하면서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휴해서 여러 가지 R&D 작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구성된 부분은 제가 편성 쪽에만 주로 종사했었기 때문에 실무자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김진호 (가칭) 서울뉴스 보도PP 추진단 과장

- 의견청취 참석자 6번 김진호입니다. 처음에 질문 주신 기술연구소 내에서 구성인원이 작가나 기획자가 함께 있었던 이유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뉴미디어형 혹은 융합형 미디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단순 기술개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라든가 방송 중에서 나온 것을 통계로 나타내는 융합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제작방향이 나와 있어야만 그것에 따른 제작기술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술개발 분야에 있어서 지금 모든 뉴스나 공중파에서도 쌍방향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전개 상태가 아직 미미한 수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도전문채널로서 단순

히 저희 프로그램을 잘 만들겠다는 이념을 넘어서 전체 방송시장의 기술 상향화를 시킬 수 있는 것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핵심 경영전략 중에서 퇴직한 방송전문인력과 퇴직한 신문기자 인력을 재교육하셔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면이 효율성이나 전문성에 이 조직에 있어서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퇴직 신문기자라든가 퇴직 기술자의 활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기술인력은 의외로 시장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조기퇴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 신문기자의 경우에는 꼭 퇴직이라고 하기보다는 신문기자가 방송기자가 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신문기자를 오래 해 봤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방송으로 넘어가서 일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뉴스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취재해서 기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직업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기자가 방송기자가 되는 데에는 나름대로 적응훈련을 거치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잘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 편성책임자로 앉아 있는 송석형 씨의 경우에도 동아일보에서 SBS의 창설요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송에 적응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밖에도 몇몇 사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논리가 아니고 신문기자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는 방법론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력을 최대한로 말하자면 활용을 하자는 측면입니다. 물론 재교육하는데 돈이 듭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막상 제작에 임했을 때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서울신문기자들이 한 200명까지 뉴스 쪽지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STV를 인수한 이후 계속 거기에서 뉴스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 부분 만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자들 업무가 사실 굉장히 많습디다만 방송을 같이 한번 해 보라 하는 데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방송참여에 대한 열의가 전사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석형 (가칭) 서울뉴스 편성책임자

- 제가 조금만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퇴직 신문기자 또는 현직 신문기자의 방송기자 전환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송기자의 필수적인 역량이라는 것이 취재능력 또 기사 작성능력, 여기에 제작능력과 전달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밖에 또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이런 점입니다. 저는 신문과 방송을 절반쯤 해서 33년 가량 언론기관에 몸담았었는데 취재와 기사 작성능력이 그쪽만 본다면 신문기자가 결코 방송기자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본인이 노력해서 전달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동안 훈련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런 훈련프로그램을 아주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귀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138쪽 <표> 인력계획에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의 경우 전체 인원 000명 중에서 00명, 즉 00%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은 2011년도에 00명, 즉 00%에서 출발해서 매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2쪽에 있는 <표>를 보면 서울신문사는 비정규직 규모를 연차별로 하향조정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이한 내용인데 한쪽에서는 비정규직을 높게 채용했다고 <표>를 제시하고 뒤에 가보면 연차별로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상호 모순된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이 청년실업 해소나 새로운 보도PP, 인력구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초창기에는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계획서상에 비정규직을 초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38쪽과 142쪽이 상충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개념은 이렇습니다. 초창기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비정규직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해서 정규직화해서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퍼센티지와 숫자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10%면 10명인데 300명에서 10%는 30명입니다. 그것이 9%일 경우에도 27명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개념은 초기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사업이 진행되면 비정규직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은 정규직화 해서 비정규직의 퍼센티지를 줄여나갔다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제시한 <표>를 보시면 2011년도에는 000명 중에서 00명에서 비정규직 포션이 00%입니다. '12년도에는 000명 중에 00명에서 00%, '13년도에는 00%, '14년도에는 00%, '15년도에는 00%, 점차 비정규직이 절대 인원수도 많아지지만 퍼센트로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연차별로 하향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138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도에는 000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00명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을 보면 000명 중에서 00명입니다. 이것을 기획한 사람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좋습니다.

○ 박재범 (가칭) 서울뉴스 이사  
- 3번 박재범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 비정규직을 제작 부문이나 이런 데에서 안 쓸 수 없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방향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하는 복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비율에서 대략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급격하게 줄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가 고민인 것이고 여기에서 <표>를 이렇게 해 봤지만 하다 보면 기본정신에서는 앞으로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여나겠다는 정신을 표방한 것이고, 현실 쪽에서는 약간 숫자에서 확연하게 줄어드는 수치까지는 못 만들었다고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추정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70페이지 보면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계획에 2014년에 〇〇억원, 2015년에 〇〇억 〇〇〇〇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6페이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작성한 투자활동 소요자금에 보면 2014년에 〇〇억원, 2015년에 〇〇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재무제표 작성할 때 사용된 자료와 뒤에 있는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진호 (가칭) 서울뉴스 보도PP 추진단 과장  
- 의견청취 참석자 6번입니다. 처음 초기에 사업구상을 할 때 단계별로 기술적 투자를 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초기에 100%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적 내용이고, 170페이지 <4>번에 되어 있는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계획은 저희가 이 자료를 수정 요청해서 보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정된 자료에는 삭제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정된 자료의 효력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승인됐습니까?

○ 심사위원  
- 그 보정자료는 제가 확인한 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희가 귀사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보고서를 읽고 느낀 점 중의 하나는 서울뉴스가 지향하는 뉴스채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내외에서 (주)서울뉴스가 지향하는 그래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그런 뉴스채널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귀사의 여러 가지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바에서 글로벌 미디어 육성이라고 하는 이번 보도채널 승인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우리 사회는 신정보통신 방송기술의 발달로 뉴스와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혼란과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 특히 방송의 뉴스나 정보처리 형태는 뭔가 전달하기에만 급급합니다. 나라의 방향과 중심을 잘 잡게 하고 미래로 바로 나가게 하는 올바른 뉴스와 유익한 정보, 그리고 창조적 지식의 선택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서울뉴스는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소통과 국격, 미디어융합 그리고 글로벌보도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공정성·공익성 등을 우선하는 미래 지향적 보도전문방송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보도방송 쪽에 상당히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미주 한인유선방송사와 콘텐츠를 공동개발하고 제작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서로 공동취재하고 영상자료와 기사 소스를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해외 영상물 제작도 가능합니다. 주요 행사 및 이벤트를 공동 개최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OD 등 신규사업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등 한국인이 많이 진출한 국가의 공공장소와 제휴를 체결하여 시청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 서울신문사 해외 특파원 파견지역을 연결하여 현지 소식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추가로 서울뉴스 특파원을 파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통신원을 모집 채용해서 국내에서 교육한 뒤에 실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방송 콘텐츠 전시회에 출품도 하고 매일 30분 영어방송, 그것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대학 등 해외 주요 명문대와 그곳의 유명한 방송제작팀이나 이런 데와 제휴해서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FTA 발효에 따른 방송시장 국방에 대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신 해외 프로그램의 수급정보와 그다음에 우수 프로그램의 선구매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제작사 또는 전문대행사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구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지금 글로벌미디어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뉴스의 임원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다시 문제들을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 송석형 (가칭) 서울뉴스 편성책임자

- 제가 한 말씀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보다는 스스로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질문하시면서 기존 PP와 경쟁방안을 말씀하셨을 때 그런 맨파워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PP와는 아주 다른 그런 편성 차별화를 통해서 지상파 뉴스와 경쟁하는 그런 체제를 갖춘다는 점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도 사실 앞선 심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이 되는 성격인데 지금 이번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이 심사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4가지 중요한 정책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글로벌미디어로서 방금 말씀하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에 새로 선정되는 보도PP의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미디어사업자인 CNN, BBC 또 최근에 아시아나 중동 쪽에서 등장하고 있는 보도전문사업자들과 진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서울신문의 경우 그간에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물론 종합신문사이기는 합니다만 신문보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글로벌한 관점에 있어서 어떠한 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앞선 심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미디어사업에 관련된 계획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해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라든가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어를 활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글로벌 사업자와의 진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포부,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지금 이 부분이 썩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뉴스의 방송을 비롯해서 지금 CNN 이런 데와 말하자면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보도PP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와 FTA가 발효되면 틀림없이 방송시장도 개방이 됩니다. 개방됐을 때 말하자면 밀려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송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많이 준비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주요 방송사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저희가 유념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뚜렷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송석형 (가칭) 서울뉴스 편성책임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외국의 호텔과도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와도 연계해서 제휴하고, 지금 대개 사업 신청단계에서는 MOU 체결이 제일 많은데 저희들도 계속 늘려나간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3분 남았는데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 그렇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서울뉴스의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기존에 친정부적인 이미지들이 일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의 주요주주를 보면 현재도 기재부가 30.2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부 남아 있던 이미지라든지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으로 인해서 방송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좀 남아 있군요. 저희 서울신문을 최근에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편집국장 직선제에서 사장 임명제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바꾸고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한 번도 공정보도라든가 편향성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원 주주들이 구성된 사주조합이 제1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랄까, 그 사람들의 공정성이랄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몇 번만 봐도 당장 아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감안하셔서 이동화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가칭) 서울뉴스 대표자 / 최대주주

- 오랜 시간 청문회에 수고해 주신 심사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신문은 2013년 상암DMC에 입주하면 자금에서 여유를 갖게 됩니다. 서울신문은 올해도 흑자를 냈고 작년에도 흑자를 냈고 또 신용등급에서도 작년보다 두 단계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보도채널을 운영하는데 재정적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서울신문의 보도채널을 허가할 경우에 투명경영은 당연하고 신문이 전파에 흐르지 않듯 보도채널도 편성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오랜 동안 서울과 지방, 국제의 종합뉴스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들은 약 200명이 그동안 방송제작 경험을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부문에서 뉴스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라든가 일부 뉴스에만 국한된 타 사업 신청자에 비해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뉴스는 서울신문의 존재 목적처럼 국가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서울뉴스는 이를 위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방송사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정책에 대한 다각도의 입체적 보도를 통해서 국내 여론의 합리적 형성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문, 방송 융합시대를 맞아 서울신문은 공정성·공익성과 제작능력 부문에서 어느 사업 신청자보다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객관

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채널 허가를 내주시면 국가나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으며 오히려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견청취 지침과 시간을 충실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청취에 참석하셔서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칭) 서울뉴스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보도PP 신청법인 추가 의견청취 속기록

- 12.27 (월) 14:00,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 -



---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 관련 추가 의견청취 속기록

---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신청사업자 중 (가칭) 굿뉴스의 적격 여부심사를 위한 추가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칭) 굿뉴스가 어제 의견청취 이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가칭) 굿뉴스 대표자이신 김관상님 맞습니까?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가칭) 굿뉴스의 구성주주인 OOOOOOOOOO 전무이신 OOO님 맞습니까?

○ 전무

- 예, OOO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가칭) 굿뉴스의 사업계획서상 OOOOOOOOOO의 최대액출자자인 OOOOOOOOOO 대표자 OOO님 맞습니까?

○ 대표자1

- 예.

○ 심사위원장

- (가칭) 굿뉴스의 12월 26일 답변서상 OOOOOOOOOO의 최대액출자자인 OOOOOO의 대표자 OOO님 맞습니까?

○ 대표자2

- 예, OOO입니다.

○ 심사위원장

- 어제 의견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가칭) 굿뉴스 보도전문PP에 대해서만 별도의 의견청취를 열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 모든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열리게 된 만큼 의견청취 대상자는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과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하여 참석자 분들께서는 심사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것이며,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의견청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1분 이내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경우 제한된 시간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두발언 없이 심사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심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OOOOOOOOOO라는 회사가 있는데 편의상 OOOO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OOO이 한국 OOOO이 있고, 미국 OOOO이 있는 것은 맞지요?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OOO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OOOO이 한국 OOOO 주식을 OO% 가진 것이 맞습니까?
- 전무
  -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 전무
  - 금년 9월 말경에 그 지분을 다 매각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매각 인수한 회사는 어디이지요?
- 전무
  - 인수한 회사는 OOOOOO입니다.

- 심사위원
  - 000님에게 여쭙보지요. 인수 매각 대금은 얼마입니까?
- 전무
  - 매각 대금은 000억원입니다.
- 심사위원
  -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습니까?
- 전무
  - 예.
- 심사위원
  - 언제 이루어졌지요?
- 전무
  - 9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 심사위원
  - 다시 000님께 계속 여쭙보겠습니다. 그렇게 매각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매각을 하셨습니까?
- 전무
  - 0000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외에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기 위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또 전략적으로 000000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타 사업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심사위원
  - 매각대금은 미국 0000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 전무
  -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 심사위원
  - 상식적으로 봐서 매각한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매각한 것이지, 인수한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인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전무
  - 물론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그 자금이 0000 주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0000는 설명드리자면 현재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이고 그 회사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또 OOOO는 저희 같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필요해서 옆에 계신 OOO 대표께서 OOOO 주식을 취득하고 저희들은 OOO에 매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심사위원

- 마지막으로 OOO님께 여쭙보지요. OOOOOO 또는 OOOO 지금 취급하는 업종이 무엇이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전무

- OOOOOO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홀딩컴퍼니이고 또 OOOO는 금융기관의 스캐너, 수표라든지 기타 장부들을 스캔해서 보관할 수 있는 스캐너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또한 투자에도 같이 겸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김관상 대표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보도PP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입안을 하셨습니까?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작년 8월부터 기획은 같이 되었고, 본격적인 것은 3~4개월 전부터 함께 일했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외국법인이나 또는 외국인이 10% 이상 가진 대주주인 법인이 구성주주로 10%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예, 알고 있었습니다.

○ 심사위원

-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은 언제 하셨습니까?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12월 1일에 했습니다.

○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질문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56쪽과 부록에 나와 있는 OO% 부분까지는 제가 나름대로는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의 착오뿐만 아니라 저도 부족했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된 뒤에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서류들만 보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12월 23일에 주주 구성하고 특수관계자 관계 서류로 질문 보내신 것 알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다 보낸 줄 알고 실무선에서 깊이 있게 그 의도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 또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우리가 된 데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OO%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실무선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3일에 보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나온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 물으시는 줄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사위원
  - OOO님께 여쭙보지요. 아까 주식 양수도가 9월 말 또는 10월쯤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전무
  - 예.
- 심사위원
  - 지금 주식 양수도에 대한 증빙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 전무
  -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양수도 계약서, 또 다른 것들은 없습니까?
- 전무
  -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입니다.
- 심사위원
  - 양수도 계약서가 있으면 아까 대금도 다 결제했다고 하셨으니까 대금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것이고, 회사가 OOOO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내용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전무
  - 저는 OOOOOOOOO에서 관리에 관한 부분만 담당하고 있지, 주식이 예를 들어서 신고되고 이런 것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같이 오신 000님이 알고 계십니까?
- 전무
  - 신고 부분은 0 대표한테 여쭙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신고 부분 말고도 지금 심사위원회에 주식이 양수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전무
  - 양수도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우리는 양수도 계약서만 가지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 전무
  - 신고 부분은 0 대표가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대표자2
  - 000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 말에 0000 자회사 100% 00억원짜리 0000000 신설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신규사업을 모색하던 도중에 성장성과 가치가 높은 0000000000라는 물류회사 쪽을 같이 윈윈전략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10월에 000억원이라는 자금을 주고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돈에 대한 정황, 흐름, 증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세금 관련된 신고는 양쪽 당사가 합의하에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또 관련기관의 금감원이든 거래소든 다 신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또 보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오늘 오실 때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 대표자2
  -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 부분은 일부분만 요청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한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식 양수도가 진실되게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 확인은 양수도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 대표자2
  - 예, 잘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주식 양수도 대금이 실질적으로 오가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 대표자2
  - 실제 자금거래는 이루어졌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외국법인인 OOOOOOOOOO에 OOO억원을 송금한 영수증이 있습니까?
  
- 대표자2
  - 저희가 국내에서 자금 결제가 이루어져서 그 자금이 저희 쪽에 다시 사업성 증자 관련되어서 증자로 다시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참 이상합니다. OOO이 미국 법인인 OOOO이 보유한 한국 OOOO 주식을 사면서 그 대금은 다시 돌아서 OOO에 갔다는 뜻이네요? 그것 불법 아닙니까?
  
- 대표자2
  - 아닙니다. OOO에서 미국 법인이 한국 주주를 가지고 있는 미국 법인에 저희가 일정 대금을 지불하고 다시 그 자금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률 검토를 마치고 다시 그 돈이 제3자한테 주식으로 증자할 수 있게끔 대여가 되어서 저희 회사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업성으로 원원할 수 있는 저희 회사와 또 최대주주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원원전략으로 이루어진 출자방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무법인에서 다 검토했던 사항이고 관계기관에 다 신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한 자료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오늘과 내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주식 양수도에 대해서 세무신고하셨습니까? 세무신고도 안 되어 있고 대금도 송금이 안 되었는데 당초의 사업계획서에는 미국 법인인 OOOO이 OO%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100% 다 OOO이라는 회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식 매매계약서 외에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적법한 세무신고서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 심사위원이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 대표자2

-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황상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된 자료가 세무 관련된 신고도 있겠지만 관련기관에 저희가 신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바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서류의 진위성이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안 되신다면, 충분히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한번 마지막 서류 제출할 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000은 예정되는 굿뉴스에 00억원을 출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미국 법인인 0000으로부터 한국 0000을 000억원에 인수하고 그런 이후에도 다시 굿뉴스에 00억원을 출자할 재원이 있습니까?

○ 대표자2

- 0000와 000000가 합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0000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000000는 투자전문회사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2009년도 신설법인입니다. 그 용도가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 심사위원

- 합병신고 언제 하셨지요?

○ 대표자2

- 2010년 11월에 했습니다.

○ 심사위원

- 11월이면 여기 사업계획서 제출 전이면 상장회사인 0000가 이 출자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하셨습니까?

○ 대표자2

- 예, 했습니다.

○ 심사위원

- 굿뉴스에 00억원 출자한다는 것 공시하셨습니까?

○ 대표자2

- 아닙니다.

○ 심사위원

- 공시 안 했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대표자2

- 최종하지만 실제 투자는 OOOO에서 투자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증자를 할 때 저희가 증자계획 속에 자금의 조달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까지...

○ 심사위원

- 증자가 아니라 한국 OOOO이 굿뉴스에 OO억원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한국 OOOO에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OOO은 합병되고 소멸되네요?

○ 전무

- 위원님 질문에 OOOO 전무이사 OOO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 주체는 한국 OOOOOOOOOO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OO억원 마련은 저희들이 그동안 영업이익으로 유보된 자금과 그리고 저희들 회사의 주주회사인 OOOO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OOO억원 정도의 증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OOO억원 정도는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저희들 회사로 증자를 받아서 그 증자대금으로 굿뉴스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한국 OOOO 재무제표를 보면 2009년 말에 한국 OOOO의 자본금은 O억원이고 순자산 가액은 O.O억원에 불과합니다. OO억원 재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OOO이 (가칭) 보도PP 제출하기 전에 이미 합병돼서 소멸한 법인이라면 OOOO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출자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시 공시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된 것이 있습니까?

○ 전무

-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재원에 대해서 현재 2009년 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O억원 정도의 유보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매출액이 2009년도에는 OOO여억원이었지만 2010년도 매출액은 예상하기에 OOO억원에 달하는 등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경상이익만 예상하더라도 저희들이 O~O억원 정도의 경상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원이 생깁니다. 두 번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OOOO에서 투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OOOOOOOOOO에서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주회사인 OOOO는 현재로서는 OOOOOOO가 저희들 주주로 되어 있고 그 주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OOOO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주주회사인 OOOOOOO는 공시할 책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대금을 한국에 있는 미국 법인인 OOOOOOOOOO의 적법한 당사 회사에게 송금한 영수증과 세무 신고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전무

- 그것은 오늘, 내일 중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000님께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0000에서 000억원 정도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가 000억원 유상증자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실패하면 출자계획은 무산되는 것입니까?

○ 대표자2

-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 결산이 끝나는 전후로 해서 실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자금조달에는 저희가 안고 있는 부채상환도 있겠지요. 저희가 증자방식이 제3자한테 배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이 아니라 주주배정입니다. 저희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요주주들도 회사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재원들을 다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제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배정으로 실시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주주들의 자금과 책임경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자금들입니다. 저희가 내년 3월이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신규사업이 정착되는 한 해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금조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금조달입니다. 주주 분들께서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증자에 참여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000님께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0000이 굿뉴스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출자한 돈을 어떻게 언제 회수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대표자1

- 먼저 간단히 제 개인 소개를 하면 '77년도에 미국 가서 0000의 미주 로컬기자로 입사를 해서 1985년도에 서울 0000의 기자로 재입사해서 25년 동안 미주 0000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회사 0000이 역사는 3년밖에 안 됐는데 언론사에 25년에 근무하면서 제 국적은 미국으로 되어 있지만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신문시대는 거의 내리막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CBS와 연결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바른 보도채널을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회사는 당장 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냐 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오늘 추가자료 가져 온 것 중에 우리가 1년 동안 지난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0000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화물만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물류 로지스틱스 시스템을 셋업하는데 1년 정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상반기에는 그런 조직 구성하는데 세월을 보냈고, 2010년부터 2011년도, 내년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747화물기 1대가 100톤인데 우리가 2008년도에는 0000톤, 00대 분량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000대 분량, 금년도에는 000대 분량을 날랐는데 지난주 24일에 내년도 물량배당이 나왔는데 000대, 000대 분량을 배당받았

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왜 이렇게 이익을 못 봤느냐 하면 마스크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류 파동 때문에 항공사가 고액운임을 하는 바람에 물류회사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의 물량 소화만 해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이익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유상증자의 한 목적은 우리가 항공화물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OOOO가 OO조원 투자할 때 참고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아무래도 물류사업을 확대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관상 대표님 또는 OOO님께서 답해 주실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가칭) 굿뉴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도채널PP에서 승인이 된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승인이 된다면 3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 요건으로 이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1년 내 증자라든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본의 조달, 능력, 계획 또는 자본의 건전성 또한 대표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관상 (가칭) 굿뉴스 대표자

- 대표 김관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방송은 OO월 O일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SO 론칭이 해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규에 따라서 새해 초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종편채널이나 보도채널이 대부분 내년에 바로 방송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OO월에 방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CBS가 이미 농수산홈쇼핑도 가게 되고 시설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자들도 CBS 기자 가운데 43%가 뉴스온으로 오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도 있는 것도 쓰고 또 재활용하고, 리모델링하고 중계차를 3대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SNG가 있는 것이 한 18억원이고 나머지는 휴대용 SNG입니다. 인력도 그렇고 내년 OO월이기 때문에 법인은 설립하더라도 준비는 점차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영업이익에 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수한 CBS 인력도 있고 또 CBS의 방송장비도 있고 시설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잘 생각해서, 그래서 내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후 내년까지 들어가는 것이 OOO억원 정도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캐시 쪽 수지 플러스로 되는 것이 2000년, 2000년에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OO억원 정도 당기순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광고국장도 해 봤고 경영의 기본도 좀 알고 또 최대한 짜임새 있게 써서 한다면 저는 사업계획서 낸 대로 해도 별무리가 없다, 내년 OO월에 방송하는 것을 아시고 또 CBS 시설 또 인력 이런 부분을 많이 재활용 계획이 완전히 오게 되면 제가 볼 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

- 방송은 OO월에 론칭이라 하더라도 법인설립은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가칭) 굿뉴스 대표자

- 법인설립은 당연히 석 달 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CBS도 작년에 00억원 적자 났지만 그것은 OBS와 감가손 때문에 그랬지, 제가 얼마 전까지도 파악해 본 결과는 CBS에도 현금 쪽이 거의 00억원, 00억원 정도 되고 또 투자하실 분도 있어서 석 달 안에 법인 설립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제 질문으로서 마지막으로 000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자본의 건전성과 대표의 건전성 등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경력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칭) 굿뉴스에 대한 투자의 개인적인 동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 답변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방송사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수익성도 별로 없을 텐데 투자하시는 의지를 저희가 존중하기 때문에 여쭙보는데, 언제 굿뉴스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또 언제 굿뉴스 쪽과 접촉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표자1

- 제가 거주하는 데는 LA에 있습니다. 제 소개사항에 하나 빠진 것이 제가 10년 전에 미국의 1.5세, 2세의 한인들을 위한 코리안 아메리칸 야후 같은 크리스찬을 기본으로 한 포털사이트를 제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것이 150만불 정도 투자했는데, 그러면서 지난 3년 전부터 굿뉴스의 모체인 CBS의 본사와 한 20%나 30%는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70~80%는 소위 미주 교포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적인 텔레비전을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던 중에 금년 초에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국에 추진하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한국에 보도채널이 생긴다면 제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니까 000000가 한국의 000000000를 인수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 대표자1

- 그것은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만 전혀 거기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 심사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

- 보충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 대표님께서 좀 전에 말씀 중에 결국 해석해보면 개인적으로 (가칭) 굿뉴스에 00억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이십니까?

○ 대표자1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그렇다면 형식적으로는 한국 OOOO을 통해서 굿뉴스에 OO억원을 출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O 대표님이 자금을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 OOOO에 돈을 증자 형식이든 대여 형식이든 제공하고 그 돈을 가지고 굿뉴스가 출자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겠군요?
  
- 대표자1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 대표자1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OOOO가 될 때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여기 자격심사에 외국인 투자가 위배되어서 자격 초기에 탈락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정정이 가능하다면 제3의 다른 분을 내세워서라도 순수 100% 한국인 투자로 해서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제 의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김관상님, OOO님, OOO님, OOO님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굿뉴스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 종편PP 신청법인 의견청취 속기록

- 12.29 (수) 09:10,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 -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 관련 의견청취 속기록

---

### 【 (가칭) CSTV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사업자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2월 24일 추첨결과에 따라 의견청취는 (가칭) CSTV, (가칭) HUB, (가칭) 채널 A, 매일경제TV, (가칭) 케이블연합종합편성채널, (가칭) jTBC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견청취 대상사업자부터 들어오시도록 하시지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눈도 많이 왔고 날씨도 매우 추워서 오늘 의견청취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바쁘신 와중에 멀리 이곳까지 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불가피하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칭) CSTV의 종합편성PP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칭) CSTV 대표자이신 오지철님 맞습니까?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장운택님 맞습니까?

○ 장운택 (가칭) CSTV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방상훈님 맞습니까?

○ 방상훈 (가칭) CSTV 최대주주

- 예.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PP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과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

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하여 참석자 분들께서는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것이며,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의견청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하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3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의견청취 대상자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하지 않는 한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 대표자 중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외 배석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기립하여 답변하실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분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이신 오지철님께서 3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께 청문의 첫 순서와 모두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방송산업은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통융합 환경 속에서 다매체, 다채널 시대, 모바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한편 미디어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FTA로 인한 시장 개방 등으로 거대하고도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무한경쟁의 격랑을 헤치고 순항하기 위해 저희 CSTV컨소시엄은 재무의 건전성과 사회공헌 실적, 글로벌 역량과 방송사업 벨류체인상의 핵심 역량을 두루 갖추고 방송사의 운영과 방송문화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애정을 가진 000명의 진성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CSTV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추진해 나갈 4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편성의 독립성과 보도의 공정성을 지켜 나감은 물론 품격 있는 방송을 추구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영의 효율화는 물론 개방과 협력을 통한 상생경영을 추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시청자는 물론 외주제작사, PP, SO, 각급 교육기관, 각 지방, 해외 네트워크 등과 함께 열린방송,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방송, 수용자 중심의 방송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공정거래를 정착시킴으로써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이들이 창작 동기를 부여 받아 그들의 창작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5개국 54개 방송사와의 업무 제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수출과 공동기획·제작은 물론 안정적이고도 조직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홍보 유통시킬 수 있는 아워아시아 채널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최첨단 IT기술을

방송에 최대한 접목, 본격적인 융합미디어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디지털미디어 및 기술전문 자회사인 CS인터넷TV를 설립 유효한 사업모델로 육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 저희 CSTV는 우리나라 방송에 고착화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과 구태의연한 방식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창조적 파괴자가 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송을 열어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아시아 유료방송시장에 1등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방상훈님께서 3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상훈 (가칭) CSTV 최대주주

- 심사위원장님, 심사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편 승인 심사와 관련해 발언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커튼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려니 조금 이상합니다. 조선일보가 종편을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미디어 환경은 신문, 방송, 뉴미디어가 삼각축을 이룬 미디어융합시대입니다. 조선일보가 TV, 영상미디어에 진출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동안 방송시장을 주도해 온 지상파는 방송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포퓰리즘에 휩쓸려 왔다갔다했습니다. 드라마는 아침부터 패륜, 막말방송을 쏟아내며 가정의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 건전한 방송을 제공해 이런 왜곡된 방송시장을 바로 세워보자는 것이 종편을 신청한 저희들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종편에는 공익적 측면뿐 아니라 사기업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 선정에는 사기업으로서 경영능력을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300억원 내지 400억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사상 TV, 신문 다 합쳐도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CSTV의 자본금은 3,100억원입니다. 종편 사업의 성패는 자본금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자본금은 180억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매년 5,000억원의 매출과 수백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한국 신문산업에는 재벌과 종교단체가 뛰어들어 수천억원씩 쏟아 부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돈만으로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단적인 반증입니다. 종편이 성공하려면 초기 자본금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영진과 사원들의 진취적 자세와 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종편사업은 동시에 언론으로서 철학과 신념을 요구합니다. 종편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철학과 신념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방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CSTV의 주요주주들은 투자를 결정하면서 수익률과 같은 경제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방송을 한번 해 보자는 조선일보의 언론 철학과 신념의 공감에 흔쾌히 참여했습니다. 모두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진성주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간부들에게 위임해서 경영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CSTV도 경영을 오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저는 조선 종편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가칭) CSTV의 종합편성PP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심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귀사는 우리나라 방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사가 종편PP로 선정되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우리나라 방송은 현재 지상파가 일반 매출이건 프로그램 시청률이건 방송광고시장에서건 거의 80% 가까운 독과점 상황에 놓여 있다는, 물론 결과이겠습니다만 공통적인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의 비대화와 방만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과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어서 그러한 방만경영과 조직의 방대함, 그런 의미에서 경영 효율화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에 있어서도 어떤 차별성이나 변화하는 방통융합시대에 맞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어서 어느 채널을 돌리든 거의 비슷한 포맷의 비슷한 성향의 출연자들이 비슷한 성향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종편사업에 진출하는 저희 CSTV는 그러한 기존 우리 방송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첫 번째 정책 추진과제로 두고, 그다음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방통융합시대에 걸맞은 그러한 IT를 최대한 접목하는 프로그램들, 또 시청자들을 하나의 단순한 시청률을 올리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청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에서 단순 시청률을 올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시장을 처음부터 겨냥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금 콘텐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지상파3사가 종합편성방송으로 정착한 상황에서 귀 신청법인이 종합편성PP로 진입할 경우에 지상파방송사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편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택 (가칭) CSTV 편성책임자

- 지금 대표께서도 방향을 말씀하셨지만 저희 핵심 편성전략은 시청자가 적극 참여하는 방송,

그리고 소위 창의성 구현을 극대화시키고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편성, 그리고 N스크린을 360도 편성할 수 있는 멀티소스 멀티유즈 융합성프로그램, 통합미디어 콘텐츠를 총괄해 주는 N스크린 360도 편성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글로벌 협력 편성을 하는 쪽으로 편성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수행하려면 시청자의 의견과 시청자의 아이디어와 시청자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고, 또 외부 제작사와 협력하고 상생하고 서로 이익을 나눠 갖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글로벌한 것도 외국과의 공동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차별화된 콘텐츠가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별화 전략은 첫째는 우선 아류는 하지 않는 편성, 어설픈 면의 프로그램은 하지 않는 편성, TV 1.0 시대에 맞는 독창적인 스토리 및 아이디어를 개발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다음에 드라마 편성도 새로운 편성, 그리고 뉴스도 표현과 양식을 차별화한 메인뉴스를 만들고 이원화하는 시간들로 편성하는 편성, 이런 차별화된 편성을 저희 차별화 핵심전략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CSTV의 제일 중요한 큰 차별화는 편향적인 보도와 선정적인 상업성이 주를 이루는 방송시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와 건전한 즐거움을 주는 품격 높은 종합가족채널을 지향하는 채널 포지셔닝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이번 승인 심사에서 글로벌미디어그룹으로 향하는 의지와 계획은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귀사의 글로벌 비전과 실행계획을 귀사의 핵심 역량과 연계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모두발언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CSTV는 프로그램을 국내 4,800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적어도 아시아에 모든 시청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신과 자세로 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성 대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획편성에 중점을 제작은 과감하게 외주제작에 맡기고,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만 기획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진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염두를 두고 또한 그런 차원에서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워아시아채널 설립입니다. 우선 이것을 처음부터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2011년 처음 출범했을 때 2~3개월과 2000년 약 0년 0개월 동안은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추후에 중국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를 대표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아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에 또 투자를 받는데 장애가 없는 이 세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2000년부터는 블록 편성을 해서 적어도 하루에 0시간 정도씩은 이 세 나라가 아시아적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제작을 하고 때로는 공동제작을 하고, 때로는

독자적으로 제작해서 그런 아시아 밸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을 서로 상대방 채널에게 블록 전송하게 합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로컬채널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24시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로 물론 외국 구매가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아워아시아 로컬채널을 설립하고 그 이후 단계, 저희가 대략 2000년 내지 2000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성방송을 전 세계에 송출하는데 지리적으로 가장 이점이 있는 싱가포르에 아워아시아 헤드쿼터를 두어서 거기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글로벌 소구력을 갖도록 이렇게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5개국 54개의 외국방송 회사들과 제휴를 맺었습니다만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제작하고 프로그램을 교환하고, 특히 저희가 우리 프로그램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출발부터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저희 장점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한류 콘텐츠라는 것이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일부 동남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중남미 최대의 방송사인 멕시코의 텔레비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제외한 5대륙 모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와 유럽까지, 물론 중동을 포함하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언론사가 종합편성PP로 방송에까지 진출한 것에 대해 여론의 독과점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귀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그러한 우려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송에 있어서의 규제가 방송은 다른 신문과 달리 공공성과 공익성이 매우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규제가 있어서 언론사, 신문사의 여론의 힘, 영향력이 방송에까지 그대로 전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한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조선일보의 경우 제휴사와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청률을 환산했을 때 10%가 채 넘지 않습니다. 10%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송에 참여를 하더라도 지금 방송법에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한계를 제도적으로 넘지 않게 되어 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또한 특히 그런 사회에서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자각을 해서 조선일보의 언론사로서의 특히 1등 신문으로서의 영향력이 그대로 방송에서의 뉴스에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뉴스룸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종편사업자들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출발합니다만 물론 어떤 공간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통합뉴스룸 구성이 처음부터 구성했을 때 가지고 올 여러 가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감안한 탓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회의 그런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독자적으로 종편 스스로의 뉴스를 제작하고 보내는 그런데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한 여러 주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편성의 독립을 충분히 구현하겠다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제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신청인은 사업계획서 233쪽에서 2013년부터 이익이 발생한다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문사업 경력은 있지만 종편사업 경험이 없는 신청인이 본 사업 1년 만에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타사의 경우 매출액이 0000억원 정도 되어야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귀사는 2000년도 매출 추정액 0000억원 수준에서 이익이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상파들의 경영실적을 우리가 참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자본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충분히 0년째 full year로 방송이 시작되면 그 해 연말에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낸다는 것은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통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출의 기본구조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두 번째 SO로부터 시청자들이 내는 수신료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널리 판매하고 마지막으로 협찬을 받는 이 4가지 수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정확한 숫자는 아님니다만 대략 유료방송시장에서 지상파 계열의 PP를 제외하고 일반 PP들이 올린 광고수익이 약 5,00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새로운 매체들이 시장에 진출하면 일단 전문가들의 추정과 저희들이 광고주들과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약 00% 정도의 광고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강 2011년 정도 되면 PP의 광고시장이 적어도 0조원을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2012년 한 해 전체를 봤을 때 약 0000억원의 광고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쪽 광고주들과의 면담,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논 끝에 이 정도의 광고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배분의 경우도 물론 저희들이 로우티어로 들어가고 또 번호가 통일되고 낮은 번호로 들어갔을 때 SO들이 수신료를 과연 내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PP들의 경우도 수신료를 받고 있고 현재 다른 인접국들의 ARPU 시청가구당 시청료, 월 이용료의 비율이 GDP 대비 현저하게 낮습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보다도 유료방송의 월정 시청료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새로운 종편의 전술은 기존 SO들이 제대로 ARPU를 받을 수 있는, 특히 디지털시대가 되어서 많은 콘텐츠를 제작 편성하는 입장에서 SO들이 제대로 ARPU를 받아야 PP들에게 제대로 된 시청료를 배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수신료 배분을 모든 종편사업자들이 연대

해서 일정 부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판매 면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렸습시다만 국내 4,800만 시청자가 우리의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사람들만은 아니다, 그것은 1차적인 시청자일 뿐이고 적어도 일본과 중국, 동남아 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프로그램 대부분 특히 드라마의 경우에 사전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프로그램 방영 6개월 전에 광고를 선판매할 수 있고, 광고 선판매뿐만 아니고 제작비를 사전에 충분히 투자자들로부터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주위의 우려보다는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의 프로그램 퀄리티만 보장이 된다면 광고수익과 프로그램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매출은 기존 지상파와 비교해 볼 때 비록 2012년,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크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전체 비용 대비 매출을 올려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수익을 0년차부터는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1분 가량 초과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후속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자에게서 여러 가지 차별적 우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에 진출하시면 로우티어인데 신청인은 사업계획서 222쪽에서 광고시장 점유율을 2013년에 벌써 00.0%, '14년 및 '15년에는 00.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은 현재 SBS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출은 적지만 경비를 절감해서 이익을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작비 수준이 5년간 평균으로 보면 매출 전체 대비 00%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매출액 대비 제작비가 00% 수준에서 퀄리티 높은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비용구조에서 이익이 진정으로 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00.0%의 시장점유율은 유료방송에서의 점유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SBS와 평면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시장에서 저희가 개국한지 0~0년만에 00.0%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절박한 것이고 저희가 반드시 그런 시청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작비의 퀄리티 문제인데 저희가 비록 제작비가 그런 전체 총 매출에서 00%밖에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제작비를 많이 쓴다고 꼭 좋은 퀄리티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지상파와 철저하게 차별화된 기획편성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지금 여러 가지 지상파들의 제작비에는 이런 말씀드려 송구스럽습시다만 거품이랄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저희들이 볼 때 적어도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 즉 절약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같은 것도 저희들은 거의 자체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소수의 스튜디오 이외에는 과감하게 대부분, 특히 드라마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들은 외주를 줄 텐데, 그것은 제작사가 스튜디오를 알아서 임차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면 훨씬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즉 스튜디오를 스스로 만들어서 유지할 때 나오는 여러

비용들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건비를 다른 지상파와 비교해서 전체 비율 대비 OO%대로 3년차부터는 OO%율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록 아주 유능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방송계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비용 구조로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매우 낮다, 즉 고임금 저비용 구조로 철저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방송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88쪽을 보면 KBS1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채널이 오락과 드라마 중심으로 편성을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장르별 균형 편성을 위해서 2011년도에 보도편성 비율을 OO%, 교양을 OO%, 오락 OO%를 편성하시겠다고 제시하셨는데 2015년에 보면 교양이 OO%에서 OO%로 줄어들고, 오락이 OO%에서 OO%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시한 부분을 봤을 때 균형 편성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시작 연도와 5년 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장운택 (가칭) CSTV 편성책임자

- 지금 저희들이 정한 목표는 균형 편성이면서도 건전하고 품격 있는 방송을 한다는 그런 목표 속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상파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 중에 오락이라는 프로그램도 지상파 입장에서 보면 교양으로 분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지상파가 추구하는 것만큼의 오락은 절대로 하지 않고 또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그 범위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 속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OO%에서 OO%로 간 오락도 새로운 유형의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에 따라서는 오락이라고 정리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OO%의 오락으로 가겠다는 것은 종편이 시작되는 그 목표 중에는 건전한 방송과 건전한 오락을 하겠다는 목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역량을 키워서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약간 정도는 즐거운 방송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제가 잠깐 부연말씀을 올려도 좋다면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교양·오락프로그램을 심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보는 시청자 입장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편성에 포함되어 있는 100만대군 퀴즈쇼의 경우 보통 퀴즈프로그램을 지상파에서는 교양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오락하고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상파들이 요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철저한 시청자를 의식하는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식 오락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양을 아울러 갖춘 그런 오락프로그램을 추구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송법상 오락프로그램을 지상파의 경우에는 50%를 넘지 않게 되어 있고 지금 대부분의 지상파들의 경우에는 그 한계에 거의 가깝게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에 00%로 가더라도 지상파의 그 어떤 채널보다도 오락프로그램의 구성 비율은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익성을 기본으로 하되 수익성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약간 초기보다도 오락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품격 있는 오락을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느 연령대 분들이 봐도 좋을 그런 오락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귀 신청법인은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케이블PP인 비즈니스엔 등 다양한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는다면 종편PP를 통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이번에 정부가 종편사업을 허가해 주려고 하는 이유도 이미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문, 방송 겸영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사업적으로도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내왔다, 그리고 어떤 신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방송산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 나갈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을 주신 시너지 효과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두 가지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선일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신문이 지난 90년 동안 기사를 만들면서 확보해 놓은 엄청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송사업을 하면서 아주 유용한 콘텐츠의 소재가 될 것으로, 그리고 그 방대한 정보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엔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종편사업자에 비하면 방송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방송들과는 다른 차별화되는 전략을 처음부터 구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엔과 같은 매우 교육적이고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 본 결과, 물론 이것은 CSTV 컨소시엄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자회사가 운영해 온 PP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매우 소중한 경험들이 될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건 그 다음에 방송장비와 관련된 부분이건 방송을 2여년 해 왔다는 것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만 새로운 채널들을 spin off해 나갈 때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또한 경험들이

소중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심사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20분 가량 남아 있는데 조금조금 더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좀 더 많이 답변을 하실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심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18쪽 이하 부속서류에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중에서 뉴스앵커 등은 직무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정당 가입이나 출마를 할 수 없고 불가피한 접대성 술자리나 골프 모임인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사전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강령을 위반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업계획서 199쪽 조직계획을 보면 윤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데 혹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아닙니다. 저희가 윤리위원회는 분명히 설치하고, 특히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이런 공적인 가치를 최대한 소중한 밸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하다 싶은 정도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령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강한 요청을 윤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쪽의 조직도에 윤리위원회가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마 자료가 실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윤리위원회는 설치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16쪽에 의하면 보편성 확대를 위해서 CSTV를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대역에 편성토록 하여 전 국민에게 전달토록 하겠다고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종편이 비록 의무편성채널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지상파와 동일 대역에 편성토록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전국 단일 번호를 쓰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것도 플랫폼의 의사결정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제가 동일 대역에 관한 부분은 우리 기술책임자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그 이후 부분만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도달되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전국의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88%, 9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케이블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SO들이 종편채널들을 로우티어에 얼마나 담아서 가구에 전달하느냐가 관건이고 동일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편채널들이 개별적으로 때로는 연대협력을 해서 SO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보다도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종편이 어느 정도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통일된 번호로 진입을 해야 되고 또한 로우티어에 편입되어서 가구도달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정착하는 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콘텐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편들이 우수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SO들도 결국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편성채널을 할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대역 부분은 편성책임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윤택 (가칭) CSTV 편성책임자

-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서 제가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대역 문제도 정부의 지원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어 있고,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콘텐츠에 투자를 집중해서 좋은 콘텐츠가 있음으로 해서 SO들이 자연히 이 채널을 좋은 채널에 갖다 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SO와 끝없이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서로의 윈윈이 된다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CSTV에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1쪽과 194쪽에 언급하고 계신 보스톤뉴젠 콘텐츠투자조합과 CSTV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보스톤뉴젠 콘텐츠투자조합이 약 1,00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CSTV가 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CSTV가 동 투자조합에 투자하는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CSTV가 투자하는 비중이 000억원이니까 약 00% 정도의 투자지분을 갖게 되는데 00% 정도의 투자지분에도 불구하고 CSTV가 투자조합의 운영방향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으신데 그 구체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제가 우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편성책임자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기존 방송들과의 차별화라고 하면 첫째는 열린 방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시청자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제작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투자자를 외부에서부터 모으려면 결국 콘텐츠 투자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2개의 콘텐츠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국내이고 방금 말씀하신 보스톤뉴젠 콘텐츠조합이고, 또 하나는 0000의 000이 직접 투자해 놓은 아시아 00000000 투자조합에 저희들이 또 장기적으로 2018년까지 0000억원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데 역시 00%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을 주신 보스톤뉴젠 콘텐츠 조합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투자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이 열린 방송, 열린 제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외에 참여하게 하는데, 특히 이번 보스턴뉴젠은 주로 국내 투자자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외 유통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투자자를 모은다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00%의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보스턴뉴젠 콘텐츠조합은 그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콘텐츠 쪽에 투자를 해 온 분인데 이분들은 주관을 하는 회사이고 직접 모아진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저희들이 바로 CSTV에 만드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외부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단순히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광범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0%면 충분히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백승재 팀장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잠깐만요, 그 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

- 예.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예,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다음 심사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유료방송가입자 추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사는 사업계획서 183쪽에 유료방송가입자 전망에서 2015년의 유료방송가입자를 2,687만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현재 약 1,7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00만가구 정도가 복수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가입한다고 추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어떻게 2,687만 가구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심사위원

- 183쪽 유료방송가입자 전망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2015년에 저희들이 유료방송 전체 가구 수를 2,600만명으로 봤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케이블은 가구 수가 그렇게 크게 현격하게 늘지 않을 것이고 거의 포화상태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느는 부분은 IPTV 때문에 그렇게 계

상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IPTV는 이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적어도 교육용이라든가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앞으로 소비자나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조직들이 많이 활용해야 될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IPTV는 비록 어떤 가구가 위성방송이나 케이블을 시청하고 있더라도 또 IPTV에 추가로 가입해서 말하자면 더 시장이 넓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서 2011년에 비해서 IPTV가 거의 2배 가까이 2015년까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성DMB가 좀 늘 것으로 보고 있어서 2,600만가구,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중복되게 가입할 가구들이 분명히 있다, 지금 위성방송과 케이블도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보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한 퍼센트가 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조직, 인력관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방송계에서도 골칫덩어리 중의 하나였던 노사갈등과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살펴보니 카메라 기자 부분을 아웃소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해서 흔히 말하는 볼펜기자 분들과 카메라 기자가 분리가 되어서 장비는 CSTV 본사에 남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30명 정도가 영상취재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핵심역량을 인소싱하는 경우도 있고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메라 취재 부분의 아웃소싱은 과거 SBS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사례에서 효율성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방송계에서는 노사 문제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라는 그러한 우려 내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쭙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아웃소싱하고 나면 경영의 효율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OOOO에 대해서 매년 OO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OO억원을 절약하려고 아웃소싱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쭙 봅니다. 두 번째 여쭙보고자 하는 것은 해외의 경우를 보면 방송리포터가 리포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영상취재도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의 그와 같은 카메라 기자 아웃소싱은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효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것은 out of date된 것이라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 신청법인 중에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한 법인도 있습니다. 질문을 요약해 드리면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이것이 혹시 좀 더 디지털 환경에서는 안 맞는 것 아니겠느냐, 즉 경영 효율성 측면과 방송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택 (가칭) CSTV 편성책임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웃소싱한 면도 물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추구하는 콘텐츠가 차별화되려면 보도 영상이 기존에 보이던 뉴스와 상당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수행

하는 데 있어서 영상기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지상파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현장에서 보면 외부 인력이라든가 별도로 뛰는 인력들이 훨씬 더 현장을 캐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외부에서 1인 체제로 효율화시키지 왜 아웃소싱으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보도 부분이 책임이 수행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수행되지 않는 영상에 문제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충한 입장에서 자회사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외부의 영상카메라하신 분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1인 시스템이 저희가 앞으로 추구해 갈 방향입니다. 저희 편성의 전략 속에 보면 시청자가 참여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또 지역대학이나 외주제작사라든가 소수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편성상으로 오후 5시 반에 36.5도라는 뉴스를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1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1인 취재 시스템 영상과 자기가 리포터하고 자기가 취재하는 인력이 많이 갈 것을 예상하고 담아놓은 방향입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이니까 그런 방향을 향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다면 2년, 3년 후에 1인 취재 시스템이 활성화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으로 볼 때 한 분 정도 질의를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짧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다음 질문입니다. 귀사에서 내주신 사업계획서 79쪽에 보면 공정보도를 위한 계획에서 오디언스 에디터 운영을 통해 공정보도 지원활동과 팩트체크를 통해서 정확한 보도를 하겠다고 제시하였는데, 과연 이 제도가 사전사후검증제도로써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이 팩트체크나 또 오디언스 에디터 같은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선진국에서 특히 신문 같은 곳에서 정확한 보도 특히 이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저희가 아마 방송계에서는 팩트체크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신속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는 아주 속보가 생명인 그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사후에 보도가 나간 후에라도 그런 것을 가동해서 문제가 노정이 되면 바로 시정방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는 취지로 팩트체크 제도를 도입하고, 굉장히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오디언스 에디터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열린 방송,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지향하는 철학에서 오디언스인 시청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외부의 오랜 언론경력을 가진 전문가, CSTV로부터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는 구성원이 아닌 그런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그런 보도, 그런 방송을 내 보내겠다

는 취지이고, 이 두 가지 점은 저희 CSTV가 초기부터 바로 정착을 시켜서 다른 방송과 확실하게 차별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고 오지철 대표님의 3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철 (가칭) CSTV 대표자

- 무엇보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제 답변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나 반성을 해 보면서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CSTV가 종편채널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오늘 위원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방송경영과 저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현재 방송환경에서의 종편사업 진출에 우리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상파 및 종편사업자들과의 비생산적이고도 소모적인 무한경쟁이 아니므로 선의의 발전적인 그리고 상생의 경쟁을 통해 우리의 방송산업이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쟁사들과의 연대협력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와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 바로 종편채널을 허용하는 정부의 취지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런 두 가지 큰 목표에 저희 CSTV가 큰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보도, 건전한 프로그램을 지향하면서 무엇보다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방송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CSTV가 오늘의 이러한 저희의 다짐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또 같이 참석하신 배석자 분들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가칭) CSTV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가칭) HUB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워서 혹시 오늘 의견청취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 바쁘신 중에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연말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불가피하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칭) HUB의 종합편성PP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칭) HUB 대표자이신 김기웅님 맞습니까?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차성모님 맞습니까?

○ 차성모 (가칭) HUB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신상민님 맞습니까?

○ 신상민 (가칭) HUB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PP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는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참석자 분들께서는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것이며,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의견청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3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의견청취 대상자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하지 않는 한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 대표자 중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배석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기립하여 답변하실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를 대표하여 오신 분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이신 김기웅님께서 3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의 미래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HUB 컨소시엄의 대표이사 맡게 된 김기웅입니다. 우선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해 언론, 경제, 경영학과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단체를 대표하시는 심사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들이 1년 6개월 동안 준비해 온 HUB의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HUB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별사업자로서의 생존과 성장전략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출한 사업계획의 골격을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으로 정한 HUB 한경 유비쿼터스 브로드캐스팅의 영문 뜻을 살려 저희는 5개의 허브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저희 HUB는 시청자 복지 구현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소외받는 이웃들 말없는 다수의 서민 계층을 배려하고 휴머니즘이 살아 숨 쉬는 스토리들을 담아내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공론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해소와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화합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셋째, 창조적 콘텐츠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감성적 만족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스타 중심 제작시스템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역량 있는 신진작가와 배우, 외주제작사를 발굴, 상생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미디어융합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통신과 IT,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융합 트렌드에 부응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융합 콘텐츠와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미디어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협소한 내수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HUB가 만든 프로그램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감동시키고 매료시킬 수 있도록 콘텐츠의 보편성과 다양성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HUB의 출사표를 경청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질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하며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대주주를 대표하여 오신 신상민님께서 3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민 (가칭) HUB 최대주주

- 안녕하십니까. HUB 최대주주인 한국경제신문 사장 신상민입니다. 저희가 종편사업을 하려는 것은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방송간 장벽은 디지털 기술발달로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방 겸영과 미디어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때입니다. 종편채널이 여러 개 나온다고 방송의 질이 꼭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으로 저질 프로그램 양산을 결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기가 민망스러운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은데 불륜, 저질드라마가 더 늘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종편사업자의 도덕적 스탠더드가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장 건강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도 현행 지상파방송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D의 영역과

기자의 영역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상과 관계자들은 흔히 PD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아는 한 신문방송학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통하는 말도 아닙니다. 시사·보도프로그램에 지나치게 깊게 들어온 PD들의 역할은 저희 HUB에서는 제고될 것입니다. 저희 신문은 폭넓은 지분 분산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나 개인 사주가 없습니다. 민주시장 경제 창달을 사시로 해서 철저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있는 저희 신문이야말로 방송의 생명인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한국경제TV는 케이블방송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머스트캐리인 경제보도채널을 훨씬 앞서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25% 안팎으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재정적 안정 없이 미디어업체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충실할 수 없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환경TV의 실적을 눈여겨 봐주십사 하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가칭) HUB 종합편성PP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귀사는 우리나라 방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귀사가 종편PP로 선정된다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방송에 참여했을 때 가장 시정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을 통해서 갈등구조를 치유해야 하는데 오히려 현재 방송사들은 방송을 통해서 갈등구조를 더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종편이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많이 서술했습니다만 이와 상관없이 제가 느끼는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이 보도나 드라마나 이런 장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계층간, 지역간 이런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를 보면 정치인들은 역모와 배신의 대상으로 그려져 있고, 기업인들은 탐욕의 대상으로 그려져 있고 또 아래에 있는 서민계층은 때때로는 뭔가 좀 부족하고 또 비겁한 쪽으로 묘사된 것을 가끔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친 시청률 경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는 정말 서로 긍정적인 내용을 담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서 최근에 야기되는 연평도 폭격사건만 보더라도 이것 갖고도 국론이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되는데 통합하는 미디어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우리 방송사들은 방송사 중심, 제작사의 상생의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상생의 경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사들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시장을 바라보고 제작부터 모든 사업을 펼쳐가는 글로벌 전략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현재 지상파3사가 종합편성방송으로 정착한 상황에서 귀 신청법인이 종합편성PP로 진입할 경우에 지상파방송사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편성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편성방안에 대해서 편성책임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차성모 (가칭) HUB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편성 차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시청자들의 트렌드 분석, 또 라이프사이클 분석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디어 환경분석 그리고 현재 방송 나가고 있는 지상파3사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편성의 차별화는 첫째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배열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저희 편성표상에 있는 11시에 메인뉴스의 편성이 라든가 드라마를 월·수·금 2시간 편성한 것들이 그런 예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률 위주에서 패밀리프로그램이라든가 시청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률도 확보하고 온 가족이 즐겁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브랜드화입니다. 즉, 시청자들이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를 위한 교육시리즈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시대에 맞는 포켓시리즈 등이 브랜드화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편성입니다. 존이라는 것은 시청자가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도록 특화했습니다. 저희는 6가지 정도의 존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오버 프로그램입니다. 신문과 방송, 방송과 방송이 합작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편성 차별화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편성의 배열, 실험적 프로그램의 제작, 브랜드화, 프로그램의 존 설정, 크로스오버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대표자께서 글로벌미디어로의 발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승인 심사에서 글로벌미디어그룹을 향한 의지와 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귀사의 글로벌 비전과 실행계획을 귀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과 연계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가칭) HUB 대표자

-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저희는 글로벌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지상파들은 글로벌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으로서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글로벌사업을 펼쳤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조직적인 글로벌 사업은 펼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의 개척이 없이는 글로벌 시장의 확대가 없이는 우리가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으로 글로벌 조직과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첫째, 저희들의 조직이 글로벌월드와이드라는 조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글로벌 조직을 경영분반에 두었다가 이것이 2000년도에는 글로벌월드와이드라는 조직으로 별도로 분사가 됩니다. 또 글로벌 BCT연구소라는 저희 R&D 조직 안에는 글로벌전략연구센터라는 것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해외사례도 수입하고 조직적인 글로벌 전략이 여기에서도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에서부터 글로벌 전략을 확대했습니다. 그다음 둘째는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공중파들이 단순한 프로그램 수출에 그쳤는데 탈피해서 저희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가면 글로벌 매출을 2,0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조원 매출의 20%, 2,000억원을 글로벌 매출에서 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다양성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2,000억원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프로그램 매출이 한 0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해외 채널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채널사업이란 우리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0년에는 HUB Japan이 설립되고 2000년에는 HUB Asia 그리고 HUB America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세계 00개국의 00개의 채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000억원 정도의 매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맷사업 수출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포맷이란 잘 아시다시피 방송의 제작 틀을 이야기한다고 요약한다면 저희는 포맷 수출로도 000억원 정도의 매출계획을 잡고 있고 기타 신규 사업을 통해서 한 000여억원의 매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맷 수출이라든지 또 우리 채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범 초기부터 지금 기존 지상파라든지 기존 케이블업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글로벌 사업이 아니라 HUB 월드와이드를 통해서 그야말로 콘텐츠의 종합상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사업성 분석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현재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무위험수익률이 4.5% 그다음에 시장위험프리미엄이 8.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는 가중평균 자기자본 비용을 0.00%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위험수익률에 비해서 0%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자본비용이 너무 낮게 추정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종편 대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기자본 0000억원 그리고 타인 자본 0000억원 이렇게 해서 0000억원으로 이 사업을 꾸려가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종편 사업을 새로 준비할 때 저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 검토를 했을 때 0000억원 안팎이면 꾸려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편인 만큼 저희가 또 공익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0000억원 정도, 결국 0000억원이 됐습니다만 0000억원 정도로 투자규모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0000억원 중에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점을 놓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자본 0000억원 타인자본은 차입금입니다만 그것은 2000년 하반기에 타인자본 0000억원으로 구조를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싼 금리,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기회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렴한 금리로 저희가 00% 정도의 자금을 차입했을 경우에 오히려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든지 또 순현재가치도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000억원의 자기자본, 0000억원의 타인자본으로 사업계획서를 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희는 사업계획서 282쪽에 나와 있는 플랫폼사업자의 협력 실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귀사는 디지털 방송전환 지원에 5년간 000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셋톱박스 지원 및 저소득층 수신료 할인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가지고 계시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저희가 000억원을 향후 5년 동안 플랫폼사업자와 협력관계에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000억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이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사업자와 협력해서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80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 80만 가구 중에서 노약자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또 어려운 다문화가정 이런 돈이 없어서 양질의 디지털 플랫폼 방송을 보지 못한 가구를 한 3만 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가구를 선정해서 셋톱박스 비용, 한 가구당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1만원 정도로 수신료를 잡아서 한 3만 가구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3만 가구로 시작하지만 저희가 흑자를 내는 경우 경영이 좋아지면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결국 플랫폼 가입자 수를 늘리고 이 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와 저희의 상생의 계기로 삼

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플랫폼 사업자의 관계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의 경우를 말씀드리려서 죄송합니다만 데이터방송을 개발했다든지 최근에는 우리 방송을 보면서 주식거래를 바로 할 수 있는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플랫폼사업자들도 저희의 데이터방송을 이용하거나 저희를 통해서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그 수익은 플랫폼사업자와 저희 TV가 세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생의 윈윈관계로 플랫폼사업자의 관계가 지금까지 아주 좋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사업자에 가입이 되어 있는 가구 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거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00억원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 또 하나는 플랫폼사업자와의 상생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제 질문은 (주)한국경제TV에 HUB 컨소시엄 출자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법인의 최대주주인 한국경제신문은 HUB 컨소시엄에 000억원을 출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의 200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 총계가 1,947억원이고 그중에서 유동자산이 370억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출자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자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신상민 (가칭) HUB 최대주주

- 최대주주인 한국경제신문 사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무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재무구조로서도 저희들이 약간의 차입만 일으키면 당장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종편사업에 진출할 때에는 저희 신문사의 대주주인 사람들과 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같이 붙인 이사회 결의서를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우리 주요 대주주인 대기업들이 한국경제신문이 종편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그 이사회 결의입니다. 저희가 종편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차입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인가가 나오는 즉시 바로 증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신문을 증자해서 차입 없이 바로 그 돈으로 HUB TV 설립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타인자본 0000억원 조달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217쪽을 보시면 재무활동을 통한 자금조달계획이라는 내용으

로 최초 납입자본금 0000억원 외 2012년에 추가로 000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표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빙으로 부속서류 <4-4-6> 대출확약서 참조 이렇게 사업계획서 기재를 하셔서 저희가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대출확약서가 아니라 0000 0000 지점 부지점장 명의의 여신의향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대출확약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출을 확정적으로 약속해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여신의향서라 하면 조건이 맞을 경우에 여신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대출의향서라면 앞으로 사업승인이 된 뒤에 사정에 따라서 대출을 해 줄 수도 있고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보여서 저희가 보기에는 0000억원이라는 자금조달이 귀사가 예정한 대로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0000억원을 확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보신다면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뜻대로 0000 측에서 귀사 예정대로 해주지 않고 대출을 못해 주겠다고 나왔을 때 다른 대안은 있으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질문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경제신문은 TV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0000과는 오랜 주거래은행 관계로서 그동안 0000이 저희 회사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0000 입장에서든 그동안에도 저희가 돈을 더 써주기를 바라는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0000억원 되는 자금을 7개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투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째 담보가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신문사에서 지급보증을 종편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관계를 생각할 때 0000에서 전혀 저희들한테 0000억원 대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문제도 없다는 것이 뒤에 후속 서류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도 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0000은 저희들한테 지금도 돈을 써 주기를 원하고 또 아까 주주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바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곧바로 증자가 이루어지고 재무구조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드린 질문은 물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게시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안 됐을 때 대안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물론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한테 여쭙 봐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짧게 답변하십시오.

○ 이상렬 한국경제신문 종편TF

- 종편 TF에 있는 이상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 설비에 0000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향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 차입 0000억원을 얻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역시 사업계획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본전제가 되는 목표 시청률, 목표 시장점유율 그리고 광고수익에 관한 예측을 하셨는데 신규 종편 참여회사의 개수와 무관하게 조금 독특한 추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이런 추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목표시청률, 목표광고계획, 시장점유율은 저희 나름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산출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의 목표광고수익은 현재 IMF에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향후 5년 동안 4~4.5%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광고시장의 성장률을 첫째 산출을 했고, 또 그 성장률에 저희가 시장점유율을 뺐은 것은 제작비 투자를 시청률로 대입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SBS나 MBC라든지 지상파의 경우 제작비를 얼마나 투입했을 때 시청률이 얼마 나오더라 하는 이런 점유율 계산을 대입했고, 그 대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SBS가 100억원을 투자했는데 시청률이 1%가 나왔다면 저희는 100억원을 투자했을 때 초기에는 00%까지 할인을 했습니다. 5년 뒤에는 00% 할인을 하고, SBS가 100억원을 투자해서 1%의 시청률을 뺐었을 때 저희는 100억원을 투자했을 때 0.00의 시청률이 나올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청률을 잡았습니다. 또 그 시청률로 인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광고수익은 SBS 등 공중파가 1%의 시청률로 100원의 수입을 올렸다면 초기에는 저희가 1%의 시청률을 보였을 때 00% 정도의 할인, 저희는 00원 정도의 수입밖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할인해서 저희들 목표 시장점유율과 목표 예상광고수익을 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제 질문의 요지는 계획이 합리적이다, 아니다, 근거가 있다, 없음을 여쭙본 것이 아니고 종편사업에 신규로 몇 개 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목표점유율이라든지 광고시장의 규모 내지 세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몇 개가 참여한다는 가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달라지면 수치라든지 전망치가 다 달라지는 시나리오가 존재해야 될 텐데,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없다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짤 때 과연 몇 개가 허가가 나오느냐 하는 데 대해서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0개 내지 0개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가정을 일단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광고의 경우 0개 내지 0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목표치를 높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0개 내지 0개 종편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점유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광고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가 목표치를 다 잡았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종편이 가져가는 새로운 광고시장 규모에 절반 가까이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절반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범퍼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보고 최대 00% 가까이에서 2015년에 가서는 00%에 가까운 이런 할인율을 그것도 예상 시청률과 예상 광고점유율에 다 같이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지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한다는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앞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일부 연결되는 부분인데 HUB가 2015년에 달성하겠다고 한 목표시청률이 0.00%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목표시청률 자체가 타 신청법인과 비교해서 비교적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도 그렇고 보고서에도 공격적인 투자와 인지도 제고를 하면서 목표시청률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정해 놓은 목표시청률 자체가 낮게 잡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간단한 질문을 더 드린다면 편성하면 본방이 있고 재방이 있는데 재방송 비율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재방송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0.00%입니다. 0.00%로 왜 낮게 잡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종편사업은 심사위원님들도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한다는 것이 간단한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청률을 더 높게 잡으면 여러 가지 계산상에 이 사업계획서에 더 좋은 투자를 하고 더 좋은 사회공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 점유율을 잡는데도 첫 해에는 00%, 또 5년 뒤에는 00~00%에 달한 투자액 대비 할인율을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편은 말씀하신 대로 0개가 나올지 0개가 나올지 아니면 0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범퍼 작용을 거기에 대한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또 말씀드린 대로 시청률에 지나치게 함몰해서 지금 방송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오히려 공영방송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낮게 잡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방과 재방 비율은 편성책임자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차성모 (가칭) HUB 편성책임자

- 저희가 시청률을 낮게 잡은 이유는 현재 케이블 PP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은 약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초창기에 브랜드가 약하고 케이블채널이라는 핸디캡을 감안해서 0.00%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재방은 2011년 약 00.00, 약 00.0%입니다. 이것을 점차 제작 물량을 늘려서 2015년에는 00.00%, 약 00%로 낮출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귀사는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하여 한국경제TV 등 다양한 미디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종편 PP를 통해서 귀사가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저희는 한국경제신문, TV, 닷컴, 잡지, 출판 등 관계사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그룹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종편을 통해서 경제적이나 또 외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그 점에서만 반드시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종편을 통해서 물론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통합뉴스룸을 구축을 한다든지 또 서로 간의 크로스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도 창출하고 새로운 영업모델도 창출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그룹의 종편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 답변이 조금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종편을 하겠다는 이유는 저희 그룹의 위상이라든지, 제 개인의 자리라든지 직원들의 영역을 넓히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결코 종편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모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저희가 뭔가 기여를 해 보자, 그리고 현재 방송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데 작은 밑알이 되어 보자 하는 이런 각오가 저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 회사만 따진다면 영상콘텐츠산업, 앞으로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인쇄매체에 비해서 영상매체산업은 그래도 아직 성장 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콘텐츠기업으로 가겠다는 이런 저희들의 욕심과 또 그런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도 대표자께서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귀사가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168쪽에 귀사의 글로벌 전략으로서 HUB 월드와이드를 설립해서 포맷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또 HUB 아시아를 설립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채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사의 여러 가지 핵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그리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신문과 경제 관련 PP를 운영하던 주체가 포맷 수출이나 해외 채널 론칭을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해외 채널 론칭의 경우 프로그램이라든지 국내에서 채널 브랜드가 상당히 정착되고 높아진 다음에 그것이 해외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다음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맷 시장은 지금 세계적으로 5조원 정도 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포맷 시장 규모가 5조원에서 해마다 22% 정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상파들은 제 기억으로 2008년도에 3만 3,000건의 프로그램 수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포맷 형태로 수출한 것은 단 33건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포맷 수출은 세계적으로 포맷 수출의 비중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도용해서 베끼는 이런 현상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자꾸 규제가 될 것이고 포맷 수출의 비중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경제신문과 경제방송을 하면서 수출할 포맷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신문과 TV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전문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저희 포맷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수입하겠다는 요청이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지금 당장은 우리가 포맷을 수출할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 포맷사업을 앞으로 우리의 전략 아니면 나아가서는 국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포맷 수출을 위한 개척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에 공중파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포맷을 수입합니다. 영국의 ITV 최대민영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ITV로부터 thinking of the your generation 이런 영국 ITV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해서 저희가 창립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세대공감퀴즈' 이런 내용이다 창립 프로그램에 반영했고, 그 이듬해에 아르헨티나의 텔레페라는 회사로부터 포맷을 수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부터 어려운 살림에 돈을 주고 포맷을 수입해서 제작 방영을 할 것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포맷 수출을 당장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부터 포맷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간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 포맷에 강점이 있는 나라들의 포맷도 수입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또 저희가 수출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가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포맷 수출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포맷만 수출한 것이 아니고, 아까 HUB 월드와이드가 콘텐츠 종합상사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PP들이라든지 또 다른 쪽에서 생산한 포맷도 저희가 그것을 잘 수출 산업화해서 정리해서 수출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2000년부터는 직접 포맷 수출에 나서고 이후 2000년에는 아시아 최대 포맷 수출업체가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귀사의 최대 강점으로 지속적 콘텐츠 투자가 가능한 자금조달능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납입자본금의 규모로 타 신청법인과 비교해 볼 때 최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에 0000억원의 0000으로부터 차입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신청법인도 차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자본금만 가지고 신청법인들을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으로만 보면 지금 최하 수준인데 강점으로 자금조달능력을 제시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저희는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금조달 능력을 저희가 기술한 것은 자본금 0000억원이 많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차입금 0000억원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빼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는 또 저희들과 여러 유대관계가 있는 여러 기업들로부터 여러 가지 펀드를 조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콘텐츠 펀드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콘텐츠 펀드는 저희와 특히 상관있는 제작사라든지 콘텐츠 관련 회사에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만 이 콘텐츠 펀드는 해마다 200억원씩 조성해서 2015년도에는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 중에서 000억원을 냅니다. 첫 해 00억원을 내고 000억원은 0000, 0000, 00000000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미 000억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연말에 우리가 1,000억원 정도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희가 드라마를 제작할 때 저희는 SPC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서 돈이 많이 드는 대작들을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추노' 하나를 만들고 앞으로 수출하는 것을 위해서 SPC를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해서 한 것처럼 저희는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다 넣어서 만드는 것도 전략적으로 펴가는 것도 있지만 많은 드라마나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앞으로 이익도 세어하고 수출이나 외주 판매가 되는 것도 세어하고 가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상으로서는 단순히 자본금이 적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답변이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다음 질문입니다. 귀사의 방송언어 순화계획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시청자위원회에서 산하의 방송언어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상 방송언어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허브 자체 심의규정에도 가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 두었지만 중요한 예능,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 이런 비속어, 막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귀사의 의견과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편성책임자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 차성모 (가칭) HUB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입니다. 언어심의위원회는 이미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스무 분의 교사들을 모시고 주기적으로 언어순화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심의에 대한 기준은 건전성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편성제작가이드라인 2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성가이드라인은 선정과 폭력성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분야별로는 규정, 윤리, 언어, 인권 또 청소년유해, 사실 부합여부, 책임여부 이런 것들을 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등급제도 시행하는데 등급제는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에 의해서 3단계 심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정화할 생각입니다. 3단계라 함은 기획안을 심사하고 대본을 심사하고 사전제작에 의한 테이프 심사 그리고 생방송은 현 시간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상 한 분 정도 더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디지털융합 트렌드가 초래한 종이매체사업의 하락세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종합편성PP를 통해서 방송계 진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계마저 주 수입원인 광고수입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뉴욕타임즈의 경우에 방송계로 진출했다가 이를 다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문사가 방송으로 진출하는 것이 사업전략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대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인쇄매체에 대한 탈피책으로 종합편성PP를 구상한 측면도 전혀 없

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욱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언론사, 신문사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 더 가치의 우위에 두는 것이 정말 국민에 보탬이 있고 국가발전 그리고 화합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2015년도에 광고수입의 비중을 00% 정도로 잡았을 것입니다. 아마 각 사 중에서 가장 광고매출 비중을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서 광고비용을 낮추느냐, 내용을 보시면 저희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능형 매칭 광고라든지 위치정보시스템, 소셜게임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경제TV 사례를 죄송하지만 잠시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는 지금 직접 광고매출 비중이 금년의 경우 작년도도 비슷합니다만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우리가 행사하면서 받는 협찬을 포함하더라도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서 매출을 올리고 흑자를 내느냐, 제가 이 TV에 취임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언론사는 종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부분 언론사가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새로운 사업구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권과 경제에 강한 방송인만큼 경제교육 그다음에 증권과 관련된 정보, 증권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트레이딩까지 주식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송을 보면서 주식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트레이딩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증권 관련 사업을 펼친 결과, 저희 매출이 광고와 협찬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광고 외 수익이 올랐습니다. 아까 신문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정말 보도채널이고 머스트캐리이고, 그리고 저희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회사보다 매출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익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이런 전략으로는 앞으로 종편 성공 못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종편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롭게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의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런 점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심사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김기웅 대표님의 짤막한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 김기웅 (가칭) HUB 대표자

- 써 온 것이 있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제 생애 가장 긴 1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1시간을 위해서 저희 팀들은 1년 6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1년 6개월의 준비하는 동안 별별 저희들을 폄하하는 발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저희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한다, 아니면 우리가 안 되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여타 언론과는 달리 저희는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미디어그룹의 성격입니다. 저는 신문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고 6년 전에 이 방송에 왔습니다만 미디어의 폐해도 제 스스로 많이 알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자들을 동원해서 광고를 수주해 오라, 아니면 우리를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그나마 대한민국 언론에서 가장 정도를 걷는 언론이 저희가 아닌가, 그래서 손해도 봅니다만 저

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종편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그룹의 성장,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경영인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전문경영을 하고 적당히 하고 나가면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만 종편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심사위원님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방송이 과연 우리 국가 발전과 국민통합에 대해 정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천안함 사태가 나면 그런 것으로 말씀도 됐습니다만 사람들이 울부짖고 또 연평도 포격사건 때도 공포에 질린 것도 당연히 보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연평도 주민들 누구 하나가 나서서 정말로 우리가 국방의 중요성을 느꼈다, 우리도 이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도 보여주고, 다 보여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통합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정말 좋은 방송, 진실된 방송,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 뜻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대한민국 방송의 흐름에 물꼬를 바꾸는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또 같이 참석하신 배석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칭) HUB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가칭) 채널A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매우 추워서 의견청취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상 불가피하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가칭) 채널A의 종합편성PP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칭) 채널A 대표자이신 안국정님 맞습니까?

○ 안국정 (가칭) 채널A 대표자

- 예.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박희설님 맞습니까?

○ 박희설 (가칭) 채널A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김재호님 맞습니까?

○ 김재호 (가칭) 채널A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PP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는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참석자 분들께서는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것이며,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의견청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히 하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3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의견청취 대상자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질의하실 수 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를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께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하지 않는 한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 대표자 중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배석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기립하여 답변하실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분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이신 안국정님께서 3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국정 (가칭) 채널A 대표자

- 신청법인의 대표로 내정된 안국정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저는 공영방송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같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며 방송의 순기능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영방송 SBS는 방송의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 나아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치열한 현장에서 보낸 경험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자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 방송생활 40년의 소중한 경험을 종편의 성공을 위해 모두 쏟아내겠습니다. 채널A는 동아일보가 중심이 된 사업자입니다. 제가 채널A의 대표를 맡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정도를 걸어온 동아일보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아일보의 역사는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교육과 언론 외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다 하는 데에도 한시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가치를 채널A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미디어 생태계로는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편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널A는 독립제작사들과 상생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한국 콘텐츠산업의 혁명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채널A는 열린 편성을 지향합니다. 창조적 마인드로 가득한 독립제작사들의 콘텐츠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있어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채널A는 강소조직을 지향합니다. 방만한 경영이 발붙이지 못하는 선진형 방송사의 지평을 열어 콘텐츠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채널A는 심층보도를 지향합니다. 취재 방식의 혁신과 뉴스 장르의 다양화를 통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를 선보이겠습니다. 채널A는 스마트 제작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외부 전문창작집단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상생의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채널A는 시청자가 중심이 된 방송을 지향합니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와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하우스포월, 채널A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콘텐츠허브인아시아, 채널A의 목표입니다. 90년간 교육, 언론의 외길을 걸으며 우리나라 문화 가치 제고를 위해 헌신해 온 동아일보의 저력과 저희 방송인생 40년을 합쳐서 채널A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대주주를 대표하여 오신 김재호님께서 3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호 (가칭) 채널A 최대주주

- 심사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A의 최대주주인 동아일보 대표 김재호입니다. 지난 2년간 언론계는 종편의 사업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업 진출 여부를 놓고 고민한 일부 사업자도 있었지만 저희 동아일보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종합편성방송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방송사업을 준비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동아일보는 30년 전 동아방송을 군사독재정권에 강제로 빼앗긴 이래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한 번도 게을리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이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권위자이신 심사위원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방송사업을 위한 저희의 진정성과 열정만큼은 있는 그대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에 대한 채널A의 대원칙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있습니다. 편성과 경영은 전문가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최대주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하고 지속적인 투자입니다. 동아일보는 0000억원에 이르는 현금 동원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주주들도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출자 의지가 확고한 우량기업들입니다. 동일일보를 포함한 주요주주들은 채널A를 재무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에 대해서는 주주들도 책임을 공유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90년간 수익성과 상관없이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종편사업 전망을 둘러싸고 수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고 많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밝힌 초심을 잃지 않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묵묵히 실천해 나갈 것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가칭) 채널A 종합편성PP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귀사는 우리나라 방송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사가 종편PP로 선정되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국정 (가칭) 채널A 대표자

- 우리나라 방송계의 문제는 뉴미디어 발전이 되어서 미디어 상황이 기술발전에 의해서 많이 발전이 됐는데 아직도 60~70년대 지상파방송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해서 방송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해 왔는데 '95년 이후부터 케이블텔레비전을 비롯한 뉴미디어가 허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미디어인 케이블TV 시장에는 36%를 차지하는 지상파방송 계열PP들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송계는 뉴미디어 상황이 기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60~

70년대 지상파 독과점 시대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미디어 빅뱅이라고 하지만 콘텐츠 시장에서는 지상파방송사 위주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TV, IPTV,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 플랫폼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상파 위주의 콘텐츠 흐름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위주로 독과점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외주제작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상파의 굴레 속에서 외주제작사들이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제작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널A 사업을 허가받으면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위주로 한 창조적 개방형 방송사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능력 있고 창의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국내의 많은 콘텐츠 전문제작사들을 격려하고 협력해서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콘텐츠산업의 위력을 결집시켜서 세계 시장에 내놓아서 세계시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현재 지상파3사가 종합편성방송으로 정착한 상황에서 귀 신청법인이 종합편성PP로 새로 진입할 경우에 지상파방송사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편성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희설 (가칭) 채널A 편성책임자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입니다. 조직에 있어서 차별화도 물론이거니와 프로그램 제작방식 그리고 수급에 있어서의 차별화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편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의 방송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막장 드라마 또는 막말 드라마, 극도의 선정성 경쟁으로 빚어진 파행성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가장 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아침 시간대에 있어서 아침드라마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했고, 낮 시간대는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보통 버려진 시간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대로 양방향 방송의 기술을 구현하는 그러한 생방송 위주로 활력 있는 시간대로 개척하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11시대 새로운 드라마의 형식을 여는 일일드라마의 기존 틀을 벗어던지는 그런 사회적 질은 드라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인드라마가 대개의 경우 10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지상파방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9시대의 시청자의 시청 채널권 선택 확대를 위해서 9시에 메인드라마를 편성했고, 10시에는 시사·정보 성향의 뉴스 버라이어티를 편성했습니다. 이어지는 11시, 12시에는 일일 심층 시사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프로그램의 구성이 지상파를 경쟁상대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플롯들이 놓여있지만 배열과 구성에 있어서 완전한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주말 시간대 10시 45분~11시 40분은 토·일 양일간 다큐멘터리 시간대가 과감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생 법인 대표께서 다큐멘터리를 통한 프로그램 품격 제고화를 위한 점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감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일색으로 나오는 6시, 7시대 메인 주말 예능시간대를 저희는 시청자가 참여하는 시청자 중심의 양방

향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상파와의 차별화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이번 승인 심사에서 글로벌미디어그룹을 향한 의지와 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귀사의 글로벌 비전과 그리고 실행 계획을 귀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과 연계해서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 박희설 (가칭) 채널A 편성책임자

- 제가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안은 다 실현 가능한 계획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글로벌 전략을 짤 때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실현 가능성 부분입니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을 찾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둔 부분은 공동제작입니다. 저희의 역량과 또 외부의 역량이 서로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제작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의 글로벌 협력 포인트로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콘텐츠 만드는 구성과 관련해서 최근의 경향이 포맷 부분의 수출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포맷과 관련한 콘텐츠 개발, 이 부분을 저희의 두 번째 킬러포인트로 두고서 OO의 OOOOO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포맷 개발회사인데 이 회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포맷을 개발하고 함께 편성하는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현지 채널로의 진출입니다. 세계적인 플랫폼 업체인 OOOO와 함께 현재 MOU를 맺어 놓은 상태이고, 사업계획서 첨부자료로 보고드렸듯이 2000년경에는 채널A가 중심이 된 또 아시아의 주변 채널들이 함께 합류하는 (가칭) 아시아전문채널을 한인 밀집지역 및 아시안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00년도에 글로벌 현지 진출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매출 극대화를 위한 유통 확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유통전문회사인 OOO라든지 그다음에 OO의 OOO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생산한 콘텐츠의 해외 유통망을 극대화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 종편PP사업에 주요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형 언론사가 종합편성PP로서 방송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호 (가칭) 채널A 최대주주

-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론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편성채널의 신청자들은 정해져 있는 법률에 의해서 신문사의 경우 ABC 조사를 받아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경우에 보면 채널A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90년간 축적한 취재 노하우나 콘텐츠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의무를 다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A의 보도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또는 동아일보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채널A의 독립성과 편성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의 협력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계약관계에 의해서 협력이 진행될 것이고, 또 주주와 채널A 간의 거래 내용은 내부 거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감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채널A와 동아일보가 미디어 빅뱅시대를 맞이해서 신방 겸영 시너지 모델을 만들어 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그것을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협업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권을 물론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것이 또 중편을 도입하는 정부의 정책목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이미 일부 보도를 통해서도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접하셨겠지만 지방을 대표하는 신문인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위 말하는 춘추9사를 비롯한 다양한 언론사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전략적인 제휴의 폭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OOOO의 경우 저희 주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전문가들과 일반 시청자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방송을 지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강화를 함으로써 시청자가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그러한 방송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귀사는 OO여개 대학이 구성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54쪽에 의하면 사회적 명사 OOO명의 출자의향서도 제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력이나 지지 의사표명이면 몰라도 고등교육기관이나 지도층 인사들을 직접 투자자인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재호 (가칭) 채널A 최대주주

-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채널A에는 OOO, OOO, OOO 등 OO개의 재단이나 대학이 채널A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주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들 대학은 영상 또는 방송 관련 학과를 가지고 있고 또 신설 방송사와는 산학협력을 위해 출자를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OO개 대학은 출자를 하지 않았지만 양해각서를 통해 채널A와 협력하기로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채널A는 컨소시엄에 출자하거나 MOU를 체결한

대학과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채널A에 참여한 대학과는 협력해서 방송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대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실무 실습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서 차세대 방송 인력을 사전에 양성해 내고 또 방송산업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할 방침입니다. 이들 대학과는 방송 관련 학술연구도 함께 진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방송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방송사에 접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 대학들은 주주로도 참여하셨고 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은 MOU를 작성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 233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재 내용을 보면 귀사는 동아미디어그룹과 조직은 분리하되, 취재는 공유한다는 소위 통합 모델을 통해서 동아일보 기사를 활용해서 취재는 동아일보로부터 제공받지만 논지는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보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통합 모델을 통해서 보도의 독립성을 어느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시는지,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구속 내지 안전장치가 어떤 것이 구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김재호 (가칭) 채널A 최대주주

- 일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보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도 또 각자 기관의 신문사와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호할 것이냐가 역시 가장 큰 숙제이라면 숙제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신생 방송사인 채널A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재 능력도 동아일보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아지겠지만 초창기에는 취재 노하우도 부족할 것이고 채널A에서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양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의 취재 경험이 있는 동아일보의 노하우를 빨리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취재 인력의 공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편성을 한다든지 뉴스를 어떻게 선택할지 하는 것은 동아일보의 편집국에 편집국장 책임하에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채널A의 경우에는 보도 쪽에 계시는 장이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지상파 민간방송사들이 신문사가 1대 주주로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사히신문의 경우 텔레비전 아사히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편성권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는 케이스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또다시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신문과 방송이 어떻게 하면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취재를 공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도를 어떻게 하면 둘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보도의 내용을 공유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전에 응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최대주주인 동아일보의 200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순자산액이 1,996억원입니다. 채널A 투자 예정액이 1,195억원으로 순자산의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채널A로 자금을 모두 유출시키면 동아일보 운영이 가능할까요? 동아일보는 2008년, 2009년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2009년 말 현금 및 단기 금융상품이 00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000로 높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널A에 1,195억원을 출자하고 또 동아일보의 경우 여기에 출자하고 나면 자금 여력이 없는 데에서 어떻게 서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호 (가칭) 채널A 최대주주

-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최근 신문시장이나 광고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90년의 역사 중에서 최근 1~2년, 2~3년간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90년간의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서 많은 우량자산을 내부적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아일보의 종편사업의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금은 충분한 자금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심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인정하겠는데 하지만 올해 10월 말에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산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저희 부채비율이 0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결과는 자산 재평가를 하기 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2010년 10월에 자산 재평가를 한 결과로는 저희의 자산이 그만큼 더 증가했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0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10월 말 현재 동아일보의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만 0000억원의 출자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액의 0.0배에 이릅니다. 동아일보가 출자할 예정인 1,195억원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A의 경우에는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또 여러 주주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주요주주들의 출자 예정 금액도 자기자본 규모 대비 0.0배에서 00.0배에 이르는 등 충분한 자금 동원 능력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심사위원

-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할 경우 부채비율이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출자할 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A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210쪽을 보면 나름대로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0000억원 내지 0000억원 정도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심지어 시장성 있는 주식까지 다 처분해서 채널A에 투자하겠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동아일보의 전 재산을 채널A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 김재호 (가칭) 채널A 최대주주

-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일부 유동

성 있는 주식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부동산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시내에 가지고 있는 일부 인쇄시설이 들어 있는 인쇄시설입니다. 인쇄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금동에 있는 공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금동에 0000여평에 달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공장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방송 준비를 수년부터 꾸준히 해 오면서 과연 도심에 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용인 지역에 공장 부지를 0000여평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확보해 놓은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방송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현금을 회사에 쌓아놓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없는 돈을 끌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미 수년 전부터 용인 동백지구에 0000여평의 땅을 확보해 놓았고 그것은 결국 언젠가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되면 차분히 지금 오금동에 있는 땅을 팔아서 공장을 용인으로 옮기고 오금동에 있는 땅을 판 금액으로 방송에 출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준비들을 해 온 것입니다. 이런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그 사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송의 공익성 실현 방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수 시청자권익보호로 조화로운 사회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 역시 방송의 공익성 실현 방안의 하나로 반드시 요구되고 있음은 귀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버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역시 소수 시청자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59쪽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귀사의 실버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을 보시면 프로그램명으로 4개가 나와 있고 '100세 건강시대' 또 '서울대 지식나눔강좌', '일요 아카이브 현대사 증언', '여행의 발견' 이렇게 4개의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지식나눔강좌'라든지 '일요 아카이브 현대사 증언', '여행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은 실버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보다는 교양강좌, 교양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니냐, 전 시청자를 위한 교양프로그램이지 이것이 실버세대를 위한 실버세대 전용의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남은 프로그램 '100세 건강시대' 편성시간을 보면 토요일·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오전 5시 30분~6시까지 약 30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주일에 60분 정도만 그것도 이른 새벽시간에 실버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모두발언을 대표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의 편성을 본다면 그러한 굳은 의지가 허울 좋은 공염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국정 (가칭) 채널A 대표자

- 실버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미약하다는 말씀이신데, 편성별로 보시면 공감하실 수 있습니

다. 그런데 실버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따로 독립시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일아침에 5시부터 8시까지 시작되는 굿모닝1부, 2부, 3부에 건강코너가 들어가 있고 실버계층을 위한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헬로우잡' 부분에도 실버계층을 위한 직업 찾기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유사한 지상파 중에서 실버프로그램이라고 제일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6시 내고향'입니다. 우리도 6시 20분에 '전국 연결 생방송 코리아 나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시 내고향'과 똑같지는 않지만 고향에 남아 있는 노인들 또 실버계층을 위한 정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프로그램에 실버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까 편성책임자가 말씀드린 토요일·일요일 밤 10시 45분에 편성되어 있는 '다큐멘터리 이 사람' 그리고 '다큐스페셜A'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버계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평일 11시대에 '시청자 다큐 컬렉션' 이것은 밤 12시 20분에 편성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채널A에서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선호층은 여러 시청자도 있겠지만 특히 실버층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버층들이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11시에 1시간씩 해서 5시간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져 보면 실버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다음 질문입니다. 귀사에서 공정보도 에디터와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이러한 모니터단이나 에디터단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성화되고 좋겠지요. 그러나 어떤 과정에서는 이것이 제도만 만들어 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훈련이라든가 혹은 또 이러한 관리상에 있어서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훈련하고 또 이런 관리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보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희설 (가칭) 채널A 편성책임자

-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청자들의 뉴스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격과 퀄리티 그다음에 뉴스밸류를 평가하는 안목이 떨어지고 뉴스제작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만약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선정적인 화면, 눈길을 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의 방송 참여가 굉장히 농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고 있는 방법은 제가 동아에 오면서 동아미디어아카데미원장을 현재 겸하고 있고 또 오기 전에도 SBS에서 같은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말씀 올리면 저희가 시청자 참여를 전제한 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동아미디어아카데미에 저널리즘 강좌가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강좌이고, 현재 동아일보 신문에

속해 있는 기자 서른 한 분이 이 과정을 이수해서 실제 뉴스 제작에 필요한 노하우와 텔레비전 뉴스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교육 퀄리티를 뉴스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기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기준이 도달된 사람에 한해서 시민기자 자격으로 저희 뉴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둘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국 신문방송학과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인재들 중에 좋은 인재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일한 교육을 저희들이 제공함으로써 도처에 발생하는 뉴스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협력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설명으로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송편성 및 제작비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사는 방송편성에 있어서 교양의 비중을 00%로 오락 비중인 00%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제작비 중에서 오락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약 00.0% 정도로 타사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편성방향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희설 (가칭) 채널A 편성책임자

-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양프로그램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신생 법인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방송의 대표적인 주인공 아니십니까? 저희에게 제작비 산정이나 편성표를 짜는데 지침을 주신 것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시 말해 채널A가 정부정책에 의거하여 출범해서 조기에 자리잡는 것이 어찌 보면 채널A도 사는 길이고 또 정부의 방송 허가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라임타임대의 경쟁을 피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경쟁을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틀을 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다시 말해 프라임타임대의 집중적인 경쟁력을 투입해서 경쟁구도를 가져가야 됩니다.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부분에 관한 주변 시간대 부분은 저비용 고효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라는 지침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하여 저희 편성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시설과 어찌 보면 방만한 경영시스템에 움직여지는 그런 제작비와 로스를 줄이는 대신 저희는 프라임타임대에는 압축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주변 시간대에는 시청자들 참여폭을 넓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는 포맷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올리면 11시대의 경우도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연예인들로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지상파는 꼭 차 있습니다. 이들 출연자가 요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만약 채널A마저도 같은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맞대결을 벌인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출연료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성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시간대 이외의 프로그램은 메시지와 시의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주말 예능 시간대에도 저희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은 전부 일반 시청자들이 참

여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연예인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크지만 제작비는 경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의 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을 나눠서 하는 편성이 아니라 바로 연속으로 이어가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 제작비 부분이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서 프라임타임대에 집중이 되고 주변에는 그런 같은 효율을 내는 경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해서 제작비 부분에 어찌 보면 불균형적인 투입이 보여지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계획서 104쪽에 보시면 편성 자율성에 관련된 갈등의 해결기구로서 갈등중재위원회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 해결방안은 편성책임자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등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희설 (가칭) 채널A 편성책임자

- 제가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업계획서 104쪽에 나와 있는 방안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편성의 독립성의 가치는 무한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차 편성위원회 그리고 2차 편성위원회해서 2단계의 편성위원회를 통해 편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상파방송사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편성위원회를 통해서도 갈등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개의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파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력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KBS, MBC, SBS에 쪽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라고 신생 대표께서 방안을 주신 것이 한번 시청자위원회가 중심이 된 갈등중재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더 두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의 독립적인 편성위원회 1차 위원회, 2차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주는 갈등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중재위원회 구성은 일단 시청자위원회 한 분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회사 측에서 추천한 외부인사 2인 그다음에 종사자 측에서 제시한 외부인사 2인, 5인 위원회가 갈등 사안에 대한 조사를 벌입니다. 그 조사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조정안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편성책임자가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하나는 편성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2단계에 걸쳐서 검증받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설명 올립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금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디지털융합 트렌드가 초래한 종이매체사업의 하락세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종합편성PP를 통해서 방송계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계마저 주 수입원인 광고수입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뉴욕타임즈의 경우 방송계에 진출했다고 이를 다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문사가 방송으로 진출하는 것이 사업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호 (가칭) 채널A 최대주주

- 저희가 꾸준히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많이 고민해 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일반적인 사업 감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아미디어그룹은 방송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충분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과연 방송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영리적인 목적으로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지금 쉬운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신문사가 방송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따른 새로운 진출이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사로서의 사회적인 책무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감성적이라든지 혹은 너무 명분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동아일보는 창간된 지 90년이 됐습니다. 1920년에 신문사를 처음 시작할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시작했을 것이냐라고 그랬지요. 물론 시작한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독자들이 이런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잘 모르셨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당 직후 혼란기, 군사독재기 등 길고 긴 고난의 시절을 헤쳐 나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 선배들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겪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가 지금 와서 방송에 뛰어드려는 것도 역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아일보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라는 시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 양분화되어 있다고 할까,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점들도 있을 테이고 하는 것들을 통합을 위한 '동아일보의 제안'이라는 부제로 이러한 기획 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달 기획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11년에는 또 다른 기획 기사,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서 통합을 위한 '동아일보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심층적인 기획 기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도 할 것이고 2013년에도 할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도 그런 역할을 같이 해 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좀 더 빨리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라도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대장금’ 그리고 ‘겨울연가’ 등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 콘텐츠는 커다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한류열풍이 식으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이 정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발전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박희설 (가칭) 채널A 편성책임자

-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사실입니다. 한류 콘텐츠의 열풍은 지난 10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대표 브랜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렌드 중의 하나가 한류열풍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또 현업에 종사하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채널A가 나름대로 기존의 방식으로부터의 이탈 내지는 새로운 방식의 출발 이런 개념으로 마련한 것이 콘텐츠의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약 70여개 제작업체들과 콘텐츠 판매와 관련한 문제점, 한류 열풍이 꺾이는 원인을 아주 심도 있는 인터뷰 면접을 쪽 진행해 왔습니다. 저도 20년 이상 지상파에서만 있어 와서 갑의 위치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의 입장을 정말 진솔하게 들어보는 경험을 이번에 채널A라고 하는 방송사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외주제작 집단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방송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동반자이지 갑을관계 우월적 지위에서 대하는 파트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를 열고 들어봤더니 제일 큰 문제가 콘텐츠 판매의 독점권이 지상파방송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드라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그야말로 판매가 안 되어야 할 프로그램까지 끼워서 파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번들링 패키지를 감행하면서 그야말로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저작권권을 지상파방송사가 독점하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업체들인 외주제작사의 사기라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부분에 있어서 의욕이 상실된 부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2의 한류 붐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창작기여도에 따라 외주제작사와 공정하게 저작권권을 공유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저희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판매와 관련하여도 저희가 지상파방송처럼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담고 있는 콘텐츠 개발회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주로 판매되는 콘텐츠는 드라마와 역시 다큐멘터리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주요제작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교양 다큐멘터리 전문제작사가 함께 참여하는 콘텐츠 개발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를 통해 유통을 담당하는 것으로, 저희 채널A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든 창작 주체들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네트워크를 같이 활용해서 매출 극대화 와 한류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방안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전 마케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하는 해외 한류 콘텐츠 흐름에 대한 외국 시청자들의 트렌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사업계획서에 담은 것처럼 그대로 약속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한다면 저는 제2한류 붐이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나름 확신합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한 3~4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간단한 것 더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224쪽을 보시면 가중자본 비용, 채널A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자본비용을 00.0%로 추정하셨고, 또 내부수익률인 IRR은 00.0%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2000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중자본 비용과 내부수익률이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수익성 전망이 어둡다고 볼 수 있는데 채널A의 수익성이 과연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경영상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국정 (가칭) 채널A 대표자

- 수입 전망은 있는 것으로 전제해서 계획서를 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자로부터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윤경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윤경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IRR이 WACC에 비해 00.0%가 00.0% 대비해서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IRR이 WACC보다 높기 때문에 수익성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익성이 완전히 장밋빛 전망은 아니라는 데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과정은 저희가 채널A의 매출과 손익전망을 할 때 있어서 보수적인 시장 시나리오에 기반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근거를 산출할 수 있는 매출과 비용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습니다. 보수적 시장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종편사업자의 개수도 있겠고 미디어렐이 미도입된다, 또는 KBS-2의 광고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여러 가지 시장 시나리오 과정에서 가장 보수적인 것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고 계신 추정재무제표상으로는 수익성 전망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보수적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사업 운영 시에는 이보다 큰 업사이드 포텐셜이 여러 부분에서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성장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양방향광고, 맞춤형광고 같은 신유형 광고시장이나 또는 VOD, T-커머스 이런 뉴미디어 시장 성장을 매우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것들이 현재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경우 이 같은 전망은 최근 방통위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렇게 가정할 경우에는 훨씬 시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사업계획서 내에는 사업 영역 확장 사례로 신개념교육사업이라든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사업을 언급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매출 숫자상으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저희가 투자금액은 반영을 했지만 향후 2016년 후에 매출로 계상된 부분은 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향후에 훨씬 큰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고 안국정 대표님의 3분 정도 마무리 발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 안국정 (가칭) 채널A 대표자

-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정부가 신규 종합편성사업자를 승인하려는 취지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고품격 콘텐츠와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일 것입니다. 둘째, 신문·TV·잡지·인터넷·스마트폰 등 모든 미디어에서 통할 수 있는 융합형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셋째, 외주제작사와의 상생관계를 통해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달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3가지를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달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채널A야말로 정부가 종편을 통해 구현하려는 정책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자신합니다. 채널A가 어떤 방송사가 되려는지는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채널A는 창조적 외주제작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방송사가 되려고 합니다. 외주제작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내고 꽃피우는 창작의 메카가 되겠습니다. 채널A는 작고 효율적인 개방형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심층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시청자를 찾아가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겨냥한 대형 다큐멘터리도 적극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채널A는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콘텐츠를 크게 늘렸습니다. 기존 지상파의 6배에 이릅니다. 채널A는 이미 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드라마는 물론 예능 분야에서까지도 새로운 포맷을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채널A는 OOOOO, OOO, 컴캐스트 등 세계 유수의 미디어그룹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한국의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방송기술과 장비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는 가능한 한 국산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서 국내 업체들을 육성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방송은 항상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는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방송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지적해 주신 귀한 말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셔서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또 같이 참석하신 배석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채널A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매일경제TV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매우 추워서 의견청취 일정에 혹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바쁘신 중에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불가피하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매일경제TV의 종합편성PP 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대표자이신 윤승진님 맞습니까?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장태연님 맞습니까?

○ 장태연 매일경제TV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장대환님 맞습니까?

○ 장대환 매일경제TV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PP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는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참석자 분들께서는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것이며,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의견청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하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3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의견청취 대상자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께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하지 않는 한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배석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기립하여 답변하실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를 대표하여 오신 분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주주를 대표하신 장대환님께서 3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환 매일경제TV 최대주주

- 매일경제신문의 장대환입니다.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45년 동안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보도채널 MBN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케이블TV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잡지, 모바일, 내비게이션, DMB, 라디오, 세틀라이트TV, IPTV, 스마트TV, 태블릿 등등 크로스 미디어를 넘어서 지금 트랜스 미디어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경은 그동안 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대한민국을 지식기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종편을 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멀티채널과 멀티플랫폼 시대에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유통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매경 종편을 글로벌미디어로 도약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MBN을 종합편성 TV로 확대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편은 제 생각에는 보도와 엔터테인먼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도는 17년 동안 벌써 24시간 방송을 해 왔고 이미 4,00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연예, 오락, 스포츠, 드라마를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미 확보된 인력, 장비, 자본금, 노하우 또 브랜드 가치, 유형·무형 자산을 총 망라해서 신규 종편 중에서 가장 먼저 온에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S 매경 종편은 신문 업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ABC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고, 두 번째로 광고 증대를 통해서 내수시장 활성화와 고용창출 또 한류의 지속성장,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의 공정거래라든가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공중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17년간의 신문·방송 경영을 토대로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트랜스 미디어로 성장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청법인의 대표자이신 윤승진님께서 3분 이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미디어그룹의 MBS 종편채널사용사업신청을 한 (주)매일경제TV MBN의 대표이사 윤승진입니다. 먼저 연말에 이렇게 휴일도 없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3년에 출범해서 국내 유일의 신문·방송 겸영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저희 MBN은 지난 17년 동안 4,000억원이 넘는 투자와 노력으로 안정된 보도시스템 또 숙련된 방송 인력, 첨단 디지털장비와 시설을 갖

추고 현재 국내외 케이블과 위성TV, DMB, 스마트 미디어, 양방향 프로그램 등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1,800만 국내 시청자 가구와 1,600만의 미주, 아시아, 중남미를 포함한 해외 가시청가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MBN의 모기업인 매일경제신문은 국내 최대의 경제신문으로 세계지식포럼 또 세계 주요도시 포럼, 한상대회 등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고, TV도쿄, AP, 중국의 CCTV라든가 싱가포르, 인도, 태국, 필리핀, 터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뉴스 방송사와 세계 각국의 한인방송 등 00여 외국 방송사들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000000, 00의 000그룹이 MBS에 지분 참여를 하는 등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면서 트랜스 미디어 시대에도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MBN이 확대 발전되는 MBS는 사업승인을 받는다면 가장 앞서서 준비된 방송사로서 누구보다 먼저 저희가 안정적으로 글로벌미디어 또 스마트미디어를 향한 양질의 방송을 시작할 자신이 있습니다. MBS는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기업과 국가의 힘이 되면서 아시아 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아시아의 미디어 허브가 되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등을 위해서 콘텐츠 생산과 유통, 영상산업 발전에도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와 제작 또 각종 제도적 장치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수 계층을 포함한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앞장서며 시청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외주제작사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공익성 또한 최대한 확립할 계획입니다. MBN은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채널 방송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공정성·공익성에 있어서 공인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공정성·공익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시청률 또 매출액 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상해서 방송 시작 3년만인 2014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이후부터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낭비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합리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초기에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 경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는 편성에 있어서도 기존 지상파방송사와는 확실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고 방송영상산업 육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MBS를 국익과 공익에 충실하면서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미디어로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매일경제TV에 종합편성PP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사는 우리나라 방송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귀사가 종편PP로 선정되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점, 또 폐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만 먼저 워낙 독과점으로 그동안 오랜 기간 방송을 해 오다 보니까 방송사들의 낭비, 사이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대해 있고 또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저희가 봐 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산업을 같이 육성해서 공생 또 상생을 하자는 그러한 자세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비대한 몸집으로 비대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따르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위화감 또 기타 다른 방송 부문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역효과도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사들이 물론 그렇게 일부러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념적인 성향에 상당히 쏠린다든가 하는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외주제작사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해외 진출에는 현재의 지상파방송들이 취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방송사들은 자기네 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한 50% 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3% 정도에 머무른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케이블TV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케이블TV 방송국 중에서 140여개 PP들 중에서 80여개 정도 아직도 손실을 내고 있는 열악한 방송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개선해서 아주 효율적인 경영과 함께 이념에 휩쓸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또 객관적인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저희가 방송산업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방송산업 육성을 위해서 외주제작사와의 관계도 반드시 선진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국가가 바라는 그러한 건전한 방송사가 되어서 방송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해외 진출에도 역점을 두어서 그야말로 한국이 원하는 글로벌미디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현재 지상파3사가 종합편성방송으로 정착한 상황에서 귀 신청법인이 종합편성PP 법인으로 진입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편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편성책임자께서 조금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양질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또 특화된 콘텐츠 그리고 지상파와 차별화되고 이것이 해외로 많이 콘텐츠가 나갈 때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의 국제 분업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지상파와 경쟁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저희

는 지상파와도 충분히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편성 책임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태연 매일경제TV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지상파나 방송사들과 몇 가지 큰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3대 편성이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빅앤스몰 아이디어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5, 45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 편성이념 전략을 말씀드리면 21세기를 관통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스마트조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저희가 하나 걸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통합, 국익 창출 이것을 국가적 정체성까지 연결시키는 비전 코리아라는 이념을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원 아시아 전략 개념을 저희가 구현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미디어 기업으로 태어나겠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3대 편성이념 전략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또한 빅앤스몰 아이디어 전략으로 투자할 콘텐츠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효율성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또한 15, 45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방송의 관행인 정시 운행에서 15분 빠른 45분에 시작하는 그러한 편성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분부터 정시까지 일반 시청자들이 리모컨을 들고 어디를 가야 할 모르는 방황하는 시간 15분을 MBS가 책임지고 보다 새롭고 풍성한 콘텐츠로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편성이념 전략이나 빅앤스몰 아이디어 전략 15, 45 전략으로 기존 공중파 그리고 또 같이 출발하는 종편사 어디와도 경쟁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잘 아시다시피 이번 승인 심사에서 글로벌미디어그룹으로 향한 의지와 계획은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귀사의 글로벌 비전과 실행계획을 귀사의 핵심 역량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MBS는 우선 글로벌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7년 전 '93년에 케이블방송을 시작할 때 다른 언론사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 방송을 쭉 해 오면서 상당히 보도채널만 가지고는 글로벌미디어가 되는데 한계가 있었구나 이러한 것을 오래 전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님 계시지만 저희 회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세계적 미디어로 발돋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 특히 매일경제신문 또 매일경제미디어그룹은 그러한 부분을 오래 전부터 착안해서 한 10여년 전부터 세계지식포럼이라든가 세계한상대회 등 세계 주요 도시 포럼 이러한 것들을 쭉 개최해 오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쌓아왔습니다. 우선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고 방송에 있어서 MBS는 콘텐츠 분야 또 유통 분야 그리고 직접 사업 진출 이러한 단계적인 글로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편성책임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

니다만 기획 단계부터 저희는 수출을 염두에 두고 상시적인 기획 창작 시스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소재 또 내용개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드라마라든가 예능 분야에 있어서 음악 분야, 애니메이션, 다큐 이러한 것들도 아시아를 무대를 한 명품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적인 콘텐츠 제작펀드 이러한 것도 구성해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뉴스와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쪽 뉴스전문채널로서 일해 왔습니다만 아시아 관련된 그러한 뉴스 또 국제 뉴스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거꾸로 저희가 만든 것을 또 외국에 보낼 수 있는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배급 쪽에서도 글로벌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이것을 또 다른 수익원의 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 유통 배급을 전문으로 하는 멀티콘텐츠스튜디오 같은 것을 설립해서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와 함께 조인트벤처 형태의 직접 진출, 그리고 아시아 콘텐츠 신디케이트 시스템 이러한 것을 설립해서 원아시아 유통 배급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물론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인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배급망을 구축하고 아시아 지역 진출이 완료된 이후에 또 유럽, 아프리카 이런 쪽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진출에 있어서도 저희가 제작방송 이러한 것도 초기부터 조인트벤처사업을 저희와 협약을 체결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 5년, 6년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또 세계 국가들과의 M&A를 통한다거나 지분 참여, 자본 투입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채널로서도 직접 외국에 진출해서 그쪽에서 방송하는 꿈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다소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법인의 OOOOOOO가 OO억원 출자 예정이신데 사업계획서 188쪽을 보시면 신청법인은 OOOOOOO와 원금 및 연 O%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OOOOOO가 신청법인에 투자 후 O년 이내에 증시 상장을 통해서 원금과 연 O%의 수익률을 더한 규모의 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 OOOOOOO가, 그러니까 MBS의 주주가 되겠습니다. OOOOOOO가 투자원금 플러스 연리 O%의 금액으로 주식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해당하는 계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셨는지 여쭙보겠습니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지금 말씀해 주신 끝 부분의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OOOOOOO이 저희에게 OO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모든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OOOOOOO의 여러 가지 경영지표를 포함해서 다 공증까지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OOOOOOO는 매일경제신문과 거의 창간 초기부터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온 돈독한 사이의 언론사입니다. 장대환 회장께서 OOOOOOO의 경영진들과 오랜 교분을 쌓아오셔서 이번에 저희가 종편사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한 1년 전에 그쪽의 사장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마쳤고 이러한 것

은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신문에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단리의 자금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 국내 PF펀드의 경우에는 보장수익률이 0~0%가 넘는 무시무시한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의와 또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0%, 그것도 단리입니다. 단리 0% 정도로 해서 그야말로 명목적인 수준의 이율로 해서 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나중에 신문이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의 000 000000에 대한 또 다른 신뢰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확실한 투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00 0000000가 제출한 투자 약정서에는 이러한 바이백 옵션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방송법을 보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00 0000000가 제출한 투자약정서에는 바이백 옵션이 없고, 매일경제신문사 이유상 부사장님께서 0000000에 바이백 옵션을 약속하는 서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00 0000000와 MBS 간의 투자약정서가 없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매일경제신문사는 이 투자약정서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유상 부사장 명의로 0000000에 이런 바이백 옵션 서신을 제출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제가 실무 담당을 하지 않아서 약간 헛갈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 CFO이신 이유상 부사장께서 편지를 교환하고 그것을 서류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를 맡은 저희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종합편성채널 실무팀장

- 매일경제 종합편성채널 실무팀장을 맡고 있는 서양원 부장입니다. 제가 0000000에 방문했습니다. 1차로 장대환 회장님께서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2차로 조현재 실장님과 제가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문화 특성상 어느 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지루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 30년 가까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따지고 요구합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해외 투자할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런데 매일경제에 대해서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례적으로 매일경제의 주요주주로서 투자를 해서 매일경제와 함께 아시아 특히 중국, 일본 이런 지역, 그래서 0000와 매일경제가 방송 부분에서 서로 협력해서 아시아 시장을 누비자, 이런 목

표를 가지고 저희의 주요주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OOOO의 자회사인 OOOO가 있습니다. OOOO는 종합편성방송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포켓몬스터로 세계적인 히트상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캐릭터 사업으로도 꽃을 피웠고 저희와도 같이 그 분야에서 수입증대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OOOO가 저희한테 투자를 하는 그 조건은 아마 일본 경제의 특성상 해외투자를 할 때 공동책임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일경제의 경영능력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 담보장치를 해 주자,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O% 단리입니다. OO억원 투자하고 O년 후에 갚을 때 just O억원만이 이자로 붙습니다. 아주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파트너십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양사는 앞으로 신문과 방송, 특히 방송 부분에서 아시아 시장을 누비기 위한 공동협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가 상장계획을 분명히 공시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주관사를 OOOO으로 선정했고, 3년 있으면서 4년차부터 BEP 포인트에 들어가고 그래서 상장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O년차에 상장이 들어갈 때 OOOOOO에서는 매일경제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출자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릴 텐데 매경TV는 2010년 중에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매경신문은 OOO억원 가량을 매경TV에 추가 출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상증자와 매경TV의 순자산, 즉 자본은 OOO억원이 됐고 이를 MBS가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매경신문은 매경TV가 부담하는 보증금을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인상해서 결국 현금 OOO억원 가량이다시 매경TV에서 매경신문으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계열사 간 동일 자금을 종편 출자 재원으로 이중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혹시 제가 이해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회계적으로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종편사업 추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류호길 국장이 답변을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이광수 MBN 관리부국장

- MBN의 관리부국장을 맡고 있는 이광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이광수 MBN 관리부국장

- 저희가 MBS 종편 준비를 하면서 매일경제 사옥 1층과 지하1층에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이면서 사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경제신문사에 정당한 대가를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1층과 지상1층 1,532평을 000억원 보증금으로 임차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는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및 기업진단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순자산 가액을 000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확정된 000억원을 신설법인인 종편PP에 출자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평가보고서가 아닌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또 진단보고서만으로 순자산 가액을 확정하고 종편PP 출자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방법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저희가 이 부분은 적절한 평가 회사의 적절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사무국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호길 매일경제TV 사무국장

- 사무국장 류호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 종편의 경우 다른 신설법인들과 달리 기존의 법인이 신청법인이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RFP의 매일경제TV, 현재 MBN의 자산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통위의 RFP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 심사위원장

- 후속 질의가 있습니까?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제출하신 사업계약서 본문 82쪽에 보면 KBS-1을 제외한 기존 지상파와 유사하게 편성에서 오락의 비중을 5년 평균 약 00% 그리고 교양의 비중을 약 00%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제작비율을 00%로 다른 신청법인에 비해서 비교적 높게 설정을 하셨는데 오락의 비중을 좀 높게 잡고 또 자체제작 비중을 높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편성책임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태연 매일경제TV 편성책임자

- 초년도 편성비율을 말씀드리면 보도 00%, 교양 00~00%, 예능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도 그 정도 비율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종편이 출발하면 선정성 내지는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품질저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세간의 우려들을 미리 불식시키기 위한 저희들의 편성전략입니다. 그래서 공익프로그램에 저희 편성비율을 약 00%로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능이나 보도프로그램에서도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보다 실상은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제작 00%는 MBS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00%의 외주제작을 가져가는 것은 외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저희들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귀 신청법인은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하여 기존 다양한 미디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편PP를 통해서 귀사가 창출해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저희는 지금 실질적으로 신문, 방송 그리고 주간지, 월간지, 인터넷 등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미디어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매경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종편이 될 경우에 MBS가 출범하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미디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다른 미디어들과의 좀 더 나은 융합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저희는 트랜스미디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수요자 기반의 미디어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복합융합미디어 그리고 단순한 윈도우 콘텐츠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스마트 미디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약진을 하면서 앞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N스크린 전략에서 나아가 터치스크린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미디어체험이 아주 중요요소가 되고 수요자 기반 미디어가 확실히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콘텐츠의 연결성 또 유기적인 미디어가치사슬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과 웹사이트 등등을 포함해서 특히 모바일 플랫폼과 융합을 해 나가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수요자 기반 콘텐츠로 제작해서 시청자들이 끊임없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끊임없이 시청 가능하도록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등과도 접목해서 콘텐츠와 소비자 간의 유기적인 효과 이러한 것을 내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에 대응하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을 국내 미디어 환경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시아지역, 단기적으로 아시아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나아가서 전 세계지역의 미디어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의 미디어로 저희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가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138쪽에 의하면 지역간 협력과 국내 플랫폼 확보 방안의 하나로 또 상생방안의 하나로 지역 SO의 지역뉴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 혹은 SO 제작프로그램을 재편성하는 그런 방안 등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방법이 지역 SO와의 관계를 대단히 좋게 하는 데에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에 비추어 봤을 때 현실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지역 SO들이 가지고 있는 취재력이라든지 보도 및 제작능력 또 뉴스밸류의 기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역 SO들이 종합편성PP에 편성할 만한 그러한 제작물들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런 방식은 종합편성PP의 도입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지금 심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종합편성PP 또 종합편성채널이라고는 하지만 SO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에 진출을 해야 되는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로든 이 SO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SO와 협력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종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SO와의 협력, SO와의 뉴스방송 또 프로그램 교류 이러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MBN은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의 SO와 아주 긴밀한 뉴스 협력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폭설이 내렸다거나 할 경우에 지금은 각 지역 SO들의 화면을 받아서 저희 기자들이 그쪽 기상청이라든지 또 기자들과 연락을 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사는 아주 엄격하게 데스크킹을 하고 또 화면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른 뉴스 소스를 활용해서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이 되면 현재의 수준과는 훨씬 다른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품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취재, 보도 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SO들의 취재, 보도, 제작능력을 향상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계획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SO 기자들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내려 보내고 있고 SO들도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키워나갈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품질이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보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편PP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연 SO들과 종편PP와의 어떠한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 방송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꾸준히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장태연 매일경제TV 편성책임자

- 제가 한 말씀만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는 중앙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한 종편의 사명 중의 하나로 생각하면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SO들의 품질수준이 종편 수준이 되도록 저희가 출범과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성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 '플러그인'은 지역의 SO 뿐 아니라 지역사나 독립PP들과 공모전 영상제작 등 이런 다양한 제작 기회의 문호를 넓힘으로써 지역의 SO나 PP가 종편 수준화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나 지역 SO, PP들이 종편 수준이 되도록 품질 내지는 능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다음 질문입니다. 귀사에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64페이지의 3항입니다. 소수 시청자 배려 프로그램 편성비율 및 제작비를 보면 여성을 소수 시청자로 분류해서 제작비 비율 OO.O%를 소수 시청자 편성비율에 포함시켰습니다. 여성이 소수 시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소수 시청자 편성비율을 의도적으로 높게 포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장태연 매일경제TV 편성책임자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MBS의 소수 시청자 배려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통한 배려 그다음에 접근성을 통한 배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약자나 소수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소수자, 소수 시청자 배려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시청자를 OO.O%에서 소수 시청자 배려에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 표현상에 잘못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편성표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저희는 오전 시간대 우리 주부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주부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들이 MBS의 메인 시청층임을 자각하고 그런 가운데 여성 시청자의 비율은 소수 시청자의 비율에서 넘어서는 그런 비율로 책정해 놓고 또 전략상 여성 시청자가 저희 미래의 매우 중요한 타겟이라는 것이 편성전략의 근간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매일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TV 모두 지금까지 경제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그러한 면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강조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경제 분야 비교우위 이외에 다른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매일경제신문은 42년 경제를 다뤘습니다. 우리 국가경제발전과 또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또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일해 온 국내 최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미디어사입니다. 경제를 향한 DNA가 아무리 종편을 한다고 해도 저희는 그것이 없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MBN이 앞으로 MBS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만 MBN의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저희가 경제를 상당히 중시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의 캐파가 커지고 콘텐츠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종합뉴스 또 종합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마음속이나 저희의 편성전략에 있어서는 항상 경제가 들어있습니다. 비록 뉴스를 하지만 뉴스에도 거의 많은 부분이 경제뉴스, 경제 쪽 분야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S의 경우에도 글로벌미디어를 지향하면서 원아시아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원아시아 쪽을 보면 그 정신은 아시아의 경제통합 그리고 아시아의 문화통합,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 또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익을 창출하고 우리 국가 경제의 발전 또 해외 수출을 하는데 저희가 일조를 하고 큰 기여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업계획서를 꼭 관통하는 내용이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편성에 있어서도 경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태연 매일경제TV 편성책임자

- 저희가 편성표를 작성할 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MBN이 지난 17년간 경제채널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왔지만 MBS로 출발할 때에는 그런 보도채널, 경제가 강점인 채널의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의지해 가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상 그런 경제 특화된 MBN의 그런 이미지를 약간 의도적으로 단절한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간 닦아 놓은 경제에 있어서의 강화된 장점들은 저희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스에서도 그런 경제 특화된 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내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경제를 매우 재미나게 21세기가 요구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MBN의 강점을 특화시킨 그런 프로그램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프로그램화시킨 '하우스 제왕'이라든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숨은 투자자들과 연결시켜 주는 '맨발의 청춘' 등 여러 경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그간 쌓아 왔던 경제적 특성에서의 경쟁력을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더 충실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추가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제출하신 편성과 관련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본문 96쪽을 보면 기본편성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편성표를 보면 기존의 지상파에서 제시한 편성표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파에서 주로 많이 한 것이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또는 월요일부터 심하면 금요일까지 동일 시간대에 편성을 해서 시청자의 습관을 유도하는 그런 편성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편성표를 들여다보니까 각 주요시간대별로 특히 예를 들자면 프라임타임대 9시부터 조금 늦은 시간대인 밤 12시까지 보면 요일별로 동일한 프로그램이 하나

도 없습니다. 좀 특별한 편성을 하셨는데 후발주자로서 뭔가 시청자의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일시간대에 월화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특별한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장태연 매일경제TV 편성책임자

- MBS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표현한 것이 편성표이고 심사위원님께서 지금 봐 주신대로 아주 정확하게 잘 보아주셨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내세운 편성전략 중의 하나는 요일별로 특화된 드라마 콘텐츠,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요일별로 편성해서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겠다는 것이 이 편성표에 나타난 전략입니다. 기존에 월화, 수목 그다음에 토일 이렇게 2편짜리로 이어지는 드라마에 시청자들이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생각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2편을 연속 제작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효율도 많지만 그보다는 엄청나게 더 큰 폐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드라마 시스템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요일별로 월요일에는 아시아를 무대로 한 대작드라마 '화요 트렌디', 수요일, 목요일 다른 드라마들, 목요일은 시대물, 금요일은 청소년, 토요일 시트콤, 일요일 단막으로 해서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부응할 생각을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60분 짜리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compact 그리고 impact 있는 제작을 할 것이며, 이것은 기획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드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관행적인 그리고 폐해가 있는 라이프스타일은 MBS가 이번 기회에 먼저 한번 깨보는 그런 신선한 시도를 MB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그런 저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좋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수 있는데 다음 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대장금' 혹은 '겨울연가' 이런 사례들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콘텐츠는 커다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류열풍이 식으면서 콘텐츠 수출이 정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실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태연 매일경제TV 편성책임자

-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 시장을 주름 잡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연가', '대장금' 이런 것들이 그런 열풍을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그 내용을 따져 볼 때 그것이 글로벌 시장이나 한류열풍을 몰고 오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지상파의 폐해나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적극성이나 문화적인 개방성 그다음에 기획 단계에 있어서의 글로벌 시장 겨냥, 이런 점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

입니다. 저희는 사업계획서에서 심사위원들께서 보셨겠지만 멀티콘텐츠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 개념의 회사를 설립해서 기획과 제작, 유통과 배급에 있어서 지난 시절 우연히 확산된 한류가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준비된 한류 콘텐츠들로 아시아 시장과 세계 시장에 뻗어나가는 그런 방송사가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시간상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고 윤승진 대표께 3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 윤승진 매일경제TV 대표자

- 저희 MBS의 종편채널사업 승인 심사 의견청취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직접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가 경험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 또 고견, 이러한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은 생각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돈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의 강한 실천 의지 그리고 많은 방송 경험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 또 숙련도가 어우러져야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MBN이 한결같이 이러한 모습을 견지해 왔고 그러기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성공한 미디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아까 왔던 또 자랑스러운 MBN을 뒤로 하고 그야말로 필사직생의 각오로 이 종편사업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MBS가 사업승인을 받는다면 지금 심사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또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끌어내, 국내는 물론이고 또 해외의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글로벌미디어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또 사회적 공기로써 공정 무사한 언론의 정신 그리고 창조적이고 세계를 지향하는 저희 매경미디어그룹의 기업문화, 앞으로 저희 MBS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저희 희망에 차고 또 신념에 찬 MBS의 모든 주주들 그리고 미래 직원들에게 많은 사랑, 따뜻한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미디어로 거듭 나서 심사위원들과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심사위원장

- 30초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 장대환 매일경제TV 최대주주

-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렇게 하시지요.

○ 장대환 매일경제TV 최대주주

- 아까 심사위원님 한 분께서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MBN의 현금성 자산이 약 0000억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편당한 것이 0000억원이고 1% 주주 룰 때

문에 3,950억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펀드를 0000억원 이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디어 빅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언론계에 변화가 올 것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또 북한 정치 체제까지도 많은 변화를 미칠 수 있는 것이 종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경이 미디어 빅뱅에 긍정적인 힘으로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셔서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같이 참석하신 배석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매일경제TV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가칭) CUN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매우 추워서 의견청취에 혹시 차질이 없을까 염려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쾌청합니다. 이 바쁘신 중에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불가피하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가칭) CUN의 종합편성 PP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칭) CUN 대표자이신 강대인님 맞습니까?
  
- 강대인 (가칭) CUN 대표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가칭) CUN 대표자이신 장근복님 맞습니까?
  
- 장근복 (가칭) CUN 대표자
  - 예, 장근복입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성기현님 맞습니까?
  
- 성기현 (가칭) CUN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하여 오신 오용일님 맞습니까?
  
- 오용일 (가칭) CUN 최대주주
  - 예, 오용일입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PP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는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과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참석자 분들께서는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것이며,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의견청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하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3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의견청취 대상자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께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하지 않는 한 특정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실사주 중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배석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기립하여 답변하실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분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 중 강대인 대표께서 3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인 (가칭) CUN 대표자

-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케이블연합중편 채널인 CUN의 대표 강대인입니다. 지난 40여년을 방송현장과 대학에서 방송인과 방송학자로 그리고 잠시 방송규제감독기구의 책임자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목표입니다. 현행 방송법의 틀을 만든 후 지금까지 저는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은 공영방송마저 상업성에 매몰되어 있는 방송 현실에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CUN은 지난 11월 중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의식조사와 방송서비스 행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외로 다수의 국민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적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나타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울골은 비판과 감시가 여전히 언론의 중요한 덕목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선조 초기에 서거정 선생은 언론의 기개를 벼락이 치거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끄덕없이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가 더 다양해지면서 여러 관계가 다층적 구조를 가졌더라도 이 시대의 언론인 언론이 비판자와 감시자의 책무를 게을리할 수 없음을 깨우쳐 줍니다. 또 하나 저의 관심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어떻게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껏 방송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작동하는 공정경쟁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지상파방송의 과점적 지배가 관행이 되고 정부정책의 뒷받침을 받는 인위적 시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경쟁력 없는 콘텐츠로는 살아남을 수 없고 그런 방송은 퇴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시장과 함께 하면서 추구하는 공익의 가치, 오랫동안 풀지 못한 방송의 품격을 높이는 과제, 잘 못된 관행과 왜곡된 방송현실을 바로 잡는 작업, 이런 목표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시대 사명입니다. 명실공히 글로벌미디어로 도약하는 과제도 화급을 다룹니다. 지역 가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제표준에 걸맞는 콘텐츠로 새로운 한류열풍을 만들고 싶습니다. 창의적 콘텐츠 제작과 유통으로 새로운 방송시장을 주도하고 싶습니다. 저희 CUN 가족의 열정과 전문성, 과감한 투자와 전략으로 이러한 과제를 풀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과 열정이 담긴 CUN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께서 물으시는 대로 성심껏 답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대주주를 대표하신 오용일님께서 3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용일 (가칭) CUN 최대주주

-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칭) 케이블연합종합편성 채널인 CUN 최대주주를 대표해 인사드리는 태광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오용일입니다. 태광산업은 섬유회사에서 출발해 이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석유화학업체이자 태광그룹의 모기업으로 재계가 인정하는 정도 경영기업입니다. 태광산업은 1997년 종합유선방송인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 1위 MSO 티브로드와 E채널 등 8개 채널을 운영 중인 티캐스트를 통해 쌓아온 방송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종편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태광산업의 취지에 공감한 국내외 여러 주주 및 SO, PP업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차세대 미디어산업 발전에 주춧돌이 될 CUN이 탄생했습니다. 태광산업은 CUN이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를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과 유료방송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국민 행복을 보장하는 방송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사훈을 걸고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서 태광산업은 CUN의 최대주주로서 이 같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종편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책무를 한시도 잊지 않고 굳건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미 태광산업과 주요주주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도 부족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을 해서라도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태광산업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창업주의 지시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사회공헌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세화여중, 여고, 세화고를 최고의 사업으로 키운 일주학원, 국내 최고의 장학재단으로 평가받는 20년 역사의 일주학술문화재단, 문화지원의 새 지평을 연 선화예술문화재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편채널사업에서도 저희 태광산업은 정도 경영과 조용한 사회공헌을 통해 보여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참석자 모두 오늘의 이 청문회가 CUN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점을 즐겁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가칭) CUN의 종합편성채널 승인신청과 관련해서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귀사는 우리나라 방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귀사

가 종편PP로 선정되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대인 (가칭) CUN 대표자

- 대표를 맡고 있는 강대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이 1995년부터 유료방송시장으로 진입해 왔습니다. 지난 15년간 나름대로 유료방송 시장이 커가면서 방송이 활력을 얻는 것처럼 내면적으로는 빈약한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한국방송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소위 글로벌미디어로 전이해 들어가는 과제 자체를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CUN은 어떻게 하면 국내 콘텐츠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겠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같은 준비들을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미디어로 도약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현재 지상파3사가 종합편성방송으로 정착한 상황에서 귀 신청법인이 종합편성PP로 진입할 경우에 지상파방송사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편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기현 (가칭) CUN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입니다. 저희는 편성전략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지상파와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지상파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두 가지 축으로 편성전략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편성채널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와 또 하나 아까 모두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시청자조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4가지 방송이념을 세웠습니다. 공정방송, 열린방송, 로컬방송 그리고 녹색방송이라는 이념을 세운 그 두 축 아래에서 저희들은 3가지의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의 지상파의 편성전략이 리니어하고 아날로그적 지상파의 편성전략이었다면 저희는 네티니어한 편성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 기획 초기부터 시청자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시청자의 행태와 또 시청자가 사용한 단말기 또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보내주는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성격들, 특히 양방향성을 사용해서 저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라임타임에는 분명히 지상파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대에는 굉장히 고품격드라마, 고품격이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지상파와 경쟁을 하되, 나머지 시간들은 제안서에 표현한 대로 보완적인 편성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소수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시청자 여론을 통해서 시청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했고, 시청자는 다큐멘터리 같은 그리고 소수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들을 편성전략으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HD 본방송만 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세웠습니다. 물론 보

시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 혼자 CUN를 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하는 협력 SO, 협력 PP들과 함께 24시간 본방 프로그램을 꾸려나갈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성전략을 가지고 저희는 구체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15%까지 확대 편성할 예정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오후 시간대와 밤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화 세계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지역이 세계다, 지역이 미래다라는 명제 하에 현지화 세계화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방송을 추구하기 위한 상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상파와 경쟁적으로 분명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지상파와 경쟁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문에서 대표님께서 콘텐츠 기반 글로벌 사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승인 심사에서 글로벌미디어그룹을 향한 의지와 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귀사의 글로벌 비전과 실행계획을 귀사의 핵심 역량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근복 (가칭) CUN 대표자

-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근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상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시장은 미디어융합 또 규모의 경제라는 생존경쟁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바야흐로 글로벌 경쟁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미디어기업은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또 수직·수평적인 결합을 통해서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에 컴캐스트와 NBC 유니버설이 300억 달러에 합병을 한 예도 있습니다. 또 대형화 추세와 관련해서 매출액을 보면 타임워너는 54조원, 디즈니는 43조원에 달하는데 국내 KBS는 1조 3,000억원, MBC는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아직도 규모의 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미디어기업들은 기획에서 유통까지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지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사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외주제작 육성펀드를 통해서 외주사가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제작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영역을 전문화하고 글로벌 콘텐츠를 생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최근 SBS의 '툰드라'의 경우 일요일 밤 11시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12~13%라는 시청률을 보였고 또 MBC의 '아마존의 눈물'은 약 20%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품성과 대중성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국제적으로는 문화적인 거부감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문영역에서 전문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다음 단계로서는 글로벌미디어기업과 제휴관계를 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다음 단계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조인트벤처라든가 M&A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

런 부분에서 그 전략을 말씀드리면 글로벌미디어기업의 공통점은 콘텐츠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음으로 해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미디어기업들은 콘텐츠와 또 새로운 네트워크, 단말기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독자적인 영역에서 수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연합적인 전략 연대를 펴서 연합적인 전략을 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즉, 융합입니다. 지상파방송과 PP, 게임, 전자, 멀티미디어기업들이 함께 초광대역 인터넷이나 차세대 네트워크에 콘텐츠와 결합된 모델을 창출하는 그런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UN은 1단계로 우선 시드머니로 외주제작 펀드를 국내 000억원, 해외 000억원을 먼저 선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0000억원 이상을 각기 목표로 해서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외주사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과 함께 국내 최대의 글로벌 콘텐츠 aggregator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즉, 국내 독립제작사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작권을 통합관리하고 이런 모든 매체에 통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현지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3단계는 글로벌미디어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화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인 아시아가 2000년, 북미지역에 2000년, 유럽에 2000년 앞으로 미래 가능 성장성이 있는 중남미에 2000년에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화적 접근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외에서 적극 우리의 역량을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2분 이상 초과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다음 질문입니다. 대기업이 종합편성PP로서 방송사업에 새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인 (가칭) CUN 대표자

- 대표 강대인입니다. 이번 중편채널의 정부 방침은 미디어법에 따라서 언론사의 방송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이 큰 목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소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방송산업에 진입하게 됐을 때 과연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구현할 수 있고 공적책임 얼마나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익의 가치 또는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 지상파 또 공영방송 위주의 공익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이 바로 시청자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갖고 또 방송기업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이 건전하게 소위 자리 잡는 것까지도 공익의 가치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영과 소유가 완전히 분리되는 체제를 가져야 자본이 방송내역에 간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CUN은 철저하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틀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방송경영에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컨대 상법상 설치의무가 없는 사외이사를 둔다든지 또는 감사위원회를 둔다든지 사회공헌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방송의 공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감시의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사지요.

○ 심사위원

- 귀사께서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와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일 수도 있고 또 귀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귀사의 지배적 주주가 된 태광이 근래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편성PP는 전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매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태광이 최대주주가 되어서 종합편성PP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용일 (가칭) CUN 최대주주

- 대주주 대표 오용일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태광산업이 지난 60년 동안 한국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 어떤 정신과 신념으로 일해 왔는지는 국가와 국민의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 신문사가 보도한 것처럼 케이블방송을 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자평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모 종편의 주주사로서 참여하지 않고 태광산업이 단독으로 종편에 신청하는 것을 계기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CUN은 공정성·공익성·투명성 보장 및 소유, 경영, 편집권 분리를 위해 사외이사 추천제, 시청자위원회, 감사위원회, 시민단체 참여 등의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사지요.

○ 심사위원

- 귀사가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 194페이지를 보시면 제휴 SO, PP의 전문인력 활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휴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휴 SO가 계열사인 티브로드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전문인력 활용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강대인 (가칭) CUN 대표자

-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수직적 관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부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CUN에 참여한 SO는 전

부 OO군데입니다. 그 가운데 물론 태광산업의 계열사인 티브로드가 OO개가 있고, OOO계열이 O군데, OOO가 OO군데 그리고 OOOO가 OO군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다른 MSO들이 참여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마지막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다른 MSO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기대했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태광이 여러 언론보도의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가 MSO들이 더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만약 사업권을 얻게 된다면 나머지 SO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이 종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기반을 둔 SO와 상생할 수 있고 또 수많은 PP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티브로드의 SO만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이것은 사실확인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태광산업과 O대 주주인 OOOO은 일단 방송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것으로 사업계획서 등 신청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태광산업과 OOOO이 방송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것이 맞습니까?

○ 오용일 (가칭) CUN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최대주주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 심사위원장

- 됐습니다. 사실확인만....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제작비 투자 및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방송편성내용을 보면 교양 편성비율이 46%, 오락이 33%로 교양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본문 139페이지에서 연간 순수제작비로 OOOO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OOOO억원인데 가능한 제작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규직 기준으로 2011년에 OOO명, 그다음에 2015년에 OOO명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한 인력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장근복 (가칭) CUN 대표자

- 장근복입니다. 제작비 문제는 저희들 자본금이 OOOO억원입니다. 제작비는 5년간에 O조 OOOO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펀드까지 합하면 O조 OOOO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OOOO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에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 면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

은 타 종편사업자보다는 좀 많이 느껴집니다. 000명입니다. 정규직 000명에 비정규직 000명해서 000명인데 저희들은 이 인력이 우리 사업 규모에 비해서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규인력만 해도 000명인데, 물론 지상파와는 연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KBS가 5,000명, MBC가 1,600명, SBS가 본사만 872명인데 뉴스텍까지 합하면 1,400명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히려 저희들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작비 규모가 큰 만큼 제작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층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고 또 다큐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라임타임대에 다큐멘터리존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도국의 경우도 단순한 1분 30초 뉴스가 아닌 심층뉴스에 또 많은 인력을 투입코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시너지 효과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는 티브로드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PP를 통해 귀사가 창출해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현 (가칭) CUN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관계자인 티브로드와 티캐스트 그다음에 CUN이 수직적 계열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장점도 있고 아까 지적한 대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그 시너지 효과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콘텐츠로 활성화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콘텐츠가 처음에 제작 기획부터 시청자 말단에 이르기까지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CPNT라는 벨류체인에서 보면 콘텐츠와 플랫폼과 네트워크와 터미널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그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그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보는 콘텐츠의 질, 콘텐츠의 선순환 구조가 이런 모든 벨류체인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큰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종편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했었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플랫폼과 네트워크 그리고 시청자의 시청행태까지도 알아야만 종편이 지상파와 차별화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곳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PP와의 관계에서 보면 저희들이 24시간 본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상파는 지금 혼자 하기 때문에 코스트 대비해서 코스트를 생각했을 때 본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력한 SO, 또 저희들이 파트너로 가지고 있는 PP들과 함께 저희들이 본방한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first window라면 second window, third window를 그런 PP들과 함께 협력의 모델로 함으로써 콘텐츠의 선순환 구

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콘텐츠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콘텐츠의 가치는 상승될 수 있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품격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윈도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에게 알맞은 시간에 시청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SO와 PP가 저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방송법이나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상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장점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저희 CUN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저는 주주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이번 종편 승인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책목표 중 하나는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신청인은 외국인 주주로 일본의 OOOOO를 지분을 O%로 참여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OOOOO는 아시다시피 방송산업에 경험이 없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강대인 (가칭) CUN 대표자

- 대표 강대인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염려는 그런 근거가 다소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OOOOO가 주요주주로 참여한 것이 이번 종편사업자로서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궁극적으로 글로벌미디어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OOOOO가 방송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단순한 종합무역상사가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OOOOO는 일본 위성방송 플랫폼인 OOOOOOOO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최대의 음악전문채널인 OOOOOOOOO도 운영하고 있고 또 프리미엄 영화채널인 OO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할리우드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해외구매나 또는 판매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OOO와 조인트벤처로 설립해서 OO OOOOO를 통해서 북미지역에 성공적으로 송출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OOO와 우리 CUN이 결합하게 될 때 우리의 콘텐츠를 해외에 유통할 수 있는 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해외의 콘텐츠를 저희들이 들여오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종편사업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글로벌 자본이 저희들에 함께 참여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98쪽에 따르면 귀사는 개국 초기부터 흑자 달성까지 동종기업 임금 수준의 OO%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임금 정책으로 우수한 인력채용이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복 (가칭) CUN 대표자

- 저희들은 제작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을 지상파 SBS 수준 OO% 정도 책정하고 있는 이유는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사실상의 방책입니다. 현재 PP들은 지상파의 OO%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사에 10년 차 정도 되는 인력의 급여가 연간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장 그렇게 가지 못하더라도 OOOO만원선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고 기존 PP와는 달리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이 정상화로 안정될 때에는 오히려 지상파를 능가하는 임금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금 체계도 연봉제 플러스 성과급제를 가미한 형태로 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이름, 사명을 보면 '케이블연합종합편성채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구성주주, 케이블 관련 사업자는 태광산업 외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케이블연합'이라고 사명을 붙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인 (가칭) CUN 대표자

- 저희 사업계획서의 주주 또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SO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O개의 SO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SO의 OO%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77개의 SO 권역별로 보게 되면 약 OO%의 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주주 내지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PP의 경우에도 물론 저희 대주주의 계열사인 티캐스트 8개 채널을 포함해서 전부 OO개 PP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에 사실은 최종단계까지 참여를 종용했던 나머지 SO나 또는 기타 PP들이 함께 감으로 인해서 지난 15년간 유료방송을 같이 해 오면서도 어려움에 처했던 케이블산업이 이 종편사업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소위 종합SO 또는 종편의 이름을 갖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문호를 열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신청인의 사업계획서 153~161쪽을 살펴보면 2015년에 신청인은 우리나라 전체 광고시장의 00.00%, 수신료의 00.00%를 점유해서 결과적으로 2000년에 보면 SBS를 능가한다, 이런 야심찬 목적을 세우면서 매출액은 0000억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목표가 후발주자로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근복 (가칭) CUN 대표자
  - 장근복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에 0000억원이라는 숫자는 광고수익이 0000억원, 협찬 000억원, 수신료 000억원, 프로그램 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합 0000억원인데 이는 이미 SBS가 2009년에 4,891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0년에 00% 정도인 0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광고매출 추정에 있어서도 광고 집약도나 또 경제성장률 등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달성 가능한 숫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 161쪽을 보시면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대표께서는 SBS보다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표>를 보시면 2000년에 SBS의 매출액은 0000억원인데 CUN의 매출액은 0000억원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에서 오히려 SBS를 능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강대인 (가칭) CUN 대표자
  - 저희들이 2011년 12월에 정규방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초기부터 연간 0000억원, 이것은 직접제작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간접제작비까지 계상하게 되면 0000억원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감한 제작비의 투여라고 하는 것은 SBS 못지않은 콘텐츠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0년째가 되는 2000년이 되면 SBS를 능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또 나름대로 외주제작 육성펀드라든지 또는 글로벌 콘텐츠제작투자 펀드를 통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투입함으로 인해서 SBS를 그 시점에서는 능가할 수 있다는 계획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앞서 일부 말씀하셨듯이 귀사의 경우 본방송비율 100% 달성이라는 목표와 계획은 우리나라 방송제작의 여건이라든가 현실에 상응하는 조건이 될 수 있는지, 프로그램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본 방송 프로그램에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성기현 (가칭) CUN 편성책임자

- 본방송 100%라고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편성표를 보시면, 제안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편성표의 카테고리를 쭉 보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오전 9시~12시까지도 지역네트워크와 관계된 프로그램이 있고, 오후 12시~5시까지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보면 그 시간이 SO와 PP와의 연계프로그램인 미디어공감이나 상생공작소 같은 SO와 PP의 프로그램을 트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이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그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저희가 1차 윈도우로서 본방을 하고 2차, 3차 윈도우에서 저희들이 협력 PP나 또한 SO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영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재방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PP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윈도우로 시청자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PP는 고품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소비되게 함으로써 그 PP의 위상도 올라가고 많은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성 중에서는 SO가 PP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틀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9개소에 있는 지역 미디어창작센터를 통해서 만드는 지역적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4시간 본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리니어적인 요소이고 또 네티니어적인 요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양방향성 또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스마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네티니어 서비스를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분명히 충실하게 24시간 동안 본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윈도우 나머지 디바이스는 윈도우의 다양성과 윈도우의 다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대장금’ 혹은 ‘겨울연가’ 이런 사례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커다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위 한류열풍이 식으면서 콘텐츠 수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여하실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근복 (가칭) CUN 대표자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방송시장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악순환 구조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주제작사와 지상파방송 간의 구조는 하청구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상파3사의 드라마의 80%를 외주제작사가 제작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히트작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사의 대부분은 만성적인 적자, 또 영세성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독립제작사 85개 중 77%가 자본금이 3억원 미만이고 61%가 1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악순환 구조는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거래가 만연했지 않느냐, 따라서 저급한 콘텐츠가 양산이 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 계속 한류는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CUN은 그런 윈윈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합니다. 5년간 직접제작비로 0조 0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에 외주제작비는 0000억원입니다. 전체제작비 00%가 되는 뜻입니다. 이렇게 투입함으로 해서 영상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주비율도 00%에서 2015년 00%가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주제작 육성펀드를 저희들은 우선 300억원을 출연해 놓고 0000억원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 이 방식에 있어서도 할리우드식의 제작유통스튜디오 모델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본방송 100%를 함으로 해서 많은 외주제작사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겠습니다. 또 100% 풀HD 방송으로 해서 프로그램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HD시대를 당기고자 합니다. 또 외주제작사를 위해서 HD오픈스튜디오를 건립해서 기술지원까지 함께 함으로 해서 제작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주제작사와 공정한 거래를 확립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 공정성 확보방안으로서 또 다음과 같은 것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또 외주제작비율은 00% 이상 하겠습니다. 또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보장과 함께 수익부분의 공정성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르별로 표준제작비를 도입해서 외주제작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평함을 기하겠습니다. 이 표준제작비는 2년마다 대표사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견을 제시함으로써 갱신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문 122쪽을 보시면 장르별로 10분당 표준제작비가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제작비는 100%로 봤을 때 외주제작비는 기본 000% 플러스 00% 범위 내에서 과급을 할 수 있도록 산출해 두었습니다. 또한 외주제작비를 지급하는 관행도 획기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 체결일 00일 이내에 제작비 00%를 선지급하고 방송 후 0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을 위해서 외주제작계약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이 다소 지체됐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수직결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CUN이 종편사업자로 선정되신다면 CUN 참여 SO들이 다른 종편사업자들을 어떻게 차별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대인 (가칭) CUN 대표자

- 강대인입니다. 우선 염려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정부가 종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큰 정책목표를 제시한 이상 종편에 진입하고 있는 같은 사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위 종합PP로서 종편과 또 플랫폼사업자인 SO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종편이 조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방송법이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케이블이라든지 위성의 경우에 의무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의무편성의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정말 유리한 채널대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시간상 한 분 정도 더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SO와의 상생을 강조하시고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자칫 아직 충분히 수준에 이르지 못한 지역SO나 일반PP의 프로그램이 대거 방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상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종합편성PP의 도입 취지에 혹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기현 (가칭) CUN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O와 PP의 프로그램 교류와 협력의 모델은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표에 있고 그 편성시간은 새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으로 인해서 다른 프로그램의 품격이나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지역 SO의 경우에는 물론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제 경험에서 본 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SO의 프로그램들이 고품격의 품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프로그램 심사 같은 것을 해 봐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적인 소재를 가지고 고품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개선되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성에 더 많은 시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남은 시간이 2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고, 대표자 두 분 중 한 분께서 2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 강대인 (가칭) CUN 대표자

-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1967년 11월 베트남 중부 바탄강반도 전투에서 딱 한번 피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룡부대 5대대 작전보좌관이었는데 저희 부대를 월맹군 1개 연대가 공격해 온다는 첩보를 접한 직후였습니다. 27살의 젊은 삶이 그 밤에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의 평상심을 앗아간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번 담배 한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한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고비를 넘겨왔지만 이번 CUN의 종편사업 진출여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종편사업 목표를 크게 2가지로 이해하고 이에 맞게 준비해 왔

습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냈으므로 국내 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내는 일 그리고 글로벌미디어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해서 궁극에는 선도적인 글로벌미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력과 기업 운영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관련 종사자와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종편 심사기준과 항목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평가와는 달리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가치관이나 사전에 입력된 정보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했던 종전 방송사업자 선정에 비춰보면 인상평가에 치우칠 위험이 없지 않아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심사에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의 인격과 능력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론이라는 책을 쓴 리프만은 언론으로 접하는 세상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세상에 대한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종종 카피를 팩트로 인식하는 오류를 지적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수더팩트를 팩트로 오해하는 여론 형성의 과정을 짚어낸 말인 듯싶기도 합니다. 반 컵 남은 물을 두고 어떤 이는 '이것밖에 남다 않았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아직도 이만큼 남았다'고 말합니다. 팩트를 팩트대로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투입한 결과 때문으로 보입니다.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신 질책과 일부의 의구심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제대로 담지 못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명실공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따뜻한 충고의 말씀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셔서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참석하신 배석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CUN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가칭) jTBC 의견청취 】

○ 심사위원장

-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추워서 의견청취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날씨는 좋아졌습니다. 이 바쁘신 중에 멀리 이곳까지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불가피하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가칭) jTBC의 종합편성PP 승인신청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칭) jTBC 대표자이신 남선현님 맞습니까?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예, 남선현입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김영신님 맞습니까?

○ 김영신 (가칭) jTBC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홍석현님 맞습니까?

○ 홍석현 (가칭) jTBC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PP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는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방송법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과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적약속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참석자 분들께서는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남을 것이며,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의견청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하시고, 가급적 답변은 최대 3분 이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의견청취 대상자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경우 추가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께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하지 않는 한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 대표자 중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배석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기립하여 답변하실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견청취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녹취 등이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가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를 대표하여 오신 분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대표자이신 남선현님께서 3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가칭) JTBC 대표이사 남선현입니다. 방송의 힘은 콘텐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바로 자본력과 창의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2가지 모두 중앙종편은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4,220억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00억원의 콘텐츠 펀드가 있어서 사실상 자본금은 5,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는 세계 굴지의 타임워너 같은 미디어그룹사들이 동참하고 있을 정도로 자본금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의욕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좋은 방송을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방송의 생명력인 창의력은 바로 제작 경험에 뿌리를 두었을 때 비로소 경쟁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TBC가 강제로 문을 닫은 뒤에 중앙일보는 언젠가 다시 방송을 할 것이라는 그런 염원 속에서 끊임없이 방송에 투자하고 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오락, 예능, 드라마, 스포츠,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도 부문만 잘 접합을 시키면 바로 훌륭한 종편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 역시 JMnet의 막강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뉴스를 곧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CNN과 특약을 맺어서 언제라도 CNN의 코멘트를 따고 리포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체비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중앙종편은 준비된 방송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력도 JMnet 안에 있는 25개 매체 43개 법인의 2,800명의 잘 훈련된 인력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방송을 운영하는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편성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KBS 출신 김영신 센터장이 편성책임자로 있습니다. 또 창의적 프로그램 제작으로 명성을 날린 MBC의 스타PD 출신 주철환 교수가 제작책임자로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는 취재, 제작, 유통경영을 30여년간 줄곧 해 온 전문방송인으로 TBC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다양한 경험과 의욕에 강력한 자본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허가를 받게 된다면 조기 개국과 조기 정착으로 종편 정책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홍석현님께서 3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현 (가칭) JTBC 최대주주

-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심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편성채널 신청법인 JTBC 컨소

시업의 최대주주 (주)JMnet 대표이사 회장 홍석현입니다. 먼저 한국의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해 좋은 종편을 선정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에게 종편을 신청하는 소회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친의 위업을 이어 미디어사업을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문인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포트폴리오를 갖추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문, 인터넷, 케이블방송, 잡지, 드라마제작사 등 25개 미디어 브랜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합편성이 빠지면 미디어사업체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영상 콘텐츠 없이는 올드미디어든 뉴미디어든 경쟁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아시아 방송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엄청난 시장 규모임에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은 사회 전반의 침체에 따라 방송도 무기력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강점과 아시아를 잘 이해하는 시각이 반영된 국제뉴스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한류를 활성화해 나간다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방송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와도 소통하는 아시아의 대표방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송들과는 전혀 다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장에서 뿌리 내리고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희들은 외국의 글로벌미디어들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계획들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시장 유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이 현실이 되어서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가칭) JTBC의 종합편성PP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귀사는 우리나라 방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귀사가 종편PP로 선정되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아마 유료방송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지금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사는 제작사대로 콘텐츠를 만들면 이것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지상파는 방송권을 확보하고 그 밖의 부대사업권까지도 상호 세어하는 데에서 적절한 합리적인 그런 방송권과 부대사업권 같은 것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여

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물은 성공했어도 메이저 방송사들은 수익을 많이 올리지만 직접 제작하는 제작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가 방송의 품질도 제작에서 또 떨어뜨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작 생태계를 선순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앙종편은 여러 가지 제도를 두어서 제작사들을 그룹그룹으로 잘 구분해서 거기에 걸맞게 육성시켜서 앞으로 글로벌파트너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제작사를 대형화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편성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하십시오.

○ 심사위원

- 현재 지상파3사가 종합편성방송으로 정착한 상황에서 귀 신청법인이 종합편성PP로 진입할 경우에 지상파방송사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편성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대표이사 외에 편성책임자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신 (가칭) JTBC 편성책임자

- 저희 JTBC는 의무전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해야 하는 종합편성채널입니다. 따라서 뉴스 및 시사, 교양, 오락프로그램들을 시청자들의 시청 패턴에 따라서 골고루 편성했기 때문에 일견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차별성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현격하게 차별화된 편성을 하고 이를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편성 형식에서는 1시간 이른 아침뉴스 또 천편일률적인 아침드라마가 없는 오전 편성, 가족시청시간대에 메가드라마 편성, 이는 다시 말하면 막장드라마를 저희가 만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0시대의 메인뉴스 등 시간대별로 차별화된 시청서비스를 저희가 분명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편성의 내용에서도 시사, 교양, 오락 등 모든 장르에 걸쳐서 뉴디바이스 서비스를 전제로 기획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다소 편성될 예정으로 저희 JTBC는 TV 방송뿐만 아니라 이어서 다양한 플랫폼에 동시 서비스되는 말 그대로 원소스멀티유즈의 전형이 되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에 크리에이티비티 인큐베이팅, 저희들은 CI팀이라고 줄여 말하고 있습니다만 편성본부 내, 콘텐츠 본부 내 이런 팀을 운영해서 대내적으로는 개방적인 스토리 허브 기능과 콘텐츠 개발 기능을 결합해서 저희들은 이를 콜롬버스 플랜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연간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상파방송들이 신규 콘텐츠 개발투자에 투자하는 비용이 연간 10억원 내외에 못 미치는 현실을 미뤄보면 시청자들은 JTBC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포맷의 신개념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저희들이 지상파와 차별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잘 아시겠지만 이번 승인 심사에서 글로벌미디어그룹을 향한 의지 그리고 그 계획은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귀사의 글로벌 비전과 실행계획을 귀사의 핵심 역량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자본금 참여에서 보듯이 타임위너, TV아사히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저희들과 같이 방송제작도 하고 공동 관심사 경영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을 저희들 구체적인 목표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방송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보도, 교양, 예능, 드라마 이렇게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도의 경우에는 아침 뉴스에 바로 권위 있는 CNN 라이브 뉴스를 같이 편성하고 CNN 전체 뉴스도 같이 내보내고, 아침과 심야에 영어뉴스를 별도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CNN과는 한 나라의 한 미디어만 Exclusive로 계약을 하는 super appreciate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언제라도 연결하면 생방송으로 코멘트도 따고 리포트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jTBC 뉴스를 보면 세계 시각으로 세계의 주요 어젠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양 부분도 글로벌 데스크를 두어서 세계 석학들과 주요한 세계 이슈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5,000만의 희망, 저희들이 사막지대에 녹화사업 이런 것들도 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중·일 청년 내각으로 해서 아시아 문제를 비롯한 세계 문제를 한국, 중국, 일본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또 저희들이 잘 다듬어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능 부분도 미국의 유명한 폭스TV와 사이퍼라는 SF 프로그램도 만들고 OOOOOO하고 도전 나스카라는 젊음의 힘을 물씬 느끼는 질주 본능의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BBC와도 'Life on the mars'라는 드라마도 만들고, OOO와는 OOO의 약 OO%의 제작비 지원을 받고 같이 방송도 할 수 있는 청소년가요제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냥 말뿐인 글로벌미디어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글로벌 계획이 또 글로벌시장 진출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고 2020년까지 저희들 전체 매출 가운데 수출목표를 15%로 1,15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획 제작단계부터 아예 글로벌을 겨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느 다른 경쟁자들과 달리 Q채널, J골프, 카툰네트워크 이런 좋은 PP들로서 해외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이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드라마하우스에서 '공부의 신', '바람의 화원' 이런 히트 드라마도 만들어서 해외로 많이 수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인 저 스스로도 주요 방송사의 글로벌 책임자로서 또 방송유통 방송사의 최고경영자로서 수년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들은 타임위너 같은 주주 회사에서 세계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고 일본에 수출이 전체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일본 아사히에 좋은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사업이 방송권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높은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OOO와 OOOO와 부대사업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해외 마케팅비, 국내 마케팅비로 OOO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은 방송을 하게 되면 국내 좋은 볼거리도 제공하지만 해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진출을 해서 귀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 종편PP 선정사업에 주요 유력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 대형 언론사가 종합편성PP로서 방송에 진출하게 되면 여론을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앙종편은 공정성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을 저희들 공정방송의 3대 목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는 얼마든지 불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시청점유율 합산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뉴스 품질지수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공영방송이 퍼블릭 서비스 인덱스가 있고 영국의 BBC도 AI지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케이블텔레비전이지만 KBS와 EBS가 머스트캐리되고 저희들도 머스트캐리가 되는 이런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들지만 뉴스 품질지수를 개발해서 저희들 스스로 공정한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방송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시청자 중심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다원성에도 배치될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 공정보도위원회 편성규약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론 독과점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 170쪽과 171쪽에 따르면 JTBC의 2015년 목표시청률이 0.0%로 되어 있고 0년 내 지상파방송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하여 4대 채널군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들이 실현가능한 방안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저희들이 시청률을 내년 시작하고 그다음 해부터 0.0%로 시작해서 0.0, 0.0% 그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재미도 있으면서 시청률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바로 오락으로 시작해서 시청률을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시청자들도 이제 제 값을 주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감상하려고 하는 이런 업그레이드된 시청자를 저희들이 맞춰서 제대로 잘 제작하지 않으면 종편이 등장해도 그냥 그런 채널 하나가 생겼나보다 하고 결국 경쟁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익성도 살리면서 경쟁력도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무한지대 큐', '퀴즈 대한민국' 이런 프로그램이 예를 들 수 있겠는데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본인들이 지금 저희 회사의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능적 공익프로그램 또 공익적 예능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독창적인 편성을 하면 얼마든지 시청률을 0~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시청자의 소구력에도 걸맞게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특화된 편성을 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귀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편성비율을 보면 기존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오락의 비중을 32%로 줄이고, 교양의 비율을 45%로 늘리는 바람직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질문과 연계해서 이와 같이 오락의 편성비율을 낮출 경우 과연 2015년 목표시청률 0.0%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영신 (가칭) jTBC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입니다. 앞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신뢰, 사랑이라고 하는 목표가 서로 이율배반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슬로건 중의 하나가 '공익을 수익의 원천으로'입니다. 특히 시청자 트렌드는 금년도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 KBS '남자의 자격' 등에서 본 것처럼 오락프로그램조차 공익성 넘치는 프로그램이 성공사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과도한 오락편성으로 자칫 기존의 오락PP와 유사한 인상을 준다면 이는 오히려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지상파방송과도 비교할 때 손색없는 고품위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지상파에 맞먹는 연간 0000억원 이내의 직접제작비 투자를 집행하고 초기 3년간 000억원에 이르는 채널마케팅 예산 투입, 또한 우수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협력 등이 더해진다면 목표 시청점유율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심사위원님, 가능하면 대표이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냥 간단히 페이지워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중앙중편은 아주 체계이면서도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와 시청률, 광고와 시청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지상파4개사

전부와 또 뉴스하는 두 채널, 그밖에도 중요한 PP까지도 4년간 조사했습니다. 또 시청률은 저희들만 자꾸 시청률을 올릴 수 있도록 답변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미 서울에 있는 민영방송사의 3년간의 시청률과 제작비를 주도면밀하게 오랫동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시청률 1%를 올리는데 서울에 있는 민영방송사가 6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종편은 만약에 잘 모르겠습니 다만 3개 정도 생긴다면 1% 올리는데 약 900여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광고단가도 4년간 분석을 했더니 예능 프로그램이 단가 15초에 600만원, 뉴스가 1,300만원, 골프가 2,000만원, 그리고 시청률 1% 올리는데 광고가 약 1,000억원이 들어가고 제작비와 광고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60~80%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감치를 두어서 할인율까지 적용해서 계산하면 시청률 0%대에 저희들이 0000억원 가까운 제작비를 들일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저희들이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편채널 심사라운드에서 보면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볼 때 좀 더 좋은 사업계획서가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특히 신청법인과 같은 Q채널, J골프 등의 수평적 계열관계를 들 수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계열관계라든가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시너지 효과 등이 충분히 발휘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계획서상에서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느 경쟁자보다도 강력하다는 MPP의 경험을 들 수 있는데 Q채널과 J골프를 예로 들면 저희들은 경쟁력 있는 드라마도 만들기 때문에 그 경쟁력 있는 드라마를 만든 노하우를 가지고 훌륭한 연출자, 그다음에 훌륭한 시나리오, 훌륭한 배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희들은 훌륭한 배우도 스타 메이킹 형태로 해서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J골프의 경우에는 갈수록 융합미디어가 강제되고 있는데 이미 J골프는 멀티앵글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주요 선수를 궁금해 할 경우에 별도 중계카메라 이외에 별도의 카메라를 통해서 각자 취향에 맞는 선수들을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멀티앵글서비스까지도 실현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여느 경쟁사보다도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차비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저는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의 최대주주로 1,055억원을 출자예정인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200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순자산이 0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증자를 해서 신청인 현재 순자산이 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증자 후에 중앙일보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이라며 중앙일보사로부터 부동산을 000억원에 양수하고 신청인 현재 000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액의 증자를 통해서 신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증액시키고 자금출자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후에 부동산 거래를 명목으로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자금을 중앙일보사로 환류시키는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귀사의 입장과 부동산 미지급금 000억원이 언제 지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뒤편에 디테일하게 잘 설명드릴 수 재무 담당 배석자가 있는데 심사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배석자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김진규 (가칭) JTBC 재무 담당
  - 재무 담당 김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지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바로 즉시 추가적으로 000억원의 증자를 통해서 이미 미지급금을 해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미디어네트워크와 중앙일보의 자금거래를 말씀드리면 중앙일보에서 부동산을 인수한 이유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지주회사로서의 수익성을 확보하자는 목적과 중앙일보의 재정건전성을 증대시키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거래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타 신문사 종편 신청자의 경우 신문사가 직접 1대 종편의 주주로 신청하였는데 신청법인의 경우에는 중앙일보가 직접 1대 주주가 되지 않고 굳이 왜 JM네트워크를 통해서 합동지분으로 2대 주주로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대표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안에 25개 매체에 4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어느 회사가 중요한 저희 JTBC를 가장 잘 리드할 수 있는가를 두고 지난 1여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회사가 (주)JMnet입니다. 그 이유로 3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회사의 글로벌 역량입니다. (주)JMnet은 10년 전에 뉴욕타임즈

의 글로벌 에디션인 IHT(International Herald Tribune)과 제휴를 해서 10년 동안 아주 훌륭한 코리아중앙데일리라는 영자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자지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정통성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신문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주요 이슈를 국내에 알리는 글로벌 윈도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jTBC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글로벌 역량 증진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신문사가 종편을 자회사로 직접 소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편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적어도 2~3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메이저사인 중앙일보도 이 종편에 추가 부담을 주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제가 경영을 잘해서 jTBC가 2~3년 내에 흑자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결국 자회사로 있을 경우에는 과실송금이 중앙일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문사가 종편을 자회사로 소유하지 말고 경영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길이 바로 새로 만들어지는 jTBC가 얼마든지 능력에 따라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주)JMnet을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서 5억 5,000만원의 흑자를 낸 회사이고 상당히 탄탄한 경영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서 적어도 2013년, 2014년부터는 지주회사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JMnet 아래 신문, 출판, 인쇄, 방송, 인터넷, 모바일, 뉴디바이스 이런 전체적인 각 미디어를 이 (주)JMnet 아래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성장시키는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미디어로 성장시킬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이유로 (주)JMnet을 저희들 대표 지주회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저는 법인명에 관련된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명 jTBC에 대해 대구방송이 제기한 서비스표 침해 의견 표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에 j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전체그룹의 상징성으로 j를 TBC와 결합시켰습니다. 아시는 대로 TBC는 우리나라의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고 아주 탄탄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TBC가 문을 닫은 뒤에 대구방송이 이 TBC를 호출부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허가를 받고 나면 이 부분을 대구방송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급선무의 일로 여기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원래 TBC라는 회사를 저희들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원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방송의 스펠링에 어울리는 영문 이니셜은 TBC 대구방송보다는 대구방송의 DBC가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방송과 저희들과 여러 가지 관계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만약 협의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무리가 없도록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시스템 또는 활동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생각을 귀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방송법 취지에 아주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귀사의 사업계획서 17쪽에서 밝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한 가지 보니까 '재외국민 참정권 강화방안'을 공적책임 실현방안의 하나로 기재하셨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OOOOO를 통해서 전 세계 188개국에 선거방송을 송출한다든지 또는 OOOOOOOOO 해외동문을 해외 현지 통신원으로 활용하는 협력체제를 통해 효과를 증대하겠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특정 매체, 즉 OOOOO라는 특정매체라든지 OOOO 해외동문이라는 특정 집단을 공정선거의 어떤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저는 사실 이 OOOOO도 공공방송, 공영방송 범주에 들어가고 이 OOOOO는 세계 180여개국에 이미 방송 콘텐츠를 실어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성·공익성 이런 협력차원에서도 OOOOO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공동제작과 방송을 하고 최근에는 네팔에 일고 있는 한국붐도 제작을 해서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해외 700만 동포들의 참정권이 주어지고 이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다른 개인회사도 아니고 공영방송인, 공공방송인 OOOOO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희가 OOOOO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도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OOOOOOOOO이라는 특정대학을 지칭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OOOO는 특수어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계 오지까지도 OOOOO 졸업생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OOOOO를 특별히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해외에 나가 있는, 저 해외 오지에까지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OOOOO과 협의했고 OOOOO에서도 흔쾌히 이런 부분은 동참해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일보와 미국, 일본 전 세계에 6개 특파원과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6개 지사에 480명의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인원도 대폭 활용을 해서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심사위원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사는 프로그램 자체 심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외부 전문심의 위원과 심의팀 공동으로 보도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본 및 영상물에 대해서 충실한

사전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외부 심사위원 6명 심의팀 심의담당자 4명 해서 총 10명이 한 달에 430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43건을 심의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충실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심사위원님 아시는 대로 텔레비전은 오디오 기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영상이 어떤 경우에는 기사 내용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심의가 영상심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에 대한 심의는 매우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10명 인원으로 430건이 결코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심의구조도 두지만 심의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법률적 자문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보도국에, 보도본부에 영상심의 이런 중요하고 까다로운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법률심의제도를 별도로 두려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20명에서 30명 분야별로 가까이 두고, 어떤 부분은 영상 또 어떤 부분은 보건, 어떤 부분은 건축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의 자문을 별도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심의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종이매체사업의 하락세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종합편성PP를 통해 방송계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계마저 주수입원인 광고 수입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뉴욕타임즈의 경우 방송계에 진출했다가 이를 다시 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신문사가 방송으로 진출하는 것이 사업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물론 저희들이 민영이고 수익에 대한 기반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대표 주주께서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도 세계에 버젓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미디어그룹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꼭 수익차원에서만 방송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디어그룹으로서 우리나라를 해외에 널리 알리게 되고 또 글로벌 역량까지 있어서 해외에서 그런 과정에서도 수익까지도 올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5개 매체에 43개 법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의 눈을 찍는 것 같은 이런 중요한 매체가 바로 종합방송, 종합편성인데 이 종합편성을 저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부터 저희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신방경영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30여년 전에 중앙일보와 TBC라는 신방경영을 성공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방경영을 성공적으로 했던 그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당 기간이 흘렀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TBC를 복원한다는 측면보다도 잘 경영되어 있던 그런 회사의 문을 닫은 상황에서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다시 복원된다는 뜻도 저희들이 이 방송을 JMnet 그룹 안에서 다시 하고자 하는 일부 의지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 심사위원장

- '대장금' 그리고 '겨울연가' 이런 사례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아주 커다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위 한류열풍이 식으면서 콘텐츠 수출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발전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보다 귀사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겨울연가'는 바로 제가 사장으로 있던 회사에서 해외에 수출하고 유통시켰습니다. 32억원 들어간 '겨울연가'가 국내에서 약 500억원, 일본에서만 약 4,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한류열풍을 저는 어떻게 해서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한류열풍이 다시 일도록 재점화시킬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수출 가운데 저희들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콘텐츠 수출 대부분이 아시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아지역 가운데도 일본에 대한 비중이 너무도 큼니다. 약 60~70%가 일본 비중입니다. 아시아지역의 나라를 보다 더 확대해서 지금 불과 10여개에 이르는 수출 국가를 적어도 2배 정도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JTBC 경영진들은 우선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계획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면서 유럽과 남미 이런 전략지역에 어떻게 해서든 착륙을 시켜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BBC와도 'Life on the mars'라는 화성에서의 생활 이런 드라마를 공동제작을 기획하고 있고, 지금 머지않아 실행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전략적으로 문화적 할인율이 낮은 다큐멘터리부터 진입시키고 나서 점차 드라마로 2단계로 수출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국민이 많아서 아주 전략지역이면서도 저희들이 불모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남미 텔레노벨라에도 이 벽을 뚫고 들어가는 강력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남미에도 아까 '겨울연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바로 수출 형태를 취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리미리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잘 타이틀링을 하거나 번역을 해서 그쪽에 보내서 우리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점차 드라마를 수출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질의하시지요.

○ 심사위원

- 귀 신청법인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220쪽을 보시면 사업성 분석에서 0년 기준으로는 내부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제시되어 있고, 00년 돼야 내부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매출액을 0000여억원으로 아주 크게 추정하셨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0년 기준으로 내부수익률이 마이너스이고 00년 정도 되어야 내부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표시하셨는데, 만약 다수의 종편이 승인되는 등 귀사가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제출하신 것보다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사업수익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심사위원님,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면서 워스트시나리오 가장 저희들에게 어려운 조건이 무엇인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종편이 과연 얼마나 등장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3편 이상 생각했고 그다음에 종편이 등장하고 난 뒤라도 채널 연변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채널 연변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안 될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KBS의 광고가 이미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방통위에 올렸습시다만 광고가 그대로 다 진행이 된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의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의 반 이하로 약 0.0%를 잡았는데 이런 가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워스트시나리오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콘텐츠 다양화를 기해야 될 것이고 편성의 독창성도 살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광고의 차별화, 저희들이 독자적 광고를 해 나가면서 광고단계도 지금 일반 방송사의 4단계를 저희들이 7단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도 000억원을 마련해 놓을 정도로 아마 일반 지상파들도 이 정도의 금액이 안 되고 저희들이 아마 2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공약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만 잘하겠다고 말씀드려도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상파와 비교해 본다면 지상파의 경쟁력과 저희들과 똑같은 투자를 해도 신생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상파가 4,000억원이면 저희들이 0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분명히 투자비는 00%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들은 자신 있는 몇 가지 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SBS가 등장할 때 KBS와 MBC의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했고, 잘 운영을 해 왔다고 봅니다만 SBS가 나온 뒤 20년 만에 저희들이 다시 종합방송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또 SBS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커버를 능히 해 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톨을 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설비, 장비에서 고효율을 갖추려고 합니다. 단순히 디지털이 아니라 테이프리스로 디지털을 뛰어넘는 이런 장비효율화를 기하고, 인력도 지금 SBS가 884명입니다만 저희들은 000명으로 전체 인력대비 0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력과 장비로 얼마든지 00~00%의 모자라는 투자비를 충분히 보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투자비는 00~00%가 된다 하더라도 시청률은 거기에 절반 정도로 많이 할인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2014년에 0000억원, 2015년에 0000억원, 2020년에 0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끝났습니까? 1분 정도 추가됐는데, 그러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만 마지막 질문 간단한 것 하나만 받겠습니다.

○ 심사위원

-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92페이지에 보면 전략 핵심 확보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인력을 충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종편PP가 복수로 지금 몇 개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승인된다면 우수인력 충원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채용에 대해서, 특히 우수인력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장

-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저희들은 케이블이기 때문에 우수인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재개발위원회에 사장도 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한시적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 스카우트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금도 펀드로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PD나 기자들을 스카우트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일단 JTBC에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때 본봉에 몇 배 되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 보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우수한 PD나 기자들은 사장인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방송사에서 존재하지 않던 그런 획기적인 제도를 두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퍼테스트에서 시험만 잘 보는 신입사원들이 꼭 창의력도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채를 페이퍼테스트로 공정성 때문에 뽑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각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인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일을 시켜보고 경험을 시켜보고 괜찮다고 하면 바로 페이퍼테스트를 면제해 주고 바로 사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

- 이상으로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고 남선현 대표께 간단한 마무리발언을 부탁드립니다.

○ 남선현 (가칭) JTBC 대표자

- 감사합니다. 사실 누구나 사업계획서 잘 써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허가를 받는다면 받은 뒤에 종편다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저희 JTBC는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글로벌시장에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중앙종편은 제작비를 연간 약 0000억원 가까이 3년 사이에 0조원 가까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다른 경쟁사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본다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수 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제작비가 콘텐츠 시장에 투자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프로그램의 백화만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렵사리 마련한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몇몇 방송사들을 쫓아다니며 프로그램을 달라고 사정사정하던 시대는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좋은 콘텐츠의 소유자가 플랫폼을 거꾸로 찾아가는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경쟁력 강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승승장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가 넘는 연봉에 정년 보장이라는 기존 메이저방송사들의 경쟁무풍지대에 저희들 같은 이런 종편 등장을 계기로 해서 도전과 혁신의 일대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편의 계기로 미디어 빅뱅시대가 오는 것이지요. 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 중앙종편은 자본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콘텐츠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jTBC 프로그램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총 수출이 심사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4,600억원 달러로 세계 7위권으로 진입했다고 합니다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 수출 비중은 부끄럽게도 1%도 되지 않습니다. jTBC 중앙종편은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단계부터 글로벌시장을 바로 겨냥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콘텐츠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저는 하루빨리 한류를 아시아에서 재점화시키겠습니다. jTBC는 말 그대로 탄탄한 콘텐츠를 가지고 국내 시청자에게 볼거리를 확대해 주고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저는 늘 유념해서 허가시에 종편이 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또 같이 참석하신 배석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jTBC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보도PP 신청법인 심사소견서



# 보도PP 신청법인 심사소견서

## □ 굿뉴스

- 지역적 기여실적이 다소 미흡하고 특히 신청법인의 적정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성 실현계획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주주 구성 상 불명확한 점이 있음
- 공적책임, 공정성 실현계획에 대한 의지가 강해보이며, 비전과 이념에 잘 나타나있다고 판단됨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이 다소 미흡함
- 시청자 권익 실현을 위한 장치를 많이 마련했지만 구체성과 현실성이 다소 미약함
- 구체성 없음. 공정보도자문단 실현성 없음. 각종 기여실적은 평균 수준. 문화적 기여 실적은 없음. 청문결과 주주구성 부적절. 소수시청자 그룹 지원 방안 및 시청자 불만 처리 계획이 실현성 없음
-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에 있어 그 비전은 잘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 현실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과 보도에 대한 뚜렷한 철학에 입각하여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실현 계획과 시청자 권익 보장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모두 잘하겠다는 '포장'에 치우친 인상을 주고 있으며, 그간의 여러 부문 기여 실적도 미비함. 일부 실적은 인정키 어려운 경우도 있음
- 사회적기여도 실적가운데 부적절한 항목을 기재함. 지역적기여도 실적에서도 부적절한 항목을 기재함(매출액은 기여도가 될 수 없음). 외국자본의 주주 참여에 대한 법적 판단의 논란이 있고, 이익의 해외유출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함
- 총출자액의 00%인 00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있는 0000000000의 2009년말 현재 순자산이 0억 0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출자 여력이 없어보임. 주요주주의 사회적·지역적 기여실적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대하여는 높은 이해도를 보임. 구성주주의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과거 실적이 신뢰성이 없음. 구성주주의 자본금 납입능력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을 줌
- 사회적책임위원회를 통한 지표관리, 7대 중단 추천 화합과 소통 모니터자문단 구성 등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구체적이어서 적정함. 구성주주(000)의 사회적 기여 실적 우수함. 구성주주 0000000000의 실사주가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주주구성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유해정보경보제 등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다양한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제시하였으나 현실성 낮아 보임.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로 구성주주의 매출액을 기여하는 등 '기여'에 대한 인식 낮아보임. 구성주주인 OOOOOOOOOO의 실질투자자(외국인)의 현황과 재원조달을 반영하여 평정함
- 프로그램의 기획,편성계획은 우수하나 전략적 협력 계획이 다소 미흡함
-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의 구체성이 일부 낮아보임
-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우수함. 그러나 편성상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해외 취재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개발이 독창적으로 판단됨
- 편성계획은 평균 수준. 독창성 없음. 편성 자율성은 평균 수준. 제작비용이 충분하지 않음. 협력계획의 실현성이 희박하고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가 희박함
-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 그리고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굿뉴스>만의 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주 계획 등도 '다큐는 일단 외주'라는 식의 정형화된 모습으로 보임. 협력 계획도 형식적이고 요건만 갖춘 느낌임
- 기존 보도채널과의 차별성이 약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뉴스 및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그 실행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함
- CBS의 기존 역량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머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생각됨
- 방송 프로그램의 독창성, 자율성은 계획서에 있으나 뉴스 주요 소비층 꼭 남성만이 아닌 여성과 노년층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짐에 대한 고령화 속도에 맞춰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 있음
-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의 경우 독창성, 참신성이 엇보임. 또한, 협력업체에 배려등도 상당한 의지가 보여 양호하다고 판단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우수함.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적절함. 신규플랫폼 진출 관련 뉴스허브 설립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등 우수함
- 최초 납입자분금 규모가 다소 부족하고 조직 운영상 인건비가 다소 낮게 책정되어 직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됨
- 종편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개국 후 시청점유율 추정치가 다소 낙관적으로 계산되어 있음
- 크로스미디어 조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구상 등 몇몇 세부심사 항목은 매우 구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보이지만, 납입자분금이 매우 적은 3-3 세부심사항목의 약점과 글로벌 비전의 부족 등이 드러남
- 영업이익의 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글로벌 미디어 기

업의 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함

- 타사에 비해 WACC가 높아, 자금조달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음. 이는 자본금 규모 자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사업의 향후 수익성과 자금조달, 운용 전반에 있어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함
- 크로스 미디어 통합 뉴스룸 운용이 인상적임. Asia News Network 설립 계획안이 독창적임
-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에 있어 크게 양호하지는 못하고 향후의 자금조달 부분 역시 신뢰가 가지 않음
- 사업성 분석에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단계적 추진 과정이 미약함
- 재무제표 추정시 유료시청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보임. 추정 매출 과대한 것으로 보임
- 글로벌 미디어 기업 전략 없음. 조직도 및 교육훈련 평균 수준. 자금 조달 계획 구체성 없음(의견청취 결과). 사업성 분석이 매우 낙관적. 경영효율성 확보 방안 없음
- 사업추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기업 내외부환경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계획 적정 또는 우수함. 시청자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조직 구성이 시청자 중심으로 체계적인 점 등 우수함. 계량평가에 의함. 재무, 영업 관련 자금조달계획 및 운영계획 적정함. 사업성 분석 적정함.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 적절함
- 재정적 능력과 자금출자 능력이 다소 미흡함
- 계량평가 결과 적용함. 기술연구소 계획이 추정재무제표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기술개발 실적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재무적 능력 양호함
- 부채비율이 높고, 현금성자산 비중이 낮음. 이로 인해 재무안정성이 낮고, 특히 유동성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대처능력이 부족함
- 재정적 능력이나 자금출자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며, 방송시설 설치, 운용계획 역시 자금 문제에 기인한 것인지 그 준비가 철저하지 못함
- 스튜디오 처리 용량이 부족함(주당 0000분). R&D 투자 규모가 작음(0억원)
- 방송시설 설치,운용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리고 단계별 기획, 전략이 필요함
- 신청법인 CBS의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특히 순손실을 보고함
- 계량평가에 의함. 방송시설 설치·운용계획 및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적절함
-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 재정적 능력과 자금출자능력은 타사 대비 중간정도 수준이며 기술적 능력에 대한 계

획에서는 별다른 특징 없음

- 계량 산출에 의한 검증으로 다소 미약함
- 방송발전계획과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콘텐츠 투자액 비현실적으로 책정됨
- 국산 장비 구입 계획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산학협동 등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계획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크게 부각되는 장점을 찾기 힘들. 평균적인 수준에 있다고 판단됨
- 방송발전 기여계획 적절함.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계획 구체적이어서 우수함
- R&D 투자규모가 작음. 유료방송 활성화 계획 구체성 부족. 제작비가 OO억에 불과. 콘텐츠 산업 기여계획 적절(OO억)
- 여러 부문에 두루 지원하고 기여하겠다는 계획으로 별다른 특징이나 강점 없음
- 초기 시설투자비의 OO%를 국산 방송장비 구입에 사용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방송장비 연구개발(R&D) 계획 대비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다소 부족함
-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설정하여야 함
-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에 현실성이 양호한 편임
- 방송발전 기여계획이나, 콘텐츠 산업지원, 육성계획은 평범하게 보임
- 방송의 공적책임나 공정성 실현 계획은 무난하나 신청법인의 적정성이 부족하고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나 조직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비록 편성계획은 우수한 편이지만 재정적 능력과 자금출자 능력이 미흡하여 후발주자로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편성계획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음
- 보도PP 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충실하고 치밀하게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구성주주 중 일부의 출자능력이 다소 의문시되며, 계량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 재무적 취약점이 있어 보이며, 보도전문PP로써의 전문적, 실질적 능력과 공정성 담보에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굿뉴스는 뉴스룸 조직에 대한 구상 등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 굿뉴스만의 큰 흐름이나 방향보다는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 모두 잘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설득력이나 타당성도 그리 높게 평가되지는 않음. 납입자본금 규모나 글로벌 미디어로의 비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드러남.
- 공익성 확보 방안, 편성 계획 등은 양호하나 재무적 능력이 다소 미흡하며 경영 효율성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신청법인인 CBS의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며, 총출자액의 OO%인 OO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OOOOOOOOOO의 경우 2009년말 현재 순자산이 O억 OOOO만원밖에 되지 않

아 출자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기존 보도채널과의 차별성이 없어보임

- 긍정적 측면은 기존 CBS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부정적 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현금자산비중이 낮다는 점, 유동성 위기 시 부도위험이 높음, WACC가 타사에 비해 높아 자금조달에 있어서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사회적 기여도에 있어서 매출액 자체를 기재하여 계획서 작성의 신뢰성을 훼손함, 외국법인 참여 논란 소지가 있음. 위에 적시한 부정적 측면은 사업성에 확신을 주기 힘들어 보임. 특히 유동성 위기 직면시 위험이 크다고 봄. 따라서 사업을 승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과 관련한 계획과 의지가 있어 보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도 우수한 것으로 생각됨.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외국인 소유 지분 관련한 승인 신청 접수시 오류 내지 미비점(OOOOOOOOOO 관련)은 아쉬운 점이었음
- 글로벌 사업자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 슈퍼스테이션채널을 구성하는 것과 ANN을 주도한다는 계획이 매우 신선한 것으로 평가됨. CNN, BBC 중심의 아시아(국제) 뉴스 시장에서 아시아 뉴스시장 공급을 주도하는 역할이 기대됨. 크로스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통합뉴스룸 운영시도가 독창적인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서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특징을 어떤 항목이든 목표와 비전 설정은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별 전략,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 구성, 세밀한 투자 계획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다소 미흡하여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선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특히 사업수익성에 대한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이며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요 구성주주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우며, 향후 자본금 납입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함.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법인의 이름으로 구성주주로 참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으로 보여, 구성주주의 도덕성, 대주주의 법 준수여부가 의심스러움. 재정적 능력에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프로그램 편성, 기획이외는 특징점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불승인함이 상당함
- 공공성·공익성 등에서의 투명성은 있으나 화합과 소통 모니터단에서의 7대 종단의 대표를 위원으로 추천하여 꼭 종교에 입각한 보도채널이 돼야할까 의문이 남기도 함
- 청문결과, 자금 조달 능력, 주주구성의 건전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미디어로서 전략이 거의 없음. 외주 제작 등 콘텐츠 발전 기여도가 낮음. 방송기술 R&D 규모가 작음

## □ 머니투데이보도채널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지역적 기여실적과 시청자불만처리 계획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미디어로의 성장전략이 보도PP 정책목표에 다소 미흡함. 구성주주인 OOOOOO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주주 구성의 적정성, 건전성 평정함
- OOOOOO 등 O개사가 다른 사업자에게도 중복 투자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확보방안의 구체성이 좋으나,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의 발전전략이 부재
- 정확한 보도를 하고자 하는 대표이사, 편성책임자 등의 의지가 보임. 주요주주인 머니투데이의 문화적 기여 실적 우수함. OOOOOO 등 일부 주주가 중복참여하여 주주 구성의 적정성이 조금 문제됨. 어린이, 청소년 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이 다소 미흡함
-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정성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내포되어 있으며, 시청자 권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도 현실성 있음
- 1대 주주의 언론사 경영 노하우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등은 충족된 듯 보이지만, 그간의 사회적 기여 실적이 미미하고 구성주주의 적정성에서도 다소 유보적인 면이 있음
-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이 선언적이며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지역적·문화적 기여도 실적이 미흡함. 향후 5년간 000억원 기여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보장에 대한 의지, 이해가 양호함. 신청법인의 주주구성도 다소 우려되나,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
- 구체적 계획은 있으나 비현실적. 각종 실적이 평균 수준. O개 주주의 지분율이 00%에 달함. 구체성 및 실현성 없음
- 자율편성심의 중재위원회의 반론권 보장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 청소년을 폭력, 선정적 뉴스보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와의 협력계획, 그리고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의 구체성이 다소 모자라는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 기획, 편성 계획의 차별성과 수급계획이 다소 미흡함
-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획상의 기여도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구속력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전략적 협력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편성의 독창성이 떨어짐
- 경제분야 및 뉴미디어 분야 프로그램이 차별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프로그램 독창성이 미흡
- 독창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기획, 편성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제뉴스에 치중한다는 명목으로 주식에 대한 정보 제공에 치중하는 방송으로 전략될 우려도 있음
- 편성계획 적절. 독창성 없음. 외주제작 구매 계획 평균 수준. 협력계획 구체성 없음. 해외유통 계획 없음
-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에 차별화가 타 보도전문 채널사업자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음. 방송 협력 체계도 통합 뉴스룸, 플랫폼 구축 등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한 잇점이 있음
- MTN을 운영해 온 노하우에 바탕을 둔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등이 드러나서 비교적 개성있는 보도 채널의 모습이 제시된 듯 보임. 그러나 지역SO와의 프로그램 교환·교류 등 몇 가지 사항은 보도채널의 공익성, 공정성 기대를 고려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프로그램 수급 계획 관련하여 경제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 전문성은 인정되나 그외 보도 프로그램의 제작 계획은 미흡함
-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가지며 우수함. 외주 제작이 다소 적은 것이 아쉬움. 제작사에 저작권 OO%를 인정하기로 하는 등 제작사와의 협력에 적극적임. 그러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음
- 시장상황 분석에 비추어 향후 전망의 근거가 약하며, 자금조달 계획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두드러짐
-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가 매우 우수하지만 자금 운영계획이나 경영효율성 방안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MTN을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기존 보도채널과의 차별화 전략 미흡
- 수익성 다양화에 있어서, 유료주식 정보제공으로 치우쳐 시청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주식투자에 빠지게 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보임
-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이 다소 미흡함
- 글로벌 전략 구체성 없음. 교육훈련비가 너무 적음. 청문결과 자금 조달계획 부적절. 사업성 분석이 너무 낙관적. 경영 효율성 방안 구체성 없음
- 사업계획, 조직계획 등 계획수립내용 및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미흡하다고 평가됨
- 각 조직, 부서의 인력배치 및 운용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인재양성

을 위한 교육훈련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존 조직과 인력의 활용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려는 의지가 엿보임. 자금조달, 운영계획과 사업성 분석의 실효성을 담보할 추가방안 및 구체성 제시 부분은 미흡함
- 영업활동 개시 후 OO년까지도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OO년이 지나도 자기자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구성주주인 OOOOOO(OOO억 출자, OO%)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점을 평가에 반영. 주주사인 머니투데이 출자사인 MTN을 보도PP 승인후 인수한다는 전략은 합리성과 인수가액 적절성이 지니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1인당 교육훈련비 낮고, 손익 추정이 다소 불분명해 보임
- 글로벌 미디어로서의 실천방안이 미약해 보임. 인력 확보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계량 평가에 의함.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적절함. 사업성 분석 적절함. 경영 투명성·효율성 확보 방안 적절함
- 조직 인력 구성에서도 효율성을 갖고 있으면서 연도별 소요자금 현황 및 예비 분석이 신뢰성이 감.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명문화시키고 책임경영체제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이 뚜렷함
- 재정적 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자금 출자 능력은 다소 부족함
- 계량평가 결과 반영. 방송시설 설치 및 운용상 특이한 차별성이나 구체성 발견되지 아니함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정적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현금성 자산 비중이 낮은 것은, 유동성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것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세부심사항목 중 부채비율, 총자산증가율 등에서 타사 대비 높이가 평가되며, 방송 기술의 설치·운용·활용 계획은 대체로 무난함
- 기존 방송제작시설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가능. 국산 장비 활용 계획서의 구체성 미흡. 재정적 능력 양호함
- 계량평가에 의함. 방송시설 설치 계획 관련하여 국산장비 도입에 관한 계획이 없음
-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 능력 등에서 양호한 편이며 방송기술 확보 차원도 다원화로 양호함
-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 재정적 능력은 양호하나, 자금출자능력에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보임. 방송시설 설치 운용계획의 경우 초기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무난하다고 봄
-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이 상대적으로 미진함.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 다양한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방송기술에 좀 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시설규모 산정 근거 없음. R&D 투자규모 작음
- 방송발전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 방향 없이 나열만 되어 있어서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은 무난한 것으로 보임
- 국산 방송장비 R&D 계획이 매우 구체적임
-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짐
- 계획서 상에 나타난 것은 대체로 무난함. 다만 어느정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장치(약속이행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기는 어려움
- 콘텐츠 산업 육성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이 보이며, 그 외 특이한 점 없음
- 방송발전 기여계획 우수함. 콘텐츠 펀드 조성 등 콘텐츠 산업 육성·기여 계획 우수함. 계량 평가에 의함
- R&D 규모가 작음. 유료시장 활성화 계획 구체성 없음. 제작비 작음
- 콘텐츠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좀 더 세밀한 단계별 전략이 필요
- 국내 방송장비 업계와의 "수요자 연계형" 장비 개발 추진을 통해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외주 제작사들과의 동반 상생을 유도하는 점이 우수함
-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계획이 다소 미흡함
- 방송발전 기여 계획이 우수하나 콘텐츠산업 기여 계획은 다소 미흡함
-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형식이 기존 보도PP와 비교할 때 차별성이 약함. 영업개시 후 OO년까지도 자기자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의 수익성이 의문시 됨
- MTN과의 연계로 전체적으로 경영효율성 양호하며 재무적 능력도 우수함. 경제 이외의 분야에 대한 보도 기능에 대한 분발이 요구됨
- 긍정적 측면은 경제분야에 특화된 뉴스 제공 능력이 비교우위, 지방대학과의 협력·교류·지원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음, 경제분야 인력관리 및 자원의 우수성. 부정적 측면은 사업성 분석의 구체성, 엄밀성이 미흡, 영업개시 후 OO년까지도 사업의 순현재 가치가 (-)인 사실, 영업개시 후 OO년까지도 내부수익률이 자기자본비용보다 높아 자금조달 및 운용상의 불리점, 광고수익 의존도가 높아 수익구조의 건전성 미흡. 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비교 계량할 때 경제분야의 특화된 장점을 살리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간다면 사업의 진입가능성과 지속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지역과 사회 및 문화에 대한 기여 실적이나 방안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프로그램 편성 측면에서 볼 때 편성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후발주자로서 보도PP에 진입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비록 재정적 능력이나 방송발전 방안은 우수하다고 판단되지

만 보도PP로써 최종 목표인 시청자에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제공측면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됨

- 보도PP 승인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구성주주(OOOOOO)의 출자능력 및 보도PP 설립 후 MTN(구성주주의 자회사)을 000억으로 인수한다는 계획은 다소 부적절해보임. 전체적으로 보도PP 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보도전문PP로 승인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신문 및 PP 운영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보도PP를 통해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재무적 계획에 석연치 못한 부분이 발견되며, 지역적 인프라 및 해외 네트워크 부족도 타사와 비교할 때 약점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나름의 강점과 약점이 모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존사업(MTN) 인수를 통한 고객기반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경제 부문에 차별화된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발전전략이 미흡하고 해외 방송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재정적 규모나 전문성 등으로 볼때 보도전문 방송 채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동력이 엇보임. 더구나 방송의 사회적·문화적·지역적 기여를 하기 위한 이익금 10% 사회환원하는(2015년) 내부규약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려는 자세가 돋보임. 좀더 내부 인프라를 벗어난 외부(세계)적 글로벌 미디어로서의 계획은 다소 부진한 면이 있음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하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경제 콘텐츠로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차별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됨.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내용이 간략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움
- 전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다소 미흡하여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선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 전체적으로 방송채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엇보이며, 비교적 양호한 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하며,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보므로 승인함이 적당하다고 봄
- 공익성 달성 계획 등의 특정성 및 구체성이 떨어짐. 청문결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남.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 전략 및 역량이 부족함. R&D 계획의 구체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기획, 의지, 목표 및 비전설정이 잘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더 중요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결여된 경우가 많음. 신규 보도PP로서 기획, 편성, 공적책임 실천, 방송기술, 콘텐츠 등 모든 면에 있어 기존 사업자와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이러한 점들이 사업계획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 서울뉴스

- 신청법인 주주의 적정성과 건전성은 우수하지만 방송의 공정성, 지역적 기여실적,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여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기타 항목은 평균적인 수준임
-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구현하려는 의지가 강해보임
- 구성주주가 74개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어 적정성이 돋보임. 공익성 기능을 정부 정책 홍보와 연관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부정적인 모습임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이 다소 미흡함
- 지역, 사회, 문화적 기여도가 다소 부진하고 시청자 권익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미약함
-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나 비전수립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구체성이 미비함. 사회적, 지역적, 문화적 기여를 위한 향후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 주주구성이 서울신문 이외에는 모두 1%이하의 중소주주로 실권주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시청자 참여방안도 보도 채널의 특징을 도외시한 채 직접 참여와 소수·소외계층만을 강조한 느낌임. 그 밖에는 1대 주주의 역량이 잘 드러난 모습으로 평가됨
- 사회·문화·지역적 기여실적이 다소 미흡함. 주요주주인 서울신문사의 재무구조 취약으로 출자능력이 다소 의문시됨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이 미흡하며 향후 계획도 구체성 결여
- 최대주주로 참여하기로 한 서울신문의 재무상황이 취약함. 의견 청취과정에서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차입을 통해 출자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답변함. 출자액의 70% 정도가 다수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액주주들 중 일부가 출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음
- 구체성 없으며 너무 평범함. 각종 기여 실적이 타사에 비해 저조함. 1%미만 주주가 전체의 70%로서 주주구성이 적절함. 소수 시청자 지원 방안 구체성 없음
- 공적책임 등의 실현 계획 적정함.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못함. 주주구성 등은 적정함. 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 적정함
- 프로그램 기획, 편성 계획의 차별성과 수급계획이 다소 미흡함
- 재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편성되는 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전반에서 충분한 계획이 제시되지 못함
- 프로그램 기획, 편성의 독창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공익성 기능에 대한 오해에서 프로그램 편성의 잘못으로 이어짐. 그 외 프로그램 역시 기존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참신하다거나 독창적이라고 느끼기 어려움
-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을 통해 방송산업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

략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 프로그램 기획·편성 등에서 방송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주체임이 여러 면에서 드러남. 미디어 융합형 인터랙티브 방송프로그램은 그 실체를 짐작하기 어려우며, 전체적으로도 <서울뉴스>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뉴스 채널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움
- 특별히 부각되는 우수성, 적절성이 없어 평균적 수준임. 외주제작 비중이 타사에 비해 높은 것은 장점일 수도 있으나 단점일 수 있어서 확실한 장점으로 지적하기 곤란함
- 차별성, 독창성에 대한 계획이 다소 부족함. 시간비율 외주제작 비중이 다소 높음. 해외 협력이 다소 부족함
- 재방비율 00%로서 타사에 비해 높음. 제작비가 타사에 비해 작음. 협력계획 구체성 없음. 해외 제작사와 협력계획 없음
- 방송프로그램 중 차별화를 지역보도프로그램에 역점을 두었다면 인력·기술·장비 등을 앞으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함
- 국내외 프로그램 구매 계획의 구체성 미흡. 국가 정책·지자체 소식 중심 뉴스로 글로벌화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편성이 기존의 보도PP와 차별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조직 및 인력구성과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계획이 다소 미흡함
- 성장을 비현실적으로 제시됨. 인력계획상 비정규직 비중이 2000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계획하는 등 계획전반의 구체성과 치밀성 다소 미흡함. 영어뉴스 편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제시
- 조직 및 인력확보책이 퇴직인원의 충당에 치우친 느낌임. 이로 인하여 경쟁력 상실이 라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우려됨. 자금조달이나 운영 역시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않음
- 타사에 비해 WACC가 낮은점은 긍정적. IRR이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WACC가 낮은 것과는 모순되어 사업성 분석의 신뢰도가 낮음.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신뢰성에 흠결을 초래할 수 있음
-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의 비전과 전략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됨. 필요성은 잘 서술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이 부족
-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미흡함
- 글로벌 전략 구체성 없음. 인력산출 근거 없음. 교육비는 평균수준. 의견청취 결과 자금조달 어려움. 시장전망 너무 낙관적임. 집중투표제 없고, 사외이사 비율 없음. 경영 효율성 방안 없음
- 시장전망에 있어 미래의 위험요인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 전략적 투자 방안, 국제업무 지원 조직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비정규직 인력 비율을 점차 줄여가겠다고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으나 인력계획을 보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비정규직 인력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서울신문은 필요한 경우 차입을 통해 출자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의견청취과정에서 답변함

- 사업추진계획,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면에서 타사나 일반적 기준에 비해 안이하고 치밀하지 못함. 퇴직자 활용이나 참여사를 광고주로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 등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보도PP 추진 의도가 의문시됨
-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함. 신규 사업자 선정 후 뉴스보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한데 공공뉴스 외 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조직 인력 규모에서 퇴직 신문기자, 퇴직 방송인 등을 재교육시켜 인력 활용을 한다고 계획했는데 그 비중이 몇 %이고,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은 몇 %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함. 즉 비용과 효율성의 검증이 잘 안됨
- 글로벌 미디어 기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은 적정함.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 적정함. 사업성 분석 적정함.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 적정함
- 재무적 능력에 대한 계량 심사항목 평가가 매우 낮게 나오며, 기술적 능력에 대한 계획도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임
- 계량평가 결과 적용함. 방송시설 투자 비현실적이고, 추정 재무제표 반영도 미흡한 것으로 보임. 방송기술연구소 구체성 미흡
- 재정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투자금액의 적정성이 매우 부족함
- 재무적 능력이 다소 취약함
- 현금성 자산 부족으로 유동성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큼. 아울러 부채비율이 높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안정성이 낮아 보임. 자기자본 순이익률 역시 미흡함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방송시설 설치·운영 및 방송기술 확보·활용 계획 적절함. 계량평가에 의함
- 전반적 재정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 능력에 있어서 기준에서 상당히 모자람. 방송시설 설치, 운영 계획에 있어서도 특징점이 없음. 그러므로 이 부분 총 배점인 150점의 70% 이하의 점수를 부여함
- 계량 산출 결과에 의해 양호한 편이나 방송 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에 대한 계획이 다소 미약하여 전반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있음
- 시설처리용량 정보 없음. 시설·규모 산정근거 없음
- 계량평가 항목인 재정적 능력과 자금출자 능력이 매우 미흡하여 심사사항의 승인 최저점수(70%)를 만족하지 못함
-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하고 적극적인 투자 및 계

획을 통해 미래 방송기술을 선도적으로 수용해야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산업 발전 기여 계획이 우수하나 콘텐츠산업 기여 계획은 다소 미흡함
- 매우 간단하고 구체성이 없이 기술되어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임
- 방송기기 산업 발전계획 및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짐
- 콘텐츠 산업관련 계획 부족해보임
- 우월성이 돋보이지 않음. 평균적 수준임
-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계획이 미흡함. 또한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역량을 습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음
- 방송발전 기여 계획이나 콘텐츠 산업 지원 등에 있어서는 많이 준비되지 못하는 모습 이어서 기대이하임
- 방송발전 기여계획 우수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다소 부족함
- 개별 플랫폼과의 협력방안을 아우르는 통합적 전략이 필요
- R&D 계획 및 예산 없음. 유료시장 활성화 계획 구체성 없음. 제작비가 타사에 비해 높음
- 방송발전 기여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 핵심 방송 인력에 대한 역량 발전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해 아쉬움 있음
- 콘텐츠산업 발전계획이 교과서적이며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확보방안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프로그램 편성기획 측면에서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편성분야에서 서울뉴스만의 차별화된 편성방향이 미흡하고 인력운영이나 교육측면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재정적 능력도 다소 부족하고 투자금액의 적정성 측면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구체성을 다소 결여한 것으로 보이며, 차별적 아이디어도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주구성상 자본금이 예정대로 전액 출자 완료될지 여부에 대하여도 일부 의문이 제기됨. 손익추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경영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판단임
- 서울뉴스는 그간 언론사를 운영해온 1대 주주의 역량에 비추어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정성·공익성 등의 실현계획 등은 어느 정도 타당한 듯이 보임. 그러나 서울뉴스 주주구성과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등에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며, 조직과 인력 운영 계획도 치밀하지 못한 듯 보임. 특히, 재정적 심사항목은 계량평가 결과 과락에 해당되며,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도 별다른 의지가 전달되지 않음
- 국가정책·지자체 소식 중심으로 국내 경쟁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 가능성에 우려가 있음. 또한 재무적 능력이 취약함
- 최대주주인 서울신문의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자금출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 소액주주들 중에서도 출자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주주가 생겨날 위험이 있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편성이 기존 보도PP와 차별성을 지니지 못함. 전반적으로 사업수행의지가 약해 보임

- 전반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구현하려는 의지는 강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 발전의지와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보도채널을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긍정적 측면은 서울신문사의 기존 능력은 인정됨, 신청사업자 가운데 유일한 종합일간지로서의 능력과 인지도, 소액주주의 다양성 유망 중소기업의 다수 참여. 부정적 측면으로 소액주주의 다양성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가지는 양날의 칼과 같음, 신문제작 능력과 보도 능력 사이에 존재하는 갭을 단기적으로 메우기 어려움, 목표로 내세운 양질의 서비스와 높은 수익성이라는 양대 목표의 달성은 매우 힘든 측면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못함, 부채비율이 높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여 유동성 부족시 위기에 크게 노출될 위험이 있음, 전반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였으나, 그 근거가 미약함. 부정적 측면의 강도가 더 크고, 사업의 지속성 전망도 우려가 되어 승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업계획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한 차별성, 글로벌미디어기업으로의 발전 계획 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 재정성·투명성에 공정성이 확보되며 안정적이나 다소 진취적이지 못한 계획서 상에 방송시설, 인력 등의 확보차원이 가시적이지 못해 아쉬움이 있음. 그러나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되어 있으나 방송이라는 인력은 교육 몇 시간을 통해 전문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음.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의견으로 좀 더 진취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계획과 그림이 필요할 것 같음
- 청문결과 나타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사업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작비는 타사에 비해 높으나, 구체적인 사용계획, 교육훈련, R&D 등의 예산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결국 자금조달 어려움의 결과라고 판단됨
-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능력이 매우 미흡하여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심사 사항의 승인 최저점수(70%)를 만족하지 못함
- 전체적으로 방송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임. 또한 재정적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이하의 모습이며 참신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도 보이지 않으며 방송시설이나 콘텐츠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불승인이 상당하다고 생각됨
- 공익성, 공정성, 공적 책임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성평가, 경영계획, 기술적 능력 및 준비, 방송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 연합뉴스TV

-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지역적 기여실적 및 시청자 권익실현방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주주의 지역적·사회적 기여실적을 과대 계상함.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구체성이 약함
- 지역적 기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의 이전이 기여도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스러움. 향후 실질적 기여를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여타 항목은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방송전략을 통한 공적책임 실현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의 공익성 확보방안이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임. 대표이사, 대표주주의 확고한 계획실현 의지가 잘 전달되지 않음. 일부 구성주주(OOOOOOOO 등)가 중복참여하여 주주구성의 적정성이 다소 부족함.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적정함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가 다소 미흡함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고, 특히 공익성에서 소수계층, 취약계층의 프로그램 지원방안에 현실성 있는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음
- 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반론권의 구체적, 적극적 보장과 관련한 적극적인 절차, 관련기구의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이 빈약
-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계획 구체성 없음. 각종 기여실적이 평균 수준임. 주주구성이 적절하나 국가 지분이 포함되어 있음. 소수시청자 지원 방안 구체성 없음.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 편성표에 없음
-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인식부족이라고 보여지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
- 사립학교법상 건전한 재무·회계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익성 전망이 상당기간 낮은 보도PP사업에 학교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주주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음.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 다소 미흡함
- 공정성 인정받고 있는 기존의 연합뉴스의 특파원 망을 활용하여 글로벌 뉴스를 편성하고 공정 책임, 공익성 실현 계획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6개국어 뉴스를 편성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진 연합뉴스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점도 우수함
- 연합뉴스 운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도PP가 갖추어야 할 공적책임 등에 대한 실현 계획이나 준비는 충분할 듯 보이지만, 주요 주주 중 언론 및 방송과 무관한 주체들의 참여 적절성은 다소 의문임. 지금까지의 사회적 기여도 다소 부족하고 일부는 과장된 면이 있으며, 일부 계획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 모습임

- 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과 수급계획은 우수하나 제작협력계획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프로그램 외부제작 계획 다소 미흡해보임
-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형식이 기존 보도PP와 차별성을 보임
- 국내 최대 해외 취재망을 활용하여 국제뉴스를 강화시키는 강점이 있음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만 그다지 참신하거나 독창적이라고는 하기 어려움. 특히 외주제작업체에 대한 배려는 선언적인 느낌이 음
- 편성계획 평균 수준, 독창성 없음. 제작비가 작음. 협력계획 구체성 없고, 활성화 기여 계획 구체성 없음
-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계획이 적정하며 효율성이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음
- 편성의 목표시청자(수용자) 설정에 있어 뉴스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젊은 층에 대한 전략이 상대적으로 미비
- 글로벌 및 아시아 뉴스채널 지향으로 기존 보도채널과 차별화하는 점 우수함. 연합뉴스와의 통합뉴스룸 활용과 해외 취재망 활용으로 뉴스 프로그램의 적절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토론방송 편성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지역민방과의 제휴, 합작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외주제작비중을 00% 이상(편성시간 기준) 유지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나 프로그램 수급 계획 등에서 독창성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체로 무난한 평가가 가능함
- 편성위원회 월 1회 개최 등 자율성 보장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적절함.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 계획 우수 또는 적절함
- 자금조달 계획 평가시 출자금 납입계약서 미공증 제출한 00000, 000, 000000000 반영함. 시청자점유율 등 추정 재무제표 작성시 다소 비현실적 추정요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가 매우 우수하고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도 우수함
- 납입자본금 규모가 600억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자금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미디어 기업으로서의 전략이 우수함
-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뉴스채널에 대한 비전하에 아시아 뉴스허브, 글로벌 스튜디오 구축 계획이 인상적임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이 다소 미흡함
- 경영전략이나 조직, 인력구성에 대하여는 상당한 강점이 보이고, 자금조달 운영 계획도 비교적 양호함
- 시장전망이 너무 낙관적. 글로벌 전략의 구체성 없음. 조직도, 인력 산출 근거, 교육훈

런비 정보 있음. 제작비가 작음. 사업성 분석이 낙관적임. 집중투표제, 사외이사 1/2 이상. 경영효율성 방안 없음

- 사업추진계획과 조직인력 구성이 기존의 해외 특과원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자금조달 능력과 더불어 안정감 있는 경영의 투명성을 엿보이고 있어 양호함
- 글로벌 마케팅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향성(inbound) 전략에 비해 외향성(outbound) 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족. 미래 전망치를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맞춘 contingency plan이 요구됨
- 시장분석에서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종편사업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소 낙관적인 사업성 추정이 이루어짐
- 추세 분석은 비교적 합리적이지만 스스로에 대한 향후 전망은 충분히 보수적이지만은 않은 듯이 보임.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등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제시됨
- 사업추진계획 적절함. 통합뉴스룸 운영 등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우수함. 계량평가에 의함. 납입자본금 규모에 비추어보면 재무활동에 의한 자금조달계획 우수함. 사업성 분석 적절함.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 적절함
- 타 신청법인에 비해, 시장전망 및 그에 기초한 경영(사업성)분석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자금출자 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재정적 능력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정적 능력이 참여업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국산 방송장비 계획에 수치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 계획이나 국산 장비에 대한 평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재무적 능력이 우수함
- 재정능력이 비교적 우수함
-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이 다소 미흡하며, 특히 콘텐츠 제작 및 편집과 관련된 기술확보의 구체성이 없음
-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및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우수함. 계량평가에 의함
- R&D 예산이 작음
- 기술적 혁신역량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미래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방송기술에 대한 좀 더 적극적 투자가 필요함
- 재정적 능력 중 부채비율, 총자산증가율이 다소 낮게 평가되지만 그 밖의 평가항목은 우수하게 평가되며, 방송시설 설치·운영 계획이나 확보·활용 계획은 대체로 적절함
- 계량평가 결과 적용함. HD방송관련 다소 현실성 결여한 것으로 보임
- 계량평가 대부분의 항목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됨.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아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이 우수하

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우수함

- 2000년 000억을 투자하여 방송시설을 갖추고 국산화 비율도 21%로 늘리고, 해마다 00억원씩 추가 투자하는 방식이 설치운영계획에 타당이 있는 계획으로 신뢰성이 감
- 재정적 능력이나 자금출자 능력은 비교적 양호함. 방송시설 설치, 운영계획도 상당히 좋음
-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은 다소 미흡하나 콘텐츠 산업 기여 계획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0억, 2014년 0억, 2015년 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수급원별 연간 제작비 규모(P.104)에서의 외주제작/구매제작 비율과 P.282의 동일 비중이 일치하지 않음
- 전반적으로 무난함.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방송발전 기여계획 우수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우수함. 계량평가에 의함
-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사업에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 미디어 활성화에 개방형 콘텐츠 유통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적극적이고 콘텐츠 확산 및 산업 육성에도 재원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계획임
- 방송장비 R&D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 방송발전 기여계획이나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은 특이성은 없어보이고, 마지 못해 준비하는 듯한 소극성이 보임
- 각 유료플랫폼과의 협력 방안, 콘텐츠 육성방안의 구체성이 부족
- R&D 규모가 작음. 기여계획의 구체성 없음
- 방송발전 기여 계획이 단편적이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느낌이나 그 의지는 어느정도 평가됨. 다만, 케이블SO에게 연간 수신료 8%를 지원한다는 계획은 액수도 적고 명분도 부족한 계획으로 보임
- 방송산업 및 유료방송 활성화 계획 다소 미흡
- 납입자본금 규모가 600억이며,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정적 능력이 양호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형식이 기존 보도PP와 차별성을 보임. 연합뉴스와의 통합뉴스룸 구성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는 방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프로그램의 기획편성과 수급계획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프로그램 편성계획도 연합뉴스의 해외 특파원과 지역취재기자를 활용하여 특화된 편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고 글로벌 보도채널의 실현 가능성이 장점으로 판단됨. 또한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나 자금조달 운영계획은 자금 출자능력과 재정적 능력과 더불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여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연합뉴스TV의 사업계획서는 권소시엄 및 1대 주주의 강점이 잘 부각된 계획서로 판단됨. 그러나 주요주주 중 언론과 무관하며 향후 투자에 응하기 부적합한 주체가 있는 듯 보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계획이나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도 대체로 합리적으로 보이며,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에 대해서는 타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 강점이 부각됨.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도 의지가 잘 드러났다고 평가됨
- 재무적 능력이 우수함. 글로벌 및 아시아 뉴스채널 지향하는 점은 기존 채널과 차별화됨. 정부로부터의 독립적인 보도를 위한 보완책이 요구됨
- 긍정적 측면은 기본 연합뉴스 인력 활용 가능, 인건비 절감 효과, 전국적 Network망 활용 가능성, 실시간 보도 가능성 충분. 부정적 측면은 사업성 분석 구체성 미흡, 주요주주(OOOO)의 언론 분야 참여시 연관성 낮음(이해상충문제 차단 필요), 출자 예정인 OOOOOO의 재무건전성 미흡, 공정성 확보 기구의 복잡성(옥상옥의 감시 기구), OOO의 간접지분 참여 문제, 경쟁사업자간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경영과 보도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위에서 지적한 긍정적 측면에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는 조건으로 승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함
- 보도PP 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보도PP와 무관하며, 자산 운영의 건전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학교법인이 2대 구성주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은 주주구성의 적정성 관점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보임. 전체적으로 보도PP승인 기본계획 등에 따라 보도전문PP로 승인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의 비전을 갖고 국내 최대의 해외특파원망을 활용한다면 훌륭한 보도PP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CNN, BBC 등 선진국 뉴스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이들 방송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방송의 공익성 확보나 차별성 확보 측면에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음. 전반적인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 등에 관하여서는 우수한 것으로 생각됨. 납입자본금 규모가 최소자본금의 150%가 넘어 초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전체적으로 어느 한군데 모자라는 부분이 없이 고르게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승인함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함.
- 어떤 조직이든 미래를 계획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장미빛 전망과 비전 보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위협의 관리,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인적자원, 내·외부 자원 관리가 가장 중요함. 본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임
- 전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다소 미흡하여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선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특히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 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계획 등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평균 수준이나, 제작비 규모가 작고, 특히 의견청취 결과 기자에 의한 취재를 지향하는 답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는 글로벌 미디어로서 발전 의지에도 저해하는 것임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등에서는 뚜렷한 철학이 엿보이고 경영의 합리성, 자본의 능력·출자 등에도 깨끗함이 엿보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함. 다만, 좀 더 진취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안정기조 보다는 변화에 도전하는 활력있는 계획서로 전환시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 HTV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계획은 우수하나 문화적 기여실적과 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구성주주 중복참여 등으로 주주구성의 적정성, 건전성 미흡함
- 주주구성에 특수관계자에 의한 중복이 발견되며, 사회적·지역적 기여 부분도 과대 포장된 면이 있음. 그러나 보도채널로서의 공적 책임 실현이나 시청자 권익 실현에는 큰 문제는 없는 듯 보임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적정함 . 주요주주인 0000의 기여실적이 반영되지 못하여 사회적 기여 다소 미흡함. 0000의 계열회사인 000000, 000000가 중복 참여하여 주주구성이 다소 적정하지 못함.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적정함
- 코리아헤럴드 발간 역량을 기반으로 다국어 보도전문 PP로서 성장가능성이 기대됨
-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대주주의 과거 사회,지역,문화 기여실적이 거의 없음에 비추어 향후의 기여 계획에 대한 신뢰가 낮음. 구성주주가 적정한지는 의문임
- 시청자가 참여하는 권익 실현 방안에서 자체 내의 교육, 생활 밀착형 방송이라는 것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음
-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비전은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이 상대적으로 부족.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의 구체성 및 현실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기존 영자신문의 공정성·공익성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됨. 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다국어 방송에 대한 수요 존재하며 다문화 가정,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보편성 구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다른 보도PP 또는 종편PP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음. 0000 및 000000의 지분율이 00.00%로 0000의 지배하에 운영될 위험이 있음
- 언어특화방송의 장점이 있음. 그러나 현실적인 기존 방송사와의 특별한 비교우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회적 기여도 실적이 미흡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감
- 0000와 000000가 5%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로 확인됨에 따라 평가시 중복참여 주주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구체성 없음. 각종 기여실적 평균 수준임. 0대 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높음. 소수시청자 지원 방안 구체성 없음. 시청자 불만처리 계획 실현성 없음
- 프로그램 제작협력 계획은 우수한 편이지만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재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전반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보임
- 글로벌 방송을 통한 프로그램 편성 차별화에 강점이 있음
-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후발주자로서의 열세를 만회할만한 구체적 전략과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편성과 여성을 위한 동아TV와의 협력 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우수함. 외주제작비율이 다소 낮은 점이 아쉬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 계획 적절함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보도전문 방송 채널로서의 철학이 엿보이지 않는 미약한 부분이 있음
- 편성계획 평균 수준, 독창성 없음.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높음. 협력계획 구체성 없음. 활성화 기여 계획 구체성 없음
- 사업신청서 상에서 정의된 주 시청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목표층을 상대적으로 차별화하여 공략할 수 있는 편성이 필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력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을 다소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이 우수함. 방송 프로그램 구매 계획상 해외 고품질 다큐멘터리, 교양물 등 우수 프로그램을 구매할 계획이나 제작원별 편성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주시청 타겟이 분명하지 않음.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에서는 HTV 추진 주체가 가진 역량이 잘 드러나 비교적 개성있고 독창적인 보도채널의 모습이 제시된 듯 하며,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이나 제작 협력 계획도 대체로 무난함
-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이 다소 미흡함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이나 수급계획 등은 비교적 양호함
-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가 부족하고 자금조달 계획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추정재무제표 산출 시 현실성 다소 부족함
- WACC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낙관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제시된 자료를 통해 판단)
- 시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듯한 느낌임. 납입자본금 역시 미흡하게 보이며,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있어 신뢰성이 부족함
- 자금조달 능력과 납입자본금에서 글로벌 미디어 업체로 어려운 점이 엿보임
- 시장 전망 낙관적이고 글로벌전략 구체성 없음. 조직도, 인력 산출 근거 있음. 교육비가 작음. 청문결과 자금조달 불투명. 제작비가 타사에 비해 많아서 운영계획은 우수함. 사업성 분석 낙관적임. 집중투표제, 효율성 방안 없음

-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함. 다양한 미래 전망치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사업추진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쟁력 있는 글로벌 보도PP로서의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업무를 위한 적절한 조직,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사업추진 계획 적정함. 2인 공동대표체제의 방송공정성 및 경영 효율성 다소 의심스러움.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적정함. 사업성 분석 적정함.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 적절함
- 납입자본금 규모가 타사 대비 가장 작아서 계량 평가에 큰 감점이 있음. 외국어 기반이 우수한 특징을 살릴 때 글로벌 전략에는 강점이 있으며, 사업성 분석이나 경영효율성은 무난하게 평가됨
-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과 단계별 로드맵, 효율적 글로벌 경영전략 수립이 인상적임
- 납입자본금 규모가 000억으로 참여업체 중 가장 낮음. 추정 현금흐름표상 현금잔액이 0억 0000만원정도 밖에 남지 않아 2000년에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음
- 예상 시청률 추정시 신규 종편PP의 시청률은 신규 보도PP의 관점에서 볼 때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신규 보도PP가 2000년 MBN 시청률 대비 100%에 도달한다고 가정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판단됨. 자기자본이 00억원에 불과한 000000의 000억원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의심됨
- 중복참여주주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계량평가 결과 적용함. R&D(방송기술) 불충분할 것으로 보임. 2000.0월 방송개시 계획은 현실성 부족함
- 재무적 능력이 취약함
- 계량평가에 의함.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및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적절함
-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능력이 대단히 불량함. 방송시설 설치 운용, 계획 등 기술적 능력에서도 특별한 강점이 보이지 않음. 따라서, 총 배점 150점의 70%이하의 점수를 부여함
- 재정적 능력이나 자금출자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함
- 계량 산출 적용한 결과로 재정적 능력과 자금 출자 능력이 불량이며 방송 시설 설치 운영계획에도 연도별·단계별 계획이 다소 미흡함
-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능력이 매우 미흡하여 심사사항의 승인 최저점수(70%)를 만족하지 못함
-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구체적인 기획,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방송기술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R&D 예산정보 없음
-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 능력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과락에 해당함
- 현금성 자산 비율이 낮아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위험이 높아보임. 자기자본 비중이 낮은 것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훼손함.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도 미흡함
- 주요주주 특수관계자의 중복참여로 인해 재정적 능력이 낮게 평가됨
- 주주의 중복 참여에 따른 계량점수의 감점
- 전체적인 지원계획의 제시가 단편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라 방송발전에 대한 지원 의지가 약해 보임
- 콘텐츠 투자액 예산 낮고, 육성·기여계획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발전 기여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됨
- 특별히 우월한 부분이 부각되지 못함
- 콘텐츠 산업 기여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함
- 콘텐츠 개발에 연 0억원씩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방송 콘텐츠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우수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비교적 무난한 모습임
- 방송발전 기여계획 우수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우수함. 계량평가에 의함
- 방송 발전에 대한 인력·기술·연구 등이 현실성이 다소 결여되고 방송과 연관된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계획이 부진함
- 유료 플랫폼 시장과의 협력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 콘텐츠 산업에의 보다 적극적 투자 필요
- R&D 예산정보 없음. 유료방송 활성화 계획 없음. 제작비 높음. 기여계획 구체성 없음
-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방송제작 협력계획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보도PP의 모든 역량이 결국은 편성을 통해 표현되는데 외국어 방송 비율을 26%로 설정하고 기존 보도PP에서 등한시된 20-30대 청년과 외국인, 여성을 타겟으로 하겠다는 목표는 기존 보도채널과 차별화되는 점임.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보도채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단계적 편성전략이 요구되는 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최초납입자본금이나 자금조달능력, 재정적 능력과 자금출자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영자신문과의 연계성은 장점이고, 다국적 언어 뉴스방송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재무적 능력이 취약하며 지분 구성에 문제점 발견됨
- HTV는 1대 주주의 외국어 언론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수급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타당한 계획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재정 등에 관한 계량평가가 매우 저조하였고 언론 및 방송 발전에 대한 지원 계획이 미비

한 등의 문제가 드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보도PP로 선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됨

- 사업계획서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작성된 점은 인정되나, 승인 기본계획에서 정한 5% 이상 동일인 참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점은 아쉽다할 것임. OOOO이 O, O 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신설PP의 공동 대표이사(예정)로 선정된 것은 영리기업의 보도 전문PP의 공익성,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됨
- 긍정적 측면은 언어특화방송, 단 영어에 대한 수요층이 대부분 수험생이어서 사업성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부정적 측면은 계획서와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낙관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 제시가 미흡함, 현금성 자산의 부족으로 부도위기가 존재함, 자기자본 부족으로 재무구조 건전성에 문제점, 신청법인 등의 신용등급도 낮음. 위의 부정적 측면에 따른 위험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함
- 해외 글로벌 뉴스 전문채널의 등장 속에 MBN, YTN과 같은 국내 보도채널은 한국어 뉴스만을 취급하고 있음. HTV는 글로벌 콘텐츠를 다국어로 보도하여 글로벌 뉴스채널로 성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과 단계별 계획 실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주주의 중복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있음
-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다른 보도PP 또는 종편PP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하여 중복출자의 문제가 발생됨. 위와 같은 중복출자로 인해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서 70% 미만의 점수를 획득함. 납입자본금 규모가 000억으로 참여업체 중 가장 낮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음
- 기본 자본금에서도 보도 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승인이 어려운 듯 보임. 또한 문화적, 사회적, 지역적 기여도에서 학교발전기금 등 기부금 등이 많이 포함되고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현황이 다소 부진한 것 같음. 또한 시청자 참여를 위한 계획에서도 시청자 권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후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직원의 교육 계획이나 상·벌제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함에도 그런 제도가 부족함
- 외국어 편성 및 여성채널 협력 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의 차별성 내지 강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납입자본금 규모가 작은 점, 공동대표 사이의 의견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비효율성 등은 문제점이라고 생각됨
- 구성주주가 중복출자된 상태로 향후 OOOO, OOOO측이 탈퇴될 것으로 보임. 재정적 문제가 심각하며, 다른 몇가지 부분에서도 발군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 재정문제 등에 대한 부분을 덮기 어려움. 그러므로 불승인함이 상당하다고 봄
- OOOO와 OOOOOO가 5%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로 확인됨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 점수(70%)를 만족하지 못함
- 모든 계획, 전망, 전략에 있어 전반적으로 구체성, 현실가능성, 단계별 접근, 통합된 전략이 모자란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대한 비전과 의지는 보이나 이

를 담보하기 위한, 조직, 인력, 투자, 협력계획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타사에 비해 제작비 규모가 큰 것은 긍정적. 글로벌 미디어 전략이 없고, 콘텐츠 활성화 계획이 미비함. 주주 구성이 부적절함. 중견기업의 참여에 비해서 소유·경영 분리 장치가 부족함



종편PP 신청법인 심사소견서



# 종편PP 신청법인 심사소견서

## □ 매일경제TV

- 주주구성이 적정함. 종편채널 승인시 보도채널 폐업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미흡. 주주 구성에 있어 방송전문기업의 참여 저조
- 크게 돋보이지는 않으나 평균적인 수준의 사업계획서로 보임
- 오락성이 짙은 프로그램을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편성비율을 왜곡하고 있으며, 소수 시청자 지원 프로그램의 비율 산정에도 여성을 포함시키는 등 몇 가지 점에서 신뢰성을 주지 않고 있음. 또한 전반적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공적책임 이행, 공정성 준수, 공익성 확보 등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 및 실천의지가 부족해 보임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적정함.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및 기여 계획 우수함.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 적정함. 시청자 불만 처리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함
- 전반적으로 적합하지만 타사와 비교할 때 지역·사회적 기여가 다소 적으며 공익성 확보 방안 구체성이 조금 부족한 듯이 보임. 신청 법인 적정성 등은 양호함
- 매일경제TV(현)를 종편 승인시 신설될 매일경제TV(신청법인)로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평가는 보완이 필요해보임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이 우수함
- 방송의 공익성 중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에서 다소 소극적인 평가함
- 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 있음
- 청문결과, 대표자의 방송 공적 책임 인식이 충분하고, 공익성 확보 실현 계획이 실현성 있으며,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이 비교적 구체적임
- 세계적인 글로벌 미디어인 ○○○○○○○와 영국 ○○○○○○○의 모회사인 ○○○○○이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신청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됨
- 뉴스시간을 45분대로 편성한 것은 기존 지상파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개국 후 보도,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줄어들고, 드라마·예능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편성의 불균형이 예상됨. 공정방송위원회가 내부인으로서만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자체제작 비율 역시 시간이 감에 따라 줄어들고 있음

-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보도 프로그램 제외하면 전문성 부족으로 판단됨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이 적절함
-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대체적으로 우수함. 방송 프로그램 수급계획 적절함. 방송 프로그램 제작협력 계획 우수함
- 시간기준 자체제작비율 00%, 금액기준 자체제작비율 00.0%는 신청법인 평균 (00.00%, 금액기준)에 비해 과다함. 본방송비율 00.0%도 평균 00.0%에 비해 약간 과다. 경제 분야의 특화된 비교우위측면이 잘 반영되지 못함
- 방송 프로그램에서 외주 보다는 자체제작에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며 오락프로의 비중이 타 신청법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One Asia 관련 프로그램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애니메이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소프트 파워 증대 전략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One Asia 기획 및 편성전략이 독창적임
- 타사와 비교할 때 프라임 타임대의 오락 편성이 00.0%로 다소 높게 책정되었으며 재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여타 계획은 양호하지만 제작 협력 계획이 구체성이 부족함
- 경제TV 사업자시 경험과 역량을 종편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오락+교양)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계획한 점은 차별적 우위성을 고려하지 못한 편성으로 보임
- 제작비 규모가 신청사 중 0위이지만, 경제방송 경험에 기초한 편성계획이 우수하고, 외주와 자체제작 비율이 적정함. 아울러 제작 협력계획이 구체적임
-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을 자사의 여러가지 장·단기 경영전략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편성계획에 따른 조직 및 인력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시장 전망치 다소 도전적이며, 제작비 추정이 (오락+교양) 비중과 배치되는 점은 다소 미흡함
- 글로벌 미디어 비전에 있어서 현재의 역량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고, 신규 고용이 타사에 비해 제한 될 것으로 보임
- 주요주주로 참여한 00000000와 원금 및 연 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본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음
- 청문결과, 시장전망 및 경영 전략의 적절성이 확인되었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부당내부거래 감독위원회 등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방안이 우수함
-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전략이 우수함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이 적정함

-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어 보임. 경영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해 보임
- 신규 종편사업자수를 0개로만 가정하여 평가. 경영진에서 회장의 역할이 기술되어 있지 않음
- 사업추진 계획 우수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우수함. 납입자본금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우수함. 사업성 분석 적정함.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 우수함
- 경영의 안정과 조직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인력관리 및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함
- 시청점유율이나 시청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그것이 광고 수입의 과다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채널 인지도 제고 노력은 돋보이나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대한 비전은 추상적 구호의 나열에 그치고 있음. 조직이 슬립하지 않고 다원화되어 있다는 느낌임
- 사업추진 계획과 조직·인력 운영계획이 상대적으로 미흡
-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고 신청법인 및 주요 주주의 신용등급도 부족하다고 판단됨
- 계량 결과 적용함
- 부채비율은 낮아 재무 건전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출자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기술적 능력과 관련한 방송시설 설치 확보계획 우수함
- 재정적 능력이나 자금출자 능력에 있어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방송시설 설치 운용·계획 등에 있어서도 그 투자금액이 비교적 적게 계획되어 있음
-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미세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됨. 기술적 능력에 관련된 계획은 특이사항 없음
- 계량면에서 자금출자능력이 약간 미흡
- 재정적 능력과 자금출자 능력이 다소 미흡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이 신청업체들 중에서 가장 낮음
-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 능력이 다소 미흡함
- MBN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설치, 확보 계획이 우수함
- 계량 평가항목인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 방송발전 기여 계획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각종 발전 기여 계획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방송 발전을 위한 기여계획에서 MBS 아카데미는 수익사업에 가까우며, 관련 대학과의

단순 협력관계, 액수가 적시되지 않은 장학금 지급 계획 등은 구체성이 부족하게 보임

-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환원의 계획이 방송산업 발전기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함
- Contents 산업 육성, 기여 계획은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됨
-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과 글로벌화를 위해 5년간 약 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방송산업에 기여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임
- 방송발전 기여계획과 콘텐츠산업 지원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멀티 콘텐츠 스튜디오 설립으로 콘텐츠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방송 발전이나 콘텐츠 산업육성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을뿐 아니라 그 투자액 역시 타 신청법인에 비하여 많지 않음. 콘텐츠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우수함
- MBN의 국산장비 도입 실적 미흡.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개발 계획 미흡
- 방송산업 발전 기여 계획 우수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우수함. 출연금 계량평가에 의함
- 편성계획에서 후발주자로서 시청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자체제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임. 전체적으로 치밀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됨
- 전체적으로 방송의 공익·공정·공적 책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업유지 계속 가능성에 의문임. 또한 재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심사항목에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음
- 전반적으로 종합편성 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임. 경제뉴스 채널로써의 경험과 역량을 프로그램 편성이나 콘텐츠 개발 등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나 전체적으로 종편PP로 승인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임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편성계획이 독창적인 것으로 판단됨. 기존 보도채널인 MBN을 승계하여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조기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도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 미흡. 재정적 능력 다소 떨어짐. 방송발전 지원 계획 양호함
- 방송의 공정·공익성 확보에 무리가 없어 보임. 편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 재무건전

성은 무리가 없으나 여타 항목의 개선을 요함. 글로벌미디어 산업으로의 잠재력은 존재함

- (주)매일경제TV의 사업계획서와 청문에 의하면, 현재까지 보도채널을 운영한 노하우와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한 개성있는 종합편성 PP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평가됨. 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프라임타임대에서의 오락 편성 비율, 글로벌 미디어 비전의 구체성, 그리고 방송발전기여 계획 등에서는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약점이 될 사항들이 드러나기도 하였음. 그러나 지상파와도 다르고 종합일간지 계열의 종편과도 차별화된 사업 계획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기획 내용 등에서 방송의 다양성에 기여할 여지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 One Asia 관련 프로그램. 글로벌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기존 보도채널운영 경험이 종편PP로서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적으로 우수함. 방송 프로그램 편성 독창적인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수함
- 전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자본금 부족시 증자에 대한 확실한 재무구조 불안으로 과연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공익성이 확보 될 것인지 의문이 감. 또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가 소극적이며 방송 편성 프로그램 비율에서도 오락에 대한 비중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공익적 기능이 상실될까 우려 됨
- 전반적인 규모는 크지 않은 사업계획이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담겨 있음. 아울러 아시아 문화펀드 등의 방송 기여 계획도 구체적이며, 특히 OOOOOOOO와의 협력 계획이 매우 구체적임
- 전반적으로 잘 작성된 사업계획서이나 의지나 전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 □ 채널A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은 적정하지만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방안이 구체적임
- 사회적책임(CSR)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시스템이 우수함
- 방송문화재단 설립이나 "시청자의 선물 시선 + " 등으로 기여 계획을 세우는 등 공적 책임 구현의지가 높음. 그러나, 공익광고 편성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 또한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인 자막의 홍수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시청자 권익실현 방안중 실버세대에 대한 지원책이 형식적임
- 지역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이 다소 미흡함
- 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안이나 지역적 기여 양호함. 방송의 전문성을 보유한 주주의 참여 미흡
- 언론 독과점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수립을 명시적, 구체적으로 제시함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 특히 자사의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 공적 책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실현 가능한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주구성이 다양함.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도 구체적임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구체적이고 우수함.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 우수함. 신청법인의 주주구성 적정, 건전함. 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 우수함
-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방안으로 자체적인 윤리강령 및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율 관리에 양호한 평가를 함
- 대주주의 소유와 경영분리 의지는 언론사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임
- 사회·문화적 기여에서 금액으로는 낮으나 기여의 방법 및 내용 폭에서 이를 상쇄하는 듯 보이며, 법인의 주주로 대학과 유명 명사를 참여시킨 점은 부적절할 수 있음. 여타 사항은 대체로 양호함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이 적절함
-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시간대별 배열과 구성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외주제작사와의 상생관계 구축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남
- 교양편성의 비율을 00%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계획이 현실성 있으며 합리적임

- 선진적인 외주제작 여건을 조성해 수급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창조적 아웃소싱" 안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함
- 제작비 규모가 평균 이상이고 편성계획도 우수함. 외주제작위원회 성과를 CSR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해외 판매 수익정보도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 구체적임
- 신규 플랫폼에의 진출 계획,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에 있어 좀 더 실현 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시청자 참여방송, 양방향 프로그램 기획 등 드라마·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임. 타사 대비 외부 구매율이 낮음. 외부제작자, 지역영상 제작업체 등과의 협력방안이 돋보이고 특히 1인 독립창작자 지원방안 등 세밀한 부분까지 예상하여 그 계획의 치밀성에 신뢰가 감.
- 기존 지상파 방송과의 차별성을 위하여 글로벌 콘텐츠센터를 활용하는 계획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콘텐츠 편성 계획 양호. 구체적인 프로그램 차별화 전략 미흡
-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 및 수급계획은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제작협력계획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우수하나, 기존 공중파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음.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우수함.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 계획 우수함
- 프로그램 편성비율(보도, 오락, 교양 간)과 제작비간 일부 불일치한 점이 발견됨. 갈등 중재위원회 구조는 개선 여지 있어 보임
- 개성있는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이 제시되었고, 방송 프로그램 수급 계획도 적절함
- 비교적 객관성에 있는 목표시청율의 설정과 이에 따라 채널 인지도 제고 계획 및 광고 수입확대 방안이 우수함. 방송 및 시청자 보호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으로 보임. 객관성 있는 목표 시청률에 따라 영업수익의 예상도 적절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신청법인의 현금성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차입을 통해 출자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음. 인력구성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며 확보 계획도 구체적임
- 전반적으로 적정하여 경영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계획 구체적이고 우수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적정하고 우수함. 납입자본금 규모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우수함. 사업성 분석 적정함.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 우수함
- 3가지 시나리오 별로 시장 전망을 하고, 이에 따라 경영 계획을 세운 점이 적절함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이 적정함

- 편성방향 및 목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인력 운영계획이 우수하고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보수적 시장전망에 기초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전략이 우수하며, 영상 + 취재 1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매우 적절함. 적절함 감시와 분쟁해결기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간부비율을 00.0%로 낮추고 기술·제작분야 협력사와 협력 인력팀을 활용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 계획에 평가가 양호
- 편성의 특성,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의 발전을 염두에 둔 조직·인력 운영계획의 보완 필요
- 글로벌미디어 기업으로서의 전략이 우수함
- 사업성 분석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자기자본 비용과 내부수익율간 차이가 크지 않아 사업계획상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발생시 대응방안 다소 미흡해 보임
- 적절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장 규모 추정. 글로벌 콘텐츠 센터 인력 다소 부족
- 계량평가상 자금출자능력 약간 미흡
- 상대적으로 자금 출자능력 미흡. 방송시설 설치·운용 계획 보완 필요
- 재정적 능력이나 자금출자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 능력에 관한 계량 평가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왔으나, 기술의 설치·확보·활용 계획은 적절함
- 재정적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출자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기술적 능력 우수함
- 재정적 능력이나 자금출자능력의 점은 양호하지 못함. 방송장비 국산화나 방송장비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 방송시설 투자에 대한 절대액은 적으나, 외주제작 비율에 비추어 크게 실망할 정도는 아니며, 방송기술활용 계획은 우수하나 그 초기투자액이 적어 적극적인 의지가 아쉬움
- 계량 평가 결과 적용함
- 신청법인의 현금성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차입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재정적·자금출자 능력 양호함
- 낮은 부채비율로 재정적 능력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재정적 능력 및 자금 출자 능력이 다소 미흡함
- 방송설치 운용계획은 양호한 편이며, 재정적 능력 또한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 시설 설치 용량에 관한 근거가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 확보 계획도 구체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음
- 양방향 Contents 계획 등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방송 발전 기여계획 양호함

-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와 계획수립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방송산업과 유료시장 활성화에 대한 초기 투자액이 너무 적다고 봄.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봄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우수함
-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연구지원과 세계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한류 확대 차원으로 까지 글로벌 경쟁력으로 펼치는 계획이 매우 양호
- 방송 및 콘텐츠 발전을 위한 5개년 투자계획이나 장비산업 및 기술을 위한 기여 등 적절한 방향으로의 기여 계획이 제시됨
- 자금조달의 안정성에 기초하여 발전계획이 구체적이고 아울러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기여 계획도 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좀 더 적극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필요
- 미디어 기술연구소 설립 및 운영계획이 긍정적임. 콘텐츠산업 기여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방송발전계획이나 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발전 기여 계획 우수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우수함. 출연금 계량평가에 의함
- 미디어 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한 기술개발 기여계획이 우수함
- 편성비율에서 교양의 비율을 높이고 오락의 비중은 낮춘 것은 바람직한 편성으로 생각됨. 또한 파격적인 외주제작 비율은 새로운 제작형태에 대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제작비의 00%를 오락에 투자한 점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최대주주의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평가됨.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및 편성이 기존 지상파TV와 차별성을 보임.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임. 다만, 신청법인의 현금성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차입을 통해 출자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채널A의 사업계획서와 청문에서는 지상파와 차별화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만한 개성있는 채널의 모습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됨. 특히 기본 편성표에서는 시청자의 라이프사이클과 관련된 편성, 시청자 참여 유도형의 새로운 포맷이 다수 보임. 시장 전망을 복수의 시나리오에 바탕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을 설정한 점도 적절함. 사회·지역적 기여가 금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적었고, 재정 관련 심사항목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방송 발전을 위한 기여에서는 구체성이 높게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충실한 사업계획서라고 평가되나 일부 항목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위험관리, CONTINGENCY PLAN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 전반적으로 종합편성 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준비한 것으로 보임. 언론사의 여론 독과점 우려 및 대주주의 출자 능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편PP로 승인 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경영계획 적절하며 재정적 능력 양호함
- 안정적 자본금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공익성 확보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 수급에도 창의력을 우선으로 하는 아웃소싱 체제로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경영의 효율성에 매우 큰 노력을 피력하였고, 특히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활기찬 계획에 평가를 높이함
- 방송의 공익, 공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시간대별 배열과 구성의 차별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은 긍정적임. 외주제작사와의 상생관계 구축의지를 실현하여 글로벌미디어사로서의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그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 공중과 방송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려는 체계적 시스템 및 의지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차별적인 프로그램이 우수함. 콘텐츠산업 발전에 육성 및 기여계획이 우수함
- 전 항목에 있어서 고르게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기준에 다소 모자라는 모습이긴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님. 그러므로 사업 승인함이 상당하다고 봄
- 전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청문결과, 최대주주 대표의 사업의지가 확고하고,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소명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자금 조달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 □ HUB

- 공정성 실현의지는 강하나 계획의 구체성에서 미흡함
- 공공성, 공익성 실현계획이 형식에 비해 실질적 내용이 다소 부족한 듯 하며, 지역적 기여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음. 시청자 권익 실현 계획에서 예능·오락프로그램의 비속어 규정 등 제도화가 미약함
- 방송의 공공성 공익적 차원의 지역적·문화적 기여도가 사회적 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함
- 구성주주의 다양성 부문에서 다소 미흡함
-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함. 사회적 책임 이행계획이 우수함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미흡. 핵심 자체 제작 기능 보유계획이나 투자 비율 저조
- 공익성 실현 계획의 구체성이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각종 기여 계획의 구체성도 좋지 않음.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은 규제요구 수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음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을 좀 더 구조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음
- 시청자 본부를 통한 시청자 권익실현 의지가 강함. 반면 주주구성의 국제성이 미흡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우수함.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 우수함. 신청법인, 주주구성 적정 건전함. 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의 구체성 부족함
- 소외계층의 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양호한 시청시간대에 배치하고, 상당한 비율을 부여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 그 외 기여실적이나 구성주주의 적정성 등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음
- 전체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이 다소 미흡함
- 종편PP로 보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오락·교양 대비 낮음. 전략적 협력 계획 다소 미흡
- 신청법인의 강점으로 OO, OO 등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편성의 독립성·중립성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
-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 오락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 협력 계획에서 국내 제작사들과 업무제휴하는 소극적인 계획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수급 변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데는 약한 것으로 평가함
- 교양 편성비율을 40%이상 유지함으로써 기존 지상파 방송과의 차별성을 보임.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확보계획이 미흡함
- 해외 방송, 콘텐츠 회사와의 제휴관계는 우수하나 방송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미흡함

- 본방송 비율(00.00%)는 신청법인평균인 00.0%에 비해 과소, 자체제작 비중(00%)은 전체평균인 00.00%에 비해 과소
-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독창성 내지 차별성이나 편성 자율성 실현 방안 다소 부족해 보임. 방송 프로그램 수급계획 적절함. 방송 프로그램 제작협력계획 관련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함
-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브랜드화를 추구하는 점은 독창적으로 보임. 하지만 대형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또한 외주제작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또한 뉴스시간대의 편성은 보도기능의 강화라기 보다는 오락프로그램의 전진배치의 측면으로 이해되기 쉬움
-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이 다소 미흡함
- 전체 제작비 규모가 신청사들 중에서 O위이며, 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평균 수준이며, 각종 제작 협력 계획의 구체성이 평균 수준임
- 방송 프로그램의 수급계획은 기획·편성 뿐만 아니라 자사의 장기 경영전략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이 다소 미흡
-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수급 및 제작 협력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해외 미디어 기업과의 제휴를 강조하지만 MOU 수준으로 제휴 협력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며, 제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계획의 내용이 타사와 대비할 때 다소 약해 보임
- 편성계획에 따른 조직 및 인력계획은 무난하지만 최초 납입자본금이 부족하고 사업성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계량 평가 항목인 납입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흡
- 글로벌 전략이 현재의 핵심 역량과 관련성이 적어 실현성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며, 자금 조달 관련 증빙자료가 부실하다는 평가임
- 최초 납입 자본금이 0000억원으로 신청업체들 중에서 가장 작음. 2000년 금융기관으로 부터 0000억원 차입하여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최대 강점으로 지속적 콘텐츠 투자 가능한 자금 조달 능력을 제시하고 있으나 납입 자본금은 최저 수준
- 자본금이 열세인데, 사업 부진시 자금 조달 방안 다소 미흡. 매출액 내지 시장전망 추정시 다소 현실성 결여
- 자금조달 관련한 질의과정에서 최대주주 대표는 증자, 회사대표자는 차입계획을 제시해 혼동스러움.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신규 참여자의 수에 따른 시나리오가 없음
- 글로벌미디어 기업으로서 HUB월드와이드전략은 우수하나, 경영전략 부문에서 기존 지상파와 경쟁하기 위한 경쟁우위와 연계시킨 전략의 구체성이 미흡함

- 경영 전략과 글로벌 미디어 전략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해 보임.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적정함. 납입자본금 규모 계량평가에 의함. 납입자본금 규모가 다소 작고, 상당부분 초기 투자금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이 부족해 보임. 사업성 분석 적정함.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의 구체적 실현방안이 부족해 보임
- 채널 단일화 및 낮은 채널 확보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이 없어 보임. 글로벌 기업에 대한 비전은 훌륭하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미흡하여 신뢰성이 부족함. 재무활동으로 인한 0000억원 자금조달에 대하여 불성사시의 대책이 없고, 수익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부정적임.
- 청문결과, 0000으로부터의 차입에 문제가 예상되며, 이는 각종 경영계획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됨.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이 평균이하 수준임
- 인력 운용과정에서 방송 전문 인력에 대한 기존의 직원활용이 미약하여 00%의 경력직 직원 채용이 다소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함
-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 능력이 다소 미흡함
- 재무항목은 상대적으로 평균이상이며, 방송 기술의 설치·운용·활용 계획도 대체로 적절함
-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방송기술 확보 계획도 부진함
- 계량 평가 결과 적용함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무난한 수준임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현금출자능력이 신청업체들 중에서 가장 떨어짐
- 재정적·자금출자 능력 우수함
-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여 출자 이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계량지표상 자금출자능력 약간 미흡
- 재정적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출자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기술적 능력과 관련한 방송시설 설치 확보계획 우수함
- 계량 평가항목인 자금출자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 재정적 능력이나 자금출자 능력에 있어서 양호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방송 시설 설치, 운용계획은 양호하나 그 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함
- 방송업계 경력자를 채용하여 방송기술인 확보 활용에서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한 이론·실습을 하지만 오히려 협업을 통한 인력수급에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함
- 방송발전 기여계획 양호함
- 방송발전 기여계획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임
- 콘텐츠 산업기여계획이 약간 미흡

-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우수함. 출연금 계량평가에 의함
- 방송장비 국산화율 높은 점 등 방송발전의 기여도는 높음. 하지만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우수함
- 많은 방송발전기여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체계성이나 경중에 대한 정보없이 나열된 느낌이며, BTC연구소·장비R&D 연구 등 유용해 보이는 계획 이외에 예산 뒷받침에 대한 언급이 없는 단순 협력계획 등은 성과에 대한 현실성이 부족해 보임
- 콘텐츠 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다소 계획이 소극적이며, 상생의 선도적 역할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함
-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통해 자사의 핵심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 방송발전 기여 및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계획이 평균 수준임
- 콘텐츠 투자 계획과 자금능력간 불일치한 점이 있어 보임
- 방송발전 기여계획이 부족하고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콘텐츠 산업을 위해 5년간 1조 318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재정적 능력 우수하나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미흡하여 콘텐츠 투자 계획 미흡
- 프로그램 편성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사업초기 정착을 위한 보다 치밀한 시청자 분석과 킬러 콘텐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제작비 책정이 부족하여 공격적 시청자 공략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현금출자능력이 신청법인들 중에서 가장 떨어지며, 차입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부정적으로 평가됨. 사업계획서의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못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제시가 필요함. 편성의 독창성에 좀 더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금조달 여력을 보완할 명확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목표로한 HUB worldwide 전략이나 해외 방송사와의 제휴전략이 우수함. 반면 프로그램 독창성 부문에서 미흡함. 또한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대응하여 경쟁우위와 연계한 전략수립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납입자본금 규모가 작음
- 사업계획서와 청문에서 나타난 HUB의 종편 채널은 개성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다수 보이지만 타사와 비교할때 시청자 주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 납입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자금조달 관련 서류 일부의 문제도 지적되었음. 글로벌 역량과 관련

하여서도 비전과 현재의 핵심 역량과의 연계성 제시가 미흡하였음. 그러나 부채 비율 등 일부 재정능력 관련 심사항목은 매우 양호하게 평가되었음. 절대평가로 승인 여부를 평가할 때 경계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각됨

- 대체적으로 종합편성 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자본금(0000억) 출자 재원 조달 우려, 자금조달에서 사업계획이 예상과 달리 저조할 경우의 대책으로 제시한 차입이 기업운영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회사의 역량 등을 고려할 경우 전반적으로 종편 승인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가 작은 점이 아쉬움. 프로그램 편성 계획 우수하지만, 차별성이나 독창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임. 경영핵심 전략의 구체화 및 각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다소 부족해 보임
- 전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다소 미흡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로 선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 일부 기획·의지·전망·전략에 있어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 등이 미흡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스템, 전략, 위험관리 기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계획표상으로 구체적 항목마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자금조달에 있어서 위험관리능력이 의심스러우며, 더구나 재정적능력, 자금출자능력 등에서 기준에 많이 모자라는 모습이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수행능력에 의구심이 듦. 그러므로 사업 불승인함이 상당하다고 봄
- 청문결과, 자금 조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청문결과, 프로그램 편성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핵심 역량의 결집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케이블연합중합편성채널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미흡. 기여 계획 구체성 부족
- OOOOO의 참여가 방송산업에서 신청법인의 불리점을 얼마나 보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신청법인 명에 어울리지 않은 주주구성.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미흡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익성 실현방안 중 언어순화 및 소수자보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또한 시청자 참여방안이나 불만처리계획 등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사회적·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이 다소 미흡함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시청자 권익 실현 계획의 구체성이 약함
- 방송의 공공성·공익적 측면의 사회·문화·지역적 기여도에서 다소 부족한 실적을 갖고 있어서 평가가 양호하지 못함. 내부적인 공정보도를 위한 윤리·제작 가이드라인 등 계획서에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
- 방송의 공익성 실현 계획이 매우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신청법인의 건정성도 청문회 결과 매우 의심됨
- 출자자의 도덕성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할만함
-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임.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 우수함. 구성주주 중 OOOO OO%, OOOO OO.OO%로 O개 기업으로 소유가 집중되어 있음. OOOO 독점규제법 위반 사실 있음. 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
- 신청법인의 적정성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와 청문에서 충분히 설득적이지 못한 모습이 며, 법인명도 실제 구성주주를 볼 때 적절성이 떨어짐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본방송 비율 100% 제시는 전체 참여회사의 평균 OO.O%(및 개별회사들의 비율)에 비해 과다함. 과욕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본방송 100%, 프로그램 기획·편성·수급의 전반적 내용 등에서 현실성과 적합성이 낮은 내용이 다수 발견됨
-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이 미흡하고 프로그램 수급 계획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본방 100% 계획, SO·PP와 콘텐츠를 선순환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임
- 24시간 본방 100%라는 계획은 비현실적임. 외주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함
-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계획의 구체성 미흡

- 프로그램 독창성이 미흡한 수준임
- 본방송 비율을 100%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취지는 좋으나, 사업수익성이나 채널인지도 제고 등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적으로 평가함. 또한 기획·편성의 대부분과 자체제작·외부제작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듦
- 제작비 규모는 신청사 중에서 O위이나 협력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이 적절함
- 방송 프로그램에서 외주 비율이 양호한 편이나, 광고주·외주제작자·방송산업 기술 등 선순환 구조에 다소 수동적인 기능으로 평가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력을 통해 자사의 핵심역량을 육성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
- 본방송 100%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상 문제가 있어 보이고, SO·PP의 프로그램 방송도 글로벌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유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며, 전반적으로 기획·편성이 우수해 보이지 않음. 외주제작 비율이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비교적 많은 자체인력 보유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여지기도 함.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함
- 제작비 추정, 매출액 추정, 사업성 분석에서 미흡함
- 지상파 채널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경쟁우위가 뚜렷하지 않고 효율적 전략 미흡. 글로벌미디어 기업으로의 발전계획 미흡. 경영 효율성 확보방안 부족
- 시장 분석의 객관성 미흡. 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저조
- 2000년 광고시장 점유율 목표치(00.00%) 수신료점유율 목표치(00.0%)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 매출액 목표도 무리가 있어 보임
-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는 우수하나 사업추진계획과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은 적정하지 못하고 자금운영계획도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계획 관련하여 핵심적 경영 전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조직·인력 운영계획 적정함. 납입자본금 규모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은 여유있는 자본금으로 인하여 적정, 우수함. 사업성 분석 계량평가에 의함.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 구체적이지 못함
- 타 신청법인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인원을 고용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외주제작비율을 최고로 설정하여 그 균형이 상실되어 있음. 자금조달 계획이나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의 점은 특이한 문제점 보이지 않음
- 시장 전망이 비현실적이고 글로벌 전략의 구체성이 없음. 0000의 자금 조달능력이 불확실하며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아니라 사장 감독제도가 아직도 시행되는 체제임
-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사업성 분석이 다소 미흡함
- 분당 외주제작비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며 비효율적인 평가를 내림

- 최초 납입자본금이 0000억원으로 신청법인들 중에서 가장 많음. 인력 및 설비에 대한 투자계획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사업추진계획과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이의 정합성을 보완할 필요
- 일부 해외참여 주주의 미디어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미디어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 제시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며, 사업계획이 대개 물량위주이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루어진 느낌임
- 재정적 능력 등 재무관련 평가 항목은 양호하며, 방송 기술 및 시설의 설치·운영·확보 등의 계획도 적절함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이 우수함
- 자금출자 제시액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사업의 성공을 얼마나 담보할 것인지 의문스러움
- 계량측면에서 재정능력 우수함
- 재정적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출자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기술적 능력 우수함
- 높은 투자비용에 비해 효율적 측면 검증이 빈약함
-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기술에 투자하는 계획이 필요함
- 방송설치계획 등의 구체성이 없음
- 재정적 능력이나 자금출자능력의 점은 자기자본증가율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한 모습임. 방송시설 설치 운영계획, 확보,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계량 평가 결과를 적용함
- 재정적 능력 우수함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다소 미흡함
- 방송발전 기여 계획이나 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계획이 미흡함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미흡함
-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이 나열식에 그침
- 방송발전 기여계획 우수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우수함. 출연금 계량평가에 의함
-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이 다소 미흡함
-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
- 타사와 비교할 때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계획이 체계성과 구체성이 부족함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미흡하며 구체성도 약한 것으로 평가됨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은 전체적으로 약간 미흡함
- 방송발전 기여 계획이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등은 그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전혀없어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움
-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계획에서 주로 학계와의 지원이 많으나 자체적으로 방송산업이 가야할 목표에 대한 지표가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함
- 청문결과 방송발전 기여 계획의 의지가 불분명함
-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편성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인력 운용계획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전체적으로 종편PP를 향한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최대주주의 대표가 의견청취에 불참함.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는 신청법인들 중에서 가장 크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미흡하며 방송발전 계획·편성 계획 구체성 미흡. 재정적 능력 우수함
- 출자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우월함. 그러나 경영능력은 불확실함. 충분한 경험의 축적이 부족함.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계량수치로 본 재정능력은 우수하나, 프로그램 기획·편성면에서와 사업계획면에서 모두 흡족한 수준이 아님
- 전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다소 미흡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선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 청문결과 대주주의 자금조달 의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계획서 전반에 걸쳐 구체성이 너무 부족함
- 전반적으로 볼 때, 계획과 전망, 그리고 전략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합리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방송의 공익성·공정성·공적책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은 독창적이기는 하지만 우수하다고는 보기 어려움. 또한 나머지 대부분의 심사항목에 있어서도 계량평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에 대하여는 대부분 구체적 실현 계획이 없음.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이 건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사업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봄
-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방안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외주제작의 비중이 높은 점은 긍정적이나, 그 외에 편성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최초 납입 자본금이 충분한 점은 신청법인의 장점으로 보여짐. 그러나, 주주구성이 0개 대주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방송의 공적 책임의 최우선 과제로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 제공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임

- 사업계획서와 청문에서 나타난 CUN의 종편 채널은 100% 본방송, 지역SO와의 프로그램 교환 등 종편채널의 도입취지나 방송운영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다수 발견됨. 대주주, 법인 이름의 적합성에 대한 청문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함. 재무적 능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나, 사업계획 등에서 낙관적 전망의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됨
- 대체적으로 종합편성 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대 출자자의 도덕성 우려, 본방 100% 편성이라는 비현실적 계획, 사업성 분석 및 추정(매출, 제작비, 인력) 부문에서는 상당한 불일치와 현실성 결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반적으로 종편 승인 대상으로 선정하기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방송의 공익성·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철학이 계획서 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도 낮아 공익기관으로서의 확립이 다소 결여되고,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항목마다 미시적 계획에 대해선 많으나 앞으로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체로서의 뚜렷한 가치관 및 목표 설정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 CSTV

- 공적책임, 공정성,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실현계획이 적절하며, 그간의 사회·문화적 기여 실적도 높게 나타남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확보 방안 및 실현가능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분야 전반적으로 우수함. 언론사의 여론 독과점 우려는 일부 제기될 수 있음
-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계획이 구체적임. 신청법인의 사회적·지역적·문화적 기여실적이 우수함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우수
-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인 "오디언스 에디터" 제도는 독창적임. 언론의 독과점 폐해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임
- 공적책임 실현방안이 구체성 있고 의지가 강해 보임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이 적정하고 구체적임.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우수함. 주주구성 적정하고 건전함. 시청자 참여방안 구체적임
- 방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돋보임. 하지만 소수시청자 그룹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일뿐, 실질적인 배려는 없어 보임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이 우수함
- 방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7대 제도 및 6대 이행시스템의 도입을 적용하는 사례에 평가를 높임
- 방송의 목적 및 목표와 공적책임 실현간의 논리적 연결이 우수하고, 따라서 공익성 확보 방안도 우수함. 각종 기여 실적 및 기여 계획도 우수하고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이 우수하고, 특히 셋탑박스 지원 등이 구체적임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계획을 좀 더 구조적으로 세울 필요
-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수급 계획 면에서 경쟁력 있는 채널의 모습을 제시한 듯 보이며, 제작 및 수급 계획도 적절함
-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이 우수하고 방송 프로그램 수급계획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제작비 관련 자체·외부·구매 계획 분야 일부 미흡하고 다소 현실성 결여한 점 있는 것으로 보임. 오락과 교양의 편성비율이 균형 편성계획과 다소 불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출연진 및 제작스태프 임금보호를 위해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임

- 프로그램 편성 계획 우수함. 방송 프로그램 제작협력 계획도 양호
-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기존 종편(지상파)에 비해 부족하지 않음. 조직·인력에서의 노하우를 살려 후발 주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킬러 콘텐츠 편성전략이 매우 우수함. 해외업체와의 제작협력 계획도 우수함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 기존 공중파와 크게 차별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약간의 아쉬운 점 빼고는 우수함.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 계획 적절하고 우수함.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 계획 우수함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에 있어 공익벨트, 오픈편성비타민C,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 "뉴스 36.5도" 등 참신성이 돋보이며, 뉴스시간대를 05:00부터 연속 3시간 편성한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나 그 외는 무난하게 보임. 기존 지상파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드라마 분야에서 상당한 자신감으로 대결을 피하지 않아, 성공할 경우 조기 안정이 기대됨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이 적절함
-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이 상대적으로 미흡
- 방송 프로그램 제작협력 관계가 상생의 선순환 구조에 능동적인 계획이 눈에 띄어 보임
- 제작비 규모가 상대사에 비해 적으나, 방송 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각종 협력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2013년부터 이익을 전망한 점, 제작비 대 매출액 비중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은 점, 인력 구성에서 정규직과 임시직 비중이 고용의 안정적 창출과 괴리되는 점은 미흡하다고 보여짐
- 사업추진 수립과정과 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판단됨
- 납입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글로벌 미디어 비전 및 전략의 구체성이 높게 평가됨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조기 흑자를 자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지나친 자신감이 실패로 이어질 경우의 대책이 다소 부족함. 또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의 비전 및 전략 역시 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해외방송사에 대한 뉴스프로그램 공급등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임. 다만, 냉철한 시장 분석은 다소 긍정적이며, 기타 심사항목은 대부분 양호함
- 최초 납입 자본금 규모가 3,100억원으로 신청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음
- 납입자본금 규모 미흡. 사업성 분석이나 계획 우수
- 자신감은 인정하지만, 사업성 전망 추정에 있어 너무 낙관적인 면이 있음. 경영 효율성 확보방안은 긍정적임
- 사업추진계획 우수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적정, 우수함. 납입자본금 규모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적정, 우수함.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 우수함

- 시장 전망이 다소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지만 투명하고 진실성이 나타남을 양호하게 평가함
- 계량 평가항목인 납입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흡
- 제작비가 적은 반면에 그 이유로 인하여 경영의 비용 효율성이 높음. 카메라 기사를 아웃소싱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에 자금 운영계획이 우수함. 사외이사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 장르별 편성비율 및 제작비율(외주제작 vs 자체제작)에 따른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이 적정하나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능력이 다소 미흡하지만 기술적 능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계량 평가 결과 적용함
- 계량 평가항목인 재정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 재정적·자금출자 능력 우수함
-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능력에 있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함
- 재정적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출자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기술적 능력 우수함
- 재정능력이 적정수준임
-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 능력이 다소 미흡함
- 방송시설 설치 운용계획시 네트워크 기반과 비용절감 및 콘텐츠 관리·효용성에서 양호한 평가를 함
- 방송시설 설치 용량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확실하고, 필요한 기술 확보 계획도 비교적 구체적임
- 계량 항목의 재정적 능력은 보통으로 나오며, 기술적 능력에 대한 계획은 대체로 적절함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출자능력이 우수함
- 의욕이 가득한 프로그램 편성, 기획, 글로벌기업으로의 비전 전략과는 달리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능력에 있어 많이 모자람. 경영진은 구체적 지표들을 제시하고, 신청법인의 대주주의 경영 능력 등을 근거로 조속한 흑자 경영을 계획하지만 케이블 중편 사업은 수많은 경쟁자의 등장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재정적 능력 부족은 상당한 우려 사항임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양호함
- R&D 투자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기획과 제작이 분리된 한국형 SPC프로덕션 시스템으로 외주 제작사들과 공정하게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지와 구체성이 충분히 인정됨
- 방송발전 기여계획 우수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우수함. 출연금 계량평가에 의함

- 방송장비의 높은 국산화율 계획은 긍정적인 모습이며, 기술R&D와 관련한 투자비용이 적절하며 콘텐츠 투자조합 결성 및 출자등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임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우수함
- 경영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에 기초하여 각종 펀드나 연구개발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임
- 방송발전계획이나 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투자자·광고주·제작자·방송기술산업 등 관련산업의 동반성장의 계획이 아주 양호함
- Contents 육성, 기여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방송원천 기술 연구개발계획이 우수함
- 방송발전 기여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방송 발전을 위한 기여 계획이 첨단 기술, 인력양성, 콘텐츠 개발 등에서 구체성이 높게 제시됨
- 최초 납입자본금이 다소 부족하지만 치밀한 준비를 통해 킬러콘텐츠를 포함한 편성 계획이 우수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제작비 투자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서와 청문에서 나타난 CSTV의 종편채널은 콘텐츠 개발, 글로벌 비전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임. 그간의 사회적 기여실적과 주간 편성표에 나타난 창의적 아이디어 수준 등도 타사와 비교할 때 높게 평가됨. 납입자본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업 개시 후 O년내 흑자 달성 전망도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인상임.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 계획은 체계성과 구체성이 높게 제시됨
- 전반적으로 종합편성 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임. 언론사의 여론 독과점 우려 및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점, 재무제표 추정 및 사업성 분석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이나 전반적으로 종편PP로 승인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충실하게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고 평가됨. 다만 비계량 평가항목에 비해 계량평가 항목이 상대적으로 미흡. 일부 계획에 있어 구체성을 보완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는 충분하고, 조직·인력의 우수성으로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신청법인이 축적한 경험, 새로운 산업에 과감하고 독창적인 도전의지로 글로벌화된 언론미디어 융합조직으로 도약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납입자본금 규모 저조하나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우수하며 프로그램 편성계획 우수함
- 최초 출자규모는 신청업체 중에서 가장 작으나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종편PP로 선정될 경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해보임. 프로그램 편성이 우수하고 독창적인 것으로 판단됨. 사업계획 수립 과정과 내용이 우수함. 전반적으로 종편PP로서 자격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인 내용이 충실하고,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음.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 기존 공중과와 차별성을 가지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음. 좀 더 과감한 구성과 내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음. 초기 자본금이 크지 않은데, 광고시장 점유율은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어, 향후 예상치와 다른 수익을 실현할 경우 재정적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됨. CS Ant나 CSi를 처음부터 독립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
- 재정적 능력이나 자금출자능력 등이 모자람에도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에 있어서의 우수성, 독창성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공적책임·공정성·공익보호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 등 대부분의 심사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보이고 있음. 그러므로, 이 건 사업승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함
- 전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종합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청문결과 자금 조달의 안정성이 확보되었고, 편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분쟁해결 방안이 매우 구체적이며, 콘텐츠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보수적 시장규모 예측 및 효율적 경영면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임
-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공정성을 위한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스스로 방송의 책임을 다하는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자본금도 안정되어 있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도 현실성이 있고, 장래 계획에도 보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송계획에 다소 믿음이 감

## □ jTBC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등 실현 가능성 전반적으로 우수함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미흡.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양호
- 공익,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과 실천의지가 엇보임. "공익을 수익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의지와 VISION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세계유수 미디어 기업을 포함한 주주구성의 다양성이 우수함
- 비영리재단에 영업이익의 3%를 출연하겠다는 점 등 지역·사회·문화적 기여가 높게 평가됨. 공정보도위원회 구성 역시 외부인의 참여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음. 소수계 층지원 프로그램의 점진적 증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시청자의 날 등 독창적인 면도 보임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이 우수함
- 방송의 공익적·공공성에서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가 양호하며, 신청법인의 주주구성과 자본금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사의 전략과 연계하여 세울 필요가 있음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며, 그간의 사회·문화적 기여실적도 양호함. 다만, 공적 책임 관련하여 제시된 일부 항목은 적절성이 떨어짐
- 미국의 타임워너 그룹, 일본의 TV아사히 등의 지분참여는 jTBC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우수함.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 우수함. 신청법인의 구성주주인 OOOO, OOOOO, OO, OO 등이 공정거래, 노동분야에서 과태료 처분 받아서 주주구성의 건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침. 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 우수함
- 청문결과 방송의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청자 의회 등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매우 새로움. 주주구성이 적당하고 청문결과 주주구성의 건전성도 확인되었음. 소수 시청자 그룹지원 방안도 매우 구체적임
-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수급 등이 구체적이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다수 포함된 듯함. 각 시간대별 테마별 아이디어 전달이 분명히 이루어진 듯 보임
- 교양의 비중을 오락보다 많이 편성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목표시청율과의 연계성은 다소 미흡
- 프로그램의 편성·제작 계획 양호함
- 언론사 경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살린다면 후발주자로서의 불리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뉴스품질제도를 운영하는 등 기존방송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이 적절함
-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에서도 외주제작을 높여 방송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계획에도 양호한 평가를 내림
- 방송 프로그램 수급계획과 자사의 장기적 전략의 연계성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다는 것이 긍정적임. 기존의 예능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선정성, 아이디어 도용, 과도한 스타 의존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 계획이 우수하고 수급계획도 적정함. 특히 제작 협력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우수함. 교양 프로그램 비중이 높음.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우수함.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계획 우수함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기획이나 프로그램의 제작비율, 프로그램 제작협력계획 등 대부분의 점 양호하게 보이나, 뉴스시간대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지 않은 점과 평일 야간(01:00~05:00)의 시간대는 모두 재방송프로그램으로 채운 점은 오락프로의 전진배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듯함
- 제작비 규모가 신청사 중 O위이며,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시청자 배심원 제도 등이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각종 콘텐츠의 조달을 위한 협력계획이 매우 구체적임
- O년 기준 NPV를 (-)로 평가한 것은 보수적 추정으로 보임
- 사업추진계획 양호하며 사업성 분석 우수함
- 전체적으로 계획의 짜임새가 있고, 자금운영과 경영효율화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우수함
- 손익분기점 도달시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의 성사 여부도 의문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점은 대체적으로 양호함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이 적정함
- 청문결과 보수적 시장 평가에 근거한 경영전략이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상기자 OO명 등 인력확보 및 조직 계획이 구체적임. 자금조달 계획이 안정적이고 각종 위원회제도를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됨
- 편성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이 우수하고 자금조달 능력 및 운영계획, 특히 납입자본금 규모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미디어 전략이 자신들의 핵심역량과 연계되어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제시됨. 납입자본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높음

- 사업추진 계획 우수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우수함. 납입자본금 규모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관련 납입자본금 규모 고려해 보면 우수함. 사업성 분석 적정함.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 우수함
-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이 구체적임. 경영 효율성 확보 방안이 우수함
- 조직 및 인력구성에도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 기반을 갖추려는 계획에 긍정적 평가를 내림
- 사업추진계획과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계량 평가 결과 적용함
- 재정적 능력 우수함
-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능력에 있어서 사업의 유지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재정능력이 우수함
-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능력의 점은 양호한 모습을 보임.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이나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점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봄
- 방송시설 설치 계획의 각종 논리적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고 필요한 기술에 대한 확보 계획이 구체적임
- 재정적 능력은 평균 이상이며 기술적 능력에 대한 계획 제시도 적절함
- 재정적 능력이 우수한 편이지만 자기자본대비 출자금액은 다소 적정하지 않음
-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정적 능력이 우수함
- 재정적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자금출자 능력 계량평가에 의함. 기술적 능력 우수함
- 상대적으로 비계량 평가항목인 자금 출자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 시설, 설치 운용계획이 효율적으로 연차별 계획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 능력이 다소 미흡함
- 방송발전계획이나 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외주제작 비중을 50% 이상으로 유지하여 외주사업자, SO와의 상생의지가 분명히 드러남.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방송발전 기여계획 우수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우수함. 출연금 계량평가에 의함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우수함
-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계획이 8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됨
- Contents 분야 역량 및 계획 적절히 보임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구체적이며 양호함

- 5년간 외주제작비를 0조 0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바가 우수함
- 방송장비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연구계획의 구체성이 인정되며,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 양호하게 판단함
- 국산장비 시설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국산화율 31% 목표 대비를 위한 미디어 선도 융합적 계획이 적극적이고 실현성이 있어 높게 평가함
- 방송산업 발전 기여 계획이 다양하고, 각종 플랫폼 진출 계획이 구체적인 시장상황 분석에 근거하고 있음. 콘텐츠 육성계획도 평균 이상임
-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통해 자사의 핵심역량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신청법인의 방송·콘텐츠 산업 기여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가 충분한 가운데 교양의 비율은 높게 잡고 외주제작 비율도 높게 잡은 점은 기존 지상파와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임. 특히 우수한 편성 기획을 통해 시청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서와 청문에서 제시된 JTBC의 종편채널은 글로벌 비전에서 자신들의 핵심 역량과 연계된 단계별 추진계획이 타사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계획도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는 종편의 모습이 그려진 듯 보임.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되었음.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일부 계획에서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포함된 듯 보임
- 전반적으로 종합편성 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적절히 작성된 것으로 보임. 언론사의 여론 독과점 우려가 있으나 종편PP로 승인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실적 미흡하나 사업계획·프로그램 편성계획 우수함
- 사업계획, 글로벌화에 대한 의지, 자금여력, 경험 등에서 신규진입자의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JTBC는 최초 납입 자본금을 4,220억원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양 제작 비율을 40% 이상 설정함으로써 기존 지상파 방송과 차별화를 보임. 시장전망 및 매출 추정등이 타당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음. 전반적으로 JTBC는 종편PP로 선정될 경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일본 미디어기업의 참여로 글로벌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우수함. 글로벌미디어 기업으로의 발전전략의 구체성이 우수함. 콘텐츠산업에 대한 기여방안이 우수함. 전반적으로 종편PP로서 자격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함
- 5가지 심사항목 모두에서 고르게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신설법인의 대표자가 방송사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이 건 사업을 승인함이 상당함

- 전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종합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방송 경험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예상됨. 자금 조달 능력이 확인됨. 해외 콘텐츠 관련 기업과의 협력계획이 타사에 비해 매우 구체적임
- 방송의 공공성·공익적·공정성 차원에서 정립이 뚜렷하고 특히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가 양호하며 법인의 주주구성과 자본금이 안정되어 있음. 또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에서도 외주제작의 비율을 높여 줌으로써 방송산업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선도적 역할이 되기에 충분한 밑바탕이 마련되어 있다고 총 평가를 함
- 전반적으로 잘 구성된 사업계획서이나, JTBC 내의 여러가지 기능을 가로지르는 전략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계획서의 전반적 내용 우수하고 구체적임. 프로그램 편성 관련 교양 비중을 높게 잡은 것은 긍정적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신청법인에게 긍정적인 것인지는 의문임. 납입자본금 규모가 비교적 큰 편으로, 초기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뉴스 품질지수 평가 등의 내용이 실현되었으면 함

종편·보도PP 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2010. 12. 31.(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1. 의결주문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구 분	승인 대상법인 명	대표자	심사위원회 평가점수(총점)
종합편성	(주)매일경제티브이	윤승진	808.07점
	(가칭) (주)채널에이	안국정	832.53점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오지철	834.93점
	(가칭) (주)제이티비씨	남선현	850.79점
보도전문	(가칭) (주)연합뉴스TV	박정찬	829.71점

※ 승인신청 접수 순

-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 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한다.
-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2. 제안이유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방송법 제9조제5항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함임

### 3. 경과사항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보고 ('10.5.18)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의결 ('10.9.17)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종편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의결 ('10.11.10)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공고('10.11.10) 및 설명회('10.11.12)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류 접수('10.11.30~12.1)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서류 보정자료 접수('10.12.2~12.8)
- 승인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10.12.2~12.15) 및 시청자 의견청취('10.12.3~12.16)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 의결('10.12.8)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10.12.23~12.31)

### 4. 승인 신청법인 현황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6개 법인,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5개 법인의 승인 신청 접수

구 분	승인 신청법인 명	대표자	최대주주
종합편성	(주)매일경제티브이	윤승진	매일경제신문사
	(가칭) (주)채널에이	안국정	동아일보사
	(가칭) (주)에이치유비	김기웅	한국경제신문사
	(가칭) (주)케이블연합종합편성채널	강대인 장근복	태광산업
	(가칭) (주)씨에스티티브이	오지철	조선일보사
	(가칭) (주)제이티비씨	남선현	중앙미디어네트웍
보도전문	(가칭) (주)굿 뉴스	김관상	씨비에스
	(가칭) (주)머니투데이 보도채널	최남수	머니투데이
	(가칭) (주)서울뉴스	이동화	서울신문사
	(가칭) (주)연합뉴스TV	박정찬	연합뉴스
	(가칭) (주)HTV	유병창 백세빈	헤럴드미디어

※ 승인신청 접수順

## 5.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심사위원 선정) 7개 분야별 전문가 14인을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외부 추천 기관(단체)은 한국방송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3개 기관(단체)임

※ 심사위원 명단 붙임 1. 참조

- (심사위원회 운영) 2010.12.23(목) ~ 12.31(금), 9일 간

※ 신청법인에 대한 의견청취는 12.26(보도전문) 및 12.29(종합편성) 실시

## 6.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 적격 여부 검증결과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 중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적격 신청법인은 없음

## □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 전체 6개 신청법인 중 (가칭)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 등 4개 신청법인이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100분의 70 이상,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100분의 60 이상을 획득하여 승인대상 법인으로 선정
- (가칭) (주)케이블연합종합편성채널, (가칭) (주)에이치유비 등 2개 신청법인은 전체 총점에서 승인 최저점수(전체 총점의 80%)에 미달
- 심사사항 및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등 6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한 신청법인은 없음

###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 전체 5개 신청법인 중 (가칭) (주)연합뉴스 TV 1개 신청법인이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100분의 70 이상,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100분의 60 이상을 획득하여 승인대상 법인으로 선정
- (가칭) (주)굿뉴스, (가칭) (주)머니투데이 보도채널, (가칭) (주)서울뉴스, (가칭) (주)HTV 등 4개 신청법인은 전체 총점에서 승인 최저점수(전체 총점의 80%)에 미달
- (가칭) (주)서울뉴스, (가칭) (주)HTV 등 2개 신청법인은 심사사항('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서 승인 최저점수(심사사항별 총점의 70%)에 미달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등 6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한 신청법인은 없음

※ 승인 신청법인별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는 다음 페이지 참조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 >

승인 신청법인 명		매일경제 티브이	채널에이	에이치 유비	케이블 연합 종합편성 채널	씨에스 티브이	제이 티브이
<b>전체 총점</b> (1,000점)	<b>승인 최저점수</b> (800점)	<b>808.07</b>	<b>832.53</b>	<b>770.18</b>	<b>753.11</b>	<b>834.93</b>	<b>850.79</b>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250점)	(175점)	207.80	212.24	198.94	184.02	218.21	215.79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50점)	(175점)	204.28	212.82	193.08	180.56	215.72	216.18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00점)	(140점)	163.12	168.29	143.57	155.08	155.94	171.47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200점)	(140점)	146.68	149.81	150.86	155.35	154.70	158.26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100점)	(70점)	86.19	89.37	83.73	78.10	90.36	89.09
승인 최저점수 미달 여부	전체 총점	-	-	미달	미달	-	-
	심사사항	-	-	-	-	-	-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 >

승인 신청법인 명		굿 뉴스	머니투데이 보도채널	서울뉴스	연합뉴스 TV	HTV
<b>전체 총점</b> (1,000점)	<b>승인 최저점수</b> (800점)	<b>774.96</b>	<b>798.38</b>	<b>759.80</b>	<b>829.71</b>	<b>737.01</b>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300점)	(210점)	230.00	232.13	230.55	240.44	225.22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00점)	(140점)	158.00	156.91	152.18	164.53	158.09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50점)	(175점)	195.53	207.45	197.57	216.54	183.55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150점)	(105점)	108.43	119.25	100.95	124.29	89.79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100점)	(70점)	83.00	82.64	78.55	83.91	80.36
승인 최저점수 미달 여부	전체 총점	미달	미달	미달	-	미달
	심사사항	-	-	미달	-	미달

※ 승인 신청법인별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점수 붙임 2. 참조

## □ 심사위원회 정책건의

- ◇ 금번 사업자 선정이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인 점을 고려하여 첫 승인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중에서 「기본계획」 의결시 마련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을 부과할 필요

## 7.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 관련 사항을 공고한 결과, 법인·단체 3건 및 자연인 29건 등 총 32건의 시청자 의견 접수('10.12.3~12.16)
- 접수된 시청자 의견에 대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제2차 회의, 12.24)는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 1건과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의견 1건을 제외한 30건을 시청자 의견으로 채택하고, 그 내용을 심사에 반영

## 8. 향후 추진계획

- 승인 신청법인에 대해 대상법인 선정 결과 공문 통보
- 승인장 교부
  - ※ 필요 시 승인 조건 부과

붙임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신청법인 별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점수 1부. 끝.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순번	분야	성명	현직	추천인
1	위원장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
2	방송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통위원 추천
3	방송	조성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학회
4	회계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 회계사회
5	회계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방통위원 추천
6	경제경영	최용제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방통위원 추천
7	경제경영	오상근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회
8	경제경영	이광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경영학회
9	법률	채승우	국민대 법학과 교수	방통위원 추천
10	법률	심준용	화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방통위원 추천
11	기술	이수인	ETRI 방송시스템 연구부장	ETRI
12	시민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방통위원 추천
13	기타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	방통위원 추천
14	기타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 정책과정 교수	경제학회

※ 방통위원 추천 : 7명, 기관·단체 : 6명

##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별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점수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매일경제	채널에이	에이치유비	케이블연합	씨에스티브이	제이티비씨
<b>총 점</b>		<b>1,000</b>	<b>808.07</b>	<b>832.53</b>	<b>770.18</b>	<b>753.11</b>	<b>834.93</b>	<b>850.79</b>
<b>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b>		<b>250</b>	<b>207.80</b>	<b>212.24</b>	<b>198.94</b>	<b>184.02</b>	<b>218.21</b>	<b>215.79</b>
	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70	57.36	60.72	53.72	49.45	60.45	60.18
	1-2.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70	57.54	57.36	55.18	53.27	62.00	59.72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60	52.00	51.52	50.04	45.21	53.03	52.98
	1-4.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50	40.90	42.64	40.00	36.09	42.73	42.91
<b>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b>		<b>250</b>	<b>204.28</b>	<b>212.82</b>	<b>193.08</b>	<b>180.56</b>	<b>215.72</b>	<b>216.18</b>
	2-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90	73.82	77.10	68.99	63.37	78.45	78.27
	2-2.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80	64.00	67.45	61.64	59.46	68.00	68.91
	2-3.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계획	80	66.46	68.27	62.45	57.73	69.27	69.00
<b>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b>		<b>200</b>	<b>163.12</b>	<b>168.29</b>	<b>143.57</b>	<b>155.08</b>	<b>155.94</b>	<b>171.47</b>
	3-1. 사업추진계획	30	24.54	25.82	22.18	20.63	25.91	25.91
	3-2.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30	24.72	25.73	23.36	21.09	25.73	25.37
	3-3. 납입자본금 규모	60	47.40	48.91	37.20	54.00	37.20	50.64
	3-4.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35	29.09	29.55	25.64	27.27	29.28	30.73
	3-5. 사업성 분석	15	12.27	12.73	11.82	11.09	12.27	13.00
	3-6.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30	25.10	25.55	23.37	21.00	25.55	25.82
<b>4. 재정 및 기술적 능력</b>		<b>200</b>	<b>146.68</b>	<b>149.81</b>	<b>150.86</b>	<b>155.35</b>	<b>154.70</b>	<b>158.26</b>
	4-1. 재정적 능력	90	62.95	63.02	69.83	66.31	62.16	73.02
	4-2. 자금출자 능력	60	41.19	44.52	41.49	50.77	50.08	42.51
	4-3. 기술적 능력	50	42.54	42.27	39.54	38.27	42.46	42.73
<b>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b>		<b>100</b>	<b>86.19</b>	<b>89.37</b>	<b>83.73</b>	<b>78.10</b>	<b>90.36</b>	<b>89.09</b>
	5-1. 방송발전 기여계획	40	33.00	34.46	31.73	28.91	35.36	34.82
	5-2.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	40	33.19	34.91	32.00	29.19	35.00	34.27
	5-3. 출연금	2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별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점수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굿뉴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	연합뉴스TV	HTV
<b>총 점</b>		<b>1,000</b>	<b>774.96</b>	<b>798.38</b>	<b>759.80</b>	<b>829.71</b>	<b>737.01</b>
<b>1. 방송의</b>	<b>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b>	<b>300</b>	<b>230.00</b>	<b>232.13</b>	<b>230.55</b>	<b>240.44</b>	<b>225.22</b>
	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90	70.01	69.64	68.00	73.18	70.63
	1-2.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80	59.00	61.64	58.73	61.82	57.91
	1-3. 신청법인의 적정성	70	53.63	56.13	57.18	58.08	49.41
	1-4.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60	47.36	44.72	46.64	47.36	47.27
<b>2. 방송프로그램의</b>	<b>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b>	<b>200</b>	<b>158.00</b>	<b>156.91</b>	<b>152.18</b>	<b>164.53</b>	<b>158.09</b>
	2-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80	63.37	63.09	59.91	66.45	63.90
	2-2.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60	47.45	47.00	47.18	50.08	47.00
	2-3.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계획	60	47.18	46.82	45.09	48.00	47.19
<b>3. 조직 및 인력운영 등</b>	<b>경영계획의 적정성</b>	<b>250</b>	<b>195.53</b>	<b>207.45</b>	<b>197.57</b>	<b>216.54</b>	<b>183.55</b>
	3-1. 사업추진계획	40	30.63	30.54	29.27	32.45	31.64
	3-2.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40	32.18	30.82	30.00	33.36	31.00
	3-3. 납입자본금 규모	60	48.00	60.00	54.12	60.00	36.00
	3-4.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45	35.27	35.36	34.54	37.45	35.09
	3-5. 사업성 분석	25	18.27	18.73	19.18	20.64	18.64
	3-6.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40	31.18	32.00	30.46	32.64	31.18
<b>4. 재정 및 기술적 능력</b>		<b>150</b>	<b>108.43</b>	<b>119.25</b>	<b>100.95</b>	<b>124.29</b>	<b>89.79</b>
	4-1. 재정적 능력	60	41.58	54.77	32.39	47.26	30.14
	4-2. 자금출자 능력	45	31.48	28.66	33.47	40.21	23.74
	4-3. 기술적 능력	45	35.37	35.82	35.09	36.82	35.91
<b>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b>		<b>100</b>	<b>83.00</b>	<b>82.64</b>	<b>78.55</b>	<b>83.91</b>	<b>80.36</b>
	5-1. 방송발전 기여계획	40	30.37	31.37	28.91	31.55	29.63
	5-2.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	40	32.63	31.27	29.64	32.36	30.73
	5-3. 출연금	20	20.00	20.00	20.00	20.00	20.00

종편·보도PP 선정 결과 발표문



중편·보도PP 승인 대상법인 선정결과  
**발 표 문**

2010. 12. 31.(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사용사업 승인대상 법인을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PP의 경우, 총 6개 신청법인 중 최대주주가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인 jTBC, 최대주주가 조선일보사인 CSTV, 최대주주가 동아일보사인 채널A, 최대주주가 매일경제신문인 매일경제TV를 승인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도전문PP의 경우, 총 5개 신청법인 중 최대주주가 연합뉴스인 연합뉴스TV를 승인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사는 지난 12월 23일부터 오늘 31일까지 총 9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이병기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심사 위원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승인대상 법인이 자본금 납입 등 방송사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는 대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승인대상 법인에게 산업적인 역할과 더불어 사회적 공기로 몇 가지 책무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정된 채널이라는 자원을 쓰는 미디어로서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보도의 공정성은 물론이며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항상 의식하여야 합니다.

둘째, 여론 매체로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뉴스 선택권을 넓혀줘서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이 신규 채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류를 통해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듯이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우리 미디어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이 아닌 조화로운 경쟁관계를 지향하여야 하고, 좁은 국내의 틀에서 경쟁하려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선정이 그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V. 선정 이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2011. 3. 23.(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1. 보고배경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선정('10.12.31)된 (주)씨에스티브이, (주)연합뉴스TV, (주)제이티비씨가 승인장 교부를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간 검토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기 위함

## 2. 경과사항

- 「종합·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의결('10.9.17)
- 「종합·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종합·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 의결('10.11.10)
- 종합·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공고('10.11.10)
- 종합·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접수('10.11.30~'10.12.1)
- 종합·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운영('10.12.23~12.31)
- 「종합·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10.12.31)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 (승인신청 접수順)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 (가칭) (주)연합뉴스TV
- (주)씨에스티브이('11.3.18), (주)연합뉴스TV('11.3.18), (주)제이티비씨('11.3.22), 승인장 교부 신청 접수

### 3. 검토계획(안)

#### 가. 승인장 교부 관련 검토 사항

##### ○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 ▶ **(승인장 교부)**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시 포함

##### ○ 주요주주 변경 여부 및 기타주주 변경에 따른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 취소,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통위에서 허용 여부 결정

※ 상속,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 구성 변경시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 **(승인신청 자격)**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하 신청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시 포함

##### ○ 승인조건 부과 내용

- ▶ **(승인 조건)**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승인 조건 예시 :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이행, 주요주주의 지분 처분 금지 등

- ▶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승인조건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

※ 상속,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 구성 변경시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이상 「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시 포함

▶ **(정책 건의사항)** 금번 사업자 선정이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인 점을 고려하여 첫 승인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중에서「기본계획」의결시 마련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을 부과할 필요

☞ 이상 승인 심사위원회 정책 건의사항(「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시 포함)

## 나. 중간 검토결과

○ 3개 승인장 교부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3개 신청법인 모두 계획했던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설립을 완료

- 자격 여부를 검증한 결과, 주요주주의 구성(지분을 포함)이 변경된 신청법인은 없으며, 기타주주 변경 과정에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및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신청법인은 없음

※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자격 여부 검토의 경우, 검토의 일관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승인 심사위원회 법률 분야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

## 다. 향후 검토계획

○ 제출 서류의 적정성 추가 검토 및 보완(필요시)

○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에 대한 추가 검증

○ 승인조건에 대한 검토 등

## 4. 향후일정

○ (주)씨에스티브이, (주)연합뉴스TV, (주)제이티비씨 승인 의결 : '11. 3. 30

○ 승인 의결 직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2011. 3. 30.(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1. 의결주문

###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주)씨에스티브이, (주)제이티비씨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다음의 승인조건을 부과한다.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 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주)연합뉴스TV에 대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다음의 승인조건을 부과한다.

1. ~ 7., 9. (상 동)

8.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 2. 제안이유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 3개사((주)씨에스티브이, (주)연합뉴스TV, (주)제이티비씨)가 승인장 교부를 신청함에 따라,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심의·의결 하기 위함

## 3. 경과사항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공고(‘10.11.10)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접수(‘10.11.30~‘10.12.1)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운영 (‘10.12.23~12.31)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10.12.31)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 (승인 신청 접수順)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 (가칭) (주)연합뉴스TV
- (주)씨에스티브이(‘11.3.18), (주)연합뉴스TV(‘11.3.18), (주)제이티비씨(‘11.3.22), 승인장 교부 신청 접수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보고(‘10.3.23)
- (주)채널에이(‘11.3.28), (주)매일방송(‘11.3.28)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신청 접수

## 4. 검토 결과

### 가. 신청법인 현황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2개 법인,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1개 법인의 승인장 교부 신청 접수

구 분	신청법인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자본금	최대주주
종합편성	(주)씨에스티브이	오지철	장윤택	3,100억원	조선일보사
	(주)제이티비씨	남선현	김영신	4,220억원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보도전문	(주)연합뉴스TV	박정찬	이기창	605억원	연합뉴스

### 나. 승인장 교부 관련 검토 사항

-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 **(승인장 교부)**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시 포함

- 주요주주 변경 여부 및 기타주주 변경에 따른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승인신청 자격)**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하 신청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 취소,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

※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시 포함

## ○ 승인조건 부과 내용

▶ **(승인 조건)**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승인 조건 예시 :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이행, 주요주주의 지분 처분 금지 등

▶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승인조건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

※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이상 「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시 포함

▶ **(정책 건의사항)** 금번 사업자 선정이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인 점을 고려하여 첫 승인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중에서「기본계획」의결시 마련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을 부과할 필요

☞ 이상 심사위원회 정책 건의사항(「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시 포함)

※ “언론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뉴스가 다른 종편·보도PP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의 뉴스 공급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다. 검토 의견

○ **(개요)** 심사위원회 법률 분야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에서 검토(11. 3. 18 ~ 3. 28)한 결과,

- 3개 신청법인 모두 계획했던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였고, 자격 여부 등에 문제가 없으므로 승인하도록 하되, 승인장 교부시 승인조건을 부과

○ **(자격 여부)** 3개 승인장 교부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를 검증한 결과,

- 주요주주의 구성(지분을 포함)이 변경된 신청법인은 없음

- 기타주주 변경 과정에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및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신청법인은 없음

- 방송법 제13조(결격사유)에 위반되는 신청법인은 없음

- (승인조건)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및 기존 방송사업 허가·승인 사례를 고려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인 (주)씨에스티브이 및 (주)제이티비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승인장 교부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 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인 (주)연합뉴스TV의 경우에도 종편 채널과 동일하게 부과하되, 보도 채널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관련사항(제8호)은 제외하고,
-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승인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승인장을 교부

1. ~ 7., 9. (상 동)
8.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 (승인 유효기간) 심사위원회의 의견 및 최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적 기준기간(방송법 시행령)인 5년보다 2년 단축한 3년으로 설정

※ <방송법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 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5. 향후일정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끝)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2011. 3. 30.(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1. 의결주문

- (가칭)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 2. 제안이유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 2개사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가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기한 연장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3. 경과사항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공고('10.11.10)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접수('10.11.30~'10.12.1)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운영 ('10.12.23~12.31)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10.12.31)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 (승인 신청 접수順)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 (가칭) (주)연합뉴스TV
- (주)채널에이('11.3.28), (주)매일방송('11.3.28)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신청 접수

#### 4. 검토 결과

##### 가. 연장 요청 신청법인 현황

- (가칭) (주)채널에이 및 (주)매일방송에서 신청기한 연장 요청

구 분	신청법인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자본금	최대주주
종합편성	(주) 채널에이	안국정	박희설	4,076억원	동아일보사
	(주) 매일방송	윤승진	장태연	3,950억원	매일경제신문사

##### 나. 연장 요청 사항

- (가칭) (주)채널에이의 경우, 창립대회 개최, 법인등기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을 연장 요청
  - 계획된 자본금 모집은 완료되었으며, '11. 4.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승인장 교부를 신청할 예정
- (주)매일방송의 경우, 신규 법인 설립이 아니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
  - 또한, 일부 주주의 주금 납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특히 해외 주주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나라마다 다른 외국환 관리 규정 등으로 인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해 주금 납입이 일부 지체되고 있어 '11. 6. 30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 요청

##### 다. 검토의견

- 자본금 납입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및 기존 사례를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사항('10. 12. 31, 「승인 대상법인 선정」)에 따라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을 '11. 6. 30일까지 연장

#### 5. 향후 일정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통보 (끝)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2011. 4. 20.(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1. 의결주문

- (주)채널에이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다음의 승인조건을 부과한다.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 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제안이유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주)채널에이가 승인장 교부를 신청함에 따라,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3. 경과사항

- 「종합·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보고(11.3.23)
- (주)채널에이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신청 접수(11.3.28)
- 「종합·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의결(11.3.30)
  - ※ (주)씨에스티브이, (주)제이티비씨, (주)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의결(11.3.30)
  - ※ (주)채널에이에 대해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 (주)채널에이 승인장 교부 신청 접수(11.4.11)

## 4. 검토 결과

### 가. 신청법인 현황

- (주)채널에이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를 신청

구 분	신청법인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자본금	최대주주
종합편성	(주)채널에이	유재홍	박희설	4,076억원	동아일보사

### 나. 승인장 교부 관련 검토 사항

-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 **(승인장 교부)**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시 포함

- 주요주주 변경 여부, 기타주주 변경 등에 따른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승인신청 자격)**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하 신청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 취소,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

※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시 포함

## ○ 승인조건 부과 내용

▶ **(승인 조건)**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승인 조건 예시 :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이행, 주요주주의 지분 처분 금지 등

▶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승인조건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

※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이상 「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시 포함

▶ **(정책 건의사항)** 금번 사업자 선정이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인 점을 고려하여 첫 승인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중에서「기본계획」의결시 마련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을 부과할 필요

☞ 이상 심사위원회 정책 건의사항(「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시 포함)

## 다. 검토 의견

○ **(개요)** 심사위원회 법률 분야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에서 검토(11. 4. 12 ~ 4. 18)한 결과,

- 계획했던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였고, 자격 여부 등에 문제가 없으므로 승인하도록 하되, 승인장 교부시 승인조건을 부과

○ **(자격 여부)** 승인장 교부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를 검증한 결과,

- 주요주주의 구성(지분을 포함)이 변경되지 않음

- 기타주주 변경 과정에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및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 방송법 제13조(결격사유)에 위반되지 않음

※ 채널에이는 "기존 대표자로 예정된 안국정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대표자를 유재홍으로 변경"하여 신청

- (승인조건)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및 기존 방송사업 허가·승인 사례,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 승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동일하게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승인장 교부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 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승인 유효기간)** 심사위원회의 의견 및 최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 승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적 기준기간인 5년보다 2년 단축한 3년으로 설정

▶ **(방송법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 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5. 향후일정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끝)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2011. 5. 6.(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1. 의결주문

- (주)매일방송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1안】** (주)매일방송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주)매일방송이 승인장 교부 신청시 제출한 폐업신고서상 폐업 예정일자인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연기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폐업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안】** (주)매일방송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주)매일방송이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폐업 예정일자인 2011년 9월 30일로 한다.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연기할 수 없으며, (주)매일방송이 승인장 교부 신청시 제출한 폐업 예정일자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31일까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주)매일방송에 대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까지 주요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이 본 승인 의결시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한다. 다만, 상속·법원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매일방송(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채널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매일방송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동안 다음의 승인조건을 부과한다. 승인조건이 기재된 승인장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부한다.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 의결일(2011년 5월 6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 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주)매일방송(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채널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제안이유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주)매일방송이 승인장 교부를 신청함에 따라,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3. 경과사항

- 「종합·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보고(11.3.23)
- (주)매일방송,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신청 접수(11.3.28)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의결(11.3.30)
  - ※ (주)매일방송에 대해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 (주)매일방송, 승인장 교부 신청 접수(11.4.21)

## 4. 검토 결과

### 가. 신청법인 현황

- (주)매일방송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를 신청

구 분	신청법인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자본금	최대주주
종합편성	(주)매일방송	윤승진	장태연	3,950억원	매일경제신문사

### 나. 승인장 교부 관련 검토 사항

-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 **(승인장 교부)**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시 포함

- 주요주주 변경 여부, 기타주주 변경 등에 따른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승인신청 자격)**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하 신청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 취소,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

※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시 포함

## ○ 승인조건 부과 내용

▶ **(승인 조건)**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승인 조건 예시 :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이행, 주요주주의 지분 처분 금지 등

▶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승인조건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

※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 이상 「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시 포함

▶ **(정책 건의사항)** 금번 사업자 선정이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인 점을 고려하여 첫 승인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중에서「기본계획」의결시 마련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을 부과할 필요

☞ 이상 심사위원회 정책 건의사항(「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시 포함)

## ○ 보도PP 처분 관련사항

▶ **(승인장 교부)**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한다

☞ 이상 「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시 포함

## 다. 검토 의견

○ **(개요)** 심사위원회 법률 분야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에서 '11.4.25 ~ '11.5.4 검토한 결과,

- 계획했던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였고, 자격 여부 등에 문제가 없으므로 승인하도록 하되, 보도PP 폐업일 익일부터 승인 효력 발생 및 승인조건 부과

- (자격 여부) 승인장 교부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를 검증한 결과,
  - 주요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이 변경되지 않음
  - 기타주주 변경 과정에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및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 방송법 제13조(결격사유)에 위반되지 않음
  
- (승인 유효기간) 심사위원회의 의견 및 최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 승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하고, 승인 효력은 보도PP 폐업일 익일부터 발생
  - (폐업일) (주)매일방송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처분 계획’에서 보도PP(승인 유효기간:‘12.3.12) 폐업 예정일자를 ‘11.9.30으로 제시
    - 그러나, 승인장 교부 신청시 ① 채널 협약에 많은 시간 소요, ② 미디어 렵 문제가 결정되지 않는 등 영업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해 폐업 일정을 ‘11.12.31로 변경 요청한다는 의견서 및 폐업신고서 제출
    - 따라서, 폐업일 변경을 금번 종편PP 승인 의결시 승인할 것인지, 별도 검토를 거쳐 승인할 것인지에 따라 폐업일을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
  
- 【1안】** 폐업일 변경을 승인하여 폐업일을 ‘11.12.31로 하고, 폐업일은 방통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연기할 수 없으며 방통위가 ‘11.12.31 이전으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함
  
- 【2안】** 폐업일을 ‘11.9.30으로 하고, 폐업일은 방통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연기할 수 없으며 승인장 교부 신청시 제출한 폐업 예정일자 변경 요청은 ‘11.7.31까지 별도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

### <승인 유효기간 관련 의결주문(안)>

- (주)매일방송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1안】**(주)매일방송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주)매일방송이 승인장 교부 신청시 제출한 폐업신고서상 폐업 예정일자인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연기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폐업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안】**(주)매일방송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주)매일방송이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폐업 예정일자인 2011년 9월 30일로 한다.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연기할 수 없으며, (주)매일방송이 승인장 교부 신청시 제출한 폐업 예정일자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31일까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주요주주 변경)** ‘승인 세부심사기준(‘10.11.10)’에 따라 보도PP 폐업일까지 주요주주 구성 및 지분율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

### <주요주주 변경 관련 의결주문(안)>

- (주)매일방송에 대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까지 주요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이 본 승인 의결시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한다. 다만, 상속·법원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등록PP 운영)** 매일방송이 등록PP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특히, 채널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의 경우 PP 등록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동 내용은 종편PP의 승인 효력 발생 전후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원회 의결주문 및 승인조건에 동일하게 규정

### <등록PP 운영 관련 의결주문 및 승인조건(안)>

- (주)매일방송(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채널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조건)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및 기존 방송사업 허가·승인 사례,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승인 유효기간 동안 승인조건을 부과
  - 기 승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 조건 중 방송개시 기한을 정한 제4호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등록PP 운영과 관련된 제9호 신설
  - 승인장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부

### <승인조건(안) - 기 승인 종편PP와 동일한 사항>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 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주요주주 처분 및 출연금) 승인 효력 발효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한 기 승인 종편PP와 달리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 수정

**<주요주주 처분 및 출연금 관련 승인조건(안)>**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방송개시 기한) 승인장 교부일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송개시 기한을 정한 기 승인 종편PP와 달리 방송개시 기한을 '승인 의결일'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

**<방송개시 기한 관련 승인조건(안)>**

4. 승인 의결일(2011년 5월 6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 5. 향후일정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의결 결과 통보 (끝)



종편PP 개국식 축사



종편PP 개국식  
축 사

2011. 12. 1.(목)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랜 준비 끝에 새로운 방송사 4곳이  
지금 이 순간 첫 전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합동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이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네개 종편 채널 모두 개성이 뚜렷한 만큼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갈 것입니다.  
저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품격높은 뉴스,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로  
시청자의 사랑을 듬뿍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방송계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 유료방송은

1995년 케이블TV 출범 이후 16년 동안,  
관목할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족함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편성채널들은

다른 방송사업자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 방송 산업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시대의 경쟁력은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만 좋다면, 국경도, 인종도, 언어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여러분,  
방송은 시청자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의 방송이  
되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개국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편성채널 개국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도PP 개국식 축사



보도PP 개국식

# 축 사

2011. 12. 19.(월)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박정찬 대표이사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연합뉴스 창립 31주년과  
보도채널 뉴스와이의 개국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는  
1980년 창사 이래 뉴스의 현장을 지키며  
한국언론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나아가 오늘 뉴스Y의 개국으로  
TV보도분야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국내 방송시장은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진입을 계기로  
미디어 빅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경쟁의 시대입니다.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디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합뉴스는 폭넓은 해외 특파원망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침범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뉴스Y도

연합뉴스의 DNA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뉴스채널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방송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24시간 보도채널의 사회적 책임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와 뉴스Y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보도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TV, 핸드폰 등 IT 제품과  
조선, 자동차 등이 효자역할을 했습니다.

무역 1조 달러 신화의 밑바탕이 된 산업들은  
과거 30~40년전 뿌린 씨앗들이 성장한 것입니다.

앞으로 30~40년후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가 될 핵심산업은  
미디어산업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미디어산업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뉴스Y가 세계 방송통신의 흐름을 꿰뚫는

냉철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혜안으로

우리 방송통신이 스마트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보도를 접하셨겠지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기관에서  
통찰력있고 깊이있는 보도로  
여론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신묘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디지털방송 전환이 마무리되고  
스마트시대가 본격화되는 등  
바쁘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상상력과 열정으로  
준비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냉철하면서도 우직한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정신으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1년 동안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우리 언론의 튼튼한 기반이 되었던  
연합뉴스 가족 여러분과,  
뉴스Y의 개국을 위해 애써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